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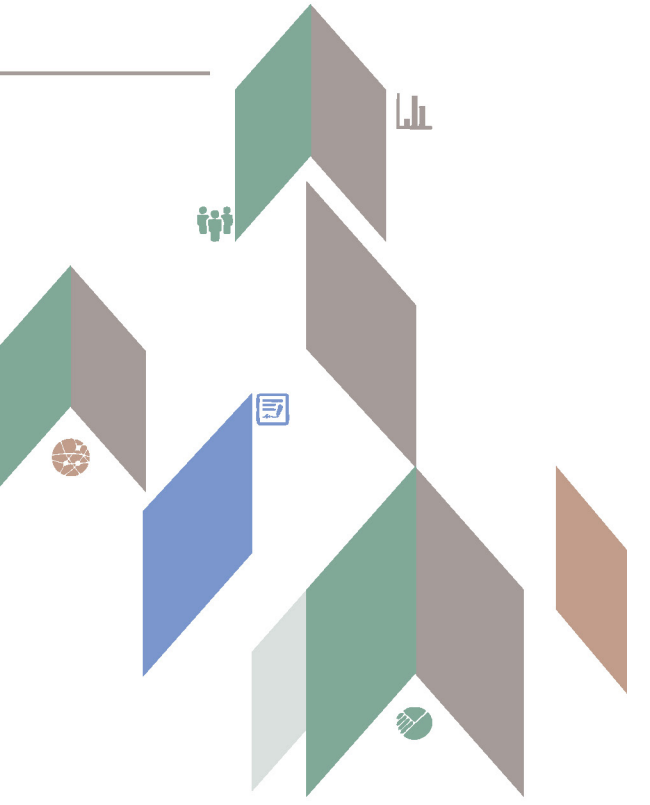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II):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Indicators for Families and Children(II): Supplementing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s and Reviewing the Situation in Kore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Ⅱ):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3-24-01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Ⅰ):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12-01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Ⅱ):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저 자		김은지·이상정·유해미·강민정·최진희·김수정·박미진·김나영·유민상·박미선·김수진·고제이·이주연·최선영·최효미·조숙인·김영민·오수미		
주관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김은지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Kim, Eun Ji, Ph.D.	강민정 연구위원 최진희 연구원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박미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나영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오수미 연구조사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상정 연구위원	김수진 연구위원 고제이 연구위원 이주연 부연구위원 최선영 부연구위원 민구홍 연구원	
	육아정책 연구소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최효미 연구위원 조숙인 연구위원 김영민 연구원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Ⅱ):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08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종 숙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가족변동 상황에 대응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족·아동지표 산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2년에 걸친 연구의 2차연도 연구이다. 1차연도 연구에서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한국자료를 검토하여 '적절', '개선필요', '누락', '자료없음', '해당없음'으로 지표를 분류하고, 이후 자료 생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개선필요' 및 '누락'으로 분류된 보완이 필요한 한국 지표를 재생산하고, 보완된 자료를 포함한 지표를 해석하여 국제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가족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일부 지표에 대해 지표 분류가 변경되었다. 특히 아동성과 영역의 지표들은 별도의 OECD 아동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상당수의 지표들의 생산이 불필요해졌다. 또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 일부 변수가 삭제되어 지표생산이 불필요해졌으며, 반대로 일부 변수는 업데이트가 자체 진행되어 별도 생산없이 바로 해석이 가능해졌다. 한편 각 지표에 대한 추가분석 과정에서 전체 변수를 얻기 어렵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지표들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통계수치를 확보하였다. 이전에는 약 절반 수준의 지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약 65% 수준의 적절한 지표를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지표들을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가구규모나 1인가구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미성년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성년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는 양부모가족의 비율이 높고 한부모가족과 기타 유형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산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출산율이 낮고 하락폭이 크며, 여성의 출산연령도 가장 높다. 한국의 이러한 초저출산 수준은 최근 20년 사이에 심화된 결과이다. 연령별 출산율 프로필을 확인해 보면, 지난 30년간 OECD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지만 30년 전의 30대 초반 출산율과 최근의 가장 피크점인 30대 초반 출산율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출산율의 급락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 외 출생 비율 지표는 한국의 출산 관련 지표에서 가장 특징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한국은 혼인 외 출생 비율이 2%대로 일본과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나며, OECD 평균에 비교할 때 극도로 낮은 수치이다. 이 지표에 대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970년에 약 7%대에서 2020년에 약 41.9%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는 아직도 가족에 대한 경직적인 규범과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출산율 지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관리하는 지표로서, 한국의 청소년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은 역설적으로 긍정적 지표이다.

한편 혼인율, 초혼 연령, 이혼율 등의 지표에서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다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과 출산 연령에서 극단적인 지표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결혼 행태에서의 특이성보다는 출산 행태의 특이성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의 이혼 분포는 OECD 국가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OECD 국가들에 비해 혼인기간이 아주 짧거나 아주 길고 자녀가 없는 집단에 이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가족규범의 경직성과 물리적 어려움 등으로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야 이혼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가구 중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낮은 것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OECD 국가들 중 연령별 고용률이 M자 곡선을 보이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한국 여성들의 연령별 고용율을 학력별로 나누어보면 M자 곡선의 생애 전반부 고학력 여성들이, 생애 후반부는 저학력 여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의 성별 격차 또한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으로, 학력별로 나누어보면 OECD 국가들은 고학력일수록 고용률 성별 격차가 작아지지만 한국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낮고 반대로 임시 고용에서 여성의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특히 최근 15년간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서 시간제 고용이 가장 큰 비중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열악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확대된 것이 확인된다.

한편 유연근무 환경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근무시간 재량이나 재택근무 빈도 등 근로환경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유연근무 재량권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남유럽 국가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인데 한국은 남유럽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간활용에서 한국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시간 분배에서 성별차이가 큰 가운데, 무급노동 시간은 여성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다소 짧은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서 아동이 초등연령대가 되면 여성의 돌봄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비해 한국은 초등연령대 아동이 있어도 상당한 돌봄시간이 투입되는 경향도 발견된다. 한편 한국은 통근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인데, 통근 시간이 전체적으로 길지만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여성의 통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자녀돌봄이 여성의 노동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가족·아동정책 총괄'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공적 가족급여 지출은 총계와 현금급여에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현물급여는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국은 현금급여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인데, 특히 미취학 아동에게 현금급여가 집중되어 취학 연령대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교육비 재정지출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이나, 1인당 공교육비 지출로 환산할 경우 고등교육단계의 지출이 OECD 국가들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령대별로 사회지출을 집계했을 때, 미취학 연령대의 아동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지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학 연령대의 아동은 대부분 교육비 지출로만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OECD 국가들이 미성년 아동 전체에 상당한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현금급여 제도도 지급연령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편적 수당의 하나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선지급제도가 많은 국가들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한국도 이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령집단별 순 이전비율을 확인해 보면, 한국은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이 낮고 근로연령층의 자녀 및 부모에 대한 사적이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가족급여수준과 시장화된 사회서비스가 넓게 분포된 결과로 해석된다.

성년연령에 대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은 19세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18세로 정의하고 있는 것보다 높게 정의하고 있다. 주류소비 및 구매 최소연령도 이와 동일하다. 단 형사책임 연령은 14세,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은 13세로 OECD 국가들보다 1~3세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은 아동에게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모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아동체벌에 대한 부분적 법률 규제도 있는 국가로서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었으나 법적 체벌금지는 학교 내에서만 유효하다. 또한 상해로 인한 아동 사망률 지표는 특히 의도적 상해로 인한 사망률 지표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우발적 상해로 인한 사망률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다.

넷째, '자녀관련 휴가' 지표들을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한국은 자녀 관련 유급휴가의 기간이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실제 이용자 수가 적어서 공적 지출수준은 매우 낮았다. 한국은 유급휴가 기간은 남녀 합산할 때 OECD 국가들 중 네 번째로 길고 남성에게 할당된 기간은 가장 길지만 반대로 실제 공적 지출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제도적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 관련 휴가제도를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로 분리해서 확인해보면, 출생아 수 100명당 출산휴가 이용자 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고,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 육아휴직 이용자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공무원, 교직원 이용자를 포괄하고 있는데, 남녀 모두 출생아 수 1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커버리지가 매우 낮은 문제와 함께, 남성 이용자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가 확인된다. 각 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인해 보면, 출산휴가의 소득대체율은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중상위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육아휴직제도의 소득대체율은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휴가와 남성에게 할당된 휴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대체율 지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정책 현황을 반영하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나, 상한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중상위 소득자의 충분한 소득대체율 보장에는 다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정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확인해 보면, 한국은 법정 연차휴가는 짧고 공휴일이 길어, 총 휴가기간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된 별도의 휴가일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감되는 휴가일은 한국보다 훨씬 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가족돌봄휴가(휴직)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급여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무급으로 운영되어 활용도가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도 혈연관계적 가족개념에 머무르고 있어 다양한 관계에 대한 포괄성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하여 자녀 관련 휴가 자격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지표들이다. 한국의 경우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국가로 좁은 범위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한다. 제시된 지표들 중에서 한국의 제도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입양부모에 한정된다.

다섯째,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성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기존 통계의 과도함을 조정하더라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이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OECD 국가들에 비해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이용률 격차도 작다. 3-5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히 높은데, 한국 또한 OECD 평균 이용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3-5세 이용률의 경우 100%에 가까운 이용률을 보이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어서 아직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육비용에 대한 개별 가구의 지출 수준을 보여주는 총 보육비 지표를 확인하더라도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맞벌이가구나 한부모가구 등 유형별로 확인하더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0~5세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서비스 이용 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인프라 공급이 민간 위주이고, 비용지원체계가 욕구 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재정 투자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시간 노동 문화로 인해 주중 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실수요를 충족하는 보육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안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질을 보여주는 돌봄인력 관련 지표를 확인해보면, 아동 대 교직원 비율, 즉 교직원 1인당 아동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있다(0세 등). 한편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담임과 보조교사의 자격을 차등화하지 않고, 자격요건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적인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 아동돌봄서비스는 서비스의 수요나 공급의 차등화를 최소화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을 최대화하는 대신, 욕구 맞춤형 서비스는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높은 보육지출과 지원수준이 여성고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낮아 출산율 기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아동성과' 영역 지표들을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출생 비율, 예방접종률 및 백일해·홍역 등 발생률, 소아당뇨 유병률, 청소년 흡연율 지표 등을 확인해 볼 때 한국의 아동보건 관련 지표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청소년 과체중 비율, 청소년 시각장애 출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높아 이에 대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빈곤율 지표를 확인해 보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아동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아동가구의 주거여건 지표에서도 과밀도나 기초생활시설 미달 등의 문제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 가구를 가구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한부모가구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아 가구유형에 따른 빈곤율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확인된다. 이는 앞서 가족구조 관련 지표와 함께 해석해 볼 때 가족제도의 다양성이 규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한국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원 접근성은 높은편이며 자원접근성 내의 불평등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나쁘지 않은 지표를 보인다. 후기 중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남성이 다소 높기는 하나 성별차이도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교육수준과 이주배경은 자녀의 교육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위취득 전공에 있어서는 예술·인문은 여성비율이, 공학·제조는 남성비율이 높아 성별 분리가 분명하게 발생하며, 그 경향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한국이 더 분리도가 높다. 과목별 성취도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성취도가 높고 특히 수학과 과학의 성취도가 높은데, 읽기 성취도는 여성이 높고 수학·과학은 남성이 다소 높은 경향은 OECD 국가들과 유사하였다. 읽기 성취도는 부모의 학력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대표 지표로 한국도 OECD 국가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청년니트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다소 높았으며, 특히 20대 초반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OECD 국가들과 달리 남성 니트비율이 다소 높았는데, 취업·진학준비와 군입대준비 상태인 경우가 여성보다 많았다. 이 지표는 비형식교육과 취업준비생이 많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한국의 공식 수치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해석시에도 주의가 필요한 지표이다.

이주배경 학생 정보는 전반적으로 누락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 중 비율만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청년의 사회참여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청소년·청년들은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높지만 노동조합 참여율은 소극적이며, 투표참여율도 낮은 편이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OECD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일반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청년의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10대 자살률 지표는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한국의 지표 재생산과 해석을 통해 한국 가족상황을 국제적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연구 내에서 생산되지 못한 추가적 생산이 필요한 지표 목록을 주요 통계자료별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표 생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가족·아동 통계지표, 국제비교지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internationally comparable family and child indicators in response to the rapid changes in family dynamics within Korean society. In its second year, the research focused on revising and interpreting Korean data from the OECD Family Database, building on an initial year of categorizing indicators as 'appropriate,' 'needs improvement,' 'missing,' or 'not applicable.' The study emphasized refining and reproducing the indicators needing improvement or missing, with the goal of bette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amilie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During the study, classifications of several indicators were revised. Child outcome indicators were deemed unnecessary following the creation of a separate OECD Child Database, and some variables were removed from the OECD Family Database. This led to a streamlined approach where some indicators no longer required production, while others were updated and ready for immediate interpretation. The research process also highlighted difficulties in capturing certain indicators and unexpected results, yet it managed to secure the most comprehensive statistical data possible to interpret Korea's family dynamics.

The study's findings reveal significant insights into Korea's family structure.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has similar household sizes and single-person household rates but lower proportions of couple-only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minor children. Among those with minor children, the rate of two-parent families is relatively high, while single-parent and other types of households are less common.

Korea's fertility rate i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and has seen the steepest decline, with the highest maternal age at childbirth. This ultra-low fertility has intensified over the past two decades, and although Korea follows global trends in shifting peak fertility to the early 30s, the actual fertility rates in this age group show little change, indicating a sharp overall decline.

The study also noted that Korea has one of the lowest rates of births outside marriage, around 2%, similar to Japan, and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This suggests that traditional family norms remain strong in Korea. The adolescent fertility rate, although very low, is seen as a positive indicator under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Regarding marriage and divorce rates, Korea's trends align closely with other OECD countries. However, the unique patterns in childbirth behavior, rather than marriage, are more closely tied to the country's low fertility rate. Divorce patterns also differ, with higher rates of divorce among couples with very short or very long marriages and those without children, reflecting the rigidity of family norms and societal pressures.

In examining the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the study found that Korea and Japan are unique among OECD countries, with women's employment rates showing an M-shaped curve. This pattern reflects high employment among highly educated women in early life stages and lower employment among less educated women later. The gender gap in employment is also pronounced, especially among the highly educated, with Korea showing a trend opposite to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Job quality for women is an issue, with low representation in managerial positions and high rates of temporary employment, particularly in part-time roles.

Korea's use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such as remote work or flexible hours, is very low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particularly in Northern Europe, which excels in such practices. This limitation in flexibility impacts women's ability to balance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In the area o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Korea's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is below the OECD average, especially in cash benefits, which are primarily directed at preschool-aged children. There is a noticeable lack of cash benefits for school-aged children, and while educational spending is average, spending on higher education falls significantly short when measured per capita.

Child-related leave in Korea is marked by a paradox: while the duration of paid leave is long, particularly for me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is low, and actual usage rates are among the lowest in the OECD. This results in low overall public spending on such leave, and despite the long duration of leave available, it has limited impact.

The study also highlighted issues in Korea's childcare services. While these services are widely accessible and supported by high levels of public spending, they do not effectively support female employment or contribute to higher fertility rates. The services are universal but lack the flexibility and quality needed to address specific family needs.

Korea's child health outcomes are generally positive, with low infant mortality and high vaccination rates. However, challenges remain, such as slightly higher rates of adolescent overweight and visual impairment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Child poverty rates are slightly below the OECD average, but single-parent households face significantly higher poverty levels, reflecting broader economic and social disparities.

In education, Korea shows high accessibility, but there are gaps related to parental education levels and migration status. Gender disparities persist in educational achievement, particularly in subject areas like mathematics and science, where males tend to outperform females, though females excel in reading.

The NEET rate among Korean youth is slightly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especially among young men, due to factors like military service and the prevalence of informal education. Social participation among youth is more active in religious institutions, but lower in labor unions and voting, with volunteerism rates similar to OECD average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continuous monitoring and updating of family and child indicators, proposing a governance framework to ensure the stable and ongoing production of these important statistics.

Keyword: Family and child statistical indicators, international comparative indicators, OECD Family Database

정책 제안

1) 주요 자료별 생산필요 지표 제안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경우 자녀 유무를 기혼에만 한정하지 말고 미혼인 응답자의 자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또한 동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포함이 필요함. 한편 가구 유형 집계시 미혼 자녀의 연령을 만25세 이하로 수정한 가구 유형 집계가 필요함
- 인구동향조사에서 출산율 공표시 '코호트완결출산율' 공표가 필요함
-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 동거변수, 소득변수, 학력변수를 생성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자료는 취업률 지표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1주일 기준 취업 정보를 수집하여 취업률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그 외 출산휴가 변수, 가족배경변수(가구 내 성인 취업자 수 등)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부부 기준 외에 아동을 기준으로 아동 부모의 혼인상태와 고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집계·공표가 필요함. '0~14세 이하 아동을 둔 양부모 및 한부모의 고용상태', '0~14세 이하 아동을 둔 15~64세 모의 고용상태'가 필요하며, 동일 지표에서 아동연령을 '0~2세', '3~5세', '6~14세'로 구분한 통계, 모의 학력을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한 통계가 필요함. 0~2세 아동 모의 경우 '일하고 있음',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 중'으로 구분한 지표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학력별로 남녀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구분하여 집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계적 안정성 확인 후 공표 필요.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니트(NEET) 지표 집계 필요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원정보 공개 또는 가구원정보를 아동 및 가구특성에 따른 변수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양부모가구, 한부모가구 여부 필요. 그 외 가구원의 활동제약에 대한 정보 필요
- 국민이전계정에서 현재 14세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19세를 기준으로 한 분류도 필요(0~19세, 20~64세, 65세 이상)
- 가족과 출산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을 15~64세로 확대하고 '개인적 이상자녀수' 문항을 추가할 필요
-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는 주당 근로시간 문항을 포함

- 주거실태조사는 '과밀거주 아동' 및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 여성폭력실태조사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 경험률', 근로환경조사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과 '재택근무 근로자' 변수를 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할 필요
-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현금 및 시간 이전' 항목과 '손자녀돌봄 여부' 항목을 포함
- 보육통계는 실제 아동연령을 기준으로 '연령별 기관이용률' 지표 집계, 공표가 필요하며, 보육실태조사의 경우 세후소득 항목 포함
- 비공식 돌봄 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보완하도록 하고, 현재 초등방과후 돌봄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전무하므로 새로운 통합 실태조사가 제안될 필요
-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 이주배경 관련 통계 항목 필요
- OECD에 제출되고 있는 Tax-benefit system의 항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가족급여 제도유형 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SOCX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장려금 등을 가족 지출로 분류하고 돌봄지원 재정을 영유아연령기와 초등연령기로 구분집계할 필요
-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조사(HSBC),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 등의 한국 참여여부 검토 필요
-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비율' 등을 사회조사 등에 포함할 필요

2) 한국의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의 생산·관리 거버넌스 정립 방안

- 국무조정실이 한국 가족지표의 총괄부처로서 OECD가 공개하는 한국 데이터에 대한 검토와 누락된 지표의 생산 및 OECD에 제출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와 상관없이 정부 아동·가족정책에서의 활용을 우선 목적으로 하여 자체적인 가족·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방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총괄책임 역할을 담당. (가칭)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될 경우 해당 부서가 총괄관리를 담당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7

제2절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의 구조와 재검토 과정 ····· 9
1. 1차연도 지표 검토 개요 ····· 9
2. 지표 재검토 과정의 주요 변경 내용 ····· 10

제2장 가족구조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제1절 가족구조 지표의 구성 ····· 17

제2절 한국의 가족구조 지표 ····· 22
1. 가족과 아동 ····· 22
가.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 ····· 22
나. SF1.2 가족에서의 아동(Children in Families) ····· 30
다. SF1.3 아동의 거주 형태(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 34
라.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 42
마. SF1.5 아동의 주거 여건(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 48
바. 가족과 아동 지표 요약 ····· 51
2. 출산력 ····· 54
가. SF2.1 출산율(Fertility rates) ····· 54
나.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 63
다.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 67
라.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 74
마. SF2.5 무자녀(Childlessness) ····· 76

바. 출산력 지표 요약 ····· 77
3. 혼인 및 파트너십 상태 ····· 78
가. SF3.1 혼인율과 이혼율(Marriage and divorce rates) ····· 78
나. SF3.2 가족 해체와 아동(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 83
다. SF3.3 동거율 및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확산 비율(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 90
라. SF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 91
마. 혼인 및 파트너십 상태 지표 요약 ····· 95

제3절 소결 ····· 98

제3장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제1절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의 구성 ····· 103

제2절 한국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 109
1. 아동 및 가족유형별 취업 현황 ····· 109
가.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 109
나. LMF1.2 모성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 112
다.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 115
라.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 118
마.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 123
바.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 125
사.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 지표 요약 ····· 134
2.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 135
가.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 135
나.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 140
다.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 142
라. LMF2.4 가족친화제도(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 143
마.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 150

바.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 156
사.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지표 요약 ····· 160

제3절 소결 ····· 163

제4장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제1절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의 구성 ····· 169

제2절 한국의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 ····· 175
1.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 ····· 175
가. PF1.1 공적 가족급여 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 175
나. PF1.2 공교육 지출(Public spending on education) ····· 178
다. PF1.3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 182
라. PF1.4 조세-복지급여체계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 192
마.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체계(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 197
바. PF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 201
사. PF1.7 세대간 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 ····· 208
아. PF1.8 법적 성년 연령(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 211
자. PF1.9 아동보호 특성(Aspects of child protection) ····· 219
차.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 요약 ····· 229
2. 자녀관련 휴가 ····· 233
가. PF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 233
나.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 현황(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 242
다. PF2.3 취업 부모 추가휴가(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 251
라. PF2.4 자녀관련 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 263
마. PF2.5 자녀관련 휴가 급여 추이(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 276
바. PF2.6 동성부모과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 281
사. 자녀관련 휴가 지표 요약 ····· 295

제3절 소결 ····· 299

CONTENTS

제5장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제1절 아동돌봄서비스 지표의 구성 ····· 305

제2절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 308

1. 영유아 공보육·교육 ····· 308

가.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 308

나. PF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 312

다. PF3.4 보육료 지원(Childcare support) ····· 321

라. 영유아 공보육·교육 지표 요약 ····· 326

2. 아동돌봄체계 ····· 327

가. PF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적절) ··· 327

나. PF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 332

다. 아동돌봄체계 지표 요약 ····· 340

제3절 소결 ····· 341

제6장 아동성과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제1절 아동성과 지표 ····· 345

제2절 한국의 아동성과 지표 ····· 353

1. 아동건강 ····· 353

가. CO1.1 영아사망(Infant Mortality) ····· 353

나. CO1.2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 356

다. CO1.3 저체중 출생(Low birth weight) ····· 358

라. CO1.4 백신 접종률(Vaccination rates) ····· 361

마. CO1.5 모유 수유율(Breastfeeding rates) ····· 363

바.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 365

사. CO1.7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ity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 366

아. CO1.8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 369

자. CO1.9 아동 장애(Child Disability) ····· 371

차. 아동건강 지표 요약 ····· 383

2. 아동빈곤 ····· 385
가. CO2.1 가구 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 385
나. CO2.2 아동빈곤(Child poverty) ····· 388
다.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 392
라. 아동빈곤 지표 요약 ····· 395
3. 교육·문해력 ····· 396
가. CO3.1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 396
나. CO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 404
다.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 407
라. CO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 410
마. CO3.5. 청년 니트(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 418
바.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 423
사. 교육·문해력 지표 요약 ····· 426
4. 사회참여 ····· 428
가.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 428
나.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 432
다. CO4.4. 십대 자살(Teenage suicides) ····· 435
라. 사회참여 지표 요약 ····· 437

제3절 소결 ····· 438

제7장 요약 및 생산필요 지표와 관리방안 제안

제1절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443
1.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요약 ····· 443
가. 가족구조 지표 ····· 444
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 450
다.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 ····· 458
라.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 465
마. 아동성과 지표 ····· 468

제2절 주요 자료별 생산필요 지표 제안 및 지표 관리방안 ····· 478
1. 주요 자료별 생산필요 지표 제안 ····· 478
가. 통계청 생산 통계자료 ····· 478
나. 공공기관 생산 통계자료 ····· 487
다. 기타 OECD 제출 통계자료 ····· 493
2. 한국의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의 생산·관리 거버넌스 정립 방안 ····· 497
가. 한국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의 생산 체계 ····· 498
나. 한국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의 생산 및 관리 책임 기관 ····· 499

■ **참고문헌** ····· 503

■ **부록: 지표별 작성자 목록** ····· 511

표 차례

〈표 1-1〉 1차연도 주요 연구결과 요약 ····· 6
〈표 1-2〉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Data Explorer 아카이브 지표 현황 ····· 11
〈표 2-1〉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지표 ····· 18
〈표 2-2〉 Table SF1.1.A. 가구 유형 ····· 26
〈표 2-3〉 Table SF1.1.B.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 ····· 29
〈표 2-4〉 부모 양육유형 세부 분류 ····· 31
〈표 2-5〉 Chart SF1.2.A. 아동의 거주 형태 ····· 32
〈표 2-6〉 한국 아동(0~17세)의 연령별 분포 ····· 35
〈표 2-7〉 Table SF1.3.A.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 ····· 37
〈표 2-8〉 Table SF1.3.D. 유소년의 거주 형태 ····· 41
〈표 2-9〉 시설기준 미달 여부 산출 과정 ····· 50
〈표 2-10〉 출생코호트별 완결출산율·평균 출산연령 ····· 58
〈표 2-11〉 한국 여성(25~39세)의 최종적인 가족 규모 ····· 65
〈표 2-12〉 전체 출생 중 혼인 외부 출생 비율: 2012~2022년 ····· 77
〈표 2-13〉 Table SF3.2.A.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 ····· 84
〈표 2-14〉 Table SF3.2.B.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 ····· 86
〈표 2-15〉 신체적 및 성적 폭력 경험 여부 (%) ····· 92
〈표 3-1〉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지표 ····· 105
〈표 3-2〉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시범산출 결과와 OECD 평균 비교 ····· 111
〈표 3-3〉 모의 고용률: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시범산출 결과와 OECD 한국 보고값 및 평균 비교 ····· 114
〈표 3-4〉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시범산출 결과와 OECD 평균 비교 ····· 117
〈표 3-5〉 Table LMF1.6.A. 학력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 ····· 131
〈표 3-6〉 한국의 유연근무제도와 OECD 유연근무제도 비교 ····· 144
〈표 3-7〉 근무시간의 유연성 성별 비교(2020년) ····· 145
〈표 3-8〉 근무시간의 유연성 고용형태별 비교(2020) ····· 146
〈표 3-9〉 남녀근로자의 재택근무 빈도 ····· 149
〈표 3-10〉 Table LMF2.5.A.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 ····· 151
〈표 3-11〉 Table LMF2.5.B.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 ····· 153
〈표 3-12〉 Table LMF2.6.A.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 ····· 158
〈표 3-13〉 Table LMF2.6.B.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 ····· 160
〈표 4-1〉 가족·아동정책(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 ····· 171
〈표 4-2〉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180
〈표 4-3〉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182

CONTENTS

〈표 4-4〉 Table PF1.3.A. 가족유형별 가족현금급여 (2018) ····· 184
〈표 4-5〉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 수준 (2018) ····· 187
〈표 4-6〉 Table PF1.4.A. 가구소득수준별 조세-급여체계의 형평성(2014) ····· 194
〈표 4-7〉 비경활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참여세율(PTR: participation tax rates, %) (2014) ····· 197
〈표 4-8〉 Table PF1.5.A. 자녀양육비제도 주요 특징 ····· 199
〈표 4-9〉 연령재배분에서 제도별 공공, 민간 구분 ····· 208
〈표 4-10〉 한국의 성년연령의 법적 근거 ····· 215
〈표 4-11〉 OECD 국가의 성년연령 법적 규정 ····· 217
〈표 4-12〉 Table PF1.9.A.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 ····· 223
〈표 4-13〉 Table PF1.9.B.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 ····· 225
〈표 4-14〉 Table PF1.9.B. 아동 체벌 규제(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 227
〈표 4-15〉 Table PF2.1.A.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 236
〈표 4-16〉 Table PF2.1.B.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 238
〈표 4-17〉 PF2.3 취업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휴가 관련 한국의 법령 및 휴가일수 ····· 252
〈표 4-18〉 Table PF2.3.A. 법정휴가 및 단협 휴가일수 ····· 253
〈표 4-19〉 한국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2024년 1월기준) ····· 255
〈표 4-20〉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2022년) ····· 256
〈표 4-21〉 출산전후휴가 급여대체율 주요 변화 ····· 265
〈표 4-22〉 세부항목별 출산후 경과기간별 순가구소득의 변화 (0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 274
〈표 4-23〉 한국의 아버지에게 할당된 자녀관련 휴가유형별 휴가기간 (시계열 자료 1970년~2022년) ····· 280
〈표 4-24〉 Table PF2.6.1. 남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 282
〈표 4-25〉 Table PF2.6.2. 여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 285
〈표 4-26〉 Table PF2.6.3.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 289
〈표 4-27〉 Table PF2.6.4. 이타적 대리모와 상업적 대리모의 법적 지위, 2022 ····· 294
〈표 5-1〉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 306
〈표 5-2〉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공공 지출 수준(2019) ····· 308
〈표 5-3〉 공공 지출 반영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 예산(2019-2024) ····· 310
〈표 5-4〉 Table PF4.2.A.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2020년) ····· 339
〈표 6-1〉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지표 ····· 347
〈표 6-2〉 OECD 국가의 시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 및 청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2019) ····· 373
〈표 6-3〉 OECD 국가의 장애아동 대상 가족급여 비교 ····· 376
〈표 6-4〉 2007년, 2014년, 2015년 혹은 최신년도 기준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 ····· 387
〈표 6-5〉 Table CO2.3.B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 ····· 393
〈표 6-6〉 Table CO3.1.A.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 ····· 401
〈표 6-7〉 Table CO3.1.B.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 ····· 403
〈표 6-8〉 2022년 5월 기준 한국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 상태 ····· 419
〈표 6-9〉 2022년 5월 기준 한국의 연령대별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 상태 ····· 420

〈표 6-10〉 2022년 5월 기준 한국의 성별에 따른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 상태 ····· 422
〈표 6-11〉 Table CO4.1.A. 사회단체 구성원(활동적 또는 비활동적)인 청소년·청년 비율 ····· 428
〈표 6-12〉 Table CO4.1.B. 지난달 자원봉사를 한 청소년·청년 비율 ····· 430
〈표 6-13〉 Table CO4.1.D. 교회,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적극적·수동적 참여 ····· 432
〈표 6-14〉 Table CO4.2.A. 성·연령별 투표율 ····· 434
〈표 7-1〉 가족과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지표 ····· 446
〈표 7-2〉 출산력 지표(Fertility indicators) ····· 447
〈표 7-3〉 혼인 및 파트너십 상태(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지표 ····· 449
〈표 7-4〉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지표 ····· 452
〈표 7-5〉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지표 ····· 455
〈표 7-6〉 가족·아동정책 총괄(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지표 ····· 460
〈표 7-7〉 자녀관련 휴가(Child-related leave) 지표 ····· 463
〈표 7-8〉 영유아 공보육·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지표 ····· 466
〈표 7-9〉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지표 ····· 468
〈표 7-10〉 아동건강(Child Health) 지표 ····· 470
〈표 7-11〉 아동빈곤(Child Poverty) 지표 ····· 473
〈표 7-12〉 교육·문해력(Education/Literacy) 지표 ····· 474
〈표 7-13〉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지표 ····· 476
〈표 7-14〉 인구주택총조사 생산필요 지표 ····· 479
〈표 7-15〉 인구동향조사 출산율 통계 생산필요 지표 ····· 480
〈표 7-16〉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생산필요 지표 ····· 481
〈표 7-17〉 지역별 고용조사 생산필요 지표 ····· 484
〈표 7-18〉 경제활동인구조사 생산필요 지표 ····· 486
〈표 7-19〉 가계금융복지조사 생산필요 지표 ····· 487
〈표 7-20〉 국민이전계정 생산필요 지표 ····· 487
〈표 7-21〉 가족과 출산조사 생산필요 지표 ····· 488
〈표 7-2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생산필요 지표 ····· 489
〈표 7-23〉 주거실태조사, 여성폭력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 생산필요 지표 ····· 490
〈표 7-24〉 노인실태조사 생산필요 지표 ····· 490
〈표 7-25〉 보육실태조사 및 보육통계 생산필요 지표 ····· 491
〈표 7-26〉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등 초등돌봄 관련 생산필요 지표 ····· 492
〈표 7-27〉 국가학업성취도평가 생산필요 지표 ····· 493
〈표 7-28〉 OECD Tax-benefit system 관련 검토필요 지표 ····· 494
〈표 7-29〉 OECD SOCX 관련 검토필요 지표 ····· 495
〈표 7-30〉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조사(HBSC)와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 관련 지표 ····· 495
〈표 7-31〉 청년 관련 문항 추가 필요 지표 ····· 497

그림 차례

[그림 1-1]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주요 영역 ····· 4
[그림 1-2] 1차연도 연구 지표 검토 기준 ····· 5
[그림 1-3] 1차연도 연구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총괄 ····· 6
[그림 1-4] 1차연도 연구 지표 검토 기준 분류 별 2차연도 과업 ····· 8
[그림 2-1] Chart SF1.1.A.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 ····· 24
[그림 2-2] SF1.4.A.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 ····· 43
[그림 2-3] Chart SF1.4.B.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 ····· 44
[그림 2-4] Chart SF1.4.C. 아동 인구 추이 ····· 45
[그림 2-5] Chart SF1.4.D. 유소년 부양비 ····· 46
[그림 2-6] Chart SF1.4.E.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 ····· 47
[그림 2-7] Chart SF1.5.A. 과밀아동가구 비중 비교 ····· 49
[그림 2-8] Chart SF1.5.B. 시설기준 미달 아동가구 비중 비교 ····· 50
[그림 2-9] Chart SF2.1.A. 합계출산율 ····· 56
[그림 2-10] Chart SF2.1.B. 코호트완결출산율, 1950, 1960, 1970년 출생코호트 ····· 59
[그림 2-11] Chart SF2.1.C.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첫째아 출생 비율,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 비율, 1980, 2021 ····· 62
[그림 2-12] Chart SF2.1.D.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출생순위별 출생 비율 ····· 63
[그림 2-13] Chart SF2.2.C. 최종적 가족 규모: 실제 평균 자녀 수와 출산의향 평균 자녀 수(25~39세 여성) ····· 66
[그림 2-14] Chart SF2.3.A.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 68
[그림 2-15] Chart SF2.3.B.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 69
[그림 2-16] Chart SF2.3.C.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 ····· 70
[그림 2-17] Chart SF2.3.D. 청소년 출산율 ····· 71
[그림 2-18] Chart SF2.3.E.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 ····· 73
[그림 2-19] Chart SF2.4.A. 혼인 외 출생 비율 ····· 75
[그림 2-20] Chart SF2.4.B.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 ····· 75
[그림 2-21] Chart SF3.1.A. 조혼인율 ····· 79
[그림 2-22] Chart SF3.1.B.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 ····· 80
[그림 2-23] Chart SF3.1.C. 조이혼률 ····· 81
[그림 2-24] Chart SF3.1.D.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 ····· 82
[그림 2-25] Chart SF3.2.A.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 ····· 88
[그림 2-26] Chart SF3.2.B.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 ····· 89
[그림 2-27] Chart SF3.4.A. 파트너에 의한 폭력 ····· 93
[그림 2-28] Chart SF3.4.B.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 ····· 94

[그림 3-1] Chart LMF1.4.A. 성별 연령별 고용률, 2018 ····· 119
[그림 3-2] Chart LMF1.4.B.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2018) ····· 121
[그림 3-3] 한국의 남성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2023) ····· 122
[그림 3-4] 한국의 여성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2023) ····· 122
[그림 3-5] Chart LMF1.5.A.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 ····· 124
[그림 3-6] Chart LMF1.5.C.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 ····· 125
[그림 3-7] Chart LMF1.6.A.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 126
[그림 3-8] Chart LMF1.6.B.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성별 차이 감소 추이 ····· 127
[그림 3-9] Chart LMF1.6.C. 시간제 고용에서의 성별 차이 ····· 128
[그림 3-10] Chart LMF1.6.D. 시간제 고용의 변화 ····· 129
[그림 3-11] Chart LMF1.6.E.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 ····· 132
[그림 3-12] Chart LMF1.6.F. 임시 고용의 성별 차이 ····· 133
[그림 3-13] Chart LMF2.1.A.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1 ····· 137
[그림 3-14] Chart LMF2.1.A.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2 ····· 138
[그림 3-15] Chart LMF2.1.B.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 ····· 139
[그림 3-16] Chart LMF2.4.B.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여성, 2015) ····· 146
[그림 3-17] Chart LMF2.4.B.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남성, 2015) ····· 147
[그림 3-18] Chart LMF2.4.C.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성별 차이 ····· 148
[그림 3-19] Chart LMF2.4.D. 재택근무 근로자 ····· 150
[그림 3-20] Chart LMF2.5.A.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 ····· 154
[그림 3-21] Chart LMF2.5.B.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 ····· 156
[그림 3-22] Chart LMF2.6.A. 통근 시간 ····· 157
[그림 4-1] Chart PF1.1.A. 공적 가족급여 지출 ····· 176
[그림 4-2] Chart PF1.2.A. 교육단계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179
[그림 4-3] Chart PF1.2.B.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181
[그림 4-4] Chart PF1.3.A.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수준 ····· 188
[그림 4-5] Chart PF1.3.B. 막내 자녀 연령별 가족현금 급여수준 ····· 189
[그림 4-6] Chart PF1.3.C. 자녀수별 현금급여 수준 ····· 191
[그림 4-7] Chart PF1.4.A. 2차 소득자 참여세율 ····· 196
[그림 4-8] Chart PF1.6.A.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의 규모 ····· 202
[그림 4-9] Chart PF1.6.B. 연령구간별 공적 사회지출 ····· 203
[그림 4-10] Chart PF1.6.C. 0-5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사회지출 ····· 205
[그림 4-11] Chart PF1.6.D. 6-11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사회지출 ····· 206
[그림 4-12] Chart PF1.6.E. 12-17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지출 ····· 207
[그림 4-13] Chart PF1.7.A. 연령별 순이전비율 ····· 210
[그림 4-14] 한국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 (2021) ····· 210

[그림 4-15] Chart PF1.9.A. 의도적,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 ····· 220
[그림 4-16] Chart PF1.9.B. 1970년대부터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률 추이 ····· 222
[그림 4-17] Chart PF1.9.C. 보호아동비율 ····· 229
[그림 4-18] Chart PF2.1.D.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 ····· 240
[그림 4-19] Chart PF2.1.E. 자녀관련 휴가 공적 지출규모 ····· 241
[그림 4-20] Chart PF2.2.A.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 ····· 244
[그림 4-21] Chart PF2.2.B.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 ····· 246
[그림 4-22] Chart PF2.2.C.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 ····· 249
[그림 4-23] Chart PF2.2.D.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중 추이 ····· 251
[그림 4-24] Chart PF2.4.A. 출산전후휴가 소득대체율 ····· 266
[그림 4-25] Chart PF2.4.B.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의 소득대체율 ····· 268
[그림 4-26] Chart PF2.4.C.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 ····· 270
[그림 4-27] Chart PF2.4.D. 출산후 첫째달 순가구소득 대체율 ····· 271
[그림 4-28] Chart PF2.4.E. 출산후 육아휴직 기간별 순가구소득의 변화(0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 275
[그림 4-29] Chart PF2.5.A.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 (1970년, 1995년, 2022년) ····· 277
[그림 4-30] Chart PF2.5.B. 제도 도입년도 기준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기간(주) ····· 278
[그림 4-31] Chart PF2.5.C.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 추이 ····· 281
[그림 4-32] 성별 동성부모 자녀관련휴가 이용자격 ····· 292
[그림 5-1] Chart PF3.1.A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2019) ····· 309
[그림 5-2] Chart PF3.1.B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2019) ····· 312
[그림 5-3] Chart PF3.2.A.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 314
[그림 5-4] Chart PF3.2.C. 0-2세(영아)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2020) ····· 316
[그림 5-5] Chart PF3.2.D.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2020) ····· 318
[그림 5-6] Chart PF3.2.E. 3-5세(유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2020) ····· 319
[그림 5-7] Chart PF3.2.F. 3-5세(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2020) ····· 321
[그림 5-8] Chart PF3.4.A. 총 보육비 ····· 323
[그림 5-9] Chart PF3.4.B.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 ····· 324
[그림 5-10] Chart PF3.4.C.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 ····· 326
[그림 5-1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_일본(2024년) ····· 328
[그림 5-1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_프랑스(2024년) ····· 329
[그림 5-13]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_미국(2024년) ····· 329
[그림 5-14]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_핀란드(2024년) ····· 330
[그림 5-15]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_한국(2024년) ····· 331
[그림 5-16] 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 ····· 332
[그림 5-17] Chart PF4.2.A. 유아교육(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 ····· 334

[그림 5-18] Chart PF4.2.B. 영아보육(0~2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 ····· 336
[그림 6-1] Chart CO1.1.A.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 ····· 354
[그림 6-2] Chart CO1.1.C. 영아사망률 ····· 355
[그림 6-3] Chart CO1.2.A. 성별 기대수명의 추이 ····· 357
[그림 6-4] Chart CO1.2.B. 성별 기대수명 ····· 358
[그림 6-5] Chart CO1.3.A. 저체중아 출생 비율 ····· 359
[그림 6-6] Chart CO1.3.B. 저체중 출생아 비율 변화 ····· 360
[그림 6-7] Chart CO1.4.A.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및 백일해 발병률 ····· 362
[그림 6-8] Chart CO1.4.B. 홍역 예방 접종률 및 홍역 발병률 ····· 363
[그림 6-9] Chart CO1.5.B. 생후 3, 4, 6개월에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동의 비율 ····· 364
[그림 6-10] Chart CO1.6.A.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 ····· 366
[그림 6-11] Chart CO1.7.A.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 ····· 368
[그림 6-12] Chart CO1.8.A. 성별 11, 13, 15세 정기 흡연자 비율 ····· 370
[그림 6-13] Chart CO2.1.A.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 385
[그림 6-14] Chart CO2.2.A. 아동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 ····· 389
[그림 6-15] Chart CO2.2.B. 아동 상대소득 빈곤율, 2008, 2013, 2018 ····· 390
[그림 6-16] Chart CO2.2.C. OECD 국가 가구 유형별 아동가구의 빈곤율: 2018년 기준 ····· 391
[그림 6-17] Chart CO2.2.D. OECD 국가 고용형태별 아동가구의 빈곤율: 2018년 기준 ····· 392
[그림 6-18] Chart CO2.3.B.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 ····· 395
[그림 6-19] Chart CO3.1.A.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 ····· 397
[그림 6-20] Chart CO3.1.B.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 ····· 399
[그림 6-21] Chart CO3.2.A.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 ····· 404
[그림 6-22] Chart CO3.2.B.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 ····· 406
[그림 6-23] Chart CO3.2.C.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 ····· 407
[그림 6-24] Chart CO3.3.A. 만 10세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성취도 ····· 408
[그림 6-25] Chart CO3.3.B.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차이 ····· 409
[그림 6-26] Chart CO3.4.A.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 411
[그림 6-27] Chart CO3.4.B.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 412
[그림 6-28] Chart CO3.4.C.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 ····· 414
[그림 6-29] Chart CO3.4.D.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 ····· 416
[그림 6-30] Chart CO3.4.E.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 ····· 417
[그림 6-31] Chart CO3.5.A. 청년 니트 비율 ····· 419
[그림 6-32] Chart CO3.5.B. 연령대별 청년 니트 비율 ····· 421
[그림 6-33] Chart CO3.5.C.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 ····· 423
[그림 6-34] Chart CO3.6.A. 이주배경 학생 ····· 424
[그림 6-35] Chart CO3.6.B.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 ····· 425

[그림 6-36] Chart CO4.2.A. 의회 선거 투표율 ····· 433
[그림 6-37] Chart CO4.2.B.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 ····· 435
[그림 6-38] Chart CO4.4.B. 10대 자살 ····· 436
[그림 7-1] 1차연도와 2차연도 결과 비교 ····· 444
[그림 7-2]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1안) ····· 499
[그림 7-3]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2안) ····· 501

0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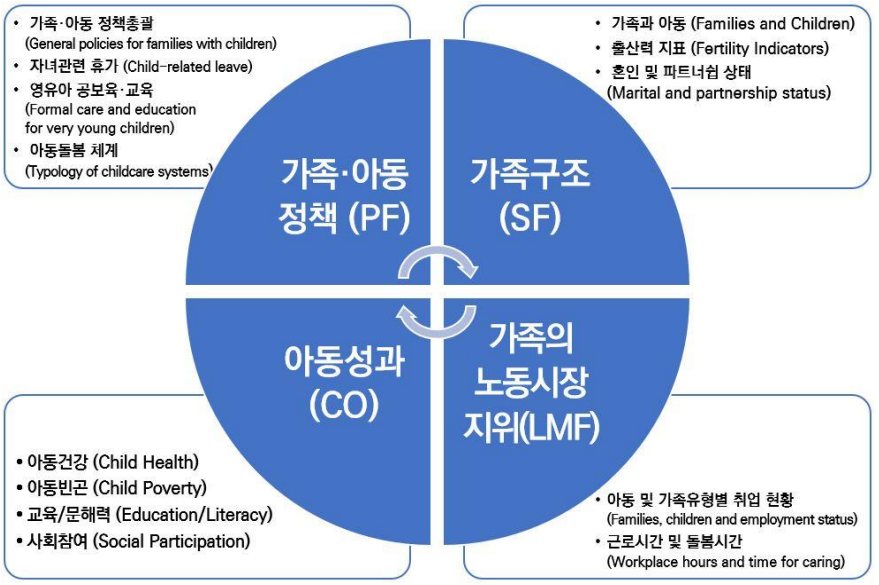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저출생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가족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출생 시대에 가족구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정책, 아동의 웰빙 등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개별 사업 단위로 자료가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는 한국 사회가 정책적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복지국가들의 가족정책 통계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많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와 각종 정책 근거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아래와 같은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가족구조(SF)' 지표로서, 가족의 형성과 유지·확대, 가족의 변동·전환,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행위 측면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지표는 가족구조와 노동시장 영역 간의 정합도와 격차, 시간 자원의 배분과 개인적 만족도를 다루고 있다. 한편 '가족·아동정책(PF)'은 가족구조와 노동시장 영역 간의 부정합성에 대한 정책 영역의 개입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가족의 소득 지원, 자녀 양육 관련 휴가와 서비스, 교육과 돌봄에서의 공적 지원체계의 구조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의 관점에서 건강과 빈곤, 교육과 사회참여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김은지 외, 2023: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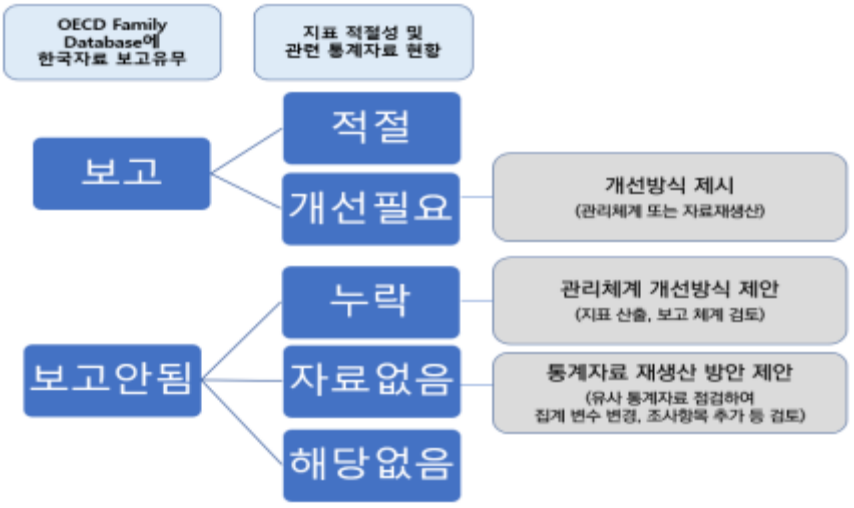
[그림 1-1]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주요 영역



출처: 김은지 외(2023:12)

본 연구는 김은지 외(2023)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의 후속연구이다. 1차연도 연구에서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한국 지표 현황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한국 자료 보고 여부를 1차 기준으로 하고, 보고된 자료의 경우에는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적절',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필요'로 구분하였다. 보고되지 않은 경우 현재 있는 자료로 바로 생산이 가능한 경우 '누락'으로, 현재 있는 자료로 생산이 불가능하여 자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사례는 많지 않지만 한국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 않은 상태가 적절한 경우 '해당없음'으로 구분하였다(김은지 외, 2023:8-10).

[그림 1-2] 1차연도 연구 지표 검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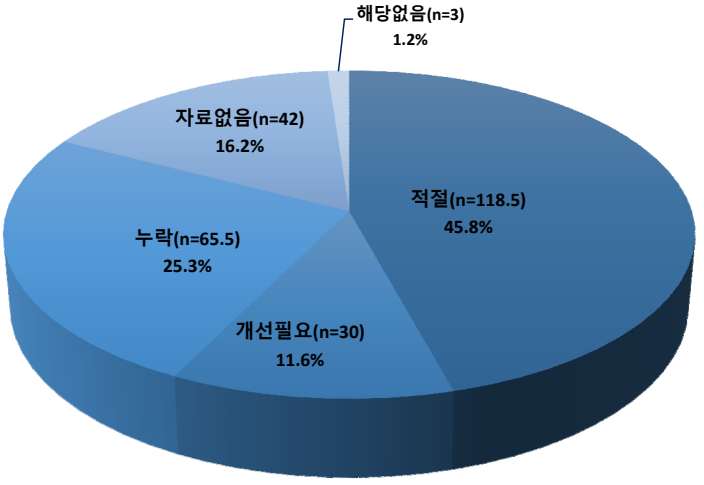


출처: 김은지 외(2023:9)

1차연도의 분류 결과 '적절'히 보고되고 있는 지표는 전체 259개 지표 중 약 절반 수준(45.8%)에 머무르고 있다.[1] 자료가 보고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지표도 약 11.6%, 산출가능하지만 보고되지 않은 '누락' 지표도 약 25.3% 수준으로 나타난다. 영역별로는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영역과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영역의 지표가 보고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특히 자녀관련 휴가 지표(Child-related leave, PF2)와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PF1)의 보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 이 두 지표의 경우 '개선필요' 지표의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자료만 요약적으로 제시하거나 전체 평균을 제시하는 등 한국지표가 포함되지 않는 '해당없음' 지표도 일부 존재하였다(김은지 외. 2023:249-252).

1) 1차연도 결과 중 '가족·아동정책 총괄(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영역의 지표 하나가 '개선필요' 지표로 오류집계되었다. 해당 지표는 '적절'과 '누락'이 결합된 지표로 재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1차연도 집계 결과(김은지 외, 2023)와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림 1-3] 1차연도 연구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총괄



출처: 김은지 외(2023:249)

구체적으로 1차연도 연구에서 지표 구분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1〉 1차연도 주요 연구결과 요약

지표 분류	주요 결과
개선필요	- 인구주택총조사의 가족 유형 집계시 한국 자료는 연령기준이 없음. OECD와 같이 25세 이하로 자녀 연령을 고려한 자료 집계도 필요 -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한 모성 고용률 집계시 한국자료는 0~17세 아동, 15~54세의 여성으로 보고하고 있어, OECD와 같이 0~14세 아동, 15~64세 여성으로 집계한 자료가 필요 - 보육서비스이용률은 현재 보육연령(어린이집 반 편성 연령) 기준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아동의 실제 만나이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가 필요 - OECD SOCX의 급여 분류시 가족급여 분류를 OECD 기준에 맞추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OECD Tax-benefit 모델 또한 새로 도입된 각종 수당제도에 대한 적절한 분류가 필요 - 휴가 일수 산정 및 자격기준, 대리모 규정 등에 대한 일부 오류 지표를 개선하여 자료를 제출할 필요 - 아동의 당뇨 및 천식 유병률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삭제된 당뇨 문항을 복구하고, 제출한 자료 중 서울 수치로 제한된 자료들은 전국 수치로 수정할 필요
누락	- 가구 유형 및 무자녀, 파트너십 중 기혼 통계, 아동장애 출현율 등의 지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집계가 가능하여 집계가 필요 - 아동가구의 거주 형태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자료로, 아동의 주거환경은 주거실태조사로, 출산율 관련 누락지표는 출생 통계로, 부모 고용 관련 정보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또는 지역별 고용조사로 집계가 가능하여 집계가 필요 -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족친화제도 관련 내용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또는 근로환경조사, 한부모가족 관련 내용은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관련 세부지표는 보육실태조사, 아동 연령별 과체중, 정기흡연자 등의 자료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의 통계를 통해 집계가 가능하여 통계치를 산출할 필요

지표 분류	주요 결과
자료없음	- 혼인관계 밖의 '동거' 변수와 '이주배경' 변수가 한국의 자료에서는 부재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짐으로써 많은 지표가 생산되지 않고 있음 - 통계적 보완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출산휴가' 관련 지표, 비공식돌봄과 초등방과후 돌봄에 대한 지표가 충실하지 않아 국제비교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 '이상자녀 수',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조사(HBSC),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 등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조사의 모듈이나 문항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비교가 어려운 항목이 있음. - '가족 풍요도'나 '물질적 결핍'과 같이 한국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지표들도 확인됨.

본 연구의 1차연도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는 한국의 지표가 다수 누락되거나 비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한국 지표를 생산 및 업데이트하고 지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와 학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족·아동지표 산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족변동 및 저출산 대응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아동중심통계 조성'을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존 통계조사 집계를 아동중심으로 전환하되, 해외의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와 같은 가족통계 항목을 제공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업을 실행하고, 이 과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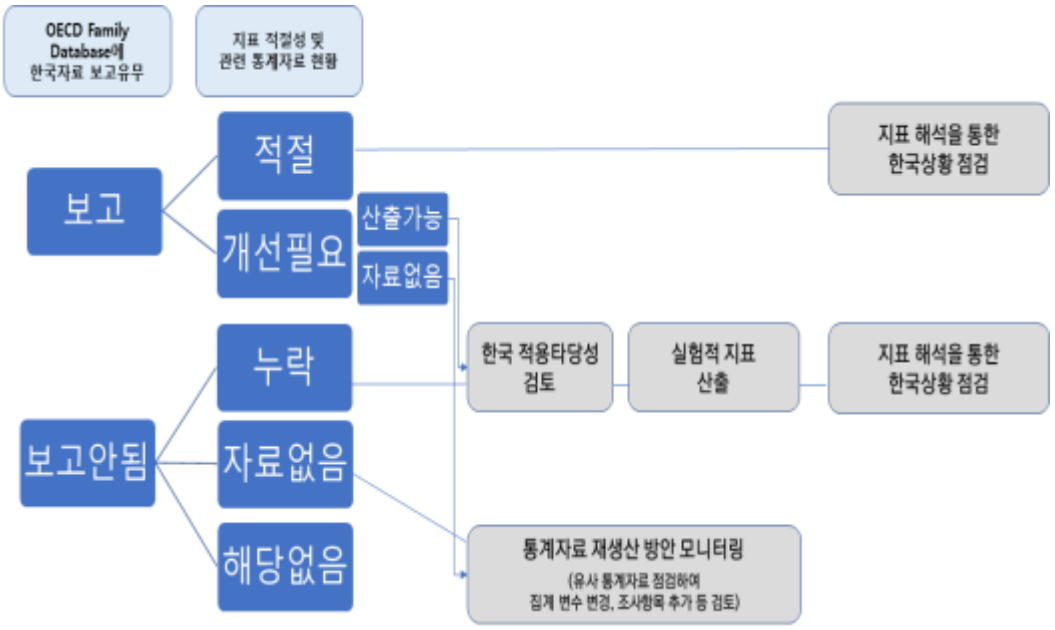
본 연구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① 보완이 필요한 한국 지표를 재생산하고 ② 보완된 자료를 포함한 지표 해석을 통해 한국 가족·아동의 현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나아가 국책연구기관과 관련 정부부처의 협의구조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생산과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차연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과업을 수행한다. 우선 '적절' 지표의 경우, 지표 해석을 통한 한국상황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개선필요' 지표의 경우, 현재 상태로 개선된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누락' 지표와 동일한 과정으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없음' 지표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한다.

'누락' 지표의 경우, 1차연도 연구에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지표들이 발견되었으므로, 한국에의 적용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그 중 적용이 타당하다고 확인된 지표들은 실제 통계분석을 통해 실험적으로 지표를 산출한다. 지표의 산출 후에는 해당 지표 해석을 통해 한국상황을 점검하고, 역으로 산출된 지표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없음' 지표의

경우, 제안된 집계변수 변경이나 조사항목 추가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주요 통계 자료별로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한다.

[그림 1-4] 1차연도 연구 지표 검토 기준 분류 별 2차연도 과업



마지막으로 국책연구기관과 관련 정부부처의 협의구조를 운영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자료 생산과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한다. 해당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협의체계를 운영하였다.

제2절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의 구조와 재검토 과정

1. 1차연도 지표 검토 개요

본절에서는 1차연도 연구에서 검토된 주요 지표들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 해석하는 '적절' 지표의 비중과 내용구성, 본 연구에서 산출할 '누락' 지표 및 '개선필요' 지표의 비중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절'히 보고되고 있는 지표는 전체 259개 지표 중 약 절반 수준(45.8%)으로, 전체 지표의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누락' 지표는 약 25.3% 수준으로, 두 지표를 함께 해석할 경우 전체 지표의 약 70%를 해석할 수 있다. 단 일부 항목은 체계적으로 누락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지표의 경우 전체 지표 중 40.4%가 '적절' 지표이며, '개선필요' 지표와 '누락' 지표가 약 45.2%로, 상당수의 지표가 본 연구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상자녀 수' 관련 지표, '동거' 관련 지표들은 자료가 없어 본 연구에서 활용되지 못한다.

둘째,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지표의 경우 전체 지표 중 38.9%가 '적절' 지표이며, '개선필요' 지표와 '누락' 지표가 약 53.7%로, 역시 상당수의 지표가 본 연구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모의 고용률과 관련된 일부 지표들은 자료가 없어 본 연구에서 활용되지 못한다.

셋째, '가족·아동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지표는 정책총괄지표 및 자녀관련 휴가 지표와, 아동돌봄 관련 지표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자의 경우는 '적절' 지표가 약 55.3%, '개선필요' 지표와 '누락' 지표가 약 39.5%로, 역시 상당수의 지표가 본 연구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간 연대' 및 휴가 사용 일수 관련 일부 지표만 '자료없음'으로 검토되어다.

후자의 아동돌봄 관련 지표의 '적절' 지표가 약 26.1%, '개선필요' 지표와 '누락' 지표가 약 34.8%로, 상대적으로 '자료없음' 지표의 비중이 높다. 특히 '비공식돌봄' 과 '초등방과후 돌봄'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자료가 생산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영역에 대한 한국 지표의 해석은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지표의 경우 전체 지표 중 53.4%가 '적절' 지표

이며, '개선필요' 지표와 '누락' 지표가 약 17.1%로, 현재 상태에서도 상당한 지표 해석이 가능하다. 단 '자료없음'의 비율이 다른 지표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족풍요도 및 물질적 결핍과 관련된 조사 및 특수한 교육성취도 관련 조사의 부재, 장애와 교육/빈곤을 교차하는 지표 및 이주배경 관련 지표의 부재에 기인한다. 이 영역의 지표들의 경우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지표들도 상당히 존재하여, 지표검토과정에서 한국 적용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2. 지표 재검토 과정의 주요 변경 내용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아동성과(Child Outcome) 영역은 2023년 말 OECD Child Well-Being Dashboard(CWD)와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CWBDP)로 개편되었다. CWBDP는 아동 웰빙에 관한 비교 데이터를 제공하는 OECD의 허브로 OECD 데이터베이스와 다양한 주요 국제 아동 조사 및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다.[2] CWBDP는 Child well-being outcomes(아동 웰빙 산물), Child well-being drivers(아동 웰빙 동인), Child well-being policies(아동 웰빙 정책) 항목에 대해 200개 이상의 비교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3] CWD는 정책 입안자와 일반인들이 아동 웰빙 증진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되었다.[4] OECD 아동 CWBDP으로부터 대표 지표를 사용하여 구축된 CWD는 아동 웰빙 결과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20개의 주요 지표와 아동 웰빙의 중요한 동인 및 아동 관련 공공 정책에 대한 다양한 추가 상황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5]

이러한 개편과정에서, OECD가 아동성과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OECD 아동웰빙 DB로 신규 구축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성과 영역에서 다루었던 지표 중 많은 지표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완성도있게 작성된 '적절' 지표에 대해서는 한국 상황을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지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새로 지표를 구축해야 하는 '누락' 지표의 경우에는 향후의 지표생산 필요성을 고려하여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재생산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생산하도록 하였다. 업데이트되지 않는 항목들의 경우 '지표생산 불필요' 범주로 변경하였다.

둘째,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일부 지표는

2)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n.d.).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child-well-being-data-portal.html(검색일: 2024.7.16.).
3)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n.d.).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child-well-being-data-portal.html(검색일: 2024.7.16.).
4) OECD Child Well-being dashboard. (n.d.). https://www.oecd.org/en/data/dashboards/oecd-child-well-being-dashboard.html(검색일: 2024.7.16.).
5) OECD Child Well-being dashboard. (n.d.). https://www.oecd.org/en/data/dashboards/oecd-child-well-being-dashboard.html(검색일: 2024.7.16.).

업데이트되고 일부 지표는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1차연도 연구에서 '개선필요'나 '누락'으로 검토된 지표들 중 업데이트된 자료들은 '적절' 지표로 변경되었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데이터 체계에서 삭제된 지표들의 경우 '지표생산 불필요' 범주로 변경하고 지표 생산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OECD는 전체적으로 통계자료 홈페이지를 재구조화하고 있는데,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대해서도 Data Explorer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주요 지표에 대해 시계열적인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OECD Data Explorer-Archive, https://data-explorer.oecd.org/vis?tenant=archive&df[ds]=DisseminateArchiveDMZ&df[id]=DF_FAMILY&df[ag]=OECD&dq=..&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검색일 2024.07.16.). 현재 시점에서 아카이브에 포함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지표 영역당 10개 미만의 지표만을 선정하여 시계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해당 지표들은 대표 지표로서, 국가별 지표생산이 보편화되어 있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지표들이다. 본 연구는 마지막 장에서 핵심지표체계를 관리할 필요성과 관리방법을 제안하는데, 이때 아래의 지표들이 핵심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표 1-2〉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Data Explorer 아카이브 지표 현황

지표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SF1.2	가족에서의 아동(Children in Families)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8)
SF2.1	출산율(Fertility rates)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women at birth, 197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청소년 출산율 (Adolescent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SF3.1	혼인율과 이혼율(Marriage and divorce rates)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LMF1.2	모성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지표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고용률의 성별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가족급여 유형별 공적 지출 총계(total)
		현금급여(cash)
		현물급여(services)
		조세지출(tax breaks for families)
PF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가구 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for couples at different household earnings levels, 2014)
PF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
PF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3~5세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CO1.1	영아사망(Infant mortality)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2018 or latest available)
CO2.2	아동빈곤(Child poverty)	아동의 상대빈곤율(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CO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CO3.5	청년니트(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청년 니트 비율(NEET rates for 15-29 year-olds)
		연령대별 니트 비율(NEET rates across age groups)

출처: OECD Data Explorer-Archive, https://data-explorer.oecd.org/vis?tenant=archive&df[ds]=DisseminateArchiveDMZ&df[id]=DF_FAMILY&df[ag]=OECD&dq=..&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검색일 2024.07.16.).

마지막으로, 지표에 대한 추가분석 과정에서 지표 검토결과가 변경된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개선필요' 또는 '누락' 지표 중에서 통계청 등 통계생산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외부 연구자의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 실제로 지표 산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지표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 등은 '자료없음'으로 변경하고 검토내용을 적시하였다. 반대로 '적절'로 검토되어 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어 '개선필요'로 수정된 지표들도 존재하였다. 또한 지출통계(SOCX) 관련 지표와 같이 OECD가 내부적으로 자체생산하는 지표들의 경우 자체생산되는 논리에 별도 개선과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적절'로 재분류된 지표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1차연도 검토결과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 지표를 보완하거나 재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수준에서 한국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통계수치를 확보하고, 각 지표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한국의 가족·아동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영역별 지표보완 내용 및 해석 사항은 다음 장에 상세히 서술된다. 각 지표에 대한 설명 시에 '적절' 지표는 대부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상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한국 지표를 추가하거나 수정한 '개선필요', '누락' 지표들의 경우에는 그래프상에 추가된 한국 수치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02

가족구조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제1절 가족구조 지표의 구성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지표는 가족과 아동, 출산력 지표, 혼인 및 파트너십 상태 등 크게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2023년 진단 결과(김은지 외, 2023)를 기반으로, '개선 필요'와 '누락'에 해당하는 세부 지표를 산출하고, 산출된 지표와 '적절' 지표를 대상으로 한국 상황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김은지 외(2023)의 1차연도 지표분석에 따르면, 가족구조 지표에서 적절하게 보고된 것으로 평가된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 '아동 인구 추이', '유소년 부양비',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 '합계출산율',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 '청소년 출산율',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 '혼인 외 출생 비율',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 '조혼인율',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 '조이혼률',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 등이 있다.

또한 '개선 필요'와 '누락'에 해당되는 지표는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 '가구 유형'과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 '아동의 거주 형태',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 '유소년의 거주 형태', '과밀거주 아동',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 '코호트완결출산율', '최종적인 가족 규모', '파트너에 의한 폭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차연도에 지표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한 결과, 일부 지표는 외부에 전체 변수가 공개되지 않거나 조사구조상 국제비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기존과 검토결과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지표들을 정리하면, 우선 '누락' 혹은 '개선필요'로 분류되었었으나, 세부 검토를 실시한 결과 '자료없음'으로 재분류된 지표는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 '상대소득 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 '40-44세 무자녀 여성', '최종 무자녀', '최종 무자녀와 완결 출산율', '파트너십과 동거',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 '부부(커플) 가구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유무' 등 아홉 가지가 발견되었다.

또한 2023년도에는 '누락'으로 분류되었으나, '적절' 지표로 재판정 된 경우는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첫째아,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 비율' 및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출생순위별 출생 비율',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로 세 가지가 있었고,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지표생산 불필요' 지표로 조정된 경우가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 '환경 문제 있는 지역 거주 아동'이었다.

〈표 2-1〉 가족구조(SF, structure of familie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2015)	O	개선 필요	
		가구 유형(Types of household, 2011)	O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2015)	X	누락	
SF1.2	가족에서의 아동 (Children in Families)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8)	X	누락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05 to 2018)	X	누락	지표 생산 불필요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2007 and 2018)	X	누락	자료 없음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X	누락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X	누락	자료 없음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X	누락	자료 없음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2013-14)	X	누락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2015)	O	적절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5)	O	적절	
		아동 인구 추이(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selected OECD countries)	O	적절	
		유소년 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1990 and 2015)	O	적절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Estimated(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selected OECD countries)	O	적절	
SF1.5	아동의 주거 여건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과밀거주 아동(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2017)	X	누락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2017)	X		
		환경 문제 있는 지역 거주 아동(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2017)	X	누락	지표 생산 불필요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SF2.1	출산율 (Fertility rates)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O	적절	
		코호트완결출산율(Completed cohort fertility for women born in 1950, 1960 and 1970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첫째아,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 비율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80 and 2020 –Proportion of births that are first and third or higher births)	X	누락	적절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출생순위별 출생 비율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2020 –Proportion of birth by the rank of the birth)	X	누락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X	자료 없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Ideal general number of children, 2011)	X		
		최종적인 가족 규모(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11)	X	누락	
		교육정도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level of education, 2011)	X	자료 없음	
		취업여부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working status, 2011)	X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사이 격차 (Differences between general and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X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women at birth, 197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2000년, 2020년 자료 없음: 1970년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women at first birth,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 (Average OECD fertility rate by mother's age at childbirth)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청소년 출산율 (Adolescent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 없음: 1970년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 (Age-fertility profiles, 1970, 1995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 없음: 1970년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혼인 외 출생 비율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	적절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ver tim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 없음: 1970년	
SF2.5	무자녀 (Childlessness)	40-44세 무자녀 여성 (Childless women at age 40-44, mid-1990s and 2010(or latest available year))	O	개선 필요	자료 없음
		최종 무자녀 (Definitive childlessness)	X	누락	자료 없음
		최종 무자녀와 완결 출산율 (Definitive childlessness and completed fertility rates)	X	누락	자료 없음
SF3.1	혼인율과 이혼율 (Marriage and divorce rates)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199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동성혼에 대한 기초 현황(Basic statistics on same-sex marriages in OECD countries)	X	해당 없음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SF3.2	가족 해체와 아동 (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2017 or latest)	O	적절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2017 or latest)	O	적절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various years)	O	적절	
SF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X	누락: 기혼, 자료 없음: 동거, 파트너 없음	자료 없음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2011)	X		
		부부(커플) 가구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유무 (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2011)	X		
SF3.4	가정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X	누락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O	적절	

지표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과 최종 산출된 지표를 활용한 한국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 서술된다.

제2절 한국의 가족구조 지표

1. 가족과 아동

가.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

1) Chart SF1.1.A.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개선필요)

이 지표는 가족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서 동거하는 가구 구성원의 규모가 어떠한지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아동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상황일 때의 가구 규모와 아동이 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상황일 때의 가구 규모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표가 구성되었다.

한국의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는 보고되고 있으나, 자녀 연령 기준이 OECD가 정의하고 있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다른 국가들과 달리 보고 시점이 다소 오래된 문제가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23: 23). 이러한 문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최신 자료를 활용하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2020) 원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인 MDIS(Micro Data Integrated Service)[6]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구분, 세대구성, 가구원수 등 가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구' 자료와 성, 연령, 국적 등 가구원 개인의 정보를 포함하는 '인구' 자료로 구분된다. 본 지표는 가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므로 가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세대구성코드'와 '가구원수' 변수를 활용하였다. 세대구성코드에서 자녀가 있는 양부모 및 한부모 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신윤정 외, 2021: 17)에서 추출한 방식과 일치하여 시계열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다시 말해, 2세대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평균 가구원수를 양부모 가구(Couple households with children)의 규모로 정의하였고, 2세대 가구 중 '부+미혼자녀'와 '모+미혼자녀'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평균 가구원수를 한부모 가구(Single parent households with children)의 규모로 정의하였다.[7] OECD에서는

6) https://mdis.kostat.go.kr/index.do (검색일: 2024.06.23.)
7) 이는 양부모 및 한부모를 다소 엄격하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가령, 현재는 양부모 가구(Couple households

자녀의 연령을 25세 이하로 제한하여 정의하고 있는 반면, 한국 자료의 경우 '미혼'인 자녀라면 모두 자녀 범주에 포함되고 있어 25세 이상의 자녀도 일부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향후에 '인구' 자료와 '가구' 자료의 정보가 통합된 자료 구축이 된다면 OECD 기준에 부합하게 한국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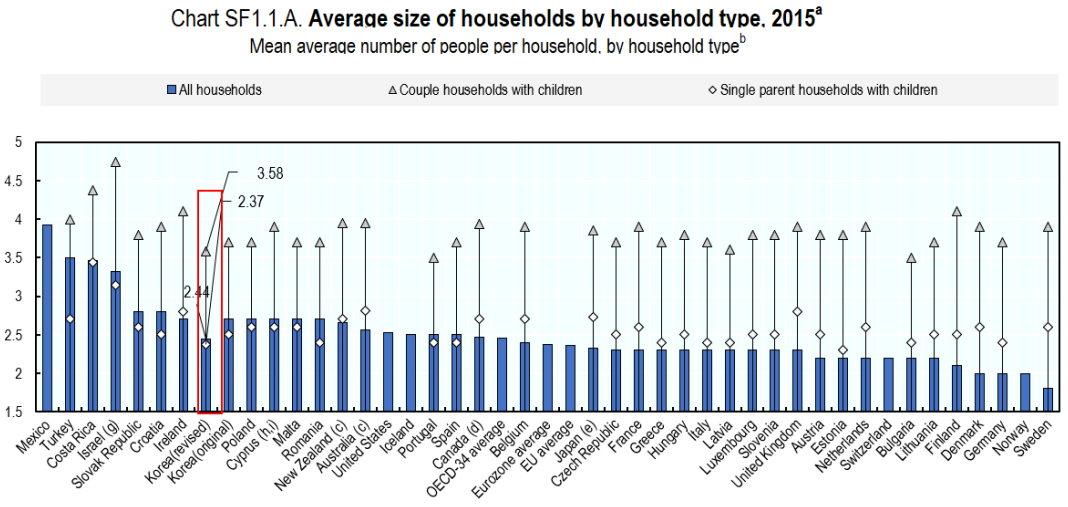
산출결과 한국의 모든 가구의 평균적인 가구 규모는 2.4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부모 가구의 가구 규모는 3.58명이고, 한부모 가구의 가구 규모는 2.37명으로 확인되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평균 가구원 수는 2.46명으로 한국에 비해 약 0.02명이 많다.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멕시코(3.93명)와 가장 적은 스웨덴(1.80명)의 격차는 약 2.13명으로 상당한 편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구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이스라엘(4.75명)이고, 양부모 가구의 규모가 가장 적은 국가는 포르투갈(3.50명)과 불가리아(3.5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자가구나 모자가구와 같이 한부모 가구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코스타리카(3.44명), 가장 적은 국가는 에스토니아(2.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가구 평균 가구원 수는 2.44명으로 OECD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는 편이었고, 자녀가 있는 양부모 및 한부모의 가구원 수는 대체로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

with children)의 범주에 '부부+미혼자녀'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포괄하였으나, 넓게 본다면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례도 포함시켜서 집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부미혼형제자매가 포함된 사례들은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8)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 자료에서도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와 '모+미혼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세대구성코드' 변수를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세대 구분(1세대, 2세대, 3세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녀의 혼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변수가 부재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가 임의적인 분류를 시도하는 것은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약이 자녀 연령을 25세 이하로 제한하지 못하는 한계보다 더욱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그림 2-1] Chart SF1.1.A.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



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큰 국가 순으로 정렬함
출처: OECD(2023). Chart SF1.1.A. 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인구주택총조사(2020) 가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요컨대,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 지표는 가족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서, 한국의 경우 지표값의 개선이 필요하여 인구주택총조사(2020) '가구'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세대구성 분류에서 2세대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평균 가구원수를 양부모 가구의 규모로 정의하였고, 2세대 가구 중 '부+미혼자녀'와 '모+미혼자녀'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평균 가구원수를 한부모 가구의 규모로 정의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이하로 정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이후 통계청의 공식 집계, 공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집계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가구 평균 가구원 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 가구원수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양부모 및 한부모의 가구원 수는 OECD 평균보다 낮아 가구 규모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수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로 제한하지 않은 결과로, 자녀연령을 제한할 경우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가구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 Table SF1.1.A. 가구 유형(Types of household) (개선필요)

이 지표는 가구 유형별 분포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서 전체 가구 중 부부(양부모)와 한부모, 1인 가구 및 기타 가구의 비중을 보여준다. 특히 부부 가구 중에서도 자녀의 유무에 따른 비중을 각기 나타내고, 한부모 가구 중에서 모자가구와 부자가구를 구분하여 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앞에 나온 지표인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Chart SF1.1.A.)의 한계를 보완한다.

한국의 가구 유형 지표는 현재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자녀 연령 기준이 OECD가 정의하고 있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다른 국가들과 달리 보고 시점이 다소 오래된 문제가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23:23).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최신 자료를 활용하면 일부 개선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2022) 원자료[9]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통계청은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자가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DIS 서비스와 주요한 지표들을 생산하여 집계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해당 지표의 경우 통계청에 집계된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였다. 인구총조사 가구부문에서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일반가구)-시군구' 자료를 보면 일반가구를 1~4세대로 구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도 집계하고 있다. Table SF1.1.A.(가구 유형) 지표는 부부 가구(자녀 있음, 자녀 없음), 한부모 가구(모자가구, 부자가구), 1인 가구, 기타 가구 등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 유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이 있겠으나, 선행연구(신윤정 외, 2021:18)의 방식을 차용하여 항목을 재분류 하였다. 즉, 2세대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 집단을 부부 가구(Couple households) 중 '자녀 있음'인 가구로 분류하였고, 1세대 가구 중 '부부' 집단을 부부 가구 중 '자녀 없음'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2세대 가구 중 '모+미혼자녀'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모자가구(Single mother households)로 보았고, '부+미혼자녀'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부자가구(Single father households)로 설정하였다.[10]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OECD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이하로 제한하여 정의하고 있는 반면, 한국 자료의 경우 '미혼'인 자녀라면 모두 자녀 범주에 포함되고 있어 25세 이상의 자녀도 일부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원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9)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1&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1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 2024.6.13.)

1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양부모 및 한부모를 다소 보수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양부모 가구(Couple households with children)의 범주에 '부부+미혼자녀'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포괄하였으나, 넓게 본다면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례도 포함시켜서 집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부미혼형제자매가 포함된 사례들은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 한국의 기타가구(25.06%) 비중이 OECD 평균(10.28%)보다 많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Table SF1.1.A. 가구 유형

Table SF1.1.A. **Types of household, 2011**[a]

Distribution (%)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b]

	Couple households:			Single parent households:			Single person households	Other household types
	Total	With children	Without children	Total	Single mother households	Single father households		
Australia (c)	56.95	31.03	25.92	10.45	..	..	23.90	8.70
Austria	50.11	23.14	26.98	6.62	5.71	0.91	36.29	6.98
Belgium	53.19	24.80	28.39	7.72	6.33	1.39	34.06	5.03
Canada (d)	56.01	26.46	29.54	10.33	..	..	27.58	6.09
Chile	..	..	..	..	..	..	..	..
Czech Republic	47.92	22.19	25.73	8.32	6.81	1.51	32.53	11.23
Denmark	50.13	22.22	27.91	6.23	5.19	1.04	37.48	6.16
Estonia	43.68	21.02	22.66	8.55	7.79	0.76	39.94	7.83
Finland	49.43	20.50	28.93	5.54	0.00	5.54	41.01	4.03
France	54.12	25.63	28.49	7.28	6.10	1.18	33.79	4.81
Germany	51.71	20.57	31.15	5.49	4.72	0.77	37.27	5.52
Greece	58.46	27.87	30.59	4.23	3.55	0.68	25.68	11.63
Hungary	50.78	24.52	26.26	8.26	7.22	1.04	32.08	8.88
Iceland	48.36	29.61	18.75	9.03	7.98	1.06	31.13	4.61
Ireland	57.18	32.70	24.47	8.82	7.81	1.01	23.68	10.32
Israel (e,k)	66.60	44.90	21.70	5.70	..	..	27.80	
Italy	54.92	27.09	27.83	5.39	4.47	0.92	31.08	8.61
Japan (f)	46.77	16.62	30.15	2.63	2.36	0.27	34.45	16.16
Korea (original)	52.40	36.99	15.41	9.20	7.19	2.01	23.90	14.50
Korea (revised)	37.75	22.96	14.79	7.83	5.88	1.95	29.36	25.06
Latvia	39.38	19.89	19.49	11.50	9.97	1.53	34.42	14.71
Luxembourg	49.98	27.11	22.86	5.87	4.99	0.88	33.34	10.82
Mexico (h)	58.58	49.96	8.61	10.26	..	..	7.56	23.60
Netherlands	56.36	25.73	30.63	5.55	4.65	0.90	36.38	1.71
New Zealand (c)	57.05	28.93	28.13	11.23	..	..	23.54	8.18
Norway	48.50	25.35	23.15	7.25	5.63	1.61	39.58	4.68
Poland	52.58	28.90	23.69	7.73	6.74	0.99	24.04	15.65
Portugal	63.56	31.29	32.28	6.10	5.35	0.75	21.44	8.90
Slovak Republic	41.47	23.17	18.31	6.48	5.48	1.01	25.33	26.71
Slovenia	45.37	23.16	22.21	7.95	6.72	1.23	32.76	13.93
Spain	60.27	30.38	29.89	5.92	4.56	1.36	23.19	10.62
Sweden	52.14	24.27	27.87	6.62	5.07	1.56	36.22	5.02
Switzerland	55.58	24.97	30.61	4.40	3.76	0.64	36.98	3.04
Turkey	..	..	..	..	..	..	..	..
United Kingdom	50.76	22.39	28.38	8.54	7.54	1.00	30.58	10.12
United States (i)	48.42	20.21	28.21	9.56	7.17	2.39	26.74	15.29
OECD-32 average (j)	51.51	..	..	7.48	..	..	30.52	10.28
Costa Rica	52.44	38.15	14.29	10.55	9.49	1.06	11.27	25.74
Bulgaria	52.25	23.67	28.59	4.69	3.71	0.99	30.79	12.27
Croatia	56.30	29.80	26.50	4.94	4.12	0.82	24.56	14.19
Cyprus (l,ml)	65.36	34.61	30.75	4.78	4.29	0.49	20.76	9.10
Lithuania	49.47	26.04	23.43	9.64	8.30	1.34	31.67	9.21
Malta	61.98	33.33	28.65	6.16	5.28	0.88	22.64	9.21
Romania	54.51	27.02	27.49	5.67	4.27	1.40	25.98	13.84
EU average	52.62	25.82	26.80	6.81	5.60	1.21	30.68	9.89
Eurozone average	52.95	26.21	26.74	6.82	5.58	1.24	30.77	9.46

출처: OECD(2023). Table SF1.1.A. Types of household에 한국 자료룰 추가함
※ 한국은 인구주택총조사(2022) 가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요약하면, 가구 유형 지표는 가구 구성의 비중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서, 한국의 경우 지표값의 개선이 필요하여 인구주택총조사(2022)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2세대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 집단을 부부 가구 중 '자녀 있음'인 가구로 분류하였고, 1세대 가구 중 '부부' 집단을 부부 가구 중 '자녀 없음'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2세대 가구 중 '모+미혼자녀'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모자가구로 보았고, '부+미혼자녀'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부자가구로 설정하였다.

OECD 평균 부부 가구의 비중은 약 51.51%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가구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스라엘은 2/3가 넘는 가구가 부부 가구(66.60%)로 나타나 부부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확인된 반면, 한국은 부부 가구 비중이 37.75%로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 7.48%로 나타나 한국(7.83%)의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인 가구의 경우, OECD는 평균 30.52%의 가구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29.36%)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3) Table SF1.1.B.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누락)

이 지표는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자녀 유무 및 자녀의 수(1명, 2명, 3명 이상)에 따른 비중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 지표는 현재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여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 23).

한국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2022) 원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 시군구'[11] 자료와 '영유아수별 가구 및 연령별 영유아 - 시도'[12]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가구수 대비 각 가구의 비중이 어떠한지 산출하였다. 앞의 두 지표(Chart SF1.1.A., Table SF1.1.A.)에서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였었는데,[13] 이 지표에서는 구체적으로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로 한정하고 있어서, OECD의 자녀 연령 기준에는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산출결과 한국의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78.46%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1명인 가구의 비중은

11)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C1601&conn_path=I2 (검색일: 2024.6.13.)
12)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C1601&conn_path=I2 (검색일: 2024.6.13.)
13) OECD 기준에 의하면 자녀는 25세 이하인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미혼인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혼인을 하지 않은 성인 자녀까지 포함되어, 앞의 두 지표에서는 아동의 규모가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하였었다. 하지만 이 지표(Table SF1.1.B.)에서는 한국 자료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아동을 정의하고 있어, OECD 기준에 근접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과소 추정의 우려는 남아 있다.

9.14%, 두 자녀 가구는 10.31%,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비중은 2.09%로 확인되었다. 또한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6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가구는 67.94%로 약 2/3의 가구가 무자녀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OECD 평균보다 약 10%p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무자녀 가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전체 가구 중 30.29%만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 자녀가 1명인 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 약 14.53%로 나타났고, 한국은 9.14%에 불과하여 저출생 현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 값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연합 기준으로 보면, 11.87%로 나타났다. 한국은 6.65% 가구만이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출생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Table SF1.1.B.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

Table SF1.1.B. **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2015**[a]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b], and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at least one child under age six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Proportion (%) of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6
	0 children	1 child	2 children	3 or more children	
Australia	..	..	..	..	..
Austria	74.07	12.81	9.72	3.39	9.98
Belgium	67.43	13.85	12.72	6.01	12.78
Canada	..	..	..	..	..
Chile	..	..	..	..	..
Czech Republic	68.37	14.75	14.10	2.78	13.20
Denmark	70.55	12.43	12.32	4.69	11.39
Estonia	68.77	16.18	10.99	4.06	13.66
Finland	77.61	9.34	8.74	4.32	9.56
France	68.36	13.36	12.65	5.63	12.66
Germany	78.17	11.32	8.04	2.47	8.23
Greece	73.42	12.69	11.06	2.82	8.06
Hungary	70.78	14.74	10.23	4.25	10.66
Iceland	..	..	..	..	..
Ireland	58.47	14.78	15.61	11.14	18.66
Israel	..	..	..	..	..
Italy	69.94	15.45	12.17	2.43	10.26
Japan (c)	76.96	10.90	9.49	2.66	8.66
Korea	78.46	9.14	10.31	2.09	6.65
Latvia	68.50	18.07	10.69	2.74	12.97
Luxembourg	66.13	14.54	14.75	4.58	11.79
Mexico (d)	41.32	23.75	20.53	14.38	..
Netherlands	71.23	11.24	12.74	4.78	10.50
New Zealand (e)	66.99	13.32	12.81	6.88	..
Norway (f)	71.64	12.68	11.08	4.60	..
Poland	61.61	18.47	15.16	4.76	15.02
Portugal	63.80	21.39	12.66	2.15	11.59
Slovak Republic	62.81	17.27	15.23	4.69	13.68
Slovenia	69.80	14.05	12.81	3.34	11.57
Spain	66.02	17.64	13.53	2.81	12.43
Sweden	78.37	8.47	9.89	3.27	9.36
Switzerland	..	..	..	..	..
Turkey	45.69	20.79	19.73	13.79	25.38
United Kingdom	68.45	13.77	12.62	5.15	14.95
United States (f)	66.61	14.15	12.00	7.24	..
OECD-32 average	67.94	14.53	12.57	4.96	..
Costa Rica	30.29	23.08	24.61	22.02	26.30
Bulgaria	74.72	14.85	9.05	1.38	8.09
Croatia	64.93	15.32	14.43	5.33	11.67
Cyprus (g,h)	61.10	16.48	15.90	6.48	14.38
Lithuania	69.97	16.57	10.48	2.99	11.10
Malta	63.05	18.04	14.54	4.30	13.42
Romania	65.12	18.56	12.63	3.69	10.71
EU average	68.63	14.87	12.34	4.16	11.87
Eurozone average	68.35	15.00	12.37	4.27	11.96

출처: OECD(2023). Table SF1.1.B. 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인구주택총조사(2022) 가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요컨대,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 지표는 자녀 유무 및 자녀의 수에 따른 비중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로,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 지표는 현재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인구총조사 가구부문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 시군구' 자료와 '영유아수별 가구 및 연령별 영유아 - 시도'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가구수 대비 각 가구의 비중이 어떠한지 산출하였다. 확인 결과 한국의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78.46%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1명인 가구의 비중은 9.14%, 두 자녀 가구는 10.31%,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비중은 2.09%로 확인되었다. 또한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6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가구는 67.94%로 약 2/3의 가구가 무자녀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OECD 평균보다 약 10%p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 자녀가 1명인 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 약 14.53%로 나타났고, 한국은 9.14%에 불과하여 저출생 현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SF1.2 가족에서의 아동(Children in Families)

1) Chart SF1.2.A.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누락)

이 지표는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 혼인 상태에 따른 가구 유형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두 명의 부모(결혼 혹은 동거)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와 한부모와 거주하는 가구 및 기타 가구로 구분된다.

한국 아동의 거주 형태 지표는 현재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여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 24).

한국의 경우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22) 원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통계청은 매년 다양한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작성한 모집단 자료인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공표하고 있다. 현재 구축된 자료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계열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유형 등 총 77개 항목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해당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 변수와 '부모 양육유형코드' 변수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연령 변수는 만 0세에서 17세로 구성되고, 부모 양육유형은 '양부모 양육', '한부모 부양육', '한부모 모양육', '부모 미양육' 등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two parents)'은 '양부모 양육'의 비중을 통해 산출하였고,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a single parent)'은 '한부모 부양육'과 '한부모 모양육'의 빈도를 합쳤을 때의 비중을 통해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Other)'는 '부모 미양육'의 비중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산출 기준은 통계청에서 제공한 설명자료인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2-4〉 부모 양육유형 세부 분류

코 드	설 명
(1) 양부모 양육	ㅇ 아동이 부모 모두와 같이 사는 경우 ㅇ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동거하더라도 부부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포함
(2) 한부모 부양육	ㅇ 부가 양육하고 모는 이혼, 사망, 주민등록 말소, 미상인 경우
(3) 한부모 모양육	ㅇ 모가 양육하고 부는 이혼, 사망, 주민등록 말소, 미상인 경우
(4) 부모 미양육	ㅇ 아동이 부모 외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ㅇ 아동이 남남과 동거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 ㅇ 아동이 특별조사구에 사는 경우 등

출처: 통계청(2024a).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이용자 설명자료

산출결과 한국의 전체 아동(만 0~17세) 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의 비중은 88.1%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는 8.4%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비중은 3.6%로 집계되었다. OECD에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을 혼인 및 동거로 구분하여 집계를 하고 있으나, 현재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는 동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인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 82.1%로 대부분의 아동이 양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 93.3%의 아동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 스위스(92.8%), 그리스(92.1%), 폴란드(90.1%), 크로아티아(90.1%) 등의 국가들도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69.1%), 라트비아(70.5%), 리투아니아(72.0%)는 OECD 국가들 중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비중이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반대로, 한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은 라트비아(27.8%), 리투아니아(26.9%), 미국(26.6%)이 높은 편이었고, 튀르키예(5.8%), 스위스(7.1%), 그리스(7.4%)가 가장 낮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한부모와 사는 비중이 8.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였다.

〈표 2-5〉 Chart SF1.2.A. 아동의 거주 형태

Chart SF1.2.A.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8**[a]

Distribution (%) of children (aged 0-17[b]) by presence and marital status of parents in the household[c]

	Living with two parents	Two married parents	Two cohabiting parents	Living with a single parent	Other
Turkey	93.3	92.1	1.2	5.8	0.8
Switzerland	92.8	85.1	7.7	7.1	0.1
Greece	92.1	91.6	0.5	7.4	0.5
Poland	90.1	62.7	27.4	9.0	0.9
Croatia	90.1	88.1	2.0	9.5	0.4
Korea	88.1	..	..	8.4	3.6
Austria	87.9	73.8	14.1	11.4	0.7
Japan (b,f)	87.6	..	..	12.2	0.6
Netherlands	87.4	69.1	18.3	12.4	0.2
Slovenia	87.2	59.4	27.8	12.2	0.6
Cyprus (g,h)	86.3	81.3	5.0	13.6	0.1
Czech Republic	85.9	66.5	19.4	13.6	0.4
Romania	85.9	79.0	6.9	11.0	3.0
Italy	85.1	77.3	7.8	14.7	0.1
Finland	85.0	67.9	17.1	14.5	0.5
Luxembourg	85.0	76.6	8.4	14.1	1.0
Slovak Republic	85.0	77.5	7.5	13.9	1.2
Estonia	84.7	52.2	32.5	14.6	0.8
Germany	83.9	75.1	8.8	14.9	1.2
Spain	82.8	73.8	9.0	15.6	1.5
Bulgaria	82.6	57.1	25.5	15.2	2.1
EU average	82.4	..	..	16.7	1.0
OECD average	82.1	..	..	16.9	1.1
Iceland	81.8	55.2	26.6	17.9	0.4
Australia (d)	81.3	..	..	18.0	0.6
Canada (e)	79.5	..	..	19.2	1.9
Norway	78.9	56.2	22.7	19.4	1.7
Portugal	78.6	63.2	15.4	20.0	1.4
Mexico (b,f)	78.4	..	..	18.1	3.6
Denmark	78.2	62.3	15.9	20.6	1.2
Ireland	78.1	69.0	9.1	21.2	0.7
Sweden	78.0	52.8	25.2	20.7	1.3
Malta	77.9	74.2	3.7	21.8	0.3
Hungary	77.8	60.0	17.8	20.8	1.4
United Kingdom	77.7	62.6	15.1	21.6	0.7
France	77.1	50.9	26.2	22.5	0.5
Belgium	73.6	53.5	20.1	24.9	1.5
Lithuania	72.0	65.2	6.8	26.9	1.0
Latvia	70.5	54.6	15.9	27.8	1.6
United States	69.1	65.0	4.1	26.6	4.3

출처: OECD(2023). Chart SF1.2.A.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8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22) 가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정리하면, 한국 아동의 거주 형태 지표는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 혼인 상태에 따른 가구 유형을 보여주는 지표로, 두 명의 부모(결혼 혹은 동거)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와 한부모와 거주하는 가구 및 기타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 아동의 거주 형태 지표는 현재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자료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항목들 중 '아동의 연령' 변수와 '부모 양육유형코드' 변수를 활용하였다.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two parents)'은 '양부모 양육'의 비중을 통해 산출하였고,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a single parent)'은 '한부모 부양육'과 '한부모 모양육'의 빈도를 합쳤을 때의 비중을 통해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Other)'는 '부모 미양육'의 비중으로 판단하였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 82.1%으로 대부분의 아동이 아버지, 어머니와 모두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 93.3%의 아동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 한국의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의 비중은 88.1%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는 8.4%(OECD 평균 16.9%)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비중은 3.6%(OECD 평균 1.1%)로 집계되었다.

2) Chart SF1.2.B.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지표생산 불필요)

이 지표는 위의 Chart SF1.2.A.와 동일하게,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 혼인 상태에 따른 가구 유형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결혼 혹은 동거하는 두 명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한부모와 거주하는 가구로 구분된다. 특히 이 지표는 OECD 국가들 중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누락된 수치가 없는 총 16개 국가의 비가중 평균값으로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자료 누락이 없는 16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이며, Eurostat 데이터를 통해 산출되었다. 한국의 경우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최근 자료는 산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모든 시점의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OECD 국가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개 년도 시점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아동가구통계등록부가 2015년 시점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시점 불일치 이슈는 여전히 남는 한계가 있다. 해당 지표는 누락된 지표가 없는 국가만을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자료를 일부 생산하는 것의 의미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표생산 불필요'로 분류하였다.

3) Chart SF1.2.C.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자료없음)

이 지표는 위의 Chart SF1.2.A. 자료 중에 '동거하는 두 명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항목에 대해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이 지표는 OECD 국가들 중 기혼(married)과 동거(cohabiting)를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 2007년도의 동거 비율과 2018년의 수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동거에 대한 자료가 아직 생산되지 않고 있어, 해당 자료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추후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 동거, 사실혼 등 혼인 관련 세부적인 정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다. SF1.3 아동의 거주 형태(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1) Table SF1.3.A.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누락)

이 지표는 아동을 기준으로 동거하는 가구의 유형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SF1.2 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도 모자가구와 부자가구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자녀의 연령은 0-5세, 6-11세, 12-17세의 범주로 나뉜다.

한국 아동의 거주 형태 지표는 현재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여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 25).

한국의 경우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22) 원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해당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 변수와 '부모 양육유형코드' 변수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연령 변수는 만 0세에서 17세까지 1세 구간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OECD의 분류 기준에 부합하게 0~5세, 6~11세, 12~17세 구간으로 나누었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아동은 현재 7,200,10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동의 세부 연령별 규모 및 비중(%)은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two parents)' 항목은 '양부모 양육' 항목으로 산출하였다. OECD에서는 양부모 양육 중에서도 결혼한(married) 양부모와 동거하는(cohabiting) 양부모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통합된 형태로 산출하였다.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a single parent)' 항목은 모자가구와 부자가구로 나뉘는데 '한부모 모양육', '한부모 부양육' 항목을 통해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Other)'는 '부모 미양육'의 비중으로 판단하였다.

〈표 2-6〉 한국 아동(0~17세)의 연령별 분포

	아동의 수(명)	비중(%)
0세	255,584	3.5
1세	269,805	3.7
2세	284,728	4.0
3세	312,284	4.3
4세	336,900	4.7
5세	367,928	5.1
6세	417,217	5.8
7세	437,861	6.1
8세	433,308	6.0
9세	439,280	6.1
10세	477,489	6.6
11세	470,857	6.5
12세	453,507	6.3
13세	439,143	6.1
14세	464,037	6.4
15세	475,541	6.6
16세	435,176	6.0
17세	429,457	6.0
전체	7,200,102	100.0

출처: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22)에서 직접 추출

산출결과 0~5세 아동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의 비중은 93.15%로 나타났으며, 모자 가구는 2.59%, 부자 가구는 1.27%, 기타 가구는 2.99%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데, 6~11세 아동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의 비중은 89.37%, 12~17세를 기준으로 하면 83.29%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0~5세 아동을 기준으로 양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비중은 OECD 평균 87.88%(결혼 64.61%, 동거 23.27%)이고, 모자 가구는 10.61%, 부자 가구는 0.97%로 나타났다. 그리스의 경우 결혼한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96.18%로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모자 가구에 거주하는 0~5세 아동의 비중은 OECD 평균 10.61%로 약 10명 중에

한 명의 아동이 한부모 여성 가구주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편 한국의 모자 가구 비중은 2.59%로 OECD 평균에 비해 약 8.03%p 낮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부자 가구 비중은 1.27%로 OECD 평균(0.97%)에 비해 약 0.3%p 높다는 것이다. 한부모와 거주하는 아동의 비중 자체가 한국은 매우 낮지만, OECD 평균적으로 한부모 남성 가구주와 함께 사는 비중보다 한부모 여성 가구주와 함께 사는 비중이 10배 이상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은 약 2배 차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추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6~11세 아동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비중은 OECD 평균 81.48%(결혼 67.16%, 14.31%)이고, 모자 가구는 15.24%, 부자 가구는 2.44%로 나타났다. 한국의 모자가구 비중은 5.28%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12~17세 아동 기준 OECD 국가의 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의 비중은 75.49%(결혼 65.68%, 9.81%)로 나타나, 한국보다 약 8%p 낮았다. 한편, 모자가구의 아동 비중은 OECD 평균 19.26%로, 한국(7.86%)에 비해 약 11%p 높았다. 부자가구의 아동 비중은 OECD 평균 3.7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폴란드(0.99%)의 12~17세 아동은 100명 중 약 1명의 아동만 부자가구에 거주하였고, 스웨덴 12~17세 아동의 8.46%는 부자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Table SF1.3.A.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

Table SF1.3.A.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Distribution (%) of children (0- to 17-year-olds) by the presence of parents and marital status of parents in the household, by age group, 2016 or latest available

	0-5 year-olds					6-11 year-olds					12-17 year-olds				
	Living with two parents		Living with one parent		Other	Living with two parents		Living with one parent		Other	Living with two parents		Living with one parent		Other
	Married	Cohabiting	Mother	Father		Married	Cohabiting	Mother	Father		Married	Cohabiting	Mother	Father	
Austria	72.14	21.64	5.92	0.30	0.00	73.62	11.00	14.27	1.02	0.08	66.63	6.14	22.43	2.86	1.93
Belgium	52.72	33.32	11.25	1.83	0.88	55.13	20.35	19.19	4.05	1.28	57.34	10.34	24.10	7.53	0.69
Czech Republic	63.16	26.29	10.10	0.09	0.36	69.94	16.72	11.90	1.13	0.31	69.40	13.62	13.64	2.09	1.25
Estonia	50.17	41.92	7.91	0.00	0.00	52.76	29.58	16.19	1.14	0.33	56.59	20.08	20.43	1.54	1.36
Finland	67.90	23.51	8.14	0.44	0.01	70.14	17.81	9.87	1.91	0.27	68.12	12.19	14.75	3.90	1.03
France	42.72	45.62	10.15	1.29	0.22	53.09	21.85	19.29	5.29	0.48	55.80	12.77	22.15	8.21	1.08
Greece	96.18	0.82	2.74	0.04	0.22	90.40	0.94	7.31	0.83	0.52	87.20	0.48	9.77	1.95	0.60
Hungary	62.03	21.61	14.04	0.85	1.48	60.06	15.40	20.02	2.15	2.37	58.09	11.16	25.15	2.76	2.84
Iceland	48.65	39.14	11.31	0.55	0.34	57.53	19.73	18.00	4.25	0.50	60.80	16.44	16.08	4.91	1.76
Ireland	69.90	14.87	14.55	0.62	0.06	70.22	10.82	17.91	0.91	0.14	70.28	7.05	19.73	2.59	0.35
Italy	76.67	13.27	8.74	1.27	0.05	81.65	7.02	9.68	1.56	0.09	80.03	4.06	13.60	2.22	0.08
Japan	..	..	..	..	..	..	..	..	..	..	..	..	..	..	..
Korea	**93.15**		**2.59**	**1.27**	**2.99**	**89.37**		**5.28**	**2.65**	**2.71**	**83.29**		**7.86**	**4.05**	**4.81**
Latvia	55.25	25.81	16.75	1.47	0.72	51.66	14.59	27.32	3.54	2.89	46.26	12.34	34.08	4.85	2.48
Lithuania	72.64	8.27	17.33	1.56	0.20	68.31	9.64	19.55	0.90	1.60	61.71	7.10	25.14	4.07	1.97
Luxembourg	79.18	12.73	6.74	0.67	0.68	80.55	5.07	12.47	1.31	0.60	72.00	4.04	18.46	3.30	2.20
Netherlands	67.84	24.37	6.92	0.25	0.62	75.38	14.26	8.84	1.46	0.05	73.20	7.60	16.48	2.48	0.25
Norway	48.57	34.45	14.58	1.72	0.68	55.82	21.82	16.64	5.11	0.61	58.87	12.71	20.65	5.24	2.54
Poland	67.42	24.64	7.27	0.20	0.46	69.49	19.61	9.83	0.52	0.55	69.31	17.78	11.13	0.99	0.78
Portugal	64.59	20.61	12.30	1.46	1.04	66.74	12.60	16.32	3.06	1.27	63.06	9.59	20.99	4.33	2.03
Slovak Republic	75.24	12.96	10.50	0.38	0.92	79.81	6.80	11.83	1.01	0.55	79.00	3.25	14.62	1.72	1.41
Slovenia	48.14	43.15	7.41	1.13	0.17	58.31	28.25	10.18	2.60	0.66	60.03	16.67	16.90	4.99	1.41
Spain	71.52	17.68	9.31	0.77	0.73	74.01	9.43	13.66	1.74	1.16	71.63	4.29	20.62	2.60	0.85
Sweden	55.77	34.21	6.61	3.04	0.37	55.03	22.61	13.88	7.81	0.67	54.61	18.80	16.52	8.46	1.61
Switzerland	80.95	13.09	5.80	0.16	0.00	81.48	5.74	11.09	1.58	0.11	77.80	5.32	14.74	1.62	0.52
United Kingdom	60.88	21.10	17.54	0.48	0.00	63.09	12.85	22.20	1.85	0.00	60.12	9.82	24.95	3.52	1.60
United States	64.94	6.66	21.41	3.58	3.41	64.92	3.37	23.59	4.27	3.85	64.07	1.68	24.44	5.04	4.77
OECD average	**64.61**	**23.27**	**10.61**	**0.97**	**0.54**	**67.16**	**14.31**	**15.24**	**2.44**	**0.84**	**65.68**	**9.81**	**19.26**	**3.75**	**1.50**
Bulgaria	54.53	32.77	10.54	1.74	0.42	61.16	23.34	11.84	2.11	1.55	61.39	15.55	16.45	3.75	2.86
Croatia	90.14	4.20	5.37	0.00	0.28	90.57	2.43	6.08	0.67	0.26	85.35	2.89	9.35	1.76	0.65
Cyprus	85.74	7.12	6.31	0.05	0.78	87.82	1.07	9.63	1.36	0.12	78.80	0.62	15.54	4.61	0.44
Malta	79.00	3.97	15.96	0.90	0.17	75.48	1.17	19.37	3.18	0.80	78.54	0.36	17.02	3.35	0.73
Romania	77.25	11.80	6.87	0.81	3.27	78.10	9.12	7.62	1.03	4.13	77.75	4.31	9.55	3.57	4.81
EU average	**67.44**	**21.60**	**9.60**	**0.80**	**0.56**	**69.77**	**13.39**	**13.87**	**2.13**	**0.85**	**68.02**	**9.03**	**17.94**	**3.60**	**1.41**

출처: OECD(2023). Table SF1.3.A.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22)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정리하면,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 지표는 아동을 기준으로 동거하는 가구의 유형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들을 다룬다. 한국 아동의 거주 형태 지표는 현재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여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 25).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22) 원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자료를 생산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 변수와 '부모 양육유형코드' 변수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연령 변수는 OECD의 분류 기준에 부합하게 0~5세, 6~11세, 12~17세 구간으로 나누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two parents)' 항목은 '양부모 양육' 항목으로 산출하였다. OECD에서는 양부모 양육 중에서도 결혼한(married) 양부모와 동거하는(cohabiting) 양부모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통합된 형태로 산출하였다.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a single parent)' 항목은 모자가구와 부자가구로 나뉘는데 '한부모 모양육', '한부모 부양육' 항목을 통해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Other)'는 '부모 미양육'의 비중으로 판단하였다. 한국 자료 산출결과 0~5세 아동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의 비중은 93.15%로 나타났으며, 모자 가구는 2.59%, 부자 가구는 1.27%, 기타 가구는 2.99%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데, 6~11세 아동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의 비중은 89.37%, 12~17세를 기준으로 하면 83.29%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0~5세 아동을 기준으로 양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비중은 OECD 평균 87.88%(결혼 64.61%, 동거 23.27%)이고, 모자 가구는 10.61%, 부자 가구는 0.9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6~11세 아동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비중은 OECD 평균 81.48%(결혼 67.16%, 14.31%)이고, 모자 가구는 15.24%, 부자 가구는 2.44%로 나타났다. 한국의 모자가구 비중은 5.28%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12~17세 아동 기준 OECD 국가의 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의 비중은 75.49%(결혼 65.68%, 9.81%)로 나타나, 한국보다 약 8%p 낮았다. 한편, 모자가구의 아동 비중은 OECD 평균 19.26%으로, 한국(7.86%)에 비해 약 11%p 높았다. 부자가구의 아동 비중은 OECD 평균 3.75%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2) Table SF1.3.B.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자료없음)

이 지표는 상대소득빈곤 여부에 따라 아동의 거주 형태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상대소득빈곤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 조정이 된 세후 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되는데, 빈곤선은 국가별로 중위 가처분 소득(median disposable income)의 5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2023). 기본적인 항목 구성은 SF1.2 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소득빈곤 여부에 따라 거주 형태(부모와 함께 거주, 한부모와 거주, 기타)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가구 유형 지표는 현재 누락되어 있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는 소득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소득 관련 정보가 취합되지 않고 있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구주에 대한 연령 정보만 있고, 자녀 유무 및 가구원 연령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서 해당 기준에 맞추어 자료를 생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추후에 해당 데이터 수집 시 소득 정보와 가구 유형 정보가 모두 제공되어 소득빈곤 여부에 따른 아동의 거주 형태에 대해 파악될 필요가 있다.

3) Table SF1.3.C.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자료없음)

이 지표는 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거주 형태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여기서 교육수준은 표준적인 ISCED 2011년 분류 체계에 따라 3개(저학력, 중간학력, 고학력)의 서열 변수로 구분되었다. '저학력'은 ISCED 0-2 수준(유아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이하, '중간학력'은 ISCED 3-4 수준(고등학교 교육) 이하, '고학력'은 ISCED 5-8 수준(단기 고등교육, 학사, 석사, 박사) 이하로 분류된다(OECD Family Database, 2023). 기본적인 항목 구성은 SF1.2 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모의 학력에 따라 거주 형태(부모와 함께 거주, 한부모와 거주, 기타)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가구 유형 지표는 현재 누락되어 있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는 모의 학력과 관련된 정보가 부재하여 산출이 불가능하다. 향후에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 부모의 학력 수준에 대한 정보가 결합되어 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Table SF1.3.D.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누락)

이 지표는 유소년을 기준으로 부모의 혼인 상태에 따른 가구 유형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주 거주지(main home)에서 두 명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와 한부모와 거주하는 가구, 복합 가구(step-family) 및 기타 가구로 구분된다. 유소년의 연령 기준은 11~15세로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지표를 HBSC(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2013/14년 자료를 기초로 생산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그들의 부모의 거주 형태를 묻고 있는데, 그들이 1개 혹은 2개의 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로 거주하는 집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타 가구'에는 위탁 가정과 부모가 아닌 가족원으로 구성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 아동의 거주 형태 지표는 현재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여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26).

한국의 자료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22)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해당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 변수와 '부모 양육유형코드' 변수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연령 범위 중에서 11~15세에 해당되는 값만 선별하였다.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two parents)'은 '양부모 양육'의 비중을 통해 산출하였고,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a single parent)'은 '한부모 부양육'과 '한부모 모양육'의 빈도를 합쳤을 때의 비중을 통해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Other)'는 '부모 미양육'의 비중으로 판단하였다.

산출결과 한국의 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 가구의 비중은 약 87%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 가구는 약 11%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비중은 약 2%로 집계되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 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 74%로 대부분의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양부모 거주 비중이 8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한편 영국(웨일즈)은 OECD 국가들 중 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의 비중(61%)이 가장 낮았고, 한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의 비중(24%)은 가장 높았다.

〈표 2-8〉 Table SF1.3.D. 유소년의 거주 형태

Table SF1.3.D: 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2013-14

Distribution (%) of children aged 11-15 by type of parental living arrangement in main home

	Two parents	Single parent	Step-family	Other
Austria	75	16	7	2
Belgium (Flemish)	71	14	14	1
Belgium (French)	66	15	17	2
Canada	68	17	10	5
Czech Republic	68	18	12	2
Denmark	72	17	10	1
Estonia	66	19	14	2
Finland	70	14	14	1
France	69	16	13	2
Germany	74	15	10	2
Greece	84	12	3	1
Hungary	69	18	10	3
Iceland	69	16	13	1
Ireland	77	16	6	1
Israel (a)	84	11	4	1
Italy	82	13	3	2
Japan	..	..	..	..
Korea	87	11	..	2
Latvia	64	21	11	4
Luxembourg	71	15	12	3
Netherlands	76	15	9	1
Norway	75	14	10	1
Poland	78	14	6	2
Portugal	73	16	9	2
Slovak Republic	76	22	1	1
Slovenia	79	13	6	2
Spain	79	14	6	2
Sweden	69	18	10	3
Switzerland	77	14	8	1
UK (England)	70	18	11	2
UK (Scotland)	65	21	12	3
UK (Wales)	61	24	11	4
OECD-25 average	**74**	**16**	**9**	**2**
Russian Fed.	67	20	10	2
Bulgaria	74	16	5	5
Croatia	84	10	4	2
Lithuania	70	18	9	3
Malta	85	11	1	3
Romania	75	17	4	5
EU average	**74**	**16**	**8**	**2**

출처: OECD(2023). Table SF1.3.D. 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22)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요컨대, 이 지표는 11~15세 유소년을 기준으로 부모의 혼인 상태에 따른 가구 유형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두 명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와 한부모와 거주하는 가구, 복합 가구 및 기타 가구로 구분된다. 한국 아동의 거주 형태 지표는 현재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여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26).

한국의 자료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22)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해당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 변수와 '부모 양육유형코드' 변수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연령 범위 중에서 11~15세에 해당되는 값만 추출하였고,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two parents)'은 '양부모 양육'의 비중을 통해 집계하였고,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living with a single parent)'은 '한부모 부양육'과 '한부모 모양육'의 빈도를 합쳤을 때의 비중을 통해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Other)'는 '부모 미양육'의 비중으로 판단하였다. 산출결과 한국의 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 가구의 비중은 약 87%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 가구는 약 11%로 확인되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 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 약 74%로 대부분의 아동이 양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양부모 거주 비중이 약 8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한편 영국(웨일즈)은 OECD 국가들 중 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의 비중(약 61%)이 가장 낮았고, 한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의 비중(약 24%)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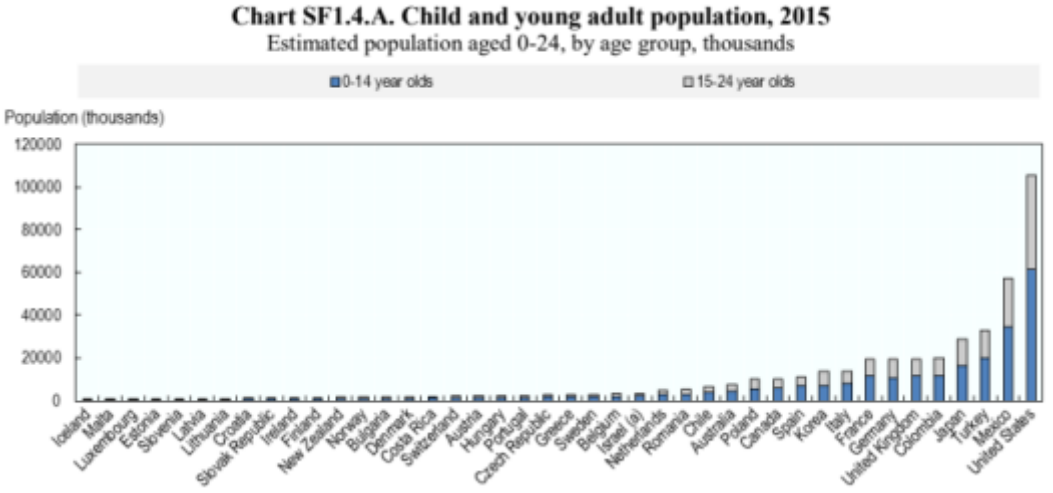
라.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1) Chart SF1.4.A.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적절)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지표는 가족구조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국가별로 절대적인 수치 비교를 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본 지표는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 원자료를 활용하여 구성되었고,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5년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가 가장 적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몰타,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등이 해당되며 이들 국가는 모두 0-24세 인구가 약 50만 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멕시코, 튀르키예,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는 모두 0-24세 인구가 약 2,50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SF1.4.A.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



출처: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OECD(2023). Chart SF1.4.A. 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2015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 0-24세 인구가 약 1,378만 명(0-14세 인구 704만 명, 15-24세 인구 674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멕시코, 튀르키예, 일본, 콜롬비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10번째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 지표는 가족구조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중요성을 지니며, 한국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10번째로 아동 및 청소년 인구가 많은 국가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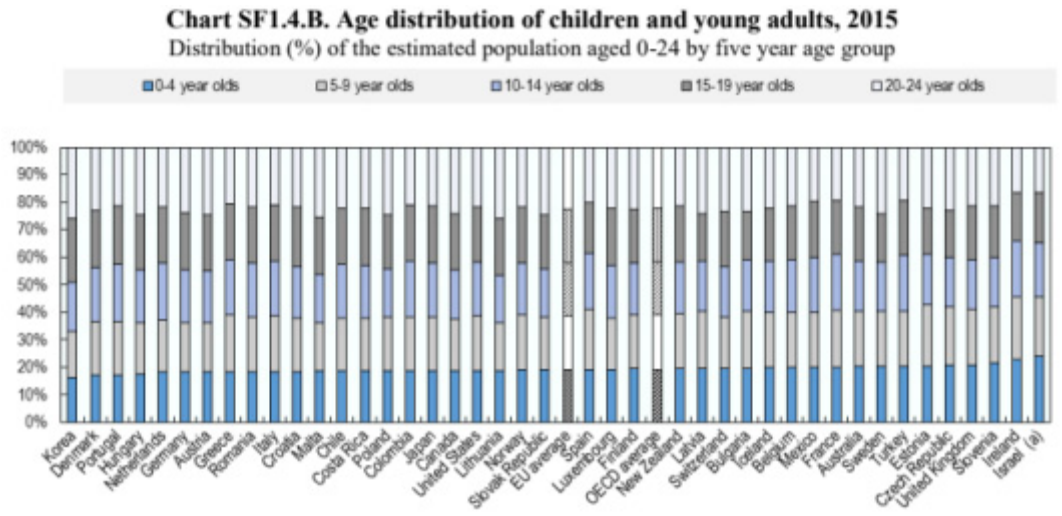
2) Chart SF1.4.B.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적절)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지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구 분포를 세부 연령별(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해당 지표 역시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도 적절히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청소년 연령층(15-24세)보다 아동 연령층(0-14세) 인구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체 아동 및 청소년 인구 중 0-4세 인구의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24.1%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22.8%), 슬로베니아(21.5%), 영국(20.8%)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체 아동 및 청소년 인구 중에서 0-4세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16.2%)으로 나타나, 최근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덴마크

(17.3%), 포르투갈(17.3%), 헝가리(17.5%) 순으로 상대적으로 0-4세 아동의 비중이 낮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3] Chart SF1.4.B.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



출처: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OECD(2023). Chart SF1.4.B. 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5에서 재인용

한국의 세부 연령별 아동 및 청소년의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아동 연령층에 해당하는 0-4세(16.2%), 5-9세(16.6%), 10-14세(18.3%) 연령보다, 청소년 연령층에 해당하는 15-19세(23.0%), 20-24세(25.9%) 연령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 지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구 분포를 세부 연령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0-4세 아동의 인구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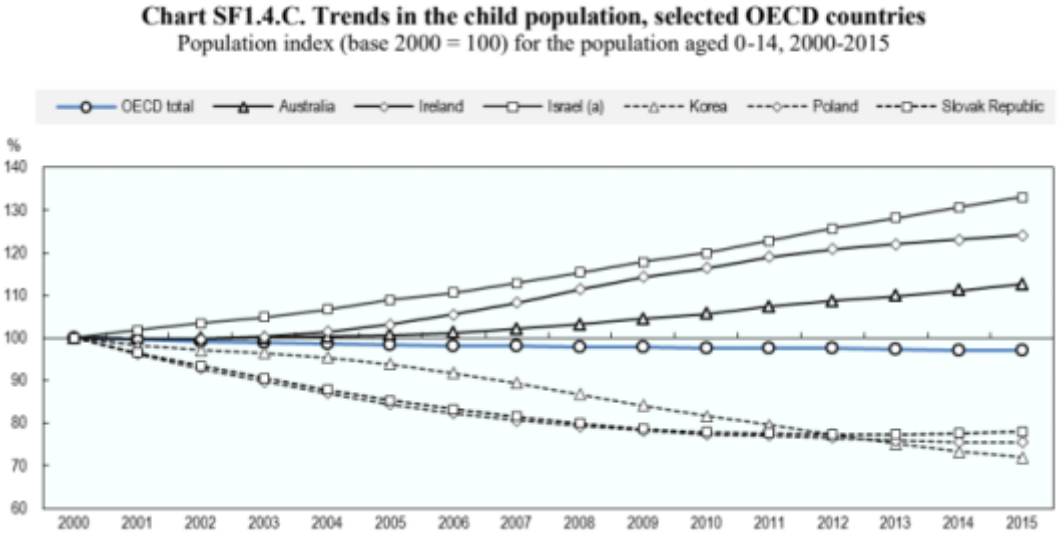
3) Chart SF1.4.C. 아동 인구 추이(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적절)

아동 인구 추이(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지표는 2000부터 2015년까지의 0-14세 아동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2000년의 수치를 기준값 100으로 상정하고, 매년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 가시화하였다. 해당 지표는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도 적절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OECD 국가의 0-14세 아동 인구 추이를 보면, 2000년보다 2015년에 약 2.9%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개별 국가로 보았을 때 0-14세 아동 인구가 2000년 대비 2015년에 증가하는 국가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 2000년 대비 2015년도에 33.0%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아일랜드는 2000년 대비 2015년도에 24.2% 증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감소하는 추세와 다른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 2-4] Chart SF1.4.C. 아동 인구 추이



출처: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OECD(2023). Chart SF1.4.C. 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selected OECD countries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0-14세 아동 인구 감소율이 28.0%로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의 아동 인구가 2000년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아동 인구 감소율은 2010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어 2012년 이후부터는 아동 인구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요컨대, 아동 인구 추이 지표는 2000부터 2015년까지의 0-14세 아동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이며,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아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국가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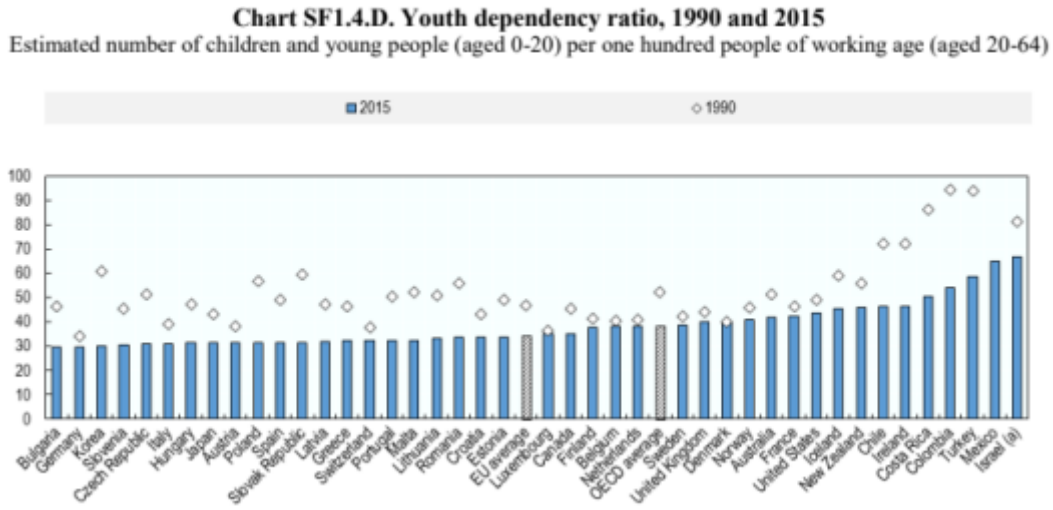
4) Chart SF1.4.D. 유소년 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적절)

유소년 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지표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아동 및

청소년(0-20세)의 인구수를 보여준다. 해당 지표는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의 수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전체 OECD 국가 평균 유소년 부양비는 38.6명으로 평균적으로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0-20세 유소년 인구가 약 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불가리아(29.6명), 독일(29.9명)이며, 유소년 부양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67.0명), 멕시코(64.9명)로 나타났다.

[그림 2-5] Chart SF1.4.D. 유소년 부양비



출처: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OECD(2023). Chart SF1.4.D. Youth dependency ratio에서 재인용

그중에서 한국은 1990년 기준 유소년 부양비가 60.7명이었으나 2015년 기준 30.2명으로 큰 감소 폭을 보여 결과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유소년 부양비가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유소년 부양비 지표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아동 및 청소년(0-20세)의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은 2015년 기준 30.2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유소년 부양비가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5) Chart SF1.4.E.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Estimated (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적절)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Estimated (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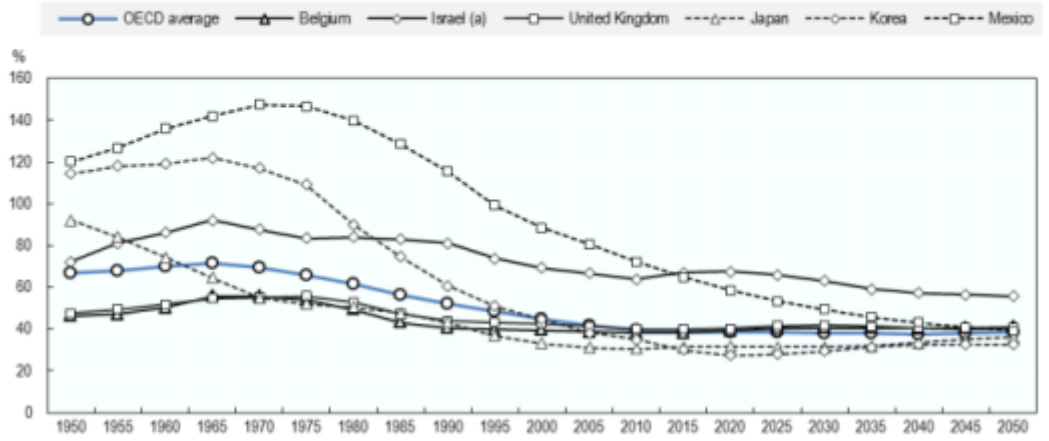
dependency ratios) 지표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아동 및 청소년(0-20세)의 인구수의 측정된 값과 예측된 값 각각을 보여준다. 해당 지표도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를 활용하였으며, 한국의 자료는 적절히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측정된 유소년 부양비는 모든 OECD 국가에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향후 2050년 OECD 평균 유소년 부양비는 38.4명으로 예측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5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국가는 일본, 한국, 멕시코로 세 국가 모두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측정된 유소년 부양 비율이 50명 이상 감소하였다.

[그림 2-6] Chart SF1.4.E.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

Chart SF1.4.E. Estimated (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selected OECD countries

Estimated and projected number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ged 0-20) per one hundred people of working age (aged 20-64)



출처: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OECD(2023). Chart SF1.4.E. Estimated (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selected OECD countries에서 재인용

특히 한국의 경우 1950년 OECD 평균 유소년 부양비(66.8명)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였으나(한국 평균 114.5명), 198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5년에는 OECD 평균 유소년 부양비(38.6명)보다 낮게 나타났다(한국 평균 30.2명). 향후 2050년까지의 평균 유소년 부양비 역시 32.8명으로 예측되어 OECD 평균(38.4명)보다 낮은 수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 지표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아동 및 청소년(0-20세)의 인구수를 과거의 측정된 값과 현재 이후의 예측된 값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과거

OECD 평균 유소년 부양비를 훨씬 상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 SF1.5 아동의 주거 여건(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1) Chart SF1.5.A. 과밀거주 아동(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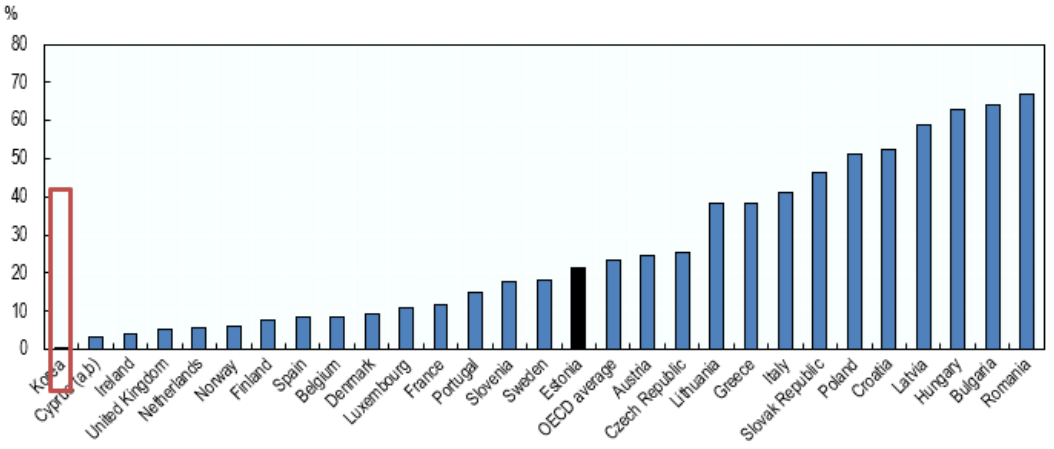
이 지표는 아동의 주거여건 중 과밀주거에 놓인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과밀(overcrowded)의 정의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과밀은 성인, 커플, 18세 이상, 1인 가구 등이 방 한 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를 일컫는다. 아동의 경우에는 12~17세 동성은 2인이 방 한 개, 12~17세 이성은 각각 방 한 개, 12세 미만 아동 2인이 방 한 개를 사용하지 못할 때 과밀이 된다. 이는 주로 사용하는 방수 기준이므로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중 침실기준 만족 여부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한국의 과밀거주 아동은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은데,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므로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 34).

한국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이 정해져있고, 세부적으로 가구원수별 침실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동가구 중 침실기준 미달인 경우를 바탕으로 과밀거주 아동 지표를 산출하였다.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가구원 연령이 만0~17세 이하인 가구 대상) 가구원수별 침실 기준 미달 여부를 판정하였다. 가구원수별 침실기준은 1인가구 1개, 2인가구 2개, 3인가구 3개, 4인가구 3개, 5인가구 3개, 6인가구 4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침실기준 미달에 해당한다. 침실기준 미달 여부에 대한 문항은 문20의 주택구조를 묻는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 원룸인 경우는 방수 1개, 원룸이 아닌 경우는 기입한 방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산출결과 한국의 값은 2022년 기준 0.1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한국의 값을 다른 국가들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SF1.5.A 그래프에서는 2017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OECD 평균을 23.4로 제시하고 있다. 낮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는 아일랜드(4.1), 영국(5.4), 네덜란드(5.9) 등이고, 그리스(38.4), 이태리(41.3) 등 남부유럽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와 동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한국의 데이터와 기준을 사용하여 유사한 값을 산출하여 비교하면, 한국의 아동가구 중 과밀 가구 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7] Chart SF1.5.A. 과밀아동가구 비중 비교
Chart SF1.5.A. 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주: 과밀은 커플, 18세 이상 성인 1인, 12~17세 동성 2인, 12세 이하 아동 2인 당 방 1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처: OECD(2023). Chart SF1.5.A 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에 한국 자료(2022년)를 추가함
※ 한국은 가구원수별 최저주기준 중 침실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아동가구 비중을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출

과밀아동가구 비율 지표는 아동의 주거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한국의 경우 누락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0~17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침실기준 미달 가구 비중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아동가구는 과밀 문제가 거의 해소된 상태로 보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 Chart SF1.5.B.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누락)

이 지표는 아동의 주거여건 중 기초생활시설에 미달하는 상태에 놓인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한국에서는 주거실태조사의 시설기준 미달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이 지표 역시 OECD에는 보고되고 있지 않은데,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므로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34).

앞선 과밀가구와 유사하게 기초생활시설 미달은 최저주거기준의 세부 항목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독립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통해 기초생활시설 미달 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이는 주거실태조사 문항 22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화장실, 부엌, 목욕시설의 독립적인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시설기준 미달로 본다. 따라서 현대적인 시설이 아니거나, 공동사용, 또는 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 모두가 시설기준 미달에 해당한다. OECD의 경우에는 화장실, 샤워, 실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시설기준 미달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준이 OECD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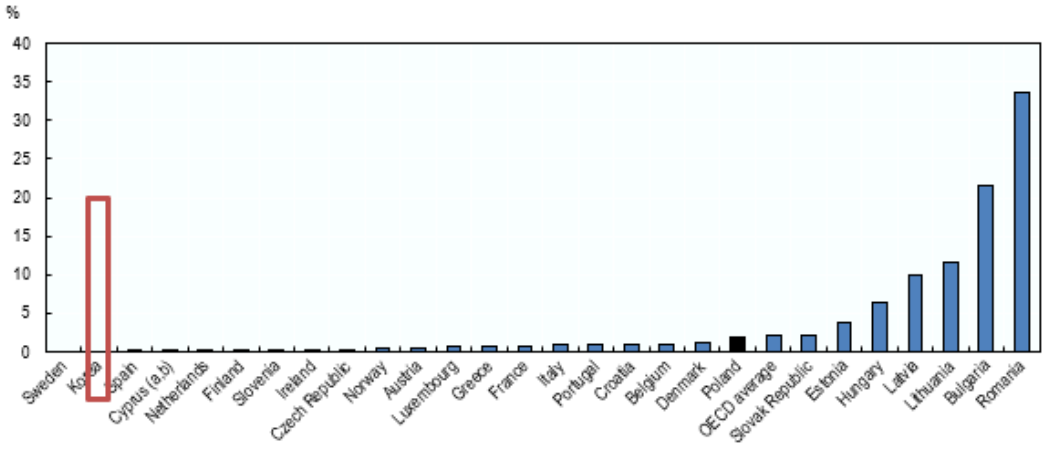
〈표 2-9〉 시설기준 미달 여부 산출 과정

문22-1-1. 귀댁의 주택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습니까?_1)부엌_(1)사용 형태 → "공동사용 또는 없음" 이거나(OR) 문22-1-2. 귀댁의 주택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습니까?_1)부엌_(2)종류 → 재래식이거나(OR) 문22-2-1. 귀댁의 주택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습니까?_2)화장실_(1)사용 형태 → "공동사용 또는 없음" 이거나(OR) 문22-2-2. 귀댁의 주택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습니까?_2)화장실_(2)종류 → 재래식이거나(OR) 문22-3-1. 귀댁의 주택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습니까?_3)목욕시설_(1)사용 형태 → "공동사용 또는 없음"

출처: 주거실태조사(2022) 설문지

산출결과 한국의 값은 2022년 기준 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의 값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많은 국가에서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0.0), 스페인(0.0), 네덜란드(0.1), 아일랜드(0.1), 오스트리아(0.5) 등 상당 수 국가들이 1.0 이하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수치는 2.1이다. 체제전환국에서는 주택의 질적 수준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와 유사한 기준이므로, 한국의 아동가구 중 시설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8] Chart SF1.5.B. 시설기준 미달 아동가구 비중 비교
Chart SF1.5.B. 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주: 시설기준 미달은 욕실, 샤워, 실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
출처: OECD(2023) Chart SF1.5.B. 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에 한국 자료(2022년)를 추가함
※ 한국은 시설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아동가구 비중을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출

시설기준 미달 아동가구 비율 지표는 아동가구의 질적 주거여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서, 한국의 경우 누락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0~17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기준 미달 가구 비중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아동가구는 기초생활시설(욕실, 화장실, 샤워)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문제가 거의 해소된 상태로 보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3) Chart SF1.5.C. 환경문제있는 지역 거주 아동(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지표생산 불필요)

이 지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이웃이나 거리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거주하는 지역의 오염, 오물 또는 기타 환경 문제를 보고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지표는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실태조사 설문항목 중에 소음, 방범, 위생상태에 대한 불량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으나 이는 활용하기에는 OECD 데이터와의 정합성이 약하다. 또한 환경적 문제의 한 요소인 소음은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확인할 수 있다. 즉, 주택 내부 소음(층간소음), 외부소음(차량경적, 공장 소음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을 병합하여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곳에 거주하는 아동비율을 SF1.5.C.로 보고할 수도 있으나 소음 이외에 오염, 오물, 기타 환경적 문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한국적 상황에서는 적용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바. 가족과 아동 지표 요약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 지표는 개선필요로 분류된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및 '가구 유형(Types of household)' 두 지표와, 누락으로 분류된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지표로 구성된다. 개선이 필요하거나 누락된 지표들을 직접 생산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모든 가구의 평균적인 가구 규모는 2.4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구의 가구 규모는 3.58명이고, 한부모 가구의 가구 규모는 2.37명으로 확인되었다. OECD 국가들의 전체 가구 평균 가구원 수는 2.46명으로 한국에 비해 약 0.02명이 많다. 한국의 전체 가구 평균 가구원 수는 OECD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는 편이었고, 자녀가 있는 양부모 및 한부모의 가구원 수는 대체로 적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가구 유형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부부 가구는 37.7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 가구는 7.83%, 1인 가구는 29.36%, 기타 가구는 25.06%로 집계되었다. OECD 국가들의 부부 가구 평균은 약 51.51%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가구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한국의 부부 가구 비중(37.75%)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별 비중을 산출한 결과, 한국의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78.46%(OECD 국가 평균 67.9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또한 자녀가 1명인 가구의 비중은 9.14%(OECD 국가 평균 14.53%), 두 자녀 가구는 10.31%,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비중은 2.09%로 확인되었다. 또한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6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F1.2 가족에서의 아동(Children in Families) 지표는 누락으로 분류된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지표와 지표생산 불필요로 분류된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자료없음으로 분류된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지표로 정리할 수 있다. 누락된 지표를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신규 생산한 결과, 한국의 전체 아동(만 0~17세) 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의 비중은 88.1%(OECD 국가 평균 82.1%)로 나타났고,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는 8.4%(OECD 국가 평균 16.9%)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비중은 3.6%(OECD 국가 평균 1.1%)로 집계되었다.

SF1.3 아동의 거주 형태(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지표는 누락으로 분류된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및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두 지표와 자료없음으로 분류된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두 지표로 구성된다. 누락지표를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새롭게 산출한 결과, 0~5세 아동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의 비중은 93.15%(OECD 국가 평균 87.88%)로 나타났으며, 모자 가구는 2.59%(OECD 국가 평균 10.61%), 부자 가구는 1.27%(OECD 국가 평균 0.97%), 기타 가구는 2.99%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데, 6~11세 아동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가구의 비중은 89.37%(OECD 국가 평균 81.48%), 12~17세를 기준으로 하면 83.29%(OECD 국가 평균 75.4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소년의 거주 형태를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의 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 가구의 비중은 8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또한 한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 가구는 11%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비중은 2%로 집계되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 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 74%로 대부분의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웨일즈)은 OECD 국가 중 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의 비중(61%)이 가장 낮았고, 한부모와 함께 사는 유소년의

비중(24%)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아동 인구 추이(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유소년 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Estimated (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등 다섯 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절하게 구성된 지표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의 0-24세 인구는 약 1,378만 명(0-14세 인구 704만 명, 15-24세 인구 674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멕시코, 튀르키예, 일본, 콜롬비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10번째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가 많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청소년 연령층(15-24세)보다 아동 연령층(0-14세) 인구 비중이 더 높은 편이었으나, 한국의 경우 0-4세 아동의 인구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최근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OECD 국가의 0-14세 아동 인구 추이를 보면, 2000년보다 2015년에 약 2.9%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도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0-14세 아동 인구 감소율이 28.0%로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 전체 OECD 국가 평균 유소년 부양비는 38.6명으로 평균적으로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0-20세 유소년 인구가 약 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5년 기준 30.2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유소년 부양비가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 지표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아동 및 청소년(0-20세)의 인구수를 과거의 측정된 값과 현재 이후의 예측된 값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1950년 기준 평균 114.5명으로 OECD 평균 유소년 부양비(66.8명)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이후 2015년 기준 30.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SF1.5 아동의 주거 여건(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지표는 누락으로 분류된 '과밀거주 아동(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두 지표와 지표생산 불필요로 판단된 '환경문제있는 지역 거주 아동(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environmental problems)'로 정리된다. 과밀 아동가구 비율 지표는 아동의 주거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한국의 경우 누락되어 있어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신규 생산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과밀아동가구 비중은 2022년 기준 0.1%(OECD 국가 평균 23.4%)로 나타나,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과밀아동가구 비중이 낮은 편인 국가는 아일랜드(4.1%), 영국(5.4%), 네덜란드

(5.9%) 등이고, 그리스(38.4%), 이태리(41.3%) 등 남부유럽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시설기준 미달 아동가구 비율 지표는 아동가구의 질적 주거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한국의 경우 누락되어 있어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한국의 아동가구는 기초생활시설(욕실, 화장실, 샤워)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문제가 거의 해소된 상태(2022년 기준 0.0%)로 보이며, OECD 국가(OECD 국가 평균 2.1%)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로, 가족과 아동 지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자녀가 있는 양부모 및 한부모의 가구원 수가 대체로 적은 편이었고, 한국의 부부 가구 비중(37.75%)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또한 한국의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78.46%(OECD 국가 평균 67.9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출산력

가. SF2.1 출산율(Fertility rates)

1) Chart SF2.1.A.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적절)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출산 관련 지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지표이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방식은 측정하고자 하는 실제 재생산 활동으로부터 연령 구조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연령 표준화 덕분에 서로 다른 연령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나 시대의 출산율을 비교하는 것이 용이하다.

합계출산율은 정교한 지표로서 그만큼 정보 요구도도 높다.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은 출산아 수 정보뿐만 아니라 출산아의 어머니 연령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 현재 한국 통계청은 매년 합계출산율 지표를 공표하고 있다. 출생아 수 정보는 1970년부터 제공하지만, 연령별 출산율 정보는 1993년부터 제공하여, 1970년부터 1992년에 대해 정확한 합계출산율 지표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신에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의 출산력 전망에 포함된 1970~1992년 연령별 출산율 정보를 활용하여 합계출산율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우해봉, 장인수, 임지혜, 2020: 125-126).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합계출산율 수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970년 2.84에서 1995년 1.77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는 1.58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70년 이래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의 양상은 차이가 있다. OECD 평균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가장 높은

국가부터 나열하면, 이스라엘 3.0, 체코 1.83, 멕시코 1.82 등이 상위에 위치하고,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를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한국이 0.81로 가장 낮고, 스페인 1.19, 이탈리아 1.25, 일본 1.30 등으로 나타난다.

현재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모두 1.83 이하의 낮은 수준에 수렴해 있는 상황이다. 1970년과 1995년 사이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지만, 1995년과 2021년 사이에는 하락한 국가, 차이가 없는 국가, 그리고 오히려 상승한 국가로 구분된다.

1995년부터 2021년 사이 합계출산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들은 1995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2.1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던 국가들이다.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 튀르키예, 칠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20여년 사이 대폭 하락하여 인구대체율 이하의 저출산국가에 진입하였다. 이들 국가들보다 출산율의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1995년 시점에 이미 2.1 이하의 저출산 상태였던 국가들 중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겪은 국가들도 있다. 그 중 한국,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캐나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영국, 아일랜드, 호주, 일본 등이 1995년의 합계출산율에서 0.1 이상 하락한 국가들이다. 한국은 단연 두드러진다. 한국은 1995년 1.63이 2021년에는 0.81로 0.826 만큼 하락하여, 가장 출산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저출산 국가 중에서) 하락폭도 가장 컸다.

1995년과 2021년 사이 출산율이 오히려 상승한 국가들도 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들부터 나열하면, 체코, 슬로베니아, 독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슬로바키아가 0.1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그 외 국가들은 1995년에서 2021년 사이 합계출산율이 0.1 미만의 정도로 상승하거나 하락하였다. 덴마크, 스웨덴, 포루투갈, 스페인, 헝가리,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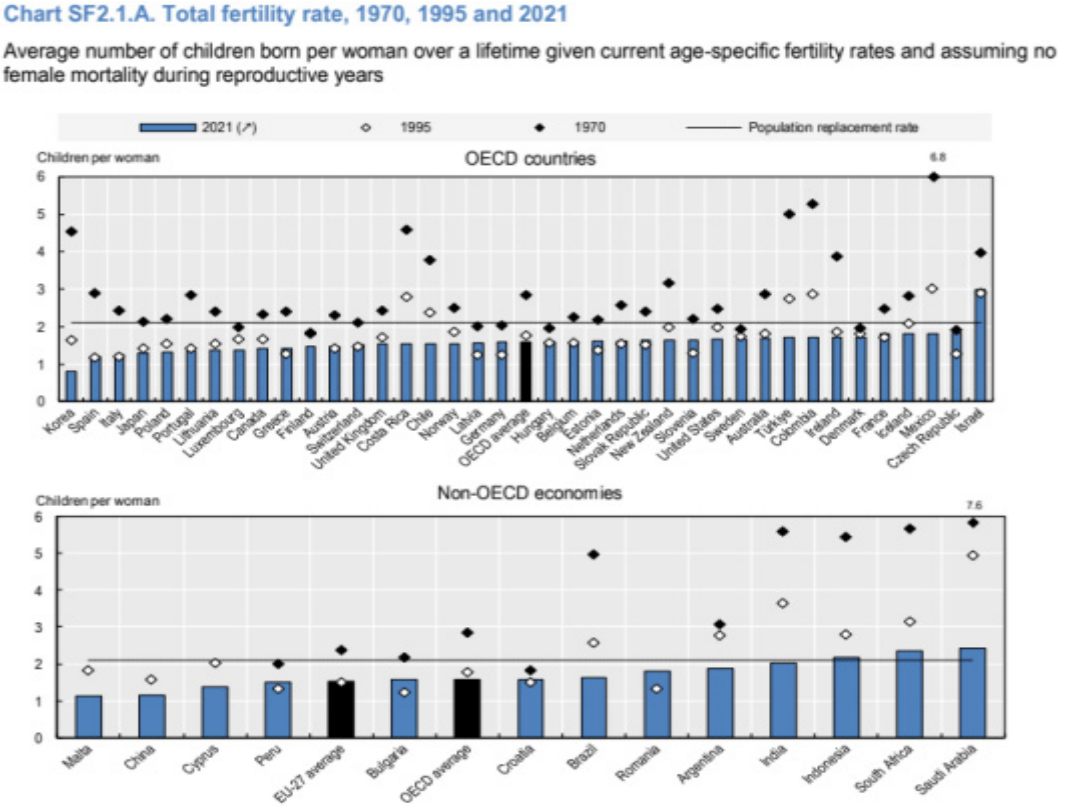
이상의 OECD 국가 합계출산율 수준의 추세와 국가간 비교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출산율 저하 추세를 보여주며, 최근 20여년 동안 상승과 하강 등 서로 다른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국가간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OECD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수준도 다양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합계출산율이 2.0을 초과할 정도로 높으며 1995년 이후 약간 감소했을 뿐이다. 반면 중국은 1995년 1.59에서 2021년 1.16으로, 브라질은 1995년 2.58에서 2021년 1.64로 크게 감소했다.

1970년 이래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OECD 국가와 그 이외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대체로 하락해 왔다. 그러나 1.3 이하의 초저출산 상태로 하락하거나 그 상태가 지속되는 국가들은 예외적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이

2021년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초저출산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군과 합계출산율 사이의 관계는 개별 국가들의 가족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하의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아동, 가족, 여성노동 등의 지표들이 국가간 합계출산율 차이와 변화 추세에서 나타나는 특성 등을 분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Chart SF2.1.A. 합계출산율



출처: Eurostat Database,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 OECD(2023). Chart SF2.1.A. Total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1에서 재인용

2) Chart SF2.1.B. 코호트완결출산율(Completed cohort fertility) (누락)

코호트완결출산율(completed cohort fertility; CCF)은 동일연도에 태어난 여성(출생코호트)이 재생산생애 동안 낳은 자녀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합계출산율이 기간(period)을 기준으로 출산율을 계산한 것이라면, 코호트완결출산율은 코호트(cohort)를 기준으로 출산율을 계산한

것이다. (기간) 합계출산율은 15~49세의 5세 간격 연령에 대한 출산율(연령별 출산율, age-specific fertility rate)을 합계한 것인데, 이때 15~49세 연령은 동일 출생코호트 여성의 실제 생애연령이 아니라, 한 시점에 스냅샷으로 관찰한 15~49세 사이의 상이한 연령집단이 1년 동안 출산한 자녀수를 의미한다. 코호트완결출산율도 합계출산율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인데, 이때 연령별 출산율은 동일한 시점에 태어난 여성들의 실제 생애연령별 출산율이라는 점에서 합계출산율과 차이가 있다.

코호트완결출산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코호트 c의 코호트완결출산율($CCF(c)$)은 코호트 c가 연령 $x_{\min}$일 때부터 연령 $x_{\max}$까지 연령별 출산율($f(x,c)$)의 합계이다. 이때 연령은 15세(또는 그 미만)부터 50세까지(49세 또는 그 미만)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CF(c) = \sum_{x=x_{\min}}^{x_{\max}} f(x,c)$$

여러 국가들의 코호트완결출산율을 보여주는데, Human Fertility Database가 코호트완결출산율을 제공하는 국가들로만 한정되어 있다. Human Fertility Database는 한국의 코호트완결출산율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도 한국 자료가 누락된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2023.12.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에 해당 지표를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자료와 Human Fertility Database 자료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Human Fertility Database는 코호트완결출산율 지표의 산출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지표는 인구동태통계의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자료와 인구센서스의 연령별 여성인구수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다고 밝히고 있다(Jasilioniene, Jdanov, Sobotka, Andreev, Zeman & Shkolnikov, 2015).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목적으로, 코호트완결출산율을 계산하여 공개하였는데, 이 방식은 Human Fertility Database가 해당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한 지표 공개는 여타 출산율 지표의 공개방식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와 산출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14] 이러한 점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한국의 코호트완결출산율 지표를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표의 비교가능성이나 지표의 공개성

14) 한국의 코호트완결출산율 지표는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로만 공개되고 있으며, 해당 보도자료에 지표 산출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료원과 산출방식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출생코호트의 완결출산율은 출생코호트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로 산출하였으며, 출생코호트별 연령별 출산율은 모의 연앙인구 대비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의 비율로 산출되었다. 모의 연앙인구는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 기준인구는 2022년 11월 1일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에 2022년 7~10월 사이 발생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국제이동)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으며, 분자에 해당하는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는 인구동향조사 출생자료와 외국인출생아수(추정자료)를 통해 산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연령별 출산율의 연령범위는 15세에서 49세이다.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없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통계청이 현재 합계출산율 등 출산력 지표를 공표하는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코호트완결출산율 지표를 공표하고 자료와 산출식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한국의 출산력 지표가 Human Fertility Database에 누락 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10〉 출생코호트별 완결출산율·평균 출산연령

(단위: 여자 1명당, 세)

	1945 년생	1946 년생	1947 년생	1948 년생	1950 년생	1955 년생	1960 년생	1965 년생	1970 년생	1973 년생
코호트완결출산율	3.57	3.02	3.15	2.91	2.92	2.23	2.09	1.99	1.81	1.71
평균출산연령	26.6	26.6	26.5	26.3	26.1	26.0	26.5	27.4	28.3	29.0

주: 평균 출산연령은 연령별 출산율(ASFR)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2023.12.14.:25), 〈표2-3〉의 일부.

[그림 2-10]에 표시한대로,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누락된 한국자료를 보완하였다. 1950년 출생 여성의 코호트완결출산율은 2.9명, 1960년생은 2.1명, 1970년생은 1.8명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한국 코호트완결출산율은 한국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의 코호트완결출산율 지표 자료원과 다르므로 비교와 해석에서 주의해야 하지만, 한국자료의 자료원과 산출방식을 고려했을 때, Human Fertility Database의 산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수치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OECD 주요국가들의 코호트완결출산율은 이미 1950년 출생코호트부터 2.1명 수준이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1960년, 1970년 코호트로 올수록 완결출산율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1970년 코호트완결출산율이 2.1명이었는데, 1960년과 1970년에도 각각 2.1명과 2.0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수는 대략 2.0명에서 2.1명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슬로바키아, 체코, 노르웨이,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와 유사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최근 30~40년 사이에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겪었다면, 그것은 여성이 과거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보다 늦게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1950년생, 1960년생, 1970년생 사이에 코호트완결출산율 수준이 크게 하락한 몇몇 국가들도 관찰된다. 이러한 유형은 관찰시기 동안의 출산율 변동이 단지 출산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출산수준도 하락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1960년생의 코호트완결출산율이 1.8명으로 나타나, 10년 앞선 1950년생의 2.1명보다 0.3명이나 적었으며, 1970년생은 그보다 0.3명 더 떨어져서 1.5명으로 나타났다. 일본, 이탈리아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한국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타 국가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1950년생의 코호트완결출산율은 2.9명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았지만, 1960년에는 2.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970년에는 1.8명으로,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등 저출산 국가들보다 높았지만, 10년 전에 비해 0.3명이 감소하는 급격한 출산수준의 하락이 나타났다. 한국은 1950년생, 1960년생, 1970년생 사이에 출산수준의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10] Chart SF2.1.B. 코호트완결출산율, 1950, 1960, 1970년 출생코호트

Chart SF2.1.B. Completed cohort fertility for women born in 1950, 1960 and 1970 or latest available

(단위: 명)



출처: OECD(2023). Chart SF2.1.B. Completed cohort fertility for women born in 1950, 1960 and 1970 or latest availabledp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통계청(2023.12.14.:25),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산출.

코호트완결출산율은 이처럼 합계출산율 변화에 포함된 출산시기와 출산수준의 변화 중에서, 출산수준의 변화만을 보여줌으로써, 출산율 하락이 출산시기와 출산수준 중 어떤 요인의 변화에 의해 추동되었는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스웨덴,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코호트완결출산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출산수준 자체의 감소가 출산율의 변동을 이끈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초저출산 국가들에서는 출산수준의 변화도 출산율 변동(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코호트완결출산율은 일반적으로 49세까지 관찰한 결과를 통해 산출되므로, 아직 49세에 도달하지 못한 최근 출생코호트의 출산행동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의 자료에서 1970년생의

코호트완결출산율은 1.8명인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1980년생, 1990년생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최근 세대의 코호트완결출산율이 다른 나라의 동일 출생년도 여성들과 얼마나 다를 것인지는 현재와 같은 연령범위의 코호트완결출산율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관찰연령의 범위를 좁히는 방법, 즉 최대연령을 40세로 낮추는 방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Chart SF2.1.C.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첫째아 출생 비율,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 비율 (적절), Chart SF2.1.D.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출생순위별 출생 비율 (적절)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는 전체 출생을 어머니의 출산순위라는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 출산순위의 출생 수를 전체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인구동태자료의 출생 정보에 출산한 어머니의 출산순위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 정보에 기초하여 출산순위별 출생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에는 개별 어머니(부모)의 출산 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어떤 사회에서 모든 여성들이 자녀를 1명만 출산한다면,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는 첫째아 출생이 100%를 차지하고 둘째아 출생, 셋째 또는 그 이상 출생 비율은 모두 0%인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이처럼 여성이 평생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는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도 여성의 연령별 인구구조, 출생아수별 출산지연 정도 등도 이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자료는 2024년 현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지난 2023년 한국자료의 누락이 지적되었으나(김은지 외, 2023: 35), 최근 한국자료가 포함되었다. 한국자료의 자료원은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항목 자료로,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림 2-11](SF2.1.C)은 출산순위별 출생분포를 첫째아 출생비율과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비율 등 두 개 범주로 나타내었고, 1980년과 2021년 수치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 2-16](SF2.1.D)은 2021년 당시 각국의 출생순위별 출생비율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또는 그 이상 각각의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림 2-11](SF2.1.C)을 보면 한국은 1980년과 2021년 사이 첫째아 출생비율이 크게 증가한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영국, 아일랜드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한국은 1980년 41.0%가 2021년 56.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 두 시점 사이 둘째아 출생과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의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첫째아 출생비율이 크게 증가한 한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의 비율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1980년과 2021년 사이 첫째아 출생비율이 감소한 국가들도 있다. 슬로바키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이 이에 속한다. 첫째아 출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라트비아의 경우 1980년 52.8%에서 2021년 38.2%로 감소하였다. SF2.3.2.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트비아는 2000년과 20021년 사이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첫 출산 연령의 상승(첫 출산 지연)으로 인해 첫째아 출생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첫째아 출생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출생순위별 출생 분포는 출산수준 뿐만 아니라, 출산속도, 여성의 연령구조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해석은 다른 연관 지표를 참조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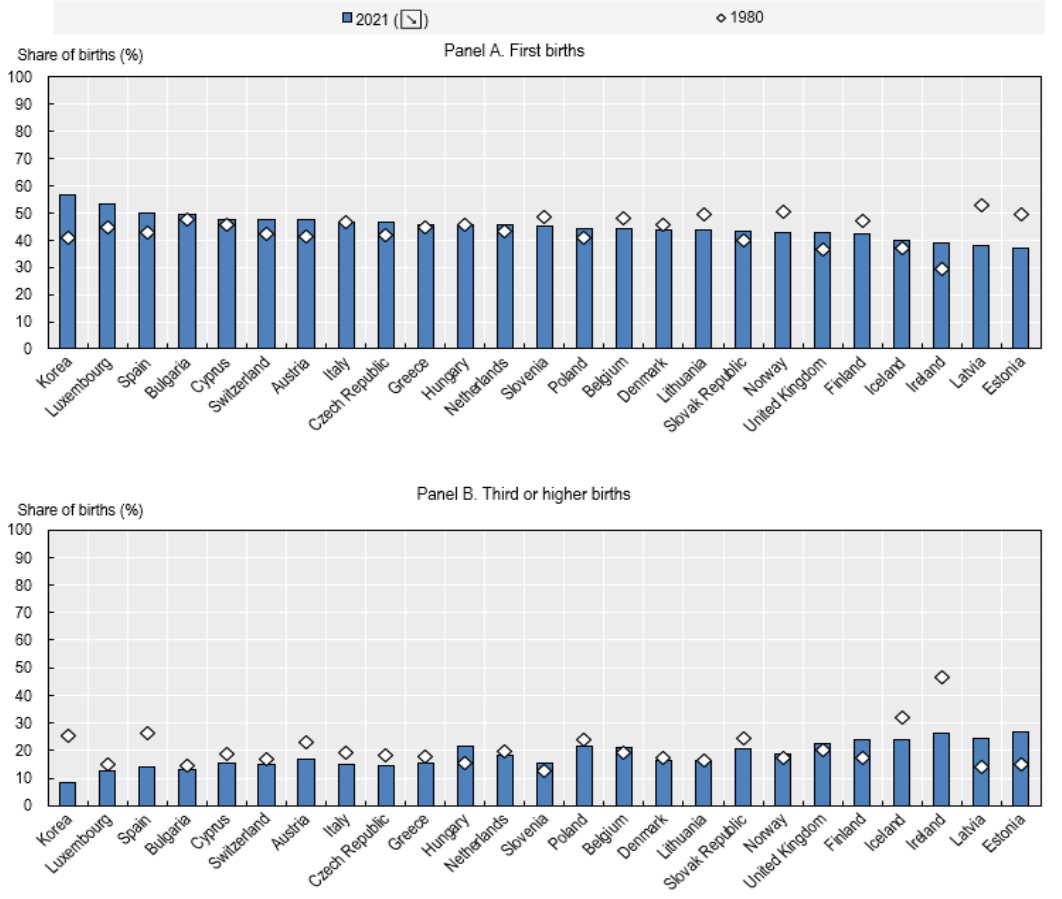
[그림2-12](SF2.1.D)은 2021년 현재 OECD 국가의 출산순위별 출생비율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또는 그 이상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출산순위별 출생비율의 OECD 평균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계산해보면, 첫째아 비율은 45.0%, 둘째아 비율은 36.0%, 셋째아 비율은 18.7%이다. 한국은 첫째아 출생 비율이 56.8%, 둘째아 출생 비율이 35.0%,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비율 8.2%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첫째아 출생비율은 자료가 제시된 33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셋째아 출생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출산은 주로 한 명이나 두 명의 출산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치우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이어 그 다음으로 첫째아 출생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룩셈부르크(53.2%), 포루투갈(53.0%), 루마니아(52.4%) 등이다. 또한 한국에 이어 그 다음으로 셋째아 출생비율이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12.7%), 불가리아(12.9%), 포루투갈(13.1%)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달리 첫째아 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둘째아와 셋째아 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는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아일랜드 등이 있다. 에스토니아는 첫째아 출생비율이 37.2%, 둘째아 출생비율이 35.9%, 셋째아 또는 그 이상 비율이 26.9%를 나타내고 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비교적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상에서와 같이 출산순위별 출생비율 지표는 총량적인 출산수준을 보여주는 합계출산율 지표를 보완하여, 개인 수준의 출산수준이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한국자료는 지난 1980년 이래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이상의 고순위 출산이 크게 감소하여 OECD 최저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출산은 한 자녀나 두 자녀를 출산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셋째 이상의 고순위 출생 비율은 한 자리 수에 불과했는데, 이는 한국이 유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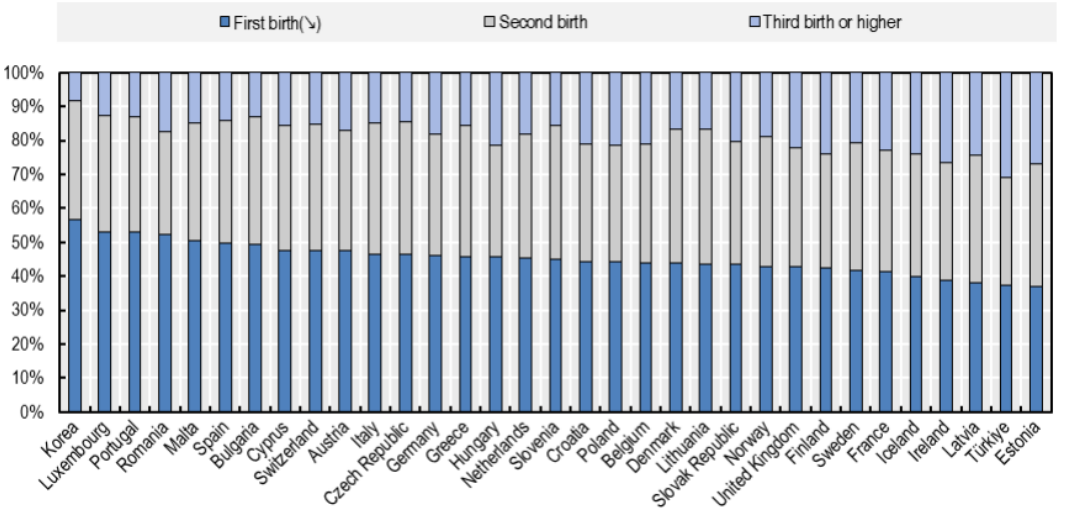
[그림 2-11] Chart SF2.1.C.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첫째아 출생 비율,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 비율, 1980, 2021
Chart SF2.1.C.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80 and 2021

(단위: %)



주: 튀르키예와 영국은 2021년이 아니라 각각 2020년과 2018년 수치임.
출처: OECD(2023). Chart SF2.1.C.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80 and 2021

[그림 2-12] Chart SF2.1.D.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출생순위별 출생 비율
Chart SF2.1.D.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2021



주: 튀르키예와 영국은 2021년이 아니라 각각 2020년과 2018년 수치임.
출처: OECD(2023). Chart SF2.1.D.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2021

나.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1) Chart SF2.2.C. 최종적인 가족 규모(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누락)

최종적인 가족규모는 여성이 이미 출산한 자녀 수(actual number of children)와 추가적으로 더 낳고자 하는 자녀 수(intended number of children)를 합한 자녀 수이다. 이 지표는 여성이 이미 출산한 자녀 수를 고려하고, 주된 출산연령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주목하도록 '이상적 자녀 수' 지표를 변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가족규모 지표는 25~39세 여성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평균 실제 자녀 수와 평균 추가출산의향 자녀 수를 합산한 값으로 제시된다.

[그림 2-13]의 최종적인 가족규모 자료는 「유럽바로미터 2011년 조사: 출산력과 사회적 추세」(Eurobarometer 2011: Fertility and Social Climate)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시각과 개인적인 시각을 구분하여 이상적인 자녀 수를 측정하는데,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적으로 당신이 갖고자 하거나 갖고자 했던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라는 개인적 시각의 이상적인 자녀 수 문항을 활용하여 '개인적 평균 이상 자녀 수'(SF2.2.A) 지표를 제시하였다. '최종적인 가족규모' 지표는 그 뒤에 이어 나온 지표로서, 비록 OECD 지표 설명자료에서 지표 산출에 활용한 문항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더 갖고자 하는 자녀 수 정보를 통해 개인적인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다.[15)]

현재 한국의 최종적인 가족 규모 지표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보고되고 있지 않다. 2023년 보고서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적절한 한국 자료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이 지표를 '누락' 지표로 분류하였다(김은지 외, 2023: 38).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입니까?" 문항은 출산의향 유무와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계획인지를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박종서 외, 2022). 뿐만 아니라 이 조사는 19~49세 성인 남녀 대상의 조사로서 최종적인 가족 규모 지표가 요구하는 25~39세 여성을 포함한다. 특히,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는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임신, 출산 경험과 추가출산의향 자녀 수를 조사한다. 결론적으로,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는 '최종적인 가족규모' 지표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25~39세 여성의 실제 자녀 수(출산 자녀 수가 0명인 사례 포함)와 추가 출산의향 자녀 수(0명 포함)를 산출한 것이 〈표 2-11〉이다. 그 결과 25~39세 여성의 실제 출생아수는 0.84명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더 갖고자 하는 자녀 수의 평균값은 0.58명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인 가족규모'는 실제 자녀 수와 향후 더 갖고자 하는 자녀 수를 합한 값이므로 0.84명과 0.58명을 합한 1.42명으로 계산되었다.

한국은 결혼여부에 따라 출산행동이 크게 다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여성의 혼인상태를 기혼과 미혼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최종적인 가족규모를 계산하였다. 기혼 여성의 실제 자녀 수는 전체 여성보다 많은 1.30명이지만 출산의향자녀 수는 0.40명에 불과하여 최종적인 가족 규모는 1.70명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최종적인 가족규모는 전체 여성의 최종적인 가족규모인 1.42명보다 0.28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혼 여성의 실제 자녀 수는 0.00명으로 조사되었고, 출산의향 자녀 수는 0.90명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미혼 여성의 실제 자녀 수가 0에 근접한 것은 (예상보다 낮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최종적인 가족 규모가 1명에 미치지 못하는 0.90명으로 나타난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16)]

---

15)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지표 설명자료는 '최종적인 가족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더 갖고자 하는가라는 별도의 질문을 활용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16) 이상의 혼인상태별 최종적인 가족규모 측정에서, 기혼(특히 유배우)에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을 기혼으로 분류하는 대신 미혼으로 분류한다면, 미혼여성의 실제 자녀 수는 좀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원자료 분석 결과, 사실혼인 여성의 실제 자녀 수는 0.10명, 출산의향 자녀 수는 1.20명, 최종적인 가족규모는 1.30명으로 측정되었다.

〈표 2-11〉 한국 여성(25~39세)의 최종적인 가족 규모

(단위: 명)

	실제 자녀 수	출산의향 자녀 수	최종적인 가족 규모
전체	0.84	0.58	1.42
기혼	1.30	0.40	1.70
미혼	0.00	0.90	0.9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를 저자가 직접 계산함.

[그림 2-13]은 25~39세 여성의 실제 자녀 수와 출산의향 자녀 수를 나타낸 것이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는 2011년 유럽바로미터 자료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시했으며, 한국 자료는 누락되어 있었으나,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 자료를 보완하였다. 한국은 OECD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실제 자녀 수 뿐만 아니라 추가출산의향 자녀 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일시점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조사자료도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OECD 22개국 평균을 보면, 실제 자녀 수는 1.31명인데, 추가로 더 갖고자 하는 자녀 수의 평균값은 0.83명으로 최종적인 가족규모는 2.14명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수준이 높은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최종적인 가족규모가 각각 2.60명, 2.29명 등으로 매우 컸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최종적인 가족규모가 각각 1.91명, 1.86명, 1.85명 등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 지표는 현재까지의 자녀 수에 더하여, 앞으로 더 갖고자 하는 자녀 수까지 고려한다면 최종적인 가족규모는 어느 정도일까를 보여준다. 이러한 예측에 출산의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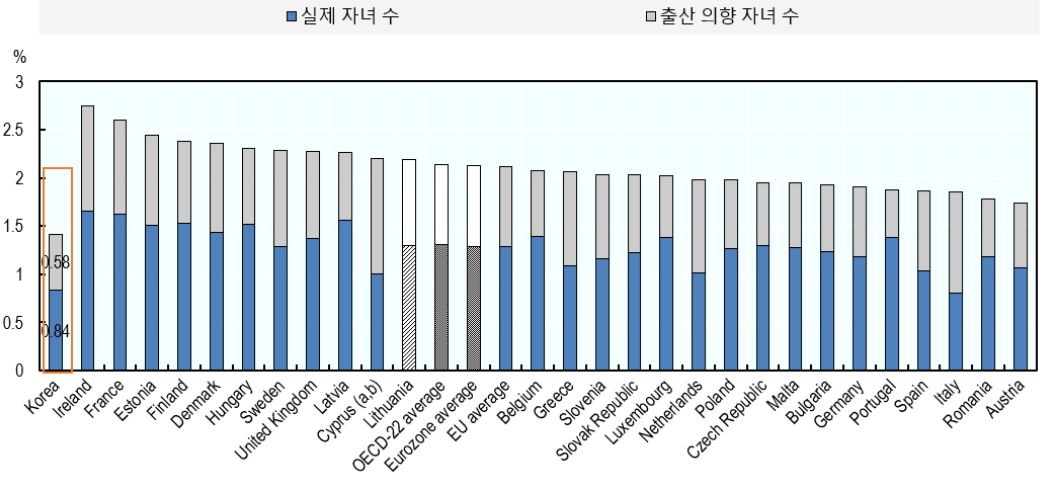
국가 간의 비교는 이 지표의 해석 가능성을 넓혀 준다. 실제 자녀 수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추가 출산의향 자녀 수 수준은 높아서, 출산 외적인 변수의 영향이 없다면 최종적인 가족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가 그런 사례인데, 실제 자녀 수는 0.80으로 매우 낮았지만, 추가출산의향 자녀 수는 1.05명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포루투갈은 실제 자녀 수는 1.38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추가 출산의향 자녀 수는 0.49명으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실제 자녀 수와 추가 출산의향 자녀 수 사이에 일관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주된 출산 연령에 속한 여성들의 추가 출산의향 정보를 통해, 현재의 출산 수준을 넘어 가까운 미래의 출산 수준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가족규모 지표는 실제 자녀 수라는 객관적 성격의 지표와 추가 출산의향이라는 주관적 성격의 지표를 종합하여, 현재와 미래 예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표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측정한 한국 지표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다른 OECD 22개국과 비교하여 실제 자녀 수도 적지만, 출산의향 자녀 수는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실제 출산행동(실제로 낳은 자녀 수)뿐만 아니라 미래의 출산의향도 '초저출산 추세'

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초저출산 추세가 가까운 미래에 쉽게 반전되기 어렵다는 것을 함의한다.

요컨대 최종적인 가족규모 지표는 실제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를 고려한) 추가출산 자녀 수를 통해 산출한 지표로서,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연령(25~39세)에 속한 여성들이 가까운 미래에 출산하고자 하는 자녀 수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인' 가족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이 지표는 이미 일어난 실제 사건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종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OECD 22개국의 최종적인 가족규모는 2.14명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보다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들로 넓게 분포해 있다. 2021년 한국 자료를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실제 자녀 수도 0.84명으로 매우 낮았으나, 추가출산의향 자녀 수를 고려한 최종적인 가족규모는 더 낮아서 1.42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 2-13] Chart SF2.2.C. 최종적 가족 규모: 실제 평균 자녀 수와 출산의향 평균 자녀 수(25~39세 여성)
Chart SF2.2.C. 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11,
Mean average actual and intended number of children, women (25-39)



주: 한국자료는 2021년 조사 결과임.
출처: OECD(2023). Chart SF2.2.C. 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11, Mean average actual and intended number of children, women (25-39) 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다.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1) Chart SF2.3.A.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Mean age of women at birth)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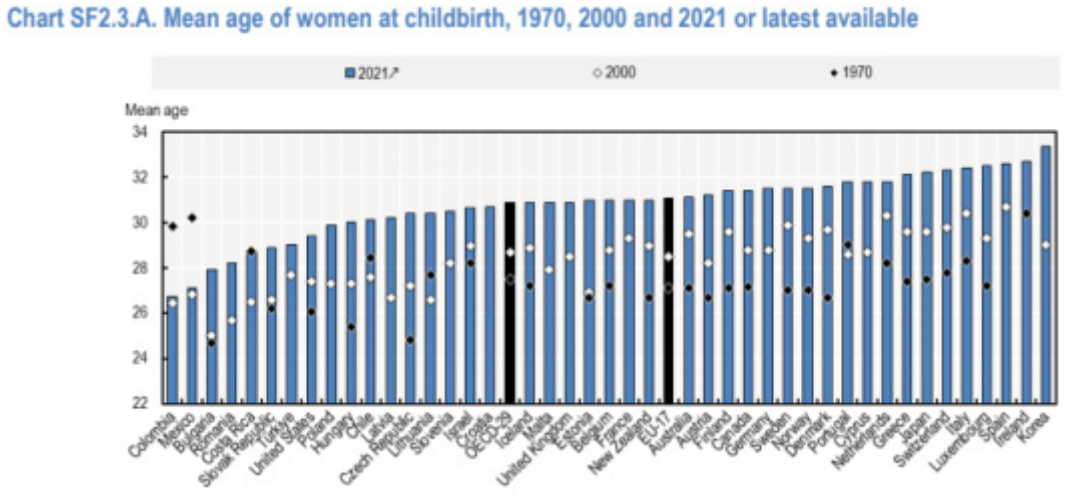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mean age of women at birth)은 여성이 평균적으로 몇 세에 출산하는지를 나타낸 지표이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이 지표는 인구동태통계 출생자료에서 조사한 출산시 모의 연령을 단순 평균한 값으로 측정된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출산순위에 대한 모의 평균 연령(SF2.3.A.)과 뒤에서 살펴볼 첫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SF2.3.B.) 등 두 가지 형태로 출산 연령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4]에서 한국 정보는 현재 가용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먼저 2021년 현재 OECD 29개 국가의 평균을 살펴보면,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은 30.9세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편차가 있지만, 남미의 2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28세가 넘었으며, 7개 국가가 28세와 30세 사이에 있었다. 그 외 20개 국가가 모두 30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33.4세로 측정된 한국이다. 그 외 OECD 평균보다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이 높은 국가들로는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이 있다.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은 최근 20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은 1970년 27.5세, 2000년 28.5세로 30년간 불과 1.0세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00년과 2021년 사이 21년간 2.4세만큼 증가했다.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한국은 이러한 추세를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0년 29.0세에서 2021년 33.4세로 무려 4.4세가 증가했다. 반면 2021년 현재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콜롬비아의 수치는 26.7세인데, 1970년 29.8세에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OECD 평균보다 평균 출산연령이 낮은 국가들로는 멕시코,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미국, 폴란드 등이 있다.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은 첫 출산의 지연에 의해 높아질 수도 있고, 첫 출산 연령은 낮더라도 고순위 출산이 지속되어 높아질 수도 있다. 가령 1970년 콜롬비아의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이 29.8세, 멕시코 30.2세 등으로 비교적 높았던 것은 이들 국가의 당시 합계출산율이 각각 5.28과 6.23으로 높았고 고순위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2021년 한국(33.4세), 스페인(32.6세), 이탈리아(32.4세), 일본(32.2세)의 평균 출산 연령이 높은 것은 이들 국가들이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첫 출산이 늦은 데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첫 출산 평균 연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4] Chart SF2.3.A.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출처: 유럽 및 튀르키예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한국 KOSIS 등; OECD(2023). Chart SF2.3.A. Mean age of women at birth에서 재인용

2) Chart SF2.3.B.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Mean age of women at first birth) (적절)

첫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mean age of women at birth)은 여성이 평균적으로 몇 세에 첫 출산을 하는지를 나타낸 지표이다.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OECD국가에서 첫 출산 시 모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다. 한국은 32.6세, 이탈리아는 31.6세, 스페인은 31.6세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불가리아로 26.5세, 튀르키예 26.6세, 칠레 27.1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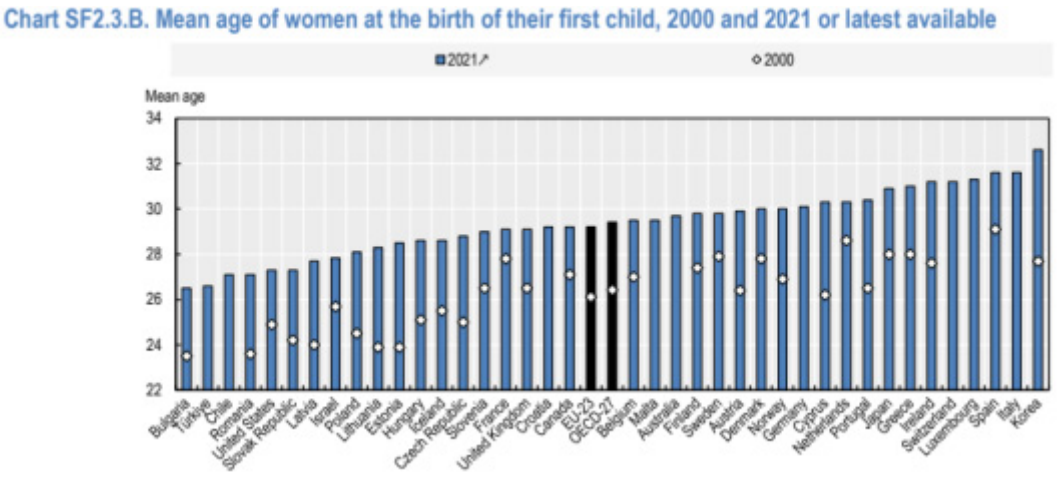
OECD 27개국 평균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은 29.2세이며, 2000년 26.1세보다 3.1세 상승했다. EU 23개국 평균은 그보다 0.2세 높은 29.4세이다.

결측값이 1개국밖에 없는 2000년 수치를 기준으로 2021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OECD 모든 국가들이 이 두 시점 사이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는 한국으로 4.3세, 에스토니아 4.1세, 리투아니아 3.8세, 라트비아 3.5세, 룩셈부르크 3.2세 등이다. 이 두 시점 사이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상승폭이 가장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 0.26세, 멕시코 0.29세, 튀르키예 1.3세, 네덜란드 1.5세 등이다. 이처럼 OECD 모든 국가들은 지난 약 20년 사이 첫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한국과 같이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와 콜롬비아, 멕시코 등과 같이 아주 미미하게 상승한 국가 등 OECD 국가 내부에도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과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은 출산력 변화를 구성하는 두 요소, 즉 출산 수준(quantum or level)의 변화와 출산 속도(tempo or timing)의 변화 중에서

출산 속도와 관련된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전체 출생순위를 아우른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지표는 출생순위별 평균 출산연령에서의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출산력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출생순위별 평균 출산연령이 선호된다(Bongaarts and Feeney, 1998; 우해봉 외, 2020:133에서 재인용).

[그림 2-15] Chart SF2.3.B.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출처: 유럽 및 튀르키예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한국 KOSIS 등; OECD(2023). Chart SF2.3.B. Mean age of women at first birth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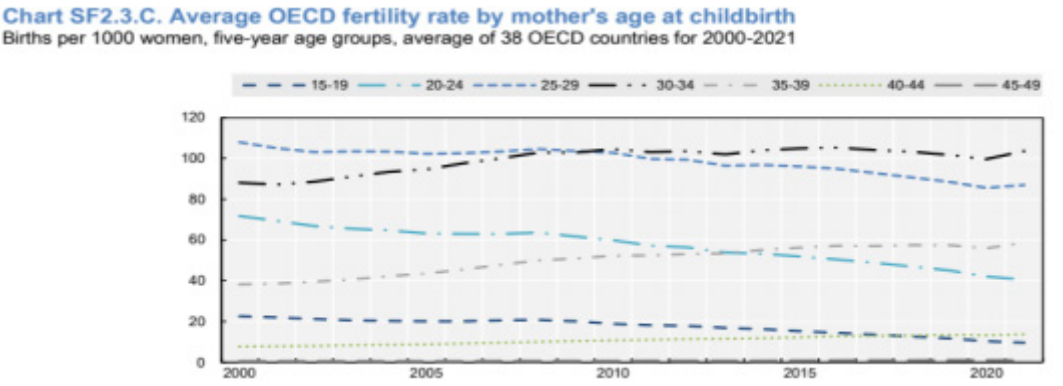
3) Chart SF2.3.C.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 (적절)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Average OECD fertility rate by mother's age at childbirth)은 OECD 38개 국가의 연령별 출산율을 평균한 값이다. 이 지표의 기초자료는 각 국가의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s)인데, 연령별 출산율은 특정 1년 동안 15~49세까지의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6]은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보여주지는 않고 OECD 평균값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국가의 연령별 출산율 지표는 뒤의 SF2.3.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룬 OECD 국가 평균 자료의 자료출처를 보면, 한국의 연령별 출산율 공표자료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6]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서 지난 20여년간 출산의 지연 추세가 뚜렷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0년 이래로 15~19세, 20~24세의 저연령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2010년대 이후로는 25~29세의 출산율 하락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0~34세 출산율은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상승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미미한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35~39세와 40~44세 각각의 연령별 출산율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에서 연령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구간은 2000년 25~29세에서 2020년 30~34세로 바뀌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첫출산 평균 연령의 상승 추세와 일치한다.

[그림 2-16] Chart SF2.3.C.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



출처: 유럽 및 튀르키예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한국 KOSIS 등; OECD(2023). Chart SF2.3.C. Average OECD fertility rate by mother's age at childbirth에서 재인용

4) Chart SF2.3.D. 청소년 출산율(Adolescent fertility rate)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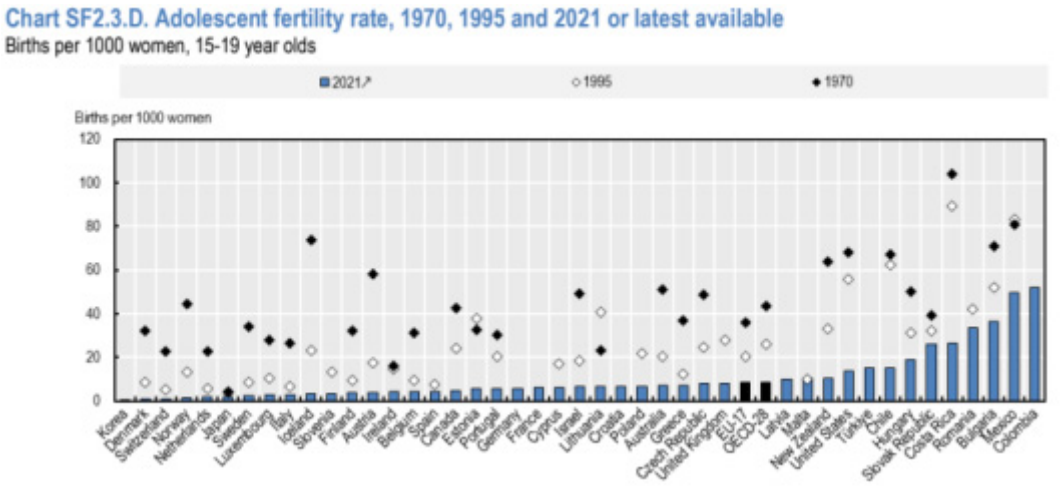
청소년 출산율은 15~49세의 5세 간격 연령별 출산율의 일부 연령인 15~19세의 연령별 출산율 수치를 의미한다. 연령별 출산율에서 일부 연령구간을 특정화한 지표이므로, 앞서 살펴본 합계출산율, 평균 출산연령 등의 기초자료인 연령별 출산율의 자료 특성과 동일하다. 현재 SF2.3.D.의 한국 정보는 2020년과 2021년만이 포함되어 있고, 1970년과 1995년은 누락되어 있는데, 연령별 출산율 정보는 통계청이 1993년 이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1995년 자료는 추가할 수 있다. 1995년 한국의 청소년 출산율은 3.7명이다(통계청(2023.8.30.:31)).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는 청소년 출산율의 연령범위를 15~19세로 정하고 있다. 이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중 하나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청소년 출산율의 연령범위인 10~19세와 차이가 있다(United Nations, 2020; 우해봉 외, 2020: 121에서 재인용). 연령별 출산율 정보가 15세부터 제공된다는 점과 15세 미만의 출산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이, 여성의 첫 출산연령은 지난 1970년 이래로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청소년 출산율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먼저 OECD 28개국 평균은 15~19세 여성

인구 1,000명당 8.7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는 1970년 43.4명, 1995년 26.0명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OECD 평균 수준에서는 청소년 출산이 드문 현상이지만, 국가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콜롬비아, 멕시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코스타리카,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2021년 현재 청소년 출산율이 2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으로 0.4명이고,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등이 1~2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7] Chart SF2.3.D. 청소년 출산율



출처: 유럽 및 튀르키예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한국 KOSIS 등; OECD(2023). Chart SF2.3.D. Adolescent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1 or latest available에서 재인용

5) Chart SF2.3.E.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Age-fertility profiles)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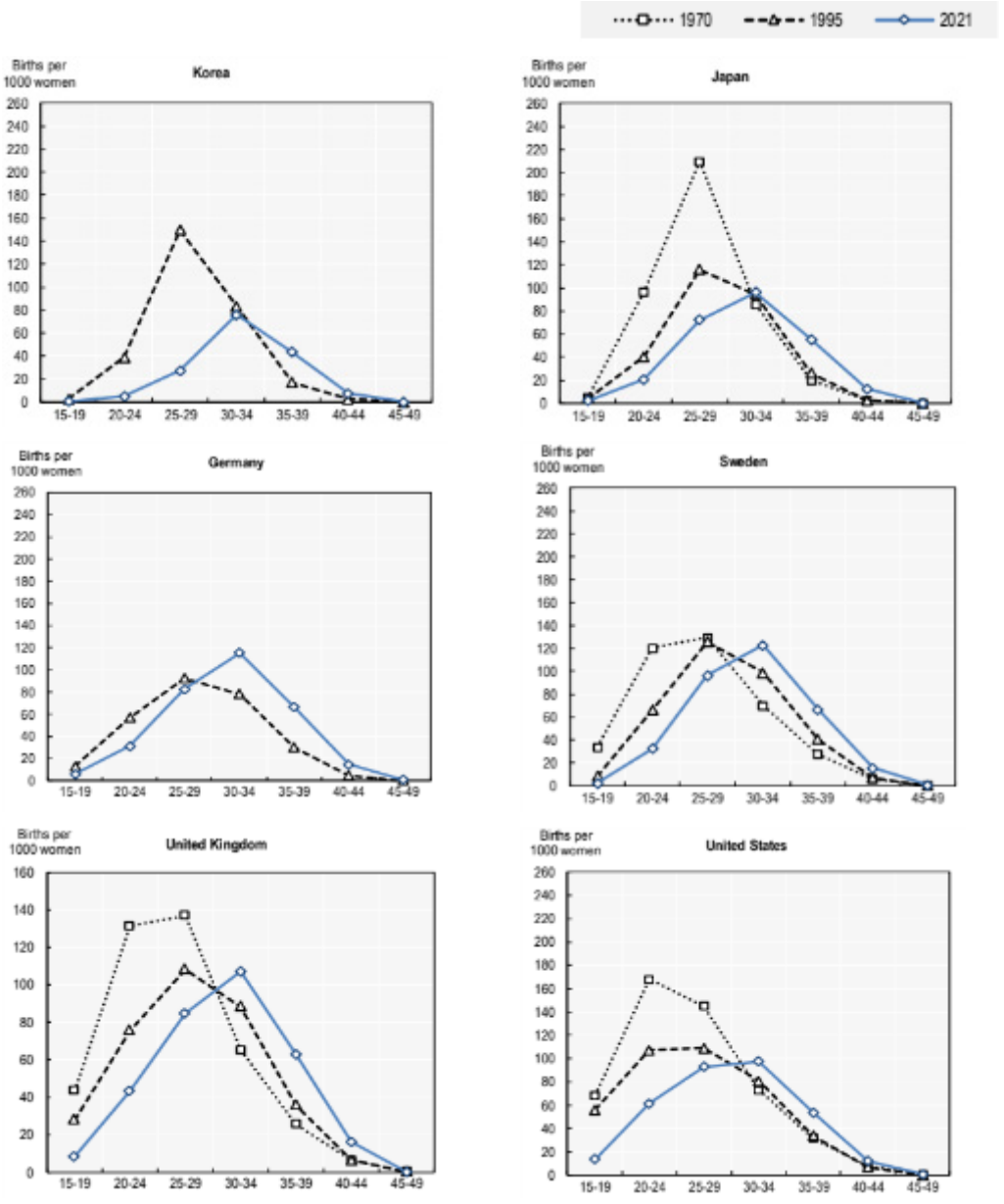
[그림2-18]은 OECD 일부 국가의 연령별 출산율을 시점별로 나타낸 것이다. 1993년 이전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가 없는 한국과 통일 이전에 해당되는 독일은 1970년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 15~49세에 해당되는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한 것이 합계출산율이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을 각 연령별로 구분한 것이 연령별출산율이라고 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압축적인 지표라면, 연령별 출산율은 실제 출산이 개인의 생애 중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가를 분포를 통해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연령별 출산율 패턴은 가장 출산율이 높은 연령을 정점으로 하는 종 모양을 띄고 있다. 국가와 시점에 따라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구간은 차이가 있지만 25~29세이거나 30~34세이며, 이로부터 멀어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패턴이다. 1970년대에는 자료가 있는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출산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미국은 20대 초반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1995년에는 20대 후반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되었으며, 2020년에는 30대 초반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는 한국은 물론, 일본,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등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의 연령별 출산율 패턴은 이러한 선진산업국가의 변화 흐름을 공유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연령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에서도 출산율 수준이 매우 낮아 76.1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인 103.6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치이며, 일본 96.2, 독일 115.2 등보다도 낮다. 또한 한국은 나머지 5개 국가와 비교하여 25~29세 출산율이 매우 낮아 27.5에 불과하며, 오히려 35~39세 출산율은 그보다 높은 43.5로 나타났다. 이처럼 20대 후반 출산율이 30대 후반보다 낮은 것도 한국의 특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정점에서 먼 연령구간의 출산율도 낮은 특징을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이 15~19세 청소년 출산율은 0.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40~44세 출산율도 7.6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3.8보다 낮다.

[그림 2-18] Chart SF2.3.E.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
Chart SF2.3.E. Age-fertility profiles, 1970, 1995 and 2021 or latest available



주: 한국은 1995년이 아닌 2000년 자료.
출처: 유럽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한국 KOSIS 등; OECD(2023). Chart SF2.3.E. Age-fertility profiles, 1970, 1995 and 2021 or latest available에서 재인용

라.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1) Chart SF2.4.A.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적절), Chart SF2.4.B.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ver time) (적절)

혼인 외 출생 비율은 자녀 출생 시점에 어머니 또는 부모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비율로 측정된다. 국가에 따라 혼인 외 출생비율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먼저 개인(어머니)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다. 부모의 혼인관계를 통해 혼인 외 출생비율을 산출한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며, 나머지 모든 국가는 부모가 아니라 어머니의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혼인 외 출생 비율을 산출한다. 또한 혼인 외 출생 비율은 전체 혼인상태 대비 혼인 외 출생의 비율인데, 전체 혼인상태가 전체 출생 건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모 또는 개인의 혼인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출생을 제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은 부모를 기준으로, 출생 자녀 부모의 법적 혼인지위를 통해 혼인 외 출생 비율을 산출한다. 현재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생 항목에서 1981년 이후 매해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건수를 제시하고 있다. 2020년 혼인 외 출생 비율을 나타낸 SF2.4.A에 한국 자료는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SF2.4.B의 한국자료는 검토가 필요하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혼인 외 출생비율을 산출할 수 있는 연도는 1981년 이후이므로, 1970년 한국 자료의 자료원은 확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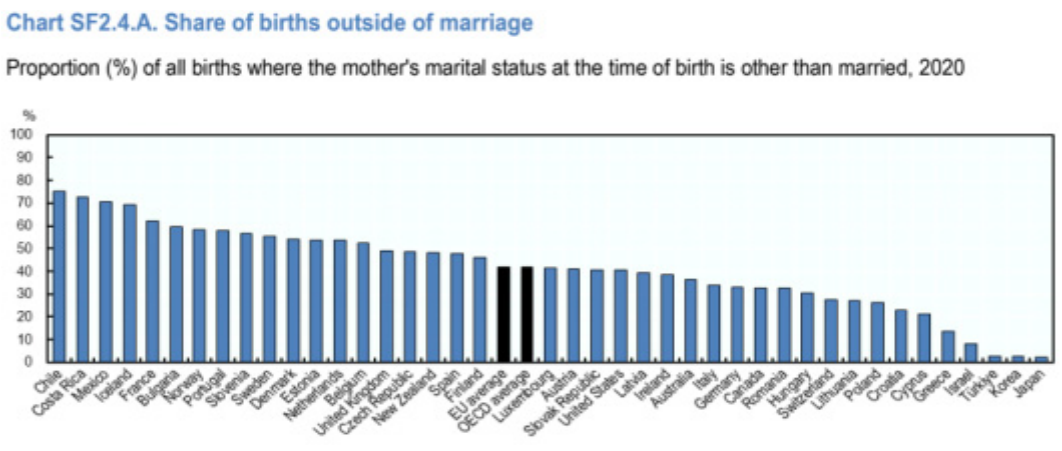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2-19, 20]을 통해 국가별 혼인 외 출생 비율 수준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우선 국가 간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일본(2.4%), 한국(2.5%), 튀르키예(2.8%), 이스라엘(8.1%) 등은 법적 혼인 외 출산의 비율이 극히 낮다. 반면 칠레(75.1%), 코스타리카(72.5%), 멕시코(70.4%), 아이슬란드(69.4%), 프랑스(62.2%) 등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법적 혼인 외 출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다. OECD 26개 국가 평균 혼인 외 출생 비율은 41.9%로 나타났다.

[그림 2-20]은 각국의 혼인 외 출생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2020년 현재 혼인 외 출생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은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혼인 외 출생 비율이 증가했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은 1995년에는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지만, 최근 25년 사이 이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서 상위에 배치되었다.

1995년과 2020년 사이 혼인 외 출생 비율이 30%p 이상 증가한 국가들을 2020년 혼인외 출생 비율의 내림차순으로 제시하면, 멕시코, 불가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스페인 등이다. 특히 스페인은 1970년 혼인 외 출생비율이 1.4%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11.1%로 OECD 평균(23.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크게 증가했고, 2020년에는 47.6%로 늘어났다. 전통적으로 혼인 외 출생 비율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화적 규범과 가족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 OECD 국가들의 혼인 외 출생 비율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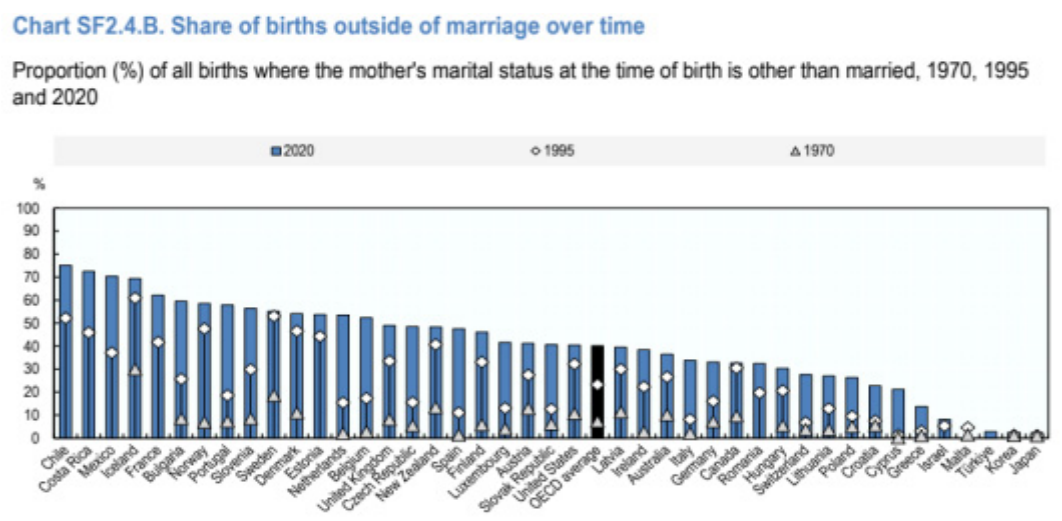
하는 추세를 보면, 이제 더 이상 혼인 외 출생을 가족제도나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9] Chart SF2.4.A. 혼인 외 출생 비율



주: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는 출생 시 부모가 서로 혼인 상태가 아님, 나머지 국가들은 출생 시 어머니가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를 나타냄.
출처: 유럽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한국 KOSIS 등; OECD(2023). Chart SF2.4.A.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에서 재인용

[그림 2-20] Chart SF2.4.B.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



주: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는 출생 시 부모가 서로 혼인 상태가 아님, 나머지 국가들은 출생 시 어머니가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를 나타냄.
출처: 유럽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한국 KOSIS 등; OECD(2023). Chart SF2.4.B.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ver time에서 재인용

마. SF2.5 무자녀(Childlessness)

1) Table SF2.5.A. 40-44세 무자녀 여성(Childless women at age 40-44) (자료없음), Chart SF2.5.A. 최종 무자녀(Definitive childlessness) (자료없음), Chart SF2.5.B. 최종 무자녀 비율과 완결출산율(Definitive childlessness and completed fertility rates) (자료없음)

이 세 개의 지표는 첫 번째 지표인 40-44세 무자녀 여성(Childless women at age 40-44) 지표(Table SF2.5.A.)를 기반으로 가공한 지표들이다. 40~44세 무자녀 여성 지표는 40~44세 연령집단에 속한 여성 중 출산한 자녀 수가 0명인 여성의 비율로 산출한다. 한국은 1990년과 2005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한국 자료의 자료원인 인구주택총조사(한국 인구센서스)의 해당 조사 항목은 혼인상태가 미혼인 자를 제외하고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인 여성만 응답한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 SF2.5A의 한국 자료는 무자녀여성 비율이 아니라 무자녀기혼여성 비율이며, 타 국가와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김은지 외, 2023: 40-41). 무자녀비율을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로 대체하여 보고하는 것은 40~44세 여성의 미혼율이 급증하는 현재 추세를 고려했을 때, 더욱 적절하지 않다. 202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40~44세 여성의 미혼율은 14.7%로 나타났으며(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전체 여성의 무자녀비율에 대한 근사치로 활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로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21년 이후 가족과 출산조사(구 출산력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 조사는 기혼여성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포함하고 기혼과 미혼을 모두 포함하는 19~49세 성인 대상의 조사로 개편되었다(박종서 외, 2021). 이 조사에서는 출산경험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다루며, 출산경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조사대상의 연령이 19~49세인 점, 그리고 2021년 조사결과가 활용가능한 유일한 결과라는 제한성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되 40~44세 미혼여성을 모두 무자녀여성으로 간주함으로써,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무자녀율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유삼현·소보츠카(Yoo and Sobotzka, 2018)도 이러한 가정을 적용하여 코호트완결출산율을 산출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이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미혼여성을 모두 무자녀 여성으로 간주하고 미혼과 기혼을 모두 포함하여 무자녀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더 나은 방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나은 방법에 불과하다.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 비율이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고 2022년 현재 2.9%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증이 일시적인 것인지 추세적인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미혼여성의 출산율이 사실상 0명이라는 가정이 현실과 동떨어질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12〉 전체 출생 중 혼인 외부 출생 비율: 2012~2022년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혼인 외부 출생	2.1	2.1	2.0	1.9	1.9	1.9	2.2	2.3	2.5	2.9	3.9
혼인 중 출생	97.9	97.9	98.1	98.1	98.1	98.1	97.8	97.7	97.5	97.1	96.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법적 혼인상태미상 제외
출처: 통계청(2023.8.30.: 10) 〈표 10〉

바. 출산력 지표 요약

SF2.1 출산율(Fertility rates) 지표는 한 사회의 출산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가 사이, 또는 시점 사이에서 출산수준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출산율 지표에 포함된 하위지표는 합계출산율, 코호트완결출산율,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등의 지표이며, 한국은 모든 하위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비교 가능한 거의 모든 국가들보다 출산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F2.2 이상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지표는 실현된 출산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출산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 시각과 일반적 시각에서 이상적 자녀수를 관찰하고 측정한 지표이다. 한국은 이 영역의 모든 하위지표에 누락되어 있으나, 최종적 가족규모 지표는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결과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실현된 출산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갖고자 하는 자녀수도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지표는 실제 출산이 여성의 재생산 기간(15~49세) 중 어느 시점에 분포해 있는가를 나타낸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 또는 시점에 따라 15~49세의 전반부 또는 후반부에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출산속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은 일부 지표의 경우 1970년 자료가 자료원의 부재로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시기가 가장 늦은 것을 확인했다.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지표는 비율 지표와 비율의 추이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은 1970년 자료 없음 사유로 비포함된 것을 제외하고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OECD 평균 수준에서 혼인 외 출생 비율은 41.6%이나, 한국은 2.5%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했다.

SF2.5 무자녀(Childlessness) 지표는 40-44세 무자녀 여성, 최종 무자녀, 완결출산율 등의 하위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은 기혼여성의 무자녀율 지표는 생산 가능하나, 미혼여성의 무자녀율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체 여성의 무자녀 지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

정리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가장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한국의 초저출산 수준은 최근 20년 사이에 심화된 결과이다. 동일한 시기 동안 OECD 국가 평균 수준에서 나타난 변화의 추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수준은 하락하고 출산시기는 늦춰지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국은 변화가 급격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출산력 지표의 수치도 매우 극단적이라는 점에서, OECD 국가들의 평범한 사례로 간주할 수 없다. 오히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국가별 출산력 지표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이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겪는 동안 출산율의 상승을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출산력 지표의 항목에는 출산수준이나 시기와 더불어, 출산의 성격을 드러내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자녀수, 혼인 외 출생, 무자녀 등의 지표는 합계출산율로 대표되는 출산력 지표가 어떤 사회적 과정과 변화의 산물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그러나 한국은 해당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주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출산행동 및 의식에 대한 조사가 부재한 데에 기인했다. 한국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출산력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혼인 및 파트너십 상태

가. SF3.1 혼인율과 이혼율(Marriage and divorce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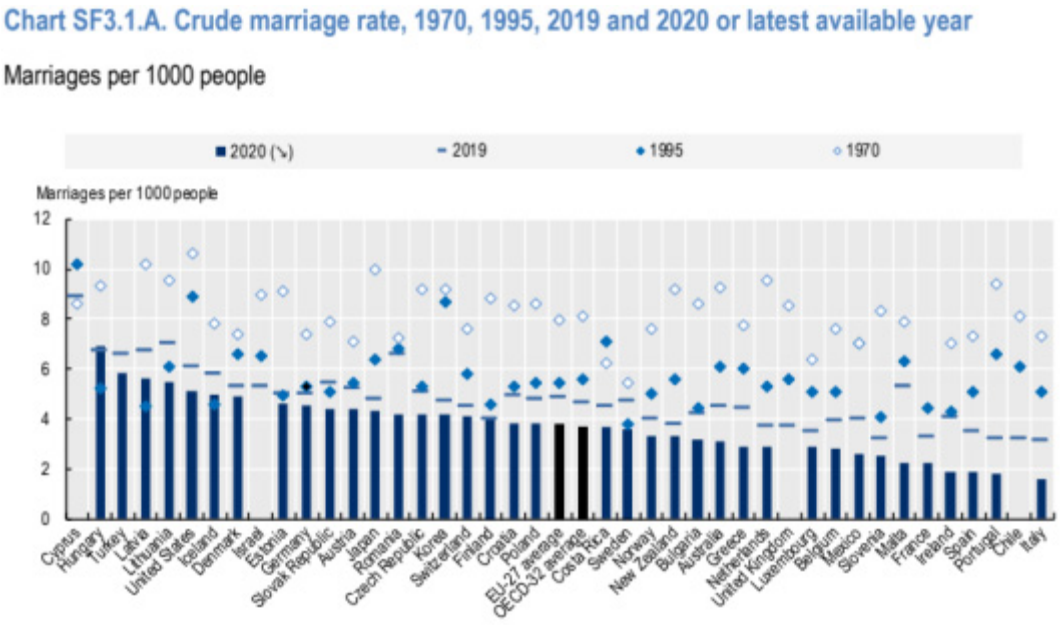
1) Chart SF3.1.A.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적절)

조혼인율(Crude divorce rate)은 1,000명당 특정 연도에 발생한 혼인 건수로 정의된다. 한국의 경우 인구동향조사(2019)를 활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 OECD 평균 조혼인율은 1,000명당 8.1건이었으나 1995년에는 5.6건, 2019년에는 4.6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OECD 평균 조혼인율은 1,000명당 3.8건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결혼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경우 1970년 조혼인율이 각각 1,000명당 9.0건 이상으로 OECD 국가 평균(8.1건)보다 상향하는 수치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OECD 국가 평균(3.7건) 이하의 수치를 보여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한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조혼인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970년에는 1,000명당 9.2건, 1995년에는 8.7건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2019년에는 4.7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2020년에는 1,000명당 4.2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21] Chart SF3.1.A. 조혼인율



주: OECD 평균은 데이터가 모든 4개의 시점에서 제공된 32개 국가들의 가중치 없는 평균임.
출처: 유럽, 튀르키예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한국 KOSIS 등; OECD(2023). Chart SF3.1.A. Crude marriag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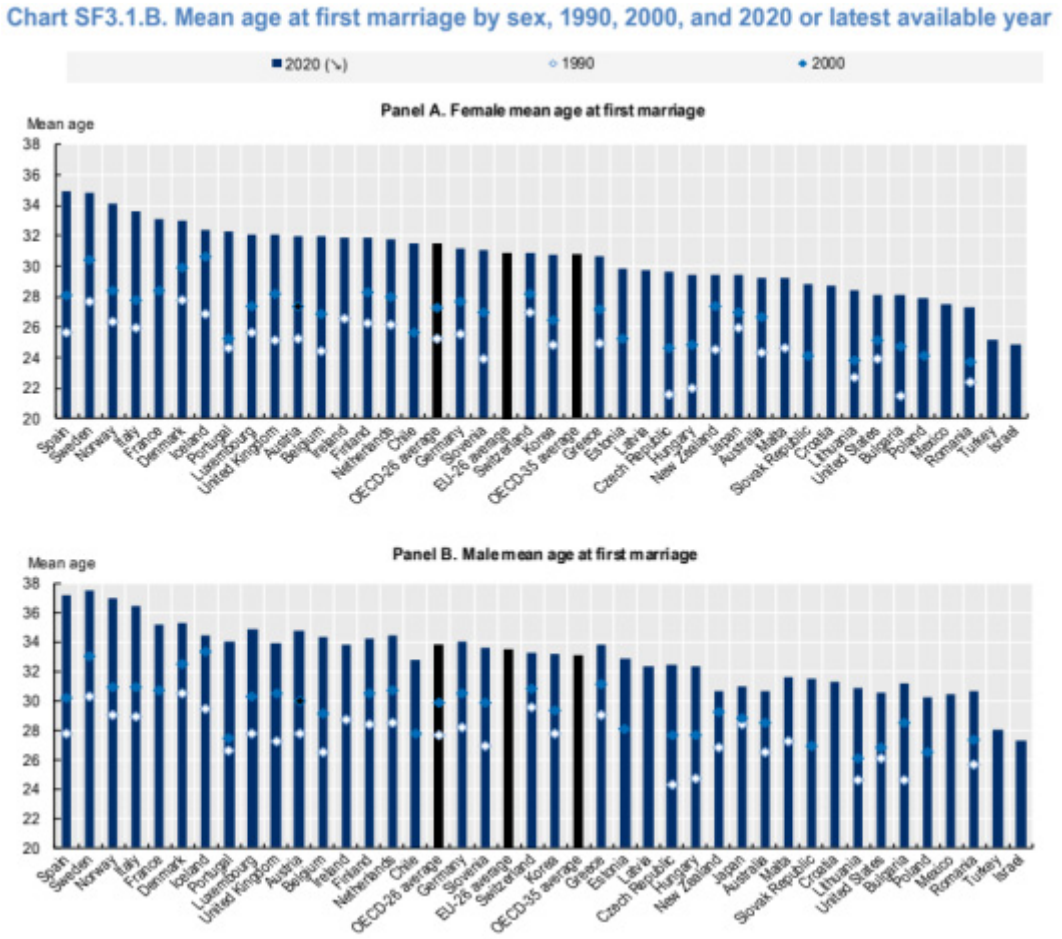
2) Chart SF3.1.B.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적절)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지표도 인구동향조사(2019)를 활용하고 있어, 한국의 자료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초혼 당시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초혼 당시 여성의 평균 연령은 22세에서 27세 사이에, 남성의 평균 연령은 24세에서 30세 사이에 있었으나, 2020년에 들어서면서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3.1세,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5세로 증가하였다.

국가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초혼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남성은 평균 37.5세, 여성이 평균 34.8세에 처음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웨덴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덴마크 등 주로 북유럽 국가에서 초혼 연령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2020년 초혼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초혼 당시 평균 연령이 남성 27.3세, 여성 24.9세로 나타났다.

[그림 2-22] Chart SF3.1.B.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



출처: 유럽, 튀르키예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한국 KOSIS 등; OECD(2023). Chart SF3.1.B. 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199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 1990년대의 초혼 당시 평균 연령은 남성 27.8세, 여성 24.8세였으나, 2020년에는 남성 33.2세, 여성 30.8세로, 대부분의 OCE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초혼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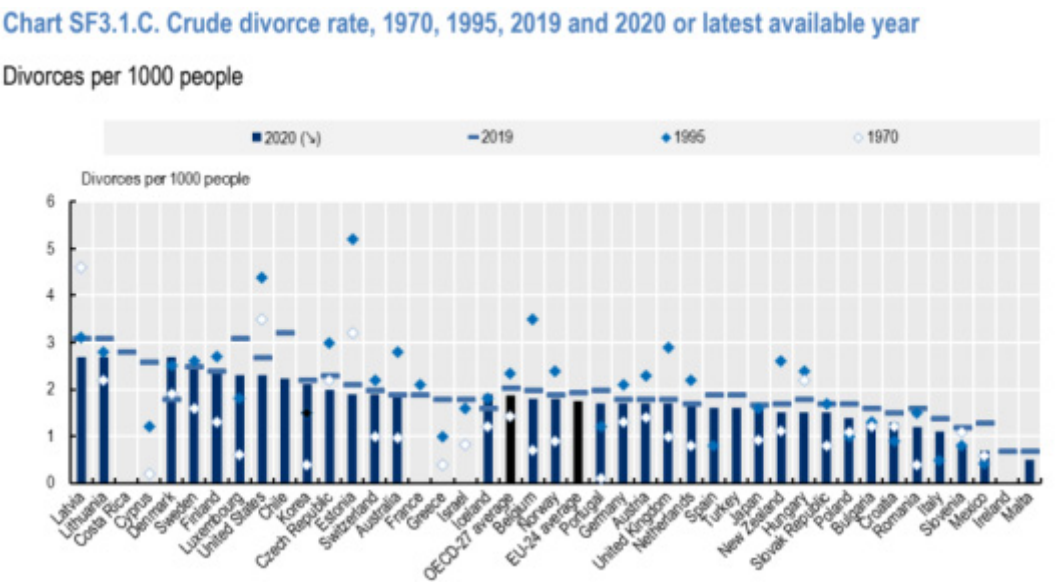
3) Chart SF3.1.C.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 (적절)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1,000명당 특정 연도에 발생한 이혼 건수로 정의된다. 조이혼율의 지표 역시 인구동향조사(2019)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대부터 1995년까지의 OECD 평균 조이혼율은 1,000명당 1.4건에서 2.4건으로 증가

하였으나 2019년에 2.0건, 2020년에는 1.9건으로 감소하였다. 조이혼율의 증감 추세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 미국,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는 1970년부터 1995년까지 1,000명당 평균 3.0건 이상의 높은 이혼율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평균 2.7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1970년 기준 1,000명당 평균 0.5건 이하의 이혼율을 나타내는 한국,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2019년 이후 1,000명당 평균 1.5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70년에는 1,000명당 평균 0.4건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혼율을 보였으나, 1995년에는 1.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평균 2.2건, 2.1건으로 점차 조이혼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2-23] Chart SF3.1.C. 조이혼률



출처: 유럽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한국 KOSIS 등; OECD(2023). Chart SF3.1.C. Crude divorc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에서 재인용

4) Chart SF3.1.D.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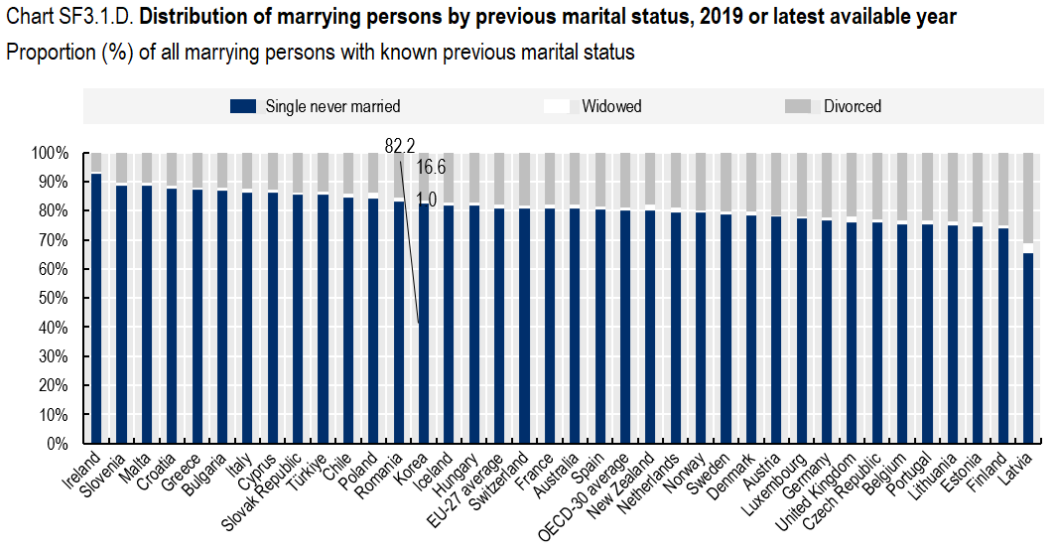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기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 지표는 기혼자들의 이전의 혼인상태에 따른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전체 기혼자 중에서 이전에 한 번도 결혼을 한 경험이 없는 미혼 유형, 사별한 경험이 있는 유형, 이혼 경험이 있는 유형 등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이전 혼인상태별 분표 지표는 1차연도 연구(2023년) 당시에는 보고되지 않고 있어 누락으로 분류하였었으나(김은지 외, 2023: 45), 현재(2024년) 시점에서 OECD가 한국의 자료를 추가로 업데이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에서 '혼인종류별 혼인 건수'를 '초혼', '재혼(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 '미상'으로 구분하여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통계청, 2024.3.19.).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혼자 중 82.2%는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한 경험이 있는 자는 16.6%, 사별한 경험이 있는 자는 1.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OECD 30개국 평균 결혼한 경험이 없는 기혼자 비중은 80.0%인 것으로 확인되어, 기혼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혼인 상태가 미혼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혼한 경험이 있는 기혼자는 18.7%로 나타났으며, 기혼자의 1.2%의 사람만이 이전에 사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를 상세히 살펴보면, 국가별 차이가 적지 않다. 예컨대, 아일랜드의 기혼자 대부분(92.6%)은 결혼 이전에 다른 혼인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라트비아 기혼자의 경우 65.5%만이 이전 혼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라트비아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기혼자는 31.2%로 높은 반면, 아일랜드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기혼자는 6.6%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경우 이전 혼인 경험이 없는 기혼자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혼 경험이 있는 기혼자는 16.6%로, 대체로 OECD의 평균적인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4] Chart SF3.1.D.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



출처: OECD(2024). Chart SF3.1.D. 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요약하면,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 지표는 전체 기혼자 중에서 이전에 한 번도 결혼을 한 경험이 없는 미혼 유형, 사별한 경험이 있는 유형, 이혼 경험이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혼자의 전체 지형을 제시한다. 2024년 현재 한국의 이전 혼인상태별 분표 지표는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기혼자 중 82.2%는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한 경험이 있는 자는 16.6%, 사별한 경험이 있는 자는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의 평균적인 수준(결혼한 경험이 없는 기혼자 비중은 80.0%, 이혼한 경험이 있는 기혼자 비중 18.7%, 이전에 사별 경험이 있는 기혼자 비중 1.2%)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SF3.2 가족 해체와 아동(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1) Table SF3.2.A.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적절)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지표는 이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몇 년 간 유지하였는지에 대해 세부 기간별(1년 이하, 1-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알 수 없음)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지표는 UN Demographic Yearbook(2018) 자료를 활용하였고, 한국의 경우 모두 적절히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의 혼인기간별 이혼분포를 살펴보면, 혼인 20년 이상일 때가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년에서 9년(22.8%), 10년에서 14년(17.7%), 1년에서 4년(16.2%) 혼인기간 순으로 이혼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이탈리아, 칠레, 포르투갈의 경우 약 35%가 넘는 비율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이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미만 혼인기간에서 이혼한 경우가 OECD 평균 1% 미만인 것에 비해, 일본은 6.1%, 이스라엘 5.5%, 한국 3.5%로 다른 국가에 비해 1년 미만 혼인기간에서의 이혼분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혼인기간별 이혼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이혼 비율을 나타낸 혼인기간은 20년 이상이 33.4%로 가장 높았으며, 5년에서 9년(18.5%), 1년에서 4년(17.9%), 10년에서 14년(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3〉 Table SF3.2.A.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

Table SF3.2.A. 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2017 or latest

	Duration of Marriage before divorce (%):						
	Less than 1 year	1 to 4 years	5 to 9 years	10 to 14 years	15 to 19 years	20+ years	Not stated
Australia	0.0	16.5	26.0	17.1	13.0	27.4	0.0
Austria	0.3	21.1	24.2	16.8	13.1	24.3	0.0
Belgium	0.1	13.8	25.0	18.6	12.6	30.0	0.0
Canada	..	..	..	..	..	..	..
Chile	0.7	7.9	11.8	17.3	13.5	39.2	9.5
Colombia	..	..	..	..	..	..	..
Czech Republic	0.2	13.9	22.0	19.1	14.0	30.3	0.4
Denmark	1.3	19.6	23.6	19.7	14.5	20.3	1.0
Estonia	0.5	22.3	22.7	13.9	8.3	25.8	6.5
Finland	0.1	20.5	29.9	18.4	11.7	19.4	0.0
France	0.1	12.2	24.4	19.2	15.4	24.1	4.7
Germany	0.0	12.0	24.5	18.9	15.0	29.6	0.0
Greece	0.1	11.0	22.1	19.3	15.7	31.8	0.0
Hungary	0.2	15.2	18.8	18.3	14.8	32.7	0.0
Iceland	1.2	21.2	26.2	19.6	12.2	19.4	0.0
Ireland	..	..	..	..	..	..	..
Israel (a)	5.5	22.1	19.5	14.3	10.9	19.0	8.9
Italy	0.0	4.2	17.2	18.6	16.9	43.1	0.0
Japan	6.1	25.2	19,9	13,3	10,8	18,0	5.3
Korea	3.5	17.9	18.5	14.3	12.5	33.4	0.0
Luxembourg	0.1	12.9	25.2	19.0	16.2	26.6	0.0
Latvia	0.6	21.8	23.3	18.4	9.1	26.9	0.0
Lithuania	0.3	18.9	23.6	17.3	9.7	30.2	0.0
Mexico	1.1	17.1	19.9	15.7	14.8	30.7	0.9
Netherlands	0.3	14.1	22.5	17.5	15.5	30.1	0.0
New Zealand	..	11.1	23.7	18.6	15.2	31.5	0.0
Norway	0.1	14.0	28.3	19.7	14.1	21.0	2.8

	Duration of Marriage before divorce (%):						
	Less than 1 year	1 to 4 years	5 to 9 years	10 to 14 years	15 to 19 years	20+ years	Not stated
Poland	0.0	12.0	25.1	18.4	14.5	30.0	0.0
Portugal	0.6	11.0	16.8	15.9	16.3	39.4	0.0
Slovakia	0.1	12.8	20.0	17.7	14.7	34.7	0.0
Slovenia	0.4	15.0	21.3	14.7	13.9	34.7	0.0
Spain	0.2	11.6	20.9	18.2	14.8	34.2	0.0
Sweden	0.5	24.8	29.3	17.4	10.5	16.4	1.2
Switzerland	0.3	11.8	24.6	19.1	14.4	29.9	0.0
Turkey	1.1	29.3	23.3	16.6	11.5	18.1	0.1
United Kingdom	0.1	14.7	25.6	19.9	13.7	26.1	0.0
United States	..	..	..	..	..	..	..
OECD-32 average	0.8	16.2	22.8	17.7	13.5	28.3	1.3
Bulgaria	0.5	14.1	17.9	17.2	13.8	36.5	0.0
Croatia	0.6	14.0	21.8	18.8	14.4	30.5	0.0
Cyprus (b,c)	..	..	..	..	..	..	..
Malta	..	..	..	..	..	..	..
Romania	0.6	17.0	22.3	19.8	13.1	27.1	0.0

출처: Australia, Chile, Iceland, Israel, Japan, Korea, Mexico and New Zealand,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book,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products/dyb/default.htm, for all other countries,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OECD(2023). Table SF3.2.A. 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2017 or latest에서 재인용

2) Table SF3.2.B.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적절)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지표는 연관된 자녀의 수를 상세히 구분(연관된 자녀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알 수 없음)하여 보고하고 있다. 해당 지표 역시 UN Demographic Yearbook(2018)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의 수치는 적절히 업데이트 된 것으로 확인된다.

OECD 국가의 평균 자녀 수에 따른 이혼분포를 살펴보면, 이혼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55.6%)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가 한 명(28.1%) 또는 두 명(21.3%)일 때가 세 명 이상(6.6%)일 때보다 비교적 이혼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국가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 포르투갈이 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할 확률보다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할 확률이 70% 이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이혼분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오히려 자녀가 없을 때 이혼한 비율이 70.7%로 상반된 수치를 나타냈다.

한국의 자녀 수에 따른 이혼분포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을 때가 53.0%로 이혼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없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혼분포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때 이혼한 확률은 3.4%에 불과하였다.

〈표 2-14〉 Table SF3.2.B.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

Table SF3.2.B. 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2017 or latest

	Proportion (%) of divorces					
	Divorces not involving children	Divorces involving children:				Unknown
		Total	1 child	2 children	3 or more children	
Australia	52.9	47.1	18.8	20.1	8.2	..
Austria	37.1	62.9	24.5	28.9	9.6	..
Czech Republic	41.0	59.0	29.8	25.8	3.4	..
Estonia	45.2	54.8	30.0	20.1	4.6	..
Finland	37.0	63.0	22.1	26.4	14.6	..
France	47.5	52.5	23.3	21.7	6.1	..
Germany	49.8	50.2	26.4	18.8	5.0	..
Greece	23.9	76.1	29.1	31.4	7.9	7.8
Hungary	46.2	53.8	29.9	19.0	4.9	..
Iceland	40.9	59.1	25.0	25.4	8.7	..
Israel (a)	37.4	62.6	22.4	22.4	17.8	..
Italy	70.7	29.3	19.9	8.1	0.7	0.5
Japan	41.9	58.1	26.9	22.2	9.0	..
Korea	53.0	47.0	24.8	17.2	3.4	1.6
Latvia	45.6	54.4	37.8	13.9	2.7	..
Lithuania	46.5	53.5	34.2	16.5	2.9	..
Luxembourg	45.1	54.9	27.1	22.7	5.2	..
Mexico	46.0	54.0	25.1	19.3	7.6	..
Netherlands	44.3	55.7	21.6	25.8	8.3	..
New Zealand	57.8	42.2	17.4	18.4	6.4	..

	Proportion (%) of divorces					
	Divorces not involving children	Divorces involving children:				Unknown
		Total	1 child	2 children	3 or more children	
Norway	44.1	55.9	23.9	23.9	8.0	..
Poland	41.4	58.6	35.6	19.5	3.5	..
Portugal	29.5	70.5	39.5	24.9	6.2	..
Slovak Republic	40.3	59.7	33.9	21.3	4.5	..
Slovenia	49.4	50.6	24.9	20.9	4.8	..
Spain	48.7	51.3	27.0	21.5	2.8	..
Sweden	42.7	57.3	23.4	22.9	10.3	0.7
Switzerland	54.7	45.3	22.9	18.3	4.1	..
Turkey	45.3	54.7	31.7	17.8	5.2	..
United Kingdom	38.9	61.1	21.6	19.7	7.7	..
OECD-26 average	44.4	55.6	27.1	21.3	6.6	..
Bulgaria	54.4	45.6	32.5	12.2	0.8	..
Croatia	40.8	59.2	31.7	22.2	5.3	..
Cyprus (b,c)	46.3	53.7	28.0	16.8	4.7	..
Romania	58.6	41.4	27.5	11.6	2.3	..

주: 포르투갈의 데이터는 2003년, 스웨덴은 2007년, 라트비아는 2010년, 아이슬란드는 2011년, 노르웨이와 영국은 2012년, 그리스는 2013년, 네덜란드는 2014년, 독일과 이탈리아는 2015년, 프랑스, 이스라엘, 뉴질랜드, 키프로스는 2016년, 한국은 2018년의 데이터를 사용. 한국의 부양 자녀는 20세 미만 자녀를 의미함.

출처: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mographic Statistics Section.; OECD(2023). Table SF3.2.B. 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2017 or latest에서 재인용

3) Chart SF3.2.A.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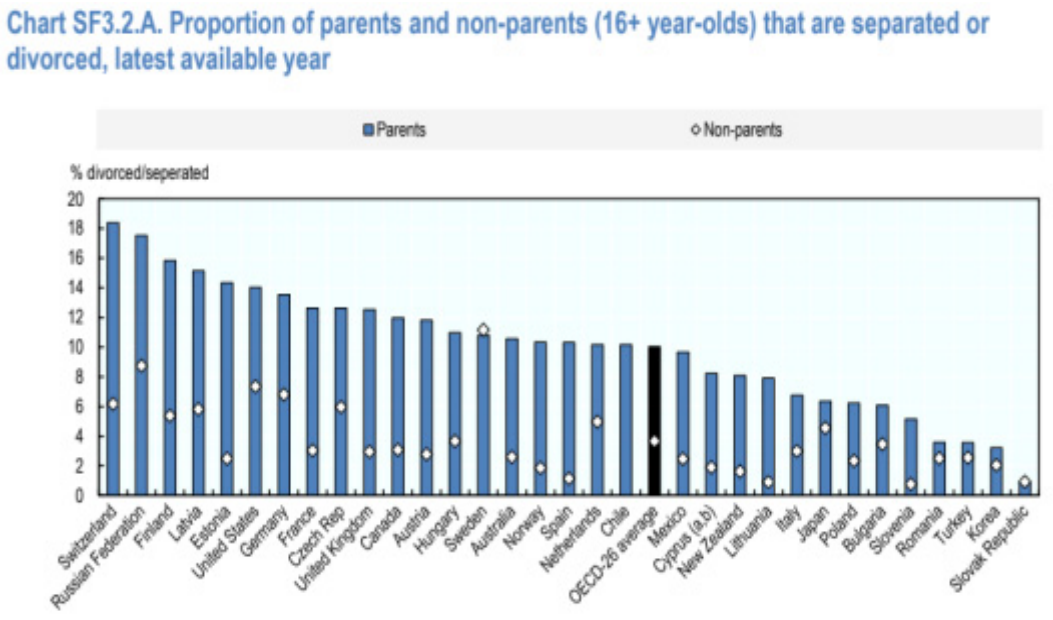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지표는 World Values Survey(2010)를 활용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모두 적절히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OECD 평균적으로 아이가 있는 부모일 때 아이가 없는 비부모인 경우보다 별거 또는 이혼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부모인 경우 10.0%, 비부모인 경우 3.7%). 부모와 비부모에 따른 별거 및 이혼 비중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스위스로 나타났으며(부모인 경우 18.4%, 비부모인 경우 6.2%),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부모가 비부모보다 별거 및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슬로바키아, 한국, 튀르키예, 일본의 경우 부모와 비부모의 별거 및 이혼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별거 및 이혼 비율은 부모일 때가 3.2%, 비부모일 때가 2.0%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부모와 비부모에 따른 이혼 비중에 차이가 없는 국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일 때 별거·이혼 비율이 매우 높은 OECD 국가들의 경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림 2-25] Chart SF3.2.A.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



주: '부모'는 "자녀를 낳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적어도 한 명의 자녀를 보고한 사람들을 의미함. 자녀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부모가 아님'으로 분류.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데이터는 1998년,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1999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루마니아는 2007년, 불가리아, 캐나다, 프랑스, 영국은 2006년, 스위스는 2007년, 일본과 한국은 2010년, 칠레,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러시아 연방,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튀르키예, 미국은 2011년,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는 2012년, 독일은 2013년의 데이터를 사용.

출처: World Values Survey, various waves.; OECD(2023). Chart SF3.2.A. 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 (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latest available year에서 재인용

4) Chart SF3.2.B.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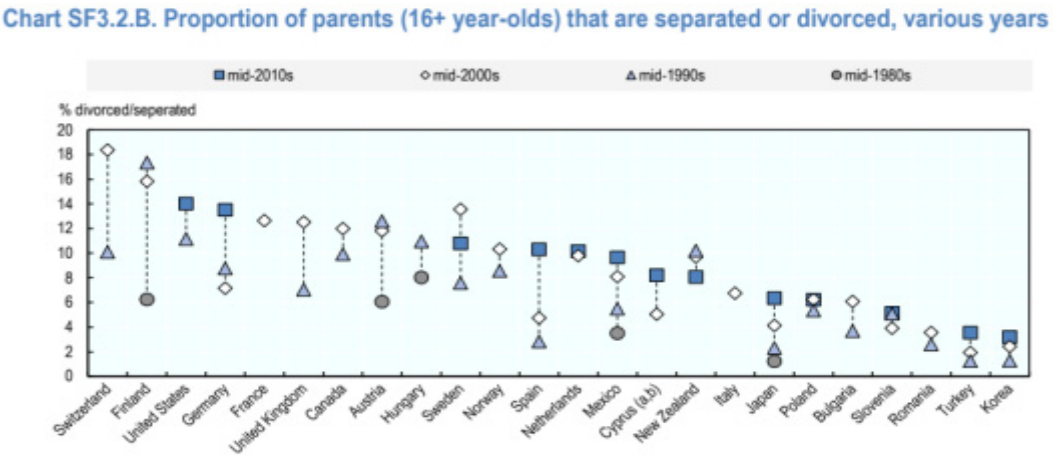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지표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을 보여준다. 해당 지표는 World Values Survey(2010)를 활용하였으며, 한국 자료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10.1%에서 2000년대 중반 18.4%로, 핀란드의 경우 1980년대 중반 6.3%에서 1990년대 중반 17.3%로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1.3%, 2000년대 중반 2.4%, 2010년대 중반 3.2%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 지표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였다.

[그림 2-26] Chart SF3.2.B.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



주: '부모'는 "자녀를 낳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적어도 한 명의 자녀를 보고한 사람들을 의미함. 자녀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부모가 아님'으로 분류. "1980년대 중반"의 경우, 일본 1981년, 헝가리 1982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멕시코 1990년의 데이터 사용. "1990년대 중반"의 경우, 스페인 1995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1996년, 헝가리와 뉴질랜드 1998년,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미국 1999년, 캐나다, 핀란드, 일본 2000년의 데이터를 사용. "2000년대 중반"의 경우, 한국 2001년, 뉴질랜드 2004년, 핀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2005년, 불가리아, 캐나다, 키프로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2006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2007년의 데이터를 사용. "2010년대 초반"의 경우, 일본과 한국 2010년, 칠레,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러시아 연방,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튀르키예, 미국 2011년,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2012년, 독일 2013년의 데이터를 사용.

출처: World Values Survey, various waves.; OECD(2023). Chart SF3.2.B. Proportion of parents (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various years에서 재인용

다. SF3.3 동거율 및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확산 비율(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1) Table SF3.3.A.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자료없음), Table SF3.3.B.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자료없음), Table SF3.3.C. 부부(커플) 가구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유무(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자료없음)

SF3.3.A.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지표는 20세 이상 인구 및 20~34세 성인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즉 주거형태에 대한 지표이다. 이 지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주거형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먼저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결혼(혼인신고)이나 파트너십제도에 등록하였는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 파트너와의 동거, 비혼동거, 파트너와 동거하지 않음 등의 세 가지 주거형태 범주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20~34세의 경우에는 파트너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형태(동거형태) 지표는 파트너십의 형태가 법적 결혼 이외의 등록제 및 비등록 동거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와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파트너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부모동거비율을 추가로 제시하여, 주거독립의 정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지표는 현대적 성인의 친밀성, 독립성 등을 종합하여 주거형태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인구센서스 조사항목은 이와 같은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실제로 SF3.3.A.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에도 한국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김은지, 2023: 47). 문제는 현재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 누락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가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한국의 인구센서스 조사항목은 개인의 동거형태가 아니라 가구의 주거형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응답자가 가구주와 어떤 관계인가를 중심으로 가구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가구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다. 둘째, 가구주와의 관계는 친족 관계(혈연과 혼인 관계)에 한정되어 조사되므로, 가구주와의 관계가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비친족관계라는 잔여범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친족관계는 아니면서도 파트너 관계인 경우가 식별되지 못한다. 셋째, 혼인관계는 가구의 주거형태 뿐만 아니라, 개인의 혼인 상태에 대한 조사문항을 통해서도 파악된다. 이때 조사문항은 파트너의 유무가 아니라 배우자 유무(결혼여부)를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때 배우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배우자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즉 인구센서스에서는 법적 혼인과 사실혼을 모두 배우자가 있음으로 파악하고

혼인신고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서, 법적 결혼과 사실혼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상의 검토에 따르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유배우'로 파악된 응답자는 법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SF3.3.A.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지표의 "Married or in a civil or registered partnership"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구센서스에서 유배우 이외의 항목에 속하는 사람들(미혼, 이혼, 사별)의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하며, 부모와의 동거 여부 판단은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을 통해 몇 가지 가정을 추가하여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요구한다. F3.3.A.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지표는 각 유형의 비율로 이루어진 분포 지표이다. '유배우'에 해당되는 응답자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동일한 이유에서 Table SF3.3.B.와 Table SF3.3.C.에 누락된 한국자료를 보완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SF3.3 항목은 법적 결혼 이외의 파트너십이 확산되어 있고, 등록제 등과 같이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포괄적인 파트너십의 양상을 파악하고, 다양한 파트너십 하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현실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관련 통계자료가 부재한 것은, 실제로 그처럼 다양한 파트너십 형태가 실천되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조사 수준에서 법적 결혼 이외의 파트너십 형태의 다양성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7]

라. SF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1) Chart SF3.4.A.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누락)

이 지표는 파트너에 의해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intimate partner)에 의한 폭력은 자기 보고식(self-reported)의 평생 경험률(lifetime prevalence)로 측정된다. OECD 국가들의 해당 수치는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EU FRA)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에 의해 추출되었는데, 원칙적으로 18~74세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 지표는 현재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여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 49). 단,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2021년 처음 시행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문항이 적절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

17)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에서는 19~4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여부, 혼인신고여부, 비혼동거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실혼 2.3%, 비혼동거 0.1% 등으로 조사되었다(박종서 외, 2023: 69).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조사는 별도로 연령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아 OECD 기준(18~74세)에 비해 다소 고연령의 응답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 연구(장미혜 외, 2021)를 바탕으로 수치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intimate partner)'는 설문조사의 가해자 유형 중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 이전 헤어진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 당시 사귀고 있던 사람,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졌던 사람 등 4가지 항목으로 정의되었다.

설문지는 먼저 '귀하는 지금까지 누군가에 의해 다음의 신체적(성적) 폭력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주어지고,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귀하에게 위의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해 당시의 관계를 기준으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앞서 언급한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비율을 확인하였다. 실태조사 연구진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평생 과거 또는 현재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6.4%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가해자 유형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장미혜 외, 2021: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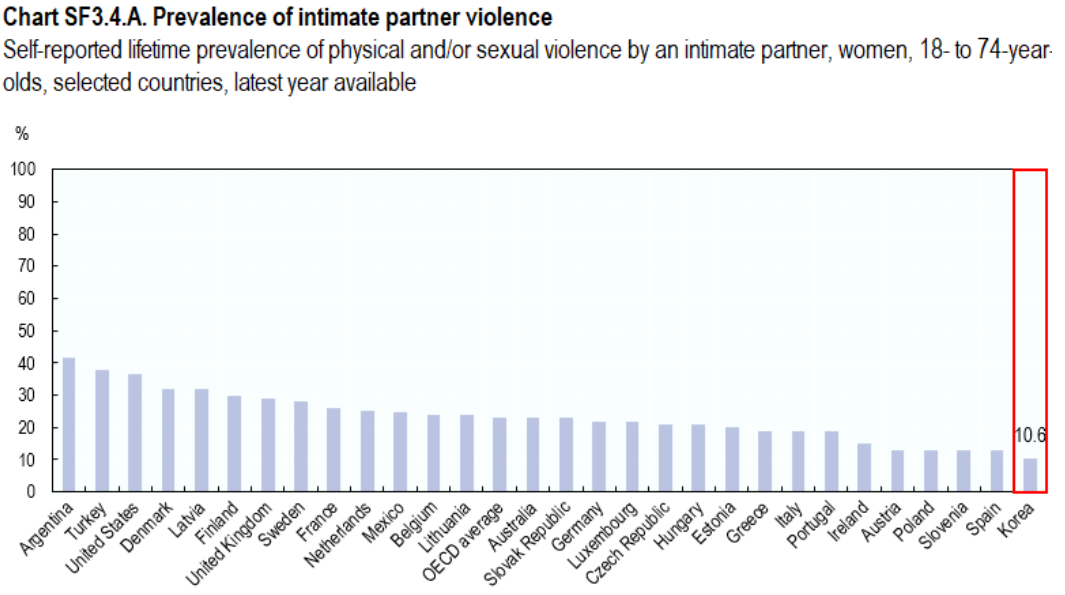
〈표 2-15〉 신체적 및 성적 폭력 경험 여부 (%)

	사례수	비율
평생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 경험	745명	10.6%
계	7,000명	100.0%

주: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출처: 장미혜 외(2021: 192)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파트너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OECD 평균 23.1%로 5명 중에 1명 이상의 여성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고식 서베이의 경우 실제 경험한 것보다 과소 추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성적 피해 경험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여성 중 41.6%가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튀르키예(38.0%), 미국(36.4%), 덴마크(32.0%) 순으로 폭력 경험률이 높았다. 반면 스페인, 슬로베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 경험이 모두 13.0%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10.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게 일부 워딩이 변형되어 조사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수치 해석 시,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 비교를 하는 데에는 다소 태생적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림 2-27] Chart SF3.4.A. 파트너에 의한 폭력



출처: OECD(2023).Chart SF3.4.A. 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여성폭력실태조사(2021)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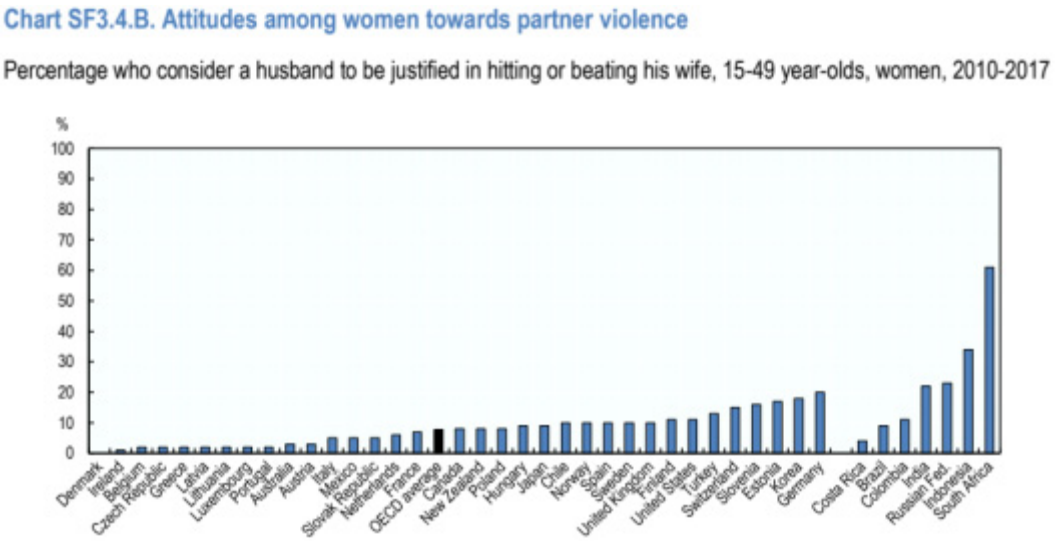
요약하면, 이 지표는 파트너에 의해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intimate partner)에 의한 폭력은 자기 보고식(self-reported)의 평생 경험률(lifetime prevalence)로 측정되며, 18~74세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 지표는 현재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여성폭력실태조사 2021년 자료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여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 연구(장미혜 외, 2021)에서 제시된 수치를 확인한 결과, 한국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 비율은 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파트너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OECD 평균 23.1%로 5명 중에 1명 이상의 여성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국가별로 편차가 상당히 존재하였다. 신체적, 성적 피해 경험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여성 중 41.6%가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말하였다. 반면 스페인, 슬로베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 경험이 모두 13.0%로 매우 낮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 경험률(10.6%)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2) Chart SF3.4.B.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적절)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지표는 15-49세 여성 중 파트너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여준다. 해당 지표는 OECD(2019)의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료는 적절히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15세에서 49세의 여성에게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 8%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OECD 국가 내에서는 덴마크(0%)와 아일랜드(1%)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국가는 독일(20%)과 한국(18%), 에스토니아(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당성을 동의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남아프리카의 경우 61%의 여성이, 인도네시아는 34% 여성이 배우자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28] Chart SF3.4.B.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



출처: OECD (2019),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https://oe.cd/ds/GIDDB2019.; OECD(2023). Chart SF3.4.B. 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에서 재인용

한국 역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배우자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약 18%로 나타나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요컨대,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 지표는 15-49세 여성 중 파트너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약 18%가 파트너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응답하여 OECD 평균(약 8%)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혼인 및 파트너십 상태 지표 요약

SF3.1 혼인율과 이혼율(Marriage and divorce rates) 지표는 적절한 것으로 분류된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 등 세 가지 지표와 새롭게 적절한 것으로 재분류된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지표로 구성되었다. 적절하게 구성된 지표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1970년 OECD 평균 조혼인율은 1,000명당 8.1건이었으나 1995년에는 5.6건, 2019년에는 4.6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OECD 평균 조혼인율은 1,000명당 3.8건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조혼인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조혼인율이 감소하였다. 1970년에는 1,000명당 9.2건, 1995년에는 8.7건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2019년에는 4.7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2020년에는 1,000명당 4.2건으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초혼 당시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1990년대의 초혼 당시 평균 연령은 남성 27.8세, 여성 24.8세였으나, 2020년에는 남성 33.2세, 여성 30.8세로, 대부분의 OCE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초혼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1970년대부터 1995년까지의 OECD 평균 조이혼율은 1,000명당 1.4건에서 2.4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2.0건, 2020년에는 1.9건으로 감소하였다. 조이혼율의 증감 추세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1970년에는 1,000명당 평균 0.4건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혼율을 보였으나, 1995년에는 1.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평균 2.2건, 2.1건으로 점차 조이혼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혼자 중 82.2%는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OECD 국가 평균 80.0%), 이혼한 경험이 있는 자는 16.6%(OECD 국가 평균 18.7%), 사별한 경험이 있는 자는 1.0%(OECD 국가 평균 1.2%)인 것으로 집계되어 대체로 OECD 평균적인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SF3.2 가족 해체와 아동(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지표는 적절한 것으로 분류된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등 네 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된다.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네 개의

지표를 간단히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혼인기간별 이혼분포는 혼인 20년 이상일 때가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년에서 9년(22.8%), 10년에서 14년(17.7%), 1년에서 4년(16.2%) 혼인기간 순으로 이혼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미만 혼인기간에서 이혼한 경우가 OECD 평균 1% 미만인 것에 비해, 한국은 3.5%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자녀 수에 따른 이혼분포를 살펴보면, 이혼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55.6%)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자녀가 없을 때가 53.0%로 이혼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없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혼분포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때 이혼한 확률은 3.4%에 불과하였다. OECD 평균적으로 아이가 있는 부모일 때 아이가 없는 비부모인 경우보다 별거 또는 이혼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부모인 경우 10.0%, 비부모인 경우 3.7%). 하지만 한국의 별거 및 이혼 비율은 부모일 때가 3.2%, 비부모일 때가 2.0%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부모와 비부모에 따른 이혼 비중에 차이가 없는 국가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1.3%, 2000년대 중반 2.4%, 2010년 대 중반 3.2%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SF3.3 동거율 및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확산 비율(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지표는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부부(커플) 가구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유무(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등 세 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자료없음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지표들은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결혼(혼인신고)이나 파트너십제도에 등록하였는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도출된다. 이러한 주거형태(동거형태) 지표는 파트너십의 형태가 법적 결혼 이외의 등록제 및 비등록 동거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와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인구센서스 조사항목은 이와 같은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한국의 인구센서스 조사항목은 개인의 동거형태가 아니라 가구의 주거형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친족관계를 전제하고 가구주와의 관계를 파악하므로, 친족관계는 아니면서도 파트너 관계인 경우 식별 불가함), 실제로 SF3.3.A.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에도 한국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김은지, 2023: 47). 한국에서 관련 통계자료가 부재한 것은, 실제로 그처럼 다양한 파트너십 형태가 실천되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사 수준에서 법적 결혼 이외의 파트너십 형태의 다양성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F3.4 가정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지표는 누락으로 분류된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지표로 구성된다. 여성폭력실태조사(2021) 원자료를 통해 파트너에 의한 폭력 비율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10.6%으로, 폭력 경험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였다(OECD 국가 평균 23.1%). 다음으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 지표는 15-49세 여성 중 파트너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8%가 파트너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응답하여 OECD 평균(8%)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최종적으로, 혼인 및 파트너십 지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을 포함하여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조혼인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초혼 당시 평균 연령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이었다. 동거율 및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관련 지표는 한국의 자료 부재로 인해 국가 비교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파트너십 형태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 비율은 낮은 편이나, 파트너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제3절 소결

'가족구조' 지표들은 가족과 아동, 출산력, 혼인 및 파트너십 상태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들이다. 2차연도에 걸쳐 지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분류된 지표는 24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지표는 2개, 누락된 지표는 9개, 자료없음 지표 14개 및 지표 생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지표 2개로 확인되었다.

특히 2차연도에는 기존에 누락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일부 지표들을 직접생산하였는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 지표를 생산하였다. 또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아동의 거주 형태',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 '유소년의 거주 형태' 등을 산출하였고,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과밀거주 아동'과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 지표를 생산하였다. 그리고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코호트완결출산율'을 산출하였고, 가족과 출산조사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가족 규모'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실태조사를 통해 '파트너에 의한 폭력' 지표를 생산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가족구조'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과 아동 지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자녀가 있는 양부모 및 한부모의 가구원 수가 대체로 적은 편이었고, 한국의 부부 가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또한 한국의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출산력 지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가장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한국의 초저출산 수준은 최근 20년 사이에 심화된 결과이다. 동일한 시기 동안 OECD 국가 평균 수준에서도 출산수준은 하락하고 출산 시기는 늦춰지는 추이가 나타났으나, 한국은 변화가 급격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출산력 지표의 수치도 매우 극단적이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국가별 출산력 지표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겪는 동안 출산율의 상승을 경험한 국가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출산수준이나 시기뿐만 아니라 출산의 성격을 드러내는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데, 이는 주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출산행동 및 의식에 대한 조사가 부재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출산력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혼인 및 파트너십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을 포함하여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조혼인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초혼 당시 평균 연령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한편 한국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 비율은 낮은 편이나, 파트너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정리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자녀가 있는 가구의 규모는 대체로 적은 편이며, 자녀가 없는 가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극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의 혼인 연령 상승 추이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가적 관심이 요구된다.

03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제1절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의 구성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지표는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LMF1.2 모성 고용률, LMF1.3 혼인상태별 모성 고용,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LMF2.4 가족친화제도,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2023년 진단 결과(김은지 외, 2023)를 기반으로, ‘개선 필요’와 ‘누락’에 해당하는 세부 지표를 산출하고, 산출된 지표와 ‘적절’ 지표를 대상으로 한국 상황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김은지 외(2023)의 1차연도 지표분석에 따르면, 가족 노동시장 지위 지표에서 적절하게 보고된 것으로 평가된 지표는 성별 연령별 고용률,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 고용률의 성별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성별 차이 감소 추이, 시간제 고용에서의 성별 차이, 시간제 고용의 변화, 학력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 임시 고용의 성별 차이,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 돌봄시간,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 통근 시간,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 등이다.

‘개선 필요’ 지표는 모의 고용률,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이다. ‘누락’에 해당되는 지표는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 부부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 학력별 모의 고용률,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성별 차이, 재택근무 근로자 등이다. 한국은 고용과 관련한 지표는 대체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시간과 관련한 지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동이나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한 지표는 누락되어 있고, 특히 OECD 지표에는 고용형태를 전일제와 시간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정보가 포함된 지표가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한편 2차연도에 지표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한 결과, 일부 지표는 외부에 전체 변수가 공개되지 않거나 조사구조상 국제비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기존과 검토결과가 변경되었다. 특히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고용률 지표를 산출하도록 한 대부분의 지표가 '자료없음'으로 변경되었는데, 실제 실험적 산출 결과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취업 변수가 1주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1주일 기준의 값보다 상당히 과대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의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LMF1.1), 모성고용률(LMF1.2), 유자녀 부부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LMF2.2, LMF2.3) 영역의 누락 또는 개선필요 지표 전체가 '자료없음'으로 변경되었다. 실험적 산출 값은 본문에 제시된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과 관련된 지표, 부모의 학력문항이 필요한 지표는 관련 문항이 부재하거나 지역별 고용조사의 가구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직접 산출이 불가능하여 '자료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부 변수는 '지표생산 불필요'로 재분류되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 지표는 유연근로제도의 정의와 분류가 OECD 기준과 한국이 상이하며, 한국에서 주로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유연근로제도의 종류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OECD 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표생산 불필요'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지표 전체는 OECD Family data에서 삭제되어 '지표생산 불필요'로 분류하였다.

〈표 3-1〉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누락	자료 없음
		모든 성인이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Children in jobless households, 2008, 2013 and 2018)	X	자료 없음	
		부부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누락	자료 없음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O	개선 필요	자료 없음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19)	X	자료 없음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개선 필요	자료 없음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학력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자료 없음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자료 없음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자료 없음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자료 없음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자료 없음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자료 없음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성별 연령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8)	O	적절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and education, 2018)	X	누락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O	적절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 추이(Trends in the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selected countries, 1975-2021)	X	해당 없음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Gender gap in earnings by levels of education)	O	적절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고용률의 성별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O	적절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성별 차이 감소 추이(Declining trends on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O	적절	
		시간제 고용에서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O	적절	
		시간제 고용의 변화(Change in part-time employment)	O	적절	
		학력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O	적절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O	적절	
		임시 고용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emporary employment)	O	적절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2005 to 2021)	O	적절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9 or nearest year available)	X	누락	자료 없음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0 to 2019)	X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2019)	X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X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X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자료 없음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	X	누락	자료 없음
LMF2.4	가족친화제도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3)	X	누락	지표 생산 불필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X	누락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X		
		재택근무 근로자(Employees working from home, 2015)	X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12/2013)	O	적절	
		돌봄시간(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1999-2010)	O	적절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dedicated to care work, by number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1999-2010)	O	적절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spent on care work by women, by age of youngest child, 1999-2010)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통근 시간(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999-2014)	O	적절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	O	적절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	O	적절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aged 15 and ov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지표 생산 불필요
		아동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aged 11 to 15, 2010)	X	누락	
		성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gend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고용 지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2012)	X	누락	
		일생활균형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satisfaction in work-life balance, 2012)	X	누락	

지표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과 최종 산출된 지표를 활용한 한국 상황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서술된다.

제2절 한국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1. 아동 및 가족유형별 취업 현황

가.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1) Chart LMF1.1.A.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자료없음)

이 지표는 아동의 관점에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0~14세 아동이 있는 부모의 취업 현황, 즉 둘 다 일하고 있거나, 둘 중 한 명만 일하고 있거나, 둘 다 일하지 않는 비중으로 산출한다.

한국은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의 취업통계자료가 부재하여 그동안 이 지표는 누락되어 왔는데, 지난 몇 년간 통계청에서 구축하여 2023년부터 원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통해 아동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를 확인해 보았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구축되고 2024년 6월 기준,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가 제공된다. 본 지표의 산출을 위해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 0~14세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본 지표에서 부모의 취업 현황은 '일함-모든 성인이 일함', '일함-최소 한 명의 성인이 일함', '무직-모든 성인이 일하지 않음'으로 구분된다. OECD 지표에서 '일함(working)'과 '고용(employment)'에 대한 정의는 ILO의 가이드라인을 차용하는데, 특정 조사 기간에 최소 1시간 이상 유급 노동(paid employment)에 종사했거나, 자영업(self-employed)을 한 경우에 '고용됨(employed)'으로 분류한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 취업 여부에 대한 별도의 변수는 없고 부모의 종사상 지위 변수에서 '①상시근로자-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 '②일용근로자-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서 일용근로 내역이 신고된 근로자', '③자영업자-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서 대표자나 사업자로 신고된 자'로 구분되어 있어, 이 세 항목을 '일함'으로 처리하고 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무직'으로 보았다. OECD 지표에서 '일함'의 정의가 '최소한 시간제 고용으로라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동가구통계

등록부에서의 구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기준으로 부와 모 각각의 종사상 지위 ①~③을 합한 값을 '일함'으로 코딩하고 무응답을 '무직'으로 코딩하여 그 비중을 계산해 보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결과, 이 범위가 일반적인 경제활동조사에서 분류하는 고용률보다 과다하게 집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고용 관련 정보는 역시 행정자료인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활용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연간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에서 포착된 개인(15세 미만, 외국인 포함)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여 구축한다(통계청, 2024b:2). 이에 따라 경제활동 관련 조사에서 '지난 1주일'을 기준으로 일자리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비교 할 때 연간 한번이라도 1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한 경우 모두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업자가 이러한 조사들에 비해 과다하게 집계되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OECD에 보고한 지표 중 여성 고용률과 관련한 지표들은 대체로 50%대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 산출한 엄마의 '일했음' 비율은 70%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로 산출 결과,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모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 값은 '일함-모든 성인이 일함' 71.6%, '일함-최소 한 명의 성인이 일함' 27.2%, '무직-모든 성인이 일하지 않음' 1.2%로 나타났다. OECD 자료와 비교해 보기 위해 2018년의 값도 살펴보면, '일함-모든 성인이 일함' 64.4%, '일함-최소 한 명의 성인이 일함' 33.7%, '무직-모든 성인이 일하지 않음' 1.9%로 나타나 한국은 최근 들어 부모 모두 일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지표에서 OECD 평균은 '일함-모든 성인이 일함' 60.7%, '일함-최소 한 명의 성인이 일함' 31.3%, '무직-모든 성인이 일하지 않음' 8.0%로, 한국은 '일함-모든 성인이 일함'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고 '무직-모든 성인이 일하지 않음'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일함'에 연간 최소 1시간 이상 일한 경우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양쪽 다 무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수치와도 격차가 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산출값이 적절한지 추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단 현재로서는 바로 고용률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더라도 아동가구통계등록부가 고용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18]

18) 실제로 통계청의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이용자 설명자료에는 행정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취업자가 제외되므로 고용률 등 공식 지표산출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통계청, 2024b:7). 이러한 설명은 고용률이 과소추정될 위험에 대한 내용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고용률이 과대추정될 위험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양쪽 모두의 우려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해 고용률을 측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수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시범산출 결과와 OECD 평균 비교

(단위: %)

범주	2022 한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시범산출)	2018 한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시범산출)	2018 OECD 평균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일함-모든 성인이 일함	71.6	64.4	60.7
일함-최소 한 명의 성인이 일함	27.2	33.7	31.3
무직-모든 성인이 일하지 않음	1.2	1.9	8.0
합계	100.0	100.0	100.0

출처: 2022 한국 및 2018 한국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22, 2018)에서 연구진이 시범산출한 결과, 2018 OECD 평균은 OECD(2023). LMF1.1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에서 재인용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의 취업과 관련한 정보가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나, 본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용률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기준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과다하게 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지표는 '자료없음'으로 재코딩하였다. 그동안 한국은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를 주로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산출해 왔는데, 아동과 여성 모두 기준 연령대가 OECD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OECD 기준에 맞춘 자료 생산이 필요하다.

2) Chart LMF1.1.C. 부부 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자료없음)

이 지표는 0~14세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에서 부모의 고용 지위 비중을 나타낸다. 이 지표 역시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누락되어 왔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가 제공되면서 산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OECD에서는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를 전일제와 시간제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 '일함-두 성인이 전일제로 일함', '일함-전일제 및 시간제로 일함', '일함-한 명의 성인이 전일제로 일함', '일함-기타', '미취업-두 성인 모두 일하지 않음' 5개 지표로 구분한다. 전일제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시간제는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부모의 고용형태는 포함되지만 부모의 근로시간 변수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지표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 부모의 고용형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종사상 지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근로시간의 양으로 나타내는 것은 맞지 않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는 주당 근로시간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자녀여부나 연령 등 자녀와 관련한 변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더욱 활용하기 어렵다. 해당 지표 산출을 위해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한다면 여기에 부모의 주당 근로시간 변수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근로시간은 대체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행정자료로 구축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로 보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제공되는 자료로는 산출이 불가하고 조사 시 집계한 가구원명부를 통해 가구원정보로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가구단위로 표집이 이루어지고 각 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면서 가구원 정보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을 기입하기 때문에 유자녀 가구, 유배우 가구 등 가족구성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공개된 통계표나 제공되는 데이터셋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생산해주어야 한다. 이 지표의 경우 0~14세 자녀가 있으면서 부부가구인 사례를 선택하여 부부의 근로시간 변수로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3) Chart LMF1.1.D.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자료없음)

이 지표는 한부모 가구의 아동은 한 명의 성인과 함께 사는 아동이며, 해당 가구 한부모의 고용 지위를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지표이다. 고용 지위는 '일함-전일제로 일함', '일함-시간제로 일함', '일함-정보 없음', '미취업'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가 있는데, 현재 2015년, 2018년, 2021년 결과가 공표되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 3,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으로는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귀하 직장(사업체)의 실제 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로 묻고 주업과 부업으로 나누어 직접 시간을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응답만으로는 주5일 매일 같은 시간 일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주당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렵다. 실제 근로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으로 보고 5를 곱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는 있지만, 응답을 보면, 새벽 시간대부터 저녁시간대까지 응답한 사례도 적지 않아, 이 경우 일종의 교대제 근무로 볼 수 있어 이 시간을 기준으로 5를 곱하게 되면 주당 근로시간이 과대하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녀를 둔 한부모의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데에는 적절한 문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OECD 지표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근로시간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문항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적어도 실제 근로시간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주당 근무일수 문항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명부를 이용한다면 0~14세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 사례를 통해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LMF1.2 모성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1) Chart LMF1.2.A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자료없음)

이 지표는 시간제/전일제 고용 지위에 따른 최소 1명의 아동(0~14세)이 있는 여성(15~64세)의 고용률이다. 한국은 이 지표를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데,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전일제와 시간제를 구분할 수 없는 수치)로 산출한다. 따라서 연령대도 맞지 않고 유자녀 여성이 아닌 기혼 여성으로 집계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는 0~14세 자녀가 있는 15~64세 여성을 산출할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대로 이들의 고용률은 '상시근로자(특고 포함)+일용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을 모두 합한 수치의 비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산출한 아동가구통계등록부 2021년 자료 기준, 0~14세 자녀를 둔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은 73.2%로 현재 OECD에 한국 지표로 보고되는 수치 56.2%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자료 특성상 '일했음' 비중이 높은 것과 같은 이유이다. 지역별고용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자료로 기존에 보고되었던 연령기준과 동일하게 지표를 산출하였을 때에도 70% 이상의 높은 고용률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 자료의 특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고용 지위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를 구분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 기존에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전체 고용률만 보고하고 있었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 2021년 자료 기준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특고 포함)이 52.1%이고,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가 16.9%, 일용근로자 4.2%로 나타나 아동 모의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의 비중이 약 15~20% 수준인 점이 특징적이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모의 고용률은 OECD 평균 71.4%이며, 이 중 시간제 17.1%, 전일제 54.1%로 나타난다.

기존 지표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새롭게 산출한 지표의 값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추후 어떤 자료로 이를 보완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시범산출결과에 따르면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자료를 고용률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과대집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고용조사 등 기존 조사를 활용한 집계자료 생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는 어떤 자료로도 전일제와 시간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Chart LMF1.2.C.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자료없음)

이 지표는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0~14세 아동이 있는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이다. OECD 지표에서는 막내 자녀의 연령을 0~2세, 3~5세, 6~14세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역시 지역별고용조사를 사용하여 15~5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연령은 0~6세, 7~12세, 13~17세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OECD 기준으로는 연령대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는 아동의 연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OECD 기준에 맞게 산출이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고용률이 과대집계될 가능성은 동일하다. 2021년 기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로 시범산출한 결과는 막내 자녀 나이 0~2세일 때 엄마의 고용률은 67.4%, 3~5세일 때

72.2%, 6~14세일 때 76.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과다집계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엄마의 고용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3) Chart LMF1.2.D.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자료없음)

이 지표는 0~14세 자녀수에 따른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자녀수는 1명, 2명, 3명 이상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지역별고용조사에서 15~54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른 고용률을 산출하고 있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 여성을 기준으로 자녀수 변수를 생산하여, 이 숫자에 따른 고용률 즉 상시+일용+자영업을 포함한 비율을 시범적으로 산출하였다. 2021년 기준, 자녀가 1명일 때 모의 고용률은 74.4%, 2명일 때는 73.2%, 3명 이상일 때는 70.1%로 나타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고용률은 낮아지지만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는다. 기존에 OECD에 포함된 지역별고용조사로 산출한 한국 수치는 자녀 1명일 때 58.1%, 2명일 때 54.8%, 3명 이상일 때 52.5%로 새로 산출한 값과 격차가 크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로 산출한 값은 전체적으로 과다집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수치 모두에서 자녀수에 따른 격차가 크지 않음은 발견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평균값으로는 자녀 1명일 때 72.9%, 2명일 때 71.3%, 3명 이상일 때 60.1%로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고용률이 크게 낮아진다.

〈표 3-3〉 모의 고용률: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시범산출 결과와 OECD 한국 보고값 및 평균 비교

(단위: %)

지표	2021 한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시범산출)	2021 한국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2021 OECD 평균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모의 고용률	0~14세 아동 15~64세 여성 73.2	0~17세 아동 15~54세 여성 56.2	0~14세 아동 15~64세 여성 71.4
고용 지위별 모의 고용률	상시근로자(특고 포함) 52.1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16.9 일용근로자 4.2	-	전일제 54.1 시간제 17.1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	0~2세 67.4 3~5세 72.2 6~14세 76.2	0~7세 47.5 7~12세 59.0 13~17세 66.1	0~2세 61.5 3~5세 70.2 6~14세 76.3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	1명 74.4 2명 73.2 3명 이상 70.1	1명 58.1 2명 54.8 3명 이상 52.5	1명 72.9 2명 71.3 3명 이상 60.1

출처: 2021 한국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21)에서 연구진이 시범산출한 결과 및 지역별 고용조사를 기반으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보고된 값, 2021 OECD 평균은 OECD(2023). LMF1.2 Maternal employment에서 재인용

4) Chart LMF1.2.E. 학력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자료없음)

이 지표는 0~14세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15~64세 여성의 학력수준별 분포를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산출되지 않아 누락되어 있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는 부모의 학력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별고용조사에는 학력변수가 있으나 자녀유무에 따른 변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표의 산출을 위해서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여성의 학력변수가 추가되거나,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명부를 이용하여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여성을 추출하여 이들의 학력분포를 산출해볼 수 있다. 행정자료로 학력변수를 붙이는 것보다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해당 지표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자료로 학력변수를 붙이는 것보다는 지역별고용조사 관리기관에서 이 지표를 생산할 것을 제안한다.

다.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1) Chart LMF1.3.A.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자료없음)

이 지표는 0~14세 자녀를 둔 파트너가 있는 25~64세 여성의 고용률을 나타낸다. '파트너가 있는 여성'이란 동일한 가구 내에 배우자 혹은 동거하는 파트너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현재 한국의 지표는 누락되어 있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 0~14세 아동의 모 중 한부모 가정(모자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동과의 동거여부와 혼인상태를 이용하여 '양부모 양육', '한부모 부양육', '한부모 모양육'. '부모 미양육'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0~14세 아동이 '양부모 양육'인 경우를 '유배우(partnered)', '한부모 모양육'을 '모자가구(single)'로 보고 산출이 가능하다. 각 경우에 따라 25~64세 여성의 고용률 즉 상시+일용+자영업자를 합한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2021년 결과를 살펴보면, 유배우인 경우 여성의 고용률은 73.1%, 모자가구인 경우 여성의 고용률은 81.7%로 모자가구일 때의 고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 역시 경제활동 기준의 범위가 폭넓게 정의되어 고용률이 과대산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유배우 여성의 고용률은 70.6%, 모자가구 여성의 고용률은 71.0%였다. 시범산출한 값이 과대추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지표도 '자료없음'으로 수정하였다.

2) Chart LMF1.3.B.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자료없음)

이 지표는 앞선 LMF1.3.A. 지표의 변화값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OECD 지표에서는 2006년, 2015년, 2021년의 고용률을 제시하면서 그 변화폭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었지만,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이 지표 역시 시범적으로 산출해 보았다. 다만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2015년 자료부터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2021년 자료만 제시할 수 있다.

2015년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 유배우 여성의 고용률은 64.9%, 모자가구 여성의 고용률은 73.2%로, 2021년은 2015년에 비해 유배우는 8.2%p, 모자가구는 8.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산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지표를 직접적으로 OECD와 비교하지는 않지만 고용률의 상대적 추이만 확인해 보면,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상승폭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추정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Chart LMF1.3.C.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자료없음)

이 지표는 0~14세 자녀를 둔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학력을 '저학력(low education)', '중간학력(medium education)', '고학력(high education)'으로 나누어 학력별 여성의 고용률을 나타낸다. 학력 수준은 ISCED 2011년 분류체계에 따라 저학력은 0~2 즉 중학교까지, 중간학력은 3~4 즉 고등학교까지, 고학력은 5~8 즉 전문대 이상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어 있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는 부모의 학력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는 학력변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한부모 가구인 경우에만 집계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 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부모의 학력변수를 추가하거나,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명부를 활용하여, 유배우 및 모자가구 여성을 추출하여 이들의 학력에 따른 고용률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Chart LMF1.3.D.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자료없음)

이 지표는 0~14세 자녀가 있으면서 유배우인(파트너가 있는) 여성의 파트너 취업여부에 따른 고용률을 나타낸다.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어 있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산출해 보았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는 아동을 중심으로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취업여부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0~14세 아동과 함께 사는 유배우 여성 중 파트너(부)의 취업여부(고용여부)에 따라 여성(모)의 고용률을 산출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파트너(부)가 고용된 상태일 때 모의 고용률은 72.8%이며, 파트너(부)가 미고용 상태일 때 모의 고용률은 71.0%로 나타났다. 이 고용률 역시 상시+일용+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 결과로만 보았을 때에는 파트너(부)의 고용상태에 따라 모의 고용률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5년 자료부터 살펴보아도,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속에 파트너(부)의 고용상태에 따른 모의 고용률 격차는 매년 거의 없었다. 과다산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지표를 직접적으로 OECD와 비교하지는 않지만 고용률의 상대적 값만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으로는 파트너(부)가 고용 상태일 때 모의 고용률은 74.2%, 파트너(부)가 미고용 상태일 때 모의 고용률은 52.9%로 그 격차가 21.3%p로 파트너(부)가 고용 상태일 때의 고용률이 미고용 상태일 때의 고용률보다 높았다. 시범산출한 값이 과대추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지표도 '자료없음'으로 수정하였으며, 향후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추정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3-4〉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시범산출 결과와 OECD 평균 비교

(단위: %)

지표		한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시범산출)	OECD 평균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2021년)		유배우 여성 73.1 모자가구 여성 81.7	유배우 여성 70.6 모자가구 여성 71.0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 (2021년, 2015년, 2006년)	2021년	유배우 여성 73.1 모자가구 여성 81.7	유배우 여성 74.3 모자가구 여성 71.4
	2015년	유배우 여성 64.9 모자가구 여성 73.2	유배우 여성 70.8 모자가구 여성 66.4
	2006년	-	유배우 여성 67.1 모자가구 여성 65.2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 (2021년)	파트너(부)가 고용 상태	72.8	74.2
	파트너(부)가 미고용 상태	71.0	52.9

출처: 한국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2015, 2021)에서 연구진이 시범산출한 결과, OECD 평균은 OECD(2023). LMF1.3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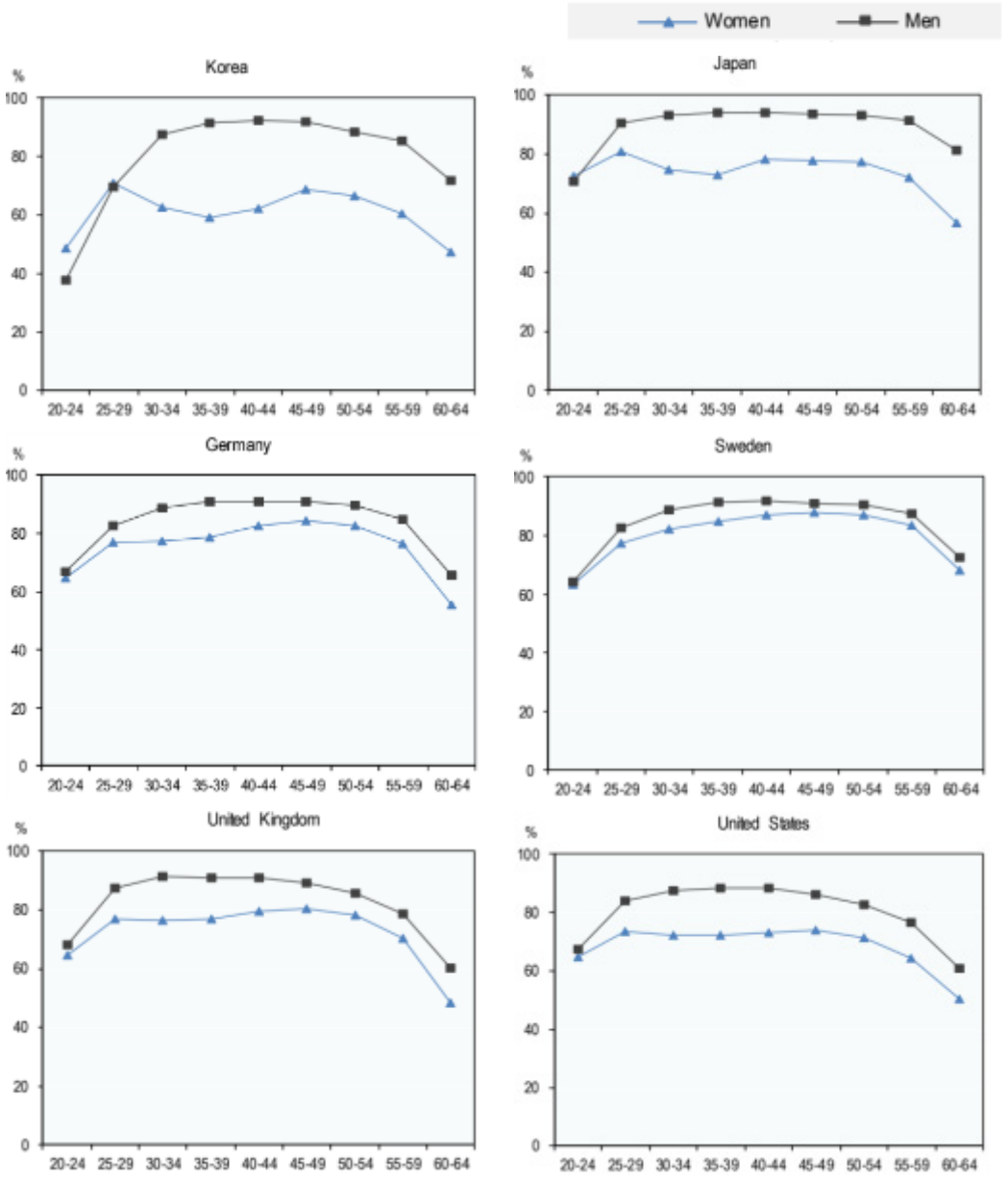
라.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1) Chart LMF1.4.A. 성별 연령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 (적절)

성별 연령별 고용률은 20~64세 남녀의 고용률을 5세 단위로 제시하는 지표로, 국가별 비교가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 고용률이 여성 고용률보다 높지만, 그 격차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성별 고용률 격차가 적은 것에 비해, 미국, 영국 등 영미 국가들은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다음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 중 연령대에 따른 여성 고용률의 M-curve가 존재하는 유일한 국가들이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도 M-curve의 양태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30~34세 구간에서 남녀간 고용률 격차가 2022년 기준 18.5%p로 모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크다. 연령대에 따른 M-curve 현상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고 최근 일본도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30대~40대 중반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Chart LMF1.4.A. 성별 연령별 고용률, 2018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8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2023).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에서 재인용,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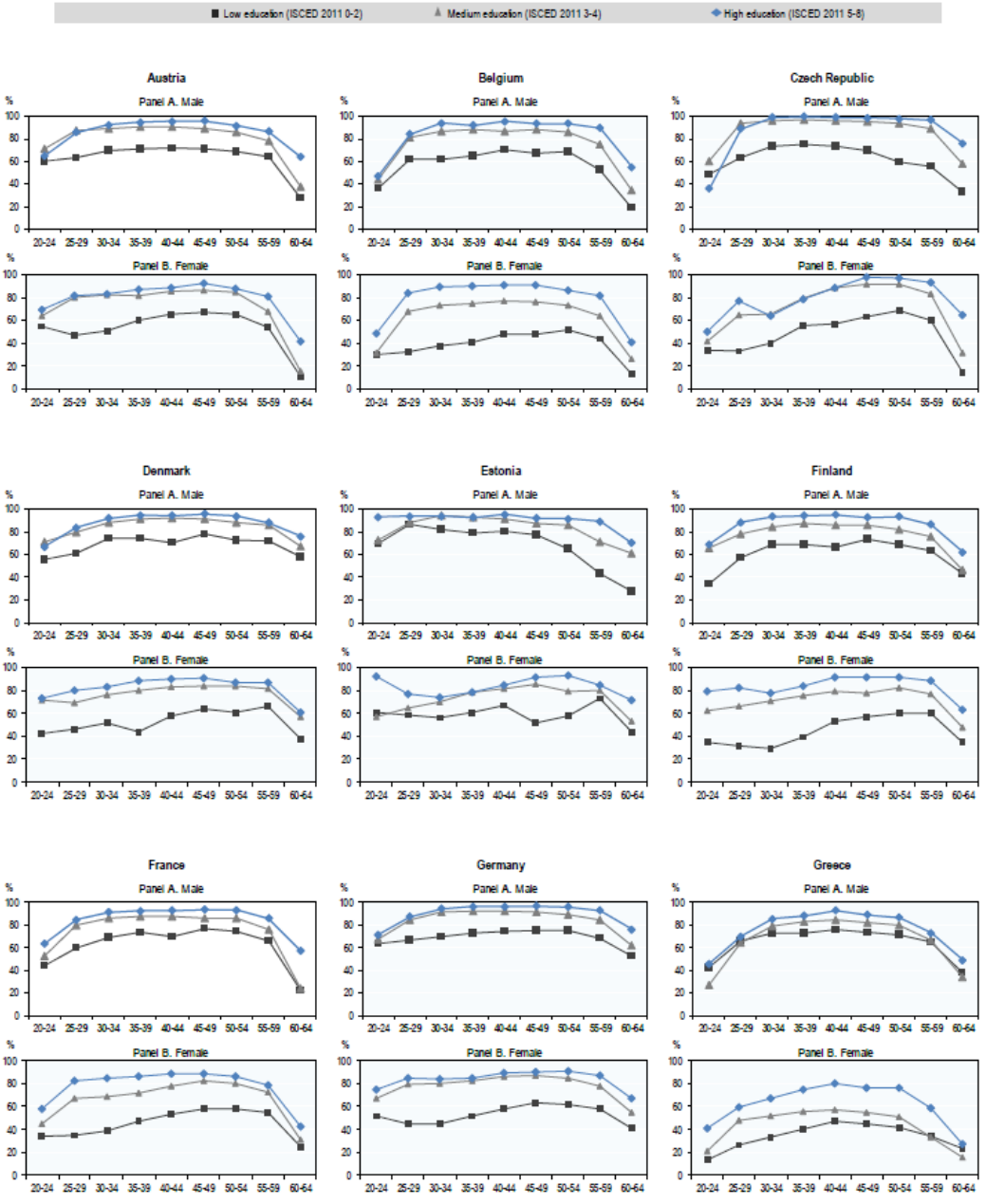
성별 연령별 고용률은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시기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을 단절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OECD 국가들은 남녀간 고용률 격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특히 M-curve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 할 수 있다.

2) Chart LMF1.4.B.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and education) (누락)

이 지표는 연령 5세 단위별로 20~64세 남녀의 학력별 고용률을 나타낸다. 학력기준은 앞서와 동일하게 저학력(중졸이하), 중간학력(고졸이하), 고학력(전문대졸이상)으로 구분하며, 한국 지표는 누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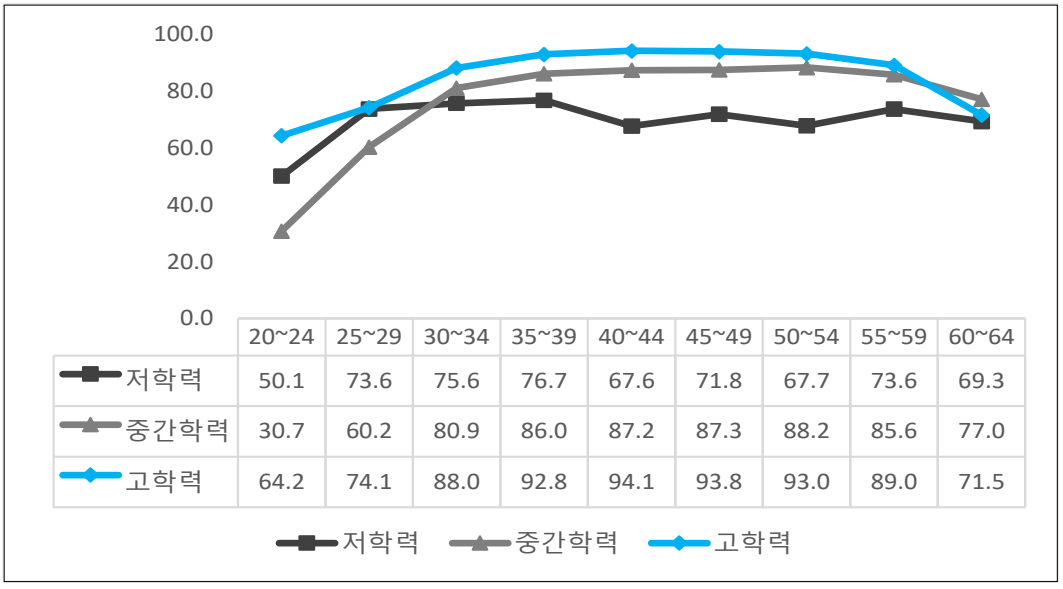
성, 연령, 학력, 고용여부 변수가 있으면 이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데, 통계청을 통해 공개되는 통계표들은 이처럼 2개 이상의 변수 layer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별고용조사는 이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료를 분석하면 산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OECD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변수의 구분이 많아질수록 추정값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통해 이 지표 산출은 가능하지만, 이 값을 공식적으로 리포트해도 되는지는 통계청 담당자나 통계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3-2] Chart LMF1.4.B.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2018)
Chart LMF1.4.B.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and education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2024) Chart LMF1.4.B.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and education에서 재인용,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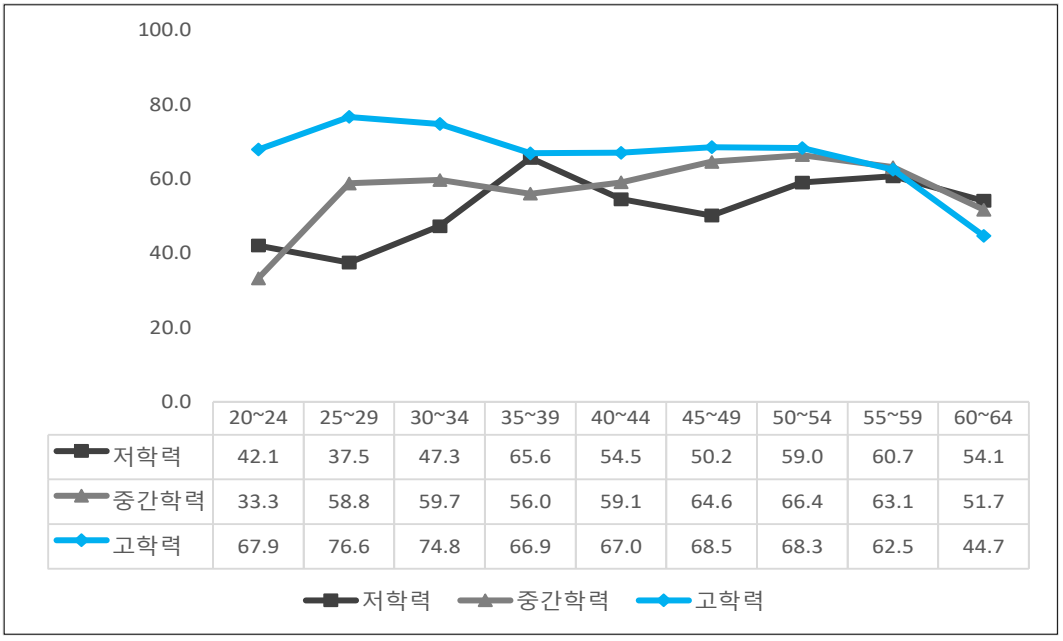
[그림 3-3] 한국의 남성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2023)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저학력	50.1	73.6	75.6	76.7	67.6	71.8	67.7	73.6	69.3
중간학력	30.7	60.2	80.9	86.0	87.2	87.3	88.2	85.6	77.0
고학력	64.2	74.1	88.0	92.8	94.1	93.8	93.0	89.0	71.5

출처: 통계청(2023) 지역별고용조사 2023년 하반기 원자료 재분석

[그림 3-4] 한국의 여성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2023)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저학력	42.1	37.5	47.3	65.6	54.5	50.2	59.0	60.7	54.1
중간학력	33.3	58.8	59.7	56.0	59.1	64.6	66.4	63.1	51.7
고학력	67.9	76.6	74.8	66.9	67.0	68.5	68.3	62.5	44.7

출처: 통계청(2023) 지역별고용조사 2023년 하반기 원자료 재분석

OECD에 보고되는 이 지표값들은 Eurostat Labour Market Statistics 2018년 자료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서 산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률이 높은 가운데,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고용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더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지역별고용조사 2023년 하반기 원자료로 해당 지표를 산출한 결과, 남성은 OECD 국가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으며, 고학력일수록 연령에 따른 역U자 형태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모든 학력에서 연령에 따른 M자 형태를 보이는 가운데, 고학력 여성은 연령대가 낮을 때에는 고용률이 높다가 점차 감소한 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중간학력과 저학력은 고용률의 고점과 저점의 격차가 고학력에 비해 크게 나타나 여성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낮을뿐 아니라 경력단절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변수로 구분하여 고용률을 산출하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추후 검토하여 OECD 지표로 제공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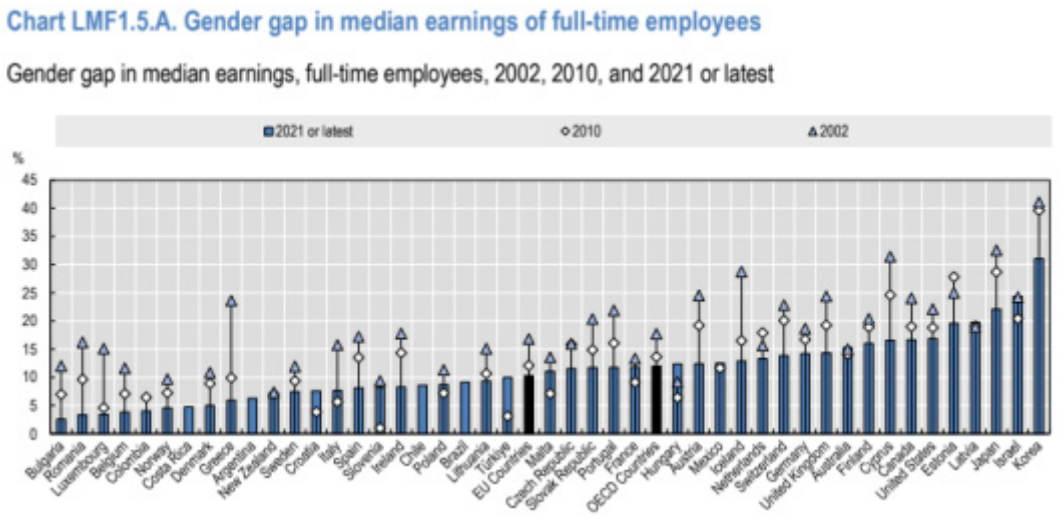
1) Chart LMF1.5.A.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적절)

성별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임금 격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지표는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소득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집계한 것이다. 즉 남성의 중위소득 수준 대비 여성의 중위소득을 통해 파악되는데, 전일제 근로자들만을 비교함으로써 근로시간이나 시간제 근로 등 소득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은 통제되었다. 한국의 지표도 이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격차는 11.9%인데 비해 한국은 31.1%로 OECD 국가 중 가장 격차가 크다. 한국 다음으로 격차가 큰 국가는 이스라엘로 25.4%, 그 다음은 일본 22.1%로 격차가 30%가 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한국의 경우 2005년 격차가 39.8%로 높았던 것에 비해 2021년 31.1%로 줄어들긴 했지만, 매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며 약 25년 동안 8.7%p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 지표는 근로시간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동시장 성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OECD 국가 중 항상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 Chart LMF1.5.A.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



주: 성별 임금 격차는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성의 중위 소득 대비 여성의 중위 소득의 차이로 계산. 계산에 사용되는 소득 추정치는 전일제 임금 및 급여 근로자의 총 소득을 기준이나 이 정의는 국가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OECD 고용 데이터베이스(http://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 및 OECD.Stat에서 제공하는 각 국가의 메타데이터(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60)를 참조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2023). Chart LMF1.5.A.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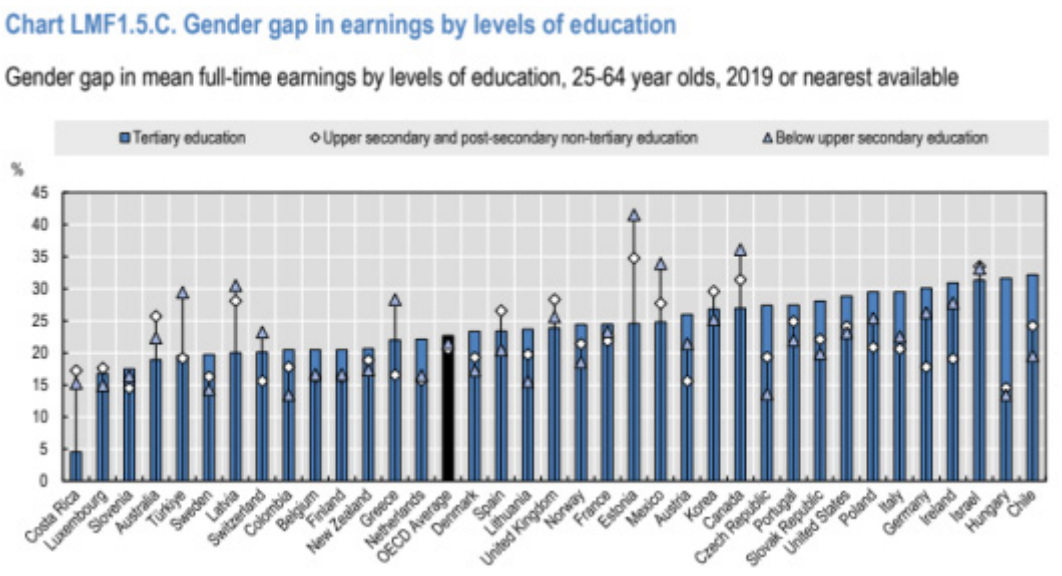
2) Chart LMF1.5.C.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Gender gap in earnings by levels of education) (적절)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를 활용하여 보고되며,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수준별 성별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25~64세를 기준으로 하여 남성의 중위소득 대비 여성의 중위소득을 교육 수준별로 집계한다. 교육수준에 따른 성별 임금 격차의 경향성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국의 경우 중등이하, 고등교육, 중등교육 순으로 격차가 커졌고 이 격차는 지표를 제시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같은 성별 임금 격차라 하더라도 특성에 따른 수치는 해당 지표 집계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은 지표마다 다를 수 있다. 고등교육 수준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칠레, 헝가리, 이스라엘 순이며,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교육 수준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 캐나다, 멕시코 순이며, 가장 작은 국가는 콜롬비아, 체코, 헝가리 등 교육수준별로도 국가간 차이가 일관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지표는 국가간 비교 시, 교육수준별 성별 임금 격차 수치나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의 차이

및 경향성이 국가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특정 교육수준에 따른 국가간 비교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적인 성별 임금 격차의 국가간 차이와 해당 지표의 국가간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국가별 집계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3-6] Chart LMF1.5.C.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



주: 성별 임금 격차는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성과 여성의 연평균 전일제 소득 차이를 남성의 연평균 전일제 소득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https://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 OECD(2023). Chart LMF1.5.C. Gender gap in earnings by levels of education에서 재인용

바.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1) Chart LMF1.6.A. 고용률의 성별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적절)

고용률과 전일제 고용률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OECD 국가 중 9번째로 크며, 가장 격차가 큰 국가는 튀르키예, 멕시코, 콜롬비아 순이고 가장 격차가 작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순이다. 전일제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의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가 고용률 격차보다 전일제의 고용률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 가운데,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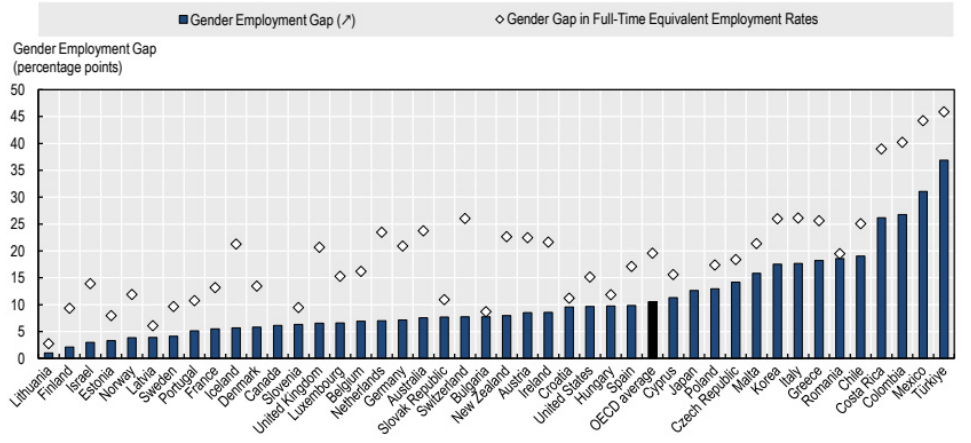
등과 같이 고용률의 성별 격차와 거의 차이가 없는 국가가 있는 반면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도 있다. 한국의 전일제 고용률 성별 격차는 전체 고용률 성별 격차보다 OECD 국가 중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별 고용률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일제 고용이라는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성별 고용률 격차와 전일제 고용률 성별 격차는 성별 고용률 격차가 주로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에서 기인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한국은 이 두 격차 모두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며 특히 전일제 고용률 성별 격차의 수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7] Chart LMF1.6.A.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Chart LMF1.6.A.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Gender difference (men minus women) in the employment rate and the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 15-64 year olds, 2021



주: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15-64세 고용률에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을 곱한 후, 이를 40으로 나누어 계산. 한국 근로시간은 모든 직업에서의 실제 주간 근로 시간임.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 OECD(2023). Chart LMF1.6.A.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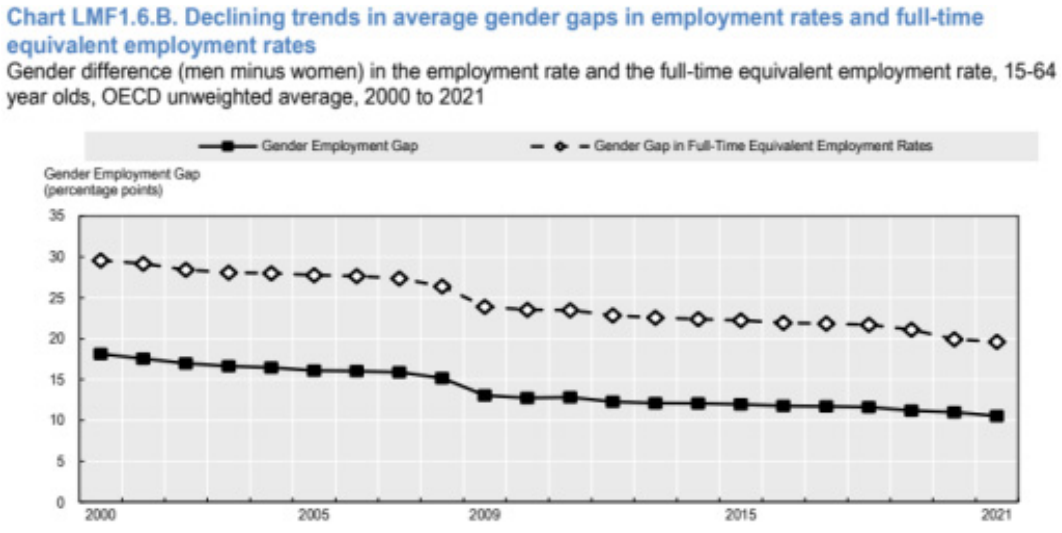
2) Chart LMF1.6.B.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성별 차이 감소 추이(Declining trends on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적절)

본 지표는 고용률의 성별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에서 파생되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고용률과 전일제 고용률 성별 격차의 추이를 보여준다.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지난 20년간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000년 18.0%에서 2021년 10.5%로 7.5%p 감소하였고 폴란드와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감소하였다. 한국은 2000년 성별 고용률 격차 25.0%에서 2021년 15.5%로

10%p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전일제 고용률 성별 격차는 2000년 약 30%에서 2021년 약 20%까지 약 10%p 감소하였다.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특히 2009년과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격차가 감소하여, 경제 위기 시 남성 고용이 위축되는 반면 여성 고용이 회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성별 격차 감소 추이 지표는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성별 격차의 추이를 살펴보는 지표로, 특히 전일제 고용률 성별 격차 감소 추이는 여성 고용의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과 연계하여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개선의 효과까지도 확인해볼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림 3-8] Chart LMF1.6.B.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성별 차이 감소 추이



주: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15-64세 고용률에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을 곱한 후, 이를 40으로 나누어 계산. 한국 근로시간은 모든 직업에서의 실제 주간 근로 시간임.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2023). Chart LMF1.6.B. Declining trends in average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에서 재인용

3) Chart LMF1.6.C. 시간제 고용에서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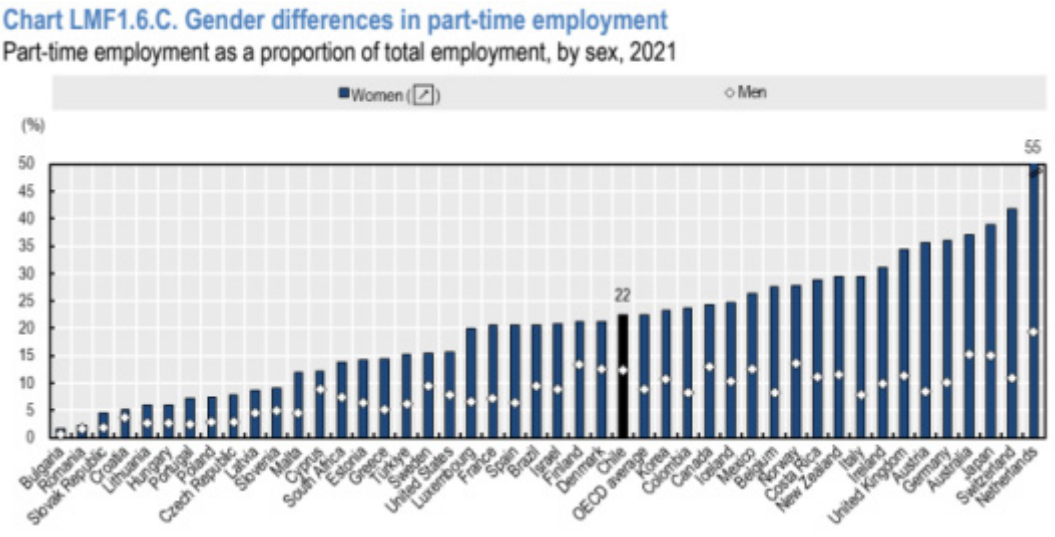
시간제 고용에서의 성별 차이 지표는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고용 인원의 비율을 성별로 비교한 것이다. 즉 남성의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고용 비율, 여성의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고용 비율을 비교하는 지표이다. OECD 국가 중 대표적으로 시간제 비율이 높은 국가인 네덜란드가 남녀 모두 시간제 고용 비율이 높았고, 특히 여성은 절반 이상인 55%가 시간제이며 그에 비해 남성은 19%

수준으로 남녀간 격차 역시 가장 컸다. 남녀 모두 시간제 비율이 낮은 국가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며, 남녀 모두 시간제 비율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이다. 일본은 여성의 시간제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여성 시간제 비율은 약 24%이며, 한국은 23.2%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남성 시간제 비율은 10.7%로 OECD 평균 9.8%보다 약간 높았다. 전반적으로 여성 시간제 비율이 높을수록 시간제 고용에서의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적으로도 여성의 시간제 비율이 남성의 시간제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서유럽 국가들의 높은 여성 고용률이 시간제 고용으로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간제 고용에서의 성별 차이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고, 전일제 고용보다는 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즉 고용의 질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수치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이 20% 이상이라는 것은 여성의 고용 지위가 더 열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9] Chart LMF1.6.C. 시간제 고용에서의 성별 차이



주: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15-64세 고용률에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을 곱한 후, 이를 40으로 나누어 계산. 한국 근로시간은 모든 직업에서의 실제 주간 근로 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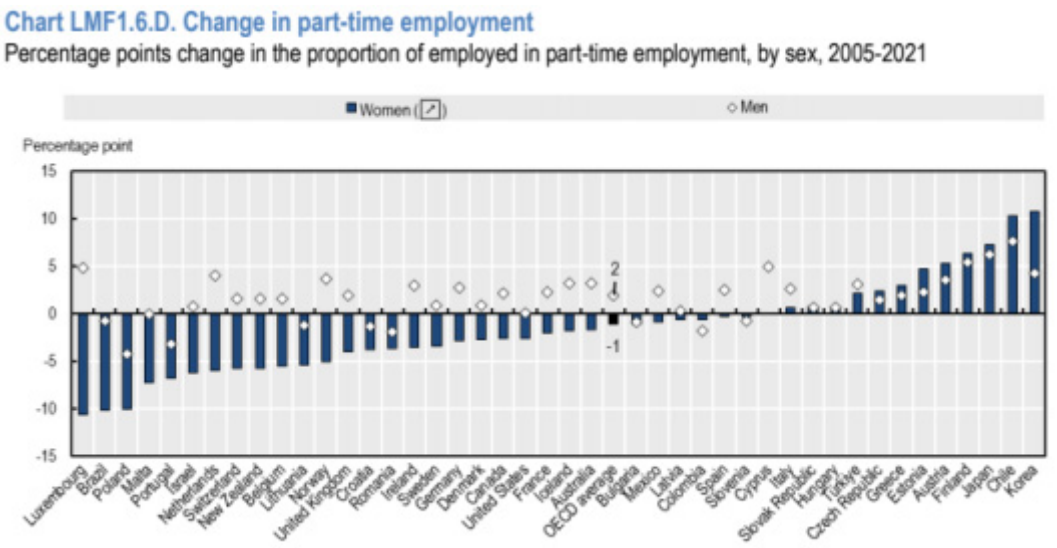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2023). Chart LMF1.6.C. 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에서 재인용

4) Chart LMF1.6.D. 시간제 고용의 변화(Change in part-time employment) (적절)

본 지표는 시간제 고용의 성별 차이의 추이를 살펴보는 지표이다. 2005년부터 2021년 사이 변화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시간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룩셈부르크나 폴란드와 같이 10%p 이상 감소한 국가도 있다. 반면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이 늘어난 국가도 10여 개국이 되는데, 한국은 2005년 12.4%에서 2021년 23.2%로 10%p 이상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로 나타났다. 남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대부분 증가하였는데, 핀란드, 칠레, 일본이 5%p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도 5%p 가까이 증가하였다.

시간제 고용의 변화를 성별로 살펴보는 본 지표는 여성의 고용 지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로, OECD 국가 대부분이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이 줄어든 것에 비해 한국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그동안 증가한 여성 고용률이 대부분 시간제 고용을 통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0] Chart LMF1.6.D. 시간제 고용의 변화



주: 총 고용에서 시간제 고용의 비율. 여기서 '시간제'는 주된 직장에서 주당 통상적으로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한국은 모든 직업에서의 실제 주간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2023). Chart LMF1.6.D. Change in part-time employment에서 재인용

5) Table LMF1.6.A. 학력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적절)

학력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 지표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를 활용하여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 자료도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2020년 기준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교육수준에서 성별 고용률의 격차는 약 8%p인데 비해, 초등교육수준에서 성별 고용률 격차는 약 21%나 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줄어드는데, 한국은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초등교육수준에서 14.9%p, 중등교육수준에서 21.2%p, 고등교육 수준에서 21.8%p로 점차 커진다. 따라서 고등교육 수준에서 성별 고용률 격차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크다.

한국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것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여성 집단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결국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가 커지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지표는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률의 성별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별 고용률 격차가 줄어드는 OECD 국가의 전반적인 추세와 반대로, 한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별 고용률 격차가 커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고학력 여성들이 왜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거나 진입하지 못하는가(않는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이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표 3-5〉 Table LMF1.6.A. 학력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

Table LMF1.6.A. **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Employment rates for men and women by level of education attained, 25-64 year olds, 2020

	Below upper secondary			Upper secondary or post-secondary non-tertiary			Tertiary Education		
	Male	Female	Gender Gap	Male	Female	Gender Gap	Male	Female	Gender Gap
Australia	65.8	47.6	18.2	81.4	65.5	15.9	86.4	77.6	8.7
Austria	60.6	49.3	11.3	80.1	72.3	7.8	88.9	83.1	5.8
Belgium	55.8	36.6	19.2	79.4	66.4	13.0	88.6	84.2	4.4
Canada	62.0	42.8	19.2	75.8	62.4	13.4	83.5	76.3	7.2
Chile	82.1	45.2	37.0	85.4	59.9	25.5	90.9	79.1	11.8
Colombia	81.8	40.6	41.2	80.5	51.4	29.1	82.3	68.0	14.2
Costa Rica	77.3	36.1	41.3	81.4	48.1	33.3	81.7	72.4	9.4
Czech Republic	67.0	48.8	18.2	90.0	76.2	13.8	94.7	77.9	16.8
Denmark	69.5	49.9	19.6	85.8	77.5	8.2	90.7	85.2	5.5
Estonia	68.4	50.6	17.8	83.2	74.2	9.0	89.0	82.9	6.1
Finland	59.2	44.9	14.3	78.0	71.6	6.5	89.1	85.1	4.0
France	61.5	45.4	16.2	76.5	68.1	8.4	87.5	83.0	4.5
Germany	70.3	55.4	14.9	84.6	79.8	4.7	90.9	86.1	4.8
Greece	66.1	36.0	30.1	74.4	49.9	24.5	80.9	70.6	10.2
Hungary	66.5	46.7	19.8	87.0	70.1	16.9	94.2	79.9	14.4
Iceland	76.2	63.1	13.0	86.2	74.7	11.5	89.5	86.1	3.4
Ireland	63.2	36.6	26.7	82.0	61.3	20.7	89.3	80.5	8.9
Israel	58.4	37.9	20.5	74.8	65.7	9.1	89.6	84.6	5.0
Italy	66.9	34.8	32.2	80.5	60.3	20.2	86.0	76.9	9.1
Japan	..	..	..	..	..	..	94.6	77.7	16.9
Korea	70.3	55.4	14.9	80.8	59.6	21.2	87.2	65.4	21.8
Latvia	70.0	54.6	15.4	78.7	72.0	6.7	88.8	85.6	3.2
Lithuania	55.8	51.8	4.0	77.2	68.4	8.8	90.3	89.6	0.6
Luxembourg	67.1	53.8	13.3	77.0	72.3	4.7	88.2	81.7	6.5
Mexico	85.1	43.0	42.1	84.9	52.6	32.3	84.4	68.8	15.6
Netherlands	73.6	52.7	20.9	87.1	77.0	10.1	92.1	86.9	5.2
New Zealand	78.2	62.8	15.4	89.2	73.8	15.4	92.1	84.4	7.7
Norway	67.0	53.5	13.5	83.4	74.0	9.4	90.1	88.4	1.7
Poland	60.1	32.4	27.6	82.2	58.8	23.4	93.5	86.0	7.5
Portugal	76.9	62.0	14.9	84.2	79.2	5.0	87.4	88.3	-0.8
Slovak Republic	43.5	30.5	13.0	82.4	70.5	11.9	89.6	77.9	11.7
Slovenia	56.2	41.1	15.1	80.1	69.4	10.7	91.6	89.5	2.1
Spain	66.4	44.9	21.5	75.6	62.3	13.3	83.4	77.0	6.4
Sweden	72.2	52.3	20.0	87.7	81.3	6.4	90.3	88.5	1.8
Switzerland	77.9	61.7	16.2	85.3	77.4	7.9	92.5	84.7	7.8
Türkiye	71.9	28.9	43.0	78.9	32.8	46.1	83.0	62.2	20.8
United Kingdom	72.5	55.9	16.6	84.7	75.8	8.9	89.8	83.4	6.4
United States	66.3	42.1	24.3	75.0	62.5	12.4	86.6	77.9	8.7
OECD average	**67.8**	**46.7**	**21.1**	**81.7**	**66.9**	**14.8**	**88.5**	**80.7**	**7.8**
Argentina	81.7	45.6	36.1	90.5	58.9	31.6	88.2	76.2	12.0
Brazil	67.0	36.6	30.4	78.7	55.6	23.1	86.0	74.7	11.3
India	92.5	27.1	65.4	89.4	20.7	68.7	84.4	28.4	55.9
Indonesia	90.6	58.0	32.6	89.3	53.7	35.6	89.2	75.8	13.3
Bulgaria	57.9	37.5	20.4	79.0	67.9	11.1	89.9	86.0	3.9
Croatia	50.8	29.4	21.4	72.0	59.3	12.7	85.7	81.7	4.0
Cyprus	76.8	50.0	26.8	78.0	61.9	16.1	86.8	80.4	6.4
Malta	80.1	44.5	35.6	86.1	76.9	9.2	92.7	86.0	6.7
Romania	73.4	40.2	33.2	79.5	59.9	19.6	90.9	87.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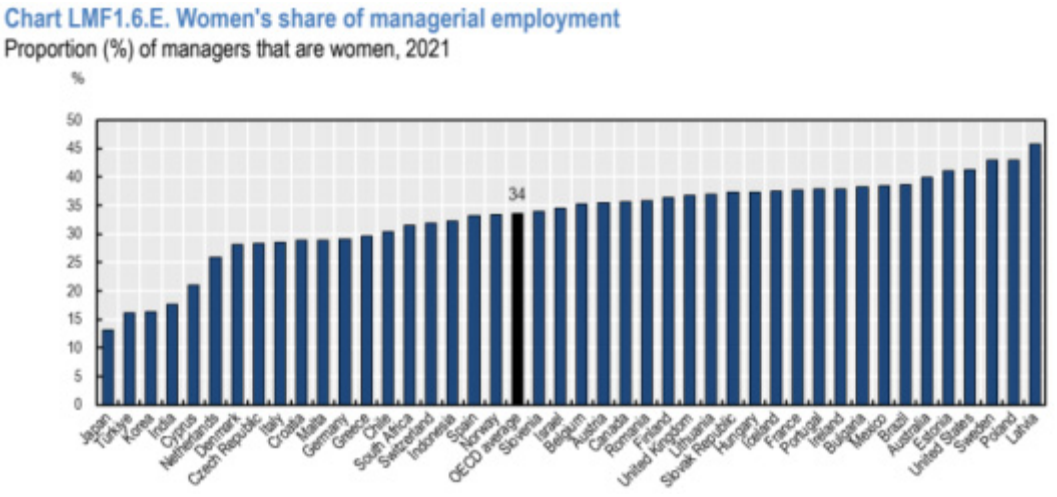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2023). Table LMF1.6.A. 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에서 재인용

6) Chart LMF1.6.E.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적절)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은 ILO STAT Database를 통해 보고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 관리직은 지위 수준이 높은 직종으로,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여성의 고용 지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소위 '유리천장' 현상이 어느 정도로 존재하며, 주요 의사결정 직무에 여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여성 관리직 비중 평균은 34%이며, 라트비아는 4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여성 관리직 비중이 40%가 넘는 국가는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 미국, 에스토니아이다. 한국은 16.3%로 일본, 튀르키예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한국의 여성 관리직 비중은 2005년 7.9%에서 2021년 16.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2021년 기준 12.9%로 여성 관리직 비중이 가장 낮지만 한국과 3.4%p 차이에 불과하다.

여성 관리직 고용 비중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고용 지위, 장기근속, 의사결정 수준 등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성별 격차에 있어서 유리천장, 경력단절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바, 여성 관리직 고용 비중을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약 30%까지라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3-11] Chart LMF1.6.E.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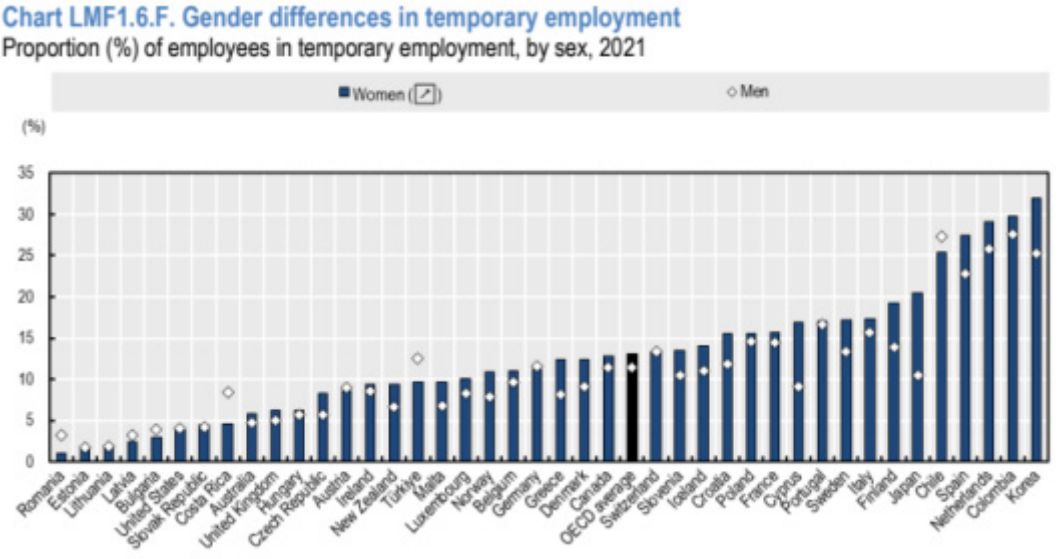
출처: ILO (2022), "ILOSTAT Database", SDG indicator 5.5.2 – Female share of employment in managerial positions (%) – via https://ilostat.ilo.org/data.; OECD(2023). Chart LMF1.6.E. 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에서 재인용

7) Chart LMF1.6.F.임시 고용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emporary employment) (적절)

임시 고용 즉 임시직에서의 남녀 비중의 차이를 보여주는 임시 고용의 성별 차이 지표는 여성들이 낮은 노동시장 지위에 얼마나 많이 위치해 있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임시 고용은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임금수준이나 복지 등 보상 수준이 낮은 일자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임시 고용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여성의 임시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임시직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콜롬비아, 네덜란드, 스페인 순이었다. 한국은 남성의 임시직 비율 역시 높은 편이었는데, 남녀간의 격차는 남녀 모두 임시직 비율이 높은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크게 나타났다.

임시 고용의 성별 차이는 OECD 국가 평균 약 2%이고 남녀 모두 임시직 고용 비율이 10% 초반대인 것에 비해, 한국은 남녀 모두 임시직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고 특히 여성의 임시직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의 고용 지위가 낮음을 이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 모두 임시직 비율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특히 여성의 임시직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12] Chart LMF1.6.F. 임시 고용의 성별 차이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2023). Chart LMF1.6.F. Gender differences in temporary employment 에서 재인용

사.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 지표 요약

한국은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 지표 중 LMF1.1 부모의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의 현황과 관련한 지표, LMF1.2 모성 고용률 지표,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고용 지표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 지표들은 아동 및 가족형태를 중심으로 산출되는데, 지금까지 고용관련 지표 산출에 주로 활용한 자료는 지역별고용조사로, 누락되었거나, OECD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로 보고되고 있었다. 2022년에 행정통계인 아동가구통계등록부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이 자료는 아동을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지표를 산출해 본 결과, 여성의 고용률 수준이 대체로 70% 이상으로 기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료를 구축한 통계청의 판단으로는, 행정통계의 한계상 '일했음'이 과대표집되었기 때문으로, 이 자료로 고용률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였다.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고용률을 산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동가구통계등록부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지역별고용조사는 개인 단위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사대상을 가구단위로 구성하기 때문에 가구원명부를 통해 아동의 특성이나 가구형태에 따른 고용률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고용률 지표 집계 방식을 보완하거나,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명부를 활용하여 산출하되 통계적 적정성을 지표 산출 기관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에서는 성별 연령별 고용률이 보고되고 있으며,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의 연령대에 따른 M-curve 현상이 일본과 함께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로 확인되었다.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지표 중에서는 전일제 취업자 중위 소득의 성별 격차와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가 보고되고 있는데,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며, 특히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 지표는 근로시간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격차가 컸다.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지표는 한국의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시간제 고용의 성별 차이와 변화, 여성의 관리직 비율, 임시 고용의 성별 차이 등 고용의 질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한국은 성별 고용률 격차 및 전일제 고용률의 성별 격차 모두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며 특히 전일제 고용률의 성별 격차 수준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시간제 고용 비율은 남녀 모두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서유럽 국가들은 남녀 모두 시간제 비율이 높고 동유럽 국가들은 낮은 편으로 국가마다 편차가 있었다. 한국은 고용률 성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여성 시간제 고용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여성의 고용 지위가 열악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학력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한국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성별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고등

교육 수준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가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컸다. 이는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은 유리천장의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한국은 16.3%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임시 고용 비율은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에서 여성이 약간 더 높았는데, 한국은 여성의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았고 남녀간 격차도 큰 편이었다. 본 지표를 통해, 한국의 여성의 시간제 고용, 임시직이 많고 관리직이 적은 등 고용의 질이 특히 낮고 남성에 비해서도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한국은 고용과 관련한 지표는 대체로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는 반면, 아동이나 가족의 유형에 따라 성별 고용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여성의 연령대에 따른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속되는 초저출생으로 연령대에 따라 자녀 유무를 유추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아동 및 가족 유형에 따른 고용 상태 지표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통계 생산 기관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고용에서의 성별 격차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성별임금 격차가 크고, 임시직이 많고 관리직이 적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성별 고용률 격차가 커지는 등 여성의 고용 지위가 낮은 편이었다. 이는 결국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연령에 따른 M-curve가 남아있는 국가라는 특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가.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1) Chart LMF2.1.A.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적절)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은 근로시간을 성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이며,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고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주당 근로시간은 다섯 개(1~19시간, 20~29시간, 30~34시간, 35~39시간, 40시간 이상)로 구분하여 집계하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 기준이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네덜란드와 스위스로, 특히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주당 30시간 미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이 짧은 대표적인 나라로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가 있는데, 남녀 근로자 모두 절반 이상이 주당 35~39시간에 분포해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남성은 약 80%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여성은

절반 정도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남녀 모두 근로시간이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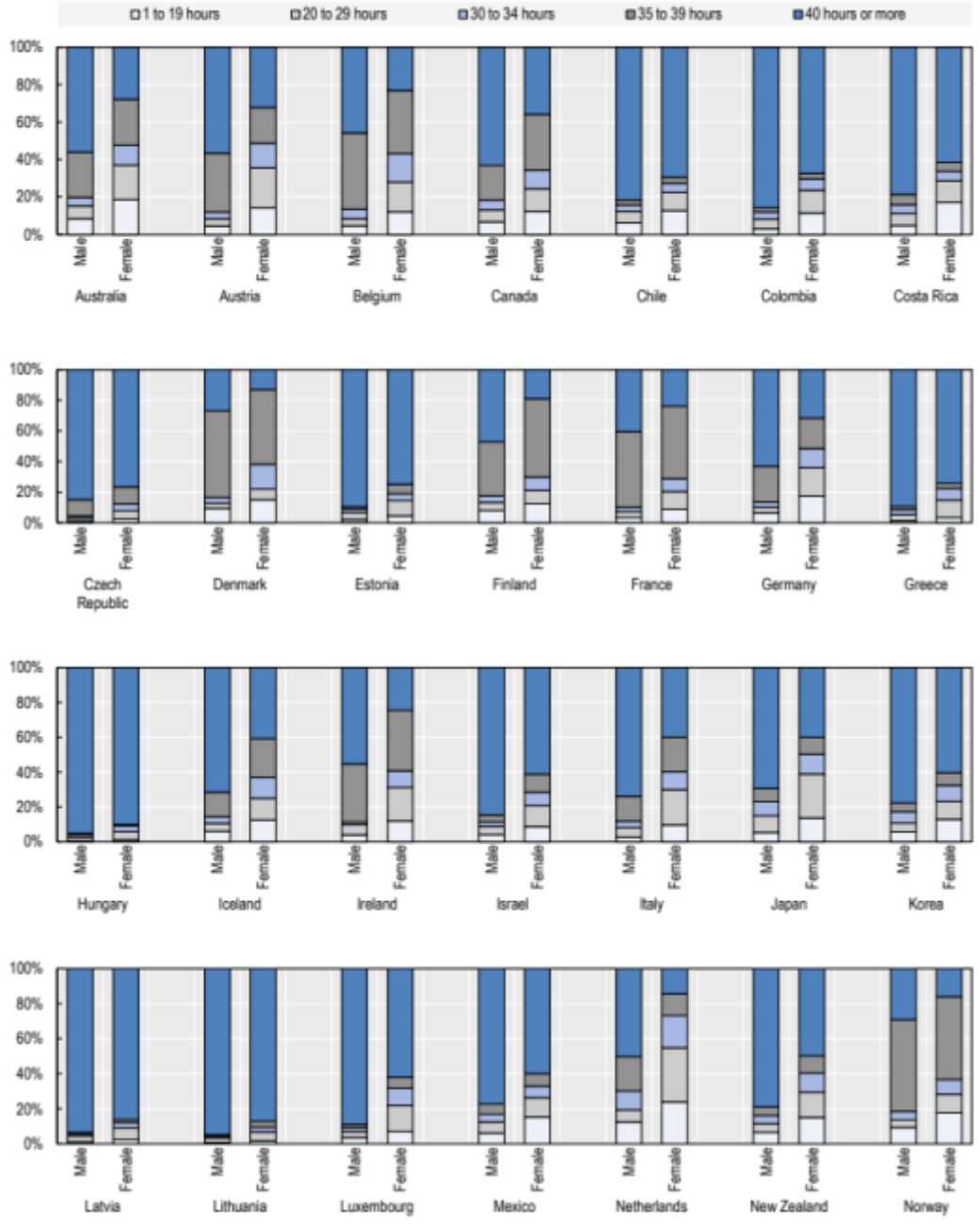
근로시간 분포는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40시간 이상의 비중이 많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여성들은 그에 비해 근로시간대가 고르게 분포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여성들이 주 40시간 이하 근로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하며,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보여주는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 지표를 통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남성들은 주 40시간이라는 표준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들은 그보다 더 짧은 근로시간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특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남녀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3-13] Chart LMF2.1.A.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1

Chart LMF2.1.A. 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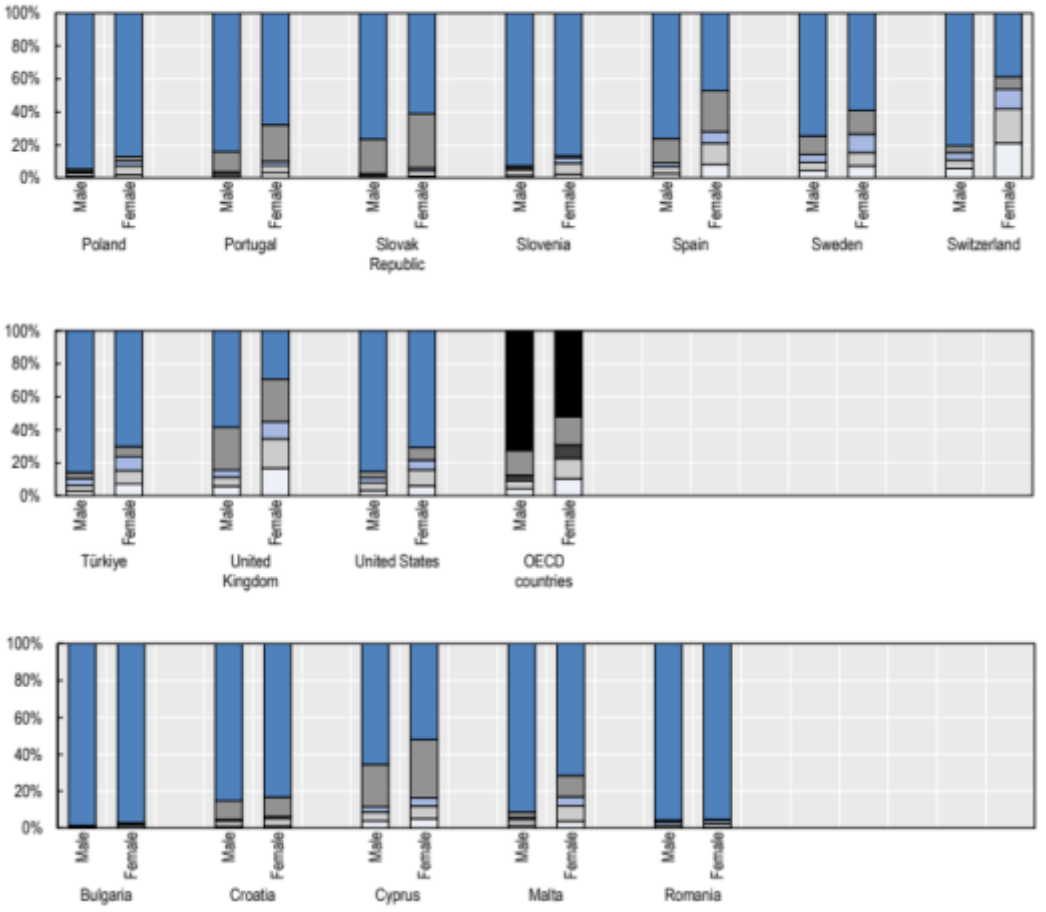
Distribution (%) of employed men and women (all ages)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그림 3-14] Chart LMF2.1.A.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2

Chart LMF2.1.A. 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cont.)

Distribution (%) of employed men and women (all ages)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주: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 데이터는 주된 직업이 아닌 모든 직업을 기준으로 함. 일본과 한국의 경우, 통상적인 주간 근로 시간이 아닌 실제 주간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2023). Chart LMF2.1.A. 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에서 재인용

2) Chart LMF2.1.B.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2005 to 2021) (적절)

본 지표는 취업자 중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남녀 비중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2005년에서 2021년 사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고 한국의 지표도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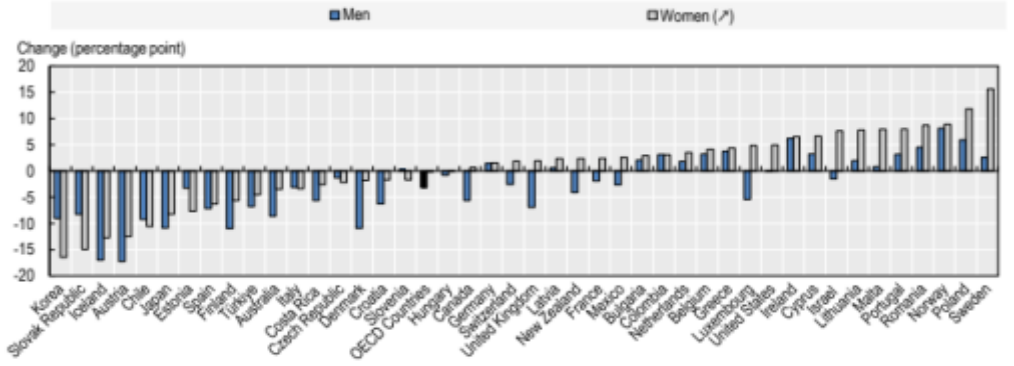
그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OECD 국가 평균으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오스트리아와 아이슬란드는 주 40시간 일하는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 2005년 이후 17%p 감소하였고,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거의 약 13%p 감소하였다. 한국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남녀 근로자 비중이 많이 감소한 국가인데, 특히 여성의 비중이 약 15%p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남녀 모두 주 40시간 이상 비중이 증가한 국가들도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2005년 이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의 비중이 15%p 이상 증가하였고, 폴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도 각각 12%p, 9%p, 7%p 증가하였다. 이들 국가는 남성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여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대략 5%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국가들은 오히려 주 40시간 이상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길었던 국가들은 주 40시간 이상의 비중이 감소하여, OECD 국가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의 분포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으로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약간 줄었는데, 한국은 워낙 장시간 근로하는 국가이다 보니 줄어든 비중이 상당이 크게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남성 근로자에게 더 많은데, 여성 근로자의 감소 비중이 더 커서, 오히려 여성은 시간제 근로가 많아지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3-15] Chart LMF2.1.B.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

Chart LMF2.1.B. 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2005 to 2021

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 of the employed (all ages) with usual weekly working hours equal to 40 hours or more, 2005 to 2021



주: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주된 직업이 아닌 모든 직업을 기준으로 함. 한국의 경우, 통상적인 주간 근로 시간이 아닌 실제 주간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OECD(2023). Chart LMF2.1.B. 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2005 to 2021에서 재인용

나.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1) Chart LMF2.2.A.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자료없음)

이 지표는 0~14세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유급 노동시간에 따른 고용 패턴을 나타낸다. 여기서 고용 패턴은 전일제, 시간제, 미취업을 기준으로 하여 ①한 명은 전일제, 한 명은 미취업, ②한 명은 전일제, 한 명은 시간제로 근무 ③한 명은 전일제, 한 명은 미취업 ④둘 다 미취업 ⑤기타로 구분한다. 여기서 시간제란,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어 있는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 명부를 이용하면 자녀가 있는 부모를 선택하여 이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산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향후 통계청에서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 명부를 활용하여 이 지표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2) Chart LMF2.2.B.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자료없음)

이 지표는 앞 지표, 즉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의 변화를 시계열로 비교하는 지표인데, 현재는 2010년과 2019년 값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어 있으며, LMF2.2.A. 지표가 산출 가능하다면 이 지표 역시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Table LMF2.2.A.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자료없음)

이 지표는 막내 자녀 연령별로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을 나타내는데, 한국은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되어 있다. 막내 자녀 연령은 0~2세, 3~5세, 6~14세로 구분하며, 고용 패턴은 LMF2.2.A. 지표의 구분과 동일하다.

이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 패턴을 주당 근로시간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산출할 수 없으나,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 명부를 이용한다면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4) Table LMF2.2.B.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자료없음)

이 지표는 유자녀 부모 중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내는데, 근로시간은 주당 ①1~29시간 ②30~39시간 ③40~44시간 ④45시간 이상으로 구분한다. 자녀가 있는 부모를 남녀로 나누어 취업자인 경우 주당 근로시간의 분포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한국은 이 지표 역시 누락되어 있다.

이 지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향후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 명부를 이용한다면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5) Table LMF2.2.C.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자료없음)

이 지표는 막내 자녀 연령을 0~2세, 3~5세, 6~14세로 나누어 이 연령별로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다. 즉 남녀로 나누고, 각 성별로 막내 자녀 연령대별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

한국은 이 지표를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명부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지표의 경우에는 성별, 유자녀 여부, 막내 자녀 연령, 부모의 고용 상태, 근로시간까지 앞서의 지표보다 더 많은 layer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집계하는 것이 공표가능한 수치인지 통계청 담당자 및 통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산출 및 공표 가능성을 검토한 후 이 지표를 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Table LMF2.2.D.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자료없음)

LMF2.2.C. 지표와 동일하다.

7) Table LMF2.2.E.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자료없음)

이 지표는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다. 즉 0~14세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으로 나누고 남성과 여성 각각 취업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LMF2.2.B. 지표와 동일하게 구분하여 그 분포를 산출한다.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

한국은 이 지표를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명부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는 있겠지만, LMF2.2.E. 지표와 마찬가지로 성별, 자녀 수, 부모의 고용 상태, 근로시간 변수를 모두 활용해야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계하는 것이 공표가능한지 통계청 담당자 및 통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산출 및 공표 가능성을 검토한 후 이 지표를 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Table LMF2.2.F.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자료없음)

LMF2.2.E. 지표와 동일하다.

다.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1) Chart LMF2.3.A.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자료없음)

이 지표는 한부모 가족의 고용 지위를 나타내는데, 고용 지위는 전일제와 시간제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부모의 주당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선 부재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 지표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이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명부를 이용하여 한부모의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방법과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정확한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근로시간에 따른 한부모의 고용 지위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안으로 고용 지위 중 '일하고 있음-근로시간 정보 없음'과 '일하지 않음'만을 산출하여 리포트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다른 지표에서도 근로시간 정보가 없을 경우 이렇게 산출하기도 한다.

실험적으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통해 산출해 보았을 때, 2021년 기준 한부모 가구 중 '일하고 있음-근로시간 정보 없음'은 83.8%, '일하지 않음'은 16.2%로 집계되었다. 이 값은 상시(58.0%)+일용(6.7%)+자영업(19.1%)을 모두 합친 값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 기간의 차이로 인해 고용률이 과대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은 전일제 근로 57.1%, 시간제 근로 14.1%, 일하지 않음 27.6%로 한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통해 산출한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 명부를 이용하여 한부모 가구의 주당 근로시간을 산출하거나,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근로시간 문항을 보완하여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2) Table LMF2.3.A.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자료없음)

이 지표는 취업한 한부모의 근로시간을 주당 ①1~29시간 ②30~39시간 ③40~44시간 ④45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다.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

이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명부를 이용하여 취업한 한부모의 근로시간 변수를 활용하거나,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근로시간 문항을 보완하여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라. LMF2.4 가족친화제도(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1) Chart LMF2.4.A.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지표생산 불필요)

이 지표는 European Company Survey(2013)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OECD에서도 유럽국가들의 지표만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근무제도 보급률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유연근무제도가 얼마나 도입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체 5천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해당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귀사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도'를 모두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 이상의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5인 이상 1천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모집단 추정을 위해 2018년부터 5인 이상 5천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강민정 외, 2020).

한국은 이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유연근무제도 보급률을 산출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유연근로제를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OECD에서 구분하는 근무제 종류와는 다르며, 이 분류에 맞게 산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근무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와 장소의 유연성에 따라 제도를 분류하는 반면, OECD는 단축한 근로시간의 누적 및 활용가능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 지표는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표는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한국의 유연근무제도와 OECD 유연근무제도 비교

<table>
<tr><th colspan="2">한국*</th><th colspan="2">OECD</th></tr>
<tr><td>시간선택제</td><td>육아, 학업,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짧은 시간 근무하면서 전일제와 차별 없는 근무(고용)형태</td><td rowspan="2">Possibility to use accumulated hours for longer periods of leave</td><td rowspan="2">시간을 누적하여 장기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음</td></tr>
<tr><td>시차출퇴근제</td><td>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절하여 러시아워를 피하고 유연한 시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예) 8시 출근 17시 퇴근, 10시 출근 19시 퇴근 등</td></tr>
<tr><td>선택근무제</td><td>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자율출퇴근제'를 의미</td><td rowspan="2">Possibility to use accumulated hours for full days off</td><td rowspan="2">누적된 시간을 하루종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음</td></tr>
<tr><td>재량근무제</td><td>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td></tr>
<tr><td>원격근무제</td><td>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td><td rowspan="2">Possibility to accumulate hours, but no accumulation of full day off</td><td rowspan="2">시간을 누적할 수는 있지만 하루종일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음</td></tr>
<tr><td>재택근무제</td><td>주거지(자택)에서 근무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td></tr>
<tr><td colspan="2"></td><td rowspan="2">Possibility to vary the start and end of daily work, but no accumulation of hours</td><td rowspan="2">하루 근무시간의 처음과 끝을 다양화할 수 있지만 누적할 수는 없음</td></tr>
<tr><td colspan="2"></td></tr>
</table>

출처: 한국자료는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 활용

2) Chart LMF2.4.B.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누락)

이 지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율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OECD에서는 ①전적으로 회사에서 정한다 ②여러 작업 스케줄 중 선택할 수 있다 ③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전적으로 근로자가 정한다로 구분한다.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이 지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3년마다 조사하는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유럽 근로환경조사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으며 5만명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귀하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결정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회사나 조직(사업 또는 농어업 활동 포함)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없다 ②회사나 조직(사업 또는 농어업 활동 포함)이 정해 놓은 근무 시간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③몇 가지 제한사항을 지키면 근무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예: 유연근무제) ④내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로 응답하는 문항으로, OECD의 구분과 동일하다. OECD 지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근로환경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 기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①회사나 조직(사업 또는 농어업 활동 포함)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없다 67.5%, ②회사나 조직(사업 또는 농어업 활동 포함)이 정해 놓은 근무 시간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8.4% ③몇 가지 제한 사항을 지키면 근무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예: 유연근무제) 6.4% ④내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17.0%이다. 남녀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3-7〉 근무시간의 유연성 성별 비교(2020년)

(단위: %)

	회사나 조직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없다	회사나 조직이 정해 놓은 근무시간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지키면 근무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모름/ 무응답/ 거절
남	67.2	8.5	6.5	17.1	0.7
여	68.1	8.2	6.3	16.7	0.7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2020) 근로환경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OECD 평균값을 살펴보면, ①전적으로 회사에서 정한다는 비중은 여성 63.5%, 남성 63.5%로 동일하며, ②여러 작업 스케줄 중 선택할 수 있다는 비중은 여성 9.8%, 남성 8.1%로 여성이 좀 더 높지만 큰 차이는 없다. ③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비중은 여성 21.0%, 남성 21.9%로 남녀 모두 큰 차이 없이 두 번째로 많았다. ④전적으로 근로자가 정한다는 비중은 여성 5.6%, 남성 6.5%로 나타났다. OECD 국가에서도 근로시간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경우 10% 이상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자율성이 높고 남녀간 격차도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나라는 ③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유럽 국가는 대체로 ①전적으로 회사에서 정한다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한국의 경우 ①전적으로 회사에서 정한다는 비중은 여성 68.1%, 남성 67.2%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④전적으로 근로자가 정한다는 비중도 여성 16.7%, 남성 17.1%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이 응답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조사의 응답자 중 자영업자가 20.3%를 차지하고, 이들 중 65.3%가 ④전적으로 근로자가 정한다고 응답하여, 이 수치는 대체로 자영업자로 인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2.2%만이 ④전적으로 근로자가 정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적으로 근로자가 정한다는 비중이 높다 해도, 대부분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응답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값은 2020년 근로환경실태조사의 자료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2015년 자료인 OECD 결과와 시계열적인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표 3-8〉 근무시간의 유연성 고용형태별 비교(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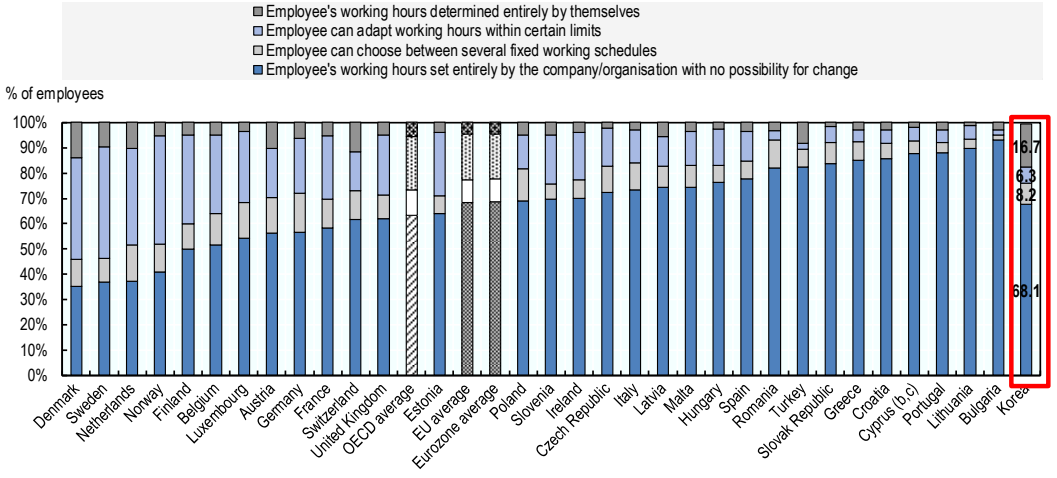
(단위: %)

	회사나 조직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없다	회사나 조직이 정해 놓은 근무시간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지키면 근무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모름/ 무응답/ 거절
임금근로자	84.0	8.1	5.1	2.2	0.7
무급가족종사자	15.7	9.3	15.9	57.9	1.2
자영업자	14.8	9.3	9.8	65.3	0.9
소계	67.5	8.4	6.4	17.0	0.7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2020) 근로환경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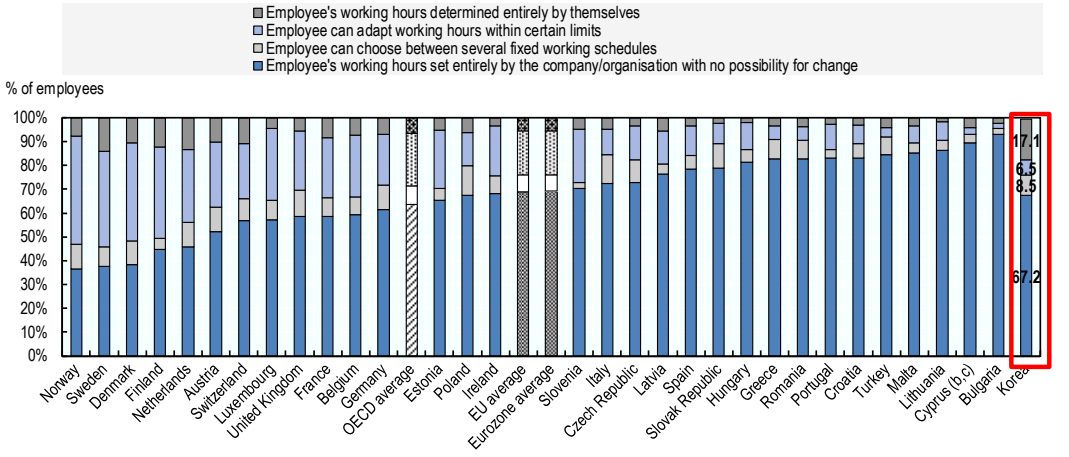
OECD 주요 선진국은 ④전적으로 근로자가 정한다는 비중은 낮지만 ②여러 작업 스케줄 중 선택할 수 있다와 ③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의 비중도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양 극단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근무시간의 유연성에 있어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6] Chart LMF2.4.B.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여성, 2015)
Chart LMF2.4.B.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Female, 2015)



출처: OECD(2023). Chart LMF2.4.B.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Female, 2015)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근로환경실태조사(2020)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그림 3-17] Chart LMF2.4.B.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남성, 2015)
Chart LMF2.4.B.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Male, 2015)



출처: OECD(2023). Chart LMF2.4.B.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Male, 2015)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근로환경실태조사(2020)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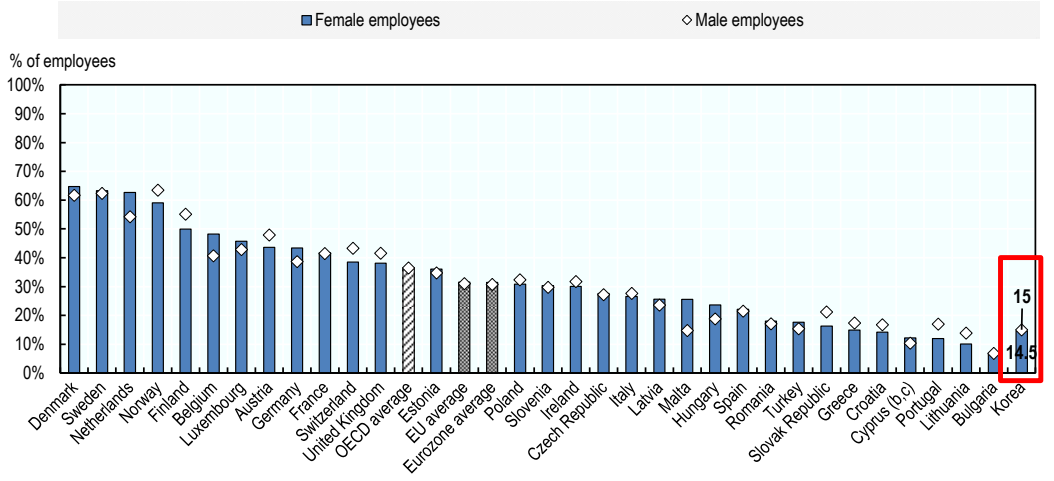
3) Chart LMF2.4.C.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누락)

이 지표는 LMF2.4.B. 지표에서 "②여러 작업 스케줄 중 선택할 수 있다 ③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를 합한 비중을 성별로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이 지표 산출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 남성의 비율은 15.0%, 여성은 14.5%로 나타났다(Chart LMF2.4.B. 지표 참조).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 남성 36.5%, 여성 36.5%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성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여성의 비중도 높았는데, 특히 덴마크는 남성 61.7%, 여성 64.7%로 여성이 더 높았다. 이런 특징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도 나타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남성은 54.2%, 여성 62.7%로 그 격차가 가장 컸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남성 15.0%, 여성 14.5%로 OECD 국가 중 불가리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있어서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보여주고 이는 남녀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림 3-18] Chart LMF2.4.C.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성별 차이
Chart LMF2.4.C. 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출처: OECD(2023). Chart LMF2.4.C. 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근로환경실태조사(2020)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4) Chart LMF2.4.D. 재택근무 근로자(Employees working from home) (누락)

이 지표는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재택근무는 강도에 따라 '주에 매일 또는 몇 번', '월에 몇 번', '월에 몇 번 미만', '전혀 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있다. 즉 전체 근무시간 중 재택근무를 하는 비중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한국은 이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앞서 설명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나 근로환경조사에 이와 유사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OECD의 구분에 맞도록 산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재택근무 도입률만을 묻고 있어 재택근무의 빈도를 파악할 수 없고 근로자가 응답한 OECD의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 근로환경조사에서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일한지 1년이 안 된 경우는 주된 일을 시작한 이후), 다음의 장소에서 얼마나 자주 일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고용주 사업장 또는 귀하의 사업장(사무실, 공장, 점포, 학교 등) ②고용주가 지정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고객의 사무실, 고객의 집, 공사 현장 등) ③자동차, 트럭 등 교통수단 내(자신의 차량,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차 운전 등 직업적인 차량 운전 포함) ④내 집"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항상, 거의 내내, 가끔, 드물게, 전혀 하지 않음)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항을 OECD 지표와 비교해 본다면, '내 집'으로 응답한 사람 중 '항상

+거의 내내'를 '주에 매일 또는 몇 번'으로, '가끔'을 '월에 몇 번', '드물게'를 '월에 몇 번 미만'으로 산출해 볼 수 있다. 이는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이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수치로 보인다.

근로환경조사로 이 지표를 산출한다면, 다음 표와 같다. 이 수치에 따르면 '주에 매일 또는 몇 번'은 남성 1.5%, 여성 2.8%, '월에 몇 번'은 남성 2.3%, 여성 2.1%로, '월에 몇 번 미만'은 남성 4.5%, 여성 3.5%, '전혀 하지 않음'은 남성 90.1%, 여성 90.0%였다.

〈표 3-9〉 남녀근로자의 재택근무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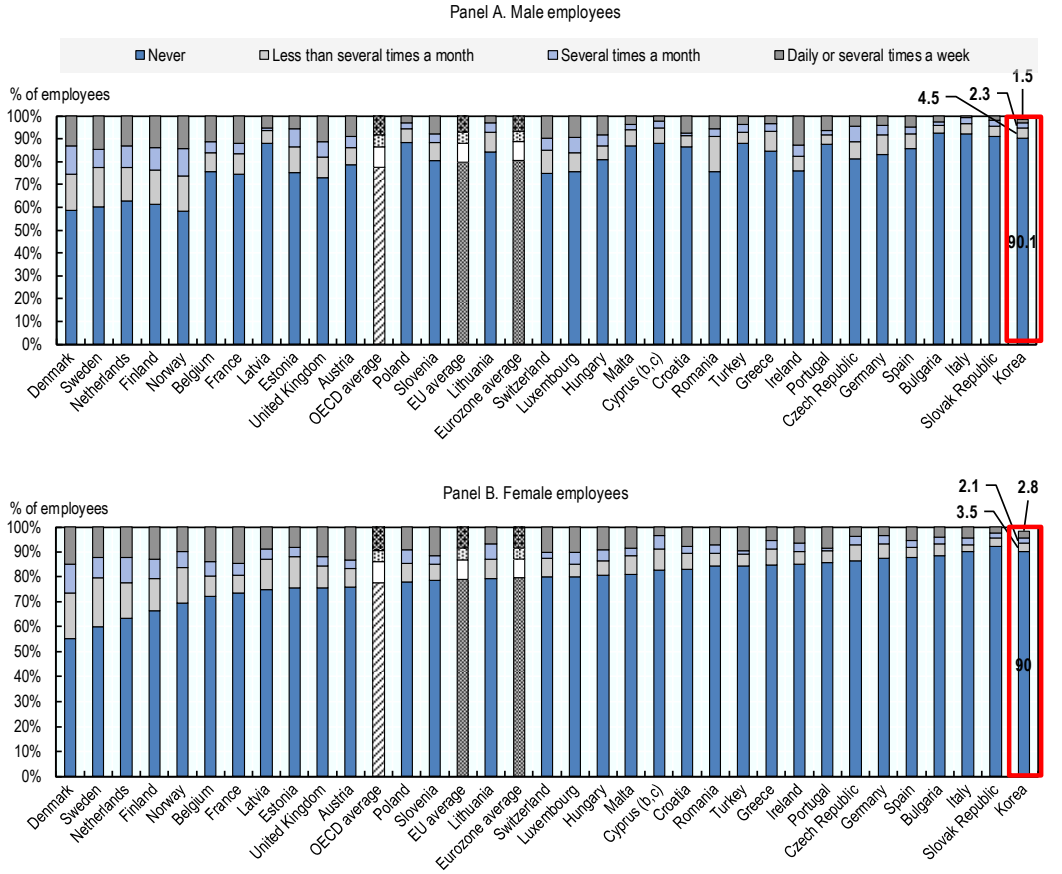
	항상	거의 내내	가끔	드물게	전혀 하지 않음
남성	0.8	0.7	2.3	4.5	90.1
여성	1.9	0.9	2.1	3.5	90.0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2020) 근로환경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OECD 평균을 살펴보면, '주에 매일 또는 몇 번'은 남성 8.2%, 여성 9.3%, '월에 몇 번'은 남성 5.5%, 여성 4.5%, '월에 몇 번 미만'은 남성 8.9%, 여성 8.4%, '전혀 하지 않음'은 남성 77.4%, 여성 77.7%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도 재택근무를 전혀 하지 않는 비중이 남녀 모두 높았으며,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70% 이상이었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는 남녀 모두 '주에 매일 또는 몇 번' 재택근무를 하는 비중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택근무를 전혀 하지 않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은 국가들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전혀 하지 않음'이 남성 90.1%, 여성 90.0%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주에 매일 또는 몇 번' 역시 남성 1.5%, 여성 2.8%로 매우 낮아, 한국은 2020년 자료를 활용했음에도 재택근무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그림 3-19] Chart LMF2.4.D. 재택근무 근로자
Chart LMF2.4.D. Employees working from home



출처: OECD(2023). Chart LMF2.4.D. Employees working from home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근로환경실태조사(2020)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마.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1) Table LMF2.5.A.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12/2013) (적절)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은 돌봄시간,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 등 4개로 구분하여 보고되며,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고 한국의 지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는 다른 지표들과 달리 기준 연도가 1999년에서 2013년 사이이며, 한국도 2010년 생활시간조사 결과가 활용되어 있어 시점이 뒤처진 측면이 있다. 수면을 포함한 개인 돌봄시간의 비중은 남녀 모두 약 40~50% 사이에 분포하며 국가간 차이가 크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모든 국가에서 남성의 유급 노동 비중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낮고, 여성의 무급 노동 비중이 남성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여성의 유급 노동 비중 15.4%, 무급 노동 비중 13.7%로 유급과 무급 노동 비중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남성의 유급 노동 비중은 26.5%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가장 높았고 무급 노동 비중은 3.0%로 가장 낮았다. 돌봄 노동 시간의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남성은 약 3% 미만인데 비해 여성은 독일 1.7%에서 튀르키예 22.0%까지 분포가 다양하였다. 한국은 남성 돌봄시간 비중이 0.8%로 일본 0.5% 다음으로 적었고, 여성 돌봄시간 비중은 3.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 지표는 시간 배분에 있어 성별로 격차가 큼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녀 모두 돌봄 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적은 편이고 남성들이 특히 더 적었다. 특히 한국은 돌봄시간의 비중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남성은 유급 노동이 무급 노동 비중에 비해 훨씬 많은 반면 여성은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10〉 Table LMF2.5.A.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

Table LMF2.5.A: 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12/2013[a]
Distribution (%) of time spent in each activity over 24 hours, age 15 and over [b]

Panel A. Men

	Paid work or study	Unpaid work	Care work	Personal care	Leisure	Unspecified	Total
Australia	20.3	10.5	2.2	45.0	20.6	1.4	100
Austria	22.5	9.4	1.5	44.0	22.0	0.6	100
Belgium	15.6	9.7	0.8	44.9	26.5	2.6	100
Canada	22.1	10.3	1.7	43.6	21.7	0.6	100
Estonia	21.0	11.5	1.8	44.1	21.3	0.3	100
Finland	15.4	11.2	1.0	43.8	25.5	3.1	100
France	14.5	9.7	1.0	51.7	22.5	0.6	100
Germany	17.4	9.8	1.4	44.4	25.8	1.2	100
Italy	14.5	8.2	1.2	49.2	25.7	1.2	100
Japan	26.3	4.7	0.5	44.3	23.2	1.0	100
Korea	26.5	3.0	0.8	45.8	22.2	1.7	100
Latvia	24.2	8.8	1.2	44.9	20.8	0.3	100
Mexico	30.0	4.4	3.5	43.7	17.7	0.6	100
New Zealand	19.9	11.3	1.1	47.7	19.3	0.7	100
Norway	18.6	11.7	1.6	42.6	25.0	0.4	100
Poland	21.7	6.2	1.5	46.6	23.7	0.3	100
Slovenia	18.9	11.4	1.6	43.8	24.2	0.3	100
Spain	14.8	8.9	2.0	48.7	24.7	0.9	100
Sweden	20.1	10.0	1.8	42.5	24.4	1.2	100
Turkey	20.2	2.6	3.5	46.7	19.8	7.2	100
United Kingdom	20.1	9.5	1.6	43.3	24.7	0.9	100
United States	20.4	10.2	1.6	43.7	22.2	2.0	100
Bulgaria	16.5	11.7	1.2	49.6	20.7	0.3	100
Lithuania	22.4	9.7	1.6	45.3	20.5	0.3	100

Panel B. Women

	Paid work or study	Unpaid work	Care work	Personal care	Leisure	Unspecified	Total
Australia	11.1	17.3	5.3	46.2	18.6	1.6	100
Austria	14.1	17.3	3.2	44.9	20.0	0.5	100
Belgium	10.1	16.1	1.9	46.6	23.1	2.2	100
Canada	16.4	15.1	3.4	45.1	19.3	0.7	100
Estonia	14.8	19.2	3.5	43.8	18.3	0.3	100
Finland	12.6	15.4	2.5	45.2	21.5	2.7	100
France	10.1	14.9	2.3	52.8	19.1	0.8	100
Germany	11.3	15.9	1.7	47.4	23.7	0.0	100
Italy	7.6	21.0	2.4	48.4	19.1	1.4	100
Japan	14.9	15.3	1.9	45.4	21.2	1.2	100
Korea	15.4	13.7	3.4	45.5	19.3	2.6	100
Latvia	17.2	16.7	2.4	45.3	18.1	0.3	100
Mexico	12.1	22.5	8.6	41.8	14.1	0.8	100
New Zealand	11.5	17.8	2.9	48.9	18.2	0.7	100
Norway	13.9	13.9	2.5	44.2	25.1	0.4	100
Poland	11.6	18.8	3.3	46.2	19.8	0.3	100
Slovenia	13.8	19.7	2.6	43.9	19.7	0.2	100
Spain	9.9	17.8	3.6	47.8	20.0	0.9	100
Sweden	14.8	14.0	3.0	44.4	23.0	0.9	100
Turkey	6.1	3.7	22.0	46.8	17.6	3.8	100
United Kingdom	11.9	16.6	3.6	44.6	22.3	1.0	100
United States	15.1	14.8	3.2	45.2	19.3	2.3	100
Bulgaria	12.4	20.6	2.2	48.5	16.2	0.2	100
Lithuania	16.9	18.5	2.8	45.6	16.1	0.3	100

주: 총 인구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유럽 국가의 경우 표본은 20세에서 74세 사이의 성인을 포함하고, 독일과 일본은 10세 이상 인구를 포함함.

출처: 유럽 European Time Use Surveys dataset (HETUS) dataset(Austria, Canada, Finland, France, Spain, Norway 제외);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는 각국 National Time Use surveys 자료.; OECD(2023). Table LMF2.5.A: 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12/2013에서 재인용

2) Table LMF2.5.B. 돌봄시간(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1999-2010) (적절)

본 지표는 돌봄시간의 비중을 자녀 유무, 배우자 유무, 일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한국은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보고된다. 이 지표 역시 시점이 1999~2010년으로 시점이 뒤처져 있다. 아동의 연령은 7세 미만, 7~11세 미만, 11~15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나누어 제시되는데 국가마다 제공이 가능한 자료가 달라 전체적으로 다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7세 미만 아동 돌봄시간 비중에 대한 국가 자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부모인 경우에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양부모에 비해 돌봄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와 폴란드에서는 일하는 부모와 일하지 않는 부모 모두 한부모가 양부모에 비해 돌봄에 더 적은 시간을 쓰고 있었다. 스웨덴은 일하는 부모, 일하지 않는 부모 모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와 양부모 상관없이 동일하게 돌봄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돌봄시간이 적은 편이었고, 한부모가 양부모보다 돌봄시간이 더 길었는데, 일하지 않는 한부모의 돌봄시간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교에 한계가 있다.

본 지표는 부모가 일하는지 여부, 한부모인지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돌봄시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한국은 한부모가 양부모보다 돌봄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었고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했지만 한부모가 오히려 돌봄시간이 더 적거나 동일한 국가들도 있어, 이는 한부모에 대한 돌봄 지원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일하지 않는 한부모의 돌봄시간이 보고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표 3-11〉 Table LMF2.5.B.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

Table LMF2.5.B: 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1999-2010[a]
Proportion (%) of time spent on care as primary activity[b], age 15 and over[c]

	Panel A. Working respondents				Panel B. Non-working respondents			
	Single adult		Partnered adults		Single adult		Partnered adults	
	with child(ren)	without child	with child(ren)	without child	with child(ren)	without child	with child(ren)	without child
	Children under age 7				Children under age 7			
Austria	10.0	0.2	7.1	0.5	..	0.5	16.5	0.7
Belgium	5.5	0.2	5.0	0.8	9.0	0.3	9.6	1.0
Bulgaria	2.6	0.2	3.4	0.8	8.3	1.0	7.4	1.1
Canada	6.1	0.3	6.8	0.5	14.9	0.7	16.0	1.2
Estonia	4.8	0.9	5.1	1.2	12.1	1.5	11.8	1.7
Finland	7.1	0.2	7.6	0.4	..	0.4	14.9	0.6
France	6.0	0.4	5.9	0.5	6.1	0.5	9.5	0.9
Italy	10.3	0.3	6.7	0.3	13.3	0.9	10.7	1.0
Korea	5.9	0.4	4.1	1.0	..	0.0	5.5	2.0
Latvia	2.6	0.6	3.8	1.0	10.0	1.7	7.6	1.9
Lithuania	1.0	0.6	4.3	1.1	..	1.5	12.7	1.9
Norway	8.7	0.2	7.8	0.8	..	0.1	11.4	0.4
Poland	3.3	0.8	6.3	1.5	10.5	1.3	13.0	2.6
Slovenia	5.3	0.5	4.9	1.1	5.6	0.8	6.9	1.7
Spain	8.5	0.5	7.8	0.6	12.1	1.2	11.6	1.7
Sweden	6.5	1.0	6.5	1.7	10.0	0.7	10.0	1.4
United Kingdom	6.9	0.4	6.7	1.4	12.6	1.0	13.0	1.8
United States	7.2	0.5	6.6	0.6	10.7	0.9	12.1	1.7
	Children from age 7 to 11				Children from age 7 to 11			
Germany	1.0	0.8	2.8	2.0	..	0.6	5.6	1.7
	Children under 15				Children under 15			
Australia	10.0	1.1	7.8	1.1	15.8	1.6	15.8	2.2
	Children under 18				Children under 18			
Mexico	7.0	3.4	5.4	3.0	16.5	3.4	5.6	8.5
New Zealand	3.7	0.1	3.4	0.2	4.8	0.1	4.1	0.3

주: 총 인구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유럽 국가의 경우 표본은 20세에서 74세 사이의 성인을 포함하고, 독일과 일본은 10세 이상 인구를 포함함.

출처: 유럽 European Time Use Surveys dataset (HETUS) dataset(Austria, Canada, Finland, France, Spain, Norway 제외);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는 각국 National Time Use surveys 자료.; OECD(2023).Table LMF2.5.B: 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1999-201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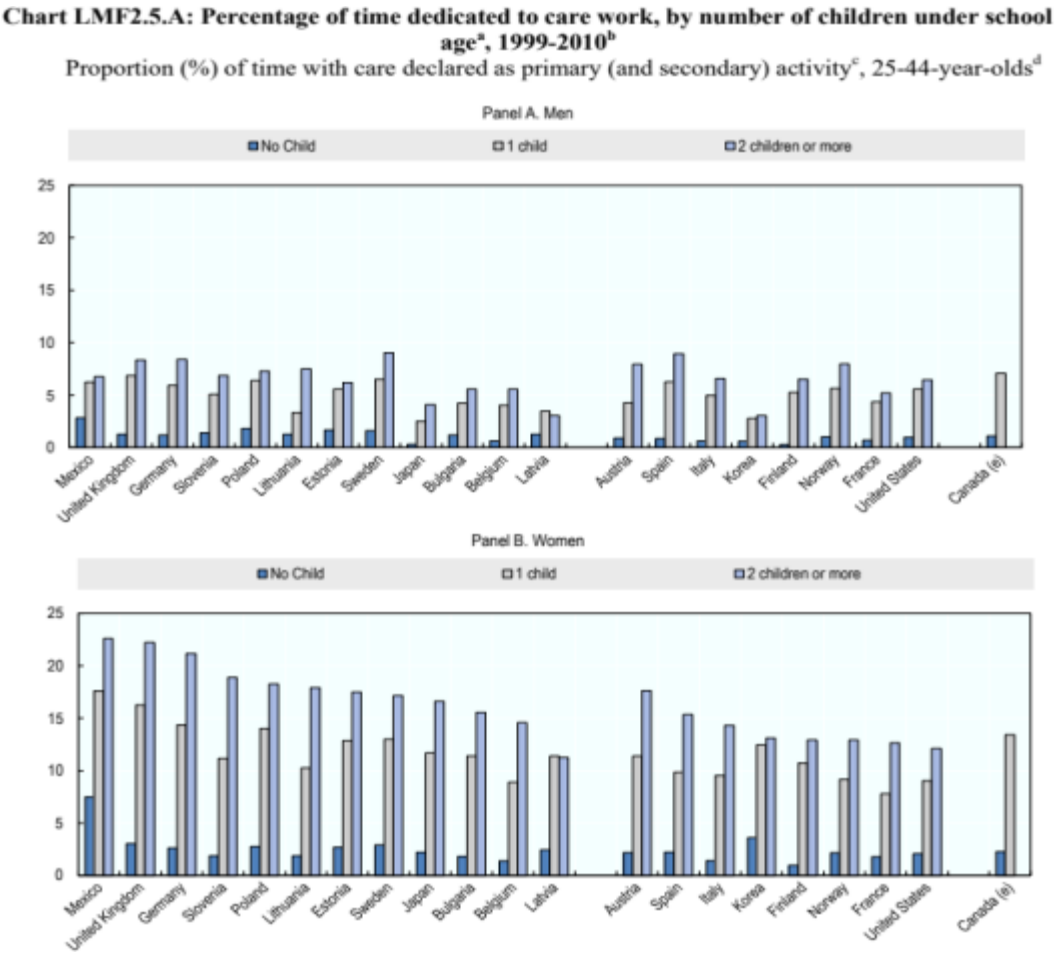
3) Chart LMF2.5.3.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dedicated to care work, by number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1999-2010) (적절)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은 취학 연령 미만의 아동이 있는 25~44세 남녀가 돌봄노동에 사용한 시간을 1차 또는 2차 활동으로 제시하는 지표이다. 단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의 자료는 돌봄을 2차 활동으로 구분할 수 없어 비교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 0명, 1명, 2명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보여주는데, 모든 국가에서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돌봄시간은 남녀 모두 증가하며, 특히 무자녀인 경우와 유자녀인 경우의 돌봄시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이 높은 국가는 남성의 돌봄시간 비율도 높은데, 멕시코, 영국, 독일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은 자녀가 1명, 2명 이상일 때 남성의 돌봄시간 비율이 특히 높았으며, 남녀간 격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남녀 모두 돌봄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인데, 남성은 특히 가장 적었다. 또한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무자녀인 경우에도 높았으며, 자녀 1명과 2명 이상일 때의 돌봄시간 비율 차이가 매우 적은 특징을 보여준다.

자녀 수에 따른 돌봄시간 비율을 성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본 지표를 통해, 한국이 남녀 모두 돌봄시간의 비율이 적으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도 특히 더 적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 모두 자녀수가 2명 이상으로 늘어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돌봄시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나타났다.

[그림 3-20] Chart LMF2.5.A.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



주: 국가들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들이 돌봄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됨.
a) 학교 연령: 일반적으로 7세 미만의 어린이. 미국과 일본 6세 미만, 멕시코: 5세 미만.
c) 돌봄 활동: 기본 또는 보조 활동으로 신고된 모든 돌봄 활동 에피소드 포함.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기본 활동으로서의 돌봄만 고려. 가구 구성원을 돌보거나 다른 가구를 비공식적으로 돕는 시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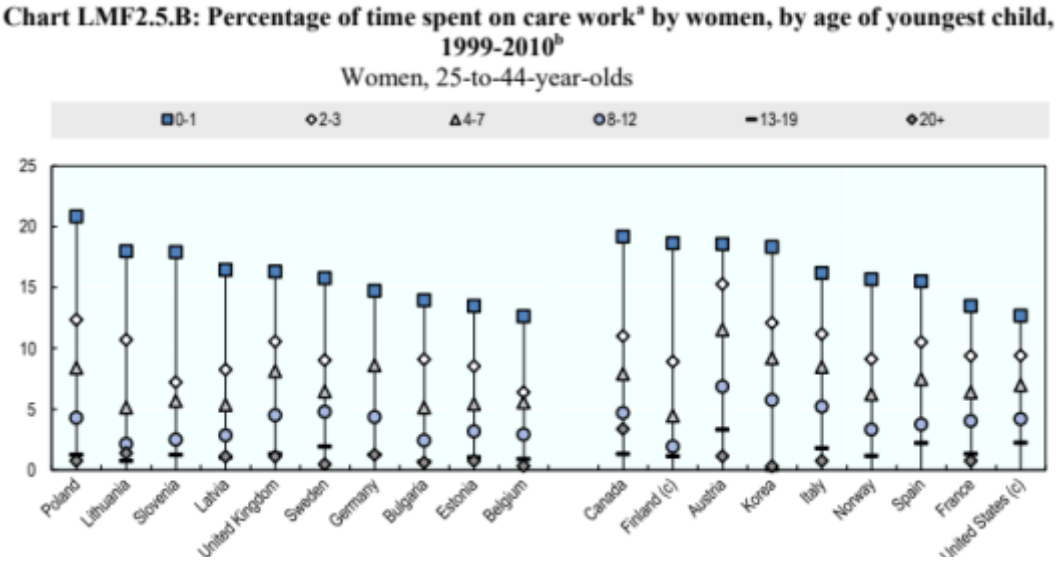
출처: 유럽 European Time Use Surveys dataset (HETUS) dataset(Austria, Canada, Finland, France, Spain, Norway 제외);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는 각국 National Time Use surveys 자료.; OECD(2023). Chart LMF2.5.A: Percentage of time dedicated to care work, by number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1999-2010에서 재인용

4) Chart LMF2.5.4.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spent on care work by women, by age of youngest child, 1999-2010) (적절)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 지표는 25~44세 여성이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대별로 얼마나 돌봄시간을 할애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한국은 생활시간조사 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자녀의 연령은 0~1세, 2~3세, 4~7세, 8~12세, 13~19세, 2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돌봄시간의 비율을 제시한다. 모든 국가에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돌봄시간의 비율이 늘어나는데, 이 비율의 국가간 차이는 3세 미만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0~1세 아이를 가진 여성들의 돌봄시간 비율은 약 21%인데 비해 벨기에는 13%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 한국은 0~1세 자녀의 돌봄시간 비율이 약 20%로 높은 수준이며, 4세부터는 돌봄시간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서는 줄어드는 것에 비해 한국의 돌봄시간 비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8~12세 자녀의 돌봄시간 비율은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의 자녀인 경우에도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었다.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본 지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돌봄시간 비율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한국의 여성들은 12세 미만 자녀의 돌봄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초등교육 시기에도 여전히 엄마의 돌봄시간이 적지 않게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자녀 초등 시기의 사회적 돌봄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한다.

[그림 3-21] Chart LMF2.5.B.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



주: 국가들은 0-1세 아이들에게 할애된 돌봄시간의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됨.
a) 돌봄 활동: 기본 또는 보조 활동으로 신고된 모든 돌봄 활동 에피소드 포함.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기본 활동으로서의 돌봄만 고려. 가구 구성원을 돌보거나 다른 가구를 비공식적으로 돕는 시간 포함.
b) 데이터 연도: 2000: 에스토니아; 2001: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2002: 독일, 멕시코; 2003: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2004: 폴란드; 2006: 벨기에; 2008: 이탈리아; 2008/2009: 오스트리아; 2009: 핀란드, 한국; 2009/2010: 프랑스, 스페인; 2010: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출처: 유럽 European Time Use Surveys dataset (HETUS) dataset(Austria, Canada, Finland, France, Spain, Norway 제외);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는 각국 National Time Use surveys 자료.; OECD(2023). Chart LMF2.5.B: Percentage of time spent on care work by women, by age of youngest child, 1999-2010에서 재인용

바.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 Chart LMF2.6.A. 통근 시간(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999-2014)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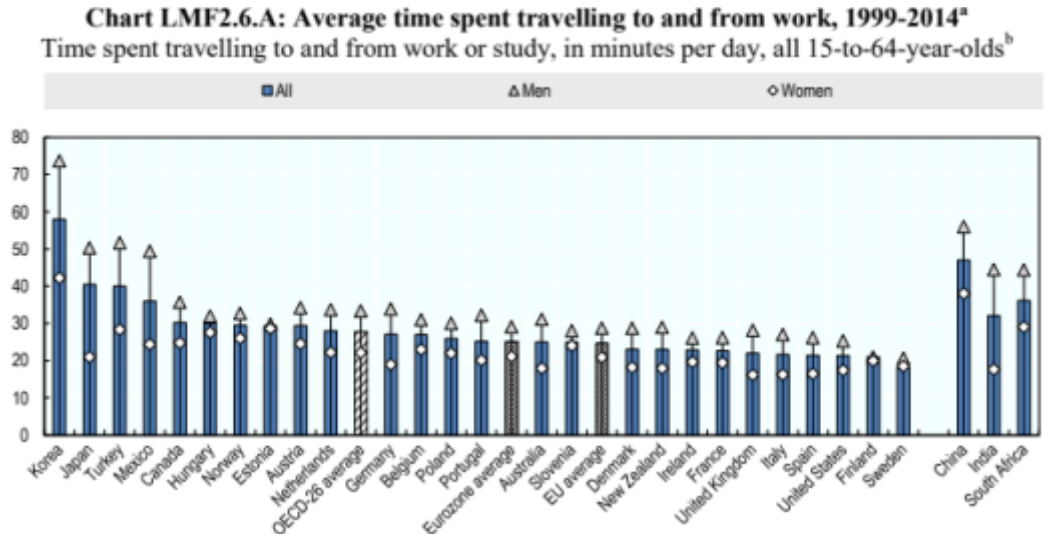
통근 시간을 성별로 비교할 수 있는 본 지표는 남성과 여성이 집에서 직장으로 또는 공부하는 곳으로 통근하는 데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분)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집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어, 이 평균 통근 시간은 실제보다 낮을 수 있다. 한국은 생활시간조사 자료로 보고된다.

개인이 통근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국은 평균 약 1시간 정도로 가장 길었고, 특히 남성은 70분 이상으로 상당히 길며 여성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미국은 평균 약 20분으로 짧으며, 중국, 일본, 튀르키예는 40분 이상으로 한국 다음으로 길었는데 통근 시간은 국가의 면적이나 밀도와 상관없이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들의 통근 시간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은 사적 영역에서 최대한 멀지 않은 곳에서 통근하면서 돌봄 및 가사시간을 더 길게 할애하는 형태의 성별에 따른 시간분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통근 시간의 성별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본 지표를 통해, 여성들이 유급 노동과 통근 시간을 줄임으로써 돌봄시간을 더 할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서구권 국가보다는 아시아권 국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한국에서 가장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2] Chart LMF2.6.A. 통근 시간



주: 국가들은 남녀 모두의 출퇴근 또는 학업을 위해 소요된 시간에 따라 정렬됨.
a) 데이터 연도: 호주: 2006; 오스트리아: 2008-09; 벨기에: 2005; 캐나다: 2010; 중국: 2008; 덴마크: 2001; 에스토니아: 2009-10; 핀란드: 2009-10; 프랑스: 2009; 독일: 2001-02; 헝가리: 1999-2000; 인도: 1999; 이탈리아: 2008-09; 아일랜드: 2005; 일본: 2011; 한국: 2009; 멕시코: 2009; 네덜란드: 2005-06; 뉴질랜드: 2009-10; 노르웨이: 2010; 폴란드: 2003-04; 포르투갈: 1999; 슬로베니아: 2000-01; 남아프리카공화국: 2010; 스페인: 2009-10; 스웨덴: 2010; 튀르키예: 2006; 영국: 2005; 미국: 2014.
출처: OECD gender data portal (http://www.oecd.org/gender/) and 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time-use surveys.; OECD(2023). Chart LMF2.6.A: 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999-2014에서 재인용

2) Table LMF2.6.A.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2010) (적절)

본 지표는 자녀 존재 여부에 따른 통근 시간을 성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자료가 있는 국가는 9개국으로 매우 적으며 한국은 생활시간조사 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무자녀, 미취학 자녀,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남녀의 통근 시간을 보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9개국 중 한국이 남성 101분, 여성 84분으로 남녀 모두 가장 길었고 그 격차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컸다. 가장 통근 시간이 짧은 국가는 미국으로 남성 48분, 여성 42분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남성의 경우 아이가 없는 것에 비해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통근 시간이 약간 길어지고, 여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남성은 자녀가 있든 없든 통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여성은 자녀가 생기면 통근 시간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이는 스페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성 대비 남성의 통근 시간 비율로 보면, 한국이 1.21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가 1.00으로 가장 낮았다. 즉 통근 시간의 성별 격차가 한국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존재 및 자녀의 취학 여부에 따라 남녀의 통근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본 지표는,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가 없는 여성들보다 집에서 더 가까운 직장을 찾는다는 것을 함의하며 이는 특히 한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들은 자녀가 생기면 통근 시간이 길어졌는데 한국의 남성은 변동 없이 동일하여, 통근 시간에 있어 남성들에게 자녀 돌봄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3-12〉 Table LMF2.6.A.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

Table LMF2.6.A: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a]

Time travelling to and from work or study, in minutes on per day, 15-to-64-year-old commuting respondents[b]

	Men				Women				Ratio men/women
	All	No child	with children under school age	with school-aged children	All	No child	with children under school age	with school-aged children	All
Austria	65	65	69	62	56	55	51	59	1.16
Canada	66	65	73	61	54	55	53	49	1.23
Finland	52	52	50	53	52	53	47	48	1.00
France	73	71	74	75	67	66	66	70	1.08
Italy	65	65	68	63	62	67	50	53	1.05
Korea	101	100	100	110	84	85	72	74	1.21
Norway	62	61	63	62	56	57	61	51	1.10
Spain	61	62	62	59	58	63	54	50	1.05
United States	48	47	54	47	42	46	34	39	1.15

주: a) 2008: 이탈리아; 2008/2009: 오스트리아; 2009: 핀란드, 한국; 2009/2010: 프랑스, 스페인; 2010: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b) 데이터는 15-64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며, 집에서 일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출퇴근 또는 학업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보고한 사람들의 데이터임.

출처: 국가별 시간 사용 조사에 기반한 OECD 사무국 추정치.; OECD(2023). Table LMF2.6.A: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에서 재인용

3) Table LMF2.6.B.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2010) (적절)

자녀 존재 여부에 따른 통근 시간에 대해 응답한 비율을 성별로 나타내는 본 지표는 9개 국가만이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은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포함된다. 이는 이전 지표인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 지표를 집계하기 위해 활용된 조사에서, 이에 대해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의 수준을 보여준다. 즉 이 비율은 출퇴근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이를 통해 일하면서 돌보는 사람, 일하지 않으면서 돌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남성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36%에서 74%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여성은 26%에서 50%까지 분포되어 있고 모든 국가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한국은 남성 74%, 여성 50%로 남녀 모두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높았지만 남녀간 격차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은 자녀가 없을 때 54%였다가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28%로 거의 절반 가까이로 감소하고 취학 자녀가 있으면 41%로 다시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 자녀 유무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응답자의 비율 차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특히 크게 나타나, 한국의 여성들은 자녀의 유무에 따라 통근을 하는 비율 즉 일을 하는 비율이 크게 달라짐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남성들은 자녀 유무나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70% 이상의 응답률을 보여, 자녀와 상관없이 근로와 통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지표는 다른 지표에 비해 보고된 국가 수가 9개로 매우 적고 통근 시간을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남녀간의 격차 뿐 아니라 자녀 유무에 따른 격차가 특히 크게 나타나 자녀 돌봄이 여성의 노동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3-13〉 Table LMF2.6.B.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

Table LMF2.6.B: 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a]

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5-to-64-year-olds[b]

	Men				Women			
	All	No child	with children under school age	with school-aged children	All	No child	with children under school age	with school-aged children
Austria	53%	50%	59%	56%	44%	44%	31%	52%
Canada	54%	51%	61%	60%	46%	48%	36%	48%
Finland	41%	38%	52%	45%	39%	39%	33%	46%
France	36%	33%	47%	38%	29%	28%	27%	32%
Italy	41%	38%	50%	50%	26%	27%	20%	28%
Korea	74%	73%	79%	76%	50%	54%	28%	41%
Norway	53%	53%	50%	54%	46%	48%	37%	49%
Spain	40%	36%	45%	46%	32%	31%	32%	35%
United States	51%	50%	57%	50%	42%	45%	32%	44%

주: a) 2008: 이탈리아; 2008/2009: 오스트리아; 2009: 핀란드, 한국; 2009/2010: 프랑스, 스페인; 2010: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b) 데이터는 15-64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며, 집에서 일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출퇴근 또는 학업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보고한 사람들의 데이터임.
출처: 국가별 시간 사용 조사에 기반한 OECD 사무국 추정치.

사.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지표 요약

근로시간과 돌봄시간 관련 지표는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서 일과 돌봄의 시간이 성별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며, 한국은 대부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해당 지표가 보고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5년마다 조사되므로, 현재 기준 OECD에 포함되어 있는 시점은 2010년으로 상당히 시점이 늦은 편인데 이는 다른 국가들도 유사하며, 다른 지표들에 비해 보고되는 국가의 수가 한정적이었다.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대를 나누어 비중을 성별로 비교할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녀 모두 근로시간이 긴 국가이며, 특히 남성의 80%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여 상당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남성은 주 40시간 이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의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즉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형태로 근로시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LMF2.4 가족친화제도 관련 지표는 한국은 모두 누락되어 있다. 자녀나 가족 형태에 따른 조사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구축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아동이나 가구형태에 따라 부모의 고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대추정의

위험이 존재하였다. 특히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근로시간 관련 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행정자료라는 특성상 부모의 근로시간을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명부를 활용하여 가구형태에 따른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를 산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가족친화제도 관련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유사한 조사가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유연근로제도의 경우 한국의 분류와 OECD 지표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데, 한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현재의 분류를 OECD 기준에 맞추어 조사를 변경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외의 가족친화제도 관련 변수들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근무시간 유연성 정도를 산출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관련 수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지표의 한국 자료는 모두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보고되고 있다. 주된 활동의 시간을 일하는 시간, 돌봄시간, 여가시간 등으로 구분하고 자녀 수 및 연령에 따른 돌봄시간 비율을 나누어 성별로 나타낸다.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의 비율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국가에서 남성의 유급 노동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고 여성의 무급 노동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다. 한국은 남성의 유급 노동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돌봄시간 비중은 일본 다음으로 낮았다. 또한 여성의 돌봄시간 비중이 남성의 4배 이상 많아, 남성은 유급 노동에, 여성은 돌봄노동에 치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자녀 수에 따른 돌봄시간 비율을 비교해 보면, 모든 국가에서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남녀 모두 증가하며, 무자녀와 유자녀의 돌봄 시간 차이가 컸다. 한국은 남녀 모두 돌봄시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고 남성이 특히 적었다.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돌봄시간 비율이 줄어드는데 한국은 12세 미만 자녀의 돌봄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초등교육 시기에도 여전히 여성들의 돌봄시간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과 관련한 지표는 통근 시간을 자녀 여부에 따라 성별로 비교해볼 수 있고 한국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 지표들은 자료를 보고한 국가의 수가 매우 적고 시점도 이전이라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의 통근 시간이 여성보다 길었는데,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의 통근 시간이 길었다. 이는 여성들이 돌봄을 위해 통근 시간을 조정하기 때문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표들을 통해, 자녀돌봄과 관련한 시간 배분에 있어서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돌봄 중심으로 배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특징은 한국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남녀 모두 근로시간이 길고 유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모두 돌봄시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며 남성이 특히 적었다. 남녀간 근로시간과 돌봄시간의 격차는 여전히 성역할 분리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형태에 따른 부모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는 아직 한국에서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료인 아동가구통계등록부와, 개인조사이지만 가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고용조사를 보완, 활용하여 추후 근로시간과 관련한 지표 산출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제3절 소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들은 아동 및 가족유형별 취업 현황,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들이다. 2년차에 걸쳐 지표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적절하게 보고된 것으로 평가된 지표는 생애주기별 고용률(LMF1.4)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 임금 격차(LMF1.5) 및 고용성과 격차(LMF1.6)을 보여주는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 '고용률의 성별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성별 차이 감소 추이', '시간제 고용에서의 성별 차이', '시간제 고용의 변화', '학력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 '임시 고용의 성별 차이', 성별 근로시간(LMF2.1)을 보여주는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 시간 활용(LMF2.5) 관련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 '돌봄시간',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 '통근 시간',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이다.

한편 기존에 '개선필요'로 집계된 지표들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누락' 지표들이 '자료없음'으로 최종확인되었다. 한국은 고용과 관련한 지표는 대체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시간과 관련한 지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동이나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한 지표는 누락되어 있고, 누락된 지표 중 아동이나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한 지표 산출을 위해, 2차연도에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해 보았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지표를 산출해 본 결과, 여성의 고용률 수준이 대체로 70% 이상으로 기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료를 구축한 통계청의 판단으로는, 행정통계의 한계상 '일했음'이 과대표집되었기 때문으로, 특히 취업변수가 1주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1주일 기준의 값보다 상당히 과대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고용률 지표를 산출하도록 한 부모의 취업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LMF1.1), 모성고용률(LMF1.2), 유자녀 부부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고용패턴과 근로시간 분포(LMF2.2, LMF2.3) 영역의 누락 또는 개선필요 지표 전체가 '자료없음'으로 변경되었다. 이들 지표에 대해서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고용률 지표 집계 방식을 보완하거나, 지역별고용조사의 가구원명부를 활용하여 산출할 것인지를 지표 산출 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과 관련된 지표, 부모의 학력문항이 필요한 지표는 관련

문항이 부재하거나 지역별 고용조사의 가구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직접 산출이 불가능하여 '자료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누락' 지표로 최종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지표들도 존재한다.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 지표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였고, 가족친화제도 관련 지표의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근무시간 유연성 정도를 산출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관련 수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변수는 '지표생산 불필요'로 재분류되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 지표는 유연근로제도의 정의와 분류가 OECD 기준과 한국이 상이하며, 한국에서 주로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유연근로제도의 종류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OECD 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표생산 불필요'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지표 전체는 OECD Family data에서 삭제되어 '지표생산 불필요'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및 가족유형별 취업 현황 지표에서는 한국은 고용과 관련한 지표는 대체로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는 반면, 아동이나 가족의 유형에 따라 성별 고용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없고, 여성의 연령대에 따른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속되는 초저출생으로 연령대에 따라 자녀유무를 유추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아동 및 가족유형에 따른 고용 상태 지표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통계 생산 기관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고용에서의 성별 격차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성별임금 격차가 크고, 임시직이 많고 관리직이 적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성별 고용률 격차가 커지는 등 여성의 고용 지위가 낮은 편이었다. 이는 결국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령에 따른 M-curve가 남아있는 국가라는 특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지표에서는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남녀 모두 근로시간이 길고 유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모두 돌봄시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며 남성이 특히 적었다. 남녀간 근로시간과 돌봄시간의 격차는 여전히 성역할 분리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형태에 따른 부모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는 아직 한국에서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료인 아동가구통계등록부와, 개인조사이지만 가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추후 근로시간과 관련한 지표 산출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

정리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고용에 있어 성별 격차가 큰 편이며, 특히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돌봄 중심'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어, 노동시장과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분리와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성별 격차가 주요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향후 이 격차를 줄이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동과 가구형태 중심의 통계를 산출하여 국제비교와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04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제1절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의 구성

가족·아동정책 지표(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는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의 구조와 발달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하위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 영유아 공보육·보육, 아동돌봄체계로 구분된다. 이 절에서는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를 중심으로 2023년 1차연도 지표 진단 결과(김은지 외, 2023)를 재점검하고 최종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각 지표영역에서 '개선 필요'와 '누락'에 해당하는 지표에 대해 지표값 수정 및 지표 생산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산출된 지표와 '적절' 지표 전반에 대해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정책 상황을 살펴본다.

김은지 외(2023)의 1차연도 지표분석에 따르면,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PF1 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총 34개로, 적절지표 17.5개, 개선필요 지표 9개, 누락 지표 5.5개, 자료없음 지표 2개로 구분되었다. 1차연도의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의 적절지표 17.5개는 PF1.2 공교육지출의 2개 지표(교육단계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PF1.3 가족 현금급여의 1개 지표(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수준), PF1.4의 조세-복지급여체계의 형평성의 1개 지표(2차소득자세율), PF1.6 아동연령별 공적 지출의 5개지표(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의 규모, 연령구간별 공적 사회지출, 0-5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 사회지출, 6-11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 사회지출, 12-17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지출), PF1.8 법적 성년연령의 6개 지표(성년연령, 형사책임연령, 최소혼인연령, 의무교육종료 및 최소근로연령, 알콜구매 및 소비 최소연령,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 PF1.9 아동보호특성의 2.5개 지표(의도적·우발적 사고아동 사망률, 의도적·우발적 사고아동 사망률 추이,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 중 '실태')이다.

'개선필요' 9개 지표는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의 4개 지표(가족급여유형별 공적 지출 총계, 현금급여, 현물급여, 조세지출), PF1.3 가족현금급여의 3개 지표(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 막내 자녀 연령별 급여수준, 자녀수별 급여수준), PF1.4 조세-복지급여체계의 형평성의 1개지표(가구 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체계의 1개 지표(자녀양육비 체계의 주요특징)이다.

'누락' 지표는 총 5.5개로,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체계의 2개 지표(한부모가족추이,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추이, 자녀양육비 수준), PF1.7 세대간 연대의 1개 지표(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 PF1.9 아동보호특성의 2.5개 지표(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체벌규제, 보호아동비율)이다. 이외 '자료없음' 지표로 분류된 지표로 PF1.7 세대간 연대의 2개 지표(50+ 인구의 현금이전 및 시간이전, 손자녀 돌봄자 비율)이다.

2차연도 연구에서 지표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한 결과 대부분 1차연도 지표 분류가 유지되었으나 일부 지표는 OECD 분류체계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통하여 분류결과가 변경되었으며, 여러 변수가 조합된 복합지표는 투입되는 변수값을 확인했을 때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검토결과를 수정하였다. 또 지표의 기준년도가 오래되었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지표의 경우 지표생산 불필요 지표로 새로 분류했다.

다음으로, 자녀관련 휴가 지표(PF, Child-related leave)는 총 23개 지표로, 휴가제도의 특징, 공적 지출, 휴가 사용현황, 소득대체율, 휴가 자격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연도 지표분석(김은지 외, 2023)을 통해 적절 14개, 개선필요 7개, 누락 1개 자료없음 1개로 판단하였다.

적절지표는 PF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특징 지표에 관한 4개의 하위지표(어머니 유급휴가 요약, 아버지 유급휴가 요약,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 자녀관련 휴가 공적 지출 규모),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의 3개지표(유급출산휴가 이용자수,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 육아휴직 이용자중 남성비중 추이), PF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중 3개지표(산전후휴가 소득대체율,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의 소득대체율,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 PF2.5 자녀관련 휴가급여추이 중 1개지표(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 PF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중 3개지표(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 남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 여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이다. 개선필요 지표를 살펴보면, PF2.3 취업부모추가휴가의 2개지표(법정 및 단협 휴가일수,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 PF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의 2개지표(출산후 첫째달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 출산후 시기별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 PF2.5 자녀관련 휴가급여 추이중 2개 지표(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기간) PF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 중 1개지표(대리모허용)이다. 자녀관련 휴가 지표중 누락지표는 PF2.2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이다.

가족·아동정책과 관련된 주요 자료원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Education database, OECD Tax-benefit data portal(TaxBen)인데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으로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고된 사회보장 공적 지출 자료, 교육지출 자료, 조세 및 복지급여 자료를 기반으로 가족·아동정책 지표 중 주요 정량 지표가 생산되고 있다. SOCX와 TaxBen은 관련지표의 구성에 대해 국가별 정책 설명파일을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표를 구성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정성 지표들은 주로 가족관련 제도의 구조와 법률적 규정(예컨대, 성년규정, 대안가족의 이용자격 등)으로 OECD의 자료원은 국제기구나 공신력있는 국제비영리단체의 자료에 준해 작성되어 있다.

적절지표의 경우 비교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OECD의 기준년도에 준해 우리나라 지표가 적절히 생산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이에 준해 한국적 상황을 해석했으며, 최근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동향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개선필요 및 누락지표의 경우 지표 대체 및 생산에 필요한 산식과 근거값을 제시했으며 특히 누락지표의 경우 지표 생산을 위한 자료원과 관련변수를 포함한 최종 지표값을 제시했다.

지표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과 최종 산출된 개별 지표를 활용한 한국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소절 2)에서 서술되며, 각 정책 영역의 요약 및 전체 소결에서 한국 관련 가족·아동 정책 지표 내용을 정리 서술하였다.

〈표 4-1〉 가족·아동정책(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가족급여 유형별 공적 지출 총계(total)	O	개선 필요	적절
		현금급여(cash)	O		
		현물급여(services)	O		
		조세지출(tax breaks for families)	O		
PF1.2	공교육 지출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교육단계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s)	O	적절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Annual expenditure per student by educational institutions)	O	적절	
PF1.3	가족 현금급여 (Family cash benefits)	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2018)	O	개선 필요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 and earnings, 2018)	O	적절	개선 필요
		막내 자녀 연령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8)	O	개선 필요	
		자녀수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2018)	O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PF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가구 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for couples at different household earnings levels, 2014)	O	개선 필요	적절
		2차소득자세율(Participation tax rates for second earner parents entering employment at varying gross earnings levels, 2014)	O	적절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체계 (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자녀양육비제도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O	개선 필요	
		한부모가족 추이,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추이(Trends of Sole-parents1 and of Sole-Parents Receiving Child Maintenance Payments in recent years)	X	누락	지표 생산 불필요
		자녀양육비 수준(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	X	누락	지표 생산 불필요
PF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의 규모(연령구간별, 급여유형별 시계열 자료)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03 to 2019)	O	적절	
		연령구간별 공적 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19)	O		
		0-5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 사회지출(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0-5, 2019)	O		
		6-11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사회지출(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6-11, 2019)	O		
		12-17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지출(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12-17, 2019)	O		
PF1.7	세대간 연대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Age profile of net transfers)	X	누락	
		50+인구의 현금이전 및 시간이전 (A. Transfers of money,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B. Transfers of time,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X	자료 없음	
		손자녀 돌봄자 비율(Percentage of grandparents taking care of at least one grandchild)	X		
PF1.8	법적 성년 연령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성년연령(Age of majority, 2016)	O	적절	
		형사책임연령(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016)	O	적절	
		최소혼인연령(Minimum age for marriage, 2016)	O	적절	
		의무교육종료 및 최소근로연령(School leaving age and Employment age, 2016)	O	적절	
		알콜구매및소비 최소연령(Minimum age to consume and purchase alcohol, 2016)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Minimum age for sexual consent, 2016)	O	적절	
PF1.9	아동보호 특성 (Aspects of child protection)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율(Child mortality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O	적절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율 추이(Changes in child deaths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early 1980s to latest figures)	O	적절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X	누락	
			O	'실태'는 적절	
		아동체벌규제(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X	누락	
		보호아동비율(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	X	누락	
PF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O	적절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	O	적절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 (Reserved and shareable paid family leave entitlements, 2022)	O	적절	
		자녀관련휴가 공적 지출규모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O	적절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 (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 (Users of paid maternity leave)	O	적절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 (Users of paid paternity leave)	X	누락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 (Users of paid parental leave)	O	적절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중 추이 (Trends in men's share of recipients/users of publicly administered parental leave/ benefits)	O	적절	
		성별 자녀관련휴가 이용기간(Duration of paid leave for men and women)	X	자료 없음	
PF2.3	취업부모 추가휴가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arents)	법정 및 단협 휴가일수(Statutory and collectively agreed annual leave)	O	개선 필요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Summary of 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	O	개선 필요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PF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산전후휴가 소득대체율 (Maternity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의 소득대체율(Parental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 (Father-specific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출산후 첫째달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 (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2014)	O	개선 필요	
		출산후 시기별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 (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2014)	O		
PF2.5	자녀관련 휴가급여 추이 (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 (Length of paid maternity,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1970, 1995, and 2022)	O	개선 필요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기간, 최초도입년도 (Length of job-protecte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paid and unpaid) available to mothers by year of introduction)	O	개선 필요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 (Length of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reserved for fathers, 1970, 1995 and 2022)	O	적절	
PF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남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O	적절	
		여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Fe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O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 (Adoption leave entitlements)	O		
		대리모 허용(Access to surrogacy)	O	개선 필요	

제2절 한국의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

1.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

가. PF1.1 공적 가족급여 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1) Chart PF1.1.A. 공적 가족급여 지출(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적절)

PF1.1 공적 가족급여 지출은 아동과 아동양육 가구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규모를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하여 국가 간 가족·아동정책 수준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지표이다. 이 지표는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의 공공부문 가족영역 지출을 토대로 OECD가 가족지원 관련 조세지출을 보완하여 작성·공개하고 있다. OECD SOCX의 가족영역은 아동과 아동양육 가구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지출만 포함하고, 보건이나 주택과 같이 다른 사회정책 영역으로 기록되는 가족과 관련된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OECD, 2019).

공적 가족급여 지출은 급여의 지급형태를 기준으로 현금과 현물 그리고 조세체계를 통한 지원 3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PF1.1은 가족급여 공적지출 총계(PF1.1.1), 현금급여(PF1.1.2), 현물급여(PF1.1.3), 조세지출(PF1.1.4) 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지난 1차연도 연구에서 이들 4개 지표에 대하여 '개선 필요'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재검토 결과 OECD가 별도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OECD가 직접 지표를 생산·관리하는 구조로 확인됨에 따라 '적절' 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19]

PF1.1.2. 현금급여(Cash)는 아동수당 등 양육관련 현금지원과 출산 및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급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청소년한부모·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20], 기타 현금급여로 아동발달계좌(CDA), 자립수당, 입양아동가족 지원 관련 현금성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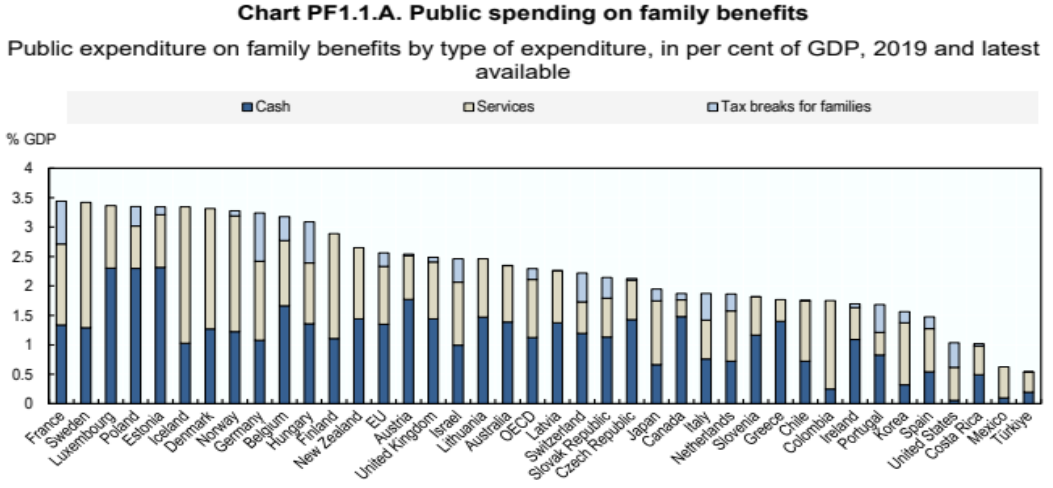
19) 1차연도에는 자녀장려금(CTC)이 '기타 사회정책'으로 기록되어 가족지출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여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서비스가 ALMP로 분류되고, 가족 현물급여에 0-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지원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필요'로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자녀장려금이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 다는 점에서 동 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기타 사회정책'영역에 지출을 기록해왔고,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관련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제도 특성을 고려하여 1990년 처음 한국 SOCX가 작성되는 시점부터 관련 사업을 모두 가족 현물급여로 포함해왔다. 즉, 한국 SOCX 분류기준의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이는 곧 정부와 OECD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적절'지표로 재조정 하였다.

20) 한국의 정책적 맥락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공공부조성 자산조사 급여를 의미하며, '자녀양육비'는 비양육부모가 지급하는 자녀양육을 위한 사적인 이전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PF1.1.3. 현물급여(Services)에는 영유아 보육·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가사·주거시설지원(Home-help·Accomodation), 기타 현물지원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에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기관 돌봄서비스와 함께 아동복지서비스로 방과후, 주말 아동·청소년 돌봄 및 활동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가사·주거시설지원에는 아동보호시설, 다문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등 취약아동이나 가족단위 주거보호시설 지원이 포함되며, 기타 현물서비스로 가족대상 비용감면, 성폭력·가족폭력 피해 보호관련 지원을 포함한다.

PF1.1.4. 조세지출(Tax breaks for families)은 직접적인 재정이전 이외에 조세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동 및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적용된 비과세(eg. 아동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이 포함된다. 한편,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과 같이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납세자에게 환급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조세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현금급여로 분류한다(OECD, 2011). 또한 일반적인 OECD 정의에서는 결혼한 부부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 급여'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에 대한 조세혜택은 모든 OECD 국가에서 가족 조세지출로 반영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가족관련 조세지출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부녀자추가공제, 한부모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조례를 통한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감면,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이 포함된다.

[그림 4-1] Chart PF1.1.A. 공적 가족급여 지출



주: 가족(예: 아동수당, 자녀 관련 휴가, 아동돌봄서비스)을 위한 공적지출만 포함하고, 보건이나 주택은 비포함.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제공하거나 재정조달하여 제외될 수 있음.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2023). Chart PF1.1.A.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에서 재인용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3%를 아동과 아동양육가구를 위한 지원에 지출하고 있다. 국가별 가족급여에 대한 공적지출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프랑스(3.44%)와 스웨덴(3.42%), 룩셈부르크(3.36%), 폴란드(3.35%), 에스토니아(3.34%), 아이슬란드(3.34%), 덴마크(3.31%), 노르웨이(3.28%), 독일(3.24%), 벨기에(3.18%), 헝가리(3.09%), 영국(3.08%)이 GDP의 3% 이상인 반면에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GDP 대비 0.6% 이하이다. 최근 들어 폴란드의 가족·아동에 대한 공공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금급여 지출의 경우 에스토니아가 GDP 대비 2.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폴란드가 GDP의 2.3%를 기록하여 전통적으로 현금급여 지출이 높은 룩셈부르크와 같은 지출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1.14%를 현금급여로 지출하는데, OECD 39개국 중 미국이 GDP의 0.6%로 가장 낮은 현금급여 지출수준을 보였고, 다음으로 멕시코(0.1%), 튀르키예(0.2%), 한국(0.32%), 코스타리카(0.49%), 스페인(0.54%), 일본(0.66%), 칠레(0.72%),네덜란드(0.72%),이탈리아(0.76%),포르투갈(0.83%)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물급여 수준을 보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1%를 지출하고 있는데, 아이슬란드(2.32%), 스웨덴(2.13%), 덴마크(2.04%), 노르웨이(1.96%), 핀란드(1.78%)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편, 독일, 프랑스, 헝가리에서 가족정책 관련 조세지출이 GDP 대비 0.7%이상으로 OECD 평균(0.19%)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공적 가족급여 지출의 유형별 비중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현물이나 조세지출보다는 현금급여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콜롬비아, 튀르키예, 한국, 아이슬란드 등에서는 현물급여 비중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은 2019년 공적 가족급여 지출이 GDP의 1.56%를 기록하여 OECD 39개국 중 34번째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물급여 지출은 GDP 대비 1.05%로 OECD평균(0.99%)을 상회하여, 영국과 룩셈부르크(1.06%) 다음으로 15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단, 한국의 공적 가족급여 지출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의 SOCX 산출 기준에서는 자녀장려금을 '기타 사회정책'지출로 기록하고 있어 동 지출이 PF1.1.2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PF1.1.3 현물급여 지출의 경우 2019년까지 자료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제외되어 있다. 이는 한국 OECD SOCX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제출체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현행 SOCX의 공공부문 지출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3개 부처가 각각 OECD 요구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4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SOCX 공공부문 9대 영역 중 ALMP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산출하는 Labor Market Programmes Database를 원용하며, 보건지출은 보건복지부가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산출하는 Health Database를 사용한다. 또한 가족지출 중 3-5세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 (3-5 years old)(Vouchers for Childcare

Service))은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하는 Education Database를 원용한다. 나머지 공공부문의 노령, 근로무능력, 유아교육비를 제외한 가족, 실업, 주거 및 기타 사회정책 영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OECD 작성 양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와 같은 SOCX 산출 구조에서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2019년까지 ALMP로 반영하여 OECD에 제출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집행비용은 공공부문 SOCX의 가족지출로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동 사업은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 재정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부문 SOCX의 가족지출에 반영될 예정이다.

나. PF1.2 공교육 지출(Public spending on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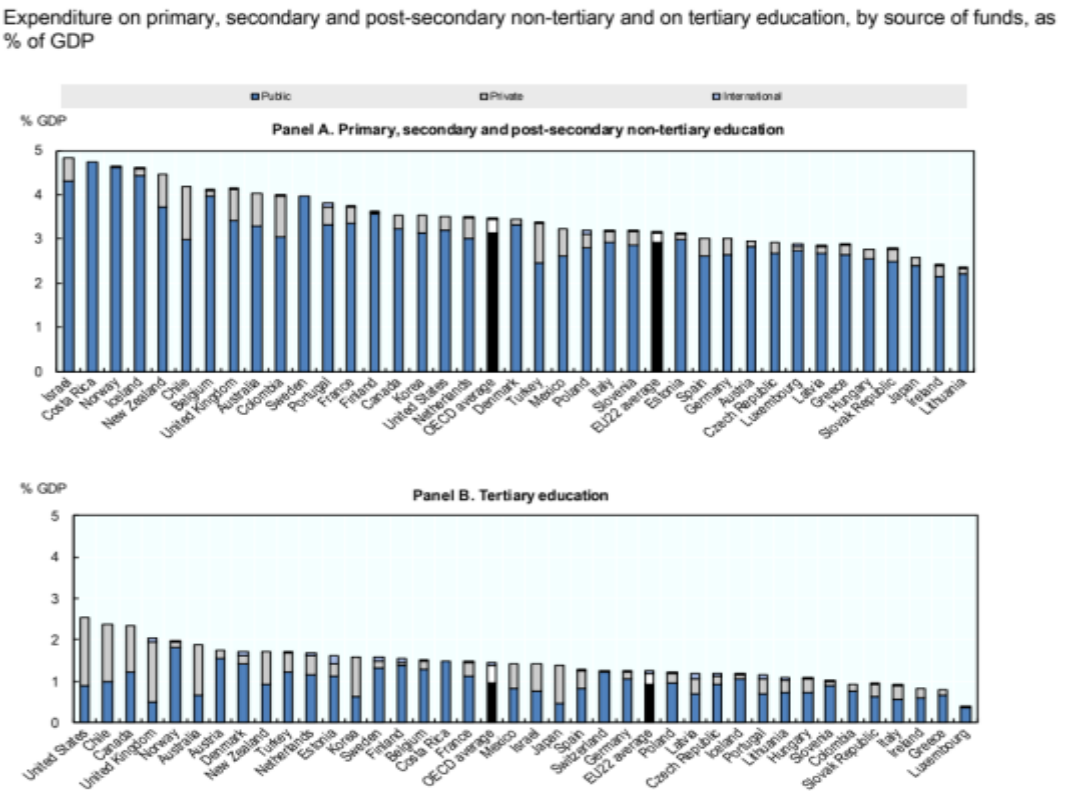
1) Chart PF1.2.A. 교육단계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s) (적절)

'교육단계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대표 지표로서,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전체 공교육비를 GDP[21]로 나눈 값을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산액[22]으로 변환하여 산출한다. 해당 지표는 OECD 교육지표(EAG) 2021의 C.2(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지표의 OECD 국가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 회계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적으로 GDP의 평균 4,9%를 전체 교육단계(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GDP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OECD 평균적으로 초·중등교육단계에서 GDP의 평균 3.4%를 지출하였으며, 고등교육단계에서는 1.4%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1).

21) 한국의 국내총생산액(GDP): 1,898.2조 원(2018년 기준); 1,940.7조 원(2020년 기준)
22)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870.77원/$(2018년 기준); 837.67원/$(2020년 기준)

[그림 4-2] Chart PF1.2.A. 교육단계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Chart PF1.2.A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s, 2018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교육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5.1%로 OECD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8%로 OECD 평균인 4.1%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GDP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23]은 1.3%로 OECD 평균인 0.8%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1%로 OECD 평균과 동일한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0.6%로 OECD 평균인 0.9%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료인 2020년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2019년에 비해 0.2%p 하락하여 OECD 평균 수준이었다. 재원별로 살펴

23) 한국은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지만,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로 산출하므로, OECD '합계'에는 해외재원이 포함되어 정부재원, 민간재원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보면,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인 4.3%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GDP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1.1%로 OECD 평균인 0.8%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0.7%로 OECD 평균(1.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2〉).

〈표 4-2〉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단위: %)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2018년	한국	3.1	0.4	3.5	0.6	0.9	1.6	3.8	1.3	5.1
	OECD 평균	3.1	0.3	3.4	0.9	0.4	1.4	4.1	0.8	4.9
2020년	한국	3.3	0.2	3.5	0.7	0.9	1.6	4.0	1.1	5.1
	OECD 평균	3.3	0.3	3.6	1.0	0.5	1.5	4.3	0.8	5.1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9.15., 2023.9.12.).

요컨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지표는 한 국가의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적으로 초·중등교육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3.6%이며, 고등교육단계의 경우 1.5%로 초·중등교육단계의 공교육비 비중이 고등교육단계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중에서 한국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초·중등교육단계에서 3.5%, 고등교육단계에서 1.6%로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그중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고등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에 비해 더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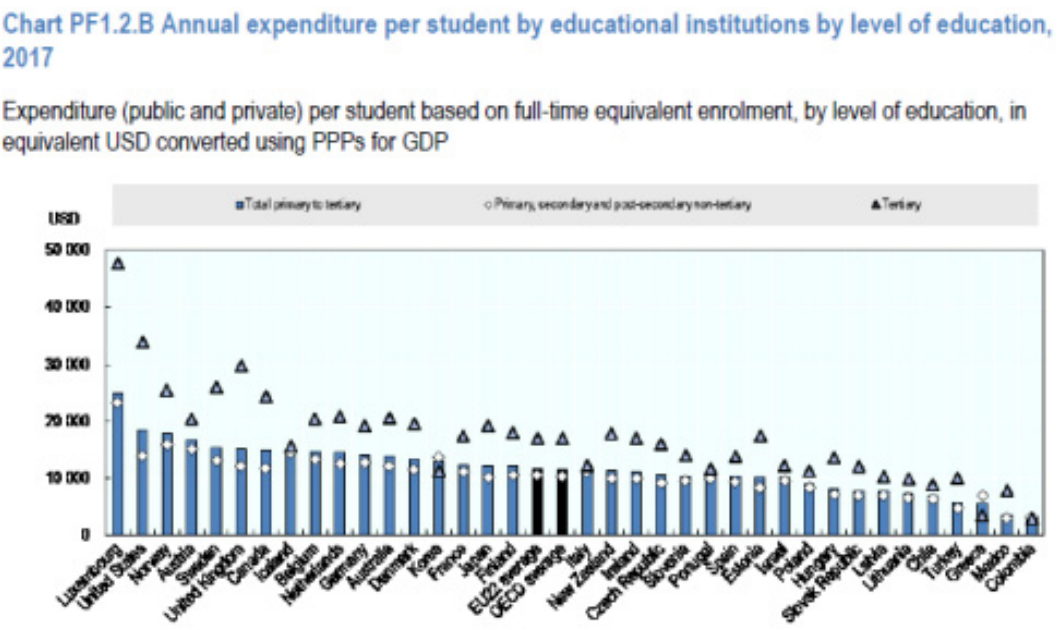
2) Chart PF1.2.B.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Annual expenditure per student by educational institutions) (적절)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개별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와 관련된 대표 지표로서, 교육단계별로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 지출비'를 '재적학생 수(휴학생 포함)'로 나눈 값을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산액으로 변환하여 산출한다. 해당 지표는 OECD 교육지표(EAG)의 C.1(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지출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8년 기준으로 $12,914 수준

이었으며, 이는 국가별로, 교육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교육단계의 OECD 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550이었으며, 중등교육단계(ISCED 2,3)에서는 $11,192 수준이었다. 한편,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고등교육단계(ISCED 5-8)에서 단기 고등교육 과정(ISCED 5), 학사(ISCED 6), 석사(ISCED 7), 박사과정(ISCED 8)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OECD 평균적으로,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7,065 수준이었으며, 특히 일부 국가(예: 캐나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4,5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Chart PF1.2.B.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0). Chart PF1.2.B Annual expenditure per student by educational institutions by level of education, 2017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2,914로 OECD 평균인 $11,680보다 더욱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단계에서 각각 $12,535과 $14,978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고등교육단계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1,290로 OECD 평균인 $17,0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표4-3〉).

최근 자료인 2020년을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113로 OECD 평균($12,647)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육단계에서 $13,278, 중등교육단계에서 $17,038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2019년 대비 각각 0.5%($64)와 0.2%($40)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고등교육단계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2,225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표4-3〉).

〈표 4-3〉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단위: $(PPP))

기준 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2018년	한국	12,535	14,978	11,290	12,914
	OECD 평균	9,550	11,192	17,065	11,680
2020년	한국	13,278	17,038	12,225	14,113
	OECD 평균	10,658	11,942	18,105	12,647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9.15., 2023.9.12.).

요컨대,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지표는 개별 학생에게 투자된 교육재원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적으로 연간 $12,647 수준이었으며, 국가별로, 교육단계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중에서 한국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규모가 $14,113로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초·중등교육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단계의 경우 OECD 평균($18,10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PF1.3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1) Table PF1.3.A. 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 (개선필요)

이 지표는 가족현금급여의 유형과 제도 도입(및 자산조사)여부에 관한 것으로 가족현금급여의 제도적 구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질적 지표이다. 이 지표의 자료원은 OECD 조세와 급여체계[24]로 범주별 제도 유무와 자산조사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이 지표를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한 것은 범주 오분류 때문이다. 종전 분류에서는 한부모가족급여가 조건부 자산조사형 급여임에도 일반적 가족급여로 잘못 분류되어 있었고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음에도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수정이

24) http://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김은지 외, 2023: 104). 비교기준년도인 2018년 한국의 가족 현금급여 제도는 공공부조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있었다.[25] 한부모가족급여는 자산조사급여이므로 조건부급여-가족특성-한부모급여에 자산조사급여가 있는 것으로 수정했고 일반적 가족급여는 공란으로 변경했다. 한부모 가족급여에는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가 있는데, 아동양육비는 가족특성에 따른 자산조사형 한부모급여로, 아동교육지원비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용품비와 관련된 것이므로 자산조사형 교육지원급여로 분류했다. 또, 유자녀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인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으므로 부모의 노동시장참여-근로세액공제에서 제도 있음과 자산조사 있음으로 분류했다[26].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은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자산조사 없음으로 수정했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중 멕시코, 튀르키예, 한국은 일반적 가족급여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자산조사와 결합된 일반적 가족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을 제외한 자유주의 국가들(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과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동구권 국가,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등이 있다. OECD 국가중 한부모가족에 대해 보편주의적 급여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은 아동수당을 비롯한 가족급여에 보충급여로 한부모가족 급여를 지원한다.

---

25) OECD tax-ben 한국자료(Korea country note)
https://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benefits-and-wages-country-specific-information.htm (검색일 2023.04.30.)

26) 2018년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소득 최대 4,000만원이하,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4-4〉 Table PF1.3.A. 가족유형별 가족현금급여 (2018)

	일반적 가족급여 또는 세액공제				조건부 급여													
					가족특성						아동특성				부모의 노동시장참여			
	일반적가족급여(세액공제)		판매/소비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		한부모급여[a]		대지급수당[d]		대가족수당[e]		영유아급여[f]		교육지원급여[g]		근로세액공제[h]		양육수당[i]	
	제도 있음	자산 조사[b]	제도 있음	자산 조사[b]	제도 있음	자산 조사[b,c]	제도 있음	자산 조사[b]	제도 있음	자산 조사[b]	제도 있음	자산 조사[b]	제도 있음	자산 조사	제도 있음	자산 조사[b]	제도 있음	자산 조사[b]
Australia	✓	Y			✓	Y												
Austria	✓	N			✓	N							✓	N				
Belgium	✓	N			✓	Y											✓	N
Canada (Ontario)	✓	Y	✓	Y	✓	Y									✓	Y		
Chile	✓	Y											✓	Y				
Czech Republic	✓	Y																
Denmark	✓	N			✓	N	✓	N										
Estonia	✓	N			✓	N	✓	N										
Finland	✓	N			✓	N	✓	N										
France	✓	N			✓	N			✓	Y	✓	Y	✓	Y				
Germany	✓	N			✓	N	✓	N					✓					
Greece	✓	Y											✓	Y				
Hungary	✓	N											✓	Y				
Iceland	✓	Y			✓	N												
Ireland	✓	N			✓	Y									✓	Y		
Israel	✓	N			✓	N			✓	Y			✓	Y	✓	Y		
Italy	✓	Y							✓	Y	✓	Y						
Japan	✓	Y															✓	Y
Korea	✓	Y											✓	Y			✓	Y
Korea(2018)					**✓**	**Y**							**✓**	**Y**	**✓**	**Y**	**✓**	**N**
Korea(2024)	**✓**	**N**			**✓**	**Y**					**✓**	**N**	**✓**	**Y**	**✓**	**Y**	**✓**	**N**
Latvia	✓	N					✓	N										
Lithuania	✓	N					✓	N										
Luxembourg	✓	N			✓	N							✓	N				
Mexico	..	..	..	..	..	..	..	..	..	..	..	..	..	..	..	..	..	..
Netherlands	✓	N			✓	Y									✓	N		
New Zealand	✓	Y			✓	Y									✓	Y		
Norway	✓	N			✓	N	✓	Y			✓	Y			✓	Y	✓	N
Poland	✓	Y			✓	Y												
Portugal	✓	Y			✓	Y							✓	Y				
Slovak Republic	✓	N					✓	Y										
Slovenia	✓	Y			✓	Y			✓	Y								
Spain	✓	Y																
Sweden	✓	N					✓	N										
Switzerland (Zurich)	✓	N																
Turkey																		
United Kingdom	✓	N																
United States (Michig	✓	Y			✓	N									✓	Y		
Bulgaria	✓	Y					✓	N					✓	Y				
Croatia	✓	Y			✓	Y												
Cyprus	✓	Y			✓	Y												
Malta	✓	N			✓	Y												
Romania	✓	N			✓	Y												

주: a. 한부모수당의 경우 단독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가족급여나 다른 급여의 보충급여로 추가하는 국가(예를 들어 캐나다의 상품서비스 세액공제, 독일의 실업급여, 슬로베니아의 공공부조) 등이 있음. 한부모에 대해 특례과표를 적용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미국)도 있으며. 한부모 급여 이외 조세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도 있음. 오스트리아의 한부모수당은 홑벌이가구(lone earners)에게도 적용됨

b. 독일,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몰타, 루마니아에서 자산조사에 기초한 별도의 보충급여가 있음.

c. 수급자격에 다른 요건이 부과되기도 함. 예를 들어, 호주는 자녀 나이 6세, 뉴질랜드는 14세, 몰타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근로조건이 부과됨. 아이슬란드는 최소 두 자녀, 폴란드는 세 자녀부터 한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음. 아일랜드는 막내 연령이 7세미만인 경우, 슬로베니아는 3세까지 급여보충을 받을 수 있다. 크로아티아에서 비경활 배우자에 대한 보조금은 자녀 연령 14세가 될 때까지 적어도 세 자녀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됨.

d. 선지급수당은 비동거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지급함.
e. "대가족"의 정의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모든 국가에서 세 자녀부터임. 이탈리아는 4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세액공제도 제공함.
f. 노르웨이는 한부모가구에 한해 이 급여를 제공함.
g. 한국은 한부모가구에 한함.
h. 노르웨이는 한부모가구에 한함. 네덜란드는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함.
i. 벨기에는 한부모가구, 노르웨이는 2살이하의 영유아에게만 지급함.

출처: OECD(2023). Table PF1.3.A. 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 2018에 개선(2018) 및 업데이트(2024)된 한국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아동수당(8세미만에 한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모급여(0~1세),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 자녀장려금, 가정양육수당을 분류한 것임

아동특성별 분류에서 연령별 급여인 영유아급여를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3개국이며 영유아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초중등자녀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포르투갈, 칠레 등 11개국이다. 이 급여는 보편주의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 자산조사에 기반해 급여를 지급한다. 부모의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급여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이 자녀가 있는 저소득근로가구에 대해 근로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일본은 저소득가구에 대해 지급되며 노르웨이는 2살이하의 영유아가구에 한해, 벨기에는 한부모에 한해 지급된다.

한국은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아동급여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8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편적 아동수당[27] 그리고 2023년부터 0-1세 아동에 한해 지급되는 보편적 부모급여가 있다. 지표분류에서 아동수당은 일반적 가족급여로, 부모급여(2022년 영아수당)는 아동특성에 따른 조건부 급여로 영유아급여로 분류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자산조사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초중등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교육지원비가 있고 선지급수당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표를 수정했다.

요컨대, 가족현금급여의 유형 및 제도별 이용가능성 지표는 각국의 가족현금급여제도의 제도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한국은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양육수당, 자녀장려금, 그리고 아동수당 등을 반영한 분류체계의 정정이 필요하여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하였다. 이 지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가족급여는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가족급여 이외에도 가족유형별 한부모가족 급여, 선지급수당, 대가족수당, 자녀 연령별 영유아급여, 초중등교육지원급여, 부모의 근로특성에

27)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2인가구이상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9년부터 보편주의적으로 확대되었다. 아동수당은 비기여, 비자산조사, 비과세 급여로 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의 연령이 8세이하로 제한되어 영유아급여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유아 급여는 3세미만 자녀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아동수당은 일반적 가족급여로 분류했다.

따른 근로세액공제, 가정양육수당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부모가족급여의 경우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들에서 보편적인 추가수당을 지급하거나, 프랑스처럼 다자녀 대가족의 경우 자산조사형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들도 있다. 한국은 2018년 자산조사형 한부모가족급여, 보편적 가정양육수당, 자산조사형 근로세액공제(자녀장려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덧붙여 2018년 이후의 변화, 즉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2019년), 부모급여 제도 도입(2023년) 등의 변화를 반영해 2024년 지표를 추가 제시했다. 2024년 한국의 가족현금급여에서 한부모가족급여는 가족특성별 자산조사형 제도,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노동시장 특성에 따른(보·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비(非)자산조사제도로 분류하였으며, 자녀장려금은 부모노동시장특성에 따른 근로세액공제형 자산조사 제도, 아동수당은 일반적 가족대상 비(非)자산조사 제도로 추가하였다.

2) Chart PF1.3.A.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 and earnings) (개선필요)

이 지표는 가족 현금급여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중 하나로, 가족특성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모델가족을 설정하고 AW소득대비 급여액 수준을 파악한다. OECD 국가들에서 가족현금급여는 아동수당, 아동세액공제, 공공부조성 가족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가정양육수당 등을 들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가족은 9세, 12세 두 자녀 아동가구로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라 양부모 맞벌이(전일제근로자 소득 P50+시간제 근로자 소득 P50), 양부모 홑벌이(전일제 소득 P90), 한부모(시간제근로+P50) 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적절지표로 분류되었으나(김은지 외, 2023:107) 다시 요소값을 투입하여 계산한 결과 오류로 나타나 개선필요 지표로 재분류했다. 한국은 9세, 12세 초등자녀에 대한 아동수당형의 보편적 가족급여가 없고 저소득한부모가구의 급여자격은 2018년 당시 기준중위소득 52%(3인가구 1,915,238원)이하이기 때문에 현재 모델가족의 한부모 중위소득자(P50)가구는 급여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고값은 0%로 수정되어야 한다.[28)]

OECD 평균은 한부모가구(P50)에서 13.7%, 양부모 홑벌이가구(P90)에서 4.2%, 양부모맞벌이가구(P50-P50)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급여액이 높은 국가는 폴란드(AW소득의 36.5%), 독일(AW소득의 29.0%)이며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국가들이 20%이상의 지원수준을 보였다. 중위소득 한부모에 대해서 현금지원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이다. 양부모가족의 경우 맞벌이/홑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국가는 많지 않다.

28) 2018년 통계청의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결과 발표에 따르면, 평균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이다. 3인가구 수급자격인 191만원을 상회하는 값이다. 현재 OECD 보고값(4.4%)은 해당 한부모가구가 공공부조성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가정하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중 아동양육비 12만원과 학용품비 54,100원을 투입하여 계산한 것이다.

OECD 지표생산 40개국중 9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 현금급여 제도는 자녀의 특징(연령이나 자녀수, 자녀순위) 등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부부의 고용형태가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벌이 홑벌이에 따라 가족급여차가 있는 국가는 독일(9.2%p), 불가리아 (7.8%p), 영국(4.6%p), 포르투갈(3.7%p) 등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가족현금급여를 통해 맞벌이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향을 갖고 있다.

〈표 4-5〉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 수준 (2018)

지표명	모델가족유형	한국(2018)
가족특성별 급여수준 (PF1.3.A.)	한부모+ 시간제근로(P50) +자녀2명	보고값= 4.4% →0% 로 수정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에만 한부모가족지원금 지급)
	양부모+홑벌이+전일제(P90) +자녀2명	급여액없음. 자녀 연령 9세이상일 경우 양부모지원 가족급여없음
	양부모+맞벌이+(전일제 P50+시간제P50)+자녀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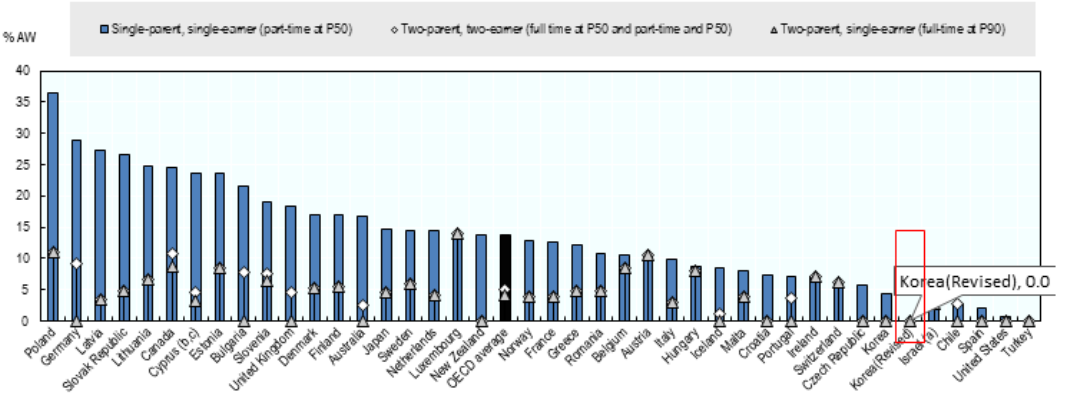
주: 자녀2명의 나이는 각각 9세, 12세. 소득수준은 전일제근로자(주당40시간) 시간제는 주당20시간 근로 세전소득분포 기준.

요컨대,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수준 지표는 가족특성과 소득수준을 교차한 세 가지 가족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가족현금급여의 수준을 보여준다. 자녀 연령이 9세, 12세이므로 영유아 가구에 지원되는 현금급여와 구분해 초등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지표는 국가별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이 맞벌이 이중생계부양자 모델을 지원하는지 홑벌이(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지원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 OECD 모델 가족수준에서 양부모가족의 경우 맞벌이/홑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국가는 많지 않다. OECD 지표생산 40개국중 9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 현금급여 제도는 자녀의 특징(연령이나 자녀수, 자녀순위) 등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부부의 고용형태가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벌이 홑벌이에 따라 가족급여차가 있는 국가는 독일(9.2%p), 불가리아 (7.8%p), 영국(4.6%p), 포르투갈(3.7%p) 등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맞벌이에 좀더 유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양부모가족의 자녀인 9세, 12세 아동에 대해서는 현금급여가 없고 한부모의 경우도 저소득가구에 대한 공공부조급여 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 가구 유형에 대한 가족현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0%(0원)이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의 9세, 12세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부모, 양부모가구 모두 2018년과 마찬가지로 0값에 머물러 있다.[29]

29)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6세미만 소득수준 2인이상 전체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2019년부터 보편주의 제도로 확대되었고 2021년 만 7세까지, 2022년부터 만8세까지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월급여액은 1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OECD 모델가족은 9세, 12세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0세-8세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자 확대는 지표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소득한부모가구의 아동양육비는 2019년 이후 아동당 2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 21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림 4-4] Chart PF1.3.A.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수준
Chart PF1.3.A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 and earning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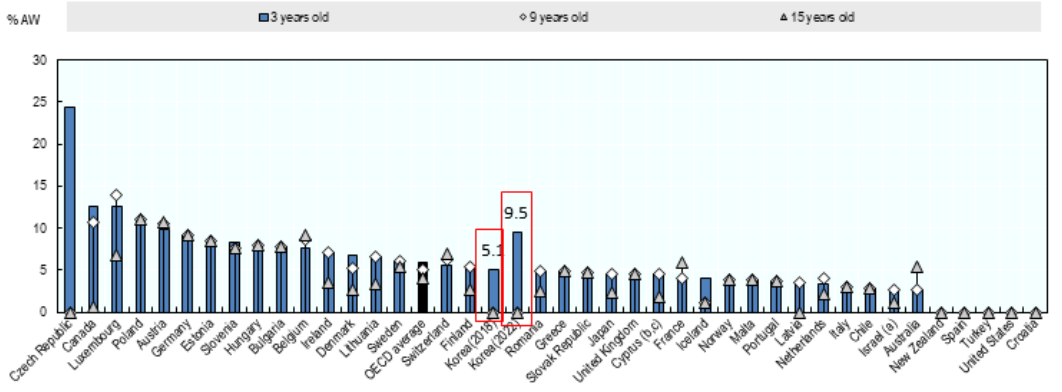


주: 기준가족은 9세, 12세 자녀 두명가족임. "전일제 P50"은 주당 40시간근로 전일제 소득분포의 중위소득 그리고 "시간제 P50"은 주당 20시간근로 전일제 소득분포의 중위소득을 의미함. AW소득/임금은 세전 전일제 상근직 노동자의 평균총임금소득을 의미함. 칠레는 2016년값임.
출처: OECD 값은 OECD Tax-Benefit Models, http://www.oecd.org /social/benefits-and- wages.htm을 기초로 작성함.; OECD(2023). Chart PF1.3.A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 and earnings, 2018에 한국 수정 자료를 추가함
※ 한국(Revised) 자료는 2018년 제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산출

3) Chart PF1.3.B. 막내 자녀 연령별 가족현금 급여수준 (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8) (개선필요)

이 지표는 PF1.3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의 수준을 파악하는 하위 지표중의 하나로, 자녀 연령별 지원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비교가구는 두 자녀 맞벌이가구, 막내 자녀 연령 3세, 9세, 15세이며 터울은 3세이다. 가구 유형별 비교를 통해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른 현금급여 총액 뿐 아니라 유아가구, 초등자녀가구, 중등자녀가구 중 어떤 가구에 대한 지원이 높은지 상대적인 규모를 알 수 있다. 이 지표가 개선필요로 분류된 이유는 (2018년 기준) 3세, 6세 자녀가구 경우 가족현금급여중 보육서비스와 연동하고 있는 조건부 급여인 가정양육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를 위한 보·교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3세, 6세 유아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률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가구가 현금급여로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했다. 그러나 OECD가 조건부 현금급여인 양육수당을 현금급여로 분류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가족현금급여로 포함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으므로 종전대로 해당 가구의 현금급여 계산에 포함시켰다. 다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양육수당이 3세이상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나라는 없으므로 가족현금급여 지표 주석에 가정양육수당이 합산되었다는 표기를 할 것을 제안한다. 30)

[그림 4-5] Chart PF1.3.B. 막내 자녀 연령별 가족현금 급여수준
Chart PF1.3.B. 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8



주: 기준가족은 맞벌이 부모+ 자녀 두명, 두 자녀의 터울은 3세. 막내연령은 각각 3세, 9세, 15세임. AW소득/임금은 전일제 상근직 노동자의 평균총임금소득을 의미함.
출처: OECD 값은 OECD Tax-Benefit Models, http://www.oecd.org /social/benefits-and- wages.htm을 기초로 작성함. OECD(2023). Chart PF1.3.B. 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8에 한국 수정 자료를 추가함
※ 한국(Revised) 자료는 2018년 제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산출. 가정양육수당이 포함된 값임.

비교기준년도인 2018년 한국은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벌이(전일제+시간제) 두 자녀 가구(3세, 6세)의 현금급여는 가정양육수당 10만원*2명으로 총 20만원(월), AW 소득대체율 5.1%이다. 당시 OECD 국가의 가족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5.9%인데 한국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현재 한국은 아동수당의 도입효과로 가족현금급여가 증가해 3세, 6세 자녀가구의 경우 아동수당 (2명*10만원) 20만원, 가정양육수당(2명*10만원) 20만원, 총 40만원(월)으로 AW 소득대체율 9.5%를 보였다. 이는 OECD국가중 독일(6위)보다 높은 현금지원 상위권 국가에 속하는 수준이다. 반면 막내 자녀 9세인 초등자녀가구 또는 15세인 중등자녀가구의 경우 가족현금급여 소득대체율의 OECD 평균은 각각 5%, 4%인데, 우리나라는 해당연령 아동에 대한 일반적 현금급여(예를 들어 아동수당)가 없으므로 소득대체율은 모두 0%이다.

OECD국가중 3세, 6세 영유아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가 가장 높은 국가는 체코이며 AW소득의 24.3%이며, 캐나다와 룩셈부르크 12.5%, 폴란드 11%, 오스트리아 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OECD 국가중 AW 소득수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도가 없는 국가는 뉴질랜드,

30)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세 아동(72개월~취학전까지)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수급율은 4.5%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9). 양육수당은 기관보·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조건부 급여인데, 6세 아동의 양육수당 수급율을 고려할 때 양육수당을 현금급여로 포함하는 것은 3세, 6세 두 자녀가구의 현금급여 혜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 튀르키예, 미국, 크로아티아 등이 있다. 한국(2022년)은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합쳐 9.5%수준으로 OECD 국가중 6위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막내 자녀 연령별 가족현금급여 지표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자녀 연령별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유아가구(3세, 6세), 초등자녀가구(9세, 12세), 중등자녀가구(15세, 18세)의 급여액을 통해 총액수준에서 국가별 차이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일 국가내에서도 어떤 자녀 연령의 가구를 지원하는지 알 수 있다. OECD 평균은 유아가구 5.9%, 초등자녀가구 5%, 중등자녀가구 4%로 연령이 높을수록 현금급여 지원이 약간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2022년 한국은 각각 9.5%, 0%, 0%로 계산되었다. 2023년부터 0-1세 영아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현금급여의 영유아집중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Chart PF1.3.C. 자녀수별 현금급여 수준 (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개선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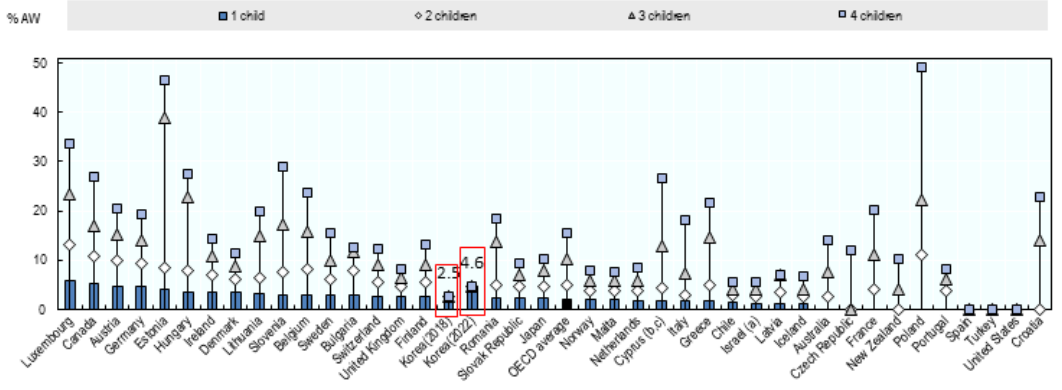
이 지표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혜택을 측정하는 지표로 앞의 PF1.3.B 지표가 가족현금급여의 연령별 차이에 관한 것이라면 PF1.3.C 지표는 자녀수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지표는 AW 소득대비 가족급여액으로 측정하며, 막내 자녀 6세 자녀간터울 3세 간격으로 한 자녀(6세)에서 최대 네 자녀(6세, 9세, 12세, 15세)까지 자녀수별 가족현금급여 수준을 비교한다.

이 지표가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된 것은 다른 가족현금급여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의 포함여부와 관련된다(김은지 외, 2023:106). 앞의 지표들과 동일한 원칙에 입각했을 때 가족현금급여 계산시 0-7세(최장 86개월)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급여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가족급여(2018년)는 자녀수(다자녀)에 따른 차등이 없고 8세이상 아동에 대해 현금급여가 없기 때문에 자녀수에 따른 급여차이는 없다. 기준 가족의 막내 자녀는 6세인데 2018년 당시 양육수당은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6세의 경우 10만원의 현금급여를 받았다. 6세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급여 월 10만원(2018년)이 포함되어 가족현금급여는 AW100% 소득의 2.5%로 보고되었다.

2018년 가족현금급여에서 OECD 평균은 한 자녀 2.1%, 두 자녀 5.0%, 세 자녀 10.1%, 네 자녀 15.4%이다. 두 자녀까지 AW 소득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이며 AW100% 소득대비 자녀1명 5.9%, 2명 13.1%, 3명 23.3%, 4명 33.5%의 높은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다자녀일 때 현금급여액이 가장 큰 나라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이다. 에스토니아는 한 자녀일 때 AW소득의 4.2%, 두 자녀 8.4%이지만, 세 자녀에 대해 38.9%, 네 자녀일 때 46.5%로 다자녀를 장려하는 급여체계를 갖고 있으며, 헝가리는 한 자녀 3.6%, 두 자녀 7.9%이지만 세 자녀는 22.8%, 네 자녀는 27.5%의 현금급여 혜택을 제공한다. 폴란드는 한 자녀일 때는 AW수준에서 현금급여가 없지만, 두 자녀 11%, 세 자녀 22.1%, 네 자녀 49.1%로 급여가 산술급수적

으로 증가하며, 네 자녀의 경우 임금소득의 절반 정도를 대체하는 높은 수준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반면, 덴마크는 자녀수에 따른 증액급여가 없으며 첫 자녀일 때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가족급여는 8세미만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취학전까지 지급되는 양육수당에 해당되는 6세 자녀에 관한 것만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수에 상관없이 한 자녀에서 네 자녀에 이르기까지 소득대체율은 동일하다. 2022년 양육수당 10만원 이외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계산하여 연간 총 240만원, AW소득의 4.6%이다.

[그림 4-6] Chart PF1.3.C. 자녀수별 현금급여 수준
Chart PF1.3.C. 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2018



주: 기준가족은 맞벌이 부모+ 막내 자녀6세. 부모중 한명은 전일제근로(주당 40시간), 다른 한명은 시간제근로(주당 20시간), 두 사람모두 중위소득 임금을 받음. 자녀의 터울은 3세임. AW소득은 전일제 상근직 노동자의 평균총임금소득이며 세전소득임.
출처: OECD(2023). Chart PF1.3.C. 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2018에 한국 수정 자료를 추가함
※ 한국(Revised) 자료는 2018년 제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산출

요컨대, 자녀수별 현금급여수준은 다자녀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한국의 경우 양육수당 포함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선필요지표로 분류되었다. 양육수당은 영유아중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지만 여기서는 이 조건과 무관하게 연령기준을 충족하면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했다. AW100% 소득대비 급여액을 계산했을 때 2018년 값 2.5%를 확인했으며 2022년은 아동수당 효과로 인해 소득대체율은 4.6% 로 인상했다. OECD국가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시 출생순위별 차등급여나 다자녀일 경우 추가급여를 주는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출산장려적인 정책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은 다자녀일 경우 현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도 한다. OECD 평균은 한 자녀일 때 2.1%이고 네 자녀일 때 15.4%까지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녀수별 급여액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미국, 스페인, 튀르키예와 같이 AW노동자 수준에서 보편적 아동

수당과 같은 제도가 없는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 규모가 낮은 국가에 속한다. 양육가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금급여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OECD 국가들 정책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연령확대, 출생순위별 차등급여나 다자녀수당 등 아동특성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행 아동수당이 아동수당법상 월10만원 정액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가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급여액을 현실화하는 방법 등도 가능할 것이다.

라. PF1.4 조세-복지급여체계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1) Table PF1.4.A. 가구 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for couples at different household earnings levels) (적절)

이 지표는 총가구소득(gross household income)에서 조세와 가족급여가 적용된 정부 순이전(net transfer to government)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각국의 조세 및 가족급여가 상대적으로 어떤 가족/가구 유형을 지원하는지 알 수 있다. 기준가구는 4세, 6세 두 자녀 부부가구로 가구소득은 AW소득 133%와 200%이다. 가구 유형은 맞벌이/홑벌이로 구분하고 맞벌이는 동일소득/차등소득[31]으로 다시 구분한다. 한국지표는 PF1.3의 개선지표들과 동일한 원칙에서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되었는데, 가족현금급여에 가정양육수당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존 값을 유지하기로 한다.

정부 순이전(net transfer to government)규모가 클수록 과세액이 급여혜택을 상회함을 의미하는데, 2014년 홑벌이 133%(133-0)소득과 200%(200-0) 가구에서 OECD 평균은 각각 21.5%, 28.2%이다. 정부순이전이 가장 큰 국가는 네덜란드로 각각 38.3%, 44.5%이다. 높은 세율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에서도 홑벌이가구에서 정부순이전이 높게 나타났다. 홑벌이 고소득가구에서 정부 순이전이 20% 미만으로 낮은 국가는 동구권의 슬로바키아(17.7%), 에스토니아(17.9%), 체코(18.7%) 등이 있다. 한국은 홑벌이가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가 가장 작은 국가로서 정부순이전은 홑벌이 133%에서 9.1%로 OECD 평균 21.5%의 절반 수준이며 홑벌이 200%에서도 14.0%로 역시 OECD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편, 맞벌이 133%(67-67)소득에서 정부순이전은 벨기에가 28.4%로 가장 크고, 덴마크, 독일 순이다. OECD평균은 17.4%이며, 한국이 4.8%로 가장 작다. 고소득 가구인 맞벌이 200%(100-100)에서도 벨기에가 37.1%로 가장 크고 독일, 덴마크 순이며 한국이 9.7%로 가장 작다. OECD 평균은 23.6%이다. 한국은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낮기 때문에

31) 차등소득은 한쪽 배우자가 더 많은 소득을 버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AW133%가구일 때 차등소득시 부부가 100-33으로, AW200%가구의 경우 150-50을 버는 것을 가정한다.

홑벌이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또 소득 133%와 200% 가구 모두에서 정부순이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 홑벌이 격차(칼럼 [7][8])가 가장 큰 국가는 그리스이며 가구소득 133%, 200% 모두 홑벌이 대비 맞벌이가 정부순이전에서 71.5%, 47.6% 유리했다. 스웨덴도 각각 33.0%, 40.2% 맞벌이가 유리했는데, 맞벌이가 유리하지만 고소득(200%)보다는 중간소득(133%)가구가 조세-급여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동구권국가(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차이가 0.4~1.2%로 크지 않지만 홑벌이가구가 약간 더 유리한 국가이며, 프랑스, 독일은 홑벌이가 더 유리한 국가들이다. OECD평균은 18.9%로 정부순이전에서 맞벌이가구의 혜택이 더 크다.

다음으로 순가구소득(net household income)에서 맞벌이와 홑벌이가구를 비교한다. 가구소득 133%에서 네덜란드가 홑벌이 대비 맞벌이의 순소득이 26.6%로 가장 높았으며, 그리스(17.7%), 핀란드(17.0%), 이탈리아(16.7%), 이스라엘(15.5%) 순으로 높다. 맞벌이의 순소득이 홑벌이보다 낮은 국가는 조세및 급여체계를 홑벌이에 유리하게 운영하는 라트비아(-1.8%), 독일(-0.5%)이다. OECD 평균은 6.4%으로 맞벌이가 홑벌이 순소득대비 6.4% 높다. 가구소득 200% 고소득 가구수준에서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네덜란드인데, 총가구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정부이전을 제하면 홑벌이가구보다 맞벌이가구 순소득이 24.4%이 더 높아 조세 및 급여체계를 통해 맞벌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 역시 고소득가구(200%)에서 맞벌이의 순소득이 22.3% 더 높다. OECD 평균은 7.0%로 홑벌이가구 순소득 대비 맞벌이가구의 순소득이 7.0% 더 많다.

한국은 가구소득 AW133% 수준에서는 맞벌이에서 소득세, 사회보장세 혜택이 커 (세전가구총소득 대비) 정부순이전에서 유리한 것(46.9%)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ECD 국가중 그리스(71.5%) 이스라엘(48.8%)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가구소득 AW200% 수준에서도 홑벌이 대비 맞벌이가 30.8%로 그리스, 이스라엘, 스웨덴처럼 맞벌이를 지원한다. 정부순이전의 효과가 반영된 순가구소득(net household income)에서도 동일소득 맞벌이 〉 차등소득 맞벌이 〉 홑벌이가구 순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Table PF1.4.A. 가구소득수준별 조세-급여체계의 형평성(2014)

	가구소득별 부부소득유형별 총가구소득대비 정부순이전(%)						동일소득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간 정부순이전치이(홑벌이부부가구 정부 순이전대비, %)		동일소득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순가구소득치이(홑벌이부부가구의 순가구소득대비, %)	
	홑벌이부부		차등소득 맞벌이부부		동일소득 맞벌이부부					
AW(AE)소득대비 총가구소득%	133 - 0 [1]	200 - 0 [2]	100 - 33 [3]	150 - 50 [4]	67 - 67 [5]	100 - 100 [6]	133 [7] (([5] - [1])/[1])*100	200 [8] (([6] - [2])/[2])*100	133 [9] ((Net Income[5] - Net Income [1])/Net Income[1])*100	200 [10] ((Net Income[6] - Net Income [2])/Net Income[2])*100
Australia	20.4	30.9	16.5	24.2	15.5	23.4	-23.6	-24.4	6.8	10.9
Austria	28.5	32.7	21.4	29.9	20.6	29.2	-27.7	-10.8	11.9	5.2
Belgium	31.5	41.0	27.2	37.1	28.4	37.1	-10.1	-9.3	5.4	6.5
Canada	16.6	24.8	14.4	21.6	12.1	21.1	-27.4	-14.9	6.3	4.9
Chile	19.3	20.2	16.6	18.5	18.5	19.0	-4.0	-6.4	1.7	1.6
Czech Repul	12.5	18.7	13.5	18.7	12.6	18.7	1.1	0.0	0.6	0.0
Denmark	29.9	38.7	28.2	34.8	28.0	32.4	-6.3	-16.2	3.5	10.2
Estonia	14.7	17.9	14.7	17.9	14.8	17.9	0.5	0.0	0.7	0.0
Finland	30.5	37.4	21.5	29.2	19.3	27.6	-36.7	-26.0	17.0	15.5
France	19.6	23.9	18.3	24.2	20.0	24.6	2.4	2.7	0.2	-0.8
Germany	25.8	29.4	26.6	32.5	26.8	33.9	3.6	15.3	-0.5	-6.4
Greece	19.0	27.0	9.1	17.3	5.4	14.1	-71.5	-47.6	17.7	17.6
Hungary	20.7	25.3	20.7	25.3	20.8	25.3	0.5	0.0	0.6	0.0
Iceland	24.9	36.9	24.2	33.1	24.1	31.8	-3.2	-13.8	1.8	8.1
Ireland	11.7	25.2	5.9	16.7	6.8	14.8	-41.6	-41.3	6.3	13.9
Israel (a)	23.1	30.1	15.8	21.3	11.8	16.8	-48.8	-44.1	15.5	19.0
Italy	28.9	37.6	20.1	29.5	17.7	28.2	-38.8	-24.9	16.7	15.0
Japan	18.5	23.0	17.2	21.3	16.6	19.4	-10.2	-15.7	3.1	4.7
Korea	9.1	14.0	6.5	10.2	4.8	9.7	-46.9	-30.8	5.5	5.0
Latvia	17.3	22.2	19.3	23.6	19.4	23.6	12.0	5.9	-1.8	-1.7
Luxembourg	12.5	23.9	9.8	21.5	10.0	21.5	-19.8	-10.1	3.6	3.2
Mexico	..	..	..	..	..	..	..	..	..	..
Netherlands	38.3	44.5	25.9	33.5	22.4	30.9	-41.4	-30.4	26.6	24.4
New Zealanc	17.4	26.4	12.8	21.6	11.8	18.9	-31.7	-28.2	7.5	10.1
Norway	28.4	34.3	22.3	28.7	22.0	26.5	-22.6	-22.7	9.8	11.8
Poland	24.2	26.3	23.8	26.0	23.9	26.0	-1.5	-1.0	1.2	0.4
Portugal	19.4	28.8	14.4	25.0	14.6	25.0	-25.0	-13.1	6.8	5.3
Slovak Repu	11.6	17.7	11.4	17.7	11.8	17.7	1.2	0.0	0.6	0.0
Slovenia	19.6	29.1	15.4	27.1	15.8	26.7	-19.6	-8.1	5.6	3.3
Spain	20.2	26.2	17.6	21.5	15.8	21.2	-21.6	-19.2	6.3	6.8
Sweden	25.5	35.6	17.3	26.3	17.1	21.3	-33.0	-40.2	12.1	22.3
Switzerland	24.5	25.8	23.4	25.1	23.7	27.0	-3.0	4.6	1.7	-1.6
Turkey	28.1	31.6	24.1	27.7	23.8	26.7	-15.4	-15.5	6.8	7.2
United Kingd	23.0	31.9	15.6	23.3	15.7	21.1	-31.6	-33.8	10.2	15.8
United States	17.5	21.4	17.5	21.4	17.6	21.4	0.5	0.0	0.6	0.0
OECD avera	**21.5**	**28.2**	**17.9**	**24.5**	**17.4**	**23.6**	**-18.9**	**-15.3**	**6.4**	**7.0**
Bulgaria	13.9	21.6	11.7	21.6	13.9	21.6	0.4	0.0	0.7	0.0
Croatia	23.2	29.6	21.8	26.8	21.7	25.6	-6.7	-13.5	2.8	5.7
Lithuania	22.0	22.7	18.2	21.0	18.0	21.3	-17.9	-6.3	5.8	1.9
Malta	13.0	18.2	11.5	15.8	8.2	15.1	-36.9	-17.1	6.3	3.8
Romania	27.1	28.0	24.3	26.6	24.4	27.2	-9.9	-3.1	4.4	1.2
EU average	**21.6**	**28.2**	**18.0**	**24.8**	**17.6**	**24.1**	**-17.6**	**-12.9**	**6.3**	**6.3**
Eurozone a	**21.3**	**28.1**	**17.1**	**24.5**	**16.4**	**23.9**	**-21.6**	**-13.3**	**7.5**	**6.3**

주: 4세, 6세 두 자녀를 둔 부부가구의 상황에 대한 추정값임. 부부중 한사람이 근로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것을 가정함. 수득수준에 따라 공공부조급여와 기타자산조사 급여 수급을 포함함. 공공부조는 근로조건(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활동)이 있지만,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함. 현금성 주거급여는 민간시장임대료와 기타비용으로 계산되며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20% 수준임. 보육과 관련된 현금급여와 보육비용은 제외됨.

출처: OECD Tax-Benefit.; OECD(2023). Table PF1.4.A. 가구 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for couples at different household earnings levels)에서 재인용

요컨대, 가구소득수준별 조세 및 급여체계(tax-benefit system)의 형평성 지표는 두 자녀(4세, 6세) 부부의 노동시장참여(맞벌이, 홑벌이)와 소득수준별 가구 유형에서 과세 및 복지급여의 순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각국이 정책적으로 어떤 유형의 가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OECD 국가는 대체로 동일소득의 경우 홑벌이보다 맞벌이에게 유리하도록, 또 고소득보다 저소득 가구에 유리하도록 조세 및 급여체계를 적용한다. 홑벌이가 더 유리한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낮은 국가로 조세 및 복지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중 하나이다. 가구소득대비 정부순이전은 홑벌이 133%에서 9.1%로 OECD 평균(21.5%)의 절반 수준이며 맞벌이 200%에서도 9.7%로 역시 OECD평균(23.6%)의 40%에 불과하다. 맞벌이 홑벌이가구 격차도 크게 나타나 그리스, 스웨덴 다음으로 한국이 맞벌이에 유리했다. 한국은 조세 및 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적지만 홑벌이가구보다 맞벌이가구에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Chart PF1.4.A. 2차소득자세율(Participation tax rates for second earner parents entering employment at varying gross earnings levels, 2014) (적절)

2차소득자세율 또는 “참여세율(participation tax rate)” 지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2차소득자(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직접세(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와 소득조사(공공부조) 급여의 변동 효과를 측정한다. 2차소득자세율이 낮을수록 2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참여의 유인이 크다. 참여세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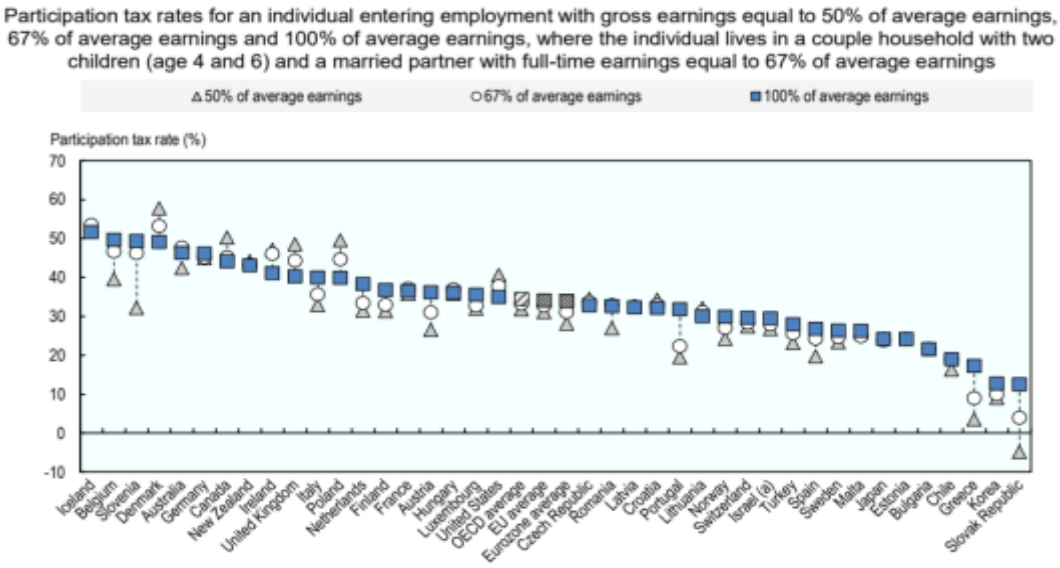
참여세율(PTR)

$$= 1 - \frac{Na - Nb}{Ga - Gb} = 1 - \frac{(Ga + Ba - Ta) - (Gb + Bb - Tb)}{Ga - Gb} = \frac{(Ta - Tb)}{(Ga - Gb)} - \frac{(Ba - Bb)}{(Ga - Gb)}$$

N: 순(net)가족소득 G: 총(gross)가족근로소득 B: 복지급여 T:전반적인 조세액 a: 근로참여이후 b: 근로참여이전

[그림 4-7] Chart PF1.4.A. 2차 소득자 참여세율

Chart PF1.4.A. Participation tax rates for second earner parents entering employment at varying gross earnings levels, 2014



100% 평균소득(세전소득)일 때 부과되는 참여세율의 크기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음.

주: 참여세율은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이행했을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대비 조세 및 복지급여의 변동분을 측정한 값이다. 이 값은 실업급여 수급이 만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공공부조와 기타 자산조사급여는 임금 상황에 따라 포함된다. 공공부조를 수급한다면 근로조사(구직활동이나 근로"가능한" 상태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하지만, 이 요건들은 비취업상태일 때 충족된 것으로 가정된다. 현금주거급여는 시장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모든 가족유형에 대해 전일제근로자 임금의 20%수준으로 가정되었다. 기혼커플의 경우 평균소득자의 소득비율은 한 쪽 배우자만 변동한다. 1인소득자커플에서 한쪽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도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2인소득자(맞벌이)커플에서 전일제 근로자의 소득은 평균근로자(AW)의 67%로 설정되었다. 비교대상가족은 4세, 6세 자녀를 둔 가족이다. 보육비용이나 보육관련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OECD Tax-Benefit Models.; OECD(2023). Chart PF1.4.A. Participation tax rates for second earner parents entering employment at varying gross earnings levels, 2014에서 재인용.

[그림 4-7]은 첫 번째 소득자를 AW67%로 고정하고 2차소득자가 각각 AW50%, AW67% AW100%의 소득자인 것을 가정하여 참여세율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이 지표 역시 OECD Tax-Ben 모델을 통해 계산한 것이며, 자녀의 나이는 각각 4세, 6세로 가정되었다.

2014년 2차소득자 AW100% 기준 참여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51.7%), 벨기에(49.7%), 슬로베니아 (49.3%), 덴마크 (49.1%), 호주(46.1%)이며, 참여세율 20%미만의 하위 국가는 그리스(19.0%), 한국(12.7%), 슬로바키아(12.5%) 등이 있다. 참여세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높은 국가라는 특징이 있다. 2차소득자가 AW67% 근로자인 경우도 세율 순위는 유사한데, 아이슬란드(53.5%) 덴마크(53.2%), 호주(47.7%) 순으로 높고 그리스(8.9%), 한국(9.9%), 슬로바키아(3.9%)가 가장 낮다. 2차소득자 소득 AW50%에서도 비슷한 순위

배열이 발견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참여세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아일랜드와 영국은 2차소득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기준년도인 2014년 한국의 참여세율은 AW50%일 때 9.0%, AW67%일 때 9.9%, AW100%일 때 12.7%로 참여세율이 매우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참여세율도 낮아진다. 이를 통해 한국은 2차소득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페널티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현재 OECD 지표는 현재 2001년에서 2014년까지 자료에 근거해 있는데, 최신지표로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요컨대, 2차소득자 참여세율 지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소득 대비 조세 및 복지급여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소득이 발생하지만 소득세가 부과되며 또 공공부조를 비롯해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 급여들이 줄거나 없어진다. 따라서 참여세율이 높을수록 2차소득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하며 낮을수록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 OECD국가중 참여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같은 국가들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 참여세율은 약 50%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참여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중의 하나이다. 참여세율은 9.0~12.7%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2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조세 및 급여 변동 효과가 크지 않다.

〈표 4-7〉 비경활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참여세율(PTR: participation tax rates, %) (2014)

지표명	모델가족	한국	덴마크
2차소득자세율	1차소득자 전일제 AW67%+2차소득자 AW50%	9.0	57.7
	1차소득자 전일제AW67%+2차소득자 AW67%	9.9	53.2
	1차소득자 전일제AW67%+2차소득자 AW100%	12.7	49.1

주: 1차소득자는 전일제근로자로 소득은 AW67%로 고정됨. 자녀 나이는 각각 4세, 6세임

마.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체계(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32]

1) Table PF1.5.A. 자녀양육비제도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개선필요)

이 지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제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결정의 주체(부모, 법원, 기관), 양육비 결정의 책임, 금액 결정 방식, 양육비 강제의 책임 주체, 비혼부모일 때 별도적용 규정 여부, 양육비 종료 시점, 선지급 제도 여부 등 자녀양육

3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정책적 맥락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공공부조성 자산조사 급여를 의미하며, '자녀양육비'는 비양육부모가 지급하는 자녀양육을 위한 사적인 이전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는 주로 비양육부모의 이전소득(Child maintenance)이나 이를 선지급하는 수당(advance maintenance payments)을 의미하므로 '자녀양육비' 용어를 사용하였다.

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의 자녀양육비제도 주요 특징 지표는 현재 OECD에 보고되고 있는데,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 110). 보고된 한국 지표는 2010년대 이후의 한국의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2011년 말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존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이혼 판결에 활용되는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되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러한 법조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비정기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으며 이는 전국 가정법원에서 활용되고 있다(서울가정법원, 2021). 또한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3호] 제정에 따라 2015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상담,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정보조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박복순 외, 2020: 17-22).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때, 한국자료는 다음의 두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 우선 '양육비 수준 결정 지침(Rules for determining amount of payments)' 항목은 기존 '주로 임의 결정, 지침 없음(Mostly discretion, no fixed rules or methods)'에서 '주로 임의 결정, `기준표` 활용(Mostly discretion, using 'support tables')'으로 수정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판결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책임(Responsibility for enforcement of payments)' 항목을 기존 '법원(Court)'에서 '법원 또는 양육비확보기구(Courts and Child Support Agency, 2015~)'로 변경하였다. 이는 여전히 양육비 이행확보 책임이 주로 법원에 있으나 양육비확보기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함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 표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Table PF1.5.A. 중 일부 국가를 제시한 것이다. 제시된 국가는 김은지(2013) 연구에서 유형화한 분류 기준에 따라 전형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김은지(2013)는 양육비 이행결정 주체, 양육비 이행확보 기구의 역할, 선지급수당의 도입여부 등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체계를 유형화한 바 있다. 아래 표의 첫 번째 네 개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은 '빈곤층 의무강화형'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며 선지급수당이 없는 국가들이다. 두 번째 국가군인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은 '이행확보 지원기구 보완형'으로 법원이 양육비이행 결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행확보는 별도 기구가 보완하는 유형들이다. 세 번째 국가군인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등은 '법원중심형'으로 양육비이행 결정과 확보까지 법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존재한다. 마지막 국가군인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복지혼합형'으로 양육비 결정부터 이행확보까지 복지시스템과 통합되어 있다. 첫 번째 국가군을 제외한 세 개의 국가군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수당이 도입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4-8〉 Table PF1.5.A. 자녀양육비제도 주요 특징

Table PF1.5.A 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Country	Involvement in the determination of child maintenance			Responsibility for determining maintenance payments	Rules for determining amount of payments	Responsibility for enforcement of payments	Different arrangements children of unmarried parents	Age at which support ends	Advance on maintenance payments
	Parents	Court	Agency						
Australia	Yes - entry into formal system if parents cannot agree.	Yes (residual role)	**Yes -Child Support Agency**	Parents or CSA if parental disagreement or PWC in receipt of means tested benefits	Rules/rigid formula	**Child Support Agency**	No	18 years or when schooling is finished	**No**
New Zealand	Yes	Yes (residual role)	**Yes, Inland Revenue Child Support**	Parents or IRCS if parental disagreement	Rules/rigid formula	**Inland Revenue Child support**	No	16 years or until child is economically independent	**No**
UK	Yes - ratified by court	Yes (residual role)	**Yes -Child Support Agency**	Parents or CSA if parental disagreement or PWC in social asistance benefits	Rules/rigid formula	**Courts and Child Support Agency**	No	16 years or 19 years if in full-time education	**Yes**
US**	Yes - ratified by court	Yes	**Yes -Child Support Agency (varies by state)**	Court	Formal guidelines	**Courts and Child Support Agency**	No	Varies across states (at age 16 in some states in others up to age 25)	**No**
Netherlands	Yes - ratified by court	Yes	**No**	Parents with supervision of lawyers; Court if parental disagreement or parents receiving social assistance	Mostly discretion, informal guidelines	**National Collection and Support Agency;. Enforcement through a bailoff; If enforcement is contested, court.**	No	21 years	No
France	Yes - ratified by court	Yes	**No**	Court	Mostly discretion, no fixed rules or methods	**Courts and Social Security Agency**	No	18 years	**Yes**
Belgium	Yes - ratified by court	Yes	**No**	Court	Mostly discretion, no fixed rules or methods	**Court**	No	18 years	**Yes**
Korea	Yes - ratified by court	Yes	**No**	Parents or Court if parental disagreement	Mostly discretion, using 'support tables'	**Courts and Child Support Agency(2015~)**	No	Parental agreement or 20 years	No
Austria	Yes - ratified by court	Yes	**No**	Parents with court approval	Formal guidelines and rules/rigid formula	**Court**	No	18 years	**Yes**
Germany	Yes	Yes	**No**	Parents or Court if parental disagreement	Mostly discretion, using 'suport tables'	**Court**	Yes	18 years	**Yes**
Spain	Yes	Yes	**No**	Court	Mostly discretion, using 'supoprt tables'	**Court**	No	18 years	**Yes**
Japan	Yes	Yes	**No**	Parents or Court if parental disagreement	Informal guidelines	**Courts**	No	20 years or until child is economically independent	No
Denmark	Yes - ratified by Country Governor's Office	No	**Yes - Country Governor's Office**	Parents or State County's Agency if parental disagreement	Rules/ rigid formula	**State County's Agency**	No	18 years	**Yes**
Finland	Yes - mediated and confirmed by Social Welfare Bond	Yes (residual role)	**Yes - Social Welfare Board**	Parents or Social Welfrare Board and court if parental disagreement	Mostly discretion, inormal guidelines	**Municipal Social Welfare Board**	No	18 years	**Yes**
Norway	Yes	Yes (residual role)	**Yes, Work and Welfare Agency (NAV)**	Parents or NAV if parental disagreement	Rules/rigid formula	**National maintenance payment collection centre**	No	18 years	**Yes**
Sweden	Yes - confirmed by Social Welfare Bond	Yes	No	Court	Mostly discretion, informal guidelines	Enforcement Service	No	18 years	**Yes**

출처: OECD(2023).Table PF1.5.A. 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일부 발췌하여 김은지(2013)의 기준에 따라 분류, 한국 자료는 수정

한국의 경우 2010년 제도적 진전 이전까지는 양육비 선지급수당이 없기는 하지만 대체로 '법원중심형'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0년대 양육비이행확보체계의 강화로 '이행확보 지원기구 보완형'에 가까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정책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2010년대 한국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 세 번째 국가군인 '법원중심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중 일부에게만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을 하는 형식적인 양육비 제도에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선지급수당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추후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 2024.03.28.). 양육비 선지급수당이 도입될 경우 '이행확보 지원기구 보완형'의 전형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자녀양육비제도 주요 특징 지표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결정의 주체, 양육비 결정의 책임, 금액 결정 방식, 양육비 강제의 책임 주체, 비혼부모일 때 별도적용 규정 여부, 양육비 종료 시점, 선지급 제도 여부 등 자녀양육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자녀양육비제도 주요 특징 지표는 2010년대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 수정한 값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양육비 수준을 결정할 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책임은 주로 법원에 있으나 양육비확보기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와 같은 '이행확보 지원기구 보완형'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2) Table PF1.5.B. 한부모가족 추이,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추이(Trends of Sole-parents and of Sole-Parents Receiving Child Maintenance Payments in recent years) (지표생산 불필요)

이 지표는 한부모가족의 추이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자료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데, 보고 시점이 2004년 이전으로 상당히 오래된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비중을 산출할 수 있으나, 2004년 이전 시점에 대한 자료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자녀양육비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비율도 1994년, 2000년, 2004년 시점에 대해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있어, 한국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3) Table PF1.5.C. 자녀양육비 수준(Levels of Child Maintenance Payments) (지표생산 불필요)

이 지표는 자녀양육비 현금 지원액의 수준이 시간에 따라(1994년, 2000년, 2004년)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이 지표는 한부모 가구당 평균적인 자녀양육비 수준, 자녀 1인당 평균적인 자녀양육비 수준, 순가처분소득(net disposable income) 대비 자녀양육비 비중, 전체 소득 이전(total income transfers) 대비 자녀양육비 비중 등으로 구성된다. 앞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료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으나, 해당 조사는 2012년 이후 시점에 대한 자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에서 최근 자료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한국의 자료도 OECD 기준에 맞추어 직접 생산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PF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PF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은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0-5세(초기 아동기), 6-11세(중기 아동기), 12-17세(후기 아동기)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집단의 1인당 평균 공적 지원수준을 보여준다. 공적 지출은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 돌봄, 기타 현물급여와 교육(초등 및 중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지표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와 OECD Education Database를 기초로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에서 제시된 연령별 지출 프로파일(Age-spending profile)에 기초하여 OECD가 직접 산출한다. 따라서 프로그램별 지출의 연령별 배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의 경우 지표의 해석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SOCX 가족영역의 하위 분류 중 영유아 조기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을 구성하는 3개 항목 중 하나인 아동복지서비스(410.10.5211. Child welfare services)는 0-5세 이상 아동 연령대를 포괄하는 돌봄지원 및 취약청소년 관련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따라서, 초기 아동기(0-5세) 공적 사회지출은 일정 정도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정책적으로 아동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1990년 이래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행 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요구된다.[33]

1) Chart PF1.6.A.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03 to 2019), Chart PF1.6,B,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 비율(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19)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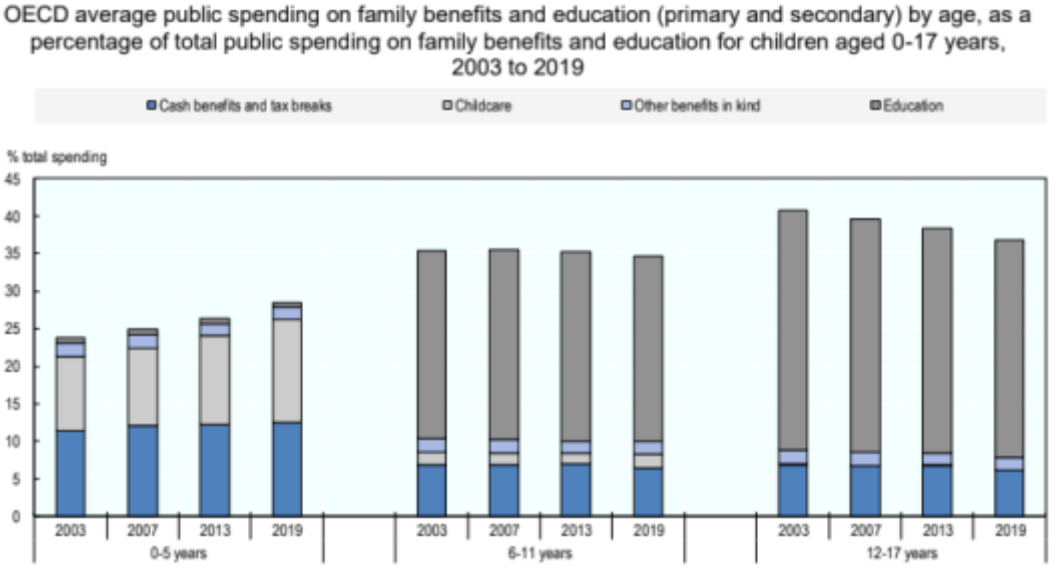
PF1.6.A.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은 아동기(0-17세)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각 연령집단의 지출 비중으로 정의하며, 통상 구성비 분포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거나 특정 시점에서의 국제비교 시 사용하는 지표이다.

---

33)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한국의 SOCX 산출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SOCX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조정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전면적인 분류체계 개편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의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은 분포상 큰 변화 없이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 수준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초기 아동기(0-5세)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초기 아동기(0-5세)에 대한 지출 구성비는 2003년 평균 23.8%에서 2019년 28.4%로 4.6%p 증가한 반면에 중기 아동기(6-11세)와 후기 아동기(12-17세)의 지출 구성비는 같은 기간 각각 0.7%p(35.4%→34.7%)와 3.9%p(40.8%→36.9%) 하락하였다. 초기 아동기에 대한 공적 사회지출은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과 보육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기 및 후기 아동기의 경우 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최근 10년간 영유아 조기교육 및 돌봄(ECEC)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4-8] Chart PF1.6.A.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의 규모
Chart PF1.6.A. 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



주: The indicator is calculated using the Age-Spending Profiles methodology used in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http://www.oecd.org/els/soc/doingbetterforfamilies.htm. Data is missing for Canada, Colombia and Costa Rica.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OECD(2023). Chart PF1.6.A. 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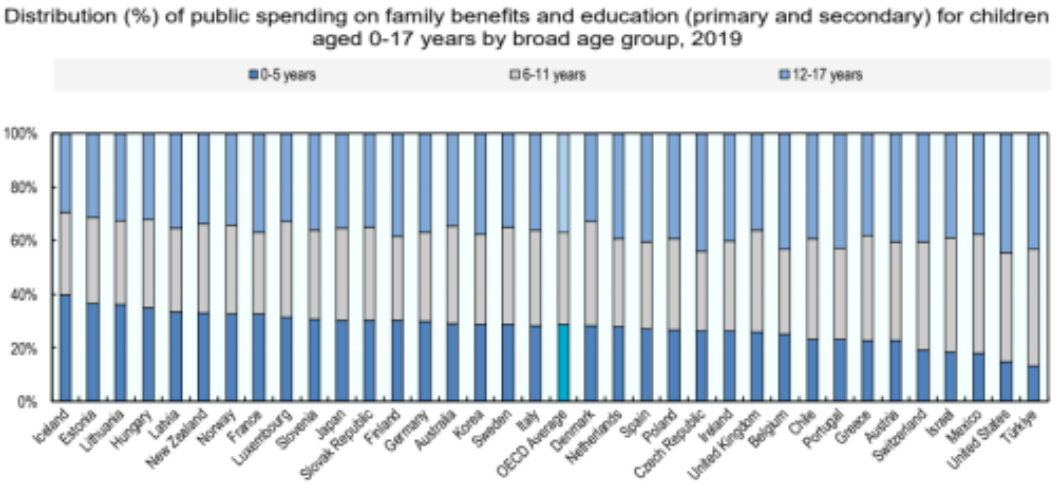
2019년 현재 OECD 국가들의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을 보면, 초기 아동기(0-5세)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40%)이며,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36%), 헝가리(35%), 라트비아, 뉴질랜드 및 노르웨이(33%), 프랑스와 룩셈부르크(32%), 슬로베니아(31%), 일본, 슬로바키아, 핀란드 및 독일(30%), 호주, 한국, 스웨덴(29%), 이탈리아(28%) 순으로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다. 한편, 초기 아동기에 대한 지출이 13%로 가장 낮은 튀르키예는 중기 아동기(6-11세)에 대한 지출이 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후기 아동기(12-17세)에 대한 지출이 43%로 미국(45%), 체코(44%)에 이어 벨기에, 포르투갈과 함께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헝가리 4개국은 초기 아동기(0-5세)에 대한 지출 비중이 중기나 후기 아동기보다 높았고, 후기 아동기(12-17세)보다 중기 아동기(6-11세) 지출 비중이 더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영국, 그리스, 이스라엘, 멕시코, 튀르키예 등 12개국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각 연령집단별 지출 비중이 33:33:34로 대체로 균등하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29:33:38로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며, 중기 아동기 지출 비중이 OECD 평균(35%)보다 다소 낮지만 초기 아동기와 후기 아동기 지출 비중은 모두 OECD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Chart PF1.6.B. 연령구간별 공적 사회지출
Chart PF1.6.B: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주: Data missing for Canada, Colombia and Costa Rica.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OECD(2023). Chart PF1.6.B: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에서 재인용

요컨대,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은 초기(0-5세), 중기(6-11세) 및 후기 아동기(12-17세)에 대한 공적 사회지출의 배분구조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계열적 변화나 국가간 비교시 사용된다. OECD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적 사회지출도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2) Chart PF1.6.C. 0-5세 1인당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 보육, 교육지출(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0-5 years), 2019) (적절)

다음의 PF1.6.C., PF1.6.D., PF1.6.E는 3단계 아동기 각각에서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이 유형별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USD PPP(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국제비교 시 유용하게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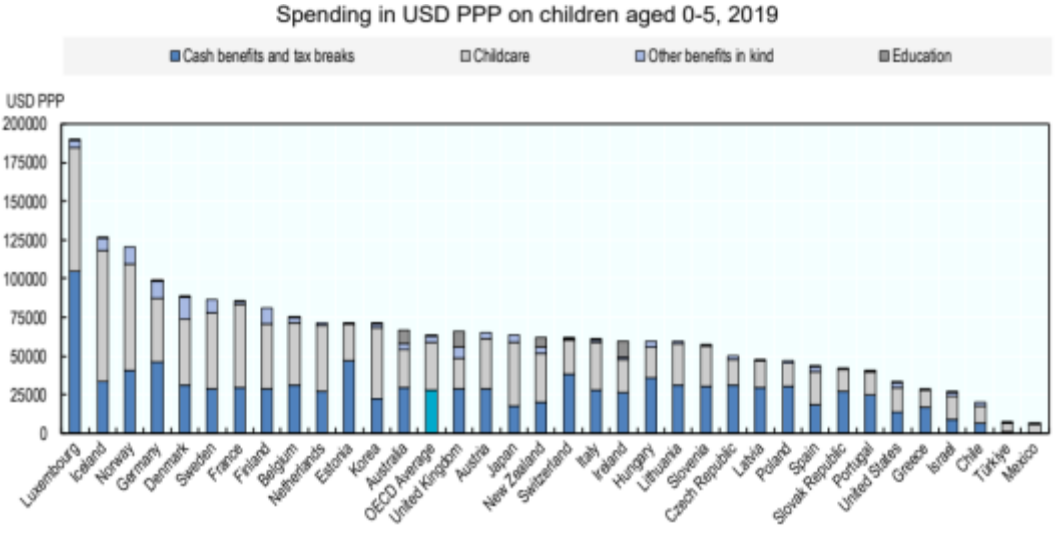
초기 아동기(0-5세)의 경우 보육과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이 가장 핵심적인 공적 지출 항목이다. 2019년 현재 OECD 평균 0-5세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은 63,950 USD PPP이며 이 중 보육지출이 전체의 48%(30,800 USD PPP)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이 44%(28,330 USD PPP), 기타 현물급여와 교육지출이 각각 6%와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아동에 대한 지원에서 보육지출이 핵심적인 반면에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급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 아동기에 대한 지출은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0-5세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OECD 평균보다 3배 높은 190,460 USD PPP이며, 아이슬란드(2배), 노르웨이(1.9배), 독일(1.5배), 덴마크(1.4배), 스웨덴(1.4배), 프랑스(1.3배), 핀란드(1.3배) 등의 순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총 13개 국가가 OECD 평균 이상의 지출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초기 아동에 대한 지출이 많은 반면에 포르투갈, 미국,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튀르키예, 멕시코는 OECD 평균 대비 50% 이하로 지출한다. 특히 튀르키예와 멕시코는 초기 아동기에 대한 지출이 10,000 USD PPP 미만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초기 아동기에 대해서는 보육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지만,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헝가리 등 16개국에서는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이 보육지출보다 크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0-5세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은 2019년 70,360 USD PPP로 OECD 35개국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보육지출이 45,530 USD PPP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 반해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은 보육지출의 약 절반 수준인 22,510 USD PPP(OECD 평균의 80%수준)로 35개 회원국 중에서 26위를 기록하였다. OECD 평균(28,330 USD PPP)보다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이 적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15개 국가가 확인되는데, 이중에서 0-5세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이 70,000USD PPP를 넘는 나라는 한국과 네덜란드 2개국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이 적은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일본, 그리스, 미국, 이스라엘, 칠레, 튀르키예와 멕시코 9개국으로 일본을 제외하고 0-5세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이 35,000 UDS PPP 미만이다.

[그림 4-10] Chart PF1.6.C. 0-5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사회지출
Chart PF1.6.C: 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are important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 (0-5 years)



주: Data missing for Canada, Colombia and Costa Rica.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OECD(2023). Chart PF1.6.C: 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are important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 (0-5 years)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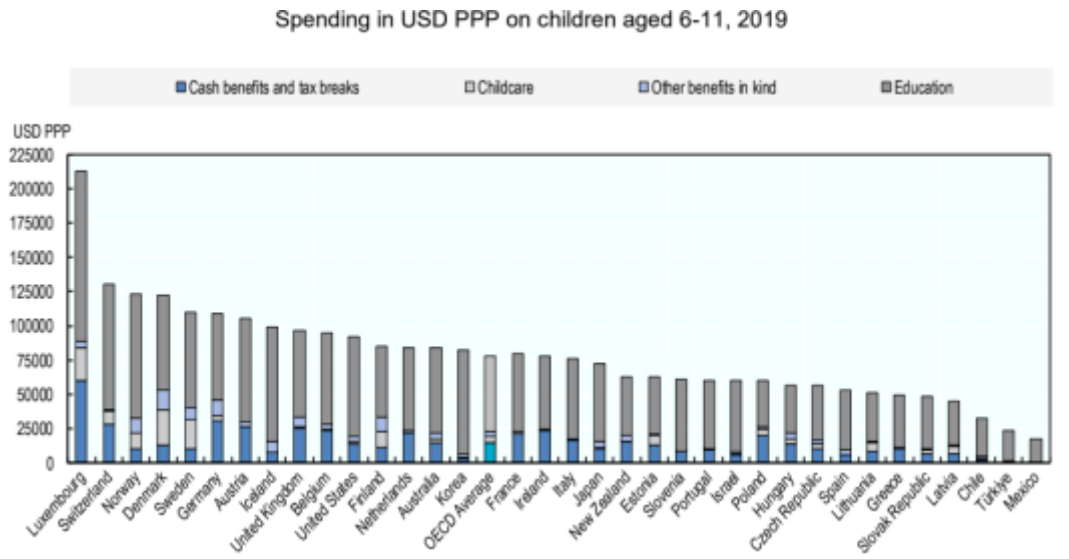
3) Chart PF1.6.D. 6-11세 1인당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 보육, 교육지출(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6-11 years), 2019) (적절)

중기 아동기(6-11세) 공적 지출 대부분은 교육비가 차지한다. 2019년 현재 OECD 평균 6-11세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은 78,080 USD PPP로 이중 교육지출이 전체의 71%(55,670 USD PPP)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이 18%(14,400 USD PPP), 보육(돌봄) 6%(4,320 USD PPP), 기타 현물급여가 5%(3,700 USD PPP)를 차지한다. 이 시기 일부 아동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초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기 아동기 1인당 공적 사회지출 역시 나라마다 큰 편차를 보인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OECD 평균의 2.7배 수준인 213,340 USD PPP이며, 가장 적게 지출하는 국가는 멕시코로 OECD 평균의 20% 수준인 16,950 USD PPP이다. 한편, 교육비 지출 비중으로 보면, 룩셈부르크의 경우 58.6%로 가장 낮았고 멕시코 97%, 튀르키예 96%, 한국 92%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2019년 6-11세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은 81,830 UDS PPP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OECD 35개국 중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75,290 USD PPP로 룩셈부르크(124,993 USD PPP), 스위스(91,020 UDS PPP), 노르웨이(90,610 USD PPP), 아이슬란드(83,920 USD PPP), 오스트리아(75,490 USD PPP)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6-11세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이 OECD 평균보다 많이 지출하는 16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92%로 나타났다.

[그림 4-11] Chart PF1.6.D. 6-11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사회지출
Chart PF1.6.D. Education dominates in middle childhood (6-11 years)



주: Data missing for Canada, Colombia and Costa Rica.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OECD(2023). Chart PF1.6.D. Education dominates in middle childhood (6-11 years)에서 재인용

4) Chart PF1.6.E. 12-17세 1인당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 보육, 교육지출(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12-17 years), 2019)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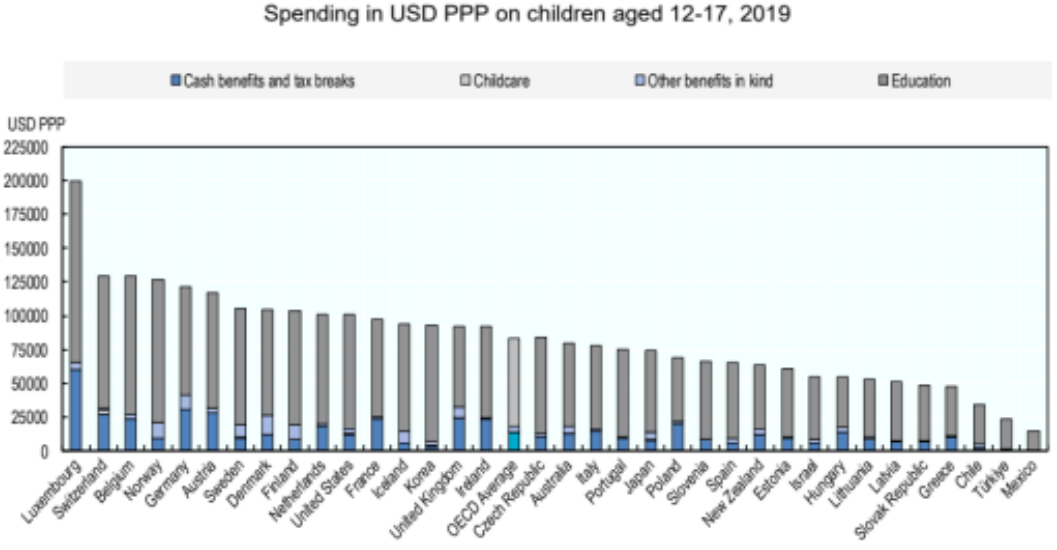
후기 아동기(12-17세)의 경우에도 공적 사회지출 유형 중에서 교육지출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 시기 대부분의 아동은 중등 교육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현재 OECD 평균 12-17세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은 82,910 USD PPP로 이중 교육지출이 전체의 78.6%(65,140 USD PPP)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현금급여 및

조세혜택이 16.6%(14,400 USD PPP), 기타 현물급여가 4.5%(3,760 USD PPP), 보육(돌봄) 0.3%(220 USD PPP)를 차지한다.

후기 아동기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역시 룩셈부르크로 OECD 평균의 2.4배인 134,350 USD PPP이며, 마찬가지로 멕시코가 가장 적은 14,330 USD PPP(OECD 평균의 20%)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 비중 역시 중기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가 67%로 가장 낮았고, 멕시코와 튀르키예가 97%, 다음으로 한국이 93%로 높게 나타났다. 후기 아동기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의 유형별 배분 상태는 중기 아동기와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교육비 지출 수준이 중기 아동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즉, 후기 아동기에 대한 높은 교육비 지출수준이 중기 아동기에 비해 더 많은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2019년 12-17세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은 92,620 USD PPP로 OECD 평균의 1.1수준으로 OECD 35개국 중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교육비 지출은 86,080 USD PPP로 전체의 93%를 차지하며, 룩셈부르크(134,350 USD PPP), 노르웨이(106,200 USD PPP), 벨기에(101,820 USD PPP), 스위스(98,010 USD PPP), 스웨덴(86,630 USD PPP)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2] Chart PF1.6.E. 12-17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지출
Chart PF1.6.E. As it also does in late childhood (12-17 years)



주: Data missing for Canada, Colombia and Costa Rica.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OECD(2023). Chart PF1.6.E. As it also does in late childhood (12-17 years)에서 재인용

사. PF1.7 세대간 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

1) Chart PF1.7.A.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Age profile of net transfers) (누락)

이 지표는 "세대간 연대" 개념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중의 하나로, 연령집단(세대)간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의 흐름(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OECD 지표는 9개국만 보고되었고 사용된 자료 역시 최신자료가 아니라 2000년대 중후반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실험적인 성격의 지표로 보인다. 한국은 보고값이 없지만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통해 지표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지표로 분류했다(김은지 외, 2023:117). 통계청은 매년 1세연령 구간별 생애주기적자와 연령재배분 통계를 집계, 공표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OECD가 요청하는 연령집단별 순이전(net transfer) 비율 지표의 생산이 가능하다.[34]

OECD가 지표생산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UN 국민이전계정 지침서에 따라 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측정하는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이며,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age profile of net transfer) 지표는 연령구간별 유입(inflow) 이전소득에서 유출(outflow) 이전소득을 빼고 이를 다시 1인당 평균소비총액(aggregated average consumption per capita)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연령재배분의 측정대상은 공적이전(public transfer), 사적이전(private transfer), 자산재배분(asset-based reallocation)이다. 국민이전계정에 측정하고 있는 공공이전, 민간이전 공공자산 재분배, 민간자산 재분배 분류는 〈표 4-9〉와 같다.

〈표 4-9〉 연령재배분에서 제도별 공공, 민간 구분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이전(Transfers)	공공교육, 공공보건, 연금, 사회보장 등	자녀보육 또는 부모 부양, 자선 기부 등
자산재배분 (Asset-based Reallocations)	공공자산소득(공공시설·토지·자원, 공공부채 등에 대한 사용료), 공공저축	민간자산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 민간저축

출처: 통계청(2023.11.28.:34) 2021년 국민이전계정의 국민이전계정관련 용어해설을 보완함.

OECD 9개국의 연령별 순이전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0-19세의 아동청소년집단과 65세 이상의 노인집단들은 이전소득의 수혜자들이다. 그럼에도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는데, 소비총액

34)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 보도자료는 연령계층을 0~14세, 15~64세, 65+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통계청, 2023.11.28.). OECD 지표는 0-19세, 20-64세 65+으로 구분하는데 1세구간 자료를 이용하여 OECD지표와 동일하게 연령집단을 구성하여 지표를 예비적으로 산출하였다. 통계청 KOSIS에서 2010년부터(최근자료 2021년)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tblId=DT_1NTA02&orgId=101&language=kor&conn_path=&vw_cd=&list_id= OECD가 자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이전계정 국제데이터베이스(https://www.ntaccounts.org)에도 한국 2000년, 2010년~2019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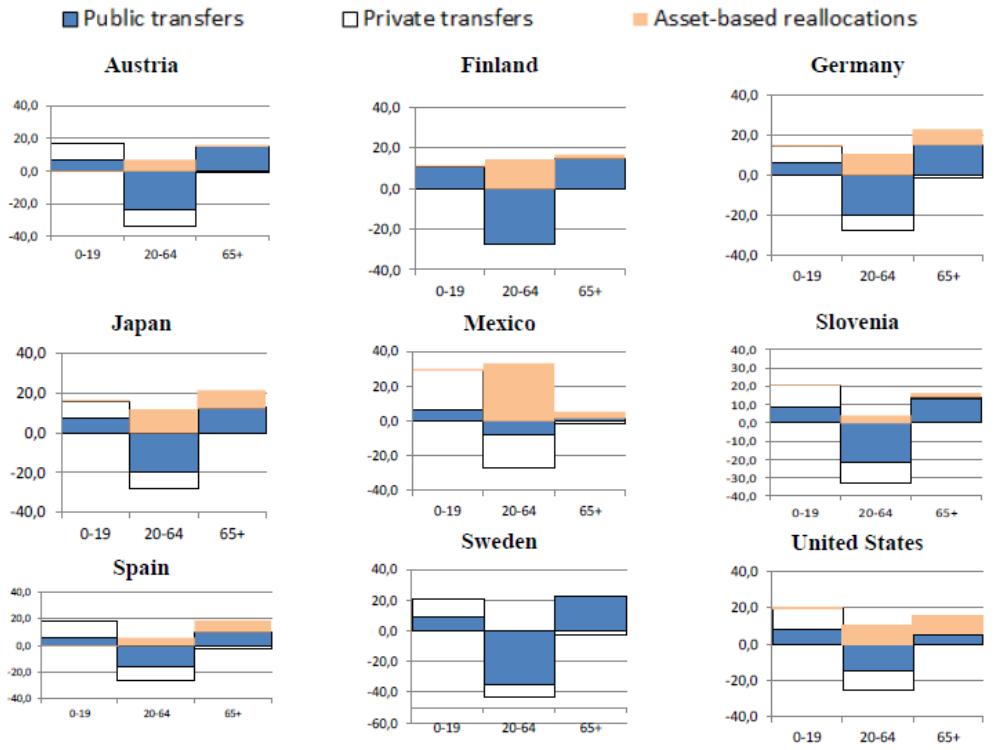
대비 노인에 대한 (순)공적이전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 23.2%이며, 핀란드 14.8%, 독일 15.2%, 오스트리아 15.0%순이다. 멕시코는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이 1.5%에 불과해 노후보장과 관련된 공적 지원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비총액 대비) 공적이전의 비율이 높은 국가 역시 핀란드 11.0%, 스웨덴 9.7% 등 북유럽 국가이며, 공적이전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스페인 6.4%, 멕시코 6.5% 등 라틴국가들이었다. 근로연령층(20-64세)의 공적이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는 노인과 아동에서 공적이전의 규모가 큰 스웨덴으로 소비총액에서 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34.9%이며, 핀란드 -27.2%, 오스트리아 -23.5%, 슬로베이나 -21.4%, 독일 -20% 순으로 높았다.[35)]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 2021년 자료를 분석했을 때, 아동·청소년에 대한 (순)공적이전은 소비총액 대비 8.2%로 이전규모가 큰 북유럽 국가의 핀란드(11%), 스웨덴(9.7%)을 다음으로 미국(8.7%), 슬로베니아(8.6%) 등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순)민간이전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멕시코(22.6%)를 제외하면 한국(11.4%)으로 슬로베니아(12.0%), 스페인(11.5%), 스웨덴(11.3%)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은 아동에 대한 민간 이전이 8.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한 (순)공적이전(6.6%)은 멕시코(1.5%), 미국(5.4%)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연금제도를 비롯된 공적이전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자원은 국가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노인에 대한 민간이전의 비율(1.4%)도 낮게 나타나 노인에 대한 공적, 사적이전의 규모 모두 낮은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근로연령층의 (순)공적이전은 -14.8%로 비교대상 9개국중 멕시코(-7.9%)보다 높고 미국 -14.4%, 스페인 -16.5%와 유사했다. 근로연령층의 민간이전은 멕시코(-18.3%) 다음으로 한국(-13.4%)이 높게 나타났다. 멕시코와 한국 모두 근로연령층은 자녀 또는 부모에 대한 사적 부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근로연령층의 민간이전이 가장 적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7.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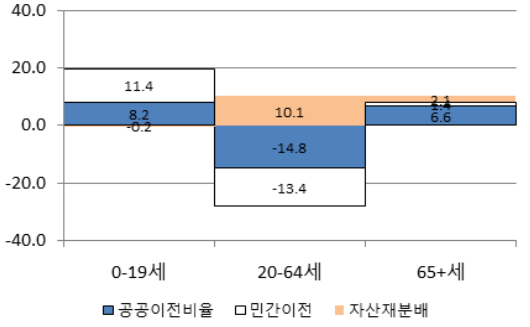
35) https://web-archive.oecd.org/2012-12-21/220723-PF1.7%20Intergenerational%20solidaritiy%20FINAL. xls.

[그림 4-13] Chart PF1.7.A. 연령별 순이전비율
Chart PF1.7.A. Age profile of net transfer



출처: National Account Transfers(https://www.ntaccounts.org); OECD(2023). Chart PF1.7.A. Age profile of net transfer에서 재인용

[그림 4-14] 한국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 (2021)



출처: 통계청(2021) 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tblId=DT_1NTA02&orgId=101&language=kor&conn _path=&vw_cd=&list_id)을 바탕으로 산출

요컨대, 연령집단별 순이전(age profile of net transfer)지표는 “세대간 연대” 개념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중의 하나로, 세대간 발생하는 (공공, 민간, 자산) 이전의 흐름과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한국은 국민이전계정 통계를 통해 보고가 가능함에도 지표값이 보고되지 않아 누락지표로 분류되었다. 산출식은 통계청 국민이전계정 데이터에서 연령구간별 순이전소득(공공, 민간, 자산 재배분)을 생애주기계정의 1인당 소비총액(aggregated average consumption per capita)으로 나누어 연령집단별 비율을 계산했다.

이전소득의 분포를 통해 나타난 국가별로 각 연령집단들의 부담과 수혜의 규모는 상이하다.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에서 순공적이전의 규모가 크고 순민간이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이 발달한 스웨덴에서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아동에 대한 공적이전 역시 북유럽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멕시코는 아동에 대한 민간이전의 규모가 가장 크고 공적이전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노인에 대해서는 공적이전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동에 대한 공적이전은 분석대상 OECD 9개국의 평균 수준(8.2%)을 보이지만 노인에 대한 순공적이전은 멕시코, 미국 등과 더불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근로연령층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적이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사적이전 부담은 크게 나타났다.

이 지표는 OECD 통계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9개국 통계만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표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통계청이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지표산식에 투입하여 보고 및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 PF1.8 법적 성년 연령(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법적 성년연령 지표는 생애주기에서 성인으로 권리행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다. OECD에 보고되는 법적 성년연령은 성년연령, 형사책임연령, 최소혼인연령(혼인적령), 의무교육종료연령, 최소근로연령, 음주 최소연령, 주류구매 최소연령, 성행위동의 최소연령이다. OECD에 보고는 각국의 법령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민법, 형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해당 법령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고가 되었다. 다만 가족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성년연령의 기준년도가 2016년이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법률적 성인 연령을 비교하고 한국은 주요 법률적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 적시하였다.

1) Table PF1.8.A. 성년연령(Age of majority, 2016) (적절)

성년연령은 법률상 성인(legal adult)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연령을 의미하는데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고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는 연령을 의미한다. OECD 다수 국가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다.[36] 18세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아태지역의 일본, 한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이며 2016년 현재 성년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37]과 뉴질랜드로 20세, 다음으로 한국이 19세이다. 성년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15세이다. 북미지역의 캐나다와 미국은 주별로 다른 연령을 적용한다. 캐나다는 알버타, 온타리오, 서스캐처원, 마니토바, 퀘벡주, 프린드에드워드섬은 18세, 브리티시 콜럼비아, 뉴브른스윅, 누나부트, 노바스코시아, 뉴펀들랜드, 리브라도 주는 19세를 적용한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가 18세를 적용하지만, 알라바마, 네브라스카, 푸에르토리코는 19세, 미시시피는 21세를 적용한다(〈표 4-11〉). 많은 국가들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나이와 성년이 동일한데, 일본과 뉴질랜드는 예외이다. 일본과 뉴질랜드는 성년은 20세이지만 선거권은 19세부터 갖는다.[38] 우리나라도 선거권연령이 성년연령보다 1살 빠르다. 성년은 19세이지만 선거권은 2019년 개정을 통해 18세부터 부여되게 되었다.[39]

2) Table PF1.8.B. 형사책임연령(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016) (적절)

성년 연령과 별도로 많은 국가들은 성년에 도달하기 전 미성년 아동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나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minors)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하여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형사책임능령이 발생하는 나이는 14세에서 15세로 정한 국가들이 많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의 국가는 14세로, 핀란드,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북유럽 5개국가들과 그리스, 체코 등은 15세로 규정한다. 〈표 4-11〉에서 보이듯이 형사책임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으로 18세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스코틀랜드 제외)과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스위스 등으로 10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형법 9조에 의해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연령이 14세이다. 다만 10-13세 촉법소년(触法少年)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

36) 유럽은 스코틀랜드(16세)를 제외하고 전역이 18세를 적용한다.
37) 일본은 2022년 4월 새로운 민법이 시행되면서 성년기준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 이로써 최소혼인연령도 18세로 낮아졌으며 여성만 16세로 적용했던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하였다. 일본의 투표권은 이미 2016년 개정을 통해 18세부터 부여되었다.
38) https://www.oecd.org/els/family/PF_1_8_Age_threshold_Childhood_to_Adulthood.pdf
39)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1&cciNo=1&cnpClsNo=1

3) Table PF1.8.C. 최소혼인연령(Minimum age for marriage, 2016) (적절)

최소혼인연령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독립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소혼인연령(혼인적령)은 성년이 되는 나이와 동일하다. 2016년 현재 최소혼인연령이 성년연령과 다른 국가는 뉴질랜드, 영국, 미국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있다. 뉴질랜드는 18세(성년20세),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16세(영국 다른 지역은 성년18세 혼인연령 18세로 동일)를 적용한다.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성년연령보다 최소혼인연령이 더 많다. 중국의 성년은 18세이지만 혼인적령은 남성 22세, 여성 20세로 차이가 있으며, 인도 역시 성년은 18세이지만 혼인적령은 남성 21세, 여성18세로 성년연령보다 혼인적령이 더 높으며 남녀가 다르다. 인도네시아는 성년은 15세이지만 혼인적령은 21세로 성년과 혼인적령간의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혼인적령 규정과 별도로 부모나 후견인, 법원의 동의하에 더 빠른 시기에 결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법원과 부모의 허가가 있으면 16세부터 혼인이 가능하며,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행정관청이나 법원의 동의하에 18세미만도 혼인을 할 수 있다. 뉴질랜드도 16-17세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사의 동의하에 혼인이 가능하다. 뉴질랜드는 과거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미성년자도 혼일 할 수 있었던 것에서 2018년 강제혼이나 조혼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6, 17세 미성년소녀의 경우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40] 또, 최근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강제혼, 조혼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18세미만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혼인적령이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였지만 2007년 이후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었다. 다만, 만 18세는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4) Table PF1.8.D. 의무교육종료 및 최소근로연령(School leaving age and Employment age, 2016) (적절)

성인이행과 관련하여 혼인뿐 아니라 교육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다. 많은 국가들이 법률을 통해 의무교육종료연령(school-leaving age)과 최소근로연령(minimum employment age)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종료와 근로가능 최소연령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을 보장하고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은 15세 의무교육종료 연령과 최소근로연령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본과

40) https://www.girlsnotbrides.org/learning-resources/child-marriage-atlas/regions-and-countries/new-zealand/ (검색일 2024.01.11.)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15세를 적용한다. 15세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6-1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며(예: 한국, 일본: 초등6년+중학 3년) 16세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덴마크처럼 7-16세 9년(푀르크스콜레 9년)을 실시하거나 영국처럼 5-16세까지 11년(초등6년+중등5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등은 의무교육 종료연령(16-18세)이 근로가능연령(15세-16세)보다 더 높은데, 이들 나라에서는 학교(졸업)에서 직장(취업)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 튀르키예의 최소근로연령은 의무교육연령보다 더 높은데, 의무교육이 커버하는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짧은(14세) 특징이 있다. 미국은 법적 근로연령이 14세로 가장 낮고 의무교육연령은 리포트되지 않았다.

5) Table PF1.8.E. 주류 소비 및 구매 최소연령(Minimum age to consume and purchase alcohol, 2016) (적절)

주류 소비(음주)및 구매와 관련해 최소연령을 규정한 것은 주류가 특정 연령이하의 아동에게는 판매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다. 주류 소비 및 구매와 관련된 연령제한은 맥주, 와인, 고도주(spirits)별로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혹은 차등을 두는 국가들도 있다. 또 업소(on-premise)인지 소매점인지를 구분하여 업소(카페, 펍, 주점, 식당)와 소매점을 구분하여 판매제한을 두기도 한다.

음주가능 최소연령과 주류구매 최소연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년연령과 동일하게 맞추어져 있고 18세인 국가가 가장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류농도에 따라 맥주와 와인, 고도주를 구분하거나 도수별로 구매 및 소비 연령을 달리 하는 국가도 있다(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음주가능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미국 21세, 인도네시아 21세, 아이슬란드 20세, 일본 20세, 한국 19세(연나이)[41]이다.

6) Table PF1.8.G.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Minimum age for sexual consent, 2016) (적절)

성행위 동의연령은 타인과 합의하에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최소연령은 14세~16세이다. 일본과 한국이 13세로 가장 낮고, 호주, 아일랜드는 17세, 미국은 주에 따라 17세 또는 18세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기준을 갖고 있다. 일본은 2023년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을 통해 성관계 동의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이로써 OECD 국가중 13세 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되었다. 현재 OECD 지표년도가 2016년인데, 우리나라는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형법 305조 2항 19세 이상 성인은 13~16세

41) 연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로 계산한다.

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되게 되었다. 따라서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성관계 최소동의연령은 16세이며,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성관계 최소동의연령은 13세가 유지되었다.

〈표 4-10〉은 한국의 성년 연령을 규정하는 법령과 조문이다. 성년연령은 민법의 규정을 받으며 19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책임연령은 형법9조 형사미성년자의 규정에 의해 14세이다. 최소혼인연령은 남녀 모두 18세이지만 민법상 성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법 808조에 의해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로 간주되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무교육 종료연령은 교육기본법에 의해 중학교 졸업까지로 규정되어 15세이며, 최소근로연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나이인 15세이다. 주류구매 및 소비연령은 청소년 보호의 목적에 따라 연나이 19세부터 가능하며(청소년 보호법)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은 13세이며, 13세이상 16세 청소년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표 4-10〉 한국의 성년연령의 법적 근거

법적 성년	법령	조문	연령
성년연령	민법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9세
형사책임연령	형법9조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
최소혼인연령	민법807조 (혼인적령)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807조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808조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세 (부모 동의 18세)
의무교육 종료 연령	교육기본법 8조 (의무교육) 초중등교육법13조 (취학의무)	교육기본법8조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13조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15세
최소근로연령	근로기준법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미만인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15세
주류구매 소비 최소연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1항,4항	① 청소년이란 만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 가목.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등	연나이 19세

법적 성년	법령	조문	연령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	형법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②13세이상 16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13세

출처: 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 김은지 외(2023: 125) 〈표 Ⅱ-34〉 재인용

요컨대, 성년연령은 많은 국가들에서 18세로 규정되는데, 아태지역의 일본, 뉴질랜드가 20세, 한국이 19세로 성년연령이 높다. 성년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5세)이다. 민법상 성년연령과 달리 형사책임연령은 14-15세로 정한 국가들이 많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나라에서 형사책임연령은 14세이며, 북유럽 국가들은 15세로 규정하고 있다. 성년연령과 동일하게 18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캐나다와 브라질이다. 10세부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나라는 영국(스코틀랜드 제외),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이다. 한국은 형법9조에 14세로 규정되어 있다.

최소혼인연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와 동일하며 18세가 가장 많다. 최소혼인연령을 성년과 동일하게 또는 성년 이후로 규정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전 강제혼이나 조혼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최소혼인연령이 18세가 아닌 국가로는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있으며, 중국의 성년은 18세이지만 혼인적령은 남녀가 서로 달라 남성 22세, 여성 20세이다. 인도 역시 성년은 18세이지만 혼인적령은 남성 21세, 여성 18세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성년은 15세이지만 혼인적령은 21세로 격차가 크다.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적령 이전에 더 빨리 결혼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18세미만의 경우에도 부모, 행정관청, 법원의 동의하가 있으면 혼인이 가능하다. 한국은 2006년까지 혼인적령이 남자 만18세, 여자 만 16세로 차이가 있었지만 2007년 개정을 통해 남녀 모두 18세가 되었다. 다만 만 18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할 수 있다.

주류소비 및 구매 최소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특정 연령이하의 아동에게는 주류가 판매,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아동보호적 목적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주류소비)와 주류구매는 성인(성년)이 되었을 때 가능하도록 연령규정을 하고 있는데 18세가 가장 많다. 한국의 주류소비 및 구매 최소연령은 연나이 19세이다. 성행위 최소연령은 법률이 규정하는 타인과 합의하에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이다. OECD국가에서 최소연령은 14-16세인데, 한국이 13세로 가장 낮다. 영미권 국가에서 성행위 동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호주의 일부 자치주(territories), 영국의 북아일랜드지역, 아일랜드는 17세를 적용하며 미국은 주에 따라 16~18세를 적용한다.

〈표 4-11〉 OECD 국가의 성년연령 법적 규정

국가	성년연령	형사책임 연령	최소 혼인연령	의무교육 종료연령	최소근로연령	음주 최소연령	주류구매 최소연령	성행위동의 최소연령
호주	18	10	18	15	주/테리토리에 따라 다름. 특정산업에 아동취업제한 있음.	18	18	16-17 (주/테리토리에 따라 다름)
오스트리아	18	14	18	15	15	16/18 (주/테리토리별 규제있음) 성인동반시 예외적허용	16/18 (주/테리토리별 규제있음) 성인동반시 예외적허용	14
벨기에	18	12	18	15	15	16(맥주 와인) 18(고도주)	16(맥주 와인) 18(고도주)	16
캐나다	18, 19 (주에 따라 다름)	18	18, 19 (주에 따라 다름)		14-17 (주별 노동법에 따름)	18/19(주에 따라 다름)	18/1(주에 따라 다름)	16
칠레	18	12	18		15	18	18	..
체코	18	15	18	15	15	18	18	15
덴마크	18	15	18	16	15	18	주류에 따라 16 또는 18	15
에스토니아	18	14	18	15	15	18	18	14
핀란드	18	15	18	16	15	18	주류에 따라 18 또는 20	16
프랑스	18	13	18	16	16	18	18	15
독일	18	14	18	15	15	16 (맥주, 와인) 18(고도주)	16 (맥주, 와인) 18(고도주)	14
그리스	18	15	18	15	15	18	18(고도주는 18세, 다른 종류의 술은 식품점이나 전문소매업체가 아닌 곳에서는 제한없음)	
헝가리	18	12-14	18	18	16	18	18	14
아이슬란드	18	15	18	18	15	20	20	
아일랜드	18	일반적으로 12, 살인등 중범죄는 10	18	16	16	18	18	17
이스라엘	18	12	18	17	15	18	18	
이탈리아	18	14	18	16	16	18	18	14
일본	20	14	20	15	15	20	20	13(2023년 16세)
한국	19	14	19	15	15	19(연나이)	19(연나이)	13

국가	성년연령	형사책임 연령	최소 혼인연령	의무교육 종료연령	최소근로연령	음주 최소연령	주류구매 최소연령	성행위동의 최소연령
라트비아	18	14	18	15	15	18	18	16
룩셈부르크	18		18	15	15	16	16	16
멕시코	18	12	18	14	15	18	18	..
네덜란드	18	12	18	18	15	18	18	16
뉴질랜드	20	10	18	16	없음	18	18	16
노르웨이	18	15	18	16	15	18세, 22도이상 고도주는 20세	18세, 22도이상 고도주는 20세	..
폴란드	18	일반적으로 17, 살인등 중범죄는 15	18	15	15	18	18	15
포르투갈	18	16	18	15	16	18	18	16
슬로바키아	18	14	18	16	15	18	18	15
슬로베니아	18	14	18	15	15	18	18	15
스페인	18	14	18	16	16	18	18	16(2015.7.1부터 동의연령13세에서 16세로 변경)
스웨덴	18	15	18	16	15	18	18/20(주류돗수 3.5도 이하의 맥주는 18세, 다른 술은 20세)	15
스위스	18	10	18	16	16	16(맥주, 와인은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다름. 18 (고도주)	16(맥주, 와인은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다름. 18 (고도주)	16
튀르키예	18	12	18	14	15	18	18	..
영국	18	10(잉글랜드, 웨일즈, 노던아일랜드), 12	16,18	16	16	16/18(식사시 맥주,사과주, 와인 섭취는 16세, 고도주는18세) 북아일랜드 제외	18	16(잉글랜드, 스콧틀랜드, 웨일즈) 17(북아일랜드)
미국	18, 19, 21 (주별 차이 있음)	연방법이나 주법수준에서 정해짐. 33개주에서 규정이 없음. 최소 적용 노스캐롤라이나 7세, 최대적용, 위스콘신 10세)	18		14	21	21	16-18 (주별 차이 있음)
러시아	18	일반적으로 16, 형법상 특정범죄에 대해 14	18	15		18	18	..
브라질	18	18	18	14	16	18	18	..
중국	18	홍콩10, 본토는 범죄유형에 따라 14-16, 마카오16	22(남), 20(여)	15	16	18	18	..

국가	성년연령	형사책임 연령	최소 혼인연령	의무교육 종료연령	최소근로연령	음주 최소연령	주류구매 최소연령	성행위동의 최소연령
인도	18	7	21(남) 18(여)	14		18 to 25(주별로 다름)	18 to 25(주별로 다름)	..
인도네시아	15	8	21		15	21	21	..
남아공	18	10	18	15	15	18	18	..
불가리아	18		18	16	16	18	18	14
크로아티아	18	14	18	15	15	18	18	..
사이프러스	18		18	15	15	17	17	16
리투아니아	18		18	16	16	18	18	18
몰타	18		18	16	16	17	17	18
루마니아	18	14	18	18	16	18	18	..

출처: 성년연령 EU국가 등은 http://www.protection-of-minors.eu 등,
최소혼인연령 https://www.crin.org/en/home/ages,
의무교육연령: http://www.right-to-education.org/page/comparative-table-minimum-age-legislation,
최소근로연령: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1300:0::NO:11300:P11300_INSTRUMENT _ID:312283: NO 등,
최소음주연령: http://www.iard.org/policy-tables/minimum-legal-age-limits,
성행위동의연령: EU 국가는 http://www.protection-of-minors.eu 등,
OECD(2023). PF1.8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 PF1.9 아동보호 특성(Aspects of child protection)

1) Chart PF1.9.A. 2018년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률(Child mortality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42] (적절)

PF1.9.A. 의도적,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 (Child mortality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은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ICD) 프로토콜에 따라 의도적 및 우발적 상해로 인한 아동 사망률을 의미하는 지표로 0~14세의 아동 100,000명당 사망률 통계치이다.[43] 대부분의 나라에서 2003년~2008년의 통계치를 보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6년도 기준 통계치를 보고하고 있어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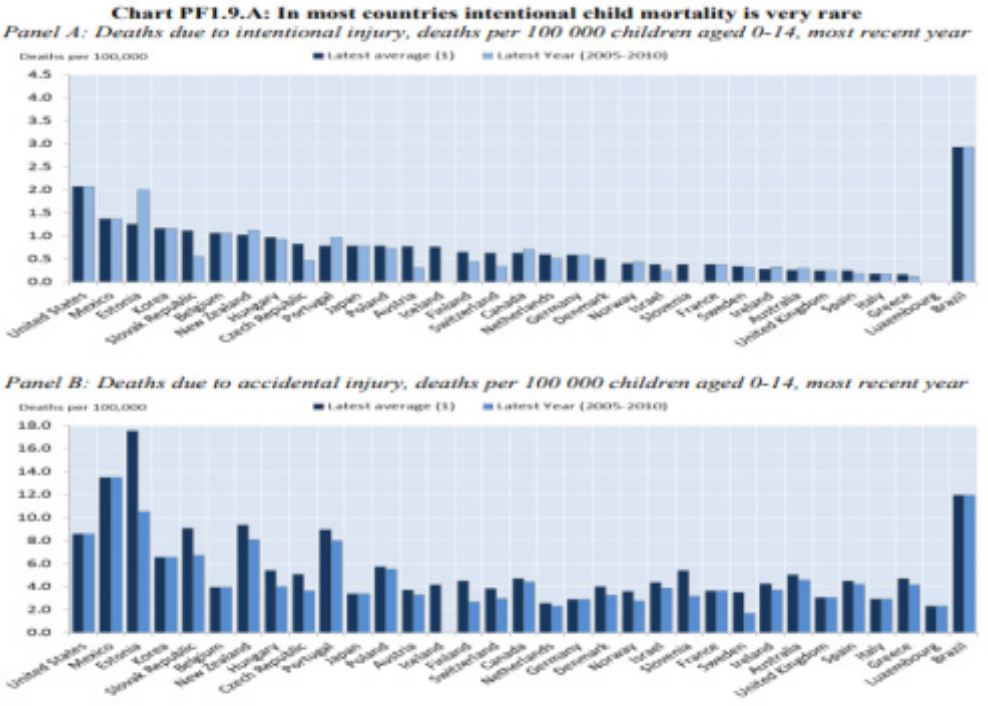
[그림 4-15] 는 OECD 국가들의 의도적 상해 아동 사망률(Panel A)과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Panel B) 보여주고 있다. 의도적 상해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브라질로 가장 최근 평균이 2.9명이며, 다음으로 미국이 2.1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평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로 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이슬란드의 최근 년도 평균은 0.8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장 최근의 아동 상해 사망률과 최근 년도 평균이 각 1.2명으로 에스토니아에 이어

42) https://web-archive.oecd.org/2013-12-19/261226-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43) https://web-archive.oecd.org/2013-12-19/261226-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OECD 국가 중 5번째로 의도적 아동 상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중,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 가장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보고되고 있다(Panel B). 에스토니아의 최근 년도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 평균은 17.5명이며, 가장 최근 년도 사망률은 10.5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멕시코의 최근 년도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 평균과 가장 최근 년도 사망률이 각 13.5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각각 11.9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각각 6.6명으로 OCED 국가들 중 중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가장 최근 년도 기준으로 아이슬란드(0명), 핀란드(2.7명), 노르웨이(2.8명) 등의 북유럽 국가들의 2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5] Chart PF1.9.A. 의도적,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



주: WHO ICD-10 분류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0-14세 어린이의 누적 수가 1,0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가장 최근 몇 년 동안의 평균 값.호주(2006-2008), 오스트리아(2005-2010), 벨기에(2006), 캐나다(2005-2006), 체코 공화국(2006-2010), 덴마크(2001-2008), 에스토니아(1999-2010), 핀란드(2002-2010), 프랑스(2009), 독일(2008), 그리스(2006-2010), 헝가리(2006-2010), 아이슬란드(2003-2010), 아일랜드(2002-2010), 이스라엘(2007-2009), 이탈리아(2009), 일본(2010), 한국(2008), 룩셈부르크(2008), 멕시코(2009), 네덜란드(2008-2010), 뉴질랜드(2002-2008), 노르웨이(2004-2009), 폴란드(2009-2010), 포르투갈(2004-2005), 슬로바키아 공화국(2000-2007), 슬로베니아(1999-2010), 스페인(2006-2007), 스웨덴(2005-2009), 스위스(2003-2009), 영국(2009), 미국(2007), 브라질(2007).

출처: WHO (2013), the WHO Mortality database; OECD(2023). Chart PF1.9.A: In most countries intentional child mortality is very rare에서 재인용

2) Chart PF1.9.B. 1980년대부터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률 추이(Changes in child deaths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early 1980s to latest figures)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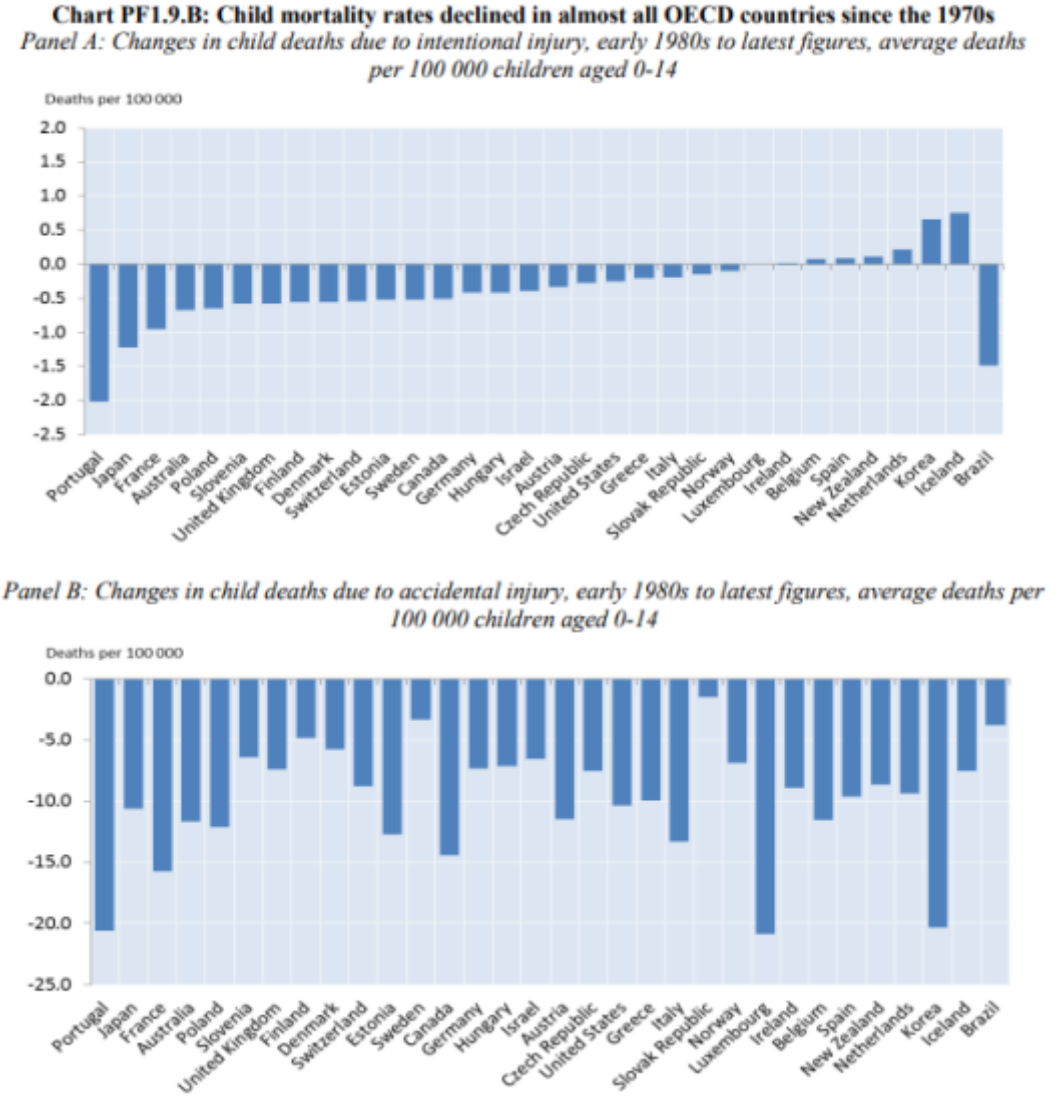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의도적,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 추이는 PF1.9.A.에 해당하는 사망률의 연도별 평균 사망률의 변화를 지표화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의도적,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을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으므로 본 지표 또한 적절하게 산출, 보고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44]

OECD 국가들의 의도적 상해로 인한 아동 사망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뉴질랜드, 네덜랜드, 한국, 아이슬란드의 7개 국가만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약 0.7명이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은 모든 OECD 국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감소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20.8명이 감소했으며, 다음으로 포르투갈이 20.6명이 감소하여 두 번째로 감소률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도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국가 중 하나로 20.3명이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1983년~1996년까지의 자료는 10년간의 지연신고 누적분이 포함된 결과로 1980년대 초에 해당하는 지표는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1996년도 이후 부터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적절하게 산출되고 있다(김은지 외, 2023:126).

[그림 4-16] Chart PF1.9.B. 1970년대부터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률 추이



주: 의도적 상해로 인한 아동 사망률 변화량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됨. 0-14세 어린이의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을 초과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임.1980년대 초의 데이터는 ICD9, 2000년대 후반의 데이터는 ICD10 분류 시스템 기반으로 함. 이 범주들은 UNICEF(2001) 및 (2003)에서 사용된 것과 일치함. "불확정 의도"에 의한 사망은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됨 (UNICEF, 2003).

출처: WHO (2013), the WHO Mortality database; OECD(2023). Chart PF1.9.B: Child mortality rates declined in almost all OECD countries since the 1970s에서 재인용

3) Table PF1.9.A.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누락)

PF1.9.A.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지표는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아동체벌에 아동체벌 실태(2001)만 보고하고 있다.[45] 아동체벌에 대한 실태는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 문항이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문 문항의 차이, 아동의 연령 차이, 어른 또는 부모 응답자의 차이 등으로 각 국가를 대표하는 통계값의 국가간 절대적 비교는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WHO 보고서 기반 우리나라의 아동체벌 실태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김은지 외, 2023:126). 아동체벌 실태와 마찬가지로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또한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관된 기준이나 동일한 문항이 없기 때문에 지표 값의 국가간 절대적 비교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체벌인식" 문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가 가능하다(김은지 외, 2023).

〈표 4-12〉 Table PF1.9.A.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

Table PF1.9.A 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Attitudes towards corporal punishment			Prevalence of corporal punishment	
	Year	Acceptable	Unacceptable / Never acceptable	Year	
Australia[1]	2006	41% smacking is effective in shaping children's behaviour; 69% agreed sometimes necessary to smack a naughty child		2007	71% smacked their children occasionally; 43% were likely or very likely to use a single smack as a punishment
Belgium	2004	77% acceptable for parents to smack their children (17% always acceptable and 60% in some circumstances)	19% unacceptable in any circumstances		
Canada	2004	64% support use of force such as spanking by parents to discipline a child		2002	50% of parents reported they had "inflicted light corporal punishment, like a slap" on their children; 6% reported they had "inflicted painful corporal punishment".
Chile				2002	Mothers report using physical punishment as follows: 51% spanked buttocks with hand, 39% shook child, 27% twisted ear, 24% pulled hair, 18% hit with object on buttocks, 13% slapped face or head, 12% hit with knuckles, 3% pinched child.
Cyprus[2,3]	2000	15% smacking is a socially acceptable method of child discipline.			
Denmark				2000	12% of 3 year-olds were spanked "sometimes" or "seldom"
Estonia	2000	41% support use of corporal punishment			
Finland	2007	25% acceptable physical discipline of children at least in exceptional situations		2007	73% of women and 68% of men reported they had sometimes used physical punishment.
Germany				2001	54% of parents frequently used "minor" corporal punishment (such as beatings and spankings); 17% frequently used "serious" corporal punishment; 28% of parents rarely resorted to disciplinary sanctions and "as far as possible" did not use corporal punishment.
Italy	2004	69% acceptable for parents to smack their children (7% always acceptable and 62% in some circumstances).	25% unacceptable in any circumstances	2001	Incidence of severe violence was 8%
Korea				2001	45% or parents reported that they had hit, kicked or beaten their children.
Mexico				2003	55% of mothers and 29% of fathers reported using physical discipline
New Zealand	2001	80% of parents believed smacking with an open hand should be legally permissible		2004	51% of parents reported using physical discipline, 45% smacking on the bottom
Poland	2001	54% considered beating children with a belt acceptable, and 77% acceptable to shout at and threaten children.			
Portugal	2004	83% acceptable for parents to smack their children (16% always acceptable and 67% in some circumstances).	13% unacceptable in any circumstances		
Romania				2000	47% of parents admitted using corporal punishment; 16% beating their children with an object
Slovak Rep	2002	98.6% agree with a "smack on the buttock from time to time", 75.3% believed that parents should be allowed to use "occasional slaps"			
Spain	2004	26% necessary to smack children to impose discipline; 59% stated it may be sometimes necessary to smack a child			
Switzerland				2004	Estimates show that 13,000 children under 30 months of age had been slapped; nearly 18,000 had been pulled by the hair and about 1,700 hit with objects.
UK	2003	10% always acceptable to smack a child 50% acceptable in some circumstances	40% never acceptable to smack a child	1998-2001	58% of parents use minor physical punishment (slapping and smacking) during the past year. 9% used severe physical punishment in the last year.
US	2002	65% approved of spanking children			

출처: OECD(2023). Table PF1.9.A 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45) https://www.oecd.org/els/family/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표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체벌에 대한 인식을 보고한 나라들은 신체적 처벌에 대한 태도를 "수용가능(acceptable)", "수용불가능/절대 수용불가능(unacceptable/never acceptable)"의 비율로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고 가능하다. 2018년도에 수행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층화 표본설계와 가중치 조정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가구의 대표성을 확보한 조사로, 0-17세 아동 부모 4,039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본 조사에서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인식은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의 4점 척도로 측정했다(류정희 외, 2018:292). 해당 문항을 통해 신체적 처벌(체벌)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에 대한 태도를 판별할 수 있으며, 그 비율 제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아동부모의 39.3%(필요하다 37.8%, 꼭 필요하다 1.5%)는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는데, 이는 자녀 훈육 방법으로서 15%의 부모가 때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훈육 방법이라고 한 사이프러스보다 약 2배 이상 높고, 25%의 부모가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 신체적 훈육이 수용 가능하다고 한 핀란드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77%의 부모가 아동 때리는 것 수용 가능), 에스토니아(41%의 부모가 신체적 체벌 사용지지) 등의 국가보다 낮고, 특히, 80%의 부모가 손으로 아동을 때리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뉴질랜드, 83%의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포르투갈, 98.6%의 부모가 때때로 자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에 동의한다고 한 슬로바키아의 절반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나 우리나라 부모의 체벌에 대한 수용 수준은 낮은 편으로 분석된다.

체벌 인식에 있어 수용 불가능 비율은 4개 국가에서 보고 하고 있는데 포르투갈과 벨기에, 이탈리아에서 각각 13%, 16%, 25%의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체벌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영국에서는 40%의 부모가 자녀를 절대 때려서는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60.7%(전혀 필요하지 않다 16.2%, 필요하지 않다 44.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6.2%가 신체적 체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여 벨기에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체벌'에 대한 정의는 해당 국가의 문화와 제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4-13〉 Table PF1.9.B.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

	Attitudes towards corporal punishment		
	Year	Acceptable	Unacceptable / Never acceptable
Australia[1]	2006	41% smacking is effective in shaping children's behaviour; 69% agreed sometimes necessary to smack a naughty child	
Belgium	2004	77% acceptable for parents to smack their children (17% always acceptable and 60% in some circumstances)	19% unacceptable in any circumstances
Canada	2004	64% support use of force such as spanking by parents to discipline a child	
Chile			
Cyprus[2,3]	2000	15% smacking is a socially acceptable method of child discipline.	
Denmark			
Estonia	2000	41% support use of corporal punishment	
Finland	2007	25% acceptable physical discipline of children at least in exceptional situations	
Germany			
Italy	2004	69% acceptable for parents to smack their children (7% always acceptable and 62% in some circumstances).	25% unacceptable in any circumstances
Korea	2018	39.3% (꼭)필요하다	60.7% (전혀)필요하지 않다
Mexico			
New Zealand	2001	80% of parents believed smacking with an open hand should be legally permissible	
Poland	2001	54% considered beating children with a belt acceptable, and 77% acceptable to shout at and threaten children.	
Portugal	2004	83% acceptable for parents to smack their children (16% always acceptable and 67% in some circumstances).	13% unacceptable in any circumstances
Romania			
Slovak Rep	2002	98.6% agree with a "smack on the buttock from time to time", 75.3% believed that parents should be allowed to use "occasional slaps"	
Spain	2004	26% necessary to smack children to impose discipline; 59% stated it may be sometimes necessary to smack a child	
Switzerland			
UK	2003	10% always acceptable to smack a child 50% acceptable in some circumstances	40% never acceptable to smack a child
US	2002	65% approved of spanking children	

출처: OECD(2023). Table PF1.9.A 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 중 Attitudes towards corporal punishment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요약하면, 부모의 체벌에 대한 태도는 체벌에 부모의 수용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우리나라 아동부모의 39.3%(필요하다 37.8%, 꼭 필요하다

1.5%)는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60.7%(전혀 필요하지 않다 16.2%, 필요하지 않다 44.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벌에 대한 수용성이 타 국가들과 비교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 Table PF1.9.B. 아동체벌규제(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누락)

아동체벌규제는 아동체벌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그 법이 특정 아동학대의 유형까지 고려하여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이다.[46] 본 지표에 대한 OECD 국가의 보고 현황은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체벌 금지 법률의 존재 여부 및 도입 년도(year of introduction)는 누락되었으나,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1년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함으로써 체벌금지국가로 전환하여 보고가 가능하다(김은지 외, 2023:128).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은 아동체벌 금지와 관련하여 특정 법률이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1: specific legislation), 체코, 아일랜드, 폴란드는 아동에 대한 학대를 제한하는 법률이지만 학대의 형태는 명시하지 않는 비특정 법률을 가진 나라도 분류된다(2: non-specific legislation). 우리나라는 호주,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일본, 멕시코,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기, 영국, 미국과 함께 아동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나라로 분류되었다(0: no explicit provisions for children or unknown).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아동체벌을 규제하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31조 8항).”라고 명시하여 학교 내 체벌을 금지했다(김은지 외, 2023:127).[47] 둘째, 「아동복지법 제 3조의 7」이 “아동학대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48]으로 아동학대의 형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김은지 외, 2023:127). 셋째, 2021년 1월 8일 민법상 징계권 조항(구 제 915조),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체벌금지를 명확히하고, 우리나라는 체벌금지국가로 변화를 공식화하였다(김은지 외, 2023:128).[49]

---

46) https://web-archive.oecd.org/2013-12-19/261226-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검색일: 2024.6.18.).
47)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15(검색일: 2024.6.18.).
48)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9252657&chrClsCd=010202&ancYnChk=(검색일: 2024.6.18.).

한편,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었을 뿐,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것과는 엄격히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아동 체벌금지 규정은 명시적으로 학교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 1997년 헌법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지한 폴란드와 같이 비특정 법률(2: non-specific legislation)을 가진 나라로 분류[50]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19]).

〈표 4-14〉 Table PF1.9.B. 아동 체벌 규제(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Country	Type of legislation	Year of introduction	Country	Type of legislation	Year of introduction
Australia[1]	0	-	Korea	2	2011
Austria	1	1989	Luxembourg	1	2008
Belgium	0	-	Mexico	0	-
Canada[2]	1	2004	Netherlands	1	2007
Chile	0	-	New Zealand	1	2007
Czech Republic	2	-	Norway	1	1987
Denmark	1	1997	Poland[4]	2	-
Estonia	0	-	Portugal	1	2007
Finland	1	1983	Slovak Rep	0	-
France	0	-	Slovenia	0	-
Germany	1	2000	Spain	1	2007
Greece	1	2006	Sweden	1	1979
Hungary	1	2004	Switzerland	0	-
Iceland	1	2003	Turkey	0	-
Ireland	2	-	United Kingdom	0	-
Italy [3]	1	1996	United States	0	-
Japan	0	-			

출처: OECD(2023). Table PF1.9.B: 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 아동복지법 제3조의 7, 민법상 징계권 조항(구 제915조)에 기초하여 작성함.

아동 체벌 규제에 대해 요약하면, 아동체벌규제는 아동체벌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그 법이 특정 아동학대의 유형까지 고려하여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49)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3543(검색일: 2024.6.18.).
50) https://web-archive.oecd.org/2013-12-19/261226-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검색일: 2024.6.18.).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정의, 2021년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를 기반으로 타 국가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었을 뿐,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것과는 엄격히 차이가 있어 1997년 헌법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지한 폴란드와 같이 비특정 법률(2: non-specific legislation)을 가진 나라로 분류[51]하였다.

5) Chart PF1.9.C.보호아동비율(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 (누락)

보호아동비율(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은 공공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로서, OECD국가들은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조사(Health Behaviour in School- aged Children, HBSC, 2010)에 기반하여 11, 13, 15세 아동 중 위탁가정(foster homes)이나 시설(child homes)에서 공공의 보호를 받고있는 비율을 보고하고 있다.[52] 우리나라는 HBSC 조사 참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아동비율이 보고되어 있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는 아동복지시설 현황, 공동생활가정 현황,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을 통해 보호아동 수에 대한 행정통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 가능한 누락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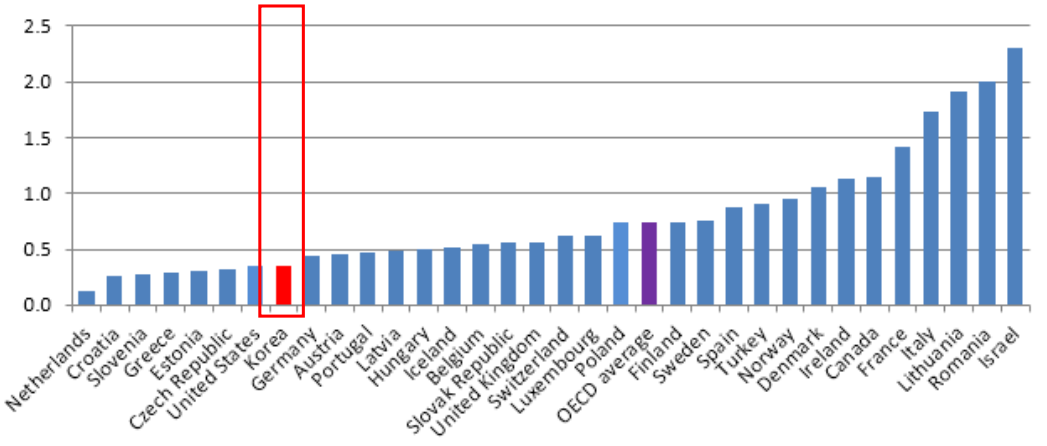
한편, HBSC조사가 취학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아동 수를 과소 추정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53] 전체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연령 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은지 외, 2023:12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아동 연령(18세 미만[54])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아동 비율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아동(0-17세) 인구는 10,156,455명이고[55], 2010년 12월 기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아동은 총 35,605명(가정위탁 보호아동 16,359명, 아동양육시설 17,119명, 공동생활가정 2,127명)이다.[56] 즉, 2010년도의 우리나라 보호아동 비율은 0.35%로 산출된다.

OECD 전체 평균적으로 약 0.74%의 아동이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국가 보호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2.3%), 루마니아(2.0%), 리투아니아(1.9%), 이탈리아(1.74%), 프랑스(1.4%)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네덜란드(0.13%), 크로아티아(0.26%), 그리스(0.28%), 슬로베니아(0.28%) 등이 0.3% 미만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에스토니아, 체코, 미국과 같이 0.3% 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33개 국가 중, 8번째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공공의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은 각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데, 본 연구

51) https://web-archive.oecd.org/2013-12-19/261226-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검색일: 2024.6.18.).
52) https://www.oecd.org/els/family/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53) https://www.oecd.org/els/family/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54)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검색일: 2024.6.18.).
55) https://jumin.mois.go.kr/etcStatChYouth.do(검색일: 2024.6.18.).
56)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에서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가정외 보호체계 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쉼터 아동청소년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는 0.35%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HBSC 조사 결과 기반 보호아동 비율을 보고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치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순위가 될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17] Chart PF1.9.C. 보호아동비율
Chart PF1.9.C.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



출처: OECD(2023). Chart PF1.9.C.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 자료는 행정동별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과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11)에 기초하여 산출함.

요컨대, 보호아동비율은 공공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 중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동보호비율을 보고하고 있는 33개 국가 중 8번째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 요약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의 2차연도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F1.1 공적 가족급여 지출은 1차연도에서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되었는데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녀장려금과 같은 조세지출 등 개별급여의 분류체계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차연도 전문가회의를 통해 과거 지표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또 OECD의 일반적 기준에 맞춰 통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분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공적 가족급여지출의 하위지표 4개 모두 적절지표로 재분류되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3%를 가족·아동정책을 위해 지출한다. 한국은 GDP대비 1.6%로 39개국중 34번째로 공적 지출수준이 낮다. 또 OECD 대부분 국가에서 공적 가족급여 지출에서 현금급여의 비중이 높지만 한국은 현물급여의 비중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보편적 보육서비스가 발달한 반면 아동수당 등의 현금급여 제도가 연령제한 등을 통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PF1.2 공교육지출은 1차연도에서 두 개의 세부 지표 모두 적절지표로 분류되었고 2차연도 검토 결과 역시 동일했다. PF1.2.A 교육단계별 재원별 공교육지출은 한 국가의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GDP 대비 5.1%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5.1%로 평균수준이다. 재원별로 정부재원은 GDP대비 4.0%로 OECD 평균 4.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민간재원은 1.1%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교육단계에서 초중등교육단계에서 정부재원 비율은 GDP대비 3.3%로 OECD 평균과 유사하지만,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정부재원비율이 0.7%로 낮아져 OECD 평균(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F1.2.B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개별 학생에게 투자된 교육재원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2020년 OECD 평균은 연간 $12,647(PPP조정) 수준으로, 한국은 학생 1인당 $14,113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초중등교육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한국 $12,225, OECD $18,105).

PF1.3 가족현금급여 지표는 4개의 세부지표 모두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되었다. PF1.3.A 가족특성별 급여지표(9세, 12세 두 자녀가족)에서 한국의 급여수준은 0이다. 한부모가구는 저소득층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OECD 비교기준인 근로자중위소득(P50) 수준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어 급여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PF1.3.B (막내)자녀 연령별 가족현금급여 지표는 2022년 OECD 국가 평균 유아가구(3세, 6세) 5.9%, 초등자녀가구(9세, 12세) 5%, 중등자녀가구(15세, 18세) 4%로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현금급여 지원이 약간 감소함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현금급여 대상이 미취학아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9.5%, 0%, 0%이다. PF1.3.C 자녀수별 현금급여 수준은 OECD국가 평균 한 자녀(6세)일 때 AW 소득의 2.1%, 두 자녀(6세, 9세) 5.0%, 세 자녀(6세, 9세, 12세) 10.1%, 네 자녀(6세, 9세, 12세, 15세) 15.4%로 증가한다. 한국은 다자녀에 대한 차등급여가 없고 8세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동일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녀수에 상관없이 모두 소득대체율은 AW소득의 4.6%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가족 현금급여는 미취학 자녀로 상정한 한 자녀일 때는 OECD 수준보다 높지만 취학이상 연령 아동이 추가된 두 자녀 이상 가구부터 OECD 평균보다 지원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PF1.4 조세-복지급여체계의 형평성 지표의 2개 세부지표 모두 적절지표로 분류되었다. 가구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 지표는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과 마찬가지로 분류체계의 검토

결과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적절지표로 재분류되었다. 2014년 기준 OECD국가들은 대체로 고소득보다는 저소득가구에 유리하게, 또 동일소득의 경우 홑벌이보다 맞벌이에게 유리하도록 조세 및 급여체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조세 및 급여체계의 효과가 적고 홑벌이보다는 맞벌이가구가 가장 유리한 스웨덴 다음으로 맞벌이가구가 유리하도록 조세-급여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PF1.4.B. 2차소득자 참여세율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조세와 복지혜택의 변동으로 인한 소득변화를 지표화한 것이다. 2014년 기준 북유럽 국가들에서 참여세율이 높으며 한국은 참여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수준 변동에 따른 조세나 복지급여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참여세율로 인한 페널티는 크지 않다.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제도 주요 특징 지표는 2010년대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 수정한 값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양육비 수준을 결정할 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책임은 주로 법원에 있으나 양육비확보기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와 같은 '이행확보 지원기구 보완형'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부모가족추이(Table PF1.5.B) 및 자녀양육비 수준(Table PF1.5.C) 지표는 1차연도에는 누락으로 분류하고 2차연도 지표생산을 검토하였으나 OECD 현행 지표의 기준년도가 2004년 이전으로 상당히 오래되어 정책지표로서 시의성 및 비교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표생산 불필요 지표로 재분류하였다. 향후 해당 지표의 업데이트 여부에 따라 지표생산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PF1.6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 지표는 4개의 세부지표 모두 1차연도에 적절 지표로 분류되었고 2차연도 검토결과 역시 동일했다. 0-17세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총액에서 초기아동기(0-5세) 중기아동기(6-11세) 후기아동기(12-17세) 아동에 대한 지출구성비를 비교했을 때, 2019년 OECD 평균은 28:35:37로 일반적으로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적 사회지출도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되며 한국 역시 29:33:38로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1인당 초기아동기 공적 지출에서 한국은 $70,360(PPP조정)으로 OECD 35개국중 12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에 비해 보육지출의 비중이 높지만 현금 및 조세혜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1인당 중기아동기 공적 지출의 대부분은 교육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은 1인당 $81,830로 OECD 35개국중 15위 수준이며 지출의 92%($75,290)가 교육영역에 편재되어 있다. 후기아동기 역시 1인당 공적 지출의 많은 부분을 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다. 후기아동기 1인당 공적 지출은 $92,620로 OECD 35개국중 14위 수준이며, 이중 교육비가 93%로 높다.

PF1.7 세대간 연대 지표는 1차연도 검토결과 누락으로 분류되었고, 2차연도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를 생산하였다. 세대간 연대 지표는 1인당 평균소비총액 대비 연령

집단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스웨덴, 핀란드과 같은 국가에서는 1인당 소비총액에서 순공적이전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고 순민간이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은 아동기의 1인당 소비총액 대비 순공적이전의 비중은 분석대상 9개국의 평균 수준이지만 노인에 대한 순공적이전의 비중은 멕시코 미국 등과 더불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지표는 OECD 통계가 지표 비교시점에서 통일성도 낮고 지표값이 제시된 국가도 9개국에 불과하며 최신통계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지표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PF1.8 성년연령 지표는 성년연령, 형사책임연령, 최소혼인연령, 의무교육종료연령, 최소근로연령, 음주 최소연령, 주류구매 최소연령,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 등 8개 하위 연령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적절지표로 분류되었다. 성년연령은 많은 국가들에서 18세로 규정되는데, 아태지역의 일본, 뉴질랜드가 20세, 한국이 19세로 성년연령이 높다. 형사책임연령은 14-15세로 정한 국가들이 많고 한국도 14세이다. 10세부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나라로 영국(스코틀랜드 제외),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이 있다. 최소혼인연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와 동일하며 18세가 가장 많다. 한국은 2006년까지 혼인적령이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차이가 있었지만 2007년 개정을 통해 남녀 모두 18세가 되었다. 주류소비 및 구매 최소연령 지표는 성년연령인 18세로 규정한 국가가 많다. 한국은 연나이 19세부터 주류소비 및 구매가 가능하다. 성행위 최소연령은 법률이 규정하는 타인과 합의하에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이다. OECD국가에서 최소연령은 14-16세인데 우리나라는 13세로 OECD 국가중 가장 빠르다. 단, 미성년자 의제 강간규정에 의해 성행위의 협의가 있더라도 19세이상인 경우 16세가, 19세미만인 경우 13세 규정이 적용된다.

PF1.9 아동보호 특성 지표는 의도적·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 및 규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상해에 의한 아동사망률 두 개 지표는 적절히 보고된 지표로 분류되었다. 이 지표에 따라 한국의 경향을 살펴보면, 한국은 의도적 아동 상해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이 사망률 수치는 1970년대 이후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상반된다. 우발적 상해 아동 사망률은 OECD 중간 수준이나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우발적 상해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동체벌과 관련된 3개의 지표는 모두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아동부모의 39.3%(필요하다 37.8%, 꼭 필요하다 1.5%)는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60.7%(전혀 필요하지 않다 16.2%, 필요하지 않다 44.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벌에 대한 수용성이 타 국가들과 비교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체벌'에 대한 정의는 해당 국가의 문화와 제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체벌규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정의, 2021년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를 기반으로 타 국가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었을 뿐,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것과는 엄격히 차이가 있어 1997년 헌법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지한 폴란드와 같이 비특정 법률(2: non-specific legislation)을 가진 나라로 분류하였다. 보호아동비율은 공공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 중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로 산출한 결과, 33개 국가 중 8번째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가정외 보호체계 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는 0.35%보다 더 많을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2. 자녀관련 휴가

가. PF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이 지표는 OECD 각국에서 부모가 자녀를 출산, 양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충분성, 관대성 수준을 비교한다. 휴가의 종류에는 출산전후휴가(maternity leave), 배우자출산휴가(paternity leave), 육아휴직(parental leave), 양육휴가(home care leave) 등이 있는데 이 휴가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 소득을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지 국가별 제도화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분석대상은 어머니, 아버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유급"(paid) 휴가로서 하위지표는 유급휴가 기간,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여러 휴가기간들의 길이와 소득대체율을 가중합산한 완전소득균등화기간[57]이다. 한국의 자녀관련 휴가 제도에 기반한 지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나누어 출산전후부터 초기양육기까지 부모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급여를 이용자 관점에서 누릴 수 있는 실제 휴가혜택과 비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기간과 급여를 통해 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성평등한 제도적 지원의 수준을 알 수 있다.

57) 완전소득균등화기간(full-rate equivalent weeks: FRE)은 휴가기간(주)X급여액(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대비 %)으로 계산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100% 소득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에 따라 휴가이용자가 느끼는 기간의 효용은 달라진다. 특히 이 인덱스는 휴가기간이 길더라도 급여대체율이 낮거나 급여 상한이 정해져있는 경우 실질 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급여 관대성 비교에 용이하다.

1) Table PF2.1.A.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적절)

먼저,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출산휴가(maternity leave), (아버지에게 할당되지 않은) 육아휴직및 양육휴가(parental leave and home care leave)이며, 아버지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배우자휴가(paternity leave)와 육아휴직및 양육휴가[58]이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의 의미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다르다.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available) 유급휴가는 아버지에게 할당되지 않는 기간은 모두 어머니가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최대기간을 파악한 것이다. 즉 육아휴직이 가족급여로 제공되는 국가들에서는 육아휴직중 공유기간(shareable)이 설정되기도 하는데, 지표에서는 공유기간은 어머니가 사용한다는 전제로 측정되었다. 반면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아버지에게 할당된(reserved), 즉 어머니에게 양도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59] 예를 들어 2022년 스웨덴은 부부가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이중 90일은 어머니가 90일은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할당되어 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최대한)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유기간(shareable) 300일을 포함해 총 390일(55.7주)이며, 아버지가 (할당)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12.7주)이다.[60] 우리나라 2022년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어[61]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지만 한쪽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인 부모만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표 4-15〉에서 보이듯이 2022년 어머니휴가중 유급출산휴가 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그리스로 43주이며, 영국 39주, 슬로바키아 34주 순이며 OECD 평균은 18.5주이다. 그리스, 영국은 출산휴가는 길지만, 육아휴직은 각각 8.7주, 0주로 짧거나 없다. 긴 출산휴가기간이 육아휴직의 기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휴가는 OECD 거의 모든 국가에 도입되어 있지만, 육아휴직은 그렇지 않다. 육아휴직이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와 같은 중남미 국가들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이 있다. 육아휴직의 완전균등화 기간이 긴 국가들은 사회주의 전통을 가진 동구권 국가들이다. 헝가리 85.2주, 에스토니아 67.9주, 슬로바키아 42.5주로 이들 국가의 육아휴직 제도는 매우 높은 수준의 충분성을 보여주고 있다.

---

58) 양육휴가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3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기간(158일)이 종료된 후 사용할 수 있는 "양육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59) 공유기간을 둔 국가 중에는 아빠가 공유기간의 일부를 사용한다면 가족이 "기간보너스"를 받는 조건적 인센티브 제도를 가진 국가들도 있다. 이 "기간 보너스"를 받기 위해 아버지가 사용해야 하는 공유기간도 아버지 휴가에 포함된다.

60) 스웨덴에서 출산휴가는 육아휴직 제도에 통합되어 있는데, OECD는 어머니에게 "할당된" 휴가 90일을 출산휴가기간으로, 나머지 300일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계산하였다.

61) 육아휴직의 권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출산이전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한 종합점수라고 할 수 있는 완전균등화기간이 1년(52주)이 넘어 어머니들이 출산전후 초기 양육기에 소득보장 상태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할 수 있다.

2022년 한국의 출산휴가는 12.9주(90일) 소득대체율 83.7% (2개월동안 통상임금 100%, 3번째달 상한선 200만원) 이다. 자녀관련 휴가제도가 발전된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출산휴가의 기간과 소득대체율은 제도적으로는 스웨덴 수준이다(육아휴직중 어머니 사용기간 90일로 계산) 반면, 한국의 육아휴직은 기간은 길고 소득대체율은 낮은 편이다. 어머니 육아휴직 기간은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에 이어 52주로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서는 100%를 모두 지급하는 OECD 국가가 17개국인데 반해 한국은 급여상한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발전한 스웨덴과 비교하면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스웨덴은 300일이며 소득대체율은 57.2%인데 [62] 한국은 52주(365일) 소득대체율은 44.6%로 기간은 한국이 더 길고 소득대체율은 13%p 낮다. 결과적으로 휴가기간과 소득대체율을 종합한 완전소득균등화기간은 스웨덴이 24.5주, 한국이 23.2주로 유사하다. 다만, 이것은 제도적 수준의 비교이며 실제 사용자수와 사용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적 수준만으로는 육아휴직의 보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요컨대,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 특징 지표는 자녀 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유급 자녀관련 휴가 제도의 관대성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OECD 국가들의 일가정양립정책의 발달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사회주의체제의 전통을 갖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했던 동유럽과 노르딕 국가들에서 휴가의 관대성이 높다. 한국은 유급휴가기간이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3+3 부모육아휴직제[63], 6+6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기간중 일부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제도가 도입되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62) 57.2% 소득대체율은 (소득대체 급여 210일* 77.6%) +(정액급여90일* 일정액급여 180SEK)로 계산했다.

63)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원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6+6부모육아휴직제는 3+3 제도를 확대하여 (생후 18개월까지) 첫6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표 4-15〉 Table PF2.1.A.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Table PF2.1.A.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in weeks, 2022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effectively) reserved for mothers, in weeks, 2022

	Paid maternity leave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Total paid leave available to mothers		
	Length (weeks)	Average payment rate (%)	Full-rate equivalent (weeks)	Length (weeks)	Average payment rate (%)	Full-rate equivalent (weeks)	Length (weeks)	Average payment rate (%)	Full-rate equivalent (weeks)
	(1)	(2)	(3)	(4)	(5)	(6)	(7)=(1)+(4)	(8)	(9)
Australia	12.0	43.1	5.2	6.0	43.1	2.6	18.0	43.1	7.7
Austria	16.0	100.0	16.0	44.0	71.2	31.3	60.0	78.9	47.3
Belgium	15.0	64.7	9.7	17.3	20.3	3.5	32.3	40.9	13.2
Canada	16.0	39.5	6.3	35.0	44.8	15.7	51.0	43.2	22.0
Chile	18.0	100.0	18.0	12.0	100.0	12.0	30.0	100.0	30.0
Colombia	18.0	100.0	18.0	0.0	0.0	0.0	18.0	100.0	18.0
Costa Rica	17.3	100.0	17.3	0.0	0.0	0.0	17.3	100.0	17.3
Czech Republic	28.0	63.7	17.8	40.6	88.2	35.8	68.6	78.2	53.7
Denmark	18.0	50.7	9.1	32.0	50.7	16.2	50.0	50.7	25.4
Estonia	14.3	100.0	14.3	67.9	100.0	67.9	82.1	100.0	82.1
Finland	17.5	74.6	13.1	143.5	18.7	26.8	161.0	24.8	39.9
France	16.0	91.4	14.6	26.0	13.5	3.5	42.0	43.2	18.1
Germany	14.0	100.0	14.0	44.0	65.0	28.6	58.0	73.4	42.6
Greece	43.0	65.1	28.0	8.7	42.2	3.7	51.7	61.3	31.6
Hungary	24.0	100.0	24.0	136.0	62.6	85.2	160.0	68.2	109.2
Iceland	26.0	71.3	18.5	6.0	71.3	4.3	32.0	71.3	22.8
Ireland	26.0	25.7	6.7	5.0	25.7	1.3	31.0	25.7	8.0
Israel	15.0	100.0	15.0	0.0	0.0	0.0	15.0	100.0	15.0
Italy	21.7	80.0	17.4	26.0	30.0	7.8	47.7	52.7	25.2
Japan	14.0	67.0	9.4	44.0	59.9	26.4	58.0	61.6	35.8
Korea	12.9	83.7	10.8	52.0	44.6	23.2	64.9	52.4	34.0
Latvia	16.0	80.0	12.8	78.0	46.3	36.1	94.0	52.0	48.9
Lithuania	18.0	77.6	14.0	44.0	77.6	34.1	62.0	77.6	48.1
Luxembourg	20.0	100.0	20.0	26.0	67.1	17.4	46.0	81.4	37.4
Mexico	12.0	100.0	12.0	0.0	0.0	0.0	12.0	100.0	12.0
Netherlands	16.0	100.0	16.0	0.0	0.0	0.0	16.0	100.0	16.0
New Zealand	26.0	48.9	12.7	0.0	0.0	0.0	26.0	48.9	12.7
Norway	18.0	100.0	18.0	68.0	34.0	23.1	86.0	47.8	41.1
Poland	20.0	100.0	20.0	32.0	67.5	21.6	52.0	80.0	41.6
Portugal	6.0	100.0	6.0	24.1	59.6	14.4	30.1	67.7	20.4
Slovak Republic	34.0	75.0	25.5	130.0	32.7	42.5	164.0	41.5	68.0
Slovenia	15.0	100.0	15.0	37.1	100.0	37.1	52.1	100.0	52.1
Spain	16.0	100.0	16.0	0.0	0.0	0.0	16.0	100.0	16.0
Sweden	12.9	77.6	10.0	42.9	57.2	24.5	55.7	61.9	34.5
Switzerland	14.0	53.9	7.6	0.0	0.0	0.0	14.0	53.9	7.6
Türkiye	16.0	100.0	16.0	0.0	0.0	0.0	16.0	100	16.0
United Kingdom	39.0	29.5	11.5	0.0	0.0	0.0	39.0	29.5	11.5
United States	0.0	0.0	0.0	0.0	0.0	0.0	0.0	0.0	0.0
OECD average	18.5	-	-	32.3	-	-	50.8	-	-
Bulgaria	58.6	90.0	52.7	51.9	44.5	23.1	110.4	68.6	75.8
Croatia	30.0	100.0	30.0	26.0	62.0	16.1	56.0	82.4	46.1
Cyprus	18.0	72.0	13.0	0.0	0.0	0.0	18.0	72.0	13.0
Malta	18.0	86.3	15.5	0.0	0.0	0.0	18.0	86.3	15.5
Romania	18.0	85.0	15.3	90.7	85.0	77.1	108.7	85.0	92.4
EU average	21.1	-	-	43.5	-	-	64.6	-	-

주: 위 표는 유급육아휴직과 유급양육휴가(국가별로 제도 명칭은 상이함)에 관한 것임. 2022년 4월 기준 작성, 유급휴가 자격을 비교함. 전국수준 또는 연방수준의 휴가제도만 비교하였고 지역적 차이 또는 일부 국가에서 지방정부(예를 들어 캐나다의 퀘벡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추가/대안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반영하지 않았음.

출처: OECD(2023). Table PF2.1.A.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in weeks, 2022

2) PF2.1.B.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2022) (적절)

이 지표는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것으로 배우자출산휴가

(paternity leave)와 육아휴직(parental leave and home care leave)중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휴직을 중심으로 산출된다.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또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남성의 초기 양육기 참여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나라로 볼 수 있으며, 육아휴직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방향을 선도해가고 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자녀 출생직후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이다.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이 휴가를 공적으로 지원하지만,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은 배우자출산휴가를 도입하지 않았다.[64] 뉴질랜드와 미국은 배우자출산휴가뿐 아니라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남성의 양육참여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된다. 배우자출산휴가의 OECD 평균은 2.3주이며, 스페인이 16주로 가장 길고, 호주, 콜롬비아,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스위, 영국, 한국 등 2주인 국가들이 다수 있다.

우리나라의 배우자출산휴가는 2주(10일), 소득대체율 100%이며 완전소득균등화기간은 2주이다.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52주, 급여대체율은 44.6%, 완전소득균등화율은 23.2주이다.[65] 소득대체율을 비교했을 때 노르웨이는 100%, 스웨덴 77.6%로 북유럽 국가들이 휴가기간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44.6%)에 머물러 있다.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유급휴가 기간은 54주, 소득대체율은 46.7%, 완전소득균등화기간은 25.2주이다. 배우자출산휴가와 아빠 육아휴직을 합산했을 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기간이 가장 긴 국가이며 제도설계 수준에서 일본 다음으로 후한 아버지 휴가 제도를 갖고 있다.

요컨대, 자녀관련휴가에서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지표는 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남성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의 관대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OECD 국가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평균은 2.3주이며 한국도 2주(10일)로 유사하다. 아버지의 육아휴직의 경우 유급휴직이 도입되지 않은 국가가 많기 때문에 OECD 유급 육아휴직기간 평균은 8.1주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가기간만 본다면 한국과 일본이 가장 긴 52주의 휴가를 제공한다. 소득대체율은 상황이 다르다.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반면, 일본은 61.3%, 한국은 44.6%로 육아휴직이 도입된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득대체율이 낮을 경우 실질 사용율과 사용기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득대체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

64) 일본은 공적 재원의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근로자들은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특별휴가 형태로 2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2019).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A&AST_SEQ=3891&searchType=all&CTS_SEQ=48512&pageIndex=undefined&ETC=1, 검색일 2024.01.15. 우리나라의 배우자출산휴가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며 대기업은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65)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의 권리가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권에 기초해 제도가 형성된 나라들과 달리 어머니, 아버지 각각의 육아휴직의 기간 및 급여대체율이 동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6〉 Table PF2.1.B.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Table PF2.1.B.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effectively) reserved for fathers, in weeks, 2022

	Paid paternity leave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reserved for fathers			Total paid leave reserved for fathers		
	Length (weeks)	Average payment rate (%)	Full-rate equivalent (weeks)	Length (weeks)	Average payment rate (%)	Full-rate equivalent (weeks)	Length (weeks)	Average payment rate (%)	Full-rate equivalent (weeks)
	(1)	(2)	(3)	(4)	(5)	(6)	(7)=(1)+(4)	(8)	(9)
Australia	2.0	43.1	0.9	0.0	0.0	0.0	2.0	43.1	0.9
Austria	4.3	24.4	1.1	8.7	49.0	4.2	13.0	40.8	5.3
Belgium	3.0	70.5	2.1	17.3	20.3	3.5	20.3	27.7	5.6
Canada	0.0	0.0	0.0	5.0	44.8	2.2	5.0	44.8	2.2
Chile	1.0	100.0	1.0	0.0	0.0	0.0	1.0	100.0	1.0
Colombia	2.0	100.0	2.0	0.0	0.0	0.0	2.0	100.0	2.0
Costa Rica	1.6	100.0	1.6	0.0	0.0	0.0	1.6	100.0	1.6
Czech Republic	2.0	94.9	1.9	0.0	0.0	0.0	2.0	94.9	1.9
Denmark	2.0	50.7	1.0	0.0	0.0	0.0	2.0	50.7	1.0
Estonia	4.3	100.0	4.3	0.0	0.0	0.0	4.3	100.0	4.3
Finland	3.0	62.8	1.9	6.0	62.8	3.8	9.0	62.8	5.7
France	5.0	91.4	4.6	26.0	13.5	3.5	31.0	26.1	8.1
Germany	0.0	0.0	0.0	8.7	66.3	5.7	8.7	66.3	5.7
Greece	2.8	100.0	2.8	8.7	42.2	3.7	11.5	56.4	6.5
Hungary	1.0	100.0	1.0	0.0	0.0	0.0	1.0	100.0	1.0
Iceland	0.0	0.0	0.0	20.0	71.3	14.3	20.0	71.3	14.3
Ireland	2.0	25.7	0.5	5.0	25.7	1.3	7.0	25.7	1.8
Israel	0.0	0.0	0.0	0.0	0.0	0.0	0.0	0.0	0.0
Italy	2.0	100.0	2.0	0.0	0.0	0.0	2.0	100.0	2.0
Japan	0.0	0.0	0.0	52.0	61.3	31.9	52.0	61.3	31.9
Korea	2.0	100.0	2.0	52.0	44.6	23.2	54.0	46.7	25.2
Latvia	1.4	80.0	1.1	0.0	0.0	0.0	1.4	80.0	1.1
Lithuania	4.0	77.6	3.1	0.0	0.0	0.0	4.0	77.6	3.1
Luxembourg	2.0	100.0	2.0	26.0	67.1	17.4	28.0	69.5	19.4
Mexico	1.0	100.0	1.0	0.0	0.0	0.0	1.0	100.0	1.0
Netherlands	6.0	79.9	4.8	0.0	0.0	0.0	6.0	79.9	4.8
New Zealand	0.0	0.0	0.0	0.0	0.0	0.0	0.0	0.0	0.0
Norway	0.0	0.0	0.0	15.0	100.0	15.0	15.0	100.0	15.0
Poland	2.0	100.0	2.0	0.0	0.0	0.0	2.0	100.0	2.0
Portugal	5.0	100.0	5.0	17.3	43.6	7.5	22.3	56.3	12.5
Slovak Republic	0.0	0.0	0.0	28.0	75.0	21.0	28.0	75.0	21.0
Slovenia	4.3	100.0	4.3	0.0	0.0	0.0	4.3	100.0	4.3
Spain	16.0	100.0	16.0	0.0	0.0	0.0	16.0	100.0	16.0
Sweden	1.4	58.2	0.8	12.9	77.6	10.0	14.3	75.7	10.8
Switzerland	2.0	53.9	1.1	0.0	0.0	0.0	2.0	53.9	1.1
Türkiye	1.0	100.0	1.0	0.0	0.0	0.0	1.0	100.0	1.0
United Kingdom	2.0	18.5	0.4	0.0	0.0	0.0	2.0	18.5	0.4
United States	0.0	0.0	0.0	0.0	0.0	0.0	0.0	0.0	0.0
OECD average	2.3	-	-	8.1	-	-	10.4	-	-
Bulgaria	2.1	90.0	1.9	0.0	0.0	0.0	2.1	90.0	1.9
Croatia	0.0	0.0	0.0	8.7	62.0	5.4	8.7	62.0	5.4
Cyprus	2.0	72.0	1.4	0.0	0.0	0.0	2.0	72.0	1.4
Malta	0.2	100.0	0.2	0.0	0.0	0.0	0.2	100.0	0.2
Romania	1.0	100.0	1.0	4.3	85.0	3.7	5.3	87.8	4.7
EU average	2.9	-	-	5.6	-	-	8.5	-	-

주: 위 표는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서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아빠쿼터"와 육아휴직 공유기간 중 "보너스 주"를 획득하기 위해 아버지가 사용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자세한 내용은 〈표 4-15〉를 참고하시오.

출처: OECD(2023). Table PF2.1.B.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

3) Chart PF2.1.D.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Reserved and shareable paid family leave entitlements, 2022) (적절)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 지표는 자녀관련 휴가중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할당된(reserved) 기간과 두 사람 중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공유(shareable)기간의 길이에 관한 것이다. 사용된 자료는 각국의 유급육아휴직 기간의 제도적 규정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어머니 52주, 아버지 52주로 적절히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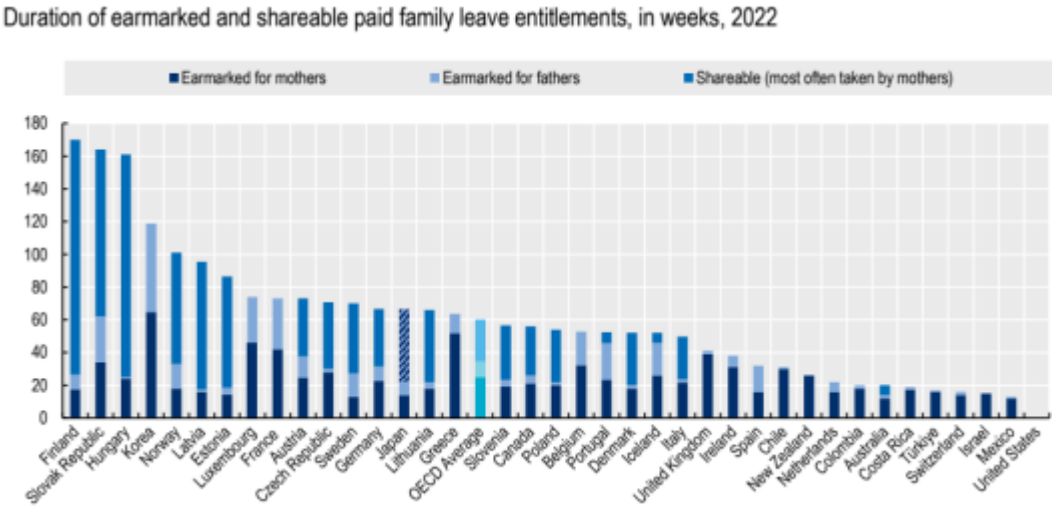
현재 OECD 국가의 육아휴직의 수급권은 부모권(parental entitlement)인 국가도 있고 이거 부모 각자의 개인권(individual entitlement)으로 설계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후자의 경우 휴가가 개인에게 "할당"(reserved)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기간은 없거나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육아휴직이 부모권일 경우 여성의 휴직기간이 길고 초기양육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때문에 수급자격이 부모권 형태를 취하는 나라들에서는 남성에게 기간 할당을 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OECD 39개국중 20개국은 공유기간을 두고 있으며, 19개국은 공유기간이 없다.

OECD 국가중 어머니 할당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한국으로 64.9주(출산휴가 포함), 일본 58주, 룩셈부르크 46주이다. 어머니 할당이 짧은 나라들은 네덜란드 16주, 스위스 14주, 멕시코 12주 등과 같이 육아휴직제도가 없고 출산휴가만 있는 국가들이며, 미국은 유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연방수준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아버지 할당 역시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이 보장된 한국이 54주로 가장 길고 일본 52주, 프랑스 31주순이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미국은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 없어 0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공유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핀란드 143.5주, 헝가리 136주. 슬로바키아 102주 순이며 이 국가들은 부부 합산 총 유급휴가기간이 3년이 넘는다. 수급자격이 개인에 기반한 한국,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은 공유기간이 없다.

요컨대,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 지표는 자녀관련 유급휴가 "기간"과 관련하여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할당된 기간과 부모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보여준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통합되어 있는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나 수급자격을 부모권의 형태로 실시하는 나라들에서는 부모 공유기간이 긴 특징이 있으며 개인기반으로 도입된 국가에서는 공유기간이 없는 특징이 있다.

OECD국가중 어머니 할당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근로자의 개인권에 기반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64.9주), 일본(58주)이며, 아버지 할당 역시 육아휴직 기간이 긴 한국(54주)과 일본(52주)이 가장 긴 휴가를 (제도적으로) 제공한다. 양국 모두 공유기간은 없다.

[그림 4-18] Chart PF2.1.D.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
Chart PF2.1.D. Reserved and shareable paid family leave entitlements



주: 2022년 4월 현재 출산전후휴가, 배우자휴가, 양육휴직과 같이 영유아 돌봄에 필요한 유급 자녀휴가의 권리수준을 보여줌. "어머니 할당(Earmarked for mothers)" "아버지 할당"으로 명명된 기간은 자녀가 있는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고용보장휴가 제도에서 부모간 이전불가능한 개별 수급기간이다. 이는 "엄마쿼터" "아빠쿼터"처럼 한쪽 부모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부모에게 이전할 수 없는 휴가기간을 의미하며, 육아휴직 "보너스" 기간을 얻기 위해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공유기간(중 일부)을 포함한다. 공유휴가기간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일본의 공유기간은 그림에서 빗금처리되어 있다. 일본에서 양쪽 부모에게 보장된 수급권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이용기간 44주를 아버지와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어머니14주, 아버지8주, 동시사용 44주).
자세한 내용은 표 PF2.1.A. and PF2.1.B.의 주석을 참고하시오.
출처: OECD(2023). Chart PF2.1.D. Reserved and shareable paid family leave entitlements

4) Chart PF2.1.E.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적 지출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2019) (적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적 지출 지표는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 등을 총망라한 자녀관련휴가의 국가별 공적 지출 규모를 보여준다. 즉, 일가정양립제도의 주요축을 구성하는 자녀관련 휴가에 각국이 어느 정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단위는 당해연도 출생아 1인당 지출을 미달러 구매력지수(USD PPP)로 환산한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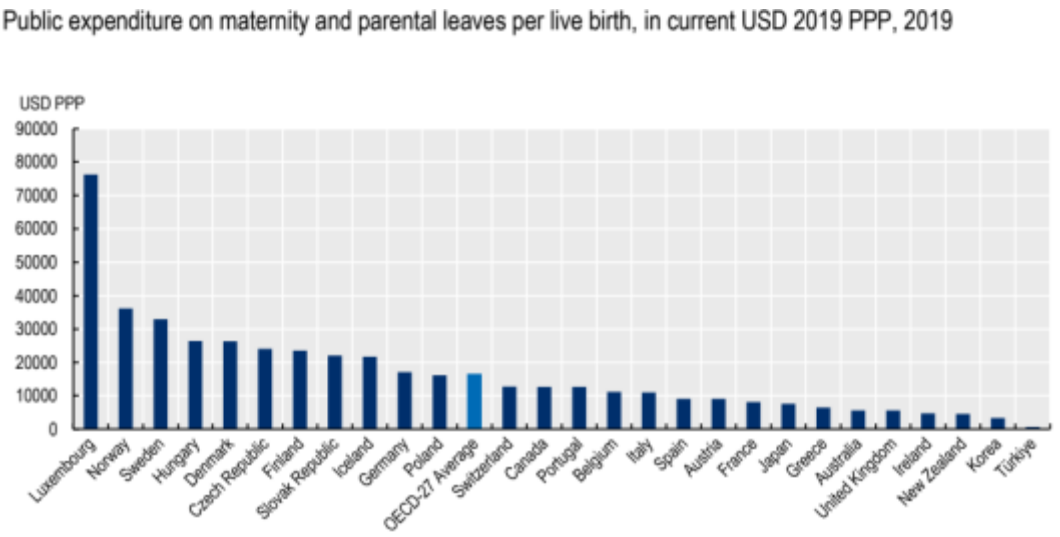
2019년 현재 OECD 국가중 출생아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가장 많은 공적 지출을 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76,334USD PPP이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의 북유럽 국가가 23,000USD~37,000USD PPP수준으로 지출수준이 높다. 동구권 국가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도 북유럽 국가와 비슷하게 높은 지출을 보인다.

한국의 자녀관련휴가 지출은 출생아 1인당 3,301 USD PPP로 낮은 편이다. OECD 27개국 평균(16,579 USD PPP)의 1/5 수준이며 27개국중 26위이다. 출생아 1인당 지출이 낮은 것은 휴가

기간이 짧거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경우, 혹은 이용자수가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휴가 기간은 길고 소득대체율이 낮은 제도적 특징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용자격의 제한으로 인해 커버리지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다음에 이어지는 [그림 4-20]과 [그림 4-21] 지표를 참조할 수 있다.

요컨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적 지출 지표는 자녀관련 휴가에 대한 OECD 국가의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출생아 1인당 지출의 구매력지수로 표현된다. OECD 국가중 룩셈부르크의 공적 지출이 가장 많고, 출산휴가 지출이 높은 동유럽국가와 육아휴직 지출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속해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튀르키예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지출을 보인다. 휴가·휴직에 대한 공적지출 규모는 기간, 이용자수, 소득대체율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간은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휴가 휴직 이용자 수도 적기 때문에 최하위권의 지출수준을 보인다.

[그림 4-19] Chart PF2.1.E. 자녀관련 휴가 공적 지출규모
Chart PF2.1.E.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주: 영국 데이터는 2018년 기준임.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d OECD Health Statistics; OECD(2023). Chart PF2.1.E.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에서 재인용

나.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 현황(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과 관련한 지표는 이용자수 지표와 이용기간 지표로 나누어볼 수 있다. 휴가 이용자수 통계는 총 4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는데 ①공적 유급출산휴가 이용자수 ②공적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 ③공적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 ④공적 유급육아휴직 성별 이용자수이다. ①②③은 출생아 100명당 통계로 생산하고 있으며, ④는 전체 이용자중 남성 또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제시된다. 휴가 이용기간 지표는 남녀의 휴가 사용일 수 및 성비로 제시된다. 한국은 배우자출산휴가를 제외한 자녀관련 휴가에 대해 이용자수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통계가 반영되어 있다. 휴가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고하고 있지 않는데,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용기간 정보가 있으므로 휴가기간을 산출할 수 있다.

1) Chart PF2.2.A.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Users of paid maternity leave, 2021 or latest year available) (적절)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별도로 휴가를 실제 사용한 사람의 규모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지표는 각국의 유급출산휴가 제도의 차이에 의해 비교가능성 이슈가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같은 북유럽국가와 포르투갈은 별도의 출산휴가 제도가 없고 육아휴직 제도에 통합되어 있어 출산전후휴가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체코, 영국, 튀르키예와 같은 국가들은 이용자격이 있는 대다수가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자수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칠레, 덴마크, 스페인의 경우 남성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남성이용자가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통계생산과 관련된 기술적 차이도 있다. 2021년 현재 핀란드,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의 통계치는 100이 넘는데, 분모인 출생아수는 해당년도(2021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용자수는 해당년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해당년도 출산휴가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즉 2020년 12월에 자녀를 출생한 어머니가 2021년 1월에도 출산휴가를 이용하고 있다면 출산휴가 이용자로 2020년과 2021년 중복 집계된다. 휴가제도의 국가별 다양성과 복합성 때문에 OECD는 별도의 조정(harmonization) 없이 개별 국가가 보고한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석을 통해 각국 통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간 비교시 이 점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유급출산휴가는 20세기 초반 모성보호제도로 자리잡기 시작한 이래 공적인 자녀관련 휴가로는 가장 오래된 휴가이며 출산휴가 제도가 별도로 있는 OECD 국가들에서 이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 4-20]에서 보이듯이 2021년 OECD 평균 출생아 100명당 68명의 어머니가 유급 출산휴가를

이용한다. 핀란드,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 등은 100%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66] 2021년 현재 출산휴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국가는 칠레, 한국, 멕시코 등으로 출생아 100명당 어머니의 출산휴가 사용율이 50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출산휴가의 접근성이 낮은 때문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 휴가의 권리를 가진 취업상태의 여성 근로자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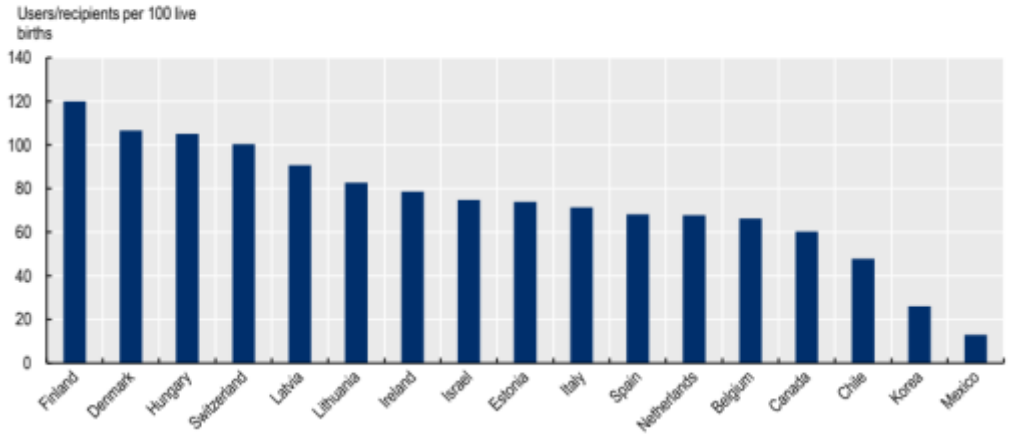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출산휴가 이용 시작일(초회수급)을 기준으로 이용자수를 산출한다. 또 OECD에 보고하는 통계는 고용보험DB의 출산휴가자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되는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교원 등의 이용자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고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출산휴가 이용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데 2020년 출생아 100명당 26.1명, 2021년 27.0명에 불과하다(통계청, 2022).

요컨대, 유급 출산전후 휴가 이용자수 지표는 출산전후 시기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출산전후휴가의 이용률에 관한 것이다. 이 통계는 출생아 100명당 출산전후 휴가 이용자수로 계산된다. 2021년 현재 OECD 국가의 출산전후휴가 평균 이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68명이다. 핀란드,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와 같은 국가는 출생아 100명당 이용자수가 100명을 상회하는데, 이 수치는 중복집계를 허용하는 통계산출 방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접근성이 높고 실업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출산전후 휴가제도가 보편주의적 제도로 정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21년 출산전후휴가 이용률이 26.1명에 불과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출산전후휴가 제도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중심으로 제도적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한다.

66) 우리나라 출산휴가 통계는 초회수급을 기준으로 휴가이용 연도가 1회만 계산되는데 비해 핀란드,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 등은 출산휴가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있다면 두 번 모두 사용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100%가 넘는 숫자가 나타난다. 물론 이들 국가는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이 보편적인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접근성 역시 높은 국가들이다.

[그림 4-20] Chart PF2.2.A.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
Chart PF2.2.A. Users of paid maternity leave

Recipients/users of publicly administered maternity leave benefits or publicly administered paid maternity leave per 100 live births, 2021 or latest year available



주: 데이터는 공적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급출산휴가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주 제공 휴가만 이용하거나 무급휴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남성도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칠레,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데이터에서 남성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더라도 데이터에는 남성과 여성 이용자 모두 포함했다 벨기에의 경우, 통계치는 근로자(자영자포함)와 출산휴가중인 실업자를 포함한다. 캐나다 통계는 퀘벡지역을 제외함. 칠레는 산후 육아휴직급여(permiso postnatal parental)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소수의 남성이 포함되어 있다. 덴마크 데이터에도 남성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의 경우 특별출산수당(special maternity allowance)수급자는 제외했다. 헝가리의 경우 출산수당을 받는 모든 수급자가 포함된다. 멕시코 통계는 Leave Network (see Koslowski et al., 2022)에 기초해서 산출되었다. 네덜란드 데이터는 1세미만 자녀를 둔 15-75세 여성 근로자중 출산후 첫 4주이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을 집계한 것이다. 스페인의 데이터는 스페인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한 것이며 남성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2021년 데이터이며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한국, 리투아니아, 스위스는 2020년 데이터, 벨기에 2019년, 이며 스페인 2018년, 덴마크 2016년, 멕시코 2013년이다.

출처: OECD 측정값은 각국의 정부부처, 통계청, 관련조사(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국가별 담당자가 작성한 OECD 질문지에 기초함.; OECD(2023).Chart PF2.2.A. Users of paid maternity leave에서 재인용

2) Chart PF2.2.B.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Users of paid paternity leave) (누락)

이 지표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남성(아빠)의 수에 관한 것으로 출생아 100명당 이용률로 산출한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일가정양립정책을 구성하는 주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남성의 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배우자출산휴가가 유급화되고 이용자수가 많을수록 초기양육기 남성(아빠)의 돌봄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는 고용보험의 고용행정통계[67]를 이용해 보고가능하기

67) 고용보험 모성보호 지급자현황 통계는 https://eis.work.go.kr/eisps/rpt/reptDtl.do?menuId=030010040 를 참조.

때문에 누락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150).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에서 유급배우자출산휴가 통계는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법정 복지 이용자는 제외하고 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대상자만을 집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통계를 이용해 보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68] 그러나 실제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는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급 배우자출산휴가자 전체에 관한 통계는 아니다. 고용보험 통계를 이용하여 지표를 보고하되 우리 제도의 특성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주석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중 절반정도의 국가가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도입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비해 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다. 2021년 현재 OECD 18개국 평균 이용자수는 당해 출생아100명당 57명으로 57%이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이나와 같은 국가는 90%를 넘어서는 등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호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유급휴가 이용률이 31%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2021년 고용보험통계를 이용한 한국의 배우자출산휴가 초회수급자[69]는 18,275명, 해당년도 출생아수는 260,562명이므로 초회수급자기준 이용률 값은 7.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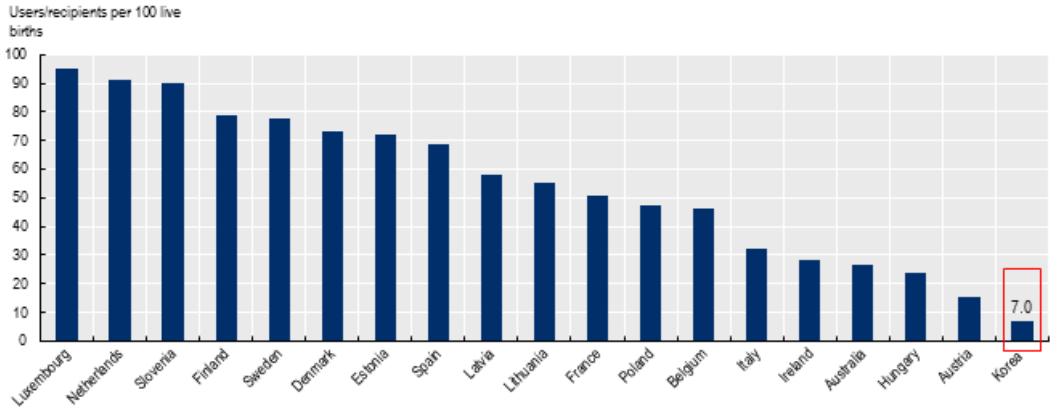
68) 2019년 10월1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10일중 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69) 고용보험은 순지급자수와 초회수급자 통계를 별도로 산출한다. 순지급자수는 해당년에 급여를 받은 지급자수로 동일인이 해당년에 여러번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중복사례를 제거후 집계한 수치이다. 초회수급자수는 지급일자 기준 해당년도 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은 인원수를 의미한다. 2021년 배우자출산휴가 초회수급자 18,275명, 순지급자수는 18,272명으로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분할사용이 가능하지만 둘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초회수급자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 등의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초회수급자 기준으로 통일하여 발표 가능할 것이다.

[그림 4-21] Chart PF2.2.B.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

Chart PF2.2.B. Users of paid paternity leave

(단위: 출생아 100명당 이용자수, 2021년 또는 최근 년도)



Note: 데이터는 공적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급출산휴가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주 제공 휴가만 이용하거나 무급휴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남성도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칠레,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데이터에서 남성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더라도 데이터에는 남성과 여성 이용자 모두 포함했다 벨기에의 경우, 통계치는 근로자(자영자포함)와 출산휴가중인 실업자를 포함한다. 캐나다 통계는 퀘벡지역을 제외함. 칠레는 산후 육아휴직급여(permiso postnatal parental)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소수의 남성이 포함되어 있다. 덴마크 데이터에도 남성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의 경우 특별출산수당(special maternity allowance)수급자는 제외했다. 헝가리의 경우 출산수당을 받는 모든 수급자가 포함된다. 멕시코 통계는 Leave Network (see Koslowski et al., 2022)에 기초해서 산출되었다. 네덜란드 데이터는 1세미만 자녀를 둔 15-75세 여성근로자중 출산후 첫 4주이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을 집계한 것이다. 스페인의 데이터는 스페인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한 것이며 남성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2021년 데이터이며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한국, 리투아니아, 스위스는 2020년 데이터, 벨기에 2019년, 이며 스페인 2018년, 덴마크 2016년, 멕시코 2013년이다.

출처: OECD 측정값은 각국의 정부부처, 통계청, 관련조사(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국가별 담당자가 작성한 OECD 질문지에 기초함.; OECD(2023). Chart PF2.2.B. Users of paid paternity leave에서 재인용

※ 한국은 고용노동부(2021) 고용보험통계를 바탕으로 산출,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 재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을 집계한 값임

요컨대,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 지표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지표이지만 한국의 경우 고용보험 통계가 있음에도 지표값이 보고되지 않아 누락지표로 분류되었다. 유급 배우자출산휴가자 수는 고용행정통계에 월별, 분기별, 년도별 자료가 공표되고 있다. 배우자출산휴가 통계는 고용보험 급여 대상자, 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교직원, 대기업노동자가 제외된 것이다. OECD 는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국한해 지표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행정통계를 통한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주석에 우리나라 통계의 통계원과 대상을 표기하고 (“한국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 재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만을 포함했다) 전체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와 다르므로 지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3) Chart PF2.2.C.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Users of paid parental leave, 2021 or latest year available) (적절)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수급자)이며 성별 통계로 생산된다. 이 지표는 육아휴직의 실제 이용자 규모(커버리지)를 통해 제도의 실제 이용가능성(availa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육아휴직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등인데 이 국가들 모두 출생아 100명당 여성 수급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다. 이는 출산전후 휴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수 통계생산 방식이 해당연도 육아휴직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며 또 육아휴직 제도의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이들 국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동일선상에서 비교의 어려움이 있다.

[그림 4-25] 유급 육아휴직 남녀 이용자수에서 보이듯이 OECD국가중 남녀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웨덴이다. 2021년 출생아 100명당 여성 409명, 남성 349명이다. 뒤를 이은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역시 남녀 고루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에스토니아 여성 194.7명, 남성 106.8명, 노르웨이 여성 140.7명, 남성 106.8명 수준을 보였다. 체코는 여성의 숫자는 261.4명으로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남성은 4.7명에 불과해 남녀 사용자 수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 역시 여성은 124.9명이지만 남성은 4.6명에 불과했다. 아일랜드는 유급휴가기간이 짧기 때문에 남녀 이용자수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여성 3.6명, 남성 1.4명이다. 이용자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53.3%로 여성 휴가이용자보다 더 많고, 스웨덴이 46.0%, 아이슬란드(45.2%) 덴마크(44.9%)순으로 남성비중이 높다. 20% 초중반대의 중위권 수준으로 독일 25,3%, 한국 22.7% 이탈리아 21.2% 등이 있으며 일본은 15.3%이며, 폴란드, 호주, 오스트리아에서 남성이용자수는 1%이하로 남성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통계는 통계청의 육아휴직 통계에 기반한 것으로 고용보험DB 뿐아니라 건강보험DB를 결합해 고용보험가입자, 공무원, 교직원 이용자를 포함한 것이다.[70]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는 여성 48.0명, 남성 14.1명이다. 여성이용자 수준으로는 아일랜드(3.6명), 일본(46.4명)에 이어 낮은 국가에 속한다. 남성이용자는 14.1명으로 성평등 육아휴직제도가 발전한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일본보다 높은 이용률 보였다.

최근 한국은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과 남성참여 인센티브 제도등을 통해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를

70) OECD 육아휴직 사용자수 통계의 각주(Note)에 한국 자료는 고용보험 자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출산휴가 통계의 자료원은 고용보험DB이지만, 육아휴직 통계는 고용보험DB, 건강보험 DB 등을 결합한 통계청의 육아휴직 통계로 교체되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그림 4-25] 의 주석에 한국 자료원은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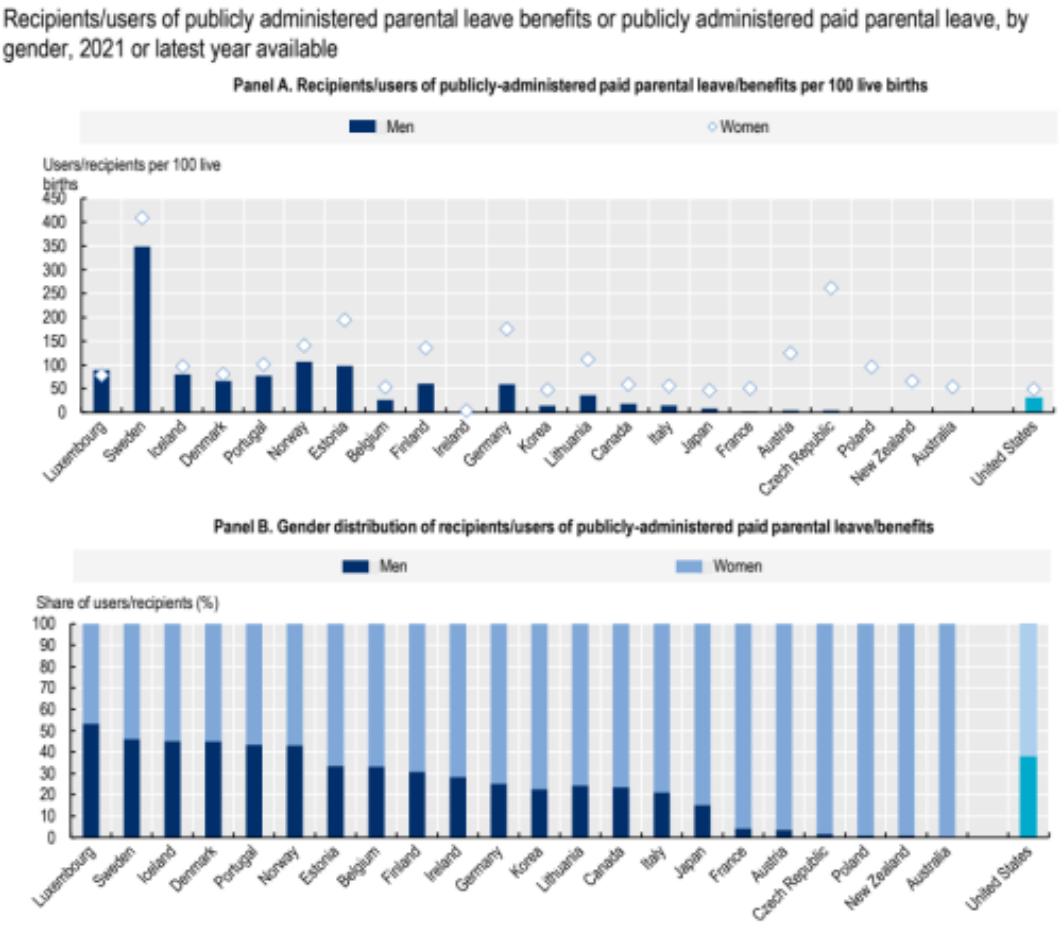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17년 여성 21.9명, 남성3.4명 수준에서 2021년 이용자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2017년 대비 2021년 여성(48명)은 2.2배, 남성(14.1명)은 약 4배이상 증가해 이용률이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집계를 고려하더라도) 북유럽국가들의 높은 사용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71]

요컨대,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이용률을 보여주며 이 통계는 성별 통계로 생산된다.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등인데 이 국가들 모두 여성 수급자의 수가 100을 넘어선다. 이는 출산전후휴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수 통계 집계 방식이 해당연도 육아휴직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동일선상에서 비교의 어려움이 있다.

OECD국가중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웨덴이다. 2021년 출생아 100명당 여성 409명, 남성 349명이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는 여성 48.0명, 남성 14.1명인데, 여성이용자 수준으로는 아일랜드(3.6명), 일본(46.4명)에 이어 하위권 국가에 속하며, 남성이용자수는 북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OECD 국가들에서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위권 수준이다. 남녀 이용자 비중에서 룩셈부르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은 남성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남성이용률은 22.7%(여성 77.3%)에 불과해 이용자 성비에서 여성편중성을 보인다.

71) 미국은 연방법은 없지만 주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출생아 100명당 49.8명의 여성들이 육아휴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 통계에서는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도 포함되어 있는데 따라서 미국 수치는 다른 나라와 수평비교 하기 어렵고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http://www.oecd.org/els/family/PF2-2-Use-childbirth-leave.pdf, 검색일 2024.01.15.

[그림 4-22] Chart PF2.2.C.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
Chart PF2.2.C. Users of paid parental leave)



주: 데이터는 공적 육아휴직 급여 또는 공적 유급 육아휴직의 수급자/이용자 수에 관한 것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가 육아휴직과 구분되는 국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를 제외했음. 자녀관련휴가가 통합되어 있는 국가(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는 통합사용자 수(또는 비율)를 의미함. 한국 자료는 통계청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일본자료는 민간부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 결과이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의 데이터 연도는 2021년이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웨덴은 2020년이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2018년, 호주, 뉴질랜드 2017년, 프랑스 2016년이며 미국은 2006년에서 2020년 5년간 기간평균 값이다.

출처: OECD 측정값은 각국의 정부부처, 통계청, 관련조사(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국가별 담당자가 작성한 OECD 질문지에 기초함.; OECD(2023). Chart PF2.2.C. Users of paid parental leave)에서 재인용

4) Chart PF2.2.D.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중 추이(Trends in men's share of recipients/ users of publicly administered parental leave/benefits, 2021 and 2010)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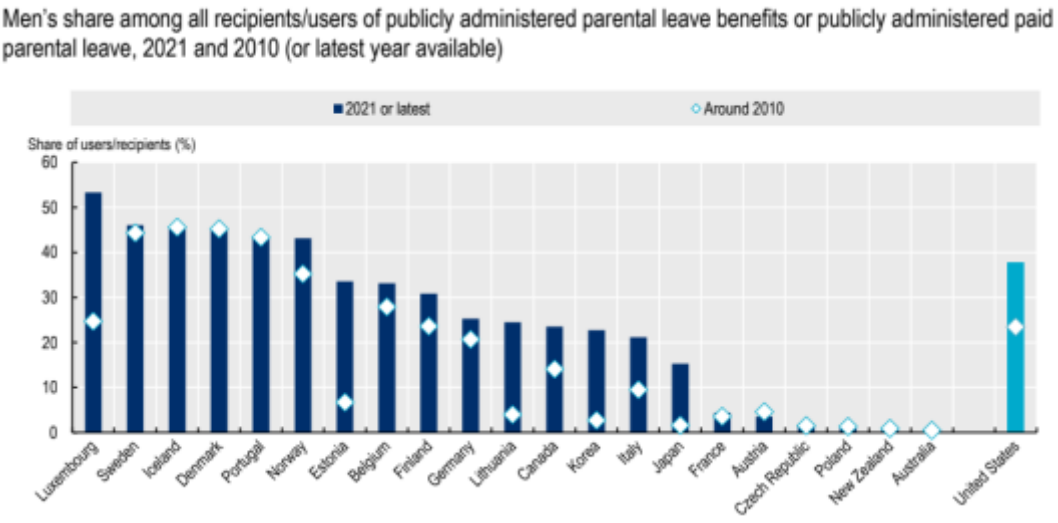
이 지표는 2010년과 2021년 지난 10년여동안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중 남성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한국지표는 성별통계로 제시된 PF2.2.C. 유급육아휴직 이용자수와 동일하며 자료원은 통계층의 〈육아휴직통계〉이다. 2010년과 2021년 모두 성비 통계는 공식자료를 이용해 적절히 보고되었다.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중 지난 10년동안 육아휴직 남성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한국이다. 룩셈부르크는 남성비율이 2010년 24.7%로 스웨덴, 덴마크 등 40%수준의 국가들보다 낮았으나 2021년 53.3%로 여성보다 많아졌다. 2010년 이미 남성사용율이 40% 수준이었던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등은 여전히 큰 변동없이 여전히 40% 중반대 수준의 남성이용률을 보인다. 에스토니아는 2010년 남성이용률이 6.7%에 불과했는데 2021년 33.5%로 크게 증가한 국가이며, 우리나라도 2010년 2.7%에서 22.7%로 20.0%p 증가했다. 프랑스, 체코, 뉴질랜드 등은 남성 이용률이 여전히 5%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폴란드는 지난 10년동안 소폭이긴 하지만 남성이용률이 감소하였다.

요컨대,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중 추이 지표는 2010년에서 2021년 약 10년여동안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지난 10년동안 남성 사용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국가는 룩셈부르크인데 육아휴직 사용자 성별에서 남성이 더 많다. 북유럽 국가들도 2010년 이후 남성 이용자 비율이 남성의 일가정양립제도 참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2.7%에서 2021년 22.7%로 남성의 참여를 늘려가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비율이 룩셈부르크는 50%를 넘어섰고 북유럽 국가들은 50%에 육박하고 있어 한국도 남성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초기 양육기 성평등한 돌봄을 더욱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림 4-23] Chart PF2.2.D.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중 추이

Chart PF2.2.D. Trends in men's share of recipients/users of publicly administered parental leave/benefits



주: Chart PF2.2.B를 참조하시오. 미국데이터는 고용주제공급여임. 호주데이터는 2010년, 벨기에는 2013년, 덴마크 2014년, 폴란드, 포르투갈은 2015년 자료가 2010년 지표로 사용되었음. 미국은 2006년부터 2010년 평균값이 사용됨. 다른 나라는 2010년 자료가 사용됨.

출처: OECD 측정값은 각국의 정부부처, 통계청, 관련조사(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국가별 담당자가 작성한 OECD 질문지에 기초함.; OECD(2023). Chart PF2.2.D. Trends in men's share of recipients/users of publicly administered parental leave/benefit에서 재인용

다. PF2.3 취업 부모 추가휴가(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1) Table PF2.3.A. 법정 및 단협 휴가일수(Statutory and collectively agreed annual leave) (개선필요)

이 지표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와 별도로 취업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일 또는 휴가의 길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법정휴가 및 휴일은 취업부모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일가정양립과 부모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표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비교를 위한 기준 노동자는 민간부문 전일제 1년 근속 노동자이다. 한국 지표는 연차휴가길이, 공휴일 유급규정 등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했다.

연차(annual leave)는 법정 유급연차휴가와 공휴일로 구분된다. 법정 연차휴가는 고용주와 휴가 시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된다. 공휴일은 국가별로 특정 날짜가 정해져 있다. OECD 다수 국가들에서 연차휴가는 연간 최소 20일이 부여되고, 유럽의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면 연간 30-35일정도 연차휴가의 권리가 있다. 법정 연차휴가가 가장 긴 국가는 영국 28일이며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도 2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실시한다. 미국은 연방수준에서 법정최소연차휴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공휴일은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 등에서 짧아 10일 미만이고, 일본, 한국,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공휴일이 길다. 한국은 법정 연차 휴가보다 공휴일이 많은 특징이 있는데 연차휴가(15일)와 공휴일(16일)을 합산하면 31일로 휴가기간이 긴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짧지만 다른 유럽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 4-17〉 PF2.3 취업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휴가 관련 한국의 법령 및 휴가일수

휴가유형	관련법령	휴일(휴가)수
법정 휴가	근로기준법	**15일**(연공에 따라 달라짐)1)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1일**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으로 보장** (2022년 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소) 유급공휴일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주: 김은지 외(2023:139-140) 〈표 Ⅱ-37〉 인용, 법조문을 제외하고 재구성.
출처: 법제처 www.law.go.kr 각 법령 및 시행령

한국은 단협 약정 휴가를 제외하고 법정최소연차휴가와 공휴일을 보고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현재 법정연차휴가 15일, 공휴일 15일로 보고되어 있으며 Table PF2.3.A. 법정휴가 및 단협 휴가일수 주석에는 한국의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으며 공휴일은 무급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을 통해 2020년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을 시작으로 2021년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 2022년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으므로 공휴일이 무급이라는 주석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 기존 지표에는 유급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비교대상 노동자 기준이 민간부문 1년근속 풀타임 노동자이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요컨대, 법정휴가 및 단협 휴가일수 지표는 가족정책적 맥락에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 등 대표적인 자녀관련휴가 이외 일하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일 또는 휴가의 길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OECD 다수 국가들에서 연차휴가는 적어도 연간 20일이 부여되고, 유럽의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면 연간 30-35일정도 연차휴가의 권리가 있다. 한국에 대한 보고사항에서 공휴일 일수, 무급 공휴일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1차연도 검토시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했는데, 공휴일 16일, 공휴일 유급 등으로 수정하였다.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법정

연차휴가가 상대적으로 짧고, 공휴일은 상대적으로 긴 특징이 있다. 총 휴가기간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짧지만 다른 유럽국가들과 유사하다.

〈표 4-18〉 Table PF2.3.A. 법정휴가 및 단협 휴가일수

	연차휴가 (근로일)		공휴일 (b)
	법정최소(a)	단협(평균)	
Australia	20	..	8
Austria	25	..	13
Belgium	20	..	10
Canada	10	..	9
Chile	15	..	15
Czech Republic	20	25	13
Denmark	25	30	11
Estonia	20	..	11
Finland	25	25	11
France	25	..	11
Germany (c)	20	30	10-13
Greece	20	..	11
Hungary (d)	20	..	11
Iceland	24	..	12
Ireland	20	24	9
Israel (e)	12	..	9
Italy	20	25	12
Japan	10	..	19
Korea(Revised)	15	..	16
Latvia	20	..	12
Luxembourg	26	..	11
Mexico	6	..	7
Netherlands	20	25	9
New Zealand	20	..	11
Norway	21	25	10
Poland	20	..	12

	연차휴가 (근로일)		공휴일 (b)
	법정최소(a)	단협(평균)	
Portugal	22	..	12
Slovak Republic	20	25	15
Slovenia	20	..	12
Spain	22	..	14
Sweden	25	25	11
Switzerland (e)	20	..	9
Turkey	12	..	14
United Kingdom	28	..	8
United States (f)	0	..	10
Costa Rica	10	..	11
Bulgaria	20	..	12
Croatia	20	..	13
Cyprus	20	..	14-17
Lithuania	20	..	12
Malta	24	..	14
Romania	20	21	13

주: a. 법정최소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전일제 주5일 상근 민간부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임.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의 길이가 달라지는 국가도 있음(핀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등).
b. 공휴일은 국가 혹은 연방 수준에서 적용됨. 일부 국가에서 공휴일은 지역이나 행정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함.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 등에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실시되지만 프랑스, 몰타 등의 국가에서는 대체휴일 제도가 없음.
c. 독일에서 공휴일은 주(州)별로 실시됨. 유급공휴일 수는 10-13일이며 주별로 다름.
d. 헝가리에서 법정최소연차휴가는 연령에 따라 다르고 45세이상 노동자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가능함. 현재의 지표값은 25세 근로자의 최소휴가기간임.
e. 스위스 연방수준에서 법정 공휴일은 스위스 국가일(8월1일)이 유일함. 캔톤에 따라 최대 8일까지 추가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음.
f. 미국의 공휴일 정보는 연방정부가 연방공휴일로 지정한 날에 관한 것임. 민간부문에서 유급휴가는 고용주의 재량임.
출처: OECD(2023). Table PF2.3.A. Statutory and collectively agreed annual leave에 한국 자료 수정

2) Table PF2.3.B.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Summary of 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 (개선필요)

가족돌봄휴가(휴직) 개요지표는 (PF2.3.B. Summary of 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는 OECD 각국의 가족돌봄 휴가, 휴직제도의 급여내용(Entitlement),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기간(duration), 급여수준(및 조건) (payment (and condition))을 서술하는 지표표이다. OECD 국가들은 일가정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양육

휴가 등 자녀관련 휴가이외에도 근로자들이 가족과 관련하여 돌봄의 필요가 있을 때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가족돌봄을 허용하는 가족의 범위와 자격요건이 불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어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140).

〈표 4-19〉 한국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2024년 1월기준)

	급여내용	자격기준	기간	급여수준(및 조건)
가족돌봄 휴직	(사고, 질병, 노령 관련)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무급휴가**	현재 고용주 계속 근로 6개월이상	연간 90일, 분할사용시 회당 30일이상. (가족권)[72]	무급
가족돌봄 휴가	(사고, 질병, 노령, 자녀양육) 가족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연간 10일, 한부모는 20일. 일단위로 사용가능.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됨.	무급 단체협상에 따라 유급

한국의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2조 2항(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이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 90일이며 분할사용할 수 있으나 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단위로 쪼개 쓸 수 있고 가족돌봄 휴직기간에 합산된다. 돌봄대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다. 가족돌봄휴직의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을 위한 것이며,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에 자녀의 양육이 추가되어 휴가와 휴직의 사유에서 차이가 있다.

OECD 보고에는 돌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가 가족돌봄휴직은 확대가족(a extended family),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가족(a family)으로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고되어 있는데, 돌봄대상 "가족"의 범위는 동일하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의 자격기준은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로 표시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가족돌봄휴가는 공란으로 둘 필요가 있다.

7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본인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휴직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돌봄휴직의 급여자격은 개인이 아닌 가족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고용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표 4-20〉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2022년)

국가	급여내용	이용자격	기간	급여액(및 조건)
호주	직계가족이나 가구원 돌봄 유급휴가	임시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연간 10일	소득 100%
	직계가족이나 가구원 돌봄 무급휴가	모든 근로자	건당 2일	무급
오스트리아	12세미만 자녀돌봄유급휴가		연간 2주	소득 100%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돌봄 유급휴가		연간 1주	소득 100%
	말기질환 가족원이나 중증상태의 자녀에 대한 무급휴가		건당 6개월(9개월까지 연장가능)	무급
벨기에	중증상태의 가족원 또는 8세미만자녀(장애아일 경우 21세까지) 돌봄 유급휴가		건당 12개월(무급시 최대 51일개월)	월 786.78유로(과세대상)
	완화치료가 필요한 가족원 돌봄 유급휴가		건당 2개월	월 786.78유로(과세대상)
	가구원의 질병, 입원 등 “절박한 사유”가 있을 때 무급휴가		연간 10일	무급
캐나다	직계가족원 돌봄 무급휴가 (브리티쉬콜럼비아, 온타리오, 뉴브룬스윅, 퀘벡만)	50인초과 기업 근로자(온타리오만)	연간 3-5일(BC, NB), 10일(퀘벡, 온타리오)	무급
	심각(serious)상태이나 생명이 위험한 것은 아닌 가족원 돌봄 무급휴가		건당 8주	무급
	사망위험이 높은 가족원 돌봄 유급휴가	지난 52주동안 600시간이상 일한 근로자	건당 26주	26주에 대해 소득55% (상한있음)
	중환자(critically ill)인 가족원 돌봄 유급휴가	지난 52주동안 600시간이상 일한 근로자	성인환자일 경우 52주중 15주 아동환자일 경우 52주중 35주	소득 55%(상한있음)
칠레	사망위험의 1-18세 자녀 돌봄 유급휴가	지난 24개월 연금 최소 8회차 보험료납부한 계약관계의 근로자	연간 10일(가족권)	소득 100%
	1세미만 자녀 심각한 건강상태 돌봄 유급휴가		의사진단에 따름	소득 100% 과세상한 UF73.2

국가	급여내용	이용자격	기간	급여액(및 조건)
	장애인 돌봄휴가	장애등록이 된 부양가구원	연간 10일	무급/유급일 수 있으나 추가노동이나 휴일노동을 통해 보충해야함.
체코	10세미만 자녀 또는 중증질환의 가족원 (연령무관) 돌봄 유급휴가		제한없음, 연속 최대 9일. 부모 동시 사용불가함.	소득의 60%(상한있음)
덴마크				
에스토니아	12세미만 자녀 돌봄 유급휴가		건당 달력일 14일 (가족권)	소득의 80%
	14세미만 자녀 돌봄 무급휴가		연간 10일(근로일)	무급
	성인가족돌봄 유급휴가		건당 달력일 7일	소득 80%
	중증장애친척돌봄 유급휴가		연간 5일(근로일)	정액급여
핀란드	10세미만 자녀 돌봄 유급휴가		건당 4일, 제한없이 갱신가능	급여는 단협사항.
	긴급한 가족적 사유 무급휴가			무급, 단협에 따라 유급
프랑스	중증질환, 장애가 있는 20세미만 자녀 돌봄 유급휴가	현재 사용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	이용건당 3년	3년간 최대 310일 유급. 근속기간과 가족구조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16세미만 자녀돌봄 무급휴가		연간 3-5일	무급
	말기질환 가족원 돌봄 유급휴가		3개월(1회갱신)	최대 3주 유급
독일	12세미만 자녀돌봄 유급휴가			소득 80%
	급성질환 가족원 돌봄 유급휴가	법정의료보험에 가입한 일하는 부모	연간 자녀1명당 10일, 부모합산 연간 최대 25일까지.	소득 90%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양가족 돌봄 휴가	15인이상 기업 근로자	6개월	무급, 무이자대출 자격주어짐
	급성질환 가족원 돌봄 무급휴가		건당 10일	무급
그리스	자녀 돌봄 휴가		아동수에 따라 다름. 부모당 2자녀이하 연간 4일, 3자녀 7일, 4자녀 이상 9일, 한부모는 8일.	
	16세미만 자녀 학교방문 유급휴가		16세이하 자녀 1명당 연간 부모당 4일	소득 100%

국가	급여내용	이용자격	기간	급여액(및 조건)
	중증질환자녀(장기이식, 투석, 암질환시) 돌봄 유급휴가		연간 22일	소득 100%
	18세미만 중증질환 자녀 돌봄 무급휴가		연간 30일	무급
	고령가족 돌봄 무급휴가		연간 6일	무급
	장애자녀나 배우자 돌봄 유급휴가		하루 1시간	유급
헝가리	12세미만 자녀돌봄 유급휴가		자녀 연령에 따라 다름. 1세 무제한, 12-35개월 연간 자녀1인당 84일, 36-71개월 42일, 6-12세 14일(가족권) 한부모는 기간 두배.	소득50-60%(상한있음)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가까운 가족 돌봄 유급휴가			
	부양가족돌봄 무급휴가	현재 고용주 계속근로기간 12개월이상 근로자	이용건당 2년	무급, 돌봄휴직자는 자산평가 돌봄급여 신청할 수 있음
이스라엘	6세미만 자녀 돌봄 유급휴가		연간 8일(근로자 본인의 연간 병가에서 차감), 한부모일 경우 연간 16일까지.	2일차부터 소득의 50%, 4일차부터 소득의 100%
	16세미만 악성질환 자녀 돌봄 휴가		연간 90일, 한부모는 100일	2일차부터 소득의 50%, 4일차부터 소득의 100%
	배우자의 임신관련 건강검진 및 치료 동반시 유급휴가		이용건당 7일 (근로자본인의 병가에서 차감)	소득 100%
	특수욕구 자녀 돌봄 유급휴가		연간 19일(가에서 차감), 한부모는 연간 36일까지.	소득 100%
	배우자나 65세초과 부모 돌봄 유급휴가		연간 6일(병가에서 차감)	소득 100%
이탈리아	8세미만 자녀 돌봄 무급휴가		3세미만 자녀 무제한, 3-8세 연간 5일	무급
	중증질환 또는 장애 가족원 돌봄 유급휴가		근로자 1인당 생애근로기간중 2년. 가족구성원이 동시 사용불가	소득 100%(상한있음)

국가	급여내용	이용자격	기간	급여액(및 조건)
일본	6세미만 자녀돌봄 무급휴가			
	2주이상 지속적돌봄이 필요한 중증질환의 부양가족 돌봄 유급휴가		가족원당 평생 93일씩	소득의 67%
한국 (수정)[a]	(사고, 질병, 노령 관련)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무급휴가(확대가족)	현재 고용주 계속 근로 6개월이상	연간 90일, 분할사용시 회당 30일이상. (가족권) [b]	무급
	(사고, 질병, 노령, 자녀양육) 가족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확대가족)		연간 10일, 한부모는 20일. 일단위로 사용가능.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됨.	무급 단체협상에 따라 유급
라트비아	14세미만 자녀돌봄 유급휴가	직전 2년 최소 12개월 사회보험에 기여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재가시 건당 14일, 입원시 건당 21일	소득 80%
룩셈부르크	18세미만 자녀돌봄 유급휴가		자녀 연령에 따라 다름. 4세미만 12일, 4-12세 18일, 13-18세 5일(입원시만). 장애아일 경우 기간 두배.	소득 100%
	18세미만 중증/말기질환 자녀 돌봄 유급휴가		104주내 최대 52주	소득 100%
멕시코				
네덜란드	자녀, 파트너, 부모, 친구, 가구원 질병시 돌봄 유급휴가	모든 근로자가 사용가능,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 고용주 거부가능	연간 10일	소득 70%
	중증질환의 자녀 또는 가족원 돌봄 무급휴가	모든 근로자가 사용가능,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 고용주 거부가능	건당 6주(파트타임, 또는 고용주합의하 전일제)	무급
뉴질랜드	파트너 또는 부양가족 돌봄 유급휴가	현재의 고용주에 최소 26주간 계속근로한 근로자	연간 5일(병가에서 차감)	소득 100%
노르웨이	12세미만 자녀 돌봄 유급휴가		12세미만 자녀수에 따라 다름. 12세미만 자녀 2명이하 자녀당 연간 10일, 3명이상 자녀당 연간 15일. 아이돌보미나 조부모 질병시에도	소득 100%(상한있음)

국가	급여내용	이용자격	기간	급여액(및 조건)
			사용가능. 한부모는 각각 연간 20일과 30일을 보장받음. 자녀가 중증질환시 기간연장가능.	
	파트너나 부모 질환시 돌봄 무급휴가		이용건당 10일	무급
	18세미만 자녀중 질병, 부상, 장애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	직전 4주간 노동시장참여, 국민보험가입자일 것	이용건당 1300일 (5근로년)	소득의 100%, 260일 (1근로년)에 대해 상한있음. 나머지 1040일(4근로년)은 소득의 66%
	말기질환 가족 또는 가까운 관계자 돌봄 유급휴가	직전 4주간 노동시장참여, 국민보험가입자일 것	이용건당 60일	소득100%(상한있음)
폴란드	가족돌봄 유급휴가		연간 14일	소득 80%
	8세미만 자녀, 장애 또는 예외적 상황(학교폐쇄, 일차적 돌봄자의 질환이나 출산)에서 만성질환일시 14세 자녀 돌봄 유급휴가		최대 60일	소득 80%
포르투갈	12세미만 자녀돌봄 유급휴가		연간 30일, 둘째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하루씩 추가(가족권)	소득 65%
	12세이상 자녀돌봄 유급휴가		연간 15일, 둘째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하루씩 추가(가족권)	소득 65%
	만성질환자녀 돌봄 유급휴가		건당 6개월, 4년까지 연장가능(가족권)	소득 65%,상한있음
	직계가족돌봄 무급휴가		연간 15일, 중증질환의 배우자의 경우 30일	무급
슬로바키아	가족돌봄 유급휴가		연간 10일	연간 최대 10일에 대해 소득 55%(상한있음)
슬로베니아	8세미만 자녀돌봄 유급휴가	사회보장보험 가입자	이용건당 15일(가족권)	소득80%
	(동거)가족 돌봄 유급휴가	사회보장보험 가입자	이용건당 7일, 중증질환 가족돌봄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가족권)	소득 80%
스페인	가족돌봄 유급휴가		건당 2일	소득 100%
	8세미만 중증질환 자녀 돌봄 유급휴가	직전 7년간 180일이상 사회보장기여	무제한, 개별권. 부모동시 사용불가	소득100%(상한있음)

국가	급여내용	이용자격	기간	급여액(및 조건)
	중증질환가족돌봄 무급휴가	중대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고용주 거부가능	건당 2년	무급, 특정조건시 돌봄자가 급여를 받기도 함.
스웨덴	12세미만 자녀 또는 특정상황의 5세미만 자녀 돌봄 유급휴가		연간 아동당 120일(가족권). 일상적 돌봄자가 아플 경우 60일 사용가능	소득 77.6%(상한있음)
	중증질환가족원 또는 기타 “가까운 관계인” 돌봄 유급휴가		건당 100일	소득 80%(상한있음)
스위스	자녀 돌봄 유급휴가	현재 사용자와 계속고용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근로자	건당 3일(가족권)	소득 100%
	중증질환 자녀돌봄 무급휴가		첫1년중 3주, 캔톤의 관행이나 단협사항에 따라 다름	첫1년에는 소득100%, 이후 단협사항, 무급.
튀르키예				
영국	부양가족 돌봄 무급휴가		규정없음	무급
미국	특정질환 직계가족원 돌봄 무급휴가	50인이상기업의 근로자, 현재고용주에게 최소 12개월 계속근로하고 직전 12개월동안 1,25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연간 12주	무급
불가리아	아픈 자녀 등 가족원 돌봄(또는전염성 질환으로 건강한 자료를 가정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 유급휴가	의료및출산보험에 18개월이상 기여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60일 달력일(가족권)	소득 80%
크로아티아	18세미만 자녀 돌봄 유급휴가		연령별 다름: 7세미만 자녀는 건당 60일, m 8-18세 자녀 건당 40일(가족권)	연령별로 다름: 3세미만자녀 소득 100%, 3-18세70% (상한있음)
	18세이상 자녀 또는 배우자 중증질환시 돌봄 유급휴가		이용건당 20일까지(가족권)	소득의 70%(상한있음)
	중대한 개인적 사유(가족의 중증질환 포함) 유급휴가		연간 7일	소득의 100%
사이프러스	자녀 또는 부양가족 돌봄 무급휴가		연간 7일	무급

국가	급여내용	이용자격	기간	급여액(및 조건)
리투아니아	14세미만 자녀 돌봄 무급휴가		연간 2주	무급
	가족원 돌봄 무급휴가		규정없음. 의료기관의 권고에 따른 기간	무급
몰타				
루마니아	7세미만 만성질환자녀 또는 18세미만 장애자녀 돌봄 유급휴가		연간 45일	소득의 85%

출처: OECD(2023). Table PF2.3.B: Summary of 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에 한국 자료 수정

a 이 지표에서 각국의 돌봄사유 관련 근로시간 단축휴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음. 한국은 2022년부터 1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질병, 사고, 노령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본인 돌봄이나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도 단축근로가 가능함. 회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추가 2년 범위안에서 1회연장이 가능함. 단축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에서 30시간미만임

b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본인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휴직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돌봄휴직의 급여자격은 개인이 아닌 가족급여로 분류될 수 있음. 또 고용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OECD 대부분의 국가(멕시코, 튀르키예, 몰타, 덴마크 제외)가 12세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가족이나 부양가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급 또는 유급의 휴가를 제공한다. 대상, 기간, 급여자격에 있어 국가별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기간의 휴가가 중심이 되는 국가도 있고 장기 휴직에 대해서 사회보험과 연계하여 소득대체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는 중증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20세미만의 자녀돌봄에 대해 3년의 휴가를 제공하며 이중 최대 310일까지 소득대체 급여가 제공된다. 이탈리아 역시 중증질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2년까지 소득대체 100%(상한있음) 의 급여를 제공한다. 아일랜드와 스페인도 부양가족돌봄을 위해 최대 2년간 무급 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외에도 12세미만 자녀 또는 일상적 돌봄자가 아픈 경우 5세미만 자녀의 돌봄을 위해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동당 120일, 일상적 돌봄자가 아픈 경우는 6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소득대체율은 77.6%(상한있음)로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의 휴직급여를 제공한다. 중증질환의 가족, 또는 “가까운 관계”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는 건당 100일, 소득대체율 80%의 급여가 제공된다. 영국과 미국은 돌봄휴가는 있지만 무급의 휴가만 쓸 수 있다.

한국의 가족돌봄휴직 90일과 가족돌봄휴가 10일은 무급이며, 직계가족과 배우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동일가구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 돌봄을 지원하는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사례에 비하면 돌봄대상에 대한 협소한 규정이다. 돌봄휴직이 근로자 개인급여인 나라도 있지만 한국은 가족중 다른 사람이 돌볼 수 있을 경우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가족급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외

에도 한국은 돌봄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일 때에만 자격을 부여받으며, 근로자 본인 이외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가 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제약을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 지표는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의 급여내용, 자격기준, 기간 및 급여수준에 대한 지표로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대표적 일가정양립정책 이외(또는 이후) 근로자들이 직계가족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자 할 때 고용보장이 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지표는 돌봄휴직자의 가족범위와 자격조건들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되었다. 돌봄휴직 자격요건으로 현재 고용주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을 추가하였으며, 돌봄휴가의 가족범위를 확대가족으로 수정하였다. OECD 국가중 일부는 돌봄휴가 및 휴직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나 상병급여 수준의 높은 소득대체 급여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무급인 상태이다. 또 돌봄가족의 범위 역시 함께 사는 가족을 넘어 가구원이나 친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확장되는 나라들도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혈연관계적 가족개념에 기초한 확대가족을 돌봄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돌봄을 제공할 다른 가족이 있으면 휴가가 거부될 수도 있는 등 돌봄대상과 돌봄제공자 측면 모두 가족급여적 특성이 강하다.

라. PF2.4 자녀관련 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대해 휴가기간 동안 제공되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에 관한 것이다. 이 지표를 통해 휴가기간 동안 소득안정성, 휴가급여의 관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급여율”(payment rate)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급여율이란 무급휴가를 제외하고 유급기간 동안 수급한 급여가 휴가 사용 이전 소득(출산 1년전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소득대체율)로 2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먼저 각 휴가에 대해 평균노동자 소득대비(AW50%, 100%, 150%)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고 소득수준별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순가구균등화 소득(net equivalised income)[73]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 비교대상 기준소득은 (2014년) 세전소득(gross earnings)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만 오스트리아, 칠레, 독일은 순소득(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비교를 위해 모델 가족이 설정되고 있는데, 급여수급자는 맞벌이가구, 배우자(파트너)의 소득은 AW100%이며. 다른 피부양자는 없고 첫 자녀가 태어난 경우를 가정한다.[74]

---

73) 순가구소득의 산식은 순가구소득=세전소득+가족급여+공공부조+실업급여+주거급여+근로촉진급여-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이다.

1) Chart PF2.4.A. 출산전후휴가 급여 소득대체율(Maternity leave payment rates, 2014) (적절)

출산전후 휴가의 급여대체율은 출산시기를 전후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어머니들에게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공적 재원을 이용해 지급되는 급여가 이전의 개인 소득을 대체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출산전후휴가의 소득대체율은 다른 급여보다 높은 수준인데, OECD 평균 급여대체율은 77%(AW100%기준)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칠레,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등 13개국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휴가기간 동안 100% 소득대체 급여를 제공하며 적어도 급여상한선(upper limit)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대체율이 50%에 미치는 못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과 같은 영미권 국가들로서 휴가기간 낮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출산휴가급여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소득대체율이 동일한 국가들(불가리아,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일본, 튀르키예, 슬로바키아)이 있는가 하면 차등을 두는 국가들(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그리스, 덴마크 등)도 있다. 차등이 있는 국가들은 급여상한선이 있거나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고소득보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더 높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 AW150% 여성근로자는 AW50% 근로자보다 대체율 수준에서 약 30%p정도 낮은 급여를 받으며 덴마크의 경우 65.5%p 낮은 급여를 받는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전후휴가는 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 3개월차는 고용보험 재원으로 최대 135만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소득구간 각각에 대해 AW150% 75.4%, AW100% 79.7%, AW50%은 92.7%로 정확한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어 있다.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40%이나 상한액(1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율이 낮아진다. 우리나라 출산전후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출산휴가 급여대체율의 주요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하면 아래 〈표 4-21〉과 같다. 출산전후휴가는 2001년 60일에서 90일로 기간확대와 더불어 연장 30일 급여분에서 공적 분담이 시작되었고 2006년 고용보험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90일분 통상임금 100%의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급여상한액도 2006년 135만원에서 2023년 210만원으로 증가했다. 10년전에 비해 상한액이 높아졌지만(135만원→210만원) 여전히 상한액이 월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중상위 소득자의 소득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74) OECD는 가구 유형별 조세 및 복지급여의 규모, 소득대체율을 알 수 있도록 가족지원계산기(Family Support Calculator)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2016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고, OECD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https://web-archive.oecd.org/2016-10-12/60662-oecdfamilydatabasethefamilysupportcalculator.htm (검색일2024.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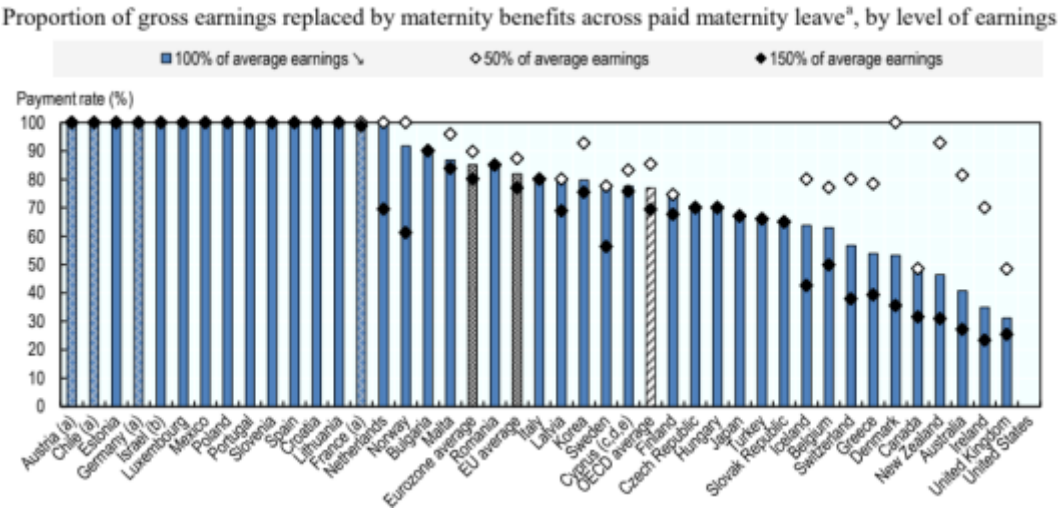
〈표 4-21〉 출산전후휴가 급여대체율 주요 변화

연도	주요내용
2001	산전후휴가 기간확대(60일→90일), 연장 30일급여는 고용보험부담. 상한액 135만원, 하한 최저임금
2006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90일분 통상임금 **100%** (상한 135만원) 고용보험 지원
2017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35만원→150만원)
2018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50만원→160만원)
2019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60만원→180만원)
2020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80만원→200만원)
2023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200만원→210만원)

출처: 김은정 외(2022:48),

요컨대, 출산전후 휴가의 급여대체율 지표는 출산시기를 전후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어머니들에게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에 관한 것이다. OECD 평균 급여대체율은 77%(AW100%기준)이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휴가기간 동안 100% 소득대체를 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칠레,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등 13개국이다. 반면 영미권 국가들은 소득대체율이 50% 미만으로 급여보장수준이 낮다. 현재 해당지표의 기준연도인 2014년 한국의 출산전후 소득대체율(AW100% 79.7%)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2014년이후 지난 10년동안 한국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크게 상승했는데 2014년 135만원에서 2023년 210만원으로 증가했다. 급여상한액이 높아졌지만 통상임금기준 상한액이 월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중상위 소득자의 소득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4] Chart PF2.4.A. 출산전후휴가 소득대체율
Chart PF2.4.A. Maternity leave payment rates, 2014



주: 교차빗금선은 세후소득대체율 값임.
a) 급여율(payment rate)은 무급휴가를 제외한 유급기간 급여가 휴가전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2014년 국가별 AW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동일 국가에서 휴가급여율 적용이 다른 기간이 있을 경우 휴가기간에 따른 가중평균을 부여하여 계산하였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여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나 오스트리아, 칠레, 독일의 급여는 세후소득(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프랑스의 급여는 사회보장 납부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수급자 가구는 맞벌이, 배우자소득은 AW100%이고 첫자녀 출산을 가정함.
출처: OECD 자체계산. OECD(2023). Chart PF2.4.A. Maternity leave payment rates, 2014에서 재인용

2) Chart PF2.4.B.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의 소득대체율(Parental leave payment rates, 2014) (적절)

이 지표는 어머니의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AW50%, AW100%, AW150% 각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을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은 출산휴가보다 낮다. OECD 국가 평균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은 휴가전소득 AW100%일 때 48% 수준으로 출산휴가급여의 76.8%보다 크게 낮다. OECD 국가중에서는 칠레와 리투아니아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어머니의 육아휴직기간 소득의 100%를 대체하는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는 저소득근로자(AW50%)에 대해서만 100% 소득대체급여를 제공한다. AW100%수준에서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등이 80%이상의 소득대체율을 보이며, 독일, 아이슬란드, 스웨덴, 폴란드와 같이 중북부 유럽 국가들이 60%이상의 소득대체 급여를 제공한다. 일본은 AW100% 소득의 59.9%대체율을 보여 OECD 평균보다 높은 상위권 국가에 속한다. 한편, 육아휴직 통계에 포함된 OECD 국가와 유로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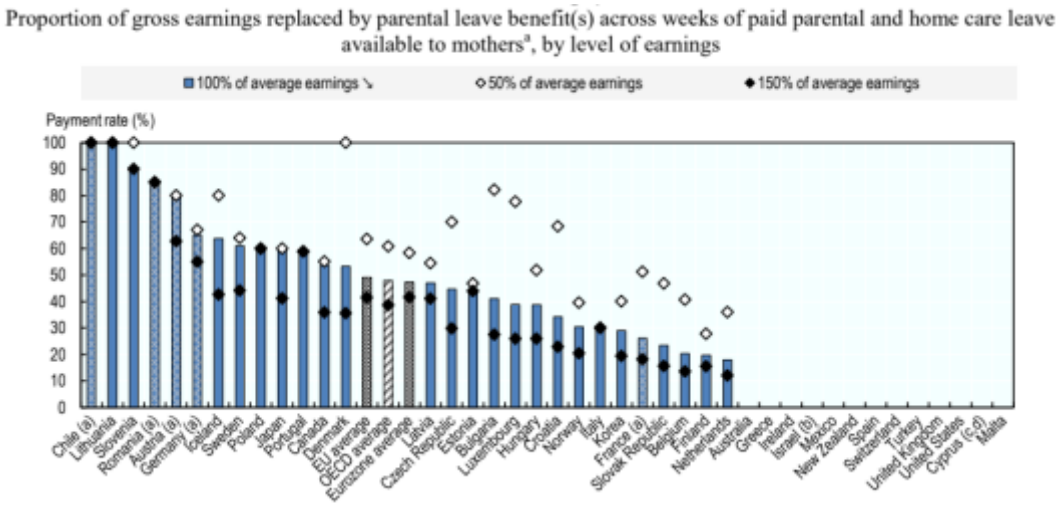
국가 41개국중 13개국은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중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로 25% 수준을 믿돈다.

2014년 현재 한국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40%이지만 상한액(100만원)이 적용되어 AW100%소득기준 29.0%이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율이 낮아진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최저임금 1,088,890원). 2023년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예전에 비해 소득대체율은 크게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액 150만원(하한 70만원)이 적용되어 소득대체율을 상당정도 낮추고 있다(김은정 외, 2022). 3+3 부모육아휴직제(부부동시, 순차휴가 사용)를 이용할 경우 최대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 300만원)의 인센티브성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최근 정부는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 구간에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적용되고 급여상한액도 개월차에 따라 월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75] 이러한 제도개혁은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겠지만 조건부 급여이고 특례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다시 통상임금 80% 상한액 210만원의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는 점에서 충분성을 확보하는데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 소득대체율 지표는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를 실시할 때 제공되는 급여의 규모,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보다 기간이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출산휴가보다 낮다. OECD국가의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 평균값은 AW100% 소득기준 48%로 낮은 편이다. 휴직기간이 짧은 국가에서는 100% 소득대체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교적 휴가기간이 긴 스웨덴,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는 60-80% 수준의 소득대체 급여를 제공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 40% 월급여상한액 100만원이 적용되어 소득대체율은 AW100%의 29.0% 이다. 2014년 이후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은 크게 개선되어 2023년 현재 통상임금의 80% 수준이다.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3+3,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구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액도 높게 책정되어 소득대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75)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1030.html

[그림 4-25] Chart PF2.4.B.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의 소득대체율
Chart PF2.4.B. Parental leave payment rates, 2014



주: 교차빗금선은 세후소득대체율 값임.
a) 급여율(payment rate)은 무급휴가를 제외한 유급기간 급여가 휴가전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2014년 국가별 AW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동일 국가에서 휴가급여율 적용이 다른 기간이 있을 경우 휴가기간에 따른 가중평균을 부여하여 계산하였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여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나 오스트리아, 칠레, 독일의 급여는 세후소득(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프랑스의 급여는 사회보장 납부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수급자 가구는 맞벌이, 배우자소득은 AW100%이고 첫자녀 출산을 가정함.
출처: OECD 자체계산.; OECD(2023). Chart PF2.4.B. Parental leave payment rates, 2014에서 재인용

3) Chart PF2.4.C.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Father-specific leave payment rates, 2014) (적절)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 지표는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중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비교 제시한다.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초기 양육기 돌봄참여로 인한 급격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사용하는 휴가기간 소득대체율은 휴가사용여부와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지표의 측정방식은 어머니 출산휴가와 어머니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소득수준을 AW50%, AW100%, AW150%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아버지 휴가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본다.

먼저, 아버지 할당 휴가기간동안 아버지 소득에 상관없이 100% 소득대체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칠레,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스페인, 라트비아, 몰타, 에스토니아가 그러하다. 이들 국가는 육아휴직 제도는 없고 상대적으로 짧은 1~4주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100% 소득대체 급여를 제공한다. 스페인은 16주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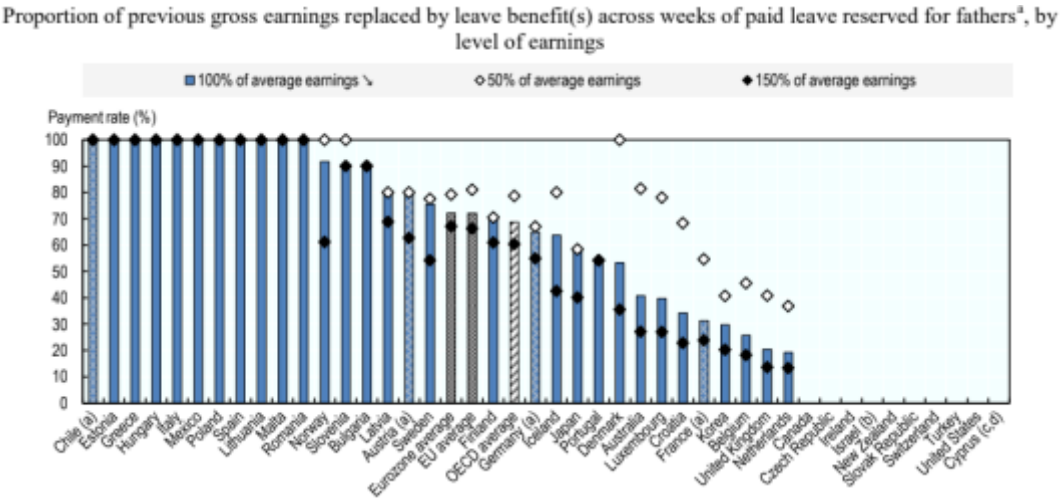
소득대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버지 할당 휴가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로는 한국,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은 AW 소득 구간 전반에 걸쳐 대체율이 낮다. AW50%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4개국 모두 50% 대체율에 못미친다. AW150% 소득자의 경우 한국 20.2%, 벨기에 18.3%, 영국 13.6%, 네덜란드 13.3% 수준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구간에서 급여 대체율이 더 낮다.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스위스, 튀르키예, 체코, 사이프러스 등은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 제도가 없다.

한국은 2023년 현재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 10일이며 대기업의 경우 고용주가 통상임금 100%를 부담한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5일분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현재 3+3 육아휴직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부모 각자 휴가 첫 3개월에 통상임금의 100% (월별 상한액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육아휴직의 할당 구조는 52주 통상임금 80%(상한적용)에서 3개월 통상임금100%(상한적용) + 9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적용)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소득대체율도 높아졌다.

요컨대,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 지표는 자녀관련휴가 중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한 것으로,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및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장의 수준을 나타낸다. 아버지 할당휴가의 OECD국가 평균 소득대체율은 아버지할당 유급휴가가 없는 국가를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AW50%에서 78.7%, AW100%에서 72.0%, AW150%에서 66.3%이다. 아버지 할당기간 동안 소득에 상관없이 100% 소득대체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들 국가는 (스페인을 제외하면) 할당된 휴가기간이 10주미만으로 짧거나, 배우자출산휴가만 실시하면서 높은 대체율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일가정양립제도가 발전하고 남성의 휴가 사용율도 높은 북유럽의 경우 AW100% 소득에서 노르웨이 91.7%, 스웨덴은 75.6%, 핀란드 68.5%, 아이슬란드 63.8%, 수준이다. 반면 영미권 국가들은 공적 휴가제도가 없거나 휴가제도가 있더라도 50%미만의 낮은 소득대체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은 아버지 할당 휴가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에 속하며 AW100% 소득의 29.8%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2019년 이후 배우자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증가하고 또 3+3 부모육아휴직제(2022년 도입), 6+6 부모육아휴직제(2024년 도입)처럼 부부가 함께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제도가 도입,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할당 휴가 기간의 소득대체율 지표값도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26] Chart PF2.4.C.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
Chart PF2.4.C. Father-specific leave payment rates, 2014



주: 교차빗금선은 세후소득대체율 값임.
a) 급여율(payment rate)은 무급휴가를 제외한 유급기간 급여가 휴가전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2014년 국가별 AW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동일 국가에서 휴가급여율 적용이 다른 기간이 있을 경우 휴가기간에 따른 가중평균을 부여하여 계산하였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여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나 오스트리아, 칠레, 독일의 급여는 세후소득(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프랑스의 급여는 사회보장 납부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수급자 가구는 맞벌이, 배우자소득은 AW100%이고 첫자녀 출산을 가정함.
출처: OECD 자체계산; OECD(2023). Chart PF2.4.C. Father-specific leave payment rates, 201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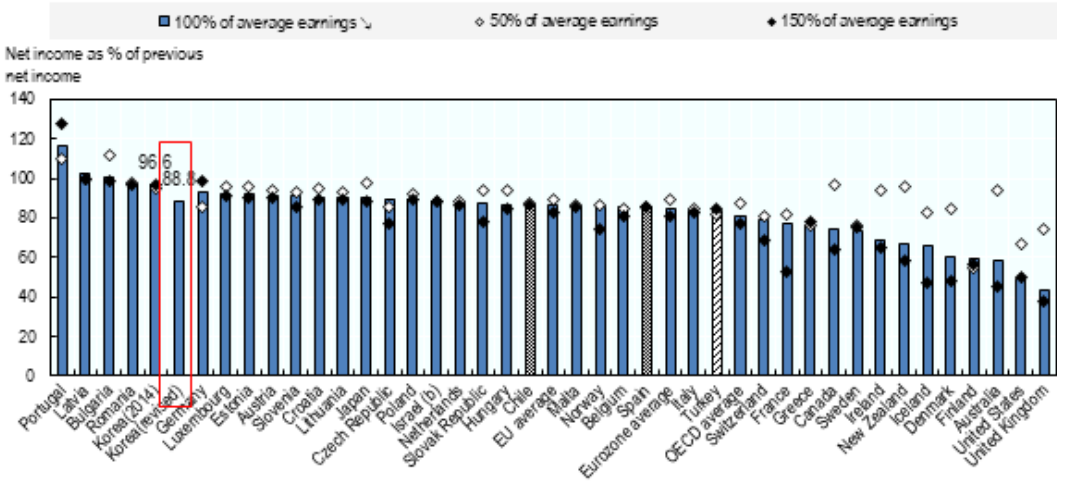
4) Chart PF2.4.D. 출산후 첫째달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개선필요)

이 지표는 소득수준별 출산전후 가구소득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소득대체율과 연관된다. 출산후 휴가 보장은 일가정양립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 시기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측정에 사용된 통계값은 출산1년전 순가구균등화소득, 출산후 첫째달 순가구균등화소득이며 계산을 위해 필요한 요소값은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가족급여(아동수당),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이다. 한국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지표 산출 근거값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했다(김은지외, 2023: 143). 여기서는 Family Support Calculator의 2014년 지표값을 중심으로 한국 지표값이 적절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한다.[76]

76) Chart PF2.4.D의 소득대체율 값은 OECD의 Family Support Caclulator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으나 2014년이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Tax-Ben Calculator로 통합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Tax-Ben Calculator는 2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급여 및 조세혜택 계산값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비교대상 가구의 소득수준은 AW50%-50%, AW100%-100% AW150% 150%이고 자녀는 2세, 0세로 동일하다.

지표 값 확인시 순가구소득 계산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값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배우자출산휴가는 3일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원칙에 의해 적절히 계산되었으며, 출산전후휴가는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출산후 휴가 의무사용기간 30일에 해당하는 출산 첫달은 통상임금 100%가 적절히 반영되었다.[77] 가족급여(양육수당) 값은 둘째아 출산1년전 첫째아 1세자녀 1명으로 계산하여 180만원(15만원*12개월)값이사용되었다.[78]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한국의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100% 수준으로 고용주가 지급할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포착되는데 OECD 산출값은 비과세로 계산한 것이다. 출산휴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값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AW100%-100%가구의 출산후 가구소득을 과세 및 사회보장기여를 고려하여 시험적으로 계산했을 때 순가구소득대체율은 96.6%에서 88.8%로 낮아졌다.[79]

[그림 4-27] Chart PF2.4.D. 출산후 첫째달 순가구소득 대체율
Chart PF2.4.D. 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주: a) 두 자녀(2세, 출생첫달) 맞벌이가구 를 기준으로 함. 부모는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전일제로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함. 부모는 가용한 (무급포함) 출산휴가과 배우자휴가를 충분히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함.
출처: OECD Tax and Benefit Models에 기초한 OECD 계산; OECD(2023). Chart PF2.4.D. 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출산휴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재산출

77) 대기업이 아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재원의 135만원의 상한이 적용되는데, 투입값은 대기업 기준 통상임금 100%로 가정되었다. 고용보험이 아닌 고용주가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이다.
78)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는 family support calculator 값을 사용하였다.
79) AW50-50과 AW150-150에서 변경된 가구소득은 family support calculator를 통해 계산할 수 없어 포함하지 못하였다.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값이 확보될 경우 AW100-100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출산휴가(배우자휴가 포함)의 소득대체효과에 관한 것인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직전임금의 100%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데 급여과세및 상한액 규정에 의해 실 소득대체율은 80-90% 수준을 보인다. 출산후 첫째달 순가구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로 110%~127%의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라트비아나 불가리의 경우도 100%에 육박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휴가급여로 직전 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동시에 가족급여에 의한 보충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출산휴가전후 소득변동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것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출산후 순가구소득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스웨덴은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77.6%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고 이 급여의 과세효과가 반영되어 74-77%수준을 보인다. 덴마크의 경우 출산휴가는 단협사항이지만 급여상한규정으로 인해 AW100%이상의 중간층 가구에서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소득수준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차등적용하여 중하위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전 소득의 90%를, 중간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32.5%를 적용하는데 가구소득대체율은 54~59%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의 출산후 맞벌이가구의 소득대체율은 AW100%에서 88.8%로 OECD 국가중 상위권에 속하는데, 이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고(통상임금 100%) 가족급여 360만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우선대상지원기업의 경우 2014년 기준 고용보험지원상한은 월 135만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 순가구소득대체율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요컨대,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비 출산후 첫째달의 가구소득대체율 지표는 출산전후 가구의 소득변동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출산가구의 소득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한국의 지표값은 개선필요로 분류되었는데, 근거값을 확인하고 출산휴가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대체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출산 첫째달 순가구소득이 출산이전 가구소득의 80-90% 수준의 높은 소득을 보장받고 있으며, 한국 역시 다른 급여에 비해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 첫째달은 출산전 가구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표산출과 관련하여 AW50%, AW150% 가구에 대해 추후 소득세, 사회보장세 확인을 통해 지표값 대체가 필요하다.

5) Chart PF2.4.E. 출산후 시기별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개선필요)

이 지표는 출산후 기간별 가구소득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산후 첫째달부터 2년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비롯한 가족급여가 가구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이 지표는 출산전후 소득변화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PF2.4.D 지표와 유사하지만 PF2.4.D는 기간을 고정하고 가구소득의

차이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살펴본 반면 PF2.4.E 지표는 가구소득을 고정한 상태에서 기간별 소득 변화를 살펴본다. 기간은 각각 산후 1개월, 6개월, 1년, 2년이다. 이 지표 역시 지표산출시 사용된 육아휴직급여값 등 산출 근거값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했다(김은지 외, 2023: 144)[80]

계산에 사용된 모델 가족은 부부 각각 AW100% 소득의 맞벌이가구 자녀간 터울은 2세이며 첫자녀가 1살일 때 둘째 자녀를 임신한 가족이며, 둘째 자녀 출산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가구소득의 변동을 살펴본다. 소득대체율을 파악하기 위한 준거 소득은 둘째 자녀가 태어나기 1년전 가구소득 즉 부부소득은 각각 AW100%이고 첫째자녀가 월 15만원(1세)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3인가구의 균등화소득이다. 이 소득을 분모로 하여 산후 1개월(아이가 태어난 첫달을 의미함), 6개월, 1년, 2년 시점의 소득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산출한다.

2014년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AW100%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월 상한 135만원이 적용된다. 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고용주가 급여비용을 부담하고(출산전후휴가 90일중 고용주 부담은 60일이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 출산한 달은 고용주 부담기간에 해당됨)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과세대상 소득으로 합산된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고용주 부담의 3일 유급휴가(통상임금 100%)이며 이 휴가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합산된다.

2014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40%으로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이 적용되어 AW100%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후지급금 15%가 부과되어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 85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복귀후 6개월이 지난후 1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다.

OECD 지표값은 가족지원계산기(family support calculator)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출된 값으로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값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2014년 한국에 대한 적절한 지표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부항목에서 산후 0개월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과세대상 소득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산후 6개월, 12개월, 24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도 급여상한선(100만원)과 사후지급금(15%)이 적용된 85만원 값으로 대체 투입되어야 한다. [81] 개선한 지표값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소득대체율은 산후 1개월 88.8%, 산후 6개월 59.8%. 산후12개월 59.1%, 산후24개월 58.2%이다.

---

80) 지표 자료에는 기준가구소득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산후 1개월 값이 PF2.4.4와 동일하므로 맞벌이부부 AW100%-AW100%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81) 사후지급금(2014년)은 복직후 6개월 경과시, 즉 출산월 기준으로는 1년 7개월~8개월 경과시 사후적으로 180만원(15만원*12개월) 일회성 급여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급여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사후지급금은 우리나라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액을 감소시켜 보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표 4-22〉 세부항목별 출산후 경과기간별 순가구소득의 변화 (0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출산전후 개월수	산전 1년 (첫째1살)	산후1개월 (둘째 출산)	산후6개월	산후12개월	산후24개월
총근로소득	663	299	332	332	332
가족급여	15	30	30	25	20
출산전후휴가급여	0	332	0	0	0
배우자출산휴가급여	0	33	0	0	0
육아휴직급여	0	0	85	85	85
소득세	-31	-31	-10	-10	-11
사회보장세	-55	-55	-28	-28	-28
순소득(net income)	592	607	409	404	398
가구균등화순소득	342	303	205	202	199
가구소득대체율	100%	88.8%	59.8%	59.1%	58.2%

주: 비교기준 시점인 산전1년 첫째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함. 가구균등화소득에 적용되는 가구원수는 산전1년은 3인, 산후는 4인임. 소득세 계산시 배우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하는 배우자는 부양가족공제와 부녀자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한국 Benefit and Wages의 country report의 가정). 출산휴가기간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육아휴직기간은 납부유예하는 것으로 계산함. 소득및 과세액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출처: OECD Family Support Calculator, https://taxben.oecd.org/policy_descriptions/Korea.zip의 2014년 country chapter for OECD series Benefits and Wages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OECD 39개국의 순가구소득대체율은 출산후 기간이 늘어날수록 감소한다. 한국 지표 개선값을 투입한 OECD 평균 순가구소득대체율은 출산1년전 대비 산후 1개월일 때 82.3%였으나 6개월 69.5%, 12개월 67.6%, 24개월 57.2%로 감소한다.[82] OECD 국가 중 산후1년까지 90%이상의 높은 수준의 가구소득대체율을 보이는 국가는 라트비아(93%), 불가리아(93%), 에스토니아(92%)와 같은 동구권 국가들이며,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같은 중부유럽 국가들은 70% 수준의 대체율을, 스웨덴과 핀란드 등[83]은 50%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대체율을 보인다. 한국은 산후 1개월, 즉 출산휴가급여가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산후 6개월, 산후 12개월, 산후 24개월에는 순가구소득대체율이 58~59%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급여상한선이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후지급금등을 통해 사실상 급여삭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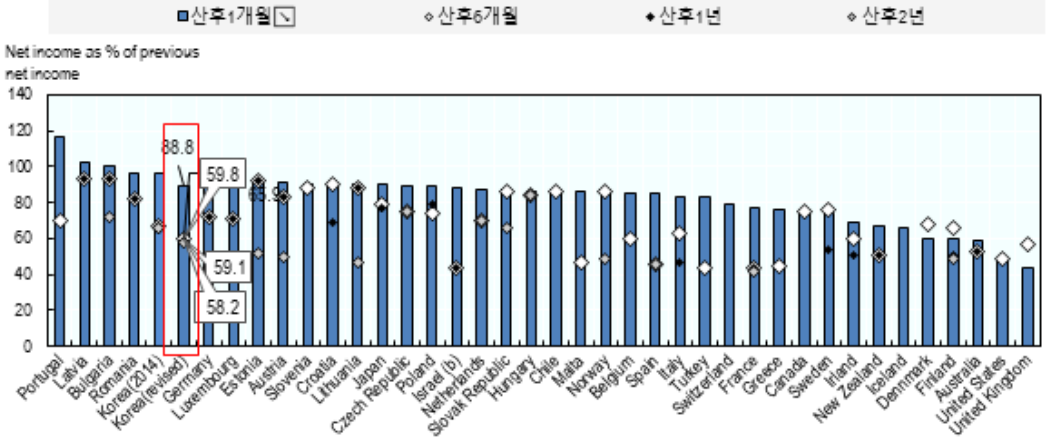
82) OECD39개국중 산후1년까지 휴직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25개국이며, 산후2년까지는 14개국이다. 한국은 산후 출산휴가 45일(배우자출산휴가 중복 3일)+엄마육아휴직1년+ 아빠육아휴직1년으로 최대 2.12년동안 유급의 자녀관련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83) 산후1년 경과시점의 순가구소득대체율은 스웨덴 53.3%, 핀란드 50.3%이다. 스웨덴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통합되어 있어 사실상 산전에 육아휴직이 시작되며 또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390일이고 그 이후엔 낮은 정액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산후1년 경과시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 핀란드는 출산휴가 105일 육아휴직 158일(부부합산)이 지나면 정액의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가 지급되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

2024년 6+6 육아휴직제가 실시되면서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6개월동안 1인당 최대 1,9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 초기 1년간 부부의 소득대체율이 증가함으로써 순가구소득대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 1년 이후 기간은 다시 통상임금 80% 급여 상한 150만원, 사후지급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산후 1년 이후 기간은 순가구소득의 대체율이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84]

요컨대, 이 지표는 출산후 기간별 가구소득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산후 첫달부터 2년 경과시점까지의 자녀관련 급여의 관대성과 충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앞의 PF2.4 D 소득수준별 출산후 첫째달 가구소득대체율 지표와 마찬가지로 지표산출시 사용된 요소값의 확인이 필요하여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되었으며, 출산휴가급여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값 및 사후지급금을 반영하여 한국 보고값을 수정했다. 한국은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를 실시하고 배우자출산휴가 역시 유급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산후 1개월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보장을 제공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적용되는 기간, 특히 육아휴직 사용이 집중되는 산후 1년까지 다른 국가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개선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림 4-28] Chart PF2.4.E. 출산후 육아휴직 기간별 순가구소득의 변화(0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Chart PF2.4.E. 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주: Chart PF2.4.E와 동일
출처: OECD(2023). Chart PF2.4.E. 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출산전후휴가 과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상한액(85만원)을 적용하여 재산출,

84) 2024년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가구소득대체율을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 PF2.5 자녀관련 휴가 급여 추이(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1) Chart PF2.5.A.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Length of paid maternity,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개선필요)

이 지표는 자녀관련휴가중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에 관한 것으로 국가별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이 어떻게 시계열적으로 확대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추이지표이다. 시계열 범위는 1970년부터 2022년이고 [그림 4-29]에는 1970년, 1995년, 2022년 시점값이 표현되어 있다. 휴가(휴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출산휴가는 다시 전(全)기간, 산전(産前)기간, 산후(産後)기간으로 구분되어있다. 또, 지표명칭은 유급휴가 기간이지만 고용보장 무급휴가기간도 포함해서 지표값을 산출하고 있다. 한국은 출산휴가 보고값 1970년 0, 1995년 일수를 주수로 환산한 값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선필요지표로 분류했다(김은지 외, 2023:145).

한국은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유급 산전후 휴가기간 60일 보장을 명시했고 196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후 30일의 휴가가 확보하도록 했다. 비록 1970년 당시 근로기준법이 구속력이 낮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했더라도 관련법[85]이 있었으므로 8.6주(60일)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보완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은 휴가일수(days)를 주(weeks)단위로 환산했을 때 약간의 오차가 나타나는 문제를 수정하여 60일은 8.57주, 30일은 4.28주, 무급포함 육아휴직은 47.72주 고용보장 출산휴가육아휴직은 56.28주로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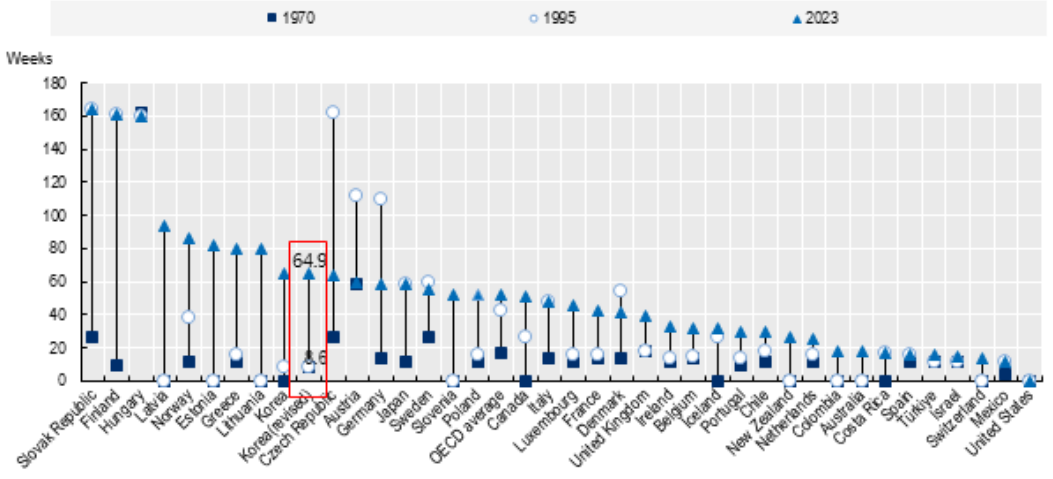
유급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 전체 기간을 살펴보면, OECD평균 총 유급휴가기간은 1970년 16.4주에 불과했으나 2022년 50.8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슬로바키아, 핀란드, 헝가리가 160주 이상의 유급휴가 기간을 보장한다. 동유럽국가와 북유럽 국가(핀란드, 노르웨이)들이 상대적으로 긴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육아휴직기간이 짧거나 없는 국가들은 총유급휴가기간이 짧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보다 육아휴직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스페인,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은 상대적으로 총 휴가기간이 짧다. 1990년에 비해 2022년 유급휴가기간이 줄어든 나라는 체코와 독일, 덴마크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는 동일한 현금급여 총액내에서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기간연장옵션(long op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급여가 후하고 기간이 짧은 휴가 대신 급여가 낮고 기간이 긴 휴가를 선택, 휴가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86] 독일은 유급육아휴직기간을 56주에서 44주로 축소하면서 기간연장옵션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동일한 총액급여를 기간별로 나누어 낮은 급여로) 96주까지 연장 사용할 수

85) 1953년 근로기준법 제60조(산전후휴가)는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녀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1961년 근로기준법 제60조 (산전후휴가)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녀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법제처,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

86) https://www.oecd.org/els/family/PF2_5_Trends_in_leave_entitlements_around_childbirth_ annex.pdf

있다. 체코도 134주 유급육아휴직에서 기간연장옵션이 생기면서 자녀가 48개월 될 때까지 188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29] Chart PF2.5.A.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 (1970년, 1995년, 2022년)
Chart PF2.5.A. Length of paid maternity,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주: 각 년도 4월 정보를 기준으로 함. 자료는 국가수준 또는 연방수준의 제도에 관한 것이고 일부국가의 주/도나 지자체 수준의 지역적 변이(예를 들어 캐나다의 퀘벡주 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추가적/대안적 제도를 포함하지 않음.
출처: OECD(2023). Chart PF2.5.A. Length of paid maternity,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각 시기별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재산출

요컨대,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 지표는 자녀관련휴가중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에 대한 시계열지표이다. 휴가기간은 소득대체율과 더불어 육아휴직의 관대성 수준을 알 수 있는 양대지표이다.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OECD 국가들은 1970년이후 자녀관련 유급휴가기간을 빠른 속도로 늘려왔다. 선두그룹인 슬로바키아, 핀란드, 헝가리는 이미 90년대에 3년정도의 자녀관련 유급휴가기간을 확보했으며, 동유럽국가와 북유럽 국가(핀란드, 노르웨이)들이 상대적으로 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지표값은 개선필요로 분류되었는데,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전후휴가 60일이 보장되었으므로 70년 숫자를 8.6주(60일)로 정정하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 등 자녀관련 휴가의 권리는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추격 발전하였고 육아휴직의 권리를 개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총 유급휴가기간은 64.9주로 OECD 국가중 상위그룹에 속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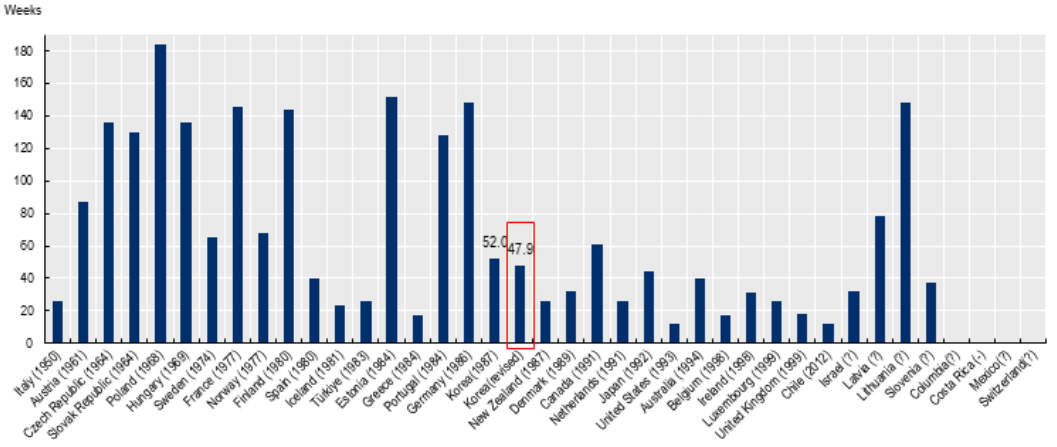
2) Chart PF2.5.B.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도입년도 및 도입당시 기간 (Length of job-protecte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paid and unpaid) available to mothers by year of introduction) (개선필요)

이 지표는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고용보장 급여로 처음 도입된 시점과 당시 휴가기간을 보여주는 베이스라인(baseline) 지표이다. 한국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는데, 시점은 1987년으로 정확히 보고되었으나 육아휴직 기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했다(김은지외 2023:145).

한국에서 육아휴직제도가 (무급) 고용보장급여로 처음 실시된 1987년 당시 육아휴직은 유급산전후휴가기간과 합산하여 1년(52주)를 보장하였다. 유급산전후휴가가 30일이었고 육아휴직은 유급산전후 휴가 기간 "포함" 자녀 생후 1년이내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365일에서 30일(유급 산전후 출산휴가)을 뺀 335일로 계산되어야 한다. 수정한 값은 335일을 주수로 환산한 값 47.9주이다.

[그림 4-30] Chart PF2.5.B. 제도 도입년도 기준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기간(주)

Chart PF2.5.B. Length of job-protecte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paid and unpaid) available to mothers by year of introduction



주: 2022년 4월 실시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양육휴가(제도의 명칭은 "양육휴가, 가정양육휴가" 등 다양할 수 있음). 자료는 국가수준 또는 연방수준의 제도에 관한 것이고 일부국가의 주/도나 지자체 수준의 지역적 변이(예를 들어 캐나다의 퀘벡주 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추가적/대안적 제도를 포함하지 않음. 일부 국가(호주,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통합되어 있음.

출처: OECD(2023). Chart PF2.5.B. Length of job-protecte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paid and unpaid) available to mothers by year of introduction 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산전후휴가기간(30일)을 제외 후 재산출

OECD 국가중 고용보장 육아휴직제도를 처음 실시한 국가는 이탈리아 1950년이다. 1960년대 이미 오스트리아 포함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이 고용보장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룩셈부르크는 상대적으로 늦은 1999년에, 칠레는 2012년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휴직 도입 초기부터 2년이 넘는 장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주로 동유럽국가들과 독일이다. 폴란드는 이미 1968년에 183.7주의 긴 육아휴직기간을 보장했으며, 에스토니아, 독일, 리투아니아,프랑스 체코,헝가리, 슬로바키아, 포르투갈도 2년이 넘는 기간을 보장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는 도입 초기 비교적 짧은 23-26주를 보장했으며, 영국과 미국은 1990년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면서 영국은 18주, 미국은 12주로 짧은 휴직기간만을 보장했다.

한국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입법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의 육아휴직을 도입했는데, 이 기간에는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유급화된 된 것은 2001년 고용보험 재원이 투입되면서부터이며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된 것은 2006년 개정을 통해서이다.

요컨대,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도입년도 및 도입당시 기간 지표는 육아휴직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점과 당시의 휴가기간을 보여주는, 육아휴직에 대한 연대기적 지표이다. OECD국가는 1960년대말 1970년대부터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의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부모 모두가 사용하는 유급의 휴가로 발전시켰다. 한국은 1987년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포함 1년의 무급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이후 육아휴직은 기간확대, 대상자녀 연령 확대, 유급화 및 급여액 확대, 남성배우자 포함 및 남성사용 인센티브등 제도개혁을 거듭하면서 근로자의 성평등과 일가족양립에 기여하는 주요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Chart PF2.5.C.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 추이(Chart PF2.5.C. Length of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reserved for fathers, 1970, 1995 and 2022) (적절)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 추이는 지난 50년동안 아버지의 휴가기간이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 1970년, 1995년, 2022년 세 개의 시계열 시점을 선택하여 보여준다([그림 Ⅲ-3-20]). 이미 1970년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실시한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으로 각각 3일, 2일, 1일의 휴가를 제공했다. 이후 북유럽국가의 주도하에 유급 육아휴직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1995년 유급휴가는 덴마크(15주), 스웨덴(5.76주) 노르웨이(4주), 핀란드(3주) 등으로 확대되었다. 2022년 현재 OECD 평균은 10.4주이며, 19개국이 2주 이하의 짧은 휴가기간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아버지휴가는 총 54주(배우자출산휴가 2주 + 육아휴직 52주) 가장 긴 휴가기간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이 52주이다.

〈표 4-23〉은 가족데이터베이스상 아버지할당 자녀관련 휴가기간과 관련된 하위 지표들에서 한국과 관련된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배우자출산휴가는 2008년 3일(0.6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12년부터 휴가기간 최대 5일중 3일의 유급휴가로 바뀌었으며, 2019년 유급10일(2주)로 확대되었다. 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 재원으로 유급휴가 52주로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도 유급휴가 52주이다. 2022년 아버지에게 할당된 총 유급휴가기간은 배우자출산휴가 2주, 육아휴직 52주 총 54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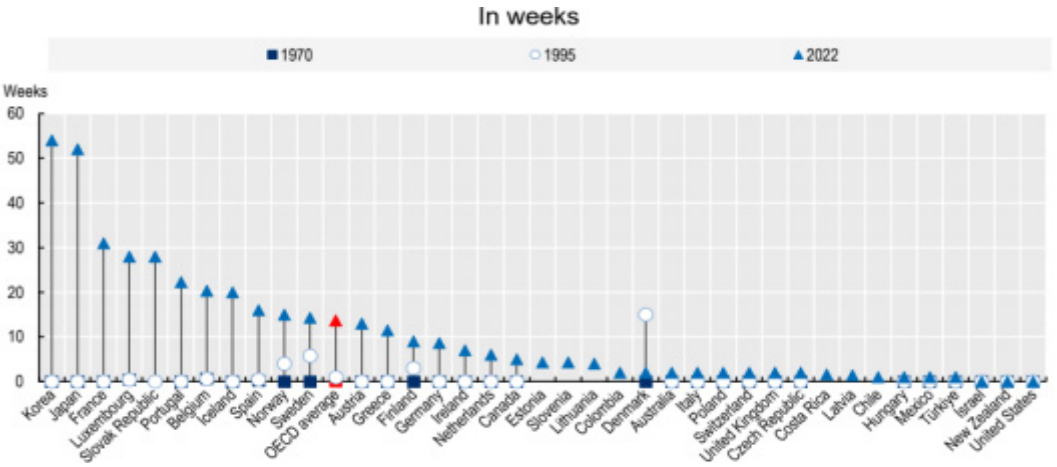
요컨대,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 추이 지표는 1970년이후 자녀관련 휴가중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의 변천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022년 현재 아버지 할당 휴가의 OECD 평균은 10.4주이며, 1970년 0주 1995년 0.9주에서 크게 늘어났다. 한국의 경우도 비교시점인 1970년과 1995년에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는데 2022년 54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휴가기간만 본다면 OECD 국가에서 가장 긴 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표 4-23〉 한국의 아버지에게 할당된 자녀관련 휴가유형별 휴가기간 (시계열 자료 1970년~2022년)

지표명칭(데이터베이스상)	지표명칭(한글)	한국		
		1970	1995	2022
Patleave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휴가기간	0	0	2.00
Patleave_paid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유급배우자휴가기간	0	0	2.00
Father_specific_Parleave	아버지에게 할당된 육아휴직과 양육휴가기간	0	0	52.00
Father_specific_Parleave_paid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 육아휴직과 양육휴가기간	0	0	52.00
Total_Father_specific	아버지에게 할당된 총 휴가기간	0	0	54.00
Total_Father_specific_paid	아버지에게 할당된 총 유급휴가기간	0	0	54.00

출처: https://www.oecd.org/els/family/PF2_5_Trends_in_leave_entitlements_around_childbirth.xlsx
(검색일 2024.03.01.)

[그림 4-31] Chart PF2.5.C.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 추이
Chart PF2.5.C. Length of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reserved for fathers, 1970, 1995 and 2022



주: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서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아빠쿼터"와 육아휴직 공유기간 중 "보너스 주"를 획득하기 위해 아버지가 사용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각 수치는 각 년도 4월기준 유급휴가기간에 관한 것임. 데이터는 전국적 또는 연방적 수준의 휴가제도의 기간만 포함하며 지역적 변이, 주/프로빈스 또는 지자체((예: 캐나다 퀘벡, 미국 캘리포니아)가 지급하는 휴가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았음, 수치산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Chart PF2.5.A의 주석을 참고할 것.
출처: OECD(2023). Chart PF2.5.C. Length of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reserved for fathers, 1970, 1995 and 2022

바. PF2.6 동성부모과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이 지표는 이성부모, 생물학적부모가 아닌 동성부모 혹은 입양부모가 출산휴가, 배우자휴가, 육아휴직, 입양휴가 등의 자녀관련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제도 접근성과 급여자격을 살펴본다. OECD 국가들에서 이성애 법률혼의 범위를 넘어서 동성혼, 시민결합 등 다양한 혼인관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권리뿐 아니라 자녀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부모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승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동성혼이나 시민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이성애적 결합이나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서 동성부모는 법률적으로 동성혼이 인정된 국가에서의 동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부모(same-sex parent)는 현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동성애 관계에 있는 부모로 정의된다. 또, 입양부모는 아동을 입양한 커플 혹은 개인을 의미하는데 자녀 입양은 개인 단독으로 또는 파트너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헝가리의 경우 개인은 입양할 수 없으며 일본과 한국은 개인이 입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률혼 상태에 있는 부부만 입양이 가능하다.

1) Table PF2.6.1. 남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2022) (적절)

〈표 4-24〉는 OECD 국가들에서 남성 동성부모의 경우 자녀관련 휴가자격을 보여주는 표이다. 남성동성부모는 여성동성부모와 입양부모에 비해 자녀휴가접근권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 이유는 남성동성부모는 일반적으로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급여, 즉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OECD 38개국중 12개국에서만 남성동성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87]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국가들에서 남성동성부모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 남성동성커플은 대리모 출산을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콜롬비아와 뉴질랜드에서 남성동성커플은 대리모 출산시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88]

OECD 25개국에서 남성동성커플은 입양휴가의 자격이 있다.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에서 동성부모는 자신의 파트너의 생물학적 자녀만 입양할 수 있고 공동입양은 불법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동성부모는 공동입양을 할 수 없지만, 위탁양육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휴가가 허용된다.

〈표 4-24〉 Table PF2.6.1. 남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Table PF2.6.1: 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출산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육아 휴직 양육 휴가	입양 휴가	비고
호주	N/A	N/A	x	x	모든 유형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단, 부부나 파트너(동성혼파트너 포함)가 동시에 휴직/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혼인이나 사실혼 상태에 있어야 함.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아닌 일차적돌봄제공자(생물학적 부모가 아니어도 가능)에게 급여될 수 있음.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는 육아휴직에 포함되어 있음.
오스트리아			x	x	모든 유형의 부모(동성혼 포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벨기에			x	x	모든 유형의 부모(동성혼 포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캐나다		N/A	x	x	법률혼상태의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퀘벡주는 유급배우자휴가가 있음. 대리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음.
칠레				x	
콜롬비아	x	x	N/A	x	
코스타리카		N/A	N/A	x	

87) https://web-archive.oecd.org/2023-01-12/649254-PF2-6-same-sex-parents-leave-entitlements.pdf
88) https://web-archive.oecd.org/2023-01-12/649254-PF2-6-same-sex-parents-leave-entitlements.pdf

	출산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육아 휴직 양육 휴가	입양 휴가	비고
체코					동성결혼과 동성커플 입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덴마크				x	법률혼상태의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에스토니아			x		(1) 동성커플은 자녀를 공동입양할 수 없음. 그러나 계부모인 파트너는 상대방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육아휴직의 권리도 가짐. (2) 계부모인 파트너는 입양, 양육권취득, 또는 생물학적 부모의 배우자가 된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음.
핀란드				x	
프랑스				x	
독일		N/A		x	
그리스				x	생물학적 부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동성혼 파트너의 입양은 허락되지 않지만, 동성커플은 위탁가정이 될 수 있으며 입양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헝가리					동성부모는 결혼, 입양 불가함.
아이슬란드	N/A	N/A	x	x	이혼후 자녀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에게 최대 12주 휴가기간을 이전할 수 있음 (동성혼 포함)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는 육아휴직에 포함되어 있음.
아일랜드			x	x	동성커플에 의한 양육의 경우 생물학적 부모나 입양부모가 아닌 경우 혼인관계, 시민결합, 또는 동거(3년)의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육아휴직은 무급임.
이스라엘		N/A		x	동성커플에게는 대리모가 허용되지 않음.
이탈리아				x	이탈리아 국내에서 동성커플은 자녀를 입양할 수 없지만 양육할 수는 있음. 해외 거주시 입양한 경우는 양육이 가능함.
일본		N/A			동성부모의 혼인, 입양이 허락되지 않음. 일부 지자체는 "파트너십" 증명서를 통해 "혼인에 상응하는" 동성결합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한국					동성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육아휴직/출산휴가가 동성커플에게 적용되지 않음.
라트비아					동성입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리투아니아					동성혼과 동성커플의 입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룩셈부르크			x	x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음. 입양절차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음.
멕시코			N/A		(1) 동성커플의 입양자격은 주별로 차이 있음.
네덜란드			x	x	(1) 최소3년이상 동거하고 1년이상 아동을 양육해야 네덜란드 국적의 아동을 입양할 수 있음.
뉴질랜드	x	x	x	x	(1) 생물학적 어머니는 휴가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트너/배우자 또는 6세미만 아동의 돌봄,발달,성장에 대해 일차적 영구적 책임을 진 사람에게 양도할 있음.
노르웨이	N/A			x	(1) 법적 부모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2) 공적 제도로서 유급배우자휴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동성부모인 아빠/파트너 근로자의 대부분이 개별적 협상 또는 단체협상에 의해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음.

	출산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	입양 휴가	비고
폴란드					(1) 동성커플에 의한 양육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포르투갈				x	(1) 법률혼 부모만 휴가를 할 수 있음.
슬로바키아		N/A			(1) 동성커플은 혼인 또는 입양에 대한 권리가 없음.
슬로베니아					(1) 동성혼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성부모에 의한 입양은 계자녀(step-children)에 대해서만 허용됨.
스페인				x	(1) 법률혼 부모만 휴가를 할 수 있음. (2) 육아휴직은 무급임.
스웨덴	N/A		x	x	(1) 모든 유형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스위스			N/A	N/A	(1) 2022년 7월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음.
튀르키예					(1) 동성커플에 의한 양육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영국			x	x	(1) 모든 유형의 부모(동성혼 포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2) 육아휴직은 무급임.
미국	x			x	(1) 주별로 상이함. (2) 가족질병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 모든 부모(파트너포함)는 12주 무급휴가를 할 수 있음.
불가리아					동성혼과 동성커플의 입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크로아티아		N/A	x		(1) 동성파트너십법상 등록된 생활동반자(life partner)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대해 법률혼 부모와 동일한 육아휴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2) 동성커플 입양 합법화(2022년 5월)
사이프러스					(1) 동성커플에 의한 양육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몰타			x	x	(1) 육아휴직은 무급임 (2)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동성커플은 배우자휴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음. 민간부문 근로자는 해당없음.
루마니아					(1) 동성커플에 의한 양육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 남성동성부모의 경우 입양 관련 휴가와 별도로 출산휴가, 배우자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자격을 파악함. 입양휴가 지표에서 입양은 (상대방의 생물학적 자녀의 입양이 아니라) 남성 동성부모에 의한 공동입양(joint adoption)을 의미함. 이 데이터는 국가수준 또는 연방수준의 제도만을 포함함. 일부 국가의 경우 주/도 수준에서(예를 들어 캐나다 퀘벡) 추가적/대안적 급여를 제공하지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음. N/A: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어떤 부모에게도 적용가능한 법률적 휴가제도가 없음을 의미함. 기준년도는 2022년 4월임.
출처: OECD(2023). Table PF2.6.1: 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2) Table PF2.6.2. 여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Fe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2022) (적절)

〈표 4-25〉는 OECD 국가에서 여성동성부모의 휴가자격에 관한 것이다. 앞서 남성동성부모에서 언급했듯이 남성동성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보다 여성동성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더 많다.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동성커플의 경우에도 생물학적

어머니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출산휴가가 육아휴직에 통합되어 있는 국가는 예외이다) 반면, 여성동성부모에게 배우자출산휴가의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도 있다. 이성혼에서 출산휴가는 여성이 이용하고 배우자출산휴가(paternity leave)는 남성이 이용하지만,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OECD 17개국은 여성동성부모에게도 배우자출산휴가의 권리를 인정한다. 여성동성부모에게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를 인정하는 국가는 22개국으로 38개 회원국의 57%에 해당된다. 일부 국가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여성동성부모가 자녀관련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여성동성커플중 한 사람이 출산한 경우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닌 파트너는 출산한 파트너와 동성혼, 동거, 등록파트너십 등의 관계에 있어야만 자녀관련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89]

남성동성부모와 동일하게 여성동성부모의 입양휴가는 25개국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2023년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판결),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동성혼이나 동성결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성부모의 입양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90]

요컨대 동성부모의 휴가자격은 동성혼, 동성결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이성부모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남성동성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보다 여성동성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더 많은데 남성동성부모는 출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출산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OECD 38개국중 12개국에서 남성동성부모의 육아휴직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며, 여성동성부모의 육아휴직 국가 22개국보다 적다. 입양휴가에서는 동성부모의 성별과 상관없이 25개국에서 입양휴가가 인정되고 있다. 한국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부모일 경우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자녀관련 휴가 자격 역시 부여되지 않는다.

〈표 4-25〉 Table PF2.6.2. 여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Table PF2.6.2: Fe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출산휴가	배우자휴가	육아휴직 양육휴가	입양휴가	비고
호주	N/A	N/A	x	x	1) 모든 유형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단, 부부나 파트너(동성혼 파트너포함)가 동시에 휴직/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혼인이나 사실혼 상태에 있어야 함. 2)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아닌 일차적돌봄제공자(생물학적 부모가 아니어도 가능)에게 급여될 수 있음. 3)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는 육아휴직에 포함되어 있음.
오스트리아	x		x	x	1) 모든 유형의 부모(동성혼 포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벨기에	x	x	x	x	1) 모든 유형의 부모(동성혼 포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89) https://web-archive.oecd.org/2023-01-12/649254-PF2-6-same-sex-parents-leave-entitlements.pdf
90) https://web-archive.oecd.org/2023-01-12/649254-PF2-6-same-sex-parents-leave-entitlements.pdf

	출산 휴가	배우자 휴가	육아 휴직 양육 휴가	입양 휴가	비고
캐나다	x	N/A	x	x	법률혼상태의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퀘벡주는 유급배우자휴가가 있음. 대리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음.
칠레	x	x	x	x	
콜롬비아	x	x	N/A	x	
코스타리카	x	N/A	N/A	x	
체코	x				동성결혼과 동성커플 입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덴마크	x	x	x	x	법률혼상태의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에스토니아	x		x		(1) 동성커플은 자녀를 공동입양할 수 없음. 그러나 계부모인 파트너는 상대방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육아휴직의 권리도 가짐. (2) 계부모인 파트너는 입양, 양육권취득, 또는 생물학적 부모의 배우자가 된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음.
핀란드	x	x	x	x	
프랑스	x	x	x	x	
독일	x	N/A	x	x	
그리스	x			x	생물학적 부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동성혼 파트너의 입양은 허락되지 않지만, 동성커플은 위탁가정이 될 수 있으며 입양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헝가리	x				동성부모는 결혼, 입양 불가함.
아이슬란드	N/A	N/A	x	x	이혼후 자녀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에게 최대 12주 휴가기간을 이전할 수 있음 (동성혼 포함)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는 육아휴직에 포함되어 있음.
아일랜드	x	x	x	x	동성커플에 의한 양육의 경우 생물학적 부모나 입양부모가 아닌 경우 혼인관계, 시민결합, 또는 동거(3년)의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육아휴직은 무급임.
이스라엘	x	N/A	x	x	동성커플에게는 대리모가 허용되지 않음.
이탈리아	x		x	x	이탈리아 국내에서 동성커플은 자녀를 입양할 수 없지만 양육할 수는 있음. 해외 거주시 입양한 경우는 양육이 가능함.
일본	x		N/A		동성부모의 혼인, 입양이 허락되지 않음. 일부 지자체는 "파트너십" 증명서를 통해 "혼인에 상응하는" 동성결합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한국	x				동성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육아휴직/출산휴가가 동성커플에게 적용되지 않음.
라트비아	x	?	?		동성입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리투아니아	x				동성혼과 동성커플의 입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룩셈부르크	x	x	x	x	동성혼 부모의 모든 자녀들에 대해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음. 입양절차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음.
멕시코	x	x	N/A		(1) 동성커플의 입양자격은 주별로 차이 있음.
네덜란드	x	x	x	x	(1) 동성관계에 있는 여성이 출산할 경우 상대 파트너는 출산전후시기 해당 자녀를 입양할 수 있음.

	출산 휴가	배우자 휴가	육아 휴직 양육 휴가	입양 휴가	비고
뉴질랜드	x	x	x	x	(1) 생물학적 어머니는 휴가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트너/배우자 또는 6세미만 아동의 돌봄,발달,성장에 대해 일차적 영구적 책임을 진 사람에게 양도할 있음.
노르웨이	N/A	x	x	x	(1) 법적 부모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2) 공적 제도로서 유급배우자휴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동성부모인 아빠/파트너 근로자의 대부분이 개별적 협상 또는 단체협상에 의해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음.
폴란드	x				(1) 동성커플에 의한 양육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포르투갈	x	x	x	x	(1) 법률혼 부모만 휴가를 할 수 있음.
슬로바키아	x	N/A			(1) 동성커플은 혼인 또는 입양에 대한 권리가 없음.
슬로베니아	x	x			(1)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2) 동성혼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성부모에 의한 입양은 계자녀(step-children)에 대해서만 허용됨.
스페인	x	x	x	x	(1) 법률혼 부모만 휴가를 할 수 있음. (2) 육아휴직은 무급임.
스웨덴	N/A	x	x	x	(1) 모든 유형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스위스	x		N/A	N/A	(1) 2022년 7월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음.
튀르키예	x				(1) 동성커플에 의한 양육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영국	x	x	x	x	(1) 모든 유형의 부모(동성혼 포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2) 육아휴직은 무급임.
미국	x			x	(1) 주별로 상이함. (2) 가족질병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 모든 부모(파트너포함)는 12주 무급휴가를 할 수 있음.
불가리아	x				(1) 동성혼과 동성커플의 입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크로아티아	x	N/A	x		(1) 동성파트너십법상 등록된 생활동반자(life partner)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대해 법률혼 부모와 동일한 육아휴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2) 동성커플 입양 합법화(2022년 5월)
사이프러스	x				(1) 동성커플에 의한 양육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몰타	x	x	x	x	(1) 육아휴직은 무급임 (2)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동성커플은 배우자휴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음. 민간부문 근로자는 해당없음.
루마니아	x				(1) 동성커플에 의한 양육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 여성동성부모의 경우 입양휴가와 별도로 출산휴가, 배우자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자격을 파악함. 여기서 입양이란 (상대방의 생물학적 자녀의 입양이 아니라) 여성 동성부모에 의한 공동입양(joint adoption)을 의미함. 이 데이터는 국가수준 또는 연방 수준의 제도만을 포함함. 일부 국가의 경우 주/도 수준에서(예를 들어 캐나다 퀘벡) 추가적/대안적 급여를 제공하지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음. N/A':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어떤 부모에게도 적용가능한 법률적 휴가제도가 없음을 의미함. 기준년도는 2022년 4월임.

출처: OECD(2023). Table PF2.6.2: Fe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요컨대, 남성동성부모와 여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 지표는 동성부모의 경우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입양휴가 각각에 대한 각국의 법적 이용자격을 보여준다. 먼저 법률적으로 동성결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자녀관련 휴가 이용자격도 제한된다. 동성혼이나 동성결합이 인정되는 국가에서도 남성동성부모의 경우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데 국가별 이용가능한 휴가 및 자격과 관련하여 편차가 크다. OECD 38개국중 12개국가에서 남성동성부모가 육아휴직의 권리를 갖고 있다(이성부모일 경우 34개국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일부 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란드, 에스토니아, 영국)에서 육아휴직은 파트너가 휴가의 권리를 갖고 있는 생물학적 부모일 때만 다른 남성파트너에게도 부여되며 대리모를 이용해 부모가 된 남성동성부모에게 육아휴직의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도 있다.

여성동성부모의 경우 남성동성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보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더 많다. 여성동성부모중 한 사람이 출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OECD ㅎ17개국에서는 파트너(배우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OECD 38개국중 동성혼이나 동성결합이 인정된 22개 국가에서는 여성동성부모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동성부모에 대한 입양휴가는 성별에 상관없이 25개국에서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은 동성혼, 동성결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성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없다. 다만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성동성커플일 경우에도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Table PF2.6.3.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Adoption leave entitlements) (적절)

이 지표는 아동을 입양한 사람 또는 커플이 사용할 수 있는 입양휴가의 이용자격에 관한 것이다. 2016년 현재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든 OECD 국가가 입양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91] 입양부모는 개인자격 또는 파트너와 공동자격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독신인 경우 입양할 수 없고 혼인상태를 필수요건으로 하기도 한다. 일본과 한국은 부모가 혼인상태에 있어야만 입양을 할 수 있다.

OECD 국가중 27개국에서 입양부모는 친생부모와 동일하게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로 이루어진 자녀휴가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아일랜드, 라트비아, 스웨덴, 몰타 4개국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외 별도의 특별양육휴가(special adoption leave)제도를 갖고 있다. [92] 한국은 별도의 입양휴가제도는 없지만 입양부모는 친생부모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입양시 휴가는 다른 휴가와 마찬가지로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사용

91) 기준년도인 2016년 당시 스위스는 양육휴가 제도가 없었으며 최근들어(2023년 1월) 양육휴가를 도입했다. 또 2022년 7월 스위스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임신한 여성의 아내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92) https://web-archive.oecd.org/2023-01-12/649254-PF2-6-same-sex-parents-leave-entitlements.pdf.

할 수 있는 시기규정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성년인 18세미만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리스는 아동연령 6세미만,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8세미만, 이스라엘 14세미만일 때 입양과 관련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표 4-26〉 Table PF2.6.3.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Table PF2.6.3: Adoption leave entitlements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양육 휴가	입양 휴가	비고
호주	N/A		x		(1) 16세미만 입양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가능함
오스트리아			x		
벨기에			x	x	(1) 18세미만의 입양자녀에 대해 6주의 특별입양휴가(1주는 의무적으로 사용) 독신입양시 1주 , 양부모의 경우 한쪽 부모가 1주,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6주, 동시에 두 자녀이상 자녀입양시 2주 기간연장가능 (2) 입양휴가 초기 3일은 통상임금의 100%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음.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82%로 사회보험(mutuelle)이 커버함
캐나다		N/A	x		
칠레	x	x	N/A		(1) 입양부모는 생물학적 부모와 동일한 휴가 권리를 가짐. (2) 입양자녀가 6개월 이상일 때, 어머니는 출산휴가 6주만 사용할 수 있음.
콜롬비아	x	x			
코스타리카		N/A	N/A	x	(1) 입양휴가 기간은 3개월임.
체코			x		
덴마크			x		
에스토니아			x	x	(1) 10세미만 입양자녀에 대해 70일의 입양휴가. 평균임금의 100%(상한없음) (2) 입양부모도 육아휴직의 권리 있음.
핀란드				x	(1) 19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입양기관이 발생한 증명서가 있을 때 입양일 기준 233일의 근로일동안 입양휴가 자격이 있음. (2) 입양부모는 육아휴직 시작후 2년동안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할 수 있음.
프랑스			x		
독일		N/A	x		
그리스			x		(1) 6세미만 입양자녀 대상
헝가리	x	x	x		(1) 한부모의 경우 입양할 수 없음.
아이슬란드	N/A	N/A	x		(1) 8세미만 입양자녀 대상
아일랜드		x	x	x	(1) 8세미만 자녀를 입양한 입양모, 입양부, 동성커플의 경우 지명된 부모는 40주의 휴가자격 있음(24주 유급, 16주 무급) (2) 입양당시 자녀가 3세미만인 경우 5세가 될 때까지 무급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입양당시 자녀의 나이가 3세-8세인 경우, 입양결정후 2년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함. (3)입양부모도 배우자휴가(입양휴가자격이 없는 부모), 육아휴직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양육 휴가	입양 휴가	비고
이스라엘	x	N/A			(1) 14세미만 입양자녀에 대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이탈리아	x	x	x		(1) 입양후 5개월 이내 배우자휴가, 출산휴가를 사용해야함. (2) 입양후 8년이내, 자녀 연령 18세미만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최초 30일에 대해서는 소득의 100%, 이후 5개월에 대해 30%의 급여를 지급함.
일본		N/A	x		(1) 법률혼 부부만 입양할 수 있음 (2)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된 6세미만 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친생부모와 동일한 육아휴직의 권리를 가짐.
한국			x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모만 입양가능
라트비아		x	x	x	18세미만 입양자녀에 대해 한쪽 부모가 10일의 입양휴가 사용가능.
리투아니아	x		x		출생후 70일이내의 신생아를 입양 또는 위탁양육하는 부모는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룩셈부르크				x	(1)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 입양할 수 있음. (2) 입양부모는 12주동안 100%소득대체(상한선: 룩셈부르크 비정규근로자의 최저사회임금의 5배) 휴가급여를 받음. 자녀가 12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잇음.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12세에서 16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10일 휴가가 있음.
멕시코			N/A	x	(1) 입양모는 입양일로부터 6주 유급휴가의 권리가 있음. 입양부(또는 파트너)는 근로일기준 5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음.
네덜란드			x	x	(1) 입양부모(장기가정위탁 포함) 각각 6주, 출산휴가급여액에 상당하는 소득대체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음. 휴가는 (경영상의 필요와 충돌하지 않는 한) 26주기간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음(자녀입양전 4주, 입양후 22주)
뉴질랜드	x	x	x		(1) 6세미만의 자녀를 공동입양하는 부부/파트너는 급여를 받을 부모를 지정할 수 있음.
노르웨이	N/A	x	x		(1) 입양부모는 생물학적 어머니의 산전 3주휴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에서 생물학적 부모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 (2) 해외입양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시기를 선택할 수 있음. (3)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해외입양부모는 NOK90,300 현금급여 혜택있음.
폴란드	x	x	x		7세이하 아동에 대해 유급육아휴직(10세미만 아동에 대한 예외규정있음)
포르투갈	x	x			
슬로바키아	x	N/A	x		(1) 입양부모는 3세미만 입양자녀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음.
슬로베니아			x		입양아동이 가족에 배치되거나 입양결정이 난 후 15일내 육아휴직을 개시해야함.
스페인	x	x	x		(1) 미만 또는 추가적필요(장애, 해외입양 등)가 있는 입양자녀에 대해 생물학적 부모와 동일한 휴가의 권리 있음.
스웨덴	N/A	x	x	x	(1) 동거하는 입양부모의 경우 입양시 각각 5일의 휴가(한 사람이 10일 모두 사용할 수 있음) 급여는 입양시 자녀 연령 10세미만(또는 2014년이후 입양시 12세미만)일 때 지급)
스위스			N/A	N/A	(1) 연방법상 규정 없음.
튀르키예	x				(1) 입양부모는 3세미만 자녀에 대해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양육 휴가	입양 휴가	비고
영국		x		x	(1) 입양부모중 한쪽이 52주 사용가능, 첫6주에 대해 입양휴가를 사용하는 주 입양자의 평균소득의 90%, 다음 33주에 대해 정액급여 151.97파운드 또는 세전평균주당소득의 90% 중 낮은 쪽 금액, 나머지 13주는 무급임. (2) 휴가를 이용하지 않는 입양부모는 배우자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미국	x				(1) 입양휴가 규정은 주별로 다름. (2) 가족 및 질병휴가법상 입양부모(파트너)는 12주의 무급휴가.
불가리아				x	(1) 입양부모는 5세미만 아동에 대해 365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음. (2) 휴가기간동안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세전 월평균소득의 90% 급여를 받을 수 있음.
크로아티아		N/A		x	(1) 입양부모가 취업중이면 18세미만 입양자녀에 대해 6개월의 입양휴가를 가질 수 있음(출산휴가와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한쪽 부모만 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2) 입양부모가 실업자이면 12개월의 휴가를 가질 수 있음. 한쪽 부모만 이용할 수 있음.
사이프러스				x	(1) 양육휴가는 무급임. (2) 양육휴가기간은 16주(12세미만 자녀),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를 입양한 경우 18주(대리모는 14주의 휴가를 가짐)
몰타		x	x	x	(1) 공공부문의 경우, 입양부모는 무급육아휴직과 무급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2) 민간부문의 경우, 입양부모는 4개월의 무급휴가(8세미만 자녀대상)를 1개월단위로 분할사용할 수 있음.
루마니아			x	x	(1) 입양부모는 입양휴가와 육아휴직 중 선택할 수 있음. 육아휴직은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입양휴가는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음. 입양휴가 또는 육아휴직에서 급여는 생물학적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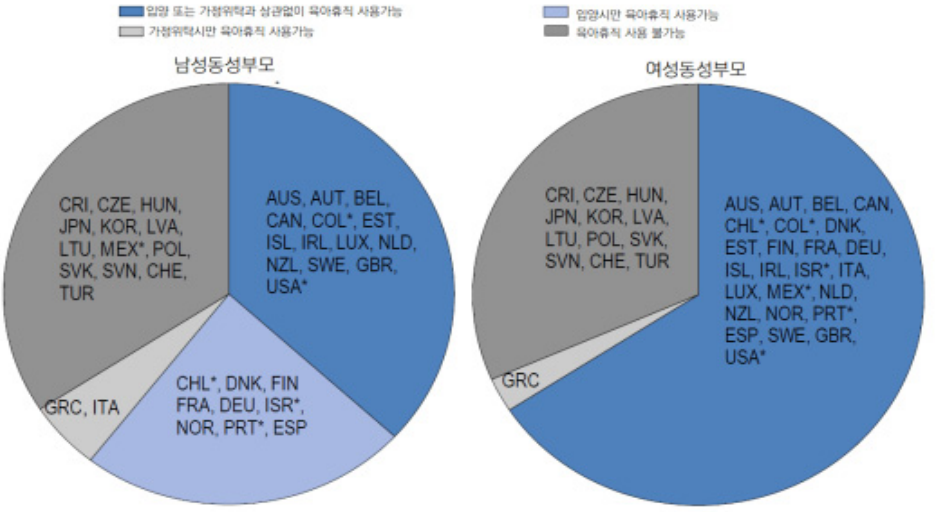
주: 자료는 전국 혹은 연방수준의 입양휴가에 관한 것이고 지역적 차이나 주/도 또는 지방정부(일본의 경우 오사카)에 의한 추가적/대안적 급여가 반영되지 않았다. N/A':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어떤 부모에게도 적용가능한 법률적 휴가제도가 없음을 의미함. 기준년도는 2022년 4월임.
출처: OECD(2023). Table PF2.6.3: Adoption leave entitlements

아래의 [그림 4-32]는 OECD 국가의 동성부모의 자녀휴가 이용자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① 입양 또는 위탁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음, ② 입양시만 가능함, ③ 위탁시만 가능함, ④ 불가의 4개의 범주로 OECD 국가를 분류했다. 먼저 남성동성부모보다 여성동성부모의 자녀휴가 접근성이 높고 입양이나 위탁이 아닌 경우에도 자녀관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많다. 여성동성부모의 경우 한국, 일본,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튀르키예 등의 국가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관련 휴가의 권리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리스는 가정위탁 부모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남성동성부모의 경우 동성혼, 동성결합이 허용된 국가라 할지라도 좀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여성동성부모일 경우 입양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칠레 9개국은 남성동성부모일 경우 입양한 경우만 자녀관련 휴가를 이용

할 수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남성동성부모에 대해 가정위탁시에만 자녀관련 휴가의 자격이 부여되며, 한국, 일본, 멕시코 등을 비롯한 17개국은 휴가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림 4-32] 성별 동성부모 자녀관련휴가 이용자격



주: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포르투갈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를 대상으로함. 이스라엘은 출산휴가만, 미국은 가족 및 질병휴가법에 근거함. 자료 기준시점은 2022년 4월임.
출처: OECD(2023). Chart PF2.6.1: Access to parental leave by gender for same-sex parents

4) Table PF2.6.4. 대리모 허용(Access to surrogacy) (개선필요)

PF2.6.4는 대리모 허용에 관한 것이다. 이 지표는 자녀관련휴가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지표이지만 임신출산과 관련해 자녀관련휴가의 마지막 지표로 포함되었다. 지표 정의에서 대리모(surrogacy)란 여성이 동의하에 법률적 부모가 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대리모는 직접적 성관계(전통적 대리모)가 아닌 의학적 보조생식기술을 이용하여 아이를 인공수태하여 임신, 출산하는 자궁대리모[93]로 제한한다.[94] OECD 국가들은 대리모 금지 국가, 이타적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 이타적 상업적 대리모 모두 허용하는 국가, 법률적 무효(void and unenforceable)인 국가,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 국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명확한 법률이나 규제가 없는(Neither statues no regulations address surrogacy) 국가로 분류되었

93) 김선혜(2019:66)는 자궁대리모를 출산대리모(gestational surrogacy)로 지칭하는데, 출산대리모는 임신한 아이와 유전적 관련이 없고 의뢰인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된 배아가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되고 대리모는 임신과 분만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대리모와 구분된다.
94) https://www.oecd.org/els/family/PF2-6-same-sex-parents-leave-entitlements.pdf(검색일 2023.03.01.).

는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기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선필요지표로 분류했다.

OECD국가중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의 중부유럽국가들, 헝가리,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미니아 등 동유럽 국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를 포함해 총 18개국에서 상업적, 이타적 대리모 모두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일본 등 8개국에서는 대리모 관련 명확한 법률이 없거나 대리모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대리모 계약은 무효이고 실행불가능하다. 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이타적 대리모가 합법이며 콜롬비아,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 등 4개국은 상업적, 이타적 대리모 모두 합법이다.

한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3조3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한다. 또 자궁대리모에 대한 명시적 법률은 없지만 법원 판례를 대리모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2018브15 결정〉(2018.5.18.) 에 따르면 "고전적 대리모의 경우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이 '자궁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95]에 의하여 무효이다" (김현진, 2019)라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법과 판례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를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와 동일하게 "대리모계약은 무효이며 시행불가하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96]

95)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96) 대리출산을 체외수정관리본부의 허가로 규제,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내용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2006년 4월 발의),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2006년 10월) 등 관련 대리모 관련 조항이 들어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김선혜, 2019).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영리적 목적의 배아, 난자, 정제 제공, 이용, 유인, 알선을 처벌하지만 대리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표 4-27〉 Table PF2.6.4. 이타적 대리모와 상업적 대리모의 법적 지위, 2022

	상업적 대리모	이타적 대리모	비고
호주		x	대부분의 주에서 이타적 대리모는 합법
오스트리아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벨기에			대리모 계약은 무효, 시행불가함
캐나다		x	이타적 대리모 합법(퀘벡지역 제외)
칠레			대리모 관련 법률 없음
콜롬비아	x	x	
코스타리카			대리모 관련 명시적 입법 없음
체코공화국			대리모 계약은 무효, 시행불가함
덴마크		x	전통적 이타적 대리모만 합법
에스토니아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핀란드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프랑스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독일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그리스		x	이성애커플과 독신여성에 대해서만 이타적 대리모 허용
헝가리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아이슬란드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아일랜드			대리모 계약은 무효, 시행불가함
이스라엘	x	x	동성커플은 대리모 이용할 수 없음. 대리모는 엄격히 규제되며 다른 수단을 통해 자녀를 자질 수 없는 개인들에게만 허용됨.
이탈리아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일본			대리모 관련 명시적 법률과 규제가 없음
한국			대리모 계약은 무효, 시행불가함
라트비아			대리모 관련 명시적 입법 없음
리투아니아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룩셈부르크			대리모 규제 없음.
멕시코	x	x	대리모 관련 법률이 모호하지만 실행되고 있음.
네덜란드		x	이타적 대리모는 합법이지만 제한요건 있음.
뉴질랜드		x	
노르웨이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폴란드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상업적 대리모	이타적 대리모	비고
포르투갈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슬로바키아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슬로베니아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스페인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스웨덴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해외에서 대리모를 이용한 경우 인정함.
스위스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튀르키예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영국		x	대리모계약법, 비영리적 이타적 대리모는 허용
미국	x	x	이타적 상업적 대리모의 합법성은 주별로 다름.
불가리아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크로아티아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사이프러스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대리모 금지
몰타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루마니아			모든 형태의 대리모 금지

주: 표의 자료는 국가수준 또는 연방수준의 대리모 접근성에 관한 것이며 일부국가에서 주/도 혹은 지방정부 수준(예를 들어 캐나다의 퀘벡)의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국제대리모에 관한 법률은 포함하지 않음. 데이터는 2022년 4월기준임.
출처: OECD(2023). Table PF2.6.4: Access to surrogacy에서 한국자료 수정

요컨대, 대리모 허용(대리모의 법적 지위)지표는 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 지표(PF2.6)의 하위 지표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표들을 통해 OECD 국가들은 동성부모 인정여부, 대리모의 법적 지위 등 다양한 가족의 포용, 생명윤리와 여성인권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리모와 관련하여 OECD 국가는 대리모 금지 국가, 이타적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 이타적 상업적 대리모 모두 허용하는 국가, 법률적 무효(void and unenforceable)인 국가,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 국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명확한 법률이나 규제가 없는 국가(Neither statues no regulations address surrogacy)로 분류되었는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기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선필요지표로 분류했다. 한국은 생명윤리법에 의해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고, 법원 판례는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리모 계약이 법률적 무효인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사. 자녀관련 휴가 지표 요약

자녀관련 휴가(휴직)는 출산전후시기부터 초기양육기까지 모성보호, 소득안정, 아동의 안정적 발달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별 휴가급여의 수준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제도

구성과 조합도 다양하다. PF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 특징 지표는 자녀 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유급 자녀관련 휴가 제도의 관대성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1차연도 검토결과 세부지표 모두 적절지표로 분류되었다. 2022년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자녀휴가(PF2.1.A.)는 헝가리(휴가기간 160주, 소득대체율 68.2%)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서 휴가의 관대성이 높은 반면, 한국은 휴가기간은 길지만(64.9%)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52.4%) 특징이 있다. 한편,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자녀휴가(PF2.1.B.)에서 제도적 보장수준은 일본과 한국이 가장 높다. OECD 평균 휴가 기간이 10.4주에 불과한데 일본(52주)과 한국(54주)이 긴 휴가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균등화점수는 일본 31.9주, 한국 25.2주로 OECD 국가중 가장 높다.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및 공유기간(Chart PF2.1.D.)에서 2022년 어머니 할당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권리가 개별적 권리(individual right)로 보장되는 한국(64.9주)과 일본(58주)이며, 아버지 할당기간 역시 한국(54주)과 일본(52주)이 가장 긴 휴가를 제공한다. 양국 모두 공유기간은 없다. 자녀관련 휴가 공적 지출을 1인당 지출의 구매력지수(PPP조정)로 측정했을 때 2019년 룩셈부르크의 1인당 지출 수준($76,334)이 가장 높고 동유럽국가와 북유럽 국가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속해있다. 한국은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은 지출규모($3,301)를 보인다. 자녀휴가(휴직)에 대한 공적지출 규모는 기간, 이용자수, 소득대체율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간은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휴가 휴직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하위권의 지출수준을 보인다.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 현황 지표는 1차연도 검토결과 (남성) 유급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를 제외하고 이용자수와 관련된 나머지 3개의 지표는 적절지표로 분류되었다. 2021년 (여성)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PF2.2.A.)에서 OECD 국가의 평균은 출생아 100명당 68명이다. 한국(2020년)은 출산전후휴가 이용률이 26.1명에 불과해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석 등을 통해 공무원, 교원, 군인을 포함하지 않다는 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PF2.2.C.)는 성별통계로 생산되는데 2021년 출생아 100명당 남녀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09명, 남성 349명(해당년도 육아휴직자수 기준)이며, 한국은 여성 48.0명, 남성 14.1명이다. 한국은 여성 이용자수에서 하위권이지만 남성 이용자수는 상대적으로 많다. 육아휴직자중 남성 비중(PF2.2.D.)은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고(53.3%) 한국은 중위권수준으로 22.7%를 보였다. 누락지표로 분류된 유급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를 고용보험통계를 통해 산출하면 2021년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7.0명 수준이다. 2021년 배우자출산휴가 통계를 보고하고 있는 OECD 18개국 평균은 (출생아100명당) 57명으로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배우자출산휴가는 고용보험 통계를 이용해 지표생산을 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PF2.3 취업부모 추가휴가는 출산및 육아휴직 이외의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것으로 한국과 관련된 휴가일수와 휴가규정에서 수정이 필요해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했다. 법정 및 단협 휴가일수(PF2.3.A) 지표에서 한국의 공휴일은 15일로 보고되었으나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1일을 포함하여 16일로 수정하였으며, 공휴일 규정도 무급에서 유급으로 수정하였다.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포함한 한국의 총 휴가기간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짧지만 다른 유럽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며 법정 연차휴가가 상대적으로 짧고, 공휴일은 상대적으로 긴 특징이 있다.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 지표(PF2.3.B)는 각국의 돌봄휴가 및 휴직의 급여내용, 자격기준, 기간, 급여수준 및 조건을 열거한 지표로 1차연도 검토결과 한국은 가족돌봄을 허용하는 가족의 범위와 자격요건이 불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어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되었다. 가족돌봄휴직 자격요건으로 현재 고용주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을 추가하였으며, 돌봄휴가의 가족범위를 확대가족으로 수정하였다. OECD 국가중 일부 국가는 돌봄휴가 및 휴직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나 상병급여 수준의 높은 소득대체 급여를 제공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돌봄휴가(휴직)은 무급이며, 돌봄가족의 범위 역시 함께 사는 가족을 넘어 가구원이나 친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확장되는 나라들도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혈연중심의 확대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다.

PF2.4 자녀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지표는 세부지표 5개중 AW(평균임금소득자) 대비 소득대체율 지표 3개는 적절지표로 분류되었으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net equivalized household income) 대비 소득대체율 지표 2개는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되었다. 적절지표로 분류된 AW 소득대비 어머니 출산전후 휴가의 소득대체율은 2014년 79.7%로 OECD 평균 77.6%보다 약간 높았으며, 어머니의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은 29%로 OECD 평균 48%보다 낮았다.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 72%이고 한국은 29.8%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개선필요 지표인 출산1년전 가구소득 대비 출산한 달 가구소득의 비율의 경우 출산휴가급여가 과세대상인데 기존 값에서는 비과세 값으로 투입되어 이를 수정하였고 2014년 당시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이지만 상한선(135만원)적용과 사후지급금(15%)으로 인한 감액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였다. 또 다른 지표는 출산후 시간경과에 따라 산후0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시점의 가구소득변화에 관한 것이다. OECD 39개국의 순가구소득대체율은 출산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한다. OECD 평균 산전1년 대비 순가구소득대체율은 산후 0개월 82.3%, 6개월 69.7%, 12개월 67.9%, 24개월 57.7%로 감소했다. 한국의 가구소득대체율은 산후 0개월일 때는 88.8% 수준으로 높았으나 6개월 66.8%, 12개월 66.1%, 24개월 65.1%로 낮아졌다.

PF2.5 자녀관련 휴가급여추이 지표는 1970년, 1995년 2023년 세개의 시점에서 어머니가 사용

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PF2.5.A.)과 휴가 최초도입연도 및 기간(PF2.5.B.)을 측정하는데 1차 연도 검토결과 기간값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선필요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전후휴가 60일이 보장되었으므로 1970년 숫자를 8.6주(60일)로 정정하였다. 또, 육아휴직제도가 (무급) 고용보장급여로 도입된 최초시기인 1987년 당시 육아휴직은 유급산전후휴가기간과 합산하여 총 1년(52주)를 보장하였다. 당시 유급산전후휴가가 30일이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335일(47.9주)로 수정하였다.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PF2.5.C.)은 적절 지표로 분류되었다. 2022년 아버지 유급휴가기간은 OECD 평균 10.4주로 1970년 0주, 1995년 0.9주에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한국은 54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휴가기간만 본다면 OECD 국가에서 가장 긴 기간의 아버지 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PF2.6 동성부모,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 지표는 법률혼, 이성부모, 친생부모가 아닌 가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권리를 점검하는 지표이다. 동성혼과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동성부모도 이성부모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동성혼과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관련 휴가자격 역시 부여되지 않는다.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부모가 혼인상태에 있어야만 입양을 할 수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입양기준을 갖고 있다. 또 OECD 국가 중에는 입양시에도 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국가가 있으나 한국은 육아휴직만 이용할 수 있다. 대리모 허용은 개선필요 지표로 분류되었다. OECD 국가중 18개국이 상업적, 이타적 대리모를 모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데, 영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제하며 미국은 주별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한다. 1차연도 분류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리모 관련 명시적 법률과 규제가 없는 국가로 분류되었는데 최근의 법률과 판례를 고려하여 한국은 “법률과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대리모 계약은 무효이며 시행불가한 국가”로 변경하였다.

제3절 소결

이 절은 가족·아동정책 지표중 가족·아동 정책 전반에 걸쳐 지출수준, 급여액, 관련 법적 규정 등을 지표화한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PF1 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와 구체적인 정책 영역 수준에서 자녀관련 휴가 정책의 특징과 사용현황 등을 지표화한 '자녀관련 휴가 지표(PF2 Child-related leave)'를 검토하였다. 1차연도 검토결과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는 총 34개중 적절 17.5개, 개선필요 9개, 누락 5.5개, 자료없음 2개로 구분되었다. 이중 8개의 지표에 대해서 분류체계 검토, 근거값을 투입한 재계산을 통해 검토결과가 변경되었다. 2차연도 최종검토 결과는 적절 21개, 개선필요 5개, 누락 4개, 자료없음 2개, 지표생산불필요 2개로 변경되었다. 자녀관련 휴가 지표는 총 23개중 적절 14개, 개선필요 7개, 누락 1개, 자료없음 1개로 판단하였다 이 절에서는 자료없음 지표 3개와 해당없음 지표 2개를 제외하고 적절, 개선필요, 누락 범주에 해당하는 총 52개 지표를 검토했다.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에 대한 1차연도 검토결과 개선필요 지표로 판정된 지표중 5개지표가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보미서비스, 자녀장려금과 같은 정책의 분류와 관련된 것이었다. 2차연도 검토결과 기존의 OECD 분류를 유지하여 가정양육수당은 가족정책의 현금급여로, 자녀장려금과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족정책이 아닌 '기타사회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97] 이로써 공적 가족급여지출의 4개지표(가족급여유형별 공적 지출총계, 현금급여 지출, 현물급여 지출, 조세지출)과 가구 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 지표 등 총 5개의 지표는 적절지표로 재분류되었다. 한편, Chart PF1.3.A.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수준은 구체적인 변수값을 투입하여 계산한 결과 '적절'에서 '개선필요'로 변경되었고, Table. PF1.5.B. 한부모가족 추이(및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추이)와 자녀양육비 수준 지표는 지표생산을 검토하였으나 국제비교 지표의 시의성 및 자료원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누락'에서 '지표생산 불필요' 지표로 분류되었다.

누락지표인 연령집단별 순이전 비율은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였다.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은 2010년 이후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1인당 소비총액, 연령별 이전의 규모 등 지표 생산을 위한 근거값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OECD 국가들과 비교

97) 아이돌봄서비스는 2020년 통계부터 가족지출에 반영될 예정이다.

할 수 있는 통계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이 지표는 OECD 통계 자체가 9개국만을 포함하고 국가별 비교년도도 일치하지 않아 표준화정도가 높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실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향후 지표 생산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년연령 지표 전체와 아동보호 특성 지표 중 상해 아동 사망률 지표는 적절 지표로 분류되었다. 성년연령지표는 성년연령, 형사책임연령, 최소혼인연령, 의무교육종료연령, 최소근로연령, 음주 최소연령, 주류구매 최소연령,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 등 8개 하위 연령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적절지표로 분류되었다. 아동보호 특성 지표 중 의도적 상해 및 우발적 상해에 따른 아동사망률 지표는 적절 지표로,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 및 규제 지표는 누락 지표로 분류되어 아동종합실태조사, 행정자료 등을 통해 산출해 보았다.

다음으로, 자녀관련 휴가 지표는 1차연도 분류가 2차연도에도 거의 유지되었다. 다만 자녀관련 휴가에서도 지표값 계산에서 수정, 제도적 법률적 규정과 관련된 수정, 지표값의 단순 누락 사항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한 지표들이 있어 이를 수정, 개선했다.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의 2개지표(출산후 첫째달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 대체율, 출산후 시기별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는 지표년도가 2014년으로, 기준년도가 오래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는 지표이다. 2014년 한국 통계가 입수가능해 비교년도의 일치를 위해 해당 년도 자료를 사용해 재계산했다. 또, 자녀관련휴가에서 휴가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규정과 관련된 일부 지표들, 즉 법정 휴가일수, 가족돌봄 휴가제도 개요, 육아휴직 최초 도입년도및 기간, 대리모 법적 규정 등의 개선필요 지표는 관련 제도적 법률적 내용을 검토하여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하였다.

자녀관련휴가에서 누락지표는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이다. 이 지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통계를 이용해 분기별, 연도별 지표로 공표하고 있다. 이 통계는 고용보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교원, 군인, 대기업 근로자 등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OECD 통계 작성 기준에서 공적 지출이 아닌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용자 수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용보험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를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지표 주석 등의 국가별 특성 설명에서 이용자 포괄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가족·아동정책 총괄' 및 '자녀관련 휴가'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를 통해본 한국의 가족아동 정책의 수준 및 특징은 여전히 공적 지출 규모가 낮다는 것이다. 가족정책 공적 지출 규모에서 2019년 OECD 평균은 GDP 대비 2.3%인데 한국은 1.6%로 39개국중 34번째 수준이다. 정책 대상자 확대, 급여수준 확대 등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은 아동수당과 같은 주요 현금급여의

대상이 8세미만으로 제한되고 초중등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에 대한 현금급여가 없어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대상범위와 소득대체율도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공적 사회지출 지표를 살펴보면, OECD 35개국중 12-15위수준으로 중상위권에 위치하지만 0-5세 초기아동기를 제외한 6-11세, 12-17세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공적 지출의 90%이상을 교육비지출이 차지했다. 조세 및 복지급여의 형평성에서 OECD 국가들은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가구에 유리하게, 또 동일소득 가구의 경우 홑벌이보다 맞벌이가구에 유리하도록 지원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은 조세및 급여체계를 통한 재분배효과가 적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홑벌이보다 맞벌이가구를 지원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 한국은 2차소득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에도 조세및 조세급여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참여세율이 높지 않은 특징이 있다.

둘째, 자녀관련 휴가 정책의 지표를 분석했을 때, 한국의 지표값은 휴가기간은 길고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이 개별 노동자의 권리로 부여되어 아버지 휴가 기간이 길고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관대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평가되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아1인당 공적 지출이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간은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휴가를 실제 이용한 (또는 할 수 있는) 이용자수는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가 사용시 소득안정성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출산 직후의 소득대체율은 낮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출산전후 휴가에 비해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사후지급분으로 인한 급여감소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0년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개선해왔으므로 최근 년도의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 값, 기간별 소득대체율 값 모두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요약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가족정책의 지출 수준이 낮고 연령별로 영유아가구에 집중된 특징을 보여 초중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출산휴가및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대상자 확대, 이용자수 확대, 소득대체율의 개선등이 필요하다. 특히 성평등한 양육참여와 관련하여 배우자출산휴가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재원의 공공성을 높여 커버리지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또 육아휴직 남성 이용자 비율은 2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남성의 돌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겠다.

05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제1절 아동돌봄서비스 지표의 구성

아동돌봄서비스 지표는 OECD 국가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서비스 지원체계와 지원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2023년 진단 결과(김은지 외, 2023)를 기반으로, '개선 필요'와 '누락'에 해당하는 세부 지표를 산출하고, 산출된 지표와 '적절' 지표를 대상으로 한국 상황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김은지 외(2023)의 1차연도 지표분석에 따르면, 아동돌봄서비스 지표에서 적절하게 보고된 것으로 평가된 지표는 PF3.4의 '보육료 지원'과 PF4.2의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에 관련된 지표이다. '보육료 지원'은 총보육비, 맞벌이가구 순보육비, 한부모 가구의 순보육비가 포함되는데, 한국 지표는 세부 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 비교에는 무방하여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의 지표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과정과 배치 기준이 달라서 OECD 산출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이들 교사의 양성과정은 유보통합의 추진에 따라 일원화가 예고되어 있으므로, 관련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최신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개선 필요'와 '누락'에 해당하는 지표는 PF3.2의 '0~2세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과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이다. 이들 지표는 보육통계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고되어 모의 교육수준별 자료와 주당 서비스 이용시간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누락된 정보를 포함하는 법정 실태조사(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누락된 지표를 산출하였다. 단, 해당 자료는 2018년 기준이어서 해석에 제약이 따른다.

한편 2차연도에 지표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한 결과, 일부 지표는 외부에 전체 변수가 공개되지 않거나 1차연도 연구 이후로 지표가 개편되어 '개선 필요'에서 '적절 지표'로 검토결과가 변경되었다. 즉,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지출(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은 산출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고, PF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는 2024년에는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편하는 중이므로 '적절' 지표에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표 5-1〉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ducation)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	개선 필요	적절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	O	개선 필요	적절
PF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O	개선 필요	
		0~2세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income, 0- to 2-year-olds)	X	자료 없음	
		0~2세 모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X	누락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X	누락	
		3~5세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O	개선 필요	
		3~5세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	O	개선 필요	
PF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X	자료 없음	
		아동 연령과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X		
		아동 연령과 모의 교육수준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mother's education level)	X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X		
PF3.4	보육료 지원 (Childcare support)	총 보육비(Gross childcare fees)	O	적절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two-earner couple family)	O	적절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single-parent family)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결과
PF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아동돌봄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O	개선 필요	적절
PF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유치원(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2018)	O	적절	
		영아보육(0~2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 2018)	O	적절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Minimum qualifications for ECEC professionals)	O	적절	
PF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Out-of-school-hours care)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X	자료 없음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during a usual week)	X	자료 없음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X	자료 없음	
		모의 교육수준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mother's education level)	X	자료 없음	

지표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과 최종 산출된 지표를 활용한 한국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 서술된다.

제2절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1. 영유아 공보육·교육

가.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1) Chart PF3.1.A.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적절)

이 지표는 영유아 대상의 보육·교육서비스 부문의 재정 지출 수준을 보여주며, 생애초기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한 출발선 보장과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의 수준을 말해주며,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된다.

1차연도 연구에서 한국은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을 보고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김은지 외, 2023: 159). 현재 SOCX 자료에서 유아교육비 지출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재정 조사 결과 값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등과 같이 0~5세 이상 아동 연령대를 포괄하는 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지표에 포함되는 사업은 공개되고 있고 있으며, 아동 연령에 따른 개선은 SOCX 분류체계의 전반적인 개편 시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되어 '적절' 지표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아동복지서비스 부문의 재정 지출은 2019년 기준으로 1,185,719백만원으로 GDP 대비 0.06%에 그친다.

〈표 5-2〉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공공 지출 수준(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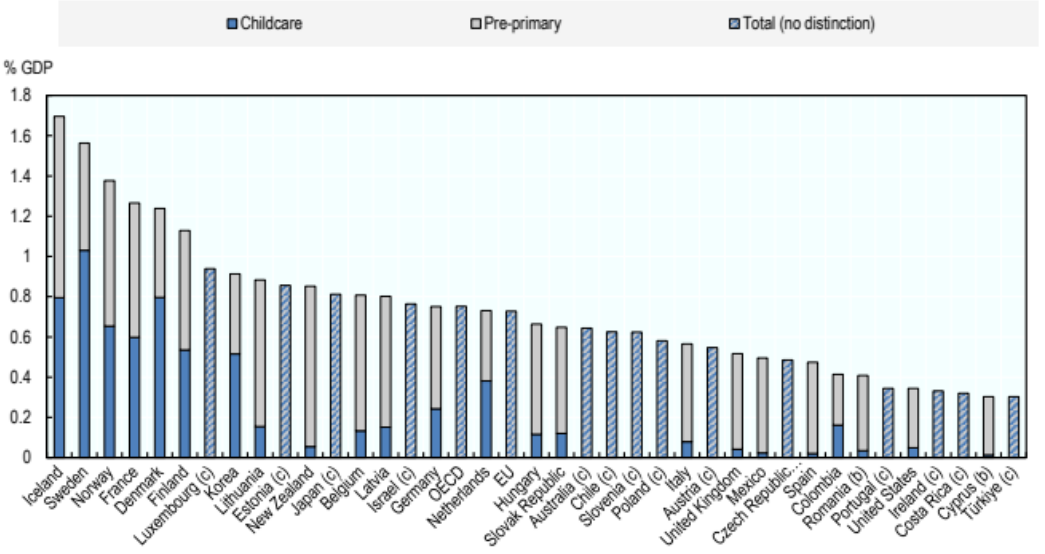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OECD SOCX 분류	2019 규모(국비+지방비)	GDP %(1,924,498,100)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17,571,889	0.91
Child welfare services	1,185,719	0.06
Childcare subsidy(Vouchers for Childcare Service)	8,735,660	0.45
Pre-primary education (3-5 years old)(Vouchers for Childcare Service)	7,650,510	0.40

[그림 5-1] Chart PF3.1.A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2019)

Chart PF3.1.A.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ublic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and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s a % of GDP, 2019 or latest available [a]



주: 1) 일부 국가들의 경우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과 재원부담에 있어 지방정부가 핵심역할을 수행하는데,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지출이 포함되어있으나, 일부 연방국가의 경우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음.
2) 非 OECD EU 국가들의(사이프러스, 루마니아) 자료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차이에 대해 데이터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서비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돌봄 및 유치원 교육에 대한 총 공공지출을 반영하고 있음.
3) 교육 수준 별 데이터 분류는 불가
4) 위 자료는 영국의 EU 탈퇴(2020.2.1.) 이전 자료로, EU 국가 자료는 곧 영국을 포함하고 있음.

출처: OECD 국가들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사이프러스 및 루마니아 자료는 Eurostat.; OECD(2023). Chart PF3.1.A.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서 재인용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와 프랑스의 공공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보육 부문에 재정 투자를 보이는 국가로는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각각 0.8%와 0.7%로 교육 부문의 재정투자에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에서는 북유럽국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은 0.8%로 나타나며, 일본은 이와 동일한 수준을 보인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는 0.9%로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북유럽국가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와 유치원에 투자하는 공공 지출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투자 비중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에 비해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투자가 유치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모(母)의 취업률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한편 OECD의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의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지표는 0~2세 대상 정규 보육시설과 3~5세 대상 유치원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현금 급여와 현물 지원을 포함하므로(OECD, PF3.1, 2023: 1), 한국 자료는 2020년 이후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재정이 추가로 반영되어 산출되어야 한다. 즉, 아이돌봄서비스와 더불어 2020년부터 지원되는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부문의 재정 지출이 반영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의 소요 예산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 제시된 내용 외에도 따로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2022년부터 지급되는 영아수당과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중에서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에 지출된 재정을 구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다.

〈표 5-3〉 공공 지출 반영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 예산(2019-2024)

(단위: 억원)

부처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건복지부	연장보육료	-	639	929	692	775	775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2,245	2,439	2,514	2,777	3,546	4,678

주: 억 단위 이하 절사함.
출처: 1)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23.
2)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25, 28.
3)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23, 25.
4)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24, 27.
5)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26, 28.
6)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56, 61.
7)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요약). p. 4.
8) 여성가족부(2020).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17.
9)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18.
10) 여성가족부(2022).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20.
11)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18.
12)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20.

요컨대,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비중은 생애초기 아동의 출발선 평등과 여성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며, 이는 영유아 대상의 보편적 보육·교육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보육서비스 부문의 재정 투자가 유치원과 유사한 수준여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비교하여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母)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영아자녀를 둔 가구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모의 취업률이 보육서비스 재정 투자 수준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2) Chart PF3.1.B.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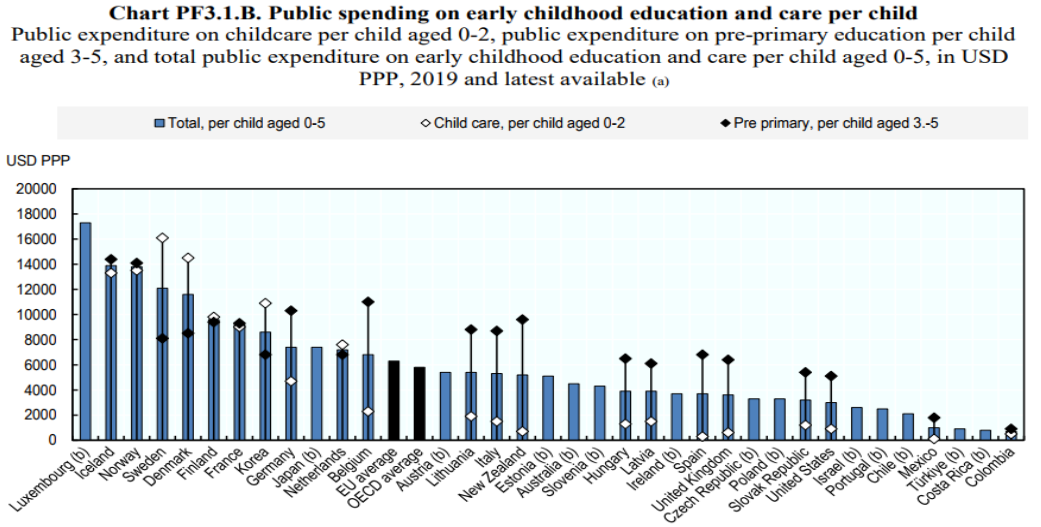
이 지표는 앞서 다룬 PF3.1A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재정 지출 수준을 아동 기준으로 산출하여 아동의 성장 및 발달 지원의 수준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 지표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부문의 재정 지출 총액을 0~5세 아동수로 나눈 후, 이를 미화 기준 구매력 평가지수(PPP)로 환산하여 산출된다. 1차연도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에게 지출되는 재정을 제외하고 산출해야 하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였으나(김은지 외, 2023: 159), PF3.1.A.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표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표에 포함되는 사업은 공개되고 있고 있으므로 '적절' 지표로 변경하였다.

아동 1인당 ECEC 관련 전체 공공 지출은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아동 1인당 미화 5,800불(구매력평가지수)를 지출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격차로 두드러진다(OECD, PF3.1, 2023: 2).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만 0~5세 아동 1인당 11,000불을 지출하며, 이 중 룩셈부르크는 아동 1인당 17,000불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튀르키예에서는 만 0-5세 아동 1인 당 평균 2,000불을 지출하는 데 그친다(OECD, PF3.1, 2023: 2). 또한 아동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개별 국가별로 그 비중이 달리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0~2세와 3~5세의 1인당 재정 지출은 스웨덴에서는 16,100불과 8,100불로 약 2배 차이를 보이는 반면, 핀란드에서는 9,800불과 9,400불로 영아와 유아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영아보육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유아에 비해 영아보육의 접근성은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의 주된 변수가 되므로 여성 노동권 보장이 강조되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영아보육에 대한 재정 투자 비중이 유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에서 한국은 8,600불을 지출하여 OECD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북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연령별로는 0~2세 10,900불, 3~5세 6,800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영아 무상보육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아보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욕구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서 여성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편 이들 국가별 재정 투자 수준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이외 국가들에서는 그 비중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 간 비교 분석에 제약이 따른다. 이와 더불어 아동 1인당 비용을 위한 미화 기준 구매력 평가지수(PPP)에 대한 세부내용이 추가로 요구된다.

[그림 5-2] Chart PF3.1.B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2019)



주: 1) 일부 국가들의 경우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과 재원부담에 있어 지방정부가 핵심역할을 수행하는데,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지출이 포함되어있으나, 일부 연방국가의 경우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음.
2) 교육 수준 별 데이터 분류는 불가
3) 위 자료는 영국의 EU 탈퇴(2020.2.1.) 이전 자료로, EU 국가 자료는 곧 영국을 포함하고 있음.
출처: OECD 국가들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사이프러스 및 루마니아 자료는 Eurostat; OECD. (2023). Chart PF3.1.B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에서 재인용

나. PF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1) Chart PF3.2.A.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개선필요)

이 지표는 0~2세 아동이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육·교육기관에 등록한 비율을 의미한다(OECD, PF3.2, 2023: 1). 일반적으로 보육·교육서비스는 통상 ISCED 2011 레벨0에 해당하는 ECEC 서비스(의도적으로 교육적 요소를 포함한 기관 기반의 ECEC 서비스)와 ISCED 2011 레벨0 범위 외의 다른 등록된 ECEC 서비스(의도적인 교육적 요소를 충족하지 못해 ISCED 2011 레벨0 기준에는 미치지는 못하나, 등록된 서비스의 경우)를 이용하는 아동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OECD 통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등록된 ECEC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든 만 0~2세 아동을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포함된다.

기존에 보고된 한국의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육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육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주민등록상의 실제 연령이 아니라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로, OECD의 산출 기준과는 약간

상이하다(김은지 외, 2023: 161에서 재인용). 한편, '보육통계'는 어린이집 이용자 수만이 집계되어 보고되기 때문에, 이용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 자료를 통해 연령별 전체 영유아 수를 확인하여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는 각 세별로 자료가 제공되므로, '보육통계' 자료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보육연령 0세아는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2개 연령의 아동수를 합산하여 산출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보육통계'는 어린이집 이용자 현황 자료이므로, 반일제 이상 학원[98]은 보육·교육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경우 자녀의 실제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할 수 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승인통계 자료로서, 전국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전국 단위 조사이다. 단, 가장 최근 조사인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는 아직 공표 전으로, 이 연구에서는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하였다.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된 영아의 연령 구분 기준은 조사당해(2018년) 12월 31일에 영유아가 도달하게 되는 연령이다. 이는 동일 출생코호트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보육·교육기관에서 동일 연령반(학급)을 구성하게 되며, 월령이 지나더라도 연중 동일한 학급에서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인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99] 자료를 기준으로 0~2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출생코호트는 2016년생~2018년생이다. 한편,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산출 시에 포함되는 보육·교육서비스는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한국에서는 유치원의 이용이 4세[100]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전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이다.

산출 결과, 한국 0~2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50.2%로, OECD 평균(36%)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국가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튀르키예의 경우 1% 미만이며,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경우 6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OECD, PF3.2, 2023:2).

한편, 기존의 '보육통계'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한국의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2018년 기준)은 62.7%로, '전국보육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와는 12.5%p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원자료가 달라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3세가 산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경우 전체 0~2세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이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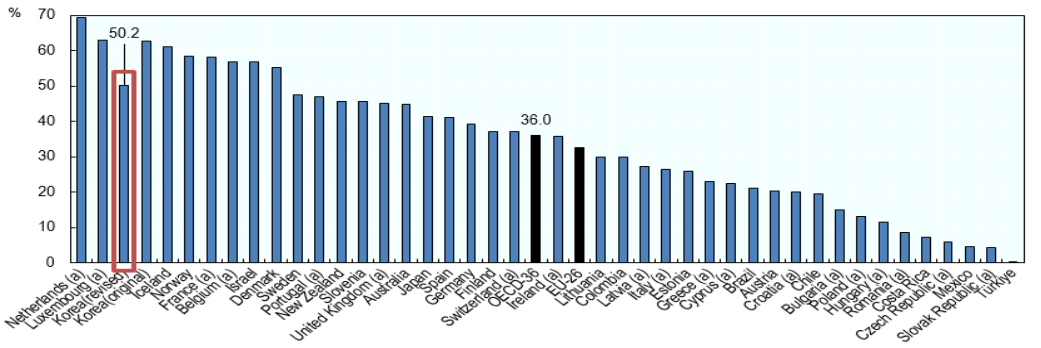
98) 단, 0~2세 영아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이로 인해 통계 수치의 과소 추정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님.
99)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조사기준일은 9월 1일임.
100) 기존의 보육연령 기준으로 3세임.

이러한 수치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단, 기존의 보육연령 기준으로 산출된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62.7%)에 비해서는 실제 연령 기준으로 산출된 서비스 이용률이 12.5%p 낮은 수치이다. 즉, 기존의 통계 산출 방식으로는 한국의 0~2세의 기관 이용률이 지나치게 높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새롭게 산출된 이용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북유럽국가의 영아 기관 이용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14.2%p가 높은 수준으로, 이는 2013년 이후 도입된 무상보육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육 욕구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영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영아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5-3] Chart PF3.2.A.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Chart PF3.2.A.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Percent of children enroll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ISCED 0 and other registered ECEC services), 0- to 2-year-olds, 2020 or latest available



주: 1) 그림의 자료는 주로 유아교육 서비스(ISCED 2011 level 0) 및 그 외 등록된 ECEC 서비스(ISCED 0 범주 밖에 있는 서비스, 이는 ISCED-2011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에 등록된 아동들을 포함한다.
2)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영국은 2018년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일본은 2019년 자료를 참고하였다.
3) 등록 관련 데이터와 인구 범위 자료의 불일치(지역 범위 또는 자료 참고일자의 차이로 인한) 로 인해 등록율의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ISCED 2011 level 0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서비스의 분류법에 대해서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0 B2 지표를 참고(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
5) 일본의 경우, ISCED의 인정을 받거나 인증(registered)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돌봄 서비스와(공공 및 민간 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체계화된(organized) 가정어린이집 및 전문 아동돌보미가 제공하는 유료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기관돌봄 서비스(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 및 사립 모두 포함)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 전문가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자료를 모두 참고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의 인증, 또는 ISCED 인정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6) a. EU-SILC 정보에 따른 OECD 추정 데이터를 사용한 국가: 벨기에, 체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루마니아임.

출처: 1) EU-SILC (해당국가: 벨기에, 체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루마니아), 2) 일본: 보건노동복지부의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자료, 3) 여타 국가들: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OECD Indicators(http://oe.cd/EAG); OECD(2023). Chart PF3.2.A.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에 한국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반일제 이상 학원 포함

2) Chart PF3.2.C. 0~2세(영아)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누락)

모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앞서 PF3.2.A.의 보육·교육서비스 개념에 비해 포괄 범위가 좀 더 넓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F3.2.C.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산출 시 적용되는 보육·교육서비스 개념은 PF3.2.A.와 마찬가지로 기관 기반 서비스와(공공 및 민간 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체계화된(organized) 가정어린이집 뿐 아니라 전문 아동돌보미가 제공하는 유료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들을 포함하고 있다(OECD, PF3.2, 2023:1).

한편, 모의 교육수준은 대학 과정(ISCED 2011 레벨 5-8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수료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2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한국의 경우 ISCED 2011 레벨 5-8에 해당하는 학력이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로,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이상 과정(석사, 박사) 졸업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PF3.2.C.에 해당하는 수치가 누락되어 있는 데, 이는 '보육통계'는 행정통계자료이므로 모의 학력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육·교육서비스에 해당하는 자료도 어린이집 이용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모의 학력수준별 이용률 산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 지표가 포괄하는 보육·교육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산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PF3.2.A.와 마찬가지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이 지표를 산출하였다. 단, 이 지표 산출 시 보육·교육서비스는 PF3.2.A.보다 범주가 좀 더 넓어 전문 아동돌보미가 제공하는 유료 돌봄서비스 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여기서 사용한 영유아의 연령은 PF3.2.A.와 마찬가지로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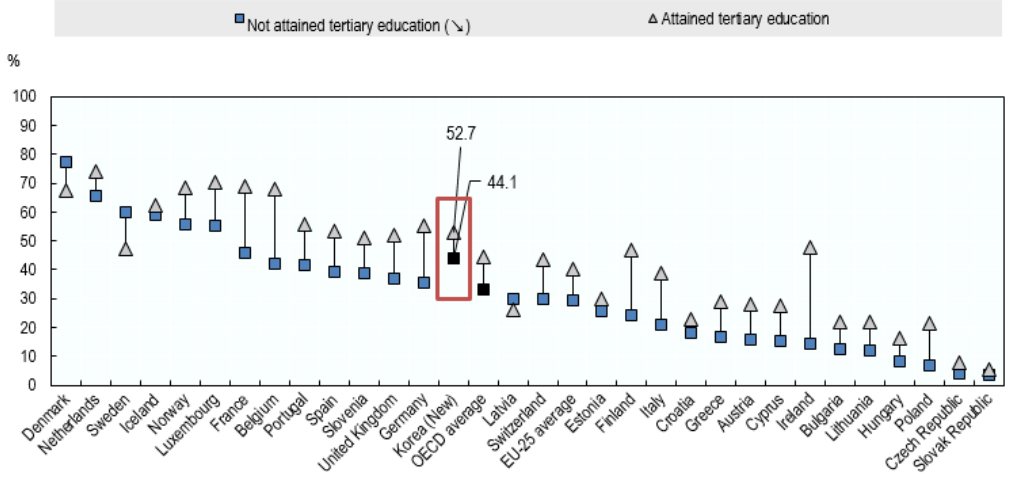
산출 결과, 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ISCED 2011 레벨 1-4)인 영아(0~2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44.1%이며, 모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ISCED 2011 레벨 5-8)인 영아(0~2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52.7%였다. 즉, 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모의 학력이 고졸이하(ISCED 2011 레벨 1-4)인 영유아(0~2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33.3%이며, 모의 학력이 전문대졸이상(ISCED 2011 레벨 5-8)인 영유아(0~2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44.4%로,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해서는 낮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보였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하지만, 덴마크, 라트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모의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에 오히려 영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의 격차는 한국의 경우 8.6%p로, OECD 평균 11.1%p에 비하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0~2세 영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의 격차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영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모의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5-4] Chart PF3.2.C. 0-2세(영아) 모(母)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2020)

Chart PF3.2.C.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0- to 2-year-olds, by mother's education level, 2020 or latest available



주: 1) 아이슬란드와 영국은 2018년 자료, 독일과 이탈리아는 2019년 자료를 참고함.
2) EU-SILC 정보에 따른 OECD 추정 데이터 사용, 위 데이터는 ISCED의 인정을 받거나 등록(registered)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돌봄 서비스와(공공 및 민간 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체계화된(organized) 가정어린이집 및 전문 아동돌보미가 제공하는 유료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들에 적용된다.
3) 위 데이터를 보여주는 많은 국가들은 그림 PF3.2.A.와 출처 및 정의와 다름.
4) 모의 교육수준은 고등교육 수료 여부(ISCED 2011 levels 5-8)를 기준으로 함. 모가 부재한 경우, 여성 가구주 또는 부의 교육수준을 사용함.
출처: OECD(2023). Chart PF3.2.C.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에 한국자료 추가함.
※ 한국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를 바탕으로 산출

3) Chart PF3.2.D.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누락)

0~2세 영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은 PF3.2.C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들의 자료는 EU-SILC 정보에 따른 OECD 추정치이며, 기관돌봄 서비스와(공공 및 민간 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체계화된(organized) 가정어린이집 및 전문 아동돌봄 인력이 제공하는 유료 돌봄 서비스 이용 영아의 서비스 이용시간이다(OECD, PF3.2, 2023:1). '평균 주중 이용 시간'은 유아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0~2세 아동들이(주당 최소 1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자) "평상 주간에" 평균 몇 시간을 이용하는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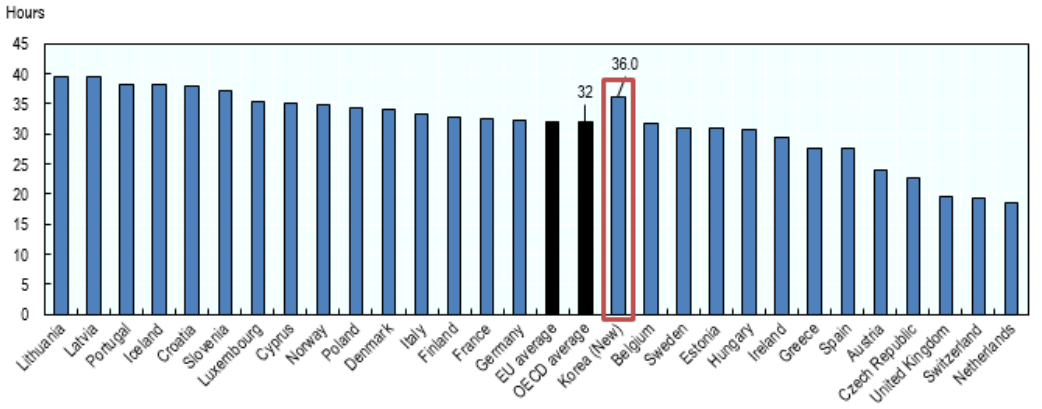
한국은 기존에는 해당 지표를 보고하지 않고 있으나, 앞서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수치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과 같은 보육·교육기관 이용자의 경우 '주중 평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당 이용시간은 서비스 이용가구에서 일괄 5일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즉, 하루 평균 이용시간×5일) 산출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게다가 비혈연 아이돌보미(유료 전문 아동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1주일간 총 사용 시간으로 질문하였으므로, 주당 이용시간에 주말 동안의 이용시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산출 결과, 한국의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이용시간은 평균 36시간으로 분석됐다. OECD 평균 이용시간과 EU국가의 평균 이용시간은 32시간으로, 한국에 비해 4시간 가량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국가(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등)에서는 평균 이용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한국에 비해 4시간 정도 더 길었으며, 네델란드, 스위스, 영국 등에서는 주당 평균 2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은 영아보육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맞벌이가구 등 실수요자 위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가구의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장시간 보육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요컨대, 한국은 0~2세의 보육·교육서비스는 OECD 평균에 비해 이용률이 높고, 주당 서비스 이용시간도 길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영아보육은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서 주당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영아 부모의 장시간 근로와 이에 따른 장시간 보육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5-5] Chart PF3.2.D. 0~2세(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2020)

Chart PF3.2.D. **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Average usual weekly hours for children us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2020 or latest available



주: 아이슬란드, 영국: 2018년 자료, 독일, 이탈리아: 2019년 자료 참고.
EU-SILC 정보에 따른 OECD 추정 데이터 사용, 위 데이터는 ISCED의 인정을 받거나 등록(registered)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돌봄 서비스와(공공 및 민간 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체계화된(organized) 가정어린이집 및 전문 아동돌보미가 제공하는 유료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들에 적용된다.
위 데이터를 보여주는 많은 국가들은 그림 PF3.2.A.와 출처 및 정의와 다름.
출처: OECD(2023). Chart PF3.2.D. 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to 2-year-olds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를 바탕으로 산출

4) Chart PF3.2.E. 3~5세(유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개선필요)

3~5세 아동들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초등교육 이용률은 3~5세 아동 중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ISCED 2011 레벨 0) 또는 초등교육(ISCED 2011 레벨 1)에 등록한 아동의 비중을 의미한다(OECD, PF3.2, 2023:2). 기존 PF3.2.E. 지표의 자료 출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이다. 한국의 경우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6세이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3~5세의 경우 유아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교육 등록률은 산출되지 않는다.

기존에 보고된 한국의 수치는 아동의 실제 연령이 아닌 '보육 연령'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로 실제 연령 기준 4~6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었다.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경우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이용률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표 또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업데이트 하였다. 구체적인 연령 구분 및 전국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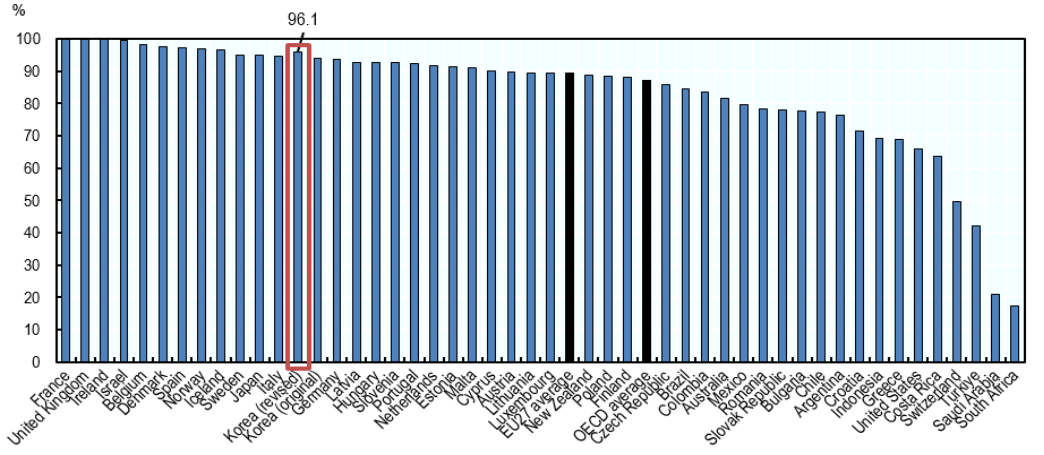
실태조사 자료 특성에 관한 논의는 PF3.2.A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한 가지 주지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만6세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재원 중인 5세반 유아 중에는 실제로는 6세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PF3.2.E. 산출 시 5세에는 취학 전 6세 아동이 포함된 수치임에 주의가 요한다.

산출 결과, 한국의 3~5세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은 96.1%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OECD 평균 3~5세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은 OECD 평균 87.1%이며, EU 27개국 평균 89.5%였다. 즉, 한국은 OECD 평균 뿐 아니라 EU 27개국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등은 10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 다수의 나라가 95%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보편적 보육·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자녀를 둔 가구의 특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5-6] Chart PF3.2.E. 3-5세(유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2020)

Chart PF3.2.E.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Percent of children enroll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SCED 2011 level 0) or primary education (ISCED 2011 level 1), 3- to 5-year-old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주: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2019년 자료, 브라질, 인도네시아, 미국: 2018년 자료, 아르헨티나 2017년 자료, 남아프리카 2015년 자료참고. 데이터에는 유아 교육 및 보육(ISCED 2011 레벨 0) 및 초등 교육(ISCED 2011 레벨 1)에 등록한 아동이 포함됨. 그리스의 경우, 데이터에는 유아 발달 프로그램(ISCED 01)에 등록한 아동의 일부만 포함됨. 등록 데이터와 인구 데이터의 범위(지리적 범위 및/또는 사용된 기준일) 사이의 잠재적 불일치가 등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Education at a Glance 2022 2022 지표 B2 를 참조.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

출처: OECD. (2023). PF3.2.E.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에 한국자료 추가함.

※ 한국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를 바탕으로 산출

5) Chart PF3.2.F. 3~5세(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 (개선필요)

3~5세 아동들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을 각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 PF3.2.F.이다. 따라서 PF3.2.F.의 지표 내용이나 산출 방식 등에 관해서는 PF3.2.E.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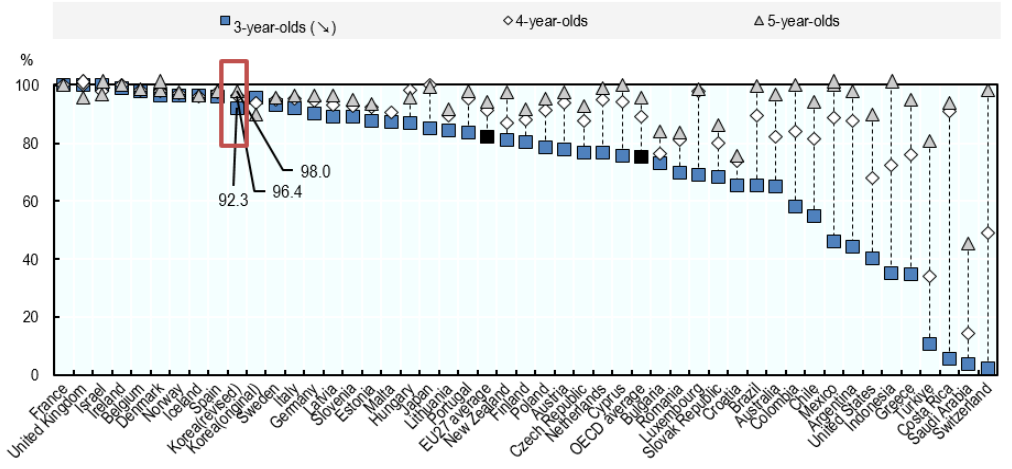
산출 결과, 한국의 3세 유아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은 92.3%이며, 4세는 96.4%, 5세(6세 미취학 포함)는 98.0%였다. 유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평균 3세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은 75.4%였으며, 4세 89.2%, 5세는 95.7%였으며, EU 27개국 평균 3세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은 82.3%였으며, 4세 91.4%, 5세는 94.4%였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3~5세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 및 EU 27개국 평균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영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5세 유아의 서비스 이용률이 3, 4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한국의 3~5세 유아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은 0~2세 영아와 마찬가지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때 각 연령별로 3세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16.9%p가 높은 반면, 4세는 7.2%p, 5세는 3.6%p가 높아,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이용률의 편차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 시기인 만 5세가 아니라 이보다 앞선 시기인 만 3세부터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2012년에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2013년에 그 적용 대상이 3~4세로 확대되고, 2012년에 영아 무상보육이 도입되어 어린이집의 입소 시기가 이전 시기보다 앞당겨진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5-7] Chart PF3.2.F. 3-5세(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2020)

Chart PF3.2.F.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

Percent of children enroll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SCED 2011 level 0) or primary education (ISCED 2011 level 1), 3-, 4- and 5-year-olds,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주: 아르헨티나, 그리스, 뉴질랜드, 폴란드, 러시아 자료: 2017년 / 남아공: 2015년
위 데이터는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ISCED 2011 level 0)와 초등교육 (ISCED 2011 level 1)에 등록되어있는 아동의 데이터를 포함함. 그리스의 경우, 유아개발프로그램(ISCED 01)에 등록된 일부 아동에 대한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음. 등록 관련 데이터와 인구 범위 자료의 불일치(지역 범위 또는 자료 참고일자의 차이로 인한) 로 인해 등록율의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세 내용 확인은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Indicator B2지표 참고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

출처: OECD(2023). Chart PF3.2.F.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를 바탕으로 산출

다. PF3.4 보육료 지원(Childcare support)

1) Chart PF3.4.A. 총 보육비(Gross childcare fees) (적절)

총 보육비는 기관보육 서비스의 이용비용에 대한 국가별 지원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며, 한국 지표는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총 보육비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과 방학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이용 시에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세제 지원 이전)으로, 가구소득이나 가구 특성 등이 반영된 경우는 최대 지원액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단, OECD는 만 2~3세 아동이 센터 기반 돌봄서비스 이용 시에 지불하는 '전형적인' 비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OECD, PF3.4, 2022: 4), 국가별 비교는 각국의 지원내용과 서비스 이용 특성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표는 개별 국가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보육료 지원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의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평균 소득 대비 총 보육비(%)(OECD, PF3.4, 2022: 2)는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25.3%로 나타나며, 국가별 격차가 두드러진다. 이를테면 독일(함부르크 기준)은 1.0%로 가장 낮고, 스웨덴은 8%에 불과한 반면에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64.0%와 60%, 일본(도쿄 기준)과 영국(잉글랜드 기준)은 50%와 49%로 높은 수준이고, 미국은 32.0%로 나타난다. 단, 네덜란드는 반일제(part-time) 서비스 이용이 흔한 상황이므로,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 부모의 자부담 수준이 높은 국가로 해석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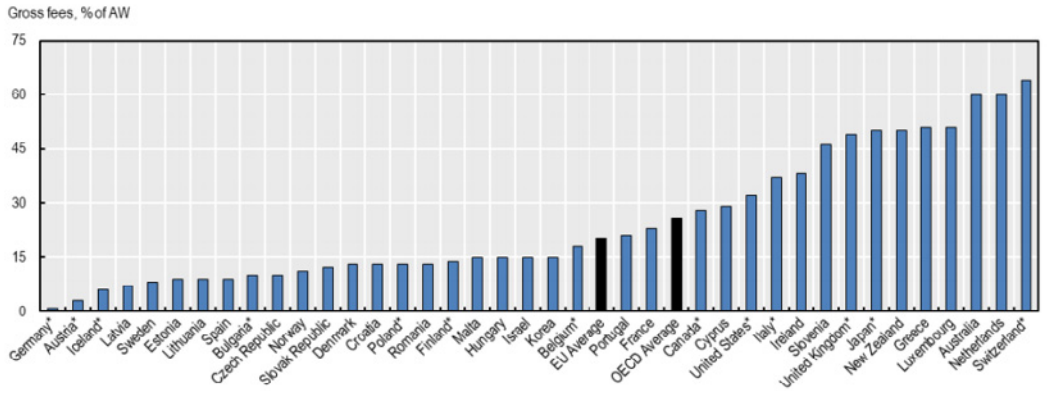
이 중에서 한국은 평균 소득 대비 총 보육비의 비중이 15.0%로 OECD 평균보다 낮고 덴마크(13.0%) 또는 핀란드(14.0%, 헬싱키 기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모의 자부담 수준이 낮은 국가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모든 영유아(만 0~5세)를 대상으로 보육료(누리과정지원금 포함)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 2세아의 종일제보육(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장보육료를 제외하여도 모든 영아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육시간이 하루 7시간(9:00~16:00)이므로 OECD 산출기준인 최소 40시간을 충족한다. 보편적 보육료 지원 하에서 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경우는 기타 필요경비와 유아의 차액 보육료, 유치원 이용가구의 경우는 방과후과정비가 포함된다.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특별활동, 현장학습, 차량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이며,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 보육료의 차액(차액 보육료)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나(보건복지부, 2024b: 90), 해당 비용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추세이다.

요컨대 평균 소득 대비 총 보육비 지표는 0~5세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비용지원 수준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국가들의 총 보육료는 국가별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아동 돌봄의 책임에 대한 정책적 이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동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개별가정 또는 여성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북유럽국가 등은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낮다. 한국은 2013년부터 0~5세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기관(어린이집/유치원) 유형에 따라 실제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차이를 보여서 보편적 지원에 걸맞도록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장시간 근로 등에 따른 서비스 병행이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일제보육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혈연 돌봄인력에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은 약 절반 수준인 53.6%이고, 이들 중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월평균 727,000원으로, 2012년 288,000원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고,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병행이용 가구의 경우는 사례수가 제한적이나 2021년에는 월 평균 848,000원으로 2012년 580,000원 보다 상승하였다(김은설 외, 2021: 485-486, 494).

[그림 5-8] Chart PF3.4.A. 총 보육비

Chart PF3.4.A. Gross childcare fees

Gross fees for two children (age 2 and 3) attending full-time care at a typical childcare centre, as % of average earnings (AW), 2021



주: 한국, 스위스는 2020년 자료임. '전일' 돌봄이란 최소 주 40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을 말함. 별표 표시가 되어있는 국가는 특정 지역 또는 도시의 추정치로, 국가 전체에 해당되지 않음. 평균 소득/평균 임금은 일반 노동자의 세전 소득임(예. 각종 소득세, 사회복지기여금, 보험 및 조합비 등 납입 전). 방법과 가정에 대한 상세 정보 및 각국 별 참고 정책에 대한 정보는 OECD Tax and Benefit System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출처: OECD Tax and Benefit Models 2021; OECD(2023). Chart PF3.4.A. Gross childcare fees에서 재인용

2) Chart PF3.4.B.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two-earner couple family) (적절)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는 기관보육서비스를 실제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실수요를 반영한 국가의 보육지원체계와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앞서 다룬 총 보육비 지표와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의 정책을 감안하여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고, 한국의 지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는 두 자녀(만 2, 3세)를 둔 맞벌이 부모의 소득을 평균 소득 대비 100+67%로 책정하고, 이렇게 산출된 소득 대비 부모가 실제 지불하는 보육료의 비중이다(OECD, PF3.4, 2022: 3).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부모의 세전 소득을 평균 소득의 100%로 책정하고 두 번째 부모의 세전 소득을 평균 소득의 67%로 책정하여 산출되며, 이때 '종일제보육'이란 앞서 총 보육비와 마찬가지로 최소 주 40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또한 평균 소득 또는 평균 임금은 일반 노동자의 세전 소득(예시: 각종 소득세, 사회복지기여금, 보험 및 조합비 등 납입 전 금액)을 말한다(OECD, 2007: 186-187).

OECD 국가의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맞벌이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순 보육비는 OECD 평균이 25.3%로 나타나며, 독일이 1.0%로 가장 낮고, 스위스가 63.0%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앞서 살펴본 총 보육비와 유사하게 국가별 격차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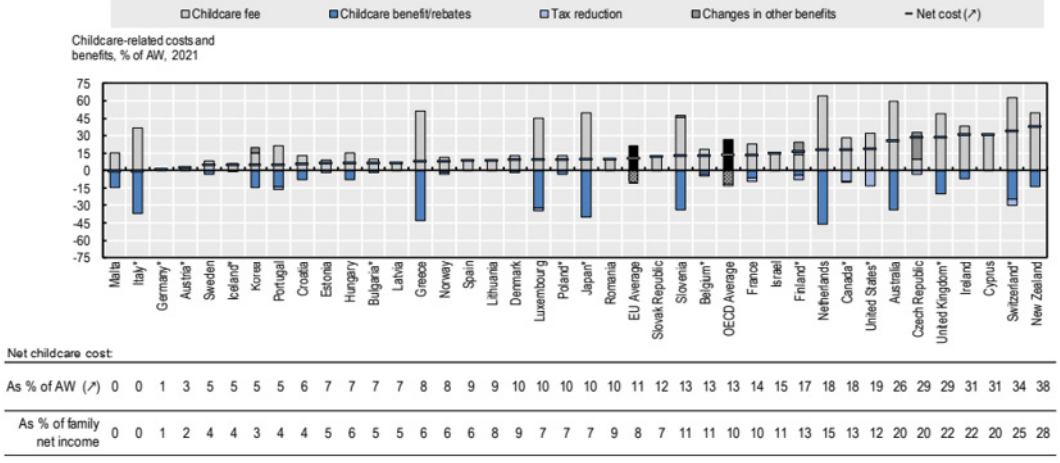
이 중에서 한국은 앞서 다룬 총 보육비와 마찬가지로 OECD 평균에 비해 부모 부담액 수준이 낮고, 소득기준을 적용하거나 부모 부담의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들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국의 보육료는 보편적으로 지원되어 맞벌이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순보육비의 비중도 총 보육비와 동일하게 15.0%로 나타난다.

요컨대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는 보육 수요를 반영한 비용지원체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별 중요도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평균 소득 대비 한국의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북유럽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0~5세 무상보육의 실현으로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지원 자격을 맞벌이가구 등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영아의 경우에도 긴급한 상황 등에서는 기본보육 신청 가구라 하더라도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부모 부담액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5-9] Chart PF3.4.B.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

Chart PF3.4.B. 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two-earner couple family

Net childcare costs for a two-earner two-child (aged 2 and 3) couple family with full-time earnings at 100+67% of average earnings, as a % of average earnings (AW), 2021



주: 한국, 스위스는 2020년 자료임. 위 데이터는 두 자녀(만2,3세)를 둔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하는 가족이 전형적인 돌봄센터 내 전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비용이 반영됨. 첫 번 째 부모의 세전소득을 평균 소득의 100%로 책정하고 두 번 째 부모의 세전 소득을 평균 소득의 67%로 책정함. '전일' 돌봄이란 최소 주 40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을 말함. 평균 소득/평균 임금은 일반 노동자의 세전 소득임(예. 각종 소득세, 사회복지기여금, 보험 및 조합비 등 납입 전). 별표 표시가 되어있는 국가는 특정 지역 또는 도시의 추정치로, 국가 전체에 해당되지 않음. 방법과 가정에 대한 상세 정보 및 각국 별 참고 정책에 대한 정보는 OECD Tax and Benefit System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출처: OECD Tax and Benefit Models 2021; OECD(2023). Chart PF3.4.B. 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two-earner couple family에서 재인용

3) Chart PF3.4.C.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single-parent family)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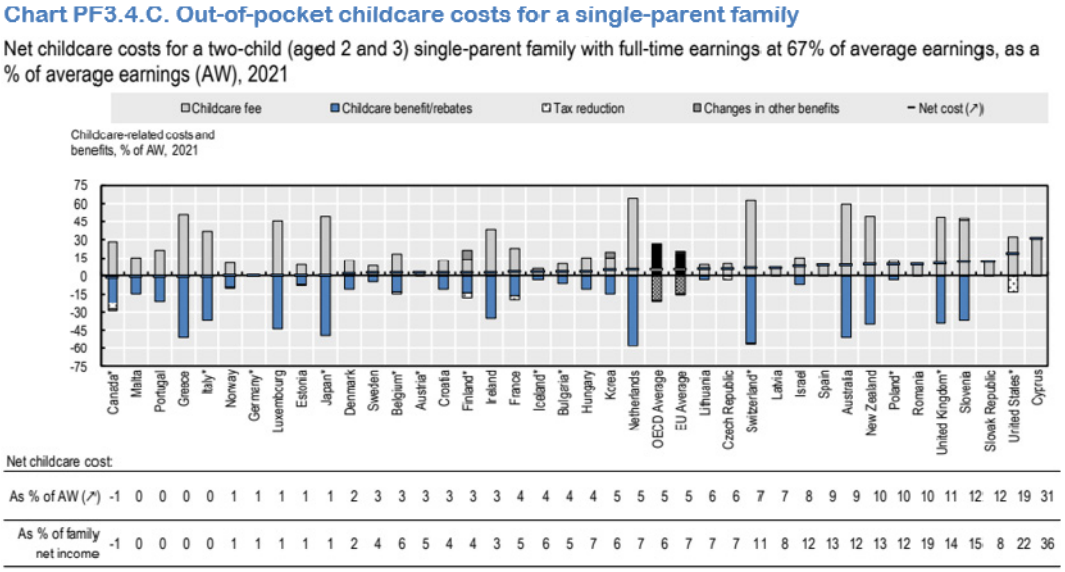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는 취약계층 가구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앞서 다룬 총 보육비 및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와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정책을 고려하여 국가별 비교는 신중을 요하나, 한국의 지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는 두 자녀(만2,3세)를 둔 한부모 가정이 전일 근무 가정 시, 전형적인 종일제 기관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한)부모의 세전소득은 평균소득의 67%로 책정하며, '종일제돌봄'은 최소 주 40시간 돌봄서비스 이용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또한 평균 소득/평균 임금은 일반 노동자의 세전 소득(각종 소득세, 사회복지기여금, 보험 및 조합비 등 납입 전 금액)을 말한다(OECD, 2007: 186-187).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평균 소득 대비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의 비중은 OECD 평균이 25.3%이며, 독일이 1.0%로 가장 낮고, 네델란드가 64.0%로 그 격차가 두드러져서 앞서 다룬 총 보육비 및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 수준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 중에서 한국은 앞서 다룬 '총 보육비'와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와 마찬가지로 OECD 평균에 비해 부모 부담액이 낮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나, 한부모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자로 규정되어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4b: 68).

요컨대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는 돌봄 취약 가구의 영유아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가별로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이 중에서 한국의 한부모 가구 순 보육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북유럽국가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해당 비용은 총 보육비 및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의 영유아 대상 보편적 비용지원체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10] Chart PF3.4.C.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



주: 한국, 스위스는 2020년 자료임. 위 데이터는 두 자녀(만2,3세)를 둔 한부모 가정이 전일 근무 가정 시, 전형적인 돌봄 센터 전일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는 비용이 반영됨. (한)부모의 세전소득을 평균 소득의 67%로 책정함. '전일' 돌봄이란 최소 주 40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을 말함. 평균 소득/평균 임금은 일반 노동자의 세전 소득임(예. 각종 소득세, 사회복지기여금, 보험 및 조합비 등 납입 전). 별표 표시가 되어있는 국가는 특정 지역 또는 도시의 추정치로, 국가 전체에 해당되지 않음. 방법과 가정에 대한 상세 정보 및 각국 별 참고 정책에 대한 정보는 OECD Tax and Benefit System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출처: OECD Tax and Benefit Models 2021; OECD(2023). Chart PF3.4.C. 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single-parent family에서 재인용

라. 영유아 공보육·교육 지표 요약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지표는 자료 접근성의 제약을 반영하여 '적절' 지표로 변경하였으며,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은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하나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도입된 어린이집 연장보육료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확대, 그리고 향후 유보통합의 추진에 따른 재정 투자를 확대 등을 고려하면 재정 투자의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영유아 1인당 보육 교육 공공 지출은 8,600불로 OECD 국가 평균인 5,800불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아동 연령별로는 유아에 비해 영아 대상의 1인당 공공 지출이 10,900불로 유아(6,800불)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스웨덴에서 영아 1인당 16,100불을 지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아 무상보육으로 인해 낮은 여성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영아 대상 공공 지출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영아 대상의 보육료 지원을 실수요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PF 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지표는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영아의 경우는 50.2%로 OECD 평균(36%)에 비해 높고, 유아의 경우는 96.1.%로 OECD 평균(87.1%)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0~5세 보육·교육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영아 자녀의 주중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균 36시간으로 OECD 평균인 32시간에 비해 길게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감안하면 영아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PF3.4 보육료 지원 지표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15%로 나타나며, 맞벌이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보육료는 총 보육료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나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의 비용지원 체계가 가구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총 보육료와 가구 특성별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리하면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의 공공 지출 수준이 높고, 서비스 이용률과 주중 서비스 이용시간도 길게 나타나는 데, 이는 0~5세 보편적 교육·보육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수요자의 욕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2. 아동돌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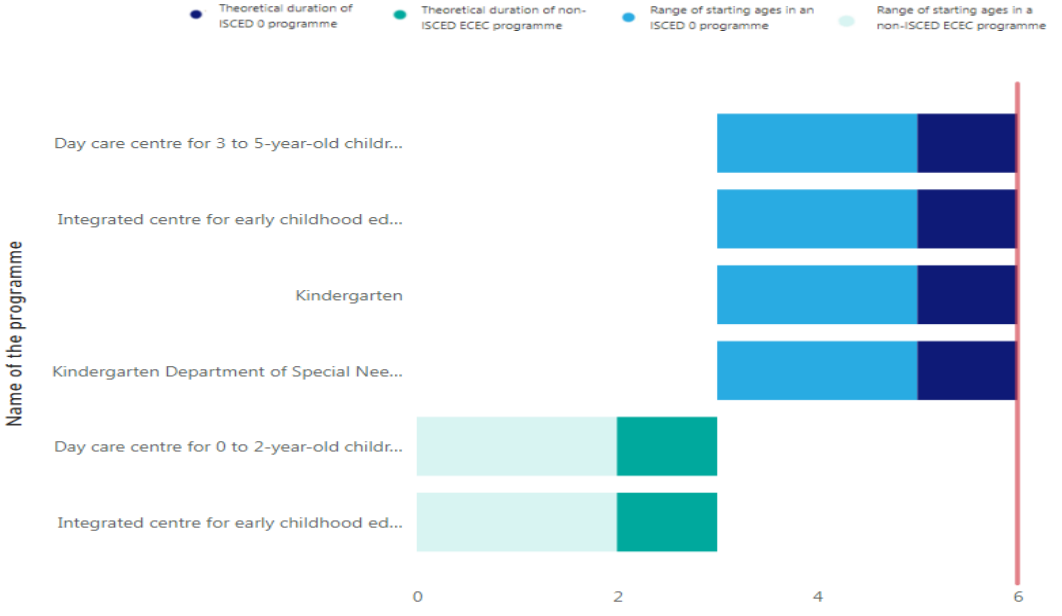
가. PF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적절)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는 OECD 국가에서 점차 증대하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관련된 지표로서, 서비스 유형은 국가별로 지원체계 등이 달라서 일부 제약이 따르지만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다. 한국의 해당 지표는 2023년 1차연도 연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었으나, 2024년에 적절하게 개선되어 보고되고 있다. 2024년에 OECD는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에 속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각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고 방식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종전에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를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의하였으나, 3가지 범주의 정의가 국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3가지 범주 이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도 있어서 개별 국가의 여건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의 일반적인 상황을 주요국 위주로 살펴보면, 3~5세아를 위한 공식 부문의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제공하며,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8개국에서 유치원 교육이 의무적으로 제공되며(OECD, 2024),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해당 서비스가 보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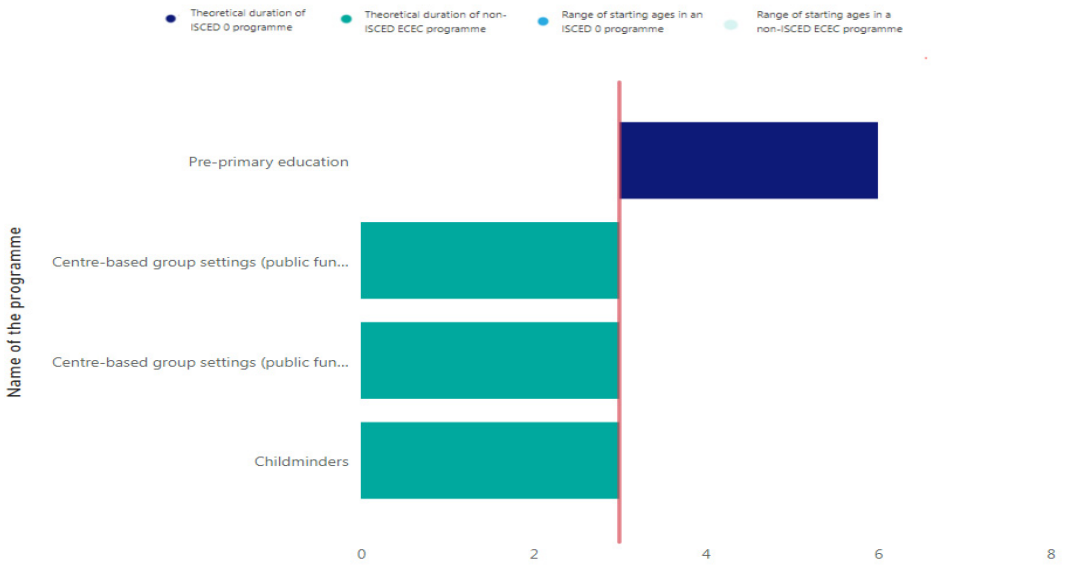
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적용대상 연령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으로 공식 부문의 유치원 교육에 3세 73%, 4세 88%, 5세 84%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국에서 보고하는 ECEC프로그램은 주로 제도화된 집단보육이나 학교 기반으로 제공되며,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기관의 유형은 센터, 지역공동체, 가정으로 다양하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 기관 기반의 서비스 이외에 보다 어린 아동(0~2세)을 위한 가정내보육서비스와 사적 부문의 개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24). 또한 이외에도 개별 국가의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유형이 보고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보육소) 이외에도 0~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정어린이원)이 보고되고, 프랑스는 3세 이하 아동에게 가정보육모(childminer)를 제공하며, 미국에서는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 유치원과 헤드 스타드(Head Start)를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가정내보육서비스(family day care care)가 영아(0~2세)에 한정되지 않고, 유아(3~5세)까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 유형은 각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방향성 및 비용지원체계를 반영한 것이므로 개별 국가의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_일본(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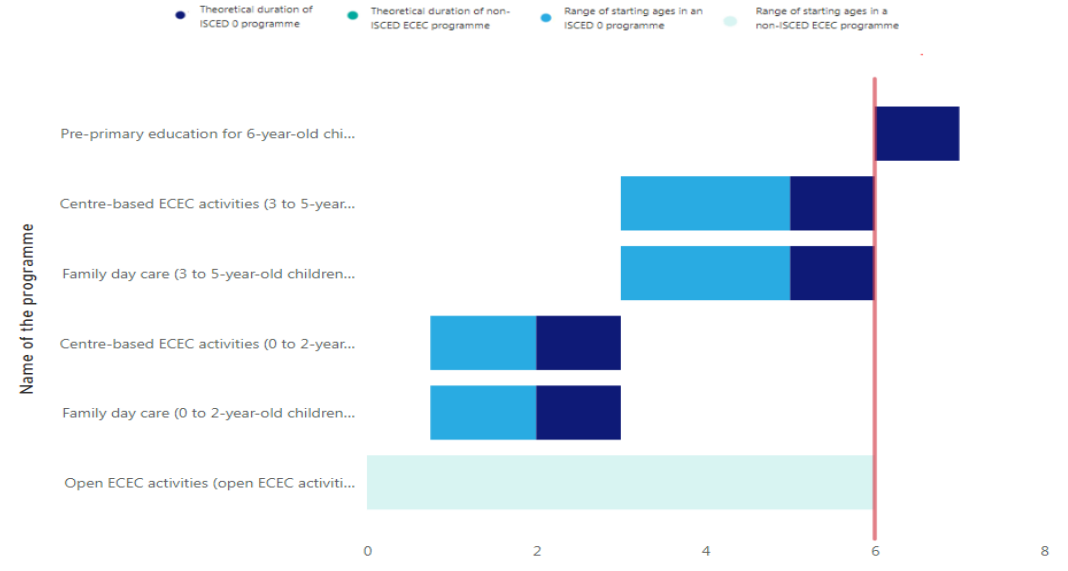
출처: OECD Education database_Programmes in ECEC,
https://app.powerbi.com/view?r=eyJrIjoiZTMwMTk1ODUtYjJlMi00Zjc0LWJiNzUtZGE1NTU3ODI0MTY2IiwidCI6ImFjNDFjN2Q0LTFmNjEtNDYwZC1iMGY0LWZjOTI1YTJiNDcxYyIsImMiOjh9 (검색일: 2024. 6. 5).

[그림 5-1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_프랑스(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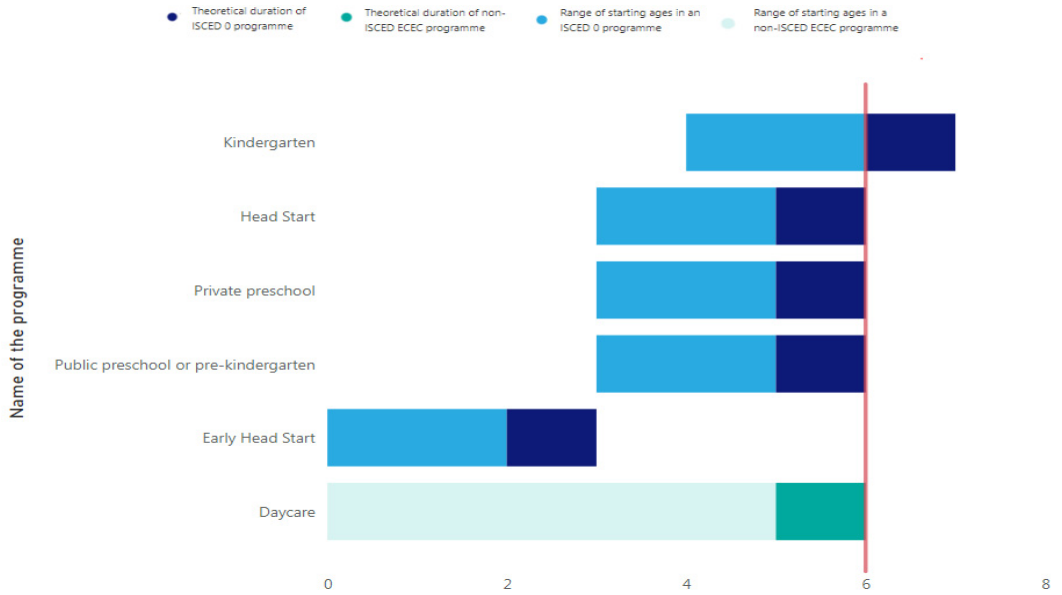
출처: OECD Education database_Programmes in ECEC, https://app.powerbi.com/view?r=eyJrIjoiZTMwMTk1ODUtYjJlMi00Zjc0LWJiNzUtZGE1NTU3ODI0MTY2IiwidCI6ImFjNDFjN2Q0LTFmNjEtNDYwZC1iMGY0LWZjOTI1YTJiNDcxYyIsImMiOjh9 (검색일: 2024. 6. 5).

[그림 5-13]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_미국(2024년)



출처: OECD Education database_Programmes in ECEC, https://app.powerbi.com/view?r=eyJrIjoiZTMwMTk1ODUtYjJlMi00Zjc0LWJiNzUtZGE1NTU3ODI0MTY2IiwidCI6ImFjNDFjN2Q0LTFmNjEtNDYwZC1iMGY0LWZjOTI1YTJiNDcxYyIsImMiOjh9 (검색일: 2024.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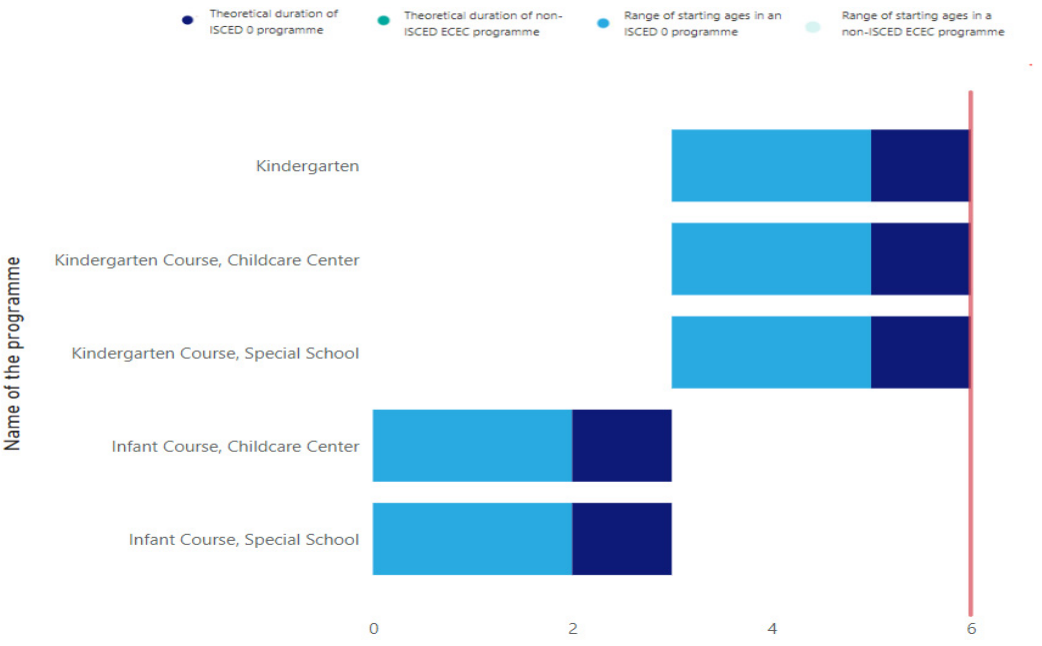
[그림 5-14]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_핀란드(2024년)



출처: OECD Education database_Programmes in ECEC, https://app.powerbi.com/view?r=eyJrIjoiZTMwMTk1ODUtYjJlMi00Zjc0LWJiNzUtZGE1NTU3ODI0MTY2IiwidCI6ImFjNDFjN2Q0LTFmNjEtNDYwZC1iMGY0LWZjOTI1YTJiNDcxYyIsImMiOjh9 (검색일: 2024. 6. 5).

이 중에서 한국은 3~5세아를 대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수학교, 0~2세아를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공식 부문에서 유치원 적용대상이 3~5세로 가장 포괄적인데, 3~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0~2세는 영아 보육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차연도 보고서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적용대상이 0~4세로 보고되고, 순수 민간 영역에 해당하는 학원이 공식 부문에 포함되어 보고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김은지 외, 2023: 177), 2024년에는 현행 적용대상 연령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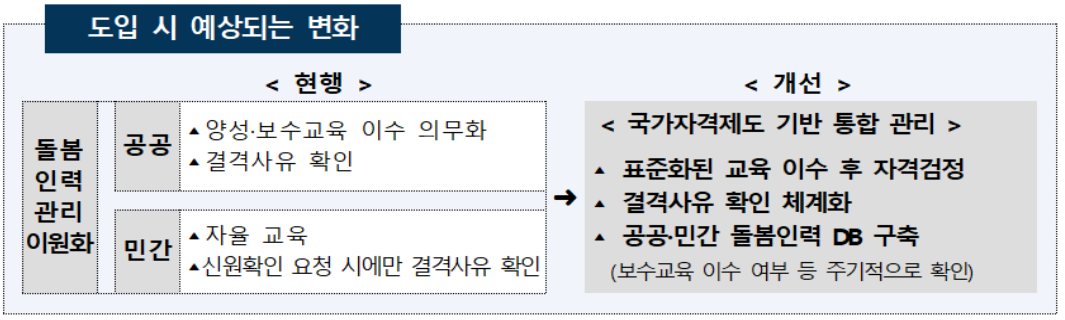
[그림 5-15]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_한국(2024년)



출처: OECD Education database_Programmes in ECEC, https://app.powerbi.com/view?r=eyJrIjoiZTMwMTk1ODUtYjJlMi00Zjc0LWJiNzUtZGE1NTU3ODI0MTY2IiwidCI6ImFjNDFjN2Q0LTFmNjEtNDYwZC1iMGY0LWZjOTI1YTJiNDcxYyIsImMiOjh9 (검색일: 2024. 6. 5).

다른 한편 영아 위주로 제공되는 가정내보육서비스는 별도로 보고되는 바가 없다. 단,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국가의 비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된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아이돌보미는 공적 부문에서 양성되고 있으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하와 같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관계부처 합동, 2023):7), 향후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6] 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p. 7.

요컨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지표는 아동에 대한 생애초기 재정투자의 방식과 아동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공식 부문에서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는 아동의 출발선 평등을 추구하여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3~5세로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영아의 경우에도 기관 기반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5세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유아의 경우는 공통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인력 기준과 운영관리 기준이 상이하여 이용기관 유형에 따른 서비스 질의 격차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 추진 중이고, 2023년 12월「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해 교육부에서 종전의 유치원과 더불어 어린이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_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6.5.) 향후 이용기관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질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6월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는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거쳐 영유아교육 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24b: 5).

나. PF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1) Chart PF4.2.A. 유아교육(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2018) (적절)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은 OECD에서 유아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전일제 교직원이 1인이 돌보아야 하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아동 수를 의미하며, 그 수가 낮을수록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어서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동 대 교직원 비율' 지표는 첫째,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모두 포함한 경우와 둘째, 담임교사만 고려했을 때의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된다(OECD, PF4.2, 2020: 1). 아동 연령별로 유아교육(3~5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과 영아보육(0~2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로 구분되며, 한국의 해당 지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교육(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의 OECD 전체 평균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교사 1인당 아동 11.1명이고, 담임교사만 고려 시 교사 1인당 아동 14.3명으로 나타난다. EU 국가의 경우,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모두 포함 시 교사 1인당 아동 10.9명, 담임교사만 고려 시 13.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비율이 소폭 낮아졌다. 또한 담임교사만 포함하였을 때보다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많은 국가들에서 보조교사를 투입하여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을 살펴보면, 교직원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24.3명)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5.1)였으며, 유사하게 노르웨이(5.6), 스웨덴(6.1)도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이 낮은 국가로 보고된다.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을 살펴보면, 유아교육(3~5세) 현장에서 담임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로 36.2명을 기록하였다. 뒤이어 담임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20명을 넘어서는 국가로는 멕시코, 프랑스, 칠레, 이스라엘, 브라질이고, 반면에 아이슬란드는 5.1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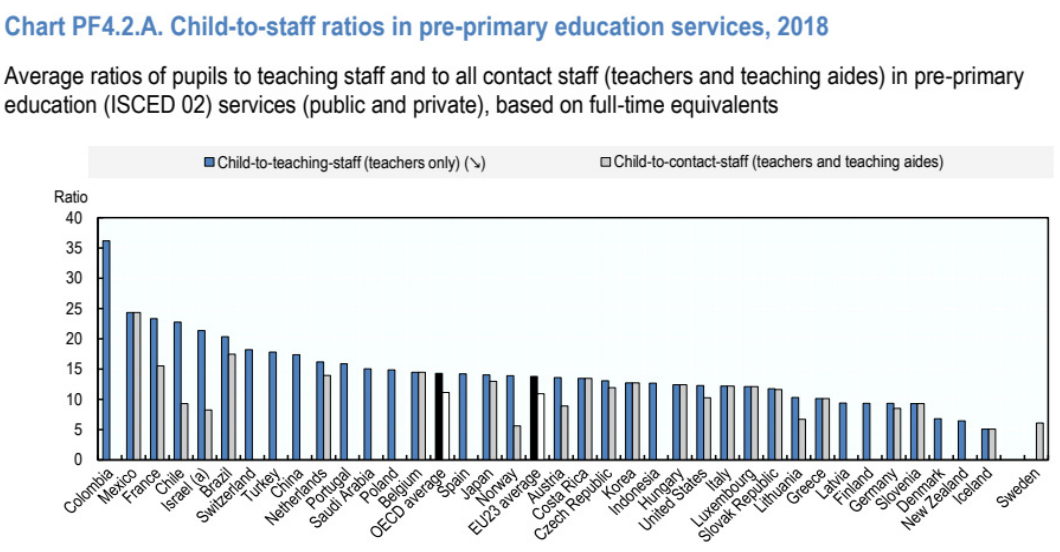
한국의 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 결과 해석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의거한 어린이집 반별 편성기준에서는 보육교사 1인당 3세반은 15명, 4세반 이상은 20명 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62).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학급수와 학급당 아동수를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유치원의 학급당 아동수의 범위를 연령별로 제시하면, 3세는 14~19명, 4세는 19~25명, 5세는 22~28명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에서는 유치원이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학급당 유아수 기준이 달리 제시되므로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기준과 차이를 보인다(우영혜, 2021: 8).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조교사의 지위 및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제시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는 누리보조교사, 연장교사, 보조교사 등 다양한 보육교직원이 3~5세반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상황만 고려 시 담임교사만 고려한 비율과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모두 고려한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야 하는데, 보고된 한국자료는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보조교사에 대한 통계가 부재하여 어린이집 동일한 기준으로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을 산출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3~5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요컨대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유아반 담당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에 한정하는 경우에 비해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합하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모두 포함한 비율과 담임교사에 한정하는 비율이 12.7명으로 동일하여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본 결과 해석 시 고려해야할 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이 일관된 기준으로 정립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의 기준과 달리 지역별, 기관 유형별 학급당 아동수 기준과 범위가 다르고 유치원의 보조교사 통계가 부재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누리보조교사, 연장교사, 보조교사 등 다양한 교직원 인력이 3~5세 돌봄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OECD에 제시된 한국 통계에서는 담임교사만 고려한 비율과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모두 고려한 비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여건을 반영하여 정확한 값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보통합의 추진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의 통합기준의 기대효과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림 5-17] Chart PF4.2.A. 유아교육(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



주: '교육 시설'과 '통합적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음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학생수 대비 교사 비율을 비교하는 위 그림은 주의를 가지고 해석해야 함. 일부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두 유형의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매우 다름. 이스라엘에 관한 데이터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며 그 책임하에 제공됨. OECD가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 및 서부 사하라에 위치한 이스라엘 정착지에 대한 국제법 조항에 따른 지위에 대한 예외사항은 없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0 Annex 3의 주석 참고.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refcode=20190209ig
출처: OECD(2020). Chart PF4.2.A. Child-to-staff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2018

2) Chart PF4.2.B. 영아보육(0~2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 2018) (적절)

‘영아보육(0~2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은 영아보육 서비스의 질에 관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은 담임교사 기준으로 7.5명으로 보고되고, 같은 척도의 EU의 23개국 평균은 8.0으로 OECD 평균보다 0.5명 높게 나타난다. 담임교사 기준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21.2명)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3.0명)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13.9명)이고, 아이슬란드(3.0명)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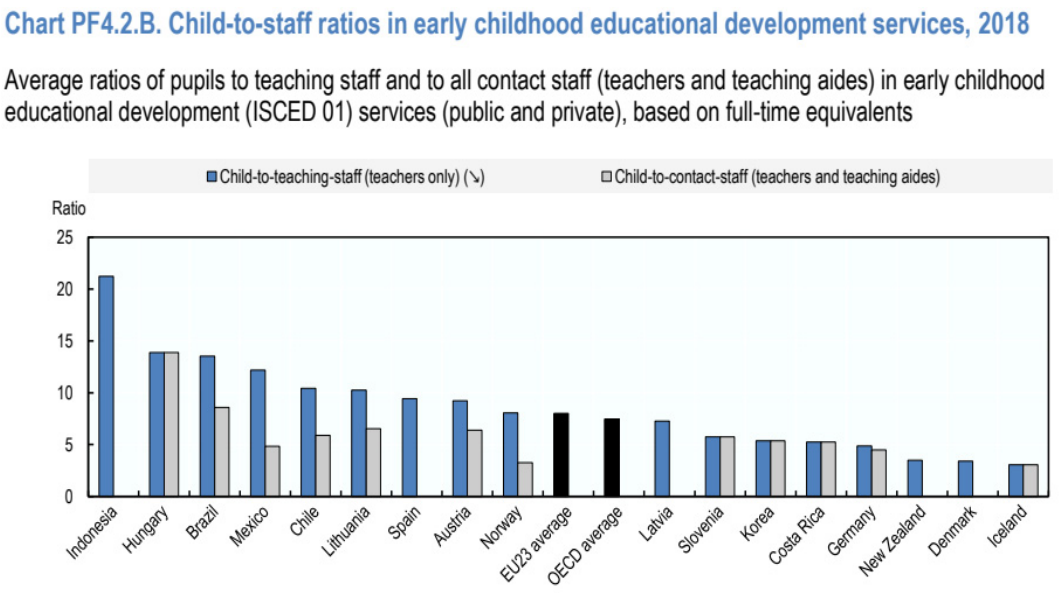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함께 고려한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은 담임교사의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특히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과 담임교사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이 상이한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독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보조교사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두 비율 간 폭이 가장 큰 나라는 멕시코인데, 담임교사만 고려하였을 시 1인당 담당해야하는 아동수가 12.2명인데 반해,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포함할 시 1인당 보육하는 아동수가 4.8명으로 현저히 낮다. 반면에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과 담임교사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이 같은 국가는 헝가리, 슬로베니아, 한국,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0~2세 보육의 보조교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는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 비율 모두 평균 5.4명으로 동일하게 보고되며, OECD 평균인 7.5명(담임교사 기준)보다 낮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 따르면, 보육교사 1인당 0세반 3명, 1세반 5명, 2세반 7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b: 62). 한국의 영아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5.4명으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실제로는 영아반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2개반 이상 운영하면서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여서 특히 0세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도남희·구자연·신나리·강규돈, 2022: 110). 이에 따라 2024년 6월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행 1:3에서 1:2로 개선하고 3~5세반의 경우 평균 1:8로 개선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교육부, 2024b: 5).

요컨대 ‘영아보육(0~2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 지표는 영아보육의 질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평균은 담임교사 기준으로 7.5명이고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함께 고려하면

담임교사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의 국가에서는 보조교사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엿보인다. 한국의 영아 보육(0~2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5.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교사 이외 지원인력이 부족하나 지원요건이 부합하는 영아반 한하여 보조교사가 배치되고, 또한 영아반을 위주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담임을 겸직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히 0세반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5-18] Chart PF4.2.B. 영아보육(0~2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



주: '교육 시설'과 '통합적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음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아동 대비 교사 비율을 비교하는 위 그림은 주의를 가지고 해석해야 함. 일부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두 유형의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매우 다름.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0 Annex 3의 주석 참고.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refcode=20190209ig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https://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 OECD. (2020). Chart PF4.2.B. 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 2018에서 재인용

3) Table PF4.2.A.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Minimum qualifications for ECEC professionals) (적절)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며, 한국 지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 지표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 교직원(담임교사, 보조교사)

으로 일할 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자격(ISCED 2011 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교직원을 포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0~2세 보육과 3~5세 유아교육·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교육 교직원과 보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 요건 중 더 낮은 조건을 명시하거나, 일부(예: 일본, 스페인)는 0~2세와 3~5세 대상 교직원의 최소 자격 요건을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0~5세 보육·교육 교직원 기준을 종합하여 보고하는 국가로서 해당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0~5세 담임교사의 '영유아 보육·교육 교사의 최소 자격'을 보고한 국가는 총 24개국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ISCED 6 단계인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최소 기준으로 삼는 국가가 14개국으로 가장 많았는데, 독일,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와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이에 속하였다. ISCED 7 단계인 석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 단계를 최소 조건으로 하는 국가는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총 3개국으로 보고된다. OECD 국가 중 ISCED 5 단계인 단기고등교육을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3개국이었다. 3~5세 보육·교육과 0~2세 보육 교직원 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한 국가는 스페인이 유일하였는데, 구체적으로 0~2세 보육 교직원은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 단계를 최소 기준으로 하는 반면, 3~5세 보육·교육 보직원은 석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 단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본과 핀란드는 영유아 연령별로 기준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각기 ISCED 5 또는 6, ISCED 6 또는 7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었다. 보조교사에 대한 ISCED 최소 자격에 대해서는 총 11개국에서 기준을 보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담임교사에 비해 보조교사의 자격요건 수준이 다소 낮은 특성을 지닌다. 11개국 중 10개국에서 ISCED 3인 후기중등교육을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칠레,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의 경우 후기중등교육과 더불어 직업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도 보조교사의 자격을 갖는다. 영유아 교육·보육 보조교사의 최소 자격 기준을 가장 낮은 수준인 ISCED 2, 전기중등교육으로 책정하고 추가 교육을 통해 보조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는 멕시코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보조교사 자격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 기준이 다소 낮은 편이다. 해당 지표를 보고한 OECD 국가 중에서 과반 이상이 담임교사에 대해 ISCED 6인 학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단계를 최소 기준으로 설정한 데 반해, 한국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ISCED 5, 단기고등교육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의 교직원 자격 기준이 상이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영유아 보육 교직원의 최소자격은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포함하는 ISCED 4(고등학교 이후 대학교육 이전의

직업관련 프로그램)로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ISCED 5(전문대, 단기 대학교육)보다 낮다. 하지만 2021년 어린이집 보육통계에 따르면, 3급 보육교사의 비율은 1.7%에 그치고(양미선 외, 2021: 198), 실제 ISCED 5 이상의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대부분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OECD에 제시된 기준이 전체 맥락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또한, 3~5세 대상 교육 교직원은 ISCED 6,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어 OECD에서 제시한 ISCED 5(전문대, 단기 대학교육)보다 높으므로 보육, 교육 현장 간의 자격요건이 다소 상이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 보조교사의 최소자격' 지표 업데이트와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의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4: 5).

요컨대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 지표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담임교사에 대해 학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ISCED 6)을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담임교사의 최소 자격을 단기 고등교육(ISCED 5)으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보육·교육 교직원의 자격이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보육 교직원 3급을 기준으로 ISCED 4(고등학교 이후 대학교육 이전의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교육 교직원은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건(ISCED 6)이 최소 기준이므로 국가별 비교 시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2024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 최소 자격' 지표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표 5-4〉 Table PF4.2.A.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2020년)

Table PF4.2.A. Minimum qualifications for ECEC professionals

Most prevalent ISCED qualification required to enter ECEC profession, total ISCED 0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eachers	Teachers' aides
Australia	..	..
Austria	ISCED 5	ISCED 3
Belgium	ISCED 6	ISCED 3
Canada	..	..
Chile	ISCED 6	ISCED 3, vocational
Colombia	ISCED 6	..
Costa Rica	..	..
Czech Republic	..	..
Denmark	ISCED 6	..
Estonia	ISCED 6	..
Finland	ISCED 6 or 7	..
France	ISCED 7	ISCED 3, vocational
Germany	ISCED 6, professional	ISCED 3, vocational
Greece	..	..
Hungary	..	..
Iceland	..	..
Ireland	..	..
Israel	ISCED 5	ISCED 3
Italy	..	..
Japan	ISCED 5 or 6	..
Korea	ISCED 5	..
Latvia	..	..
Lithuania	ISCED 6	ISCED 3
Luxembourg	..	..
Mexico	ISCED 6	ISCED 2 and training
Netherlands	..	..
New Zealand	ISCED 6	..
Norway	ISCED 6	ISCED 3
Poland	ISCED 7	..
Portugal	ISCED 7	..
Slovak Republic	ISCED 3	..
Slovenia	ISCED 6	ISCED 3, vocational
Spain	ISCED 5 for ISCED 01; ISCED 6 for ISCED 02	..
Sweden	ISCED 6	..
Switzerland	ISCED 6	..
Turkey	..	..
United Kingdom	..	..
United States	..	..
Brazil	ISCED 6	ISCED 3

주: 영유아교육 = ISCED 0; 영아 발달 프로그램 = ISCED 01; 유아교육·보육 = ISCED 02; ISCED 2 = 전기중등 교육; ISCED 3 = 후기중등교육; ISCED 5 = 단기고등교육; ISCED 6 =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단계; ISCED 7 = 석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단계.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0 Annex 3의 주석을 참조.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refcode=20190209ig)

출처: OECD. (2020). Table PF4.2.A.Minimum qualifications for ECEC professionals

다. 아동돌봄체계 지표 요약

PF4.1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지표는 국가별로 그 체계가 매우 상이하나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기관 이외에도 가정내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는 3~5세 공통 프로그램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사의 자격요건이 달라서 이용기관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 질의 격차가 우려된다.

PF4. 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질 지표는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의 경우는 기관유형에 따라 그 격차가 존재하여 신중한 평가가 요구되며, 교직원의 최소 자격 요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합하면 아동 대 교직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해당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3~5세반은 평균 12.7명으로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고, 0~2세반은 평균 5.4명으로 어린이집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기관에 따라 해당 수치가 달라서 서비스 질의 형평성이 우려된다.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이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요건인 국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단기고등교육을 요건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의 자격요건이 다른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추진에 따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통합연수체계를 마련하고(교육부, 2024b: 8-9), 통합교원 자격 양성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므로 세부 추진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지표를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교육부, 2024b: 13).

정리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아동 대 교직원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기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서 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해석을 요한다. 또한 보육·교육 교직원 최소자격은 다소 낮은 수준이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체계 통합이 예고되어 있으므로 개선이 기대된다.

제3절 소결

'아동돌봄서비스' 지표는 영유아 공보육 교육 지표와 아동돌봄체계 영역으로 구성된다. 2차년에 걸쳐 지표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개선 필요 지표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고, 누락 지표는 0~2세 모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과 주중 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1차연도 연구에서 개편 필요 지표로 진단된 영유아 보육교육 공공 지출의 경우는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적절 지표로 변경하고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지표는 개편 중이므로 적절 지표로 변경하여 한국적 상황을 논의하였다.

특히 2차연도에는 생산이 가능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지표 중에서 일부를 생산하였다.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0~2세와 3~5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0~2세 모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과 주중 평균 이용시간을 산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아동돌봄서비스'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유아 공보육·교육 지표는 한국의 재정 지출 수준과 서비스 이용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고,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 수준은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영아보육의 경우는 모의 학력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 격차가 크지 않아서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형평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지표는 한국에서 0~5세 전(全) 연령에 걸친 보편적 비용지원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영아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은 36시간으로 OECD 평균에 비해 길게 나타나지만 보육 욕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즉, 근로시간에 부합하도록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07:30~19:30), 실제 이용시간은 이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장시간 근로와 보육 욕구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비용지원체계는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에서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아동돌봄체계 지표는 한국에서 0~5세를 대상으로 보육·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는 어리이집의 경우 0~5세, 유치원의 경우는 3~5세로 이용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나, 유보통합의 추진에 따라 기관 운영시간의 일원화가 예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선 지표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의 경우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기관유형

등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므로 균등한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신중한 해석을 요한다, 특히 영아반을 위주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배치 여부가 서비스 질을 좌우한다고 판단되지만 모든 기관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현재는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의 양성과정이 상이하나, 유보통합에 따라 자격기준의 통합 등 개선이 예고되어 있어 개선 지표에 따른 새로운 평가가 요구된다.

정리하면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공공 지출로 인해 서비스 이용률도 높은 상황이고, 주중 이용시간도 길게 나타난다. 특히 3~5세에 비해 0~2세의 공공 지출 수준이 높고, 3~5세의 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연령별로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높은 재정 투자와 서비스 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유보통합의 추진으로 이용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의 교직원의 최소 자격요건과 아동 대 교사 비율이 개선이 기대된다.

06

아동성과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제1절 아동성과 지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영역은 아동건강(Child Health), 아동빈곤(Child Poverty), 교육/문해력(Education/Literacy),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의 4개 영역,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은 최소 2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김은지 외, 2023). 김은지 외(2023)의 1차연도 연구에서 아동성과 영역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아동건강 영역의 영아사망, 기대수명, 저체중 출생, 백신 접종률, 모유수유율, 질병 관련 지표 중 당뇨병 유병률 지표와 아동장애의 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대상 가족현금급여 세부 지표는 적절하게 산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빈곤 영역에서는 상대빈곤율, 가구 유형별 빛 고용상태별 빈곤율 지표,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관련해서는 교육자원 관련 결핍 및 불평등 지표가 적절하게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문해력 영역에서도 청년 니트 지표를 제외하고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의 대다수 지표가 적절하게 산출,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 가입, 생애 첫 투표 참여율, 십대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참여 영역의 대다수 지표도 적절하게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은지 외, 2023).

1차연도 연구에 따르면 누락 또는 개선필요 지표는 아동건강 영역의 건강수명, 질병 관련 지표 중 천식 유병률, 과체중 및 비만, 성별 정기 흡연자,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 및 청소년의 성별 장애 정도,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 가구 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 교육·문해력 영역의 청년 니트 관련 지표들이었다(김은지 외, 2023). 2차연도 연구에서는 이 지표들의 생산필요성을 다시 점검하고 지표들을 재생산하여 한국 상황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2차연도를 진행하는 시기인 2023년 말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의 아동성과 영역은 OECD Child Well-Being Dashboard(CWD)와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CWBDP)로 개편되었다. CWBDP는 아동 웰빙에 관한 비교 데이터를 제공하는 OECD의 허브로 OECD 데이터베이스와 다양한 주요 국제 아동 조사 및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다.[101] CWBDP는 Child well-being outcomes(아동 웰빙 산물), Child well-being drivers(아동 웰빙 동인), Child well-being policies(아동 웰빙 정책)

항목에 대해 200개 이상의 비교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102] CWD는 정책 입안자와 일반인들이 아동 웰빙 증진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되었다.[103] OECD 아동 CWBDP으로부터 대표 지표를 사용하여 구축된 CWD는 아동 웰빙 결과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20개의 주요 지표와 아동 웰빙의 중요한 동인 및 아동 관련 공공 정책에 대한 다양한 추가 상황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104]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OECD가 아동성과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OECD 아동웰빙 DB로 신규 구축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성과 영역에서 다루었던 지표 중 많은 지표가 삭제되었다.

이에 2차연도 연구에서는 시의성과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재생산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누락 또는 개선 필요 지표로 2차연도 산출을 계획된 지표들 중,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2002년 또는 그 전후의 6-7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 2002년 13-14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 2013/14년 누락된 BMI 자료 비율, 청소년의 성별 장애 정도,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 가구 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은 CWD, CWBDP에서 유지되지 않아 시의성과 지속가능성이 없어 산출하지 않았다.

---

101)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n.d.).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child-well-being-data-portal.html(검색일: 2024.7.16.).
102)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n.d.).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child-well-being-data-portal.html(검색일: 2024.7.16.).
103) OECD Child Well-being dashboard.(n.d.). https://www.oecd.org/en/data/dashboards/oecd-child-well-being-dashboard.html(검색일: 2024.7.16.).
104) OECD Child Well-being dashboard.(n.d.). https://www.oecd.org/en/data/dashboards/oecd-child-well-being-dashboard.html(검색일: 2024.7.16.).

〈표 6-1〉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개선 방향	2차 검토 결과
CO1.1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아사망률 추이(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18)	X	자료 없음	
		1970년, 1990년, 2018년(혹은 가장 최근)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 1970, 1990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CO1.2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1960년과 2020년 사이 성별 기대수명의 추이(Trend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20)	O	적절	
		2020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성별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and Healthy Life Years(HLY) at birth,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기대수명'	
			X	누락	지표 생산 불필요
CO1.3	저체중 출생 (Low birth weight)	2018년 또는 최신 저체중아 출생 비율(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0년부터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년도까지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 변화(Changes in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90 to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0~1992 자료 없음)	
CO1.4	백신 접종률 (Vaccination rates)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및 백일해 발병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the incidence of pertussis, 2018 or closest available)	O	적절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홍역 예방 접종률 및 홍역 발병률 (Vaccination rates for measles and the incidence of measles, 2018 or closest available)	O	적절	
CO1.5	모유 수유율 (Breastfeeding rates)	2005년경 모유를 먹은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around 2005)	X	자료 없음	
		2005년경, 생후 3, 4, 6개월에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동의 비율 (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xclusively breastfed at 3, 4 and 6 months, around 2005)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개선 방향	2차 검토 결과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2017년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O	적절	
		2002년 또는 그 전후의 6-7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6-7, 2002 or around)	O	개선 필요	지표 생산 불필요
		2002년 13-14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13-14, 2002)	O	개선 필요	지표 생산 불필요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누락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2013/14(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 없음	
		2013/14년 누락된 BMI 자료 비율(Rates of missing BMI data, 2013/14)	X	누락	지표 생산 불필요
CO1.8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누락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 없음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National estimates o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by age and sex) → 시각·청각 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Estimates on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hearing los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blindness or vision impairments)	X	누락	(지표 대체)
		청소년의 성별 장애 정도(Young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isability than young men)	X	누락	지표 생산 불필요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Educational attainment of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X	누락	지표 생산 불필요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Percentage of employed and unemployed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X	자료 없음	
		장애가구원 유무에 따른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by disability status, 2009)	X	자료 없음	
		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for Children with a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개선 방향	2차 검토 결과
CO2.1	가구 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on disposable income, 2015 or latestavailable year)	O	적절	
		소득 불평등 측정(Measure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4 and 2015 or nearest available year)	O	적절	
		가구 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Relative disposable income by household type,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지표 생산 불필요
CO2.2	아동빈곤 (Child poverty)	아동의 상대빈곤률(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아동의 상대빈곤율 추이(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s, 2008, 2013,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가구 유형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typ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고용상태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X	자료 없음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	적절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X	자료 없음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	적절	
CO3.1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 (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O	적절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O	적절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2012 or 2015)	O	적절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parents' migrant status, 2012 or 2015)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개선 방향	2차 검토 결과
CO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arts and humanities subjects, 2019)	O	적절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2019)	O	적절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2019)	O	적절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TIMSS2011))	O	적절: 수학, 과학 성취도	
			X	자료 없음	
		성별에 따른 읽기, 과학, 수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boys-girls) in student's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TIMSS2011))	O	적절: 수학, 과학 성취도	
			X	자료 없음	
		가정 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cores on reading achievement relative to Home Resources for Learning, PIRLS 2011)	X	자료 없음	
CO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O	적절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O	적절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Changes in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O	적절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2018)	O	적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socio-economic status, 2018)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개선 방향	2차 검토 결과
CO3.5	청년니트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청년 니트 비율(NEET rates for 15-29 year-olds)	X	누락	
		연령대별 니트 비율(NEET rates across age groups)	X	누락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X	누락	
		내국인 및 외국인 니트 비율(Native-born and foreign-born NEET rates)	X	자료 없음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이주배경 학생(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2006 and 2015)	O	적절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O	적절: 비이주배경 집단	
			X	자료 없음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수학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X	자료 없음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통제 전·후의 내국인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native students and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ocio-economic background, 2015)	X		
		가정에서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Students who speak another language at home, 2015)	X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통제 전·후의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 (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students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spoken at home, 2015)	X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사회단체 구성원(활동적 또는 비활동적)인 청소년·청년 비율 (Proportion(%) of young people who are members(active or inactive) of organisations by type of group, around 2012)	O	적절	
		지난달 자원봉사를 한 청소년·청년 비율(Proportion of people who volunteered time to an organization in the past month,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지난해 자원 봉사 또는 자선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involved in work for voluntary or charitable organisations in the past year)	X	자료 없음	
		교회,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적극적·수동적 참여 (Active versus passive affiliation to a church,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 trade union, around 2012)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개선 방향	2차 검토 결과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 (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의회 선거 투표율(Voter turnout in latest parliamentary election, 2018 or latest year available)	O	적절	
		성·연령별 투표율(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O	적절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Lack of interest in politics, around 2012-2014)	O	적절	
CO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자료 없음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2013/14)	X		
		성별·가구 풍요도별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 없음	
		성별·가구 풍요도별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CO4.4	십대 자살 (Teenage suicides)	평균 10대 자살 경향(Average trends in teenage suicides, 1990-2015)	X	해당 없음	
		10대 자살(Teenage suicides, 1990, 2000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기존에 '적절'로 분류된 지표들과, '개선필요' 및 '누락' 지표 중에서 생산필요성이 인정되어 새로 산출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각 지표마다 지표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과 최종 산출된 지표를 활용한 한국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제2절 한국의 아동성과 지표

1. 아동건강

가. CO1.1 영아사망(Infant Mortality)[105]

부적절한 생활 조건, 빈곤 및 사회 경제적 요인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효과적인 보건의료제도는 신생아 기간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아동 건강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한편 생후 첫 1년 동안 사망의 약 2/3는 생후 28일이 되기 전에 발생하는데(신생아 사망) 주로 선천성 기형, 미숙아 및 임신 중에 발생하는 기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다. 신생아 후기 사망의 원인은 보다 광범위한데 가장 흔한 원인은 영아돌연사 증후군, 선천적 결함, 감염 및 사고이다(OECD, 2021: 96). 총 3가지 세부지표 중 적절하다고 판단한 2가지 지표의 우리나라 수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06]

1) Chart CO1.1.A.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 (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2018 or latest available) (적절)

가장 최근 시점의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OECD 보건통계에서도 보고하는 지표로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산출되어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이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년 미만 생존한 아동수로 측정되며, 신생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일 미만 생존한 아동수로 측정된다.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일 이상 생존하고 1년 미만 생존한 아동 수로 측정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4.1명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1000명당 2.5명에서 5명의 범위에 있다.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1000명당 1.6명이며 그 다음은 슬로베니아 1.7명, 아이슬란드 1.7명, 일본 1.9명, 스웨덴 2.0명의 순서다. 가장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와 멕시코로 각각 16.8명과 12.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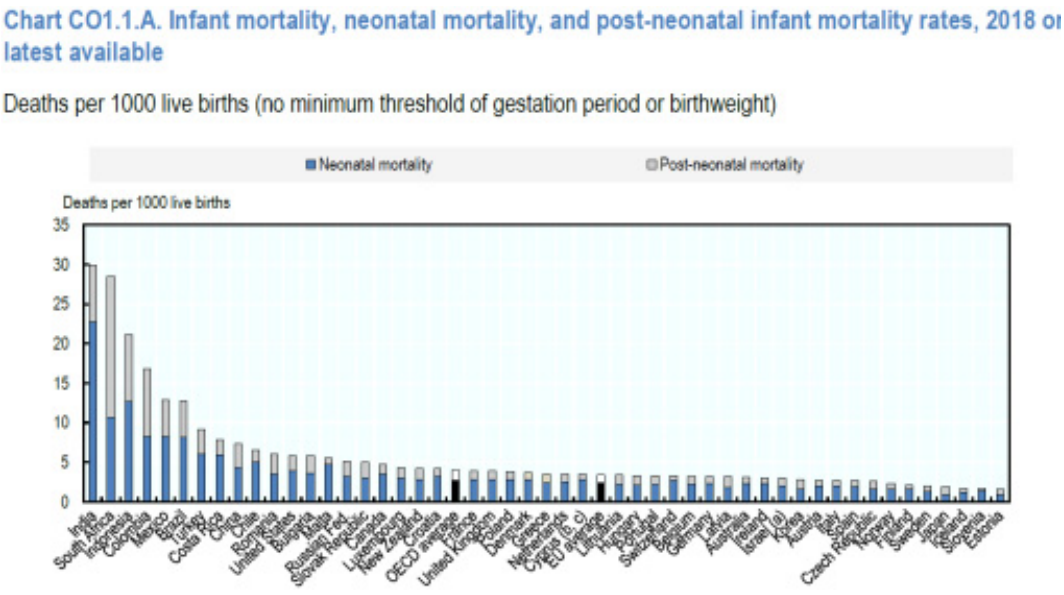
---

105) 본 지표의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1_Infant_mortality.pdf 에 기초하여 작성함.
106) 김은지 외 (2023)에서 두 번째 지표인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아사망률 추이(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18)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신생아사망률은 평균 1000명당 2.7명인데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과 에스토니아가 각각 0.9명, 아이슬란드 1.2명, 스웨덴 1.3명, 슬로베니아 1.4명 등의 순이다.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OECD 평균 1.4명이며 슬로베니아가 0.3명으로 가장 낮고 다음은 아이슬란드와 핀란드가 각각 0.5명, 스위스 0.6명 등의 순서이다.

이 중에서 한국의 지표 값을 살펴보면,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2.8명으로 OECD 국가들 중 12번째로 낮다. 신생아사망률은 1.6명,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1.2 명으로 OECD 평균값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그림 6-1] Chart CO1.1.A.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Eurostat Mortality Data,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OECD(2023). Chart CO1.1.A. 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2018 or latest available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영아사망률은 OECD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평균 1000명당 4.1명) 국가 간 차이도 크지 않다. 한국은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고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양호한 편이다.

2) Chart CO1.1.C. 1970년, 1990년,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 1970, 1990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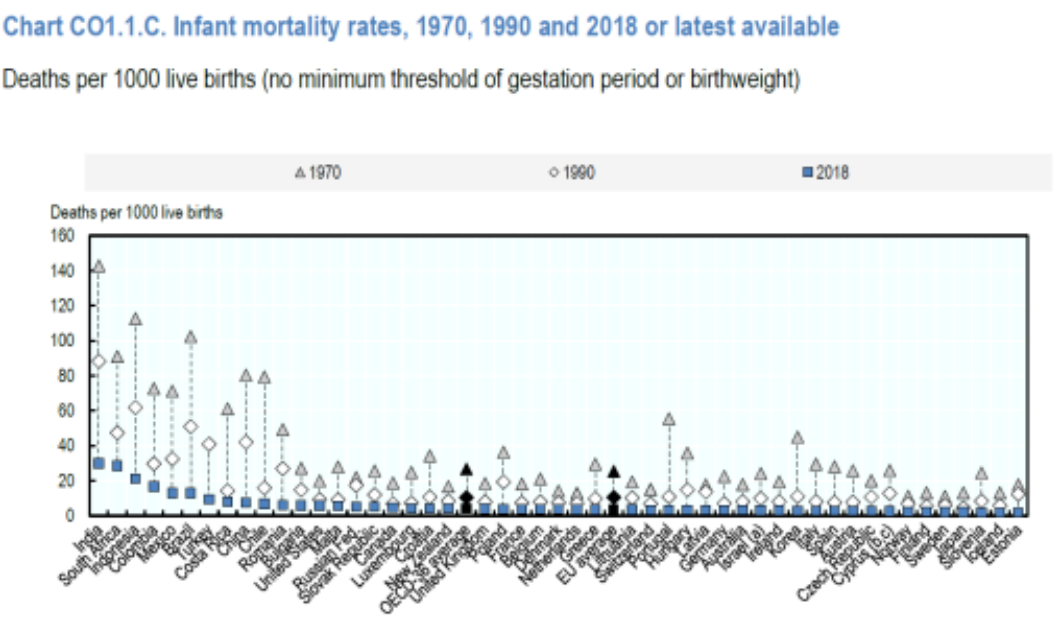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1990년 수치는 1989년과 1991년의 평균치로 산출된다. 해당 연도의 자료가 없는

일부 국가들 또한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들의 평균값은 1970년에 1000명당 25.5명이었고 1990년 10.5명, 2018년 3.4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1970년 기준으로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1000명당 11명이었고 그 다음은 노르웨이로 1000명당 11.3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에스토니아가 1000명당 1.6명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1000명당 1.7명인 아이슬란드와 슬로베니아였다. 1970년과 2018년 사이 개선정도가 가장 큰 OECD 국가는 남미국가들로 칠레는 1970년 1000명당 79.3명에서 6.6명으로 72.7명 감소했고 멕시코는 71.3명에서 12.9명으로, 콜롬비아는 72.7명에서 16.8명으로 감소했다.

이 중에서 한국의 지표 값을 살펴보면, 1970년 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약 20명 정도 높았으나 1990년에 11.0명으로 OECD 평균에 근접했고 2018년에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2.8명으로 감소했다. 1970년과 2018년 사이 개선정도를 비교할 때 한국은 많이 감소한 국가에 속한다.

[그림 6-2] Chart CO1.1.C. 영아사망률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Eurostat Mortality Data,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OECD(2023). Chart CO1.1.C. Infant mortality rates, 1970, 1990 and 2018 or latest available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OECD 국가들에서 영아사망률은 상당히 감소했으며(1970년 1000명당 25.5명, 2018년 3.4명) 특히 남미 국가들에서 감소 정도가 컸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1970년 45명에서 2019년 2.8명으로 감소하며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나. CO1.2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107]

기대수명은 현재 사망률이 변하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로 고려된다. 한편 오래 사는 것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건강수명은 활동 제한 등이 없는 기대여명으로 측정된다(OECD, 2021: 252). 기대수명 영역의 구성 지표 중 건강수명을 제외하면 모두 적절하게 산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Chart CO1.2.A. 1960년과 2020년 사이 성별 기대수명의 추이(Trend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20)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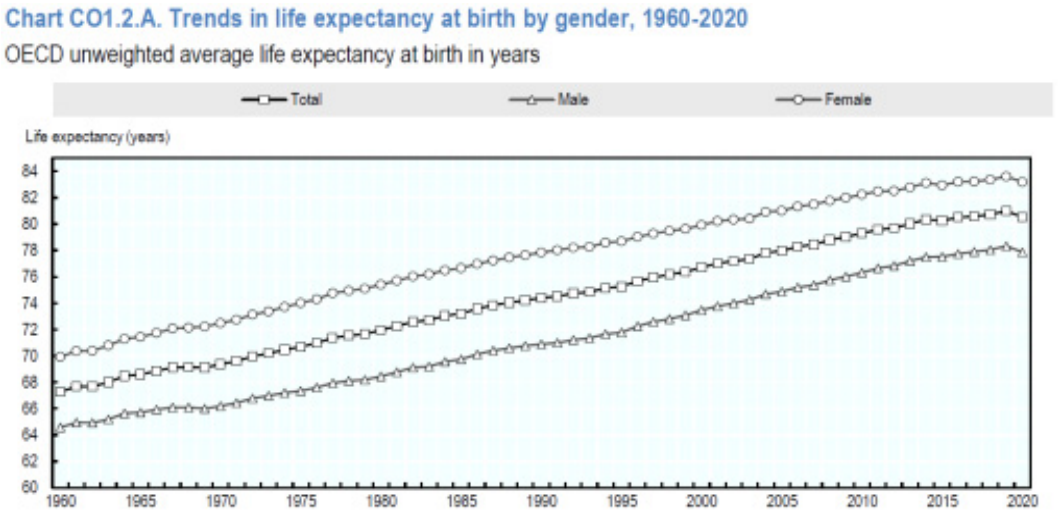
본 지표는 국가들의 산출치를 이용해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지표로 국가별 비교는 불가능한 지표이다. OECD 국가들은 출생 시 기대 수명 증가에 있어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다. 2020년 OECD 국가들에서 태어난 신생아 여아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2세로 1960년 생 여아 평균 수명(71세)보다 13년 더 길었다. 마찬가지로 2020년 태어난 남아의 평균 기대수명은 77.9세로 1960년 남아의 평균 기대수명(65세)보다 약 13년 더 길었다. 한편 2020년에 여아와 남아의 차이는 약 5.3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었다. 성별 격차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크게 늘어났으나(1991년 7.0년으로 정점에 도달), 지난 30년 동안 그 격차가 좁아졌다. 흡연 및 음주와 같은 건강 위험 행동에서 성별 차이가 감소한 것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OECD, 2022).

한편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기대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예비 데이터의 수치는 기대 수명이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OECD 보건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감소폭은 특히 미국(-1.6년), 스페인(-1.5),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모두 -1.3), 벨기에와 이탈리아(모두 -1.2)에서 컸다(OECD, 2021).

---

107) 본 지표의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2_Life_expectancy_at_birth.pdf 에 기초하여 작성함

[그림 6-3] Chart CO1.2.A. 성별 기대수명의 추이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OECD(2023). Chart CO1.2.A. Trend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20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OECD 국가들에서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감소했다.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오래 사는데 성별 차이는 최근 들어 좁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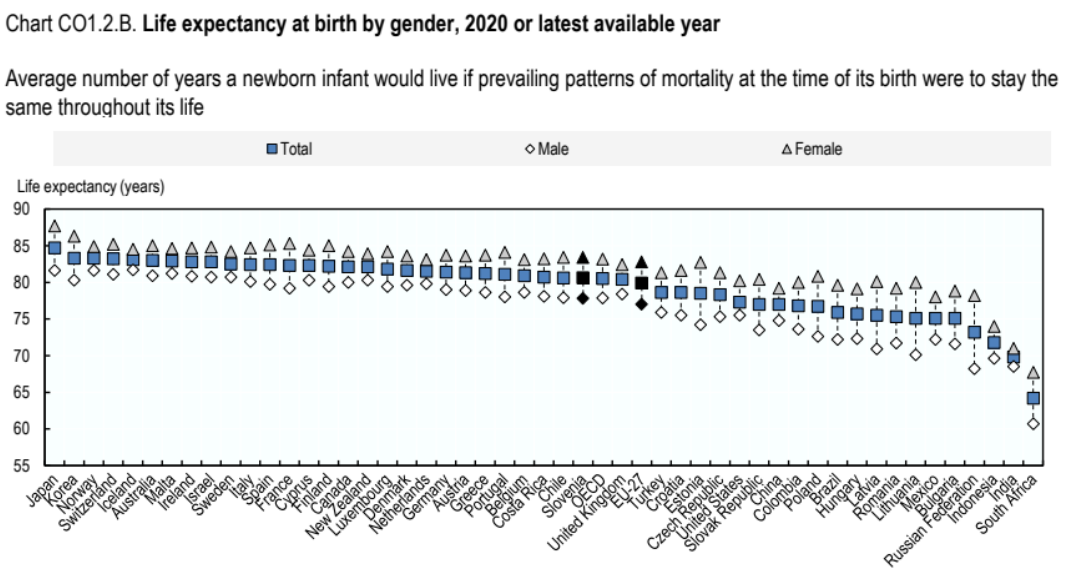
2) Chart CO1.2.B. 2020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성별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적절)

본 지표는 OECD 보건통계에서도 보고하는 지표로 한국 통계청이 산출하는데 통계청 생명표는 2023년 1월 시점에 1970년부터 2021년까지의 성별 기대수명 측정값을 제시하고 있다(통계청, 2022b).

2020년에 OECD 국가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0.5세이며 남성 77.9세, 여성 83.2세로 갓 출생한 여아가 남아보다 약 5.3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반적으로 여아는 남아보다 오래 사는 경향이 있지만, 성별 차이의 크기는 국가 및 시기에 따라 다르다. OECD 국가들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으로 남성 81.6세, 여성 87.7세이며 전체는 84.7세이다.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도 기대수명이 긴 국가인데 각각 83.3세(남 81.6세, 여 84.9세), 83.2세(남 81.1세, 여 85.2세), 83.1세(남 81.7세, 여 84.5세)이다. 남성이 오래 사는 국가는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등의 순이며 여성이 오래 사는 국가는 일본, 프랑스(85.3세), 스위스 등의 순서이다. 한편 멕시코는 78.0세로 기대수명이 가장 짧았다.

한국의 지표 값을 살펴보면, 전체 기대여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들 중 일본 다음으로 높다.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6년이 더 긴데 남성은 80.3년으로 OECD 국가들 중 10번째로 높지만, 여성은 86.3년으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그림 6-4] Chart CO1.2.B. 성별 기대수명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Eurostat Health Statistics; OECD(2023). Chart CO1.2.B.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2020년에 OECD 국가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77.9세, 여성 83.2세로 갓 출생한 여아가 남아보다 약 5.3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들 중 일본 다음으로 높고 특히 여성에서 높은 편이다.

다. CO1.3 저체중 출생(Low birth weight)[108)]

저체중 출생 지표는 유아의 사망 위험 증가에 관한 역학적 관찰을 기반으로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라 출생 시 영아의 체중이 2,500g(5.5파운드) 미만일 때 저체중아로 분류된다. 저체중아 비율은 2,500g(5.5파운드) 미만의 정상 출산아수를 총 정상 출산아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부합하게 산출된

108) 본 지표의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3_Low_birth_weight.pdf 에 기초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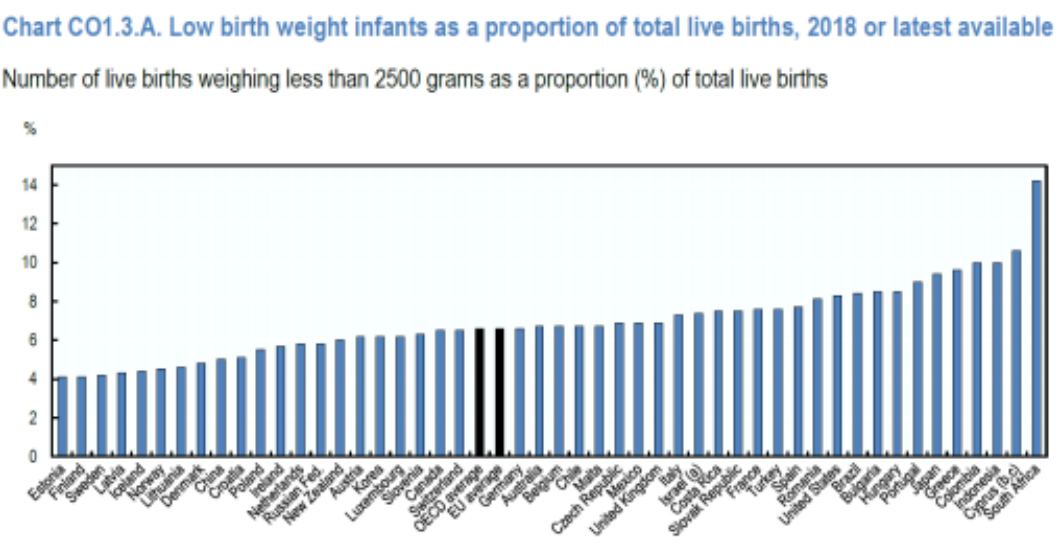
저체중아 출산율을 가장 최근인 2020년까지 연차별로 보고하였다.

1) Chart CO1.3.A. 2018년 또는 최신 저체중아 출생 비율(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2018 or latest available) (적절)

OECD 국가들에서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연도의 저체중 출산율은 평균 6.6%인데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저체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 4.1%, 프랑스(2017년) 4.1%, 스웨덴 4.2%, 라트비아 4.3%, 아이슬란드 4.4%(2019년)였던 반면 콜롬비아(10.0%), 그리스(9.6%) 등에서는 높은 편이었다. 영아사망률 등의 지표가 양호한 국가들 중에서도 저체중 출산율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1.9명으로 OECD 국가들 중 네 번째로 낮지만 저체중 출산율은 9.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높은 저체중 출산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한 영아 사망률 감소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지표 값을 살펴보면, 6.2%로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순서로는 17번째에 해당한다. 즉, 앞서 살펴본 영아사망률이나 기대여명의 성과에 비해 저체중 출산율은 높은 편이다.

[그림 6-5] Chart CO1.3.A. 저체중아 출생 비율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European Community Health Indicators (ECHI):http://ec.europa.eu/health/indicators/indicators/index_en.htm; OECD(2023). Chart CO1.3.A.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2018 or latest available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OECD 국가들에서 가장 최근 연도의 저체중 출산율은 평균 6.6%인데 국가마다 다양한 편이다. 한국에서 저체중 출산율은 6.2%로 OECD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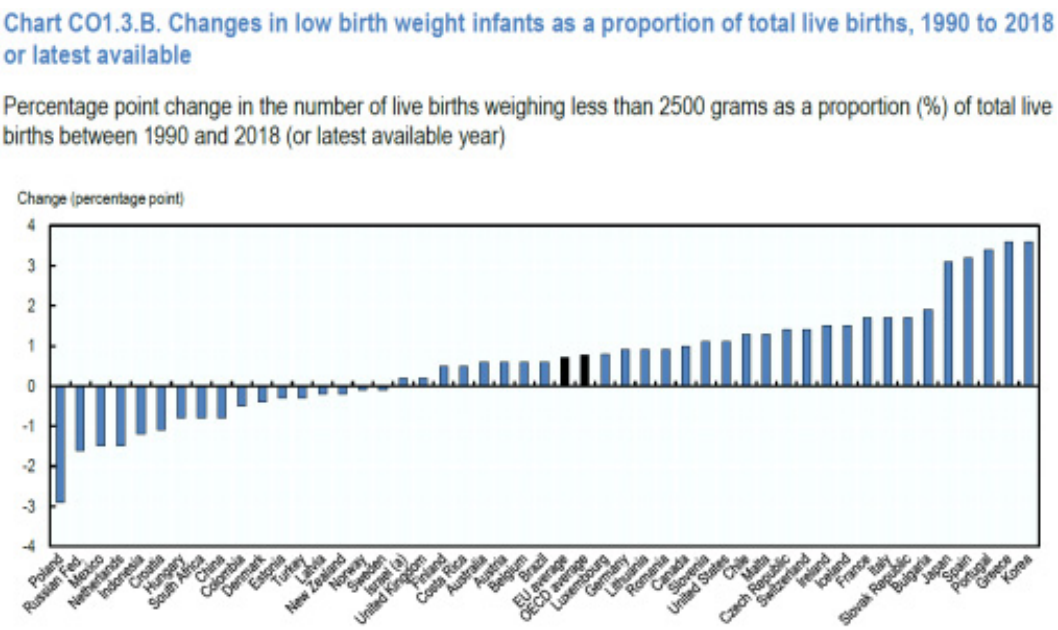
2) Chart CO1.3.B. 1990년부터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년도까지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 변화 (Changes in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90 to 2018 or latest available) (적절)

우리나라 통계청은 199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부합하게 저체중아 출산율을 산출하여 보고하였다. 1990년부터 1992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자료는 없는 상황으로 1993년부터 2018년(혹은 가장 최근 연도) 사이의 변화가 보고되었다.

1990년과 2018년 사이 저체중 출산율은 OECD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평균적으로는 0.8%p 증가했다. 저체중 출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난임 치료로 인한 다태아 출산 증가, 출산 시 산모의 연령 증가, 여성의 흡연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예외로는 폴란드로 1990년 8.4%에서 2018년 5.5%로 2.9%p 감소했고 멕시코는 8.4%에서 6.9%로 1.5%p 감소했다.

이 중에서 한국의 지표 값을 살펴보면, 1993년에 2.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았으나 2018년 6.2%로 3.6%p 증가했는데 이는 OECD 국가들 중 증가 정도가 가장 크다. 출산시기 지연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6] Chart CO1.3.B. 저체중 출생아 비율 변화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European Community Health Indicators (ECHI):http://ec.europa.eu/health/indicators/indicators/index_en.htm; OECD(2023). Chart CO1.3.B. Changes in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90 to 2018 or latest available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OECD 국가들에서 저체중 출산율은 1990년과 2018년 사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0.8%p 증가) 이는 사회환경 변화와 관련된다. 한국의 저체중 출산율은 1993년에 2.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았으나 최근 상당히 증가했다.

라. CO1.4 백신 접종률(Vaccination rates)[109)]

1) Chart CO1.4.A.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및 백일해 발병률(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the incidence of pertussis, 2018 or closest available) (적절)

본 지표는 OECD 보건통계에서도 보고하는 지표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조합(DPT) 예방 접종을 3회 이상 접종한 1세의 비율(%)과 10만 명당 백일해 발병 보고건 수로 구성되며, 적절하게 산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OECD 국가들의 DPT 예방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은 94.8%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인데 절반 이상의 국가들에서 접종률이 95% 이상이다. DPT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99.9%의 접종률을 달성했고 그 다음으로 높은 국가들은 99.0%의 예방접종률을 보인 헝가리,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이다. 벨기에와 튀르키예는 98.0%로 그 뒤를 이었다. DPT 예방 접종률이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멕시코로 각각 85%와 88%였다.

백일해 발병률은 OECD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낮은 편이다. 발병 보고건 수는 OECD 평균이 10만 명당 7.8명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헝가리와 그리스로 10만 명당 0.2명으로 나타났으며 튀르키예가 0.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10만 명당 45건이 넘어 높은 편이었다. 스위스는 예방접종률이 96%임에도 2014년에 10만 명당 145건 발생을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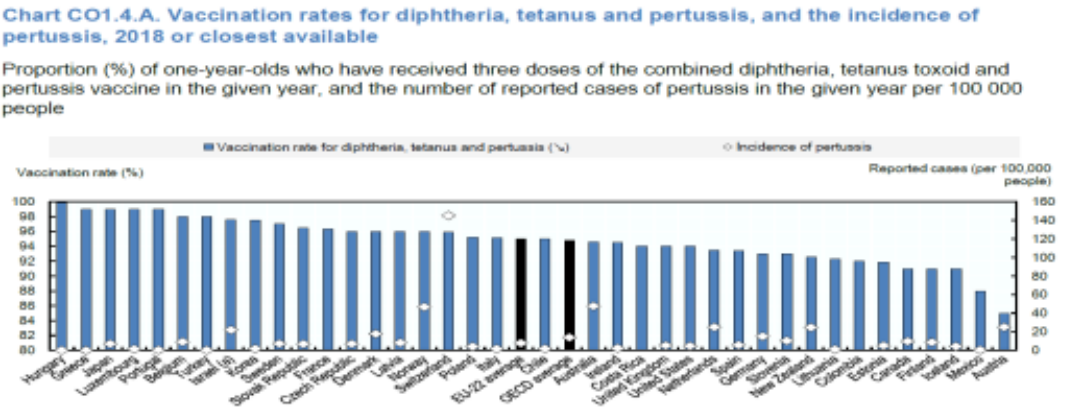
이 중에서 한국의 지표 값을 살펴보면, DPT 예방 접종률은 97.5%로 OECD 평균보다 높고 OECD 국가들 중에서는 9번째로 높다. 백일해 발병률은 10만 명당 1.9명으로 OECD 국가들 중 9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정리하면, OECD 국가들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평균 94.8%) 백일해 발병률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은 OECD 국가 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백일해 발병률도 낮은 편이다.

---

109) 본 지표의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4_Childhood_vaccination.pdf 에 기초하여 작성함

[그림 6-7] Chart CO1.4.A.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및 백일해 발병률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OECD(2023). Chart CO1.4.A. 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the incidence of pertussis, 2018 or closest available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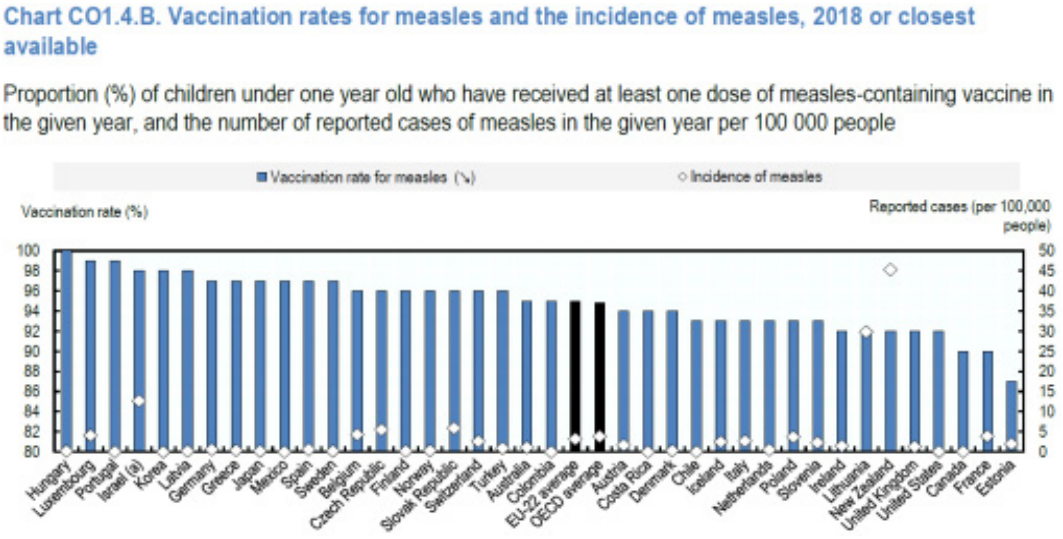
2) Chart CO1.4.B.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홍역 예방 접종률 및 홍역 발병률 (Vaccination rates for measles and the incidence of measles, 2018 or closest available) (적절)

본 지표는 해당 연도에 홍역 함유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1세 미만 아동의 비율(%) 및 해당 연도에 10만 명당 보고된 홍역 사례 수로 측정되며 OECD 보건통계에서도 보고하는 지표로 적절하게 산출되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들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평균 접종률은 95.0%로 DPT 예방 접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DPT 예방 접종과 유사하게 헝가리가 홍역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데(100%)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99.0%로 그 뒤를 이었고 이스라엘과 한국, 라트비아는 98%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백일해와 마친가지로 홍역 발병률도 OECD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인데 평균 10만 명당 3.2건 발생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10만 명당 2건 이하로 보고 했는데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한국으로 0건이 보고되었으며 포르투갈, 칠레, 미국, 캐나다는 10만 명당 0.1명으로 그 다음으로 낮았다. 예방접종률이 90% 정도로 높음에도 리투아니아(10만 명당 30건)와 뉴질랜드(10만 명당 45건)의 국가들에서는 홍역 발생률이 높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홍역 예방 접종률은 OECD 국가들 중 4번째로 높다. 또한 홍역 보고 건수가 0건으로 매우 양호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6-8] Chart CO1.4.B. 홍역 예방 접종률 및 홍역 발병률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OECD(2023). Chart CO1.4.B. Vaccination rates for measles and the incidence of measles, 2018 or closest available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OECD 국가들에서 홍역 예방 접종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평균 95.0%) 홍역 발병률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의 홍역 예방 접종률은 OECD 국가 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홍역 발병률은 최근 0건이었다.

마. CO1.5 모유 수유율(Breastfeeding rates)[110]

이 영역의 지표 중 하나는 2005년경 모유를 먹은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around 2005)이나 해당 지표는 한국 자료는 보고되지 않았다. 적절하게 산출 및 보고되어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아래와 같다.

1) Chart CO1.5.B. 2005년경, 생후 3, 4, 6개월에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xclusively breastfed at 3, 4 and 6 months, around 2005) (적절)

모유수유는 아기와 엄마 모두에게 많은 이점이 있다. 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며 이는 설사, 천식, 하기도 호흡기 감염, 중이염 등 일반적으로 어린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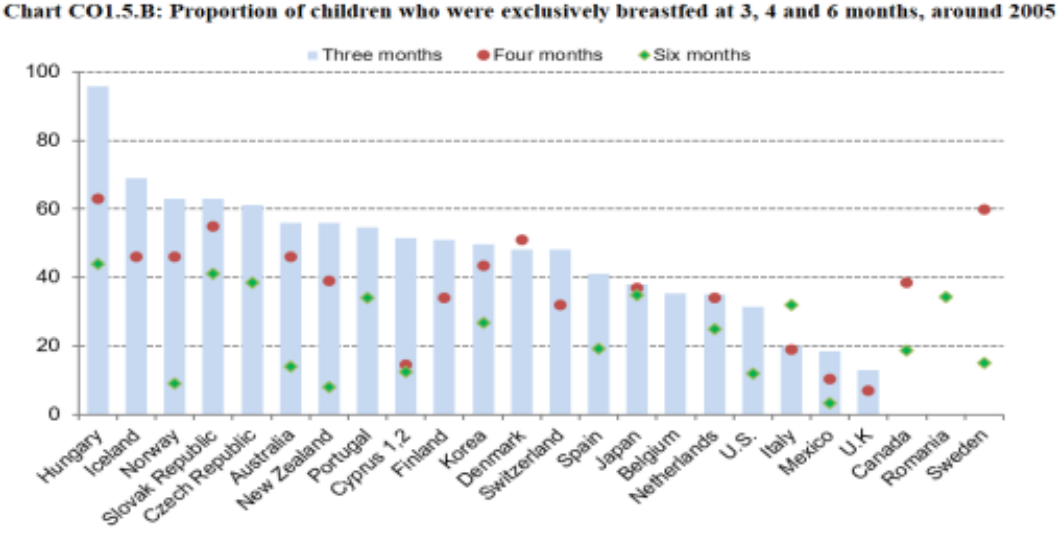
110) 본 지표의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43136964.pdf(검색일: 2023.1.15.)”에 기초하여 작성함.

질병을 예방하며(Baker and Milligan, 2007) 어린이의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aspi, et al, 2007 및 Kramer, et al, 2008). 모유수유는 또한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을 줄이고(AmericanInstitute of Cancer Research, 2008), 비만의 위험을 낮추고 가계비를 줄임으로써 엄마에게도 이익이 된다(OECD, 2022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2006년도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05년경 생후 3, 4, 6개월에 모유만 먹은 아동의 비율을 보고하였다. 해당 지표는 적절하게 산출되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다.

모든 OECD 국가들이 수치를 보고하지는 않았고 일부 국가들은 3, 4, 6개월 중 가능한 경우만 데이터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보고한 국가들에서 3, 4, 6개월에 모유만 먹은 아동의 평균 비율은 각각 47.4%, 38.9%, 23.4%였다. 3개월 차에 모유만 먹은 아동의 비율은 헝가리가 95.8%로 가장 높았고 아이슬란드(69.0%), 노르웨이와 슬로바키아(63.0%) 순서였다. 4개월 차에서도 헝가라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63.1%를 보고했고 그 다음은 스웨덴(59.8%), 슬로바키아(55.0%)였다. 6개월 차에도 역시 헝가리가 가장 높았고(43.9%), 슬로바키아(41.0%), 체코(38.4%)가 그 뒤를 이었다. 모유수유를 받은 어린이의 비율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생후 개월 수가 길어지며 감소하였다.

한국의 지표 값을 살펴보면, 3개월 차에 모유만 먹은 아동의 비율은 49.6%였고 4개월 차에는 43.4%, 6개월 차에는 26.8%였다. 전반적으로 지표를 보고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었다.

[그림 6-9] Chart CO1.5.B. 생후 3, 4, 6개월에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동의 비율



출처: National surveys; OECD(2023). Chart CO1.5.B. 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xclusively breastfed at 3, 4 and 6 months, around 2005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모유수유를 받은 어린이의 비율은 OECD 국가들에서 다양한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생후 개월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했다. 한국의 모유수유율은 지표를 보고한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다.

바.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111]

이 영역에서 천식 유병률은 한국이 보고하는 지표이나 국가 수준이 아닌 서울 지역의 수치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당뇨병 유병률 수치만 살펴보았다.

1) Chart CO1.6.A. 2017년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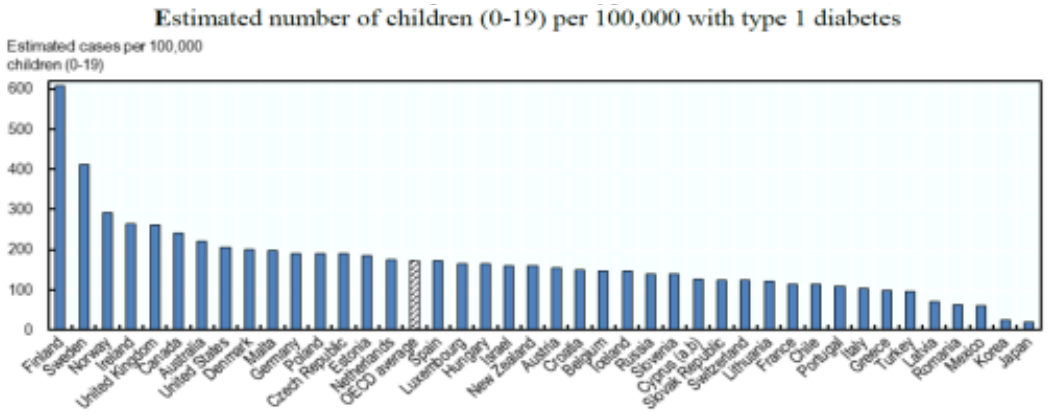
본 지표는 1형 당뇨를 가진 0-19세 아동 추정치인데 2형 당뇨가 있지만 1형 당뇨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흔한 유형의 당뇨병이기 때문이다. 본 지표의 출처는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로 제시되어 있고 한국의 수치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하게 산출되어 국제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OECD 국가들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아동 10만 명당 평균 172.7명이 1형 당뇨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을 제외하고 추정 유병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19.6명), 멕시코(59.5명), 루마니아(62.9명), 라트비아(69.5명), 튀르키예(95.8명) 순이었다.

한국 아동의 1형 당뇨 추정 유병률은 25.0명으로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낮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111) 본 지표의 보고 현황은 https://www.oecd.org/els/family/CO_1_6_Diabetes_Asthma_Children.pdf 에 기초하여 작성함

[그림 6-10] Chart CO1.6.A.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
CO1.6.A. 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출처: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Diabetes Atlas, Eighth edition 2017 http://www.diabetesatlas.org/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OECD(2023). Chart CO1.6.A. 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OECD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20세 미만 어린이 100,000명당 제1형 당뇨병 환자가 173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에서 아동의 1형 당뇨 추정 유병률은 25.0명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사. CO1.7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ity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1) Chart CO1.7.A.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누락)

이 지표는 아동의 신체 발달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CWBDP에서 해당 지표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령별 및 성별 아동 성장 곡선에 따라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분류되는 체질량 지수(BMI)의 백분율로 산출된다. BMI는 키와 몸무게에 대한 자가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되었는데, 응답자들에게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몸무게가 얼마인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키가 얼마인지를 질문하여 측정되었다.

한국의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은 OECD에서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OECD의 해당 지표가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ve Cross-National Survey를 활용하여 측정되면서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가 응답 방식으로 BMI를 수집하는 자료 중 공개되는 자료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있는데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율 산출이 가능하다. 한편 OECD는 Family affluence scale (FAS)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율을 비교하는데 이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을 측정하는 자료원은 없다.

한국의 경우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년 자료를 사용하여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우선 해당 연령 아동의 자가 보고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BMI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WHO의 연령별 및 성별 아동 성장 도표[112]의 정의에 따라 아동의 BMI가 각 연령의 +1SD 보다 큰 경우 과체중 및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아동의 월령을 이용해야 하나 아동실태조사에서 아동의 생년만 확인 가능하므로 WHO 성장도표에서 각 연령의 5개월 차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했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 연령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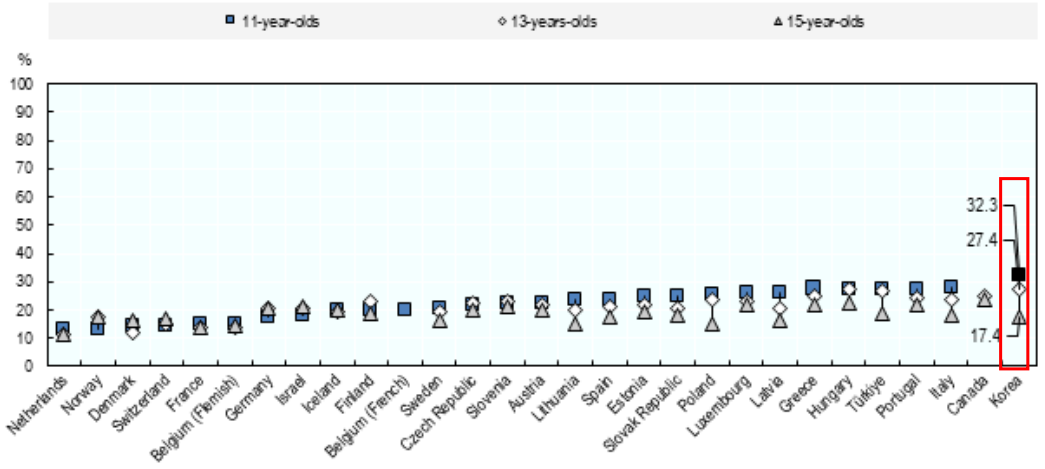
산출결과 11세, 13세, 15세 각 연령에서 한국의 값은 32.3%, 27.4%, 17.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의 값을 다른 국가들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모든 연령에서 가장 낮은 과체중 및 비만율을 보였는데 각 연령에서 각각 13.2%, 11.2%, 11.5%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하고 11세에서 과체중 및 비만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28.1%였고 13세에서는 헝가리가 27.1%로 가장 높았으며 15세에서는 캐나다가 23.8%로 가장 높았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과체중 및 비만인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11세와 13세에서 각각 32.3%와 27.4%로 가장 높았고 15세에서 17.4%로 중간 정도 수준을 보였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해당 연령 구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체중 및 비만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12) Growth reference data for 5–19 years. http://www.who.int/growthref/en/ (검색일: 2024.6.11.)

[그림 6-11] Chart CO1.7.A.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
Chart CO1.7.A. 11-, 13- and 15-year-old school children with a Body Mass Index (BMI) classed as 'overweight' or 'obese' according to the WHO child growth curve standards.



주: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ve Cross-National Survey 2017-18을 이용해 WHO child growth curve standards에 따라 정의된 과체중 및 비만율
출처: OECD(2023). Chart CO1.7.A. 11-, 13- and 15-year-old school children with a Body Mass Index (BMI) classed as 'overweight' or 'obese' according to the WHO child growth curve standards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 자료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이용해 각 연령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과체중 및 비만을 정의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한편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월령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월령별로 제시되는 WHO의 아동 성장 도표에서 정확한 과체중 및 비만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 또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각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의 수가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11세, 13세, 15세에서 각각 104명, 135명, 209명이었다. 이와 함께 과체중 및 비만 정의 시, 인종과 민족에 따라 체질량지수나 체지방률이 이환율이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어 비만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인종적 특성을 고려해 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n.d.).[113] 본 지표를 보고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백인이 다수인 국가이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과체중 및 비만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비만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되는데 심혈관계 질환과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 복합 질환이다(WHO, 2024).[114] HBSC World

113)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n.d.) 비만과 수술치료-비만과 병적 비만. https://www.ksmbs.or.kr/content/general/01.php (검색일: 2024.6.13.)
114) WHO (2024). Obesity and overweight.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tobacco (검색일: 2024.6.13.)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ve Cross-National Survey 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값만 보고되고 한국의 경우 지표값이 누락되어 있었다. 동일한 자료원은 아니지만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인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사용하여 WHO의 아동 성장 도표 기준에 따른 11세, 13세, 15세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율을 산출하였다.

한국의 과체중 및 비만율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15세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OECD 국가의 중간 정도 수준에 해당했지만 11세와 13세 과체중 및 비만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해당 연령 구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체중 및 비만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요약하면, 11세, 13세, 15세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HBSC 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한국은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표 값이 보고되지 않았다. 동일한 조사는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되는 국내 자료원을 활용해 해당 연령에서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율을 측정하였다. 측정값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특히 11세와 13세에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들과 유사하게 해당 연령 구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체중 및 비만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 CO1.8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1) Chart CO1.8.A. 성별 11, 13, 15세 정기 흡연자 비율(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누락)

이 지표는 아동의 위험 행동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CWBDP에서 해당 지표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30일 동안 한 번이라도 흡연을 한 경우로 정의된다. 흡연율은 지난 30일 동안의 흡연 일수에 대한 질문에 '전혀 하지 않았음'부터 '30일 이상'까지로 답하도록 하며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비율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11, 13, 15세 정기 흡연자 비율은 OECD에서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OECD의 해당 지표가 HBSC 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ve Cross-National Survey를 활용하여 측정되면서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표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질문을 이용해 흡연율을 측정하는 자료 중 공개되는 자료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있는데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11, 13, 15세 정기 흡연자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한편 OECD는 Family affluence scale (FAS)에 따른 흡연율을 비교하는데 이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여 아동, 청소년의 흡연율을 측정하는 국내 자료원은 없다.

한국의 경우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년 자료를 사용하여 11, 13, 15세 정기 흡연자 비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우선 해당 연령 아동 중 지난 30일 동안 한번이라도 흡연을 했다고 응답한 아동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 연령의 흡연율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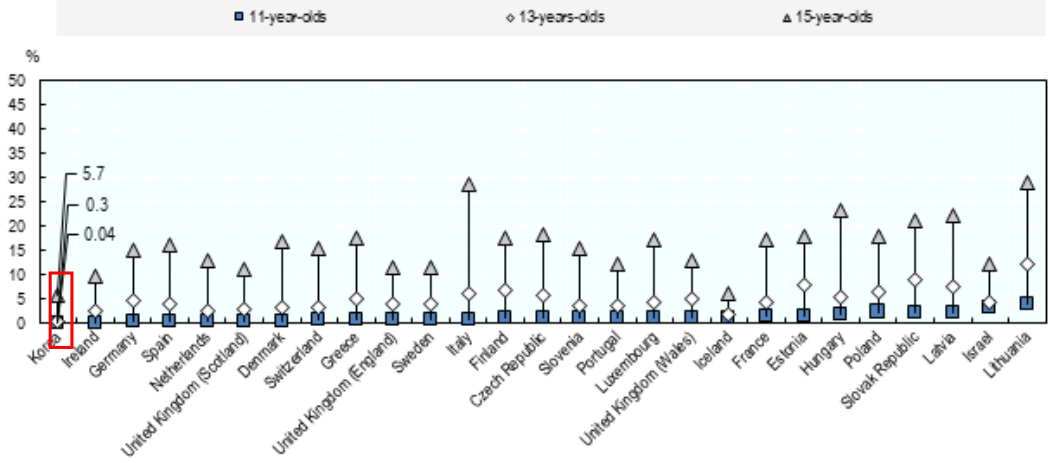
산출결과 11세, 13세, 15세 각 연령에서 한국의 값은 0.04%, 0.3%, 5.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의 값을 다른 국가들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을 제외하고 11세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로 0.2%였고, 13세, 15세에서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각각 1.8%, 6.2%였다.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로 각각 4.1%, 12.3%, 28.9% 였다. 특히 15세에서 한국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들에서 흡연율은 10%를 넘었다.

한국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모든 연령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았는데 11세, 13세, 15세 각 연령에서 0.02%, 0.3%, 5.7%였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해당 연령 구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흡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6-12] Chart CO1.8.A. 성별 11, 13, 15세 정기 흡연자 비율

Chart CO1.8.A.11-, 13- and 15-year-old school children who report having smoked at least once in the last 30 days



주: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ve Cross-National Survey 2017-18을 이용해 지난 30일 동안 한번이라도 흡연한 경우로 정의됨

출처: OECD(2023). Chart CO1.8.A.11-, 13- and 15-year-old school children who report having smoked at least once in the last 30 days에 한국 자료를 추가함

※ 한국 자료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이용해 각 연령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흡연율을 정의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한편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하였 듯 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각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의 수가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11세, 13세, 15세에서 각각 104명, 135명, 209명이었다. 특히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11세에서 흡연율은 0.5%였지만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0.04%로 크게 낮아졌다.

흡연은 사망과 질환 발생에 기여하며 모든 형태의 담배 사용은 해롭다(WHO, 2023).[115] CWBDP는 HBSC 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ve Cross-National Survey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값만 보고해왔고 한국의 경우 지표 값이 누락되어 있었다. 동일한 자료원은 아니지만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인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11세, 13세, 15세 아동의 흡연율을 산출하였다.

한국의 흡연율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11세, 13세, 15세의 흡연율은 다른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이었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해당 연령 구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흡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요약하면, 11세, 13세, 15세 아동의 흡연율은 HBSC 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한국은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표 값이 보고되지 않았다. 동일한 조사는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되는 국내 자료원을 활용해 해당 연령에서 아동의 흡연율을 측정하였다. 측정값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아동의 흡연율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들과 유사하게 해당 연령 구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흡연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 CO1.9 아동 장애(Child Disability)

1) Table CO1.9.1.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National estimates o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by age and sex) → 시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 및 청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Estimates on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hearing los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blindness or vision impairments) (누락 → 지표대체)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은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은 당시 보고하지 않았으며, OECD 아동웰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지표를 포함하지 않고, 유사한 관련 지표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장애'의 정의가 상이하나, 이를 고려하지 못한 장애출현율에 대해 국가별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을 감안한 조치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OECD 아동웰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전체 장애유형에 대한 출현율 대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115) WHO (2023). Tobacco.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tobacco (검색일: 2024.6.13.)

아동의 출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CO1.9.1.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National estimates o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by age and sex)을 대신하여 OECD 아동웰빙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 및 청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Estimates on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hearing los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blindness or vision impairments)을 비교하고 한국의 상황을 점검해보았다.

청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은 최저 15.2%(스위스) - 최고 38.0%(멕시코)의 범위로 OECD 평균은 21.3%로 나타났다. 한국은 17.8%로 보고되어 OECD 평균 대비 낮은 편이었다. 시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은 최저 6.9%(에스토니아) - 최고 22.4%(스페인)의 범위로 OECD 평균은 12.0%로 나타났다. 한국은 12.7%로 OECD 평균 대비 미미하게 높은 편이었다. 데이터의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국가별로 '장애'의 범위가 문화적인 요인,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전쟁이나 기아 등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데이터 상에서 보고하고 있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는 모든 원인에 기인한 미약하거나(mild), 중도(moderate), 중도에서 심각(moderate severe), 심각(severe), 극심(profound), 및 완전한(complete) 장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장애의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장애인 실태조사에 근거한 재가 시각장애인의 출현률(0-9세 0.4%, 10-19세 0.6%)과 재가 청각장애인의 출현률(0-9세 0.6%, 10-19세 0.5%)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로 보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6].

이와 같이 청각 및 시각장애아동의 출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기술적인 지원, 사회적 인식의 개선 및 자원의 연계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청각장애아동·청소년 및 시각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충분성, 사회적 인식의 개선, 유관 연계가능한 자원 및 지원체계 등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서 적절하게 확보되고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16) 통계청(2022). 재가 청각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재가 시각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32S0137 로부터 인출.

〈표 6-2〉 OECD 국가의 시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 및 청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2019)

Country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hearing los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blindness or vision impairments	
	출현율	95% 불확실성 구간	출현율	95% 불확실성 구간
Australia	17.2	(15.1 to 19.4)	15.4	(12.7 to 18.7)
Austria	15.9	(14.1 to 17.9)	12.4	(10.3 to 14.9)
Belgium	16.1	(14.2 to 18.0)	12.4	(10.2 to 15.1)
Canada	14.6	(12.9 to 16.4)	9.8	(8.1 to 11.8)
Chile	17.8	(15.5 to 20.1)	16.2	(13.4 to 19.7)
Colombia	36.1	(32.2 to 40.3)	13.6	(11.4 to 16.3)
Costa Rica	35.9	(32.1 to 40.0)	12.7	(10.6 to 15.4)
Czech Republic	30.2	(26.6 to 33.9)	7.6	(6.3 to 9.3)
Denmark	15.5	(13.7 to 17.4)	11.9	(9.8 to 14.5)
Estonia	30.6	(26.9 to 34.3)	6.9	(5.7 to 8.4)
Finland	13.0	(11.4 to 14.7)	12.5	(10.3 to 15.1)
France	16.4	(14.5 to 18.5)	12.1	(9.7 to 15.0)
Germany	15.8	(14.0 to 17.6)	12.4	(10.2 to 15.0)
Greece	16.6	(14.7 to 18.6)	10.7	(8.5 to 13.3)
Hungary	31.4	(27.7 to 35.3)	7.8	(6.4 to 9.4)
Iceland	15.8	(13.9 to 17.8)	10.9	(9.0 to 13.4)
Ireland	15.8	(13.9 to 17.7)	12.4	(10.2 to 15.0)
Israel	15.7	(13.8 to 17.6)	12.2	(10.0 to 14.7)
Italy	17.8	(15.7 to 19.9)	18.2	(15.1 to 22.1)
Japan	18.9	(16.6 to 21.4)	10.9	(9.0 to 13.0)
Korea	17.8	(15.7 to 19.9)	12.7	(10.7 to 15.4)
Latvia	30.6	(27.0 to 34.4)	9.9	(8.2 to 11.9)
Lithuania	30.7	(27.2 to 34.5)	9.9	(8.2 to 11.9)
Luxembourg	15.6	(13.8 to 17.5)	12.3	(10.1 to 15.0)
Mexico	38.0	(33.8 to 42.5)	13.2	(10.9 to 16.0)
Netherlands	16.0	(14.2 to 17.9)	10.9	(9.1 to 13.2)
New Zealand	18.4	(16.1 to 20.8)	15.6	(13.0 to 18.7)
Norway	17.8	(15.5 to 20.1)	14.6	(12.1 to 17.7)

Country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hearing los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blindness or vision impairments	
	출현율	95% 불확실성 구간	출현율	95% 불확실성 구간
Poland	32.8	(28.8 to 36.8)	8.2	(6.8 to 9.8)
Portugal	17.0	(15.0 to 19.0)	12.9	(10.6 to 15.8)
Slovak Republic	30.6	(27.0 to 34.5)	7.6	(6.3 to 9.2)
Slovenia	30.0	(26.4 to 33.8)	7.6	(6.2 to 9.2)
Spain	16.7	(14.7 to 18.7)	22.4	(18.4 to 27.4)
Sweden	16.2	(14.1 to 18.5)	8.7	(6.9 to 11.0)
Switzerland	15.2	(13.4 to 17.1)	12.2	(10.0 to 14.9)
Türkiye	19.6	(17.1 to 22.1)	12.0	(9.9 to 14.4)
United Kingdom	24.7	(21.4 to 27.9)	15.0	(12.4 to 18.1)
United States	16.2	(14.1 to 18.2)	10.9	(9.0 to 13.2)
OECD average	21.3		12.0	

출처: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Accessed on: 26/01/2022; OECD(2023) Child well-being outcome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sensory impairments'(https://www.oecd.org/en/data/datasets/child-well-being-outcomes0.html) 재정리

2) Table CO1.9.6. 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for Children with a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 (적절)

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 가족현금급여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현금급여 제도를 국가별로 정리한 자료로서 급여의 대상이나 기준 등의 설명을 포함한 정성적 요소와 함께 급여액 규모인 정량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지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다. 본 지표의 자료 원출처는 각국이 보고한 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 가족현금급여 제도 개요이며,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비교가 가능한 요약표를 제시하고 있다.

OECD의 가족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국가별 자료[117]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만성질환 등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대상, 구성 및 지급액 규모 등은 매우 상이하다. 일반적으로는 질병·장애가 있는 아동 자녀에 대한 돌봄 비용(돌봄자 및 간병인 비용, 기타 돌봄과 관련된 비용)을 보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돌봄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활동 제한에 상응하는 소득보전

117) 급여액이 미보고되거나, 일부항목만 보고된 국가의 경우 제외하였음.

형식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한국은 장애아동의 가구소득 및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이하인 경우를 선별하여, 이들 가구에서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과 같이 장애아동의 돌봄으로 부모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데에 대한 소득보전적 급여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1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16세 기준(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20세~26세 사이의 연령 기준(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 있으며, 일부 국가(독일, 스페인, 스웨덴의 간병인 수당, 영국의 돌봄자 수당, 미국)에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국은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18세 기준(학교재학 시 20세까지)으로 하고 있다.

아동의 연령 외에 수당지급 대상 가족을 선정하는 추가적인 기준으로는 장애의 수준이나 거주지, 시민권 등이 있다. 가족급여 지급 대상 가족 선정 시 국가가 선정한 권위있는 정부기관 혹은 의료인 등에 의하여 장애의 유무 혹은 수준을 진단·평가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는 국가에는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이 있으며, 거주지 기준(호주, 네덜란드)이나 시민권 유무(이탈리아)를 선정기준에 추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장애아동수당 지급 시 장애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급여액 수준은 아동의 연령(포르투갈), 한부모 혹은 양부모 여부(폴란드, 포르투갈), 진단·평가된 장애 수준(스페인, 스웨덴, 슬로베니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OECD의 가족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국가별 자료를 기준으로 환율과 물가차이를 고려한 비교를 위하여 ppp[118]를 적용하여 환산해 보았다. 그 결과 최저 월 128원(칠레)~ 최대 월 305만원[119](스웨덴)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 월지급액은 60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장애아동 수당은 최저 월3만원~최대 월22만원으로 OECD 국가 평균 월지급액 대비 다소 낮은 편이었다.

118) OECD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가장 최신 ppp 자료인 2022년도 각국의 ppp를 기준으로 산출,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urchasing-power-parities-ppp.html?oecdcontrol-00b22b2429-var3=2022 참고.

119) 스웨덴의 월간 육아수당과 간병인수당(주당 20시간, 총 4주)을 합산하여 제시함. 실제 수령금액은 욕구나 필요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표 6-3〉 OECD 국가의 장애아동 대상 가족급여 비교

국가	프로그램	내용	최대급여, 통화기준	아동연령 상한선	선정기준	소득 조사	비고
호주	아동장애지원금	장애 자녀를 돌보는 데 드는 부모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지급액	아동1명당 연간 AUD 1000	16	7월 1일을 포함한 기간 동안 16세 미만 자녀에 대한 간병인 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함.	○	거주지 기준도 적용
	돌봄자급여	중증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를 풀타임으로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부모를 위한 재정 지원금.	함께 거주하는 커플 대상 2주 기준 AUD 1073.4	16	중증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에게 매일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	수당 금액은 가족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한부모는 712호주달러, 부부 부모는 각각 536.70호주달러 또는 1073.4호주달러(합산)를 받음
	돌봄자 수당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16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매일 추가로 돌보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추가 지원금.	2주 기준 AUD 114 와 건강카드	16	매일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의 사람을 돌보는 경우	X	지급액은 자녀의 돌봄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마다 AUD 114와 건강 관리 카드를 함께 지불하거나 건강 관리 카드만 지불할 수 있음. 건강 관리 카드는 처방 의약품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함. 다른 소득 지원금과 함께 지급될 수 있음.
	돌봄자 보조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데 드는 간병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지급액	아동 당 연간 AUD 600	16	돌봄자 수당 혹은 돌봄자 급여를 수급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	X	
오스트리아	가족급여 – 추가지원	부양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은 추가 월 재정 지원 대상	월 EUR 138.30	19 (가족급여 상한)	연방사회국(the Federal Social Office)의 진단서에 따라 자격결정	X	
벨기에	아동급여 – 추가지원	장애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매월 추가 수당 지급	월 EUR 507.3 + 월 EUR 456.8 추가지급 가능	21	장애인국(Directorate General of Disabled Persons)의 평가에 따라 자격결정	X	급여 수당은 장애 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월 76.1유로에서 507.3유로까지 지급됨. 또한, 평가 시스템에 따라 장애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이 수당의 범위는 390.4유로에서 456.8유로임. 21세가 되면 이 수당은 소득 대체 수당의 형태로 장애인에게 이전됨. 독립이 제한되는 경우 추가 지급금인 통합 수당도 21세에 이전됨.
캐나다	아동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자격이 있는 자녀를 돌보는 가족을 위하여 지급되는 월 비과세 급여	연간 CAD 2 575 (월 CAD 214.58)	18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자격을 갖춘 의사의 진단으로 결정. 국세청에서 양식(장애 세금 공제 증명서) 승인	○	
칠레	아동보호 기술지원	장애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장애아동에 대상 재정적 지원	연간 CLP 804.57 per year	18	아동은 “Chile Crece contigo”에 포함되어야 함.	○	6세 이하 아동 우선순위

국가	프로그램	내용	최대급여, 통화기준	아동연령 상한선	선정기준	소득 조사	비고
체코	아동 수당 – 확장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장애로 인해 연장될 수 있는 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지급		26		○	
	돌봄자 수당	장기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월별 수당.	완전의존인 경우 월 CZK 12 000	18		X	수당은 의존 정도에 따라 상이: 경미한 의존 1(CZK 3,000), 중간 정도의 의존(CZK 5,000), 심한 의존(CZK 9,000), 완전 의존(CZK 12,000).
덴마크	재정지원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위해 재정 지원 수급 가능			일반적인 추가 비용: 식비, 의약품, 교통비, 의류, 세탁 및 개인 위생, 공휴일 비용 등 포함		
	돌봄자 수당	장애아동을 돌보는 동안 소득 손실에 대해 부모에게 지급되는 재정적 보상금	상이함			○	수당 지급액 산출은 장애아동을 돌보기 전에 가족의 가처분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짐.
에스토니아	장애아동 수당	장애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만 16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월별 수당	중증 또는 중증의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월 80.6유로 (사회보장급여율의 315%)	16	–		수당은 – 중등도(월 69유로), 중증 및 중증(월 80.6유로) 등 –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 재활 계획이 있는 경우 수당에는 관련 활동이 포함됨.
핀란드	장애수당	장기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아동 대상 매월 비과세 수당 지급	월 EUR 403.5	16	지급 비율은 진단과 질병이 가족에게 초래하는 부담에 따라 상이함.	X	수당은 기본(월 89,2유로), 중간(월 208,09유로), 최상(월 403,5유로)의 세 가지 비율로 지급됨. 수당은 특정 기간 동안만 또는 자녀가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될 수 있음. 지급 기간은 아동의 질병에 따라 상이함.
프랑스	장애아동 교육수당	부모의 장애 자녀의 교육 및 건강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기본 금액은 월 127.68유로이며, CDAPH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	20	자격 여부는 수당, 보조금 및 지급 기간을 결정하는 장애인 권리 및 자율성 위원회(CDAPH)의 결정에 따름.		수당의 액수는 여러 사회 경제적 특성과 아동의 건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CDAPH에서 제공하는 보충급여로 증가할 수 있음. 수당 금액은 부모의 근로 조건과 자녀 양육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수당은 최대 5년까지 지속될 수 있음.(장애가 악화되는 경우 제외).
독일	가족세액공제 (킨더겔트)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5세 이상의 장애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아동 수당(Kindergeld)을 청구할 수 있음.		연령 제한 없음			

국가	프로그램	내용	최대급여, 통화기준	아동연령 상한선	선정기준	소득 조사	비고
헝가리	가족수당-추가 지원	만성 질환이나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많은 수당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아동 당 HUF 25 900	18		X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한부모는 양부모가정(HUF 23,300)에 비해 더 많은 급여(HUF 25,900) 수급 가능
아이슬란드	돌봄자 수당	지속적인 재가 돌봄이 필요한 장애 또는 장기 투병 중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월별 수당 지급	월 ISK 117 176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10세까지 보육 혜택 제공
아일랜드	근로무능력 자녀 세금 공제	영구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세액 공제	EUR 3 300 (2012년)	21	장애의 정도와 범위가 명시된 의사 진단서 필요. 장애는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 또는 풀타임 교육을 받는 동안 출현해야 함.	X	
	가정돌봄수당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	월 EUR 309.50	16	자격 여부는 국방부 의료 평가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이 평가는 장애나 질병의 유형이 아니라 추가적인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한 신체 또는 정신 기능의 부족을 기준으로 함.	○	장애인은 지속적인 보살핌과 감독이 필요해야 함. 거주 가정이나 기타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수당을 받을 수 없음.
	아동급여 확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6세에서 18세까지로 연장	월 EUR 130 (in 2013)	18		X	
	돌봄자 수당	신체적 또는 학습적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풀타임 돌봄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지급.	주당 EUR 204	18	간병을 받는 사람은 가정돌봄수당을 받고 있어야 함.	○	부모는 부양 자녀에 대해 주당 29.80유로의 적격 자녀 증액(IQC)이라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이탈리아	장애수당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월별 재정 지원금		18	일상 생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증명, 시민권 및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상이	○	
일본	특별자녀 부양가족 수당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월별 수당	월 JPY 50 400	19	의학적 장애 진단서와 자녀 또는 자녀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	장애 정도에 따라 두 가지 수준의 수당이 지급
	장애아동 복지수당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월 재정 지원	월 JPY 14 280	19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 진단서, 아동 또는 아동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의 연소득 수준, 아동이 자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결정	○	

국가	프로그램	내용	최대급여, 통화기준	아동연령 상한선	선정기준	소득 조사	비고
한국 (기존)	장애아동 수당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부모에게 매월 지원	월 200,000원	1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인 등록 장애아동이 받을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수당은 월 20,000원~200,000원까지 다양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중증 장애가 있거나 부모가 장애인인 초-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	학비(전액) 및 교과서 및 학용품 구입비 연간 최대 49,500원.	1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 장애아동(1~3급) 또는 부모가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지급	○	연간 학비 수당(전액) 보조교재(연간 36,000원, 초-중학교), 교과서(연간 119,000원, 고등학교) 학용품비(연간 49,500원, 중-고등학교)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월별 수당	월 200,000원	5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 6세 미만의 장애아동.	X	
한국 (2024 기준 업데이트)	장애아동 수당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부모에게 매월 지원	최대 월 220,000원	18 (단, 학교 재학 시 2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 등록 장애아동(중증 및 경증),	○ (소득 및 재산)	수당은 월 30,000원~220,000원 수준 구 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토록 안내할 것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부모가 장애인인 기초수급대상 초-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	학비(전액) 및 교과서 및 학용품 구입비 연간 최대 49,500원.	1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 장애아동(1~3급) 또는 부모가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지급	○	연간 학비 수당(전액) 보조교재(연간 36,000원, 초-중학교), 교과서(연간 119,000원, 고등학교) 학용품비(연간 49,500원, 중-고등학교)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장애가 있는 유아의 가정 양육을 지원	월 100,000원 ~ 월 200,000원 (연령에 따라 상이)	24-85 (개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가 있는 유아	X	
네덜란드	TOG 돌봄수당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집에 둔 부모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분기별 수당을 받을 수 있음.	분기별 EUR 215.80	18	아동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광범위한 돌봄(주당 10시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돌봄 평가 센터 또는 청소년 돌봄 기관에서 발급한 AWBZ 표시 및/또는 ZG 증명서(감각 장애의 경우)로 자격 부여. 아동의 나이는 3세~18세 사이이며, 부모가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일하는 경우에 해당	X	또한, 의료기관 이용 아동은 의료비 및 급식비 감면 혜택을, 그 외 기관 이용 아동과 주간보호 이용 아동은 급식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가	프로그램	내용	최대급여, 통화기준	아동연령 상한선	선정기준	소득 조사	비고
	개인예산	장기간 장애 자녀를 돌보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부모는 지원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음.		18	부모가 장기간에 걸쳐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	X	
	네덜란드 아동 급여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기본 급여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음.		16	부모가 자녀 양육비로 분기당 1,103유로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X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룩셈부르크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애아동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 가능		18	자격 요건은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50%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함.		자녀의 장애 또는 개인 소득이 보장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수당은 18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될 수 있음.
뉴질랜드	아동 장애 수당	중증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주 보호자에게 2주에 한 번씩 면세로 지급되는 수당.	주당 NZD 45.34	18	아동은 심각한 장애로 인해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또한 주 간병인과 아동은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함.	X	
노르웨이	간호 수당	아픈 자녀를 돌보는 데 따른 근로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18	부모 중 한 사람의 지속적인 감독과 간호가 필요한 만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간호 수당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자녀가 만성 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이 권리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적용됨.	X	간병 수당은 부모님 자신들이 질병이 있는 것으로 계산
	간병인 수당 돌봄자 수당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의 영구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18			
폴란드	가족수당	자녀가 장애가 있고 아직 교육 중인 경우 가족 수당은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		24		○	
	추가수당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월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한부모 가족 대상 아동 1인당 월 PLN 250	24		○	추가 수당은 자녀의 연령과 가족구조에 따라 다르며, 한부모 가정에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짐

국가	프로그램	내용	최대급여, 통화기준	아동연령 상한선	선정기준	소득 조사	비고
포르투갈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가족 수당의 보조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에 가족 수당 보조금이 지급	한부모 가족의 경우 월 139.15유로	24	장애인이 전문 재활 기관에 다니거나 거주해야 하며 개별 교육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저 임금 수준 소득	지원금은 연령에 따라 59.48유로(0~14세)에서 최대 115.96유로(18~24세)까지 증가. 한부모 가정의 장애 아동의 경우 보조금이 더 높음(20% 더 높음).
	돌봄수당	제3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정액제 지원금	월 EUR 88.37	24	가족 수당 또는 평생 월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루 6시간 이상 제3자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	최저 임금 수준 소득	
슬로베니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위한 특별 보육 수당	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매월 추가 비과세 수당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 201.21유로.	18 혹은 26(학교 재학 시)	자격 여부는 의학적 평가에 따라 결정. 장애아동은 슬로베니아 시민이어야 하며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X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수당 지급액 차이
스페인	가족급여	자녀의 장애 정도가 65% 이상인 경우 가족 급여액이 증가하고 연령 제한이 연장됨.	월 EUR 83.33	연령제한 없음	BAREMA 방법을 사용하여 65%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대상	X	장애 정도에 따라 특별 보조금이 증가
스웨덴	육아 수당 [Vårdbidrag]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수당을 지급	월 SEK 8,917	19	장애가 있거나 아픈 아동이 최소 6개월 동안 특별한 감독과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장애 또는 질병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X	수당 액수는 아동의 욕구에 따라 상이: 전액 수당(월 8,917 SEK), 수당의 3/4, 1/2 또는 1/4(월 229 SEK).
	간병인 수당	개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	시간당 SEK 282 (2010).	연령제한 없음	일상생활 활동에 주당 20시간 이상의 개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기 장애가 있는 사람.	X	시간당 SEK 252에서 SEK 282까지 욕구에 따라 수당 지급금액이 상이
영국	장애 생활 수당 (DLA)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후견인에게 지급되는 주당 수당	주당 GBP 131.5	16	장애인의 필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음. 6개월 동안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진행성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X	DLA는 두 가지 급여로 구분: 1) 개인 관리 지원, 2) 야외 활동 지원. 수당 금액은 주당 20.55파운드에서 131.5파운드까지 아동의 욕구에 따라 상이함. 아동의 욕구에 따라 두 가지 수당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지급 가능. 16세 이후에는 아동에게 지급. 2013년 4월부터는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장애인을 위한 개인 독립 수당이라는 새로운 수당이 DLA를 대체할 예정

국가	프로그램	내용	최대급여, 통화기준	아동연령 상한선	선정기준	소득 조사	비고
	돌봄자 수당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주당 재정 지원.	주당 GBP 58.45	없음	간병인은 간병 대상자와 친척이거나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음. 간병인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주일에 최소 35시간 이상 누군가를 돌봐야 함. 돌봄을 받는 아동이 중간 또는 최고 수준의 장애 생활 수당을 받고 있어야 함.	○	
미국	장애아동을 위한 SSI 급여	장애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	주(state)정부 별로 차이	제한없음	자격은 사회보장국의 장애 정의를 충족해야 함. 아동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현저하고 심각한 기능적 제한'이 있어야 함.	○	SSI 지급액은 주별로 상이. 장애가 있는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수령하며, 이 연령 이후에는 장애인 본인이 수령함.

출처: OECD(2023). Table CO1.9.6 Family Cash Benefits for Children with a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일부 국가 제외

한국의 장애아동 대상 가족급여는 첫째, 만성질환 등 질병이 있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둘째, 돌봄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활동 제한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급여는 도입되지 못하였다. 셋째,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 급여보다는 장애아동이면서 저소득가구인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선별적 급여의 비중이 더 높다. 넷째, 급여액은 OECD 국가 월평균 급여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차. 아동건강 지표 요약

CO1.1 영아사망 지표는 아동 건강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한국의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각각 1000명당 2.8명, 1.6명, 1.2명으로 OECD 평균값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1970년, 1990년,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영아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1970년 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약 20명 정도 높았으나 1990년에 11.0명으로 OECD 평균에 근접했고 2018년에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2.8명으로 감소하며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다. 이는 경제적 여건 및 영양 상태 개선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로 볼 수 있다.

CO1.2 기대수명 지표는 사망하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를 예상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로 고려된다.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오래 사는데 성별 차이는 최근 들어 좁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기대여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긴데 특히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길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여성의 기대여명이 긴 편이다.

CO1.3 저체중 출생 지표는 유아의 사망 위험 증가에 관한 역학적 관찰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의 2018년 또는 최신 저체중아 출생률은 OECD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저체중 출생아 비율 1990년과 2018년 사이 OECD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한국의 저체중아 출생 비율은 1993년에 2.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았으나 2018년 6.2%로 증가했는데 이는 OECD 국가들 중 증가 정도가 가장 크며 이는 출산시기 지연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CO1.4 백신 접종률 지표는 주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률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 OECD 국가들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평균 94.8%) 백일해 발병률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은 OECD 국가 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백일해 발병률도 낮은 편이다. OECD 국가들에서 홍역 예방 접종률 또한 매우 높은 편이며(평균 95.0%) 홍역 발병률도 전반적으로 낮은데 한국의 홍역 예방 접종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홍역 발병률은 최근 0건이었다.

CO1.5 모유 수유율 지표는 모유수유가 아기와 엄마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로 다뤄진다. 2005년경, 생후 3, 4, 6개월에 모유수유를 받은 어린이의 비율은 OECD 국가들에서 다양한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생후 개월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했다. 한국의 모유수유율은 지표를 보고한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다.

CO1.6 질병 관련 지표는 아동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는 아동의 당뇨와 천식 유병률을 측정했다. 한국은 아동의 당뇨 유병률은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었지만 천식 유병률은 일개 지역만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표였다. 하지만 이 지표는 새롭게 개편된 CWBDP에서 아동의 신체건강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적절하게 보고된 아동의 당뇨 유병률을 살펴볼 경우 OECD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20세 미만 어린이 100,000명당 제1형 당뇨병 환자가 173명으로 추산되었고 한국에서 추정 유병률은 25.0명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CO1.7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 지표는 아동의 발달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HBSC 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한국은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표 값이 보고되지 않았다. 동일한 조사는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되는 국내 자료원을 활용해 해당 연령에서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율을 측정한 결과 한국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특히 11세와 13세에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들과 유사하게 해당 연령 구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체중 및 비만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O1.8 성별 정기 흡연자 비율은 위험 건강행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앞서 살펴본 과체중 및 비만 지표와 동일하게 HBSC 조사를 통해 측정되면서 한국의 지표 값이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 자료원을 활용해 해당 연령에서 아동의 흡연율을 측정한 결과, 한국 아동의 흡연율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들과 유사하게 해당 연령 구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흡연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O1.9 아동 장애 지표는 CWBDP에서 전체 장애유형에 대한 출현율 대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아동의 출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청각 및 시각 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은 각각 17.8%와 12.7%로, 청각 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은 OECD 평균(21.3%) 대비 낮은 편이지만 시각 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은 OECD 평균(12.0%) 대비 미미하게 높은 편이다. 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 가족 현금 급여는 국가별 현금급여의 대상이나 기준과 같은 정성적 요소와 급여액 규모인 정량적 요소로 제시된다. 한국 지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 가능한데 한국의 장애아동 대상 가족급여는 만성질환 등 질병이 있는 아동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돌봄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활동 제한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급여는 없다. 또한 저소득가구인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선별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며 급여액은 OECD 국가 월평균 급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11세, 13세 비만율과 시각 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 등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아동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또한 건강 행동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보건정책의 개입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 대상 급여 범위와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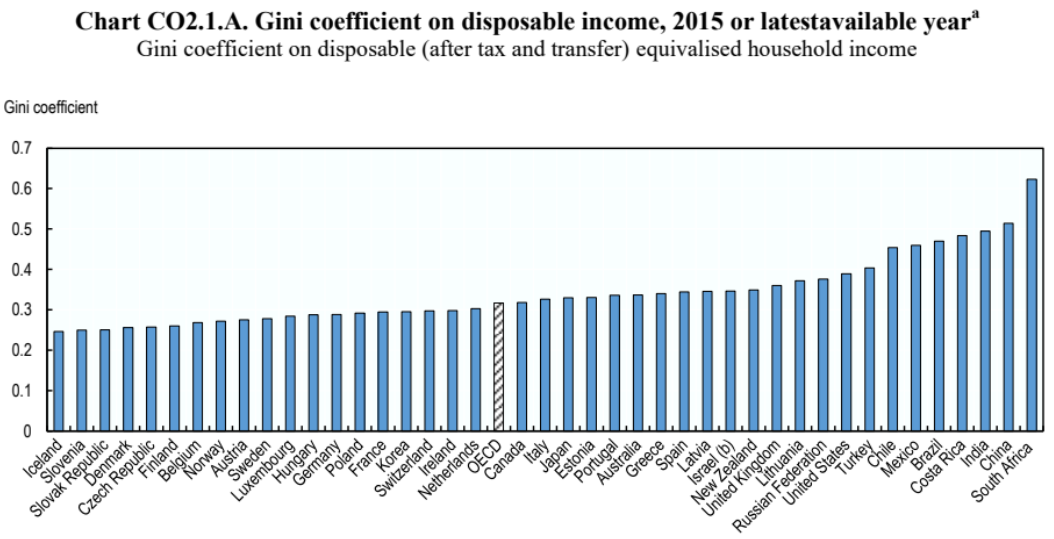
2. 아동빈곤

가. CO2.1 가구 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1) Chart CO2.1.A.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on disposable income, 2015 or latestavailable year) (적절)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전체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0~1의 범주를 가지며 0은 전체 국민에게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된 상황을, 1은 모든 소득이 1인에게 분배되는 극단적 불평등 상황을 의미한다. 2015년 혹은 그 이후 최근 연도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17(최저 0.246 아이슬란드 - 최고 0.459 멕시코) 수준이었으며, 한국은 2015년 기준 OECD 사무국에서 산출한 수치를 제시하였는데, 지니계수는 0.295로 OECD 평균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6-13] Chart CO2.1.A.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2023). Chart CO2.1.A. Gini coefficient on disposable income, 2015 or latestavailable year에서 재인용

2) Table CO2.1.A. 소득 불평등 측정(Measure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4 and 2015 or nearest available year) (적절)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는 2007년, 2014년, 2015년 혹은 그 이후 최근 연도의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의 추이를 제시하였다. OECD 평균 지니계수는 2007년 0.318, 2014년 0.316, 2015년 0.317 으로 전반적으로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동 기간 OECD 국가 중 지니계수가 다소 감소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등이며,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소득 불평등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감소 폭이 가장 큰 국가는 아이슬란드(△-0.039)이었으며, 한국도 0.017이 감소하여 불평등이 완화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 증가 폭이 가장 큰 국가는 스페인(△0.021)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 배율은 소득상위층이 하위층 소득의 몇 배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전체 국민 소득의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OECD 평균 소득5분위 배율은 5.5로 나타났으나 소숫점 2자리 이하에서는 2007년 5.501, 2014년 5.514, 2015년 5.453 등으로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동 기간 동안 소득5분위 배율이 감소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등이며,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소득5분위 배율이 증가하였다. 소득5분위 배율 감소 폭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1.775)이었으며, 한국도 0.490이 감소하여 불평등이 완화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5분위 배율 증가 폭이 가장 큰 국가는 스페인(△1.276)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소득5분위 배율 수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10.4(2015년)에서 11.5(2014년) 수준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의 소득5분위 배율 추이는 감소 경향을 보인 바 있으나, 절대적 수치가 가장 높아 소득 불평등이 완화 추세를 보였더라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덴마크의 경우 3.4(2007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3.6으로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소득5분위 배율은 2007년 5.6에서 2014년 5.4, 2015년 5.1 등으로 OECD 평균과 비교 시 유사한 수준에서 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소득불평등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유사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표 6-4〉 2007년, 2014년, 2015년 혹은 최신년도 기준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

Table CO2.1.A. Measures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4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a]

Gini coefficient and S80/S20 income share ratio on disposable (after tax and transfer)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Gini coefficient			S80/S20 income share ratio		
	2007	2014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2007	2014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Australia	0.338 e	0.326	0.337	5.8 e	5.5	5.7
Austria	0.284	0.274	0.276	4.4	4.1	4.2
Belgium	0.277	0.266	0.268	4.1	3.9	4.0
Canada	0.317	0.313	0.318	5.3	5.2	5.5
Chile	0.480	0.465	0.454	11.8	10.6	10.0
Czech Republic	0.256	0.257	0.258	3.6	3.7	3.7
Denmark	0.244 e	0.254	0.256	3.4 e	3.6	3.6
Estonia	0.313	0.346	0.330	5.2	6.2	5.8
Finland	0.269	0.257	0.260	3.9	3.7	3.7
France	0.292 e	0.293	0.295	4.3 e	4.4	4.4
Germany	0.285	0.292	0.289	4.3	4.4	4.4
Greece	0.329	0.339	0.340	5.6	6.4	6.4
Hungary	0.271 e	0.289	0.288	3.9 e	4.5	4.5
Iceland	0.286	0.241	0.246	4.1	3.4	3.6
Ireland	0.304	0.308	0.298	4.6	4.8	4.6
Israel (b)	0.365 e	0.360	0.346	7.5 e	7.1	6.5
Italy	0.313	0.325	0.326	5.2	5.8	5.9
Japan	0.329 e	0.336	0.330	6.0 e	6.2	6.1
Korea	0.312 e	0.302	0.295	5.6 e	5.4	5.1
Latvia	0.374	0.350	0.346	7.3	6.4	6.3
Luxembourg	0.277	0.280	0.284	4.0	4.2	4.2
Mexico	0.450 e	0.457	0.459	10.8 e	11.5	10.4
Netherlands	0.308 e	0.305	0.303	4.6 e	4.6	4.6
New Zealand	0.330 e	0.333	0.349	5.3 e	5.3	5.8
Norway	0.250	0.257	0.272	3.7	3.9	4.1
Poland	0.316	0.298	0.292	5.0	4.7	4.6
Portugal	0.361	0.338	0.336	6.3	5.9	5.8
Slovak Republic	0.245	0.247	0.251	3.5	3.7	3.7
Slovenia	0.239	0.251	0.250	3.5	3.7	3.7
Spain	0.324	0.344	0.345	5.2	6.6	6.5
Sweden	0.259 e	0.274	0.278	3.9 e	4.1	4.2
Switzerland	0.298 e	0.295	0.297	4.6 e	4.4	4.6
Turkey	0.409 e	0.398	0.404	7.8 e	7.7	7.8
United Kingdom	0.373	0.356	0.360	6.6	6.0	6.1
United States	0.374 e	0.394	0.390	7.9 e	8.7	8.3
OECD	0.318 e	0.316	0.317	5.5 e	5.5	5.5
Brazil	0.510	0.483	0.470	15.3	13.9	12.5
China	..	..	0.514	..	..	28.3
Costa Rica	.. ..	0.479	0.484	.. ..	5.5	5.7
India	0.482 ..	..	0.495	12.5 ..	..	13.4
Lithuania	0.338	0.381	0.372	5.8	7.4	7.1
Russian Federation	.. ..		0.376	.. ..	..	7.1
South Africa	.. ..		0.623	.. ..	..	41.1

주: 제공된 데이터는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 크기에 맞게 조정된 세후 가처분 소득(즉, 세금과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반으로 함.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0(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질 때)에서 1(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사이의 값을 가짐. S80/S20 소득 비율은 소득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소득과 하위 20%의 평균 소득의 비율을 의미함. 값은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나타냄.

자료: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3년간의 값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정의(7차 조사)를 기반으로 함.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의 경우, OECD 소득 정의의 변경, 조사 도구의 변경(이스라엘), 조사 개선(프랑스와 미국)으로 인한 계열 간 단절을 보정한 사무국 추정치("e"로 표시됨)를 기반으로 한 값이 표시. 수직선은 계열의 단절을 나타내며, 이는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임. 연도 간 추정치의 작은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뤄야 함..일본의 값은 종합 생활실태조사(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를 기반으로 하며, 일본의 다른 조사들(예: 가계 소득 및 지출 조사)은 여기 보고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나타냄. OECD 평균 값은 표에 포함된 모든 연도에 대해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국가(모든 지표에 대해 31개 OECD 국가, 고정 빈곤 지표는 23개 국가)만을 고려함. 총 소득 내 소득 비율에 대한 OECD 평균은 모든 35개 OECD 국가를 포함하며, 비교 가능한 최신 연도에 대한 데이터가 모든 OECD 국가에 대해 이용 가능하기 때문임.

a) 이스라엘과 코스타리카에 대한 최신 데이터는 2016년을, 호주,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에 대한 데이터는 2014년을, 브라질에 대한 데이터는 2013년을, 일본에 대한 데이터는 2012년을, 중국, 인도, 러시아 연방에 대한 데이터는 2011년을 의미함. "2014"로 표시된 데이터는 코스타리카와 이스라엘에 대해 2015년, 칠레,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에 대해 2013년, 호주, 헝가리, 멕시코, 뉴질랜드에 대해 2012년, 브라질에 대해 2011년, 일본에 대해 2009년을 의미함. "2007"로 표시된 데이터는 인도에 대해 2004년, 브라질과 일본에 대해 2006년, 호주,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에 대해 2008년, 칠레와 스위스에 대해 2009년을 의미함.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네덜란드의 2015년 및 2014년 데이터는 잠정적임.

b)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제공되며, 그들의 책임 하에 있음.. OECD에 의한 이 데이터의 사용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및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2023). Table CO2.1.A Measures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4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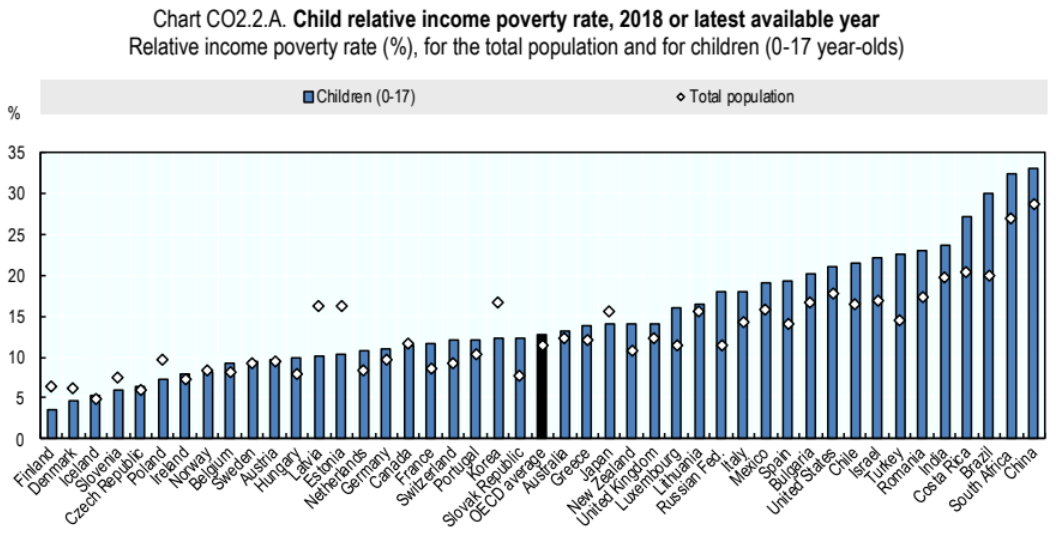
나. CO2.2 아동빈곤(Child poverty)

1) Chart CO2.2.A. 아동의 상대빈곤률(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적절)

아동의 상대적 소득빈곤은 균등화 가처분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만0세~만17세 아동의 비율로 빈곤선은 국가별 가처분 중위소득의 50%로 설정되어 있다. 한국은 이를 적절하게 산출, 보고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아동빈곤율은 OECD 평균 12.8%로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3.5%)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코스타리카(27.3%)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아동빈곤율은 12.3%로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다만,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OECD 평균(11.5%)을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에서 아동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비율이 다소 낮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6-14] Chart CO2.2.A. 아동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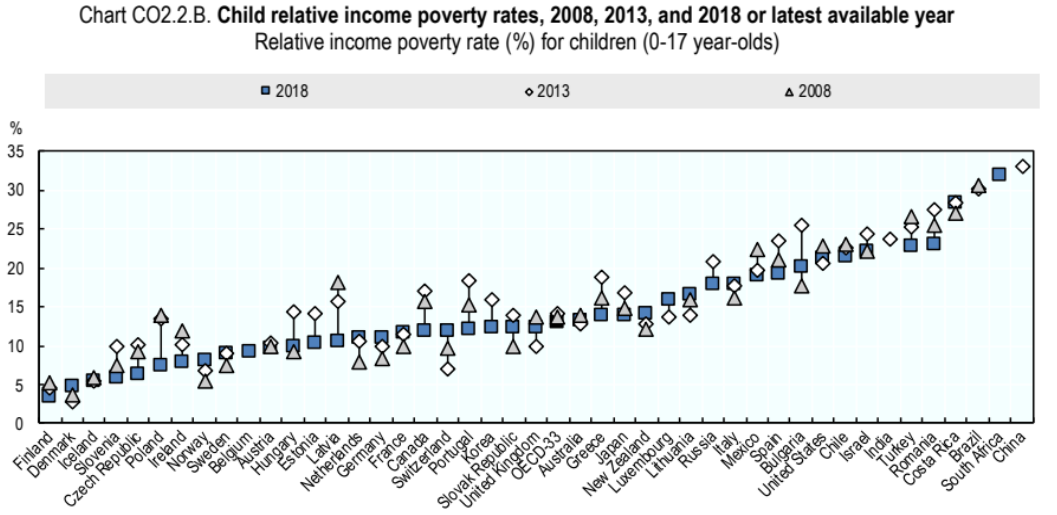


주: 자료는 가구 균등화된 세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빈곤선은 각 국가의 중위 가처분 소득의 50%로 설정됨. 자료는 코스타리카(2020), 캐나다, 라트비아, 스웨덴, 영국(2019),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러시아(2017), 네덜란드(2016), 남아프리카공화국(2015), 뉴질랜드(2014), 브라질(2013), 중국, 인도(2011)을 제외하고 모두 2018년 기준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2023). Chart CO2.2.A. 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에서 재인용

2) Chart CO2.2.B. 아동 상대빈곤율 추이(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s, 2008, 2013,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적절)

아동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33개 OECD 국가의 아동 상대빈곤율 평균은 2008년 13.7%에서 2013년 14.2%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8년 12.9%로 감소하였다. 2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튀르키예로 2009년 기준 26.6%에서 25.2%(2013), 22.7%(2018)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빈곤율을 유지하였다. 2018년 기준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2008년 기준 5.2%에서 2013년 기준 4.6%, 2018년 기준 3.5%로 감소해왔다. 한국의 경우 2015년 기준 16.0%로 OECD 평균 대비 다소 높았으나, 2018년 기준 12.3%로 OECD 평균(12.9%)을 밑돌았다. 한국도 OECD 회원국의 평균 추세와 유사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상대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6-15] Chart CO2.2.B. 아동 상대소득 빈곤율, 2008, 2013, 2018



주: 자료는 가구 균등화된 세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빈곤선은 각 국가의 중위 가처분 소득의 50%로 설정됨. 자료는 코스타리카(2020), 캐나다, 라트비아, 스웨덴, 영국(2019),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러시아(2017), 네덜란드(2016), 남아프리카공화국(2015), 뉴질랜드(2014), 브라질(2013), 중국, 인도(2011)을 제외하고 모두 2018년 기준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2023). Chart CO2.2.B. 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s, 2008, 2013,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에서 재인용

3) Chart CO2.2.C. 가구 유형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typ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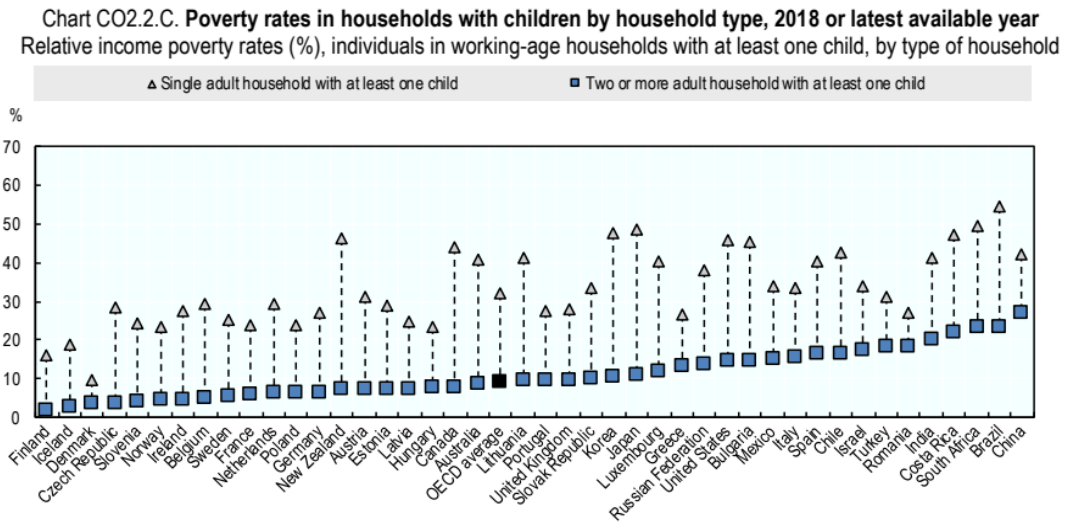
가구유형별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가구균등화 가처분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적어도 1명 이상의 아동(0~17세)과 근로연령대(만18세~64세) 가구주로 구성된 가구의 개인들의 비율을 가구유형별(한부모·양부모)로 비교한 자료로, 한국은 본 지표를 적절하게 산출, 보고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11.2%이나, 양부모가구는 9.4%, 한부모가구는 31.9%로 양부모-한부모 가구 유형별 평균값의 편차가 매우 크다. 양부모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2.0%에 그쳤으며,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9.7%에 머물렀다. 국가별로 아동가구의 빈곤율에 있어서 양부모가구와 한부모가구 간 차이값(△)이 가장 적은 국가는 덴마크로 양부모가구(3.5%)-한부모가구(9.7%) 간의 격차는 6.1% pt에 그쳤다. 반면, 양부모-한부모 간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일본으로 양부모가구(11.2%)-한부모가구(48.3%)의 격차가 37.1%에 달하였다.

한국의 경우 양부모가구의 아동가구 빈곤율은 10.7%로 OECD 평균(9.4%)과 비교할 때, 1.3% pt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구의 아동가구 빈곤율은 47.7%로 OECD 평균(31.9%) 보다 15.8%나 높았다. 한부모가구의 아동가구 빈곤율은 전체 OECD 국가 중 일본(48.3%)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한부모 간 아동가구 빈곤율 차이 또한 37.0%로 차이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일본(37.1%)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림 6-16] Chart CO2.2.C. OECD 국가 가구 유형별 아동가구의 빈곤율: 2018년 기준



주: 자료는 가구 균등화된 세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빈곤선은 각 국가의 중위 가처분 소득의 50%로 설정됨. 자료는 코스타리카(2020), 캐나다, 라트비아, 스웨덴, 영국(2019),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러시아(2017), 네덜란드(2016), 남아프리카공화국(2015), 뉴질랜드(2014), 브라질(2013), 중국, 인도(2011)을 제외하고 모두 2018년 기준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2023). Chart CO2.2.C. 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typ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에서 재인용

4) Chart CO2.2.D. 고용상태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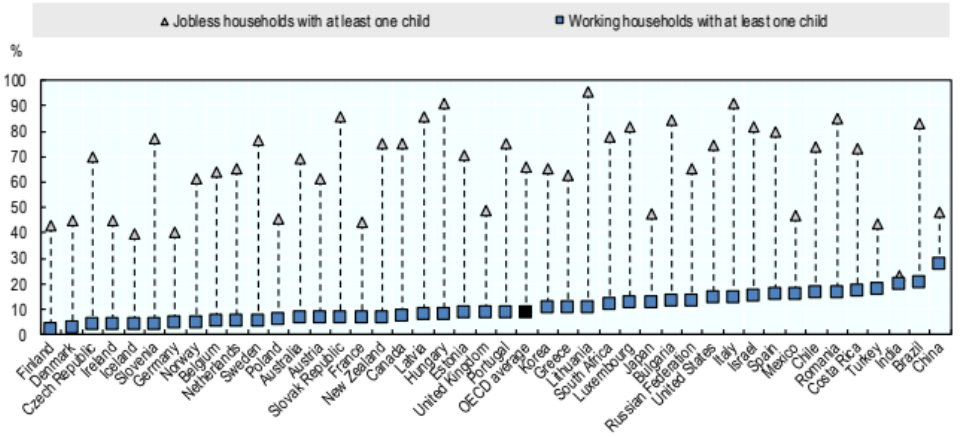
고용상태별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가구균등화 가처분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적어도 1명 이상의 아동(0~17세)이 있는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 비율을 가구 내 성인의 근로유무에 따라 비교한 자료이다.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아동이 빈곤하게 성장할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한국은 이 지표를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고용상태별 아동가구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혹은 가장 최근) 아동 자녀가 있는 근로가구의 OECD 평균 빈곤율은 8.9%이며, 최저치는 2.0%(핀란드)이고, 최고치는 16.9%(코스타리카)이었다. 비근로 아동가구의 OECD 평균 빈곤율은 65.8%에 달하며, 최저 40.3%(독일)에서 최고 95.7%(리투아니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근로하고 있는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10.7%로 OECD 평균 대비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비근로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65.0%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쳤다.

[그림 6-17] Chart CO2.2.D. OECD 국가 고용형태별 아동가구의 빈곤율: 2018년 기준

Chart CO2.2.D. **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Relative income poverty rates (%), individuals in working-age households with at least one child,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주: 자료는 가구 균등화된 세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즉 세금과 이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 크기에 맞게 조정된 소득을 의미함. 빈곤선은 각 국가의 중위 가처분 소득의 50%로 설정됨. 생산연령 인구는 18-64세의 성인을 의미하며, 아동은 0-17세를 의미함. 자료는 코스타리카(2020), 캐나다, 라트비아, 스웨덴, 영국(2019),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러시아(2017), 네덜란드(2016), 남아프리카공화국(2015), 뉴질랜드(2014), 브라질(2013), 중국, 인도(2011)을 제외하고 모두 2018년 기준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2023). Chart CO2.2.C. 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typ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다.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1) Table CO2.3.B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적절)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중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은 교육자원으로 활용되는 7종의 물품 - 1) 공부할 책상, 2) 공부할 조용한 장소, 3) 학교공부를 위한 컴퓨터, 4) 교육 소프트웨어, 5) 인터넷 연결, 6) 사전 및 7) 학교 교과서의 접근성이 제한된 물품의 개수(0개~7개)에 따른 아동의 비율을 측정한다. 한국은 이 지표를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7개 물품 전체에 결핍이 발생한 아동의 비율은 0.2%이었으며, 6개 결핍(0.5%), 5개 결핍(1.2%), 4개 결핍(2.5%), 3개 결핍(5.5%), 2개 결핍(12.4%), 1개 결핍(33.1%), 결핍이 없음(44.6%) 등이었다.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이 전혀 없는(0개 결핍) 아동이 가장 많은 OECD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전체의 67.4%가 결핍이 없다고 응답하으며, 해당 아동이 가장 적은 국가는 일본으로 전체의 12.2%만이 결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교육자원 접근성에 대한 물질적 결핍이 전혀 없는 아동의 비율은 46.0%로 OECD

국가 평균(44.6%) 대비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1개 결핍(32.1%), 2개 결핍(13.5%), 3개 결핍(5.3%), 4개 결핍(2.1%), 5개 결핍(0.8%), 6개 결핍(0.2%) 등으로 분포하였다.

〈표 6-5〉 Table CO2.3.B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
Table CO2.3.B. 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Number of educational resources that a child does NOT have access to (%)							
	0	1	2	3	4	5	6	7
Australia	59.4	22.7	10.4	4.2	2.0	0.8	0.3	0.2
Austria	40.4	38.9	16.2	3.3	0.9	0.3	0.1	0.1
Belgium	49.4	33.9	11.3	3.5	1.3	0.4	0.2	0.1
Canada	49.1	28.2	13.9	5.2	2.2	0.9	0.3	0.1
Switzerland	37.9	40.6	16.0	4.2	0.9	0.2	0.1	0.0
Chile	21.4	33.8	19.9	12.4	7.5	3.6	1.1	0.3
Czech Republic	47.2	39.5	8.8	3.1	0.8	0.5	0.1	0.1
Germany	47.4	38.8	9.7	2.9	0.8	0.3	0.2	0.0
Denmark	64.0	23.7	8.2	2.7	0.6	0.7	0.1	0.0
Spain	40.3	40.6	13.5	3.9	1.2	0.4	0.1	0.1
Estonia	56.0	28.3	10.9	3.3	1.0	0.4	0.0	0.0
Finland	30.6	44.1	17.1	5.9	1.6	0.7	0.0	0.0
France	32.8	49.4	13.3	3.2	1.0	0.2	0.1	0.0
United Kingdom	57.6	24.4	10.2	4.5	2.2	0.8	0.2	0.2
Greece	35.2	36.9	16.4	7.2	2.7	1.2	0.3	0.1
Hungary	38.9	41.7	10.9	5.1	2.1	0.8	0.5	0.1
Ireland	47.3	31.5	12.9	5.1	2.0	0.7	0.3	0.1
Iceland	67.4	23.0	6.9	1.9	0.6	0.1	0.1	0.1
Israel	43.1	34.9	13.1	5.4	2.0	0.8	0.4	0.3
Italy	45.3	39.3	10.7	3.2	1.0	0.4	0.1	0.1
Japan	12.2	44.8	23.6	13.2	4.4	1.2	0.5	0.1
Korea	46.0	32.1	13.5	5.3	2.1	0.8	0.2	0.0
Luxembourg	44.5	39.4	11.3	2.6	1.1	0.5	0.3	0.3
Mexico	14.9	18.6	14.1	21.1	16.6	10.3	4.0	0.4
Netherlands	57.4	34.0	5.6	1.9	0.8	0.2	0.1	0.1

	Number of educational resources that a child does NOT have access to (%)							
	0	1	2	3	4	5	6	7
Norway	57.8	28.6	9.0	3.0	1.0	0.4	0.1	0.1
New Zealand	47.7	25.5	13.7	6.5	3.2	2.2	0.8	0.5
Poland	65.3	25.8	5.8	2.1	0.6	0.3	0.2	0.1
Portugal	42.3	40.0	11.4	4.1	1.3	0.8	0.2	0.1
Slovak Republic	46.2	31.7	10.5	4.7	2.8	2.1	1.1	0.9
Slovenia	57.3	31.7	8.4	1.9	0.4	0.1	0.0	0.1
Sweden	48.4	29.2	14.3	5.4	2.0	0.5	0.2	0.1
Turkey	23.3	25.9	15.7	16.7	9.5	5.5	2.7	0.8
United States	43.0	24.9	14.7	9.1	4.6	2.3	1.0	0.4
OECD average	44.6	33.1	12.4	5.5	2.5	1.2	0.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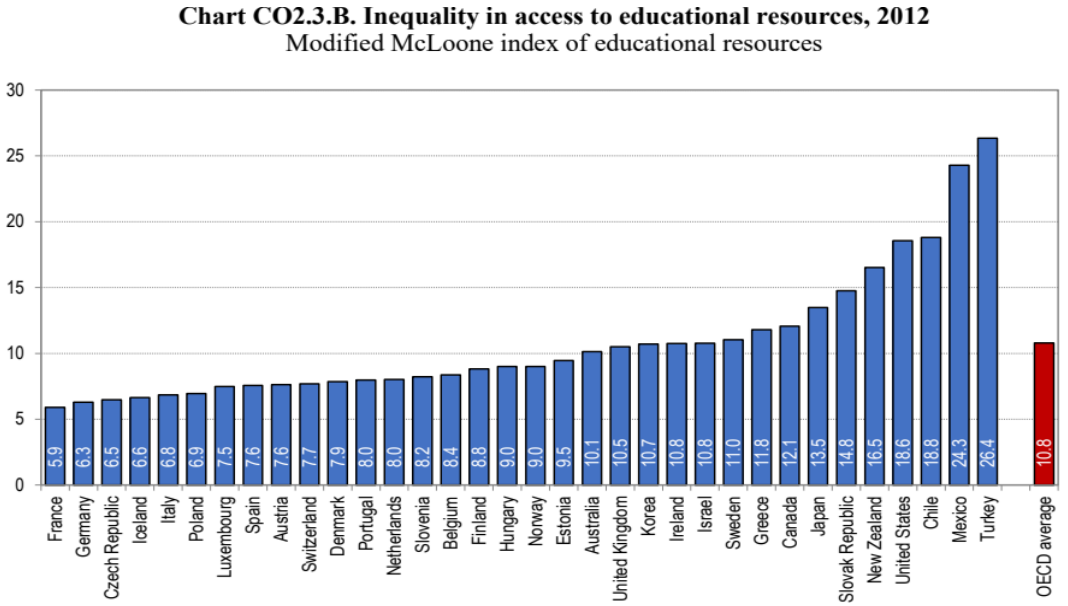
주: 물질적 박탈은 아동이 다음의 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1) 공부할 책상, (2) 조용한 공부 공간, (3) 학교 과제를 위한 컴퓨터, (4) 교육용 소프트웨어, (5) 인터넷 연결, (6) 사전, (7) 학교 교과서.
출처: OECD PISA; OECD(2023). Table CO2.3.B. 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에서 재인용

2) Chart CO2.3.B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적절)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 지표는 수정된 맥룬지수를 활용하여 교육자원의 접근성이 중위수준에 이르기 위해 전체 교육자원 항목 수치의 몇 퍼센트가 평균적으로 증가해야 하는지를 측정한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를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교육자원에 대한 수정된 맥룬지수는 10.8로 나타났으며, 프랑스가 5.9로 가장 낮았으며, 튀르키예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10.7로 OECD 평균(10.8)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비교대상국인 34개국 중 22번째 순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8] Chart CO2.3.B.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



주: 물질적 박탈은 아동이 다음의 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1) 공부할 책상, (2) 조용한 공부 공간, (3) 학교 과제를 위한 컴퓨터, (4) 교육용 소프트웨어, (5) 인터넷 연결, (6) 사전, (7) 학교 교과서.
출처: OECD PISA; OECD(2023). Chart CO2.3.B. Inequality i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에서 재인용

라. 아동빈곤 지표 요약

CO2.1 가구 유형별 소득 불평등과 소득지위 지표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빈곤불평등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국의 2007년도 지니계수는 0.312로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서 2014년 0.302, 2015년 0.295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소득5분위 배율은 2007년 5.6에서 2014년 5.4, 2015년 5.1 등으로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서 더욱 감소 추세이다. 이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완화되는 경향이었음을 시사한다.

CO2.2 아동빈곤 지표는 아동의 상대적 소득빈곤율, 아동가구의 빈곤율 및 고용상태별 아동가구의 빈곤율 지표로 보고하였다. 한국의 아동빈곤율(상대빈곤율)은 12.3%로 OECD 평균 대비 다소 낮은 편이나, 양부모가구의 아동빈곤율은 10.7%로 OECD 평균(9.4%) 대비 다소 높은 편이며, 한부모가구의 아동빈곤율은 47.7%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특히 양부모-한부모 간 아동가구 빈곤율 차이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의 근로아동가구의 아동빈곤율이 10.7%, 비근로아동가구의 경우 65.0%로 비근로아동가구의 빈곤율이 근로아동가구보다 상당히 높았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비근로아동가구의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었

으며, 비근로아동가구의 빈곤율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볼 때, 비근로아동가구뿐 아니라 근로연령대 아동가구 내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은 교육자원 접근성의 결핍과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 지표로 확인하였는데, 한국은 OECD 국가 중 교육자원 접근성에 대한 물질적 결핍 아동의 비율이 54.0%로 다소 낮은 편이며, 불평등 지표값은 10.7로 OECD 평균(10.8)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정리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까지 감소해 왔으며, 아동빈곤율, 교육자원의 물질적 결핍 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한부모가구의 아동빈곤율, 근로아동가구의 빈곤율 등 가구특성별 아동의 빈곤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열악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3. 교육·문해력

가. CO3.1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1) Chart CO3.1.A.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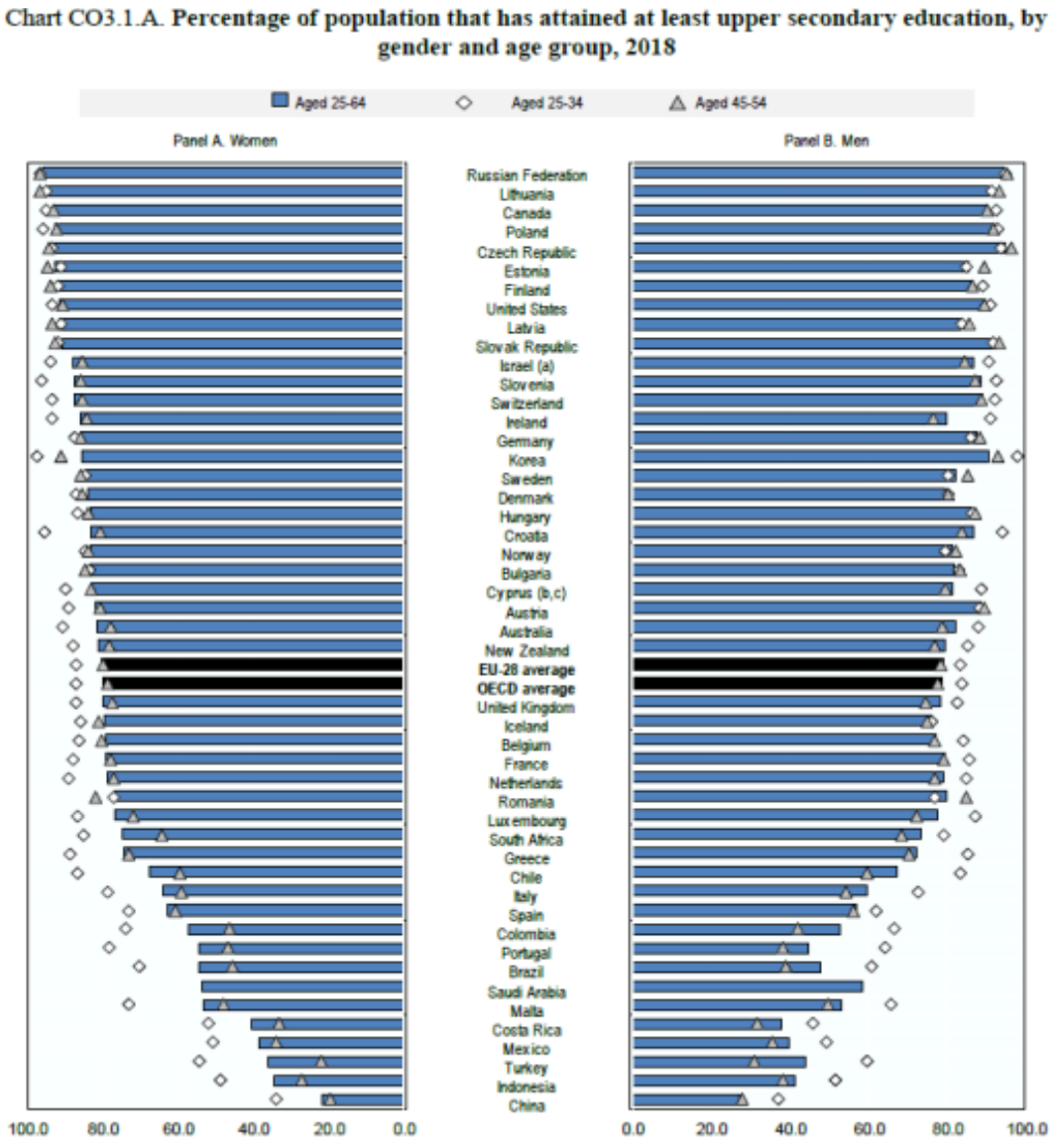
'후기중등교육 이수율'은 전체 인구 중 후기중등 교육단계(ISCED 3)를 이수하고 해당 교육단계의 공식적인 학위를 취득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소 자격으로 간주되는 지표이다. 해당 지표는 OECD 교육지표(EAG) 2019의 A1 지표(성인의 교육이수)를 활용한 것으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중등교육 이수율 지표는 연령대별(25~64세, 25~34세, 45~54세), 성별(남, 여)로 세분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후기 중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 비율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OECD 평균적으로는 25~34세 여성 인구 중 약 87.1%와 45~54세 여성 인구 중 78.8%가 후기중등교육수준 이상을 이수하였으며, 이러한 연령별 후기중등교육 이수율의 차이는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칠레, 튀르키예, 포르투갈에서 25~34세 여성의 교육이수 비율이 45세~54세 여성 이수비율에 비해 30% 이상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에스토니아, 체코,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에서는 45세~54세 여성 비율이 25~34세 여성 이수비율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중에서 한국의 25~64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은 2018년 기준, 남성 90.7%, 여성 85.5%로 OECD 평균(남성: 79.0%, 여성: 80.0%)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 남성의 이수율(90.7%)이

한국 여성의 이수율(85.5%)에 비해 약간 더 높은 편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인구(25~34세)의 후기중등교육 이수율(남성: 98.0%, 여성: 97.5%)이 장년층 이수율(남성: 93.0%, 여성: 91.2%)에 비해 근소하게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6-19]).

[그림 6-19] Chart CO3.1.A.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



출처: OECD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Eurostat Education Statistics.; OECD(2023). Chart CO3.1.A.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에서 재인용

요컨대,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 지표는 한 국가의 교육 이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국가별로 성별과 연령층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은 다양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 한국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장년층 인구에 비해 청년층의 후기중등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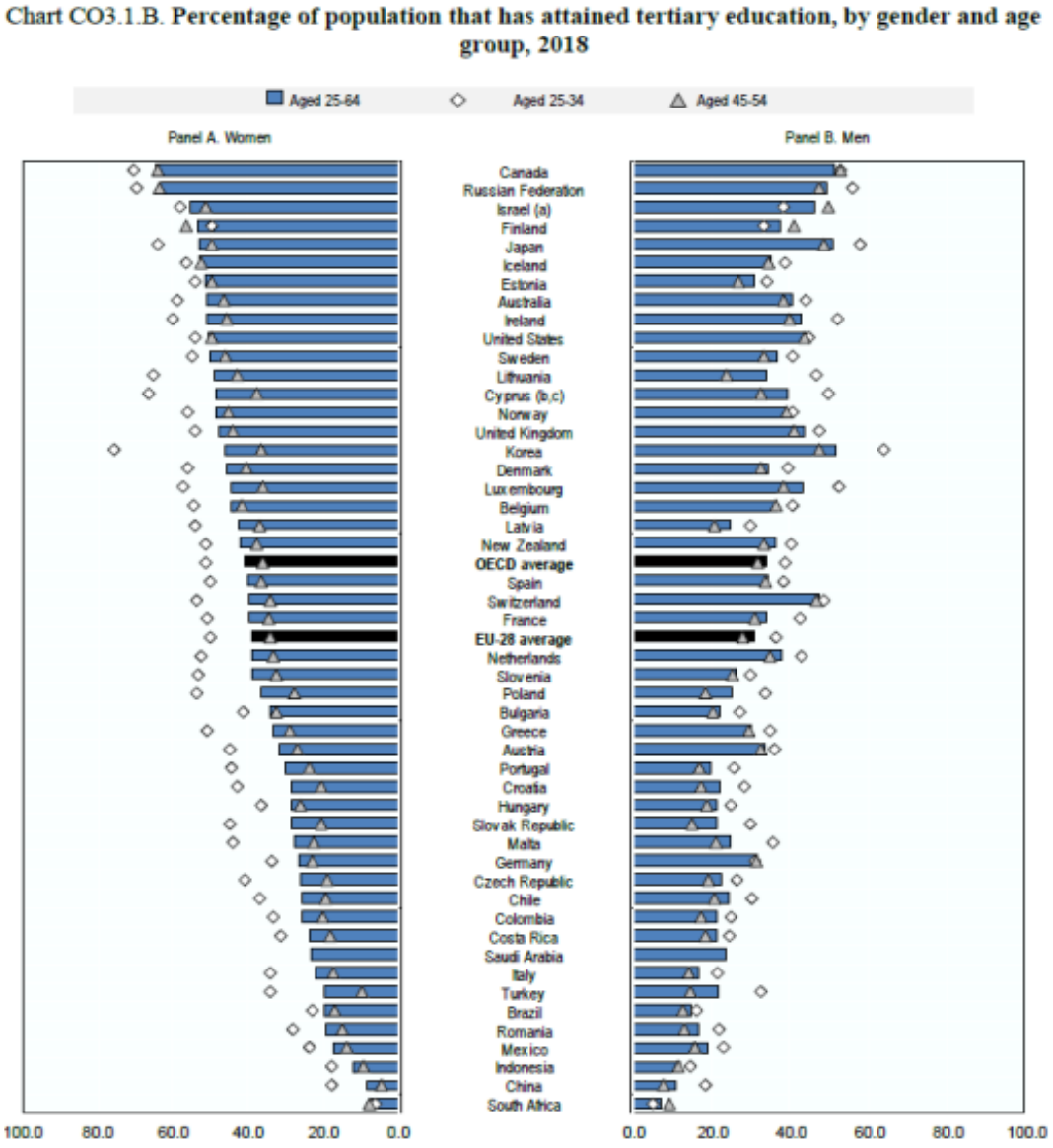
2) Chart CO3.1.B.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적절)

'고등교육 이수율'은 특정 연령대 전체 인구 중 고등교육단계(ISCED 4)의 학력 소지자의 비율로 정의되며, 높은 교육 이수 수준은 개인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교육성과와 관련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지표는 OECD 교육지표(EAG) 2019의 A1 지표(성인의 교육이수)를 활용한 것으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교육 이수율 지표는 연령대별(25~64세, 25~34세, 45~54세), 성별(남, 여)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적으로 45~54세 인구의 경우, 남성 중 약 31.7%와 여성 중 약 36.0%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5~34세 인구의 경우 남성 중 38.6%와 여성 51.1%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40.7%)이 남성 (34.1%)보다 고등교육 이상 학력을 소지한 비율이 약 6.6%p 더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특히, 일부 국가(예: 라트비아, 슬로베니아)에서는 25~34세 여성 중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해당 연령대의 남성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52.8%로 OECD 평균(40.4%)보다 훨씬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2019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반적으로 한국 남성의 고등교육 이수율(51.8%)이 여성(46.2%)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인구(25~34세) (남성: 64.1%, 여성: 75.7%)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장년층 인구(45세~54세)(남성: 47.4%, 여성: 36.3%)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6-20]).

[그림 6-20] Chart CO3.1.B.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



출처: OECD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Eurostat Education Statistics.; OECD(2023). Chart CO3.1.B.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에서 재인용

요컨대,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 지표는 한 국가의 교육 이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성별과 연령층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별로 다양한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한국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장년층 인구에 비해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3) Table CO3.1.A.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 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2012 or 2015) (적절)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 정도'는 교육 기회의 세대 간 이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교육 수준의 불평등은 세대에 걸쳐 지속되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당 지표는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OECD 교육지표(EAG) 2016의 A4 지표(부모의 배경이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를 활용한 것으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수준과 자녀의 학력 수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5~44세 비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모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성인의 약 67.7%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반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모가 후기중등교육 또는 후기중등교육 미만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각각 39.1%와 22.2%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의 차이는 칠레,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튀르키예에서 현저하게 크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에서는 25~44세의 고등 교육을 이수한 성인 비율이 부모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 6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OECD 국가의 전반적인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모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성인의 약 81.9%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반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모가 후기중등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59.7%, 후기중등교육 미만을 이수한 경우에는 43.1%로 낮게 나타났다(〈표 6-6〉).

〈표 6-6〉 Table CO3.1.A.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

Table CO3.1.A. 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2012 or 2015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non-student adults (25-44 year-olds), by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either parent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below upper secondar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upper secondary or post-secondary non-tertiar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tertiary					
	Below upper secondary		Upper sec. or post-sec. non-tertiary		Tertiary		Below upper secondary		Upper sec. or post-sec. non-tertiary		Tertiary		Below upper secondary		Upper sec. or post-sec. non-tertiary		Tertiary	
	%	S.E.	%	S.E.	%	S.E.	%	S.E.	%	S.E.	%	S.E.	%	S.E.	%	S.E.	%	S.E.
Australia	25.8	(1.7)	45.6	(2.0)	29.0	(1.7)	18.0	(1.8)	44.9	(2.2)	37.2	(2.1)	6.0	(1.2)	24.7	(1.7)	69.3	(2.1)
Austria	30.0	(1.9)	60.6	(1.9)	9.3	(1.2)	10.6	(0.9)	72.0	(1.2)	17.3	(0.9)	5.2	(1.4)	54.4	(2.7)	40.4	(2.3)
Belgium (Flanders)	16.6	(2.0)	57.5	(2.8)	25.8	(2.1)	6.7	(1.0)	51.9	(2.0)	41.4	(1.9)	2.2	(0.6)	26.3	(2.2)	71.5	(2.3)
Canada	19.8	(1.6)	38.7	(2.0)	41.6	(2.1)	6.9	(0.8)	41.4	(1.7)	51.6	(1.7)	2.8	(0.4)	34.2	(1.2)	72.9	(1.2)
Chile	37.1	(1.8)	50.4	(2.2)	12.5	(1.9)	15.8	(2.7)	46.8	(4.1)	37.4	(3.4)	3.6	(1.2)	21.7	(2.6)	74.7	(2.9)
Czech Republic	12.7	(4.0)	84.8	(4.7)	2.5	(1.4)	6.1	(0.8)	77.1	(1.4)	16.7	(1.0)	2.4	(1.1)	34.6	(3.3)	63.0	(3.4)
Denmark	27.4	(2.2)	42.2	(2.3)	30.4	(2.0)	13.8	(1.6)	49.5	(1.9)	36.7	(1.5)	8.6	(1.4)	34.3	(1.8)	57.1	(1.8)
Estonia	26.5	(2.2)	52.8	(2.7)	20.7	(2.0)	12.2	(1.0)	47.7	(1.6)	40.0	(1.4)	6.5	(0.8)	35.4	(1.5)	58.1	(1.7)
Finland	10.5	(1.6)	50.7	(2.0)	38.8	(2.1)	6.2	(0.9)	46.6	(1.5)	47.2	(1.5)	3.6	(1.2)	29.1	(2.5)	67.3	(2.7)
France	26.4	(1.3)	49.0	(1.5)	24.5	(1.3)	8.5	(1.0)	51.0	(1.4)	40.5	(1.3)	3.7	(0.8)	20.1	(1.8)	76.2	(1.9)
Germany	39.2	(4.4)	50.9	(4.3)	9.9	(2.3)	7.5	(0.9)	66.3	(1.5)	26.3	(1.3)	5.3	(1.2)	37.9	(1.9)	56.8	(1.8)
Greece	34.6	(1.7)	46.9	(1.6)	18.5	(1.3)	8.6	(2.0)	49.8	(2.5)	41.6	(2.4)	1.5	(0.9)	30.3	(3.1)	68.1	(3.2)
Ireland	29.2	(1.2)	43.0	(1.3)	27.8	(1.2)	9.7	(1.0)	45.4	(1.8)	45.0	(1.9)	3.1	(0.7)	25.8	(2.0)	71.1	(2.1)
Israel (a)	20.9	(1.6)	49.2	(2.4)	29.9	(2.0)	6.1	(1.2)	44.1	(2.5)	49.9	(2.5)	2.2	(0.5)	22.0	(1.6)	75.8	(1.7)
Italy	54.3	(1.5)	37.5	(1.4)	8.2	(0.7)	13.4	(2.1)	54.7	(2.2)	31.9	(2.0)	5.9	(3.2)	29.1	(4.4)	65.0	(4.8)
Japan	14.6	(2.7)	57.4	(3.7)	27.9	(3.1)	8.0	(0.8)	48.0	(1.4)	44.0	(1.4)	3.6	(0.8)	21.2	(1.6)	75.2	(1.6)
Korea	7.2	(0.8)	49.7	(1.2)	43.1	(1.0)	1.3	(0.4)	38.9	(1.4)	59.7	(1.4)	..	..	17.8	(1.9)	81.9	(1.9)
Netherlands	31.1	(2.1)	42.9	(2.0)	26.0	(1.7)	13.2	(1.4)	46.3	(2.1)	40.5	(2.4)	8.6	(1.4)	28.7	(2.3)	62.7	(2.5)
New Zealand	25.2	(2.2)	33.9	(2.4)	40.9	(2.5)	10.5	(1.5)	39.6	(2.9)	49.9	(2.7)	7.2	(1.0)	22.8	(1.9)	70.0	(1.9)
Norway	30.5	(2.9)	40.4	(3.2)	29.1	(2.6)	16.1	(1.3)	45.5	(1.8)	38.4	(1.7)	8.6	(1.3)	27.6	(2.2)	63.8	(2.0)
Poland	15.6	(2.4)	69.4	(3.2)	15.0	(2.5)	4.7	(0.6)	60.7	(1.4)	34.6	(1.4)	1.3	(0.6)	19.3	(2.6)	79.4	(2.6)
Slovak Republic	42.0	(2.7)	53.0	(2.7)	5.0	(1.3)	5.1	(0.5)	73.6	(1.4)	21.3	(1.4)	..	..	34.6	(3.1)	65.0	(3.1)
Slovenia	31.5	(2.5)	55.1	(2.4)	13.3	(1.5)	8.6	(1.0)	57.7	(1.3)	33.8	(1.2)	3.1	(1.1)	36.7	(2.6)	60.2	(2.9)
Spain	49.2	(1.0)	22.4	(0.9)	28.4	(1.0)	23.6	(2.5)	29.6	(2.7)	46.8	(2.8)	10.7	(1.6)	20.8	(2.4)	68.6	(2.7)
Sweden	20.7	(2.1)	55.6	(2.4)	23.7	(1.7)	14.2	(2.1)	52.8	(2.6)	33.0	(2.1)	6.0	(1.1)	41.0	(1.6)	53.1	(1.7)
Turkey	68.5	(0.8)	19.9	(0.8)	11.7	(0.5)	15.3	(2.3)	33.5	(3.2)	51.3	(3.4)	10.1	(3.9)	16.8	(4.4)	73.1	(5.1)
UK (England)	35.0	(2.8)	40.2	(2.9)	24.7	(2.6)	15.1	(1.4)	40.4	(2.2)	44.5	(1.9)	5.1	(1.1)	18.3	(1.8)	76.6	(2.1)
UK (Northern Ireland)	44.1	(2.9)	37.1	(2.7)	18.8	(1.9)	18.4	(1.8)	41.7	(2.1)	39.9	(1.9)	2.2	(1.1)	22.9	(3.3)	74.9	(3.4)
United States	34.1	(3.2)	58.1	(2.7)	7.8	(1.6)	6.9	(1.1)	58.5	(1.6)	34.6	(1.7)	3.3	(0.8)	34.6	(1.9)	62.2	(2.1)
OECD average	29.7	(0.4)	48.1	(0.5)	22.2	(0.3)	10.7	(0.3)	50.2	(0.4)	39.1	(0.4)	4.9	(0.3)	27.7	(0.5)	67.7	(0.5)
Indonesia (Jakarta)	35.4	(1.2)	50.2	(1.2)	14.4	(0.8)	3.3	(1.5)	18.0	(3.4)	78.7	(3.6)	..	..	..	..	95.5	(3.1)
Lithuania	19.4	(2.5)	72.8	(2.7)	7.8	(1.7)	14.2	(1.8)	67.0	(2.7)	18.8	(2.5)	4.6	(0.7)	42.0	(2.0)	53.5	(1.7)

출처: OECD (2016),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Survey of Adult Skills(PIAAC)(2012, 2015).; OECD(2023). Chart CO3.1.B.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에서 재인용

요컨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 지표는 교육 기회의 세대 간 이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국가들은 부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 자녀들도 낮은 교육수준을 이수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 중에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부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4) Table CO3.1.B.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Educational attainment by parents' migrant status, 2012 or 2015) (적절)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 정도'는 앞서 살펴본 CO3.1.A.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 정도 지표와 함께 교육 기회의 세대 간 이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주 배경을 지닌 성인의 경우 비이주배경 성인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OECD, 2016). 가정의 불리한 배경은 세대에 걸쳐 지속되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Table CO3.1.B. 지표는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OECD 교육지표(EAG) 2016의 A4 지표(부모의 배경이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를 활용한 것으로 국가별 비교가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성인 비율은 본토 출생(native-born) 부모를 가진 집단과 이주배경(foreign-born) 부모를 가진 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국가별로 편차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벨기에(플란더스), 슬로베니아,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비이주배경 부모를 지닌 집단에 비해 이주배경 부모를 지닌 25-44세의 비학생 집단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약 20%p 가까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주배경 부모를 지닌 집단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비이주배경 부모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가 이주배경인 집단(31.0%)에 비해 비이주배경 집단의 고등교육 이수율(56.1%)이 더욱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후기중등교육 이수 비율의 경우 비이주배경 집단(40.2%)에 비해 이주배경 부모 집단(49.4%)에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7〉).

〈표 6-7〉 Table CO3.1.B.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

Table CO3.1.B. Educational attainment by parents' migrant status, 2012 or 2015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non-student adults (25-44 year-olds), by the migrant status of the parents

	Parents' migrant status: both native-born						Parents' migrant status: both foreign-born					
	Below upper secondary		Upper sec. or post-sec. non-tertiary		Tertiary		Below upper secondary		Upper sec. or post-sec. non-tertiary		Tertiary	
	%	S.E	%	S.E	%	S.E	%	S.E	%	S.E	%	S.E
Australia	19.8	(1.5)	43.4	(1.5)	36.8	(1.6)	13.0	(1.4)	29.9	(1.9)	57.0	(2.0)
Austria	9.7	(0.8)	70.9	(0.9)	19.4	(0.7)	27.8	(1.9)	50.7	(2.4)	21.5	(1.6)
Belgium (Flanders)	6.3	(0.7)	44.7	(1.3)	49.0	(1.3)	20.8	(3.7)	50.6	(3.8)	28.6	(3.4)
Canada	8.0	(0.5)	38.6	(1.1)	53.4	(1.0)	6.2	(0.9)	24.4	(1.5)	69.4	(1.6)
Chile	22.6	(1.9)	43.6	(2.7)	33.8	(3.4)	25.8	(2.8)	40.4	(4.2)	33.8	(4.9)
Czech Republic	5.5	(0.7)	70.8	(1.2)	23.7	(1.0)	16.1	(6.9)	42.5	(8.9)	41.4	(8.6)
Denmark	14.0	(1.0)	39.8	(1.4)	46.2	(1.1)	21.9	(1.5)	31.4	(2.1)	46.7	(2.2)
Estonia	12.2	(0.7)	41.6	(1.3)	46.1	(1.1)	10.4	(1.5)	46.3	(2.5)	43.3	(2.5)
Finland	6.0	(0.6)	43.9	(1.1)	50.1	(1.1)	17.2	(5.1)	44.0	(6.3)	38.8	(5.9)
France	8.5	(0.7)	46.0	(1.0)	45.5	(0.9)	33.5	(2.0)	36.8	(2.0)	29.7	(2.1)
Germany	5.3	(0.8)	57.6	(1.3)	37.1	(1.1)	25.2	(2.5)	48.9	(2.9)	25.9	(2.7)
Greece	22.1	(1.3)	44.7	(1.3)	33.2	(0.9)	30.4	(5.1)	51.4	(5.5)	18.3	(3.6)
Ireland	19.3	(0.7)	39.8	(1.0)	41.0	(1.0)	9.6	(1.5)	38.8	(2.3)	51.6	(2.5)
Israel (a)	13.0	(1.1)	40.1	(1.8)	46.9	(1.6)	4.3	(0.8)	33.6	(2.1)	62.0	(2.3)
Italy	40.4	(1.5)	40.9	(1.3)	18.7	(0.8)	50.4	(4.4)	43.7	(4.1)	5.9	(1.7)
Japan	7.0	(0.6)	38.5	(0.8)	54.5	(0.8)	..	..	..	..	..	..
Korea	3.7	(0.4)	40.2	(0.5)	56.1	(0.3)	19.6	(7.3)	49.4	(8.3)	31.0	(8.0)
Netherlands	16.9	(1.0)	39.8	(1.2)	43.3	(1.3)	34.9	(4.0)	39.2	(4.2)	25.9	(3.3)
New Zealand	17.2	(1.3)	37.7	(1.6)	45.2	(1.8)	8.1	(1.3)	20.7	(2.2)	71.2	(2.2)
Norway	14.8	(0.9)	38.0	(1.2)	47.2	(1.0)	21.6	(2.6)	32.9	(3.1)	45.5	(3.1)
Poland	5.8	(0.6)	55.8	(1.1)	38.4	(1.1)	..	..	..	..	..	..
Slovak Republic	11.3	(0.8)	64.5	(1.1)	24.2	(1.1)	..	..	..	..	..	..
Slovenia	10.9	(0.7)	50.6	(1.1)	38.5	(1.1)	26.1	(3.1)	60.3	(3.3)	13.6	(2.0)
Spain	38.5	(1.0)	21.5	(0.8)	40.1	(0.9)	45.1	(2.6)	34.8	(2.5)	20.1	(1.9)
Sweden	9.5	(1.0)	51.1	(1.4)	39.4	(1.3)	23.7	(2.5)	39.8	(2.8)	36.6	(2.4)
Turkey	62.4	(0.8)	20.7	(0.7)	17.0	(0.6)	..	..	..	..	..	..
UK (England)	17.1	(1.3)	36.8	(1.8)	46.2	(1.7)	14.6	(2.2)	27.4	(2.6)	58.0	(2.9)
UK (Northern Ireland)	24.4	(1.4)	37.9	(1.6)	37.7	(1.3)	21.7	(5.9)	25.2	(4.7)	53.1	(5.9)
United States	5.7	(0.7)	50.4	(1.4)	43.9	(1.5)	21.0	(2.9)	40.2	(2.6)	38.8	(2.5)
OECD average	15.8	(0.2)	44.5	(0.2)	39.7	(0.2)	22.0	(0.7)	39.3	(0.8)	38.7	(0.8)
Indonesia (Jakarta)	33.4	(1.2)	48.0	(1.2)	18.5	(1.0)	..	..	..	..	..	..
Lithuania	10.2	(0.8)	53.1	(1.3)	36.6	(1.2)	..	..	68.7	(8.7)	31.3	(8.7)

출처: OECD (2016),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Survey of Adult Skills(PIAAC)(2012, 2015).; OECD(2023). Chart CO3.1.B.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에서 재인용

요컨대,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 지표는 교육 기회의 세대 간 이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국가들에서는 부모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 한국은 비이주배경 가정 자녀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이주배경 가정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나. CO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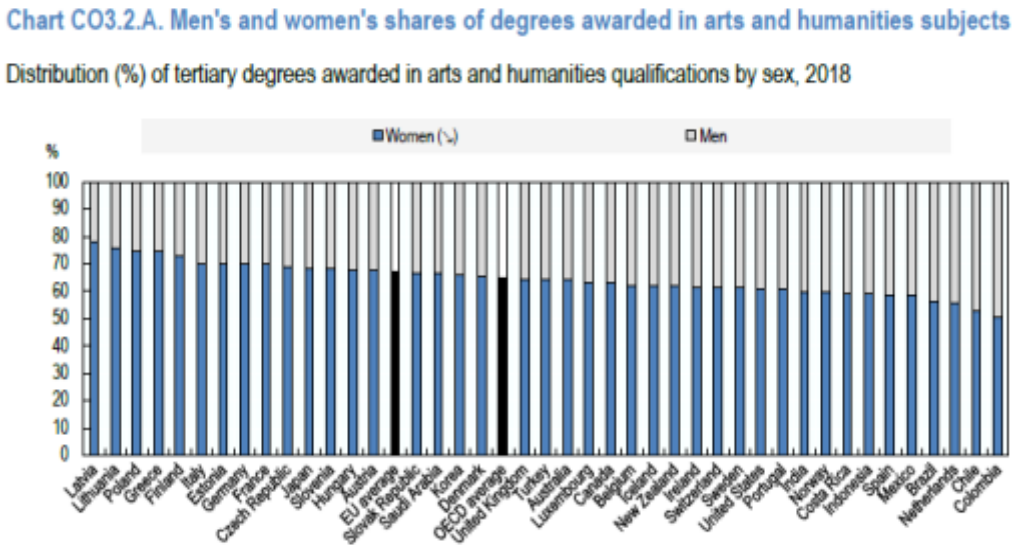
1) Chart CO3.2.A.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arts and humanities subjects, 2019) (적절)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은 특정 전공분야 대학 졸업생들의 성별 분포와 관련된 지표로서 예술·인문계열 대학 졸업자들의 성별 차이가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및 가구 소득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해당 지표는 OECD 교육지표(EAG) 2020의 B5(고등교육 졸업) 지표를 활용한 것으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2018년 기준, 미술, 연극, 영상 및 미디어 제작 (예: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사진촬영), 외국어, 철학, 언어학과 문학, 역사 및 고고학 등과 같은 예술·인문계열 대학 졸업자 중 약 65.5%가 여성이며, 남성이 3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예술·인문계열 졸업자의 약 65.8%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3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의 전반적인 경향성이 발견되었다([그림 6-21]).

[그림 6-21] Chart CO3.2.A.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https://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 OECD(2023). Chart CO3.1.B.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에서 재인용

요컨대,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지표는 성별에 따른 고등교육 졸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예술·인문계열 고등교육 졸업자의 여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성 졸업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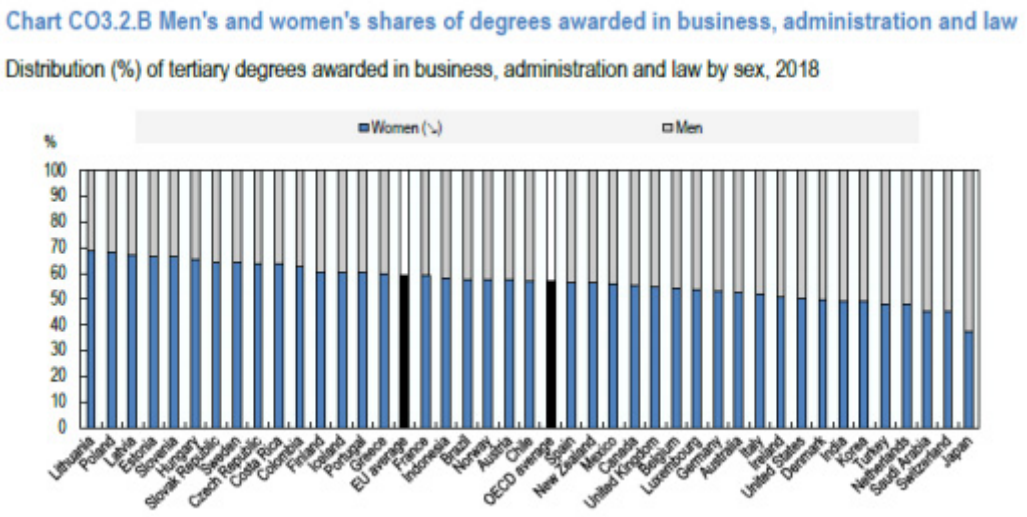
2) Chart CO3.2.B.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2018) (적절)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은 특정 전공분야 대학 졸업생들의 성별 분포와 관련된 지표로서 경영·행정·법학 계열 대학 졸업자들의 성별 차이가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및 가구 소득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해당 지표는 CO3.2.A 지표와 마찬가지로 OECD 교육지표(EAG) 2020의 B5(고등교육 졸업) 지표를 활용한 것으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 전반적으로 경영·행정 및 법학 계열의 경우 예술·인문계열에 비해 대학 졸업생의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덴마크,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 및 튀르키예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경영·행정 및 법학 분야의 대학 졸업자 중 약 57.0% 정도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4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경영·행정 및 법학 계열 졸업자의 약 48.9%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5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OECD 경향과는 다르게 남성 비율이 여성에 비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그림 6-22]).

[그림 6-22] Chart CO3.2.B.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https://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 OECD(2023). Chart CO3.1.B.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에서 재인용

요컨대,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지표는 성별에 따른 고등교육 졸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경영·행정·법학계열 고등교육 졸업자의 여성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남성 졸업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3) Chart CO3.2.C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2019)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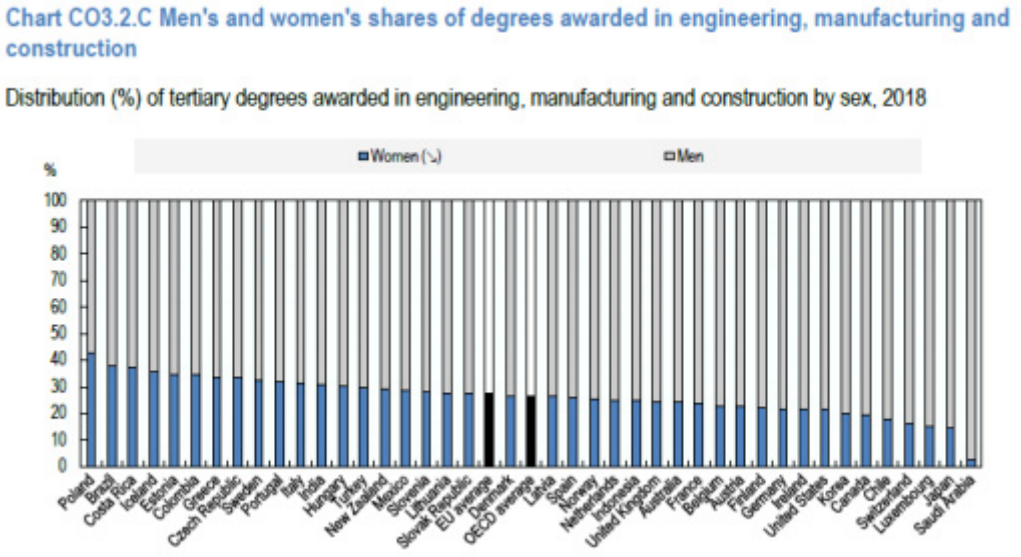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은 특정 전공분야 대학 졸업생들의 성별 분포와 관련된 지표로서 공학·제조·건설 계열 대학 졸업자들의 성별 차이가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및 가구 소득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해당 지표는 CO3.2.1 지표와 마찬가지로 'OECD 교육지표(EAG) 2020의 B5(고등교육 졸업) 지표'를 활용한 것으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평균적으로, 공학·제조·건설 계열의 경우, 대학 졸업생 중 남성(73.6%) 비율이 여성(26.4%)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

(42.5%)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14.5%)이었다.

이중에서 한국의 경우, 공학·제조·건설 계열 졸업자의 약 20.0%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8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성별 간 차이가 OECD 평균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그림 6-23]).

[그림 6-23] Chart CO3.2.C.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



출처: OECD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Eurostat Education Statistics.; OECD(2023). Chart CO3.1.C. 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2019에서 재인용

요컨대,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지표는 성별에 따른 고등교육 졸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공학·제조·건설 계열 고등교육 졸업자의 남성 비율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성 졸업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다.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1) Chart CO3.3.A. 만 10세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mathematics and science (TIMSS 2011))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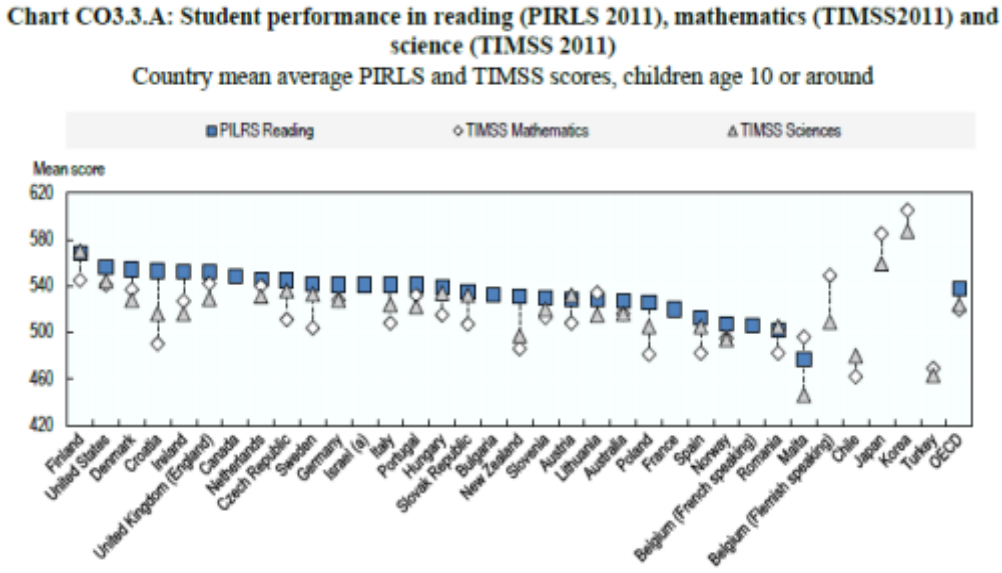
'만 10세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성취도'는 학습성과와 관련된 대표 지표로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2011 조사결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IMSS 2011에 참여한 OECD 국가의 평균 점수는 수학 519.52점과 과학 523.76이었으며, 수학과 과학 점수의 OECD 국가 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참여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수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580점 이상), 반면 칠레, 튀르키예, 폴란드, 스페인, 뉴질랜드의 학생들은 500점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특히, 수학에 비해 과학에서는 국가 간 차이가 더욱 작게 나타났다. TIMSS 2011 과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 핀란드, 일본, 미국으로 모두 540점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이들 국가들 간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한국의 경우, TIMSS 2011 수학과 과학에서 각각 605.00점과 587.00점으로 참여 국가중 가장 높은 성취도를 보여주었다([그림 6-24]).

[그림 6-24] Chart CO3.3.A. 만 10세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출처: TIMSS 2011. http://timssandpirls.bc.edu/; OECD(2023). Chart CO3.3.A. Student performance in mathematics and science (TIMSS 2011)에서 재인용

요컨대, 만 10세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지표는 학습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평균적으로 수학에 비해 과학 성취도 점수가 근소하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수학과 과학에서 OECD 평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성취도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과학에 비해 수학 성취도가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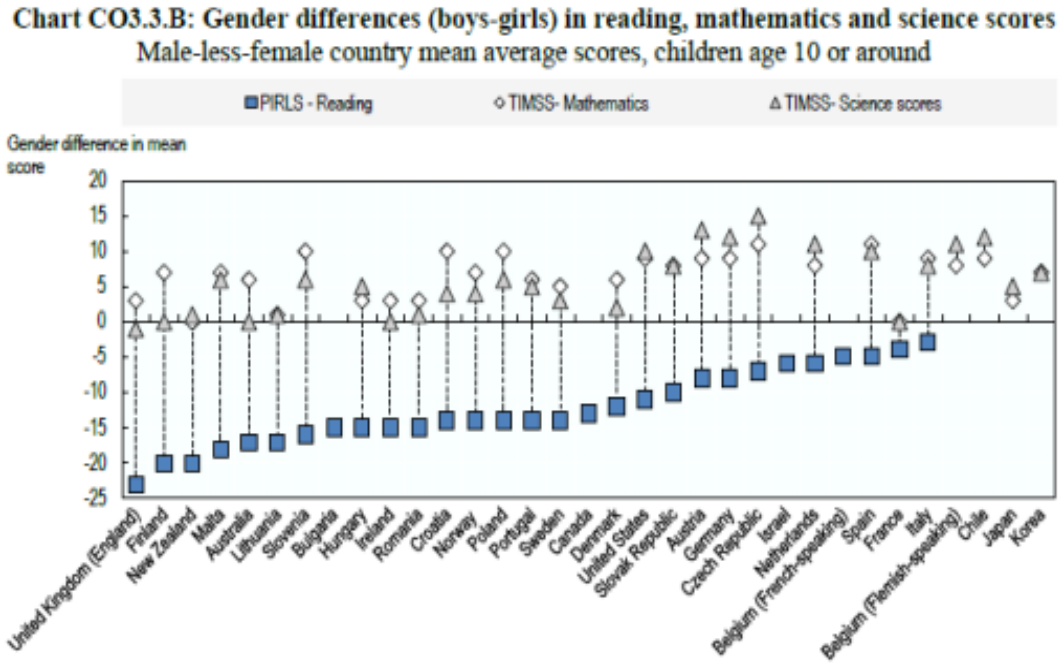
2) Chart CO3.3.B.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boys-girls) in students'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 (TIMSS 2011)) (적절)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차이'는 만 10세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의 성별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2011 조사결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읽기 영역(PIRLS)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수학과 과학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별 간 점수 차이는 수학보다 과학에서 상대적으로 더 작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학 성취도의 성별간 평균 점수 차이가 각각 7점, 과학 7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6-25]).

[그림 6-25] Chart CO3.3.B.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차이



출처: TIMSS 2011. http://timssandpirls.bc.edu/; OECD(2023). Chart CO3.3.B. Gender differences(boys-girls) in students'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 (TIMSS 2011)에서 재인용

요컨대,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차이 지표는 성별에 따른 학업성과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평균적으로 만 10세 학생들 중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수학과 과학 성취도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수학과 과학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라. CO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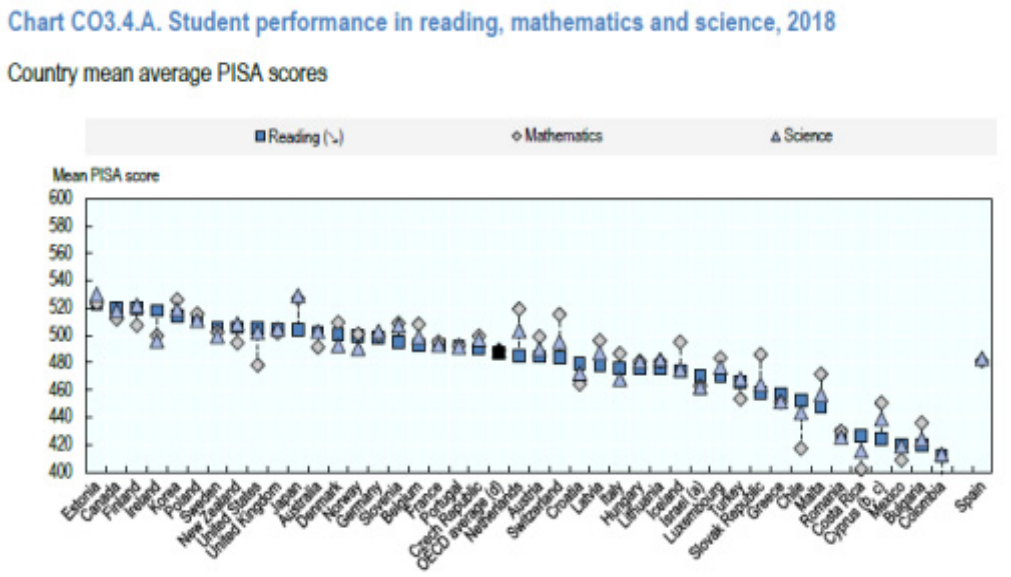
1) Chart CO3.4.A.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적절)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는 학습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 읽기, 수학, 과학 평균 점수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국가별 비교가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ISA 2018에 참여한 OECD 국가의 평균 점수는 국어 487점, 수학 489점 및 과학 489점이었으며,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는 OECD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읽기에서는 캐나다, 에스토니아 및 핀란드가 평균 점수로 52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420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525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콜롬비아가 39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과학에서는 에스토니아가 530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고, 콜롬비아는 413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국어 성취도 평균은 514점, 수학 526점, 과학 519점으로 세 교과에서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6-26]).

[그림 6-26] Chart CO3.4.A.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출처: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8, https://www.oecd.org/pisa/; OECD(2023). Chart CO3.4.A.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에서 재인용

요컨대,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지표는 학업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평균적으로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점수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읽기, 수학 및 과학에서 OECD 평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성취도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읽기와 과학에 비해 수학 성취도가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2) Chart CO3.4.B.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읽기, 과학, 수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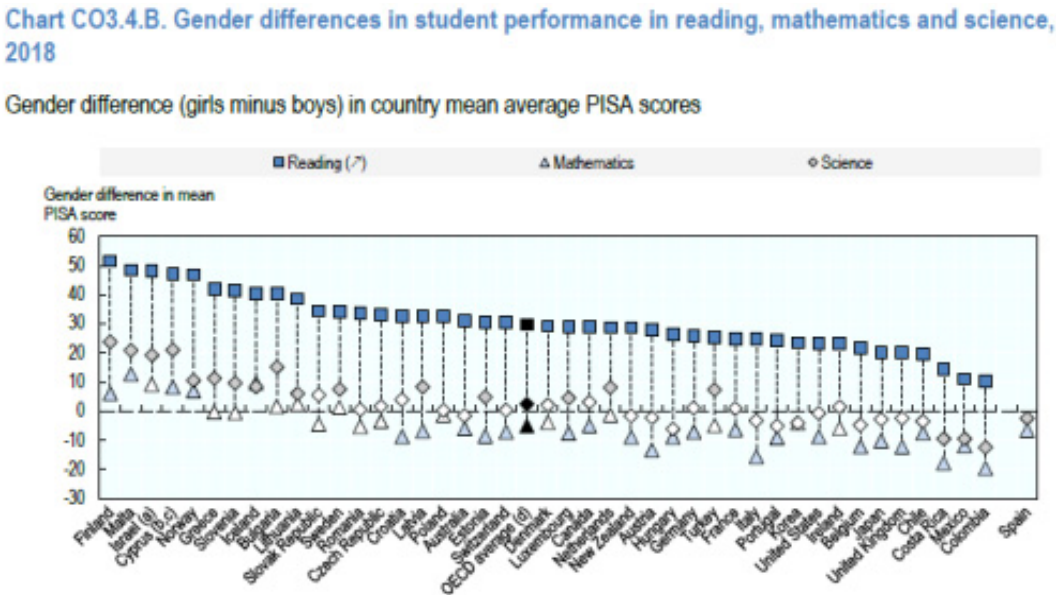
해당 지표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과 과학 성취도의 성별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 읽기, 수학, 과학 점수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6-27]에서 보듯이 성별 간 점수 차이는 여학생의 평균 성취도 점수에서 남학생의 평균 성취도 점수를 뺀 것으로 계산되며, 음영처리된 표식은 성별 간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흰색으로 처리된 표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PISA 2018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OECD 평균적으로 여학생(502점)의 읽기 성취도가 남학생

(472점)보다 30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 국가(예: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노르웨이 및 슬로베니아)에서는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 평균 점수보다 40점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수학에서는 남학생 평균(491점)이 여학생(487점)보다 약 5점 정도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과학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읽기 성취도의 경우 여학생(526점)이 남학생(50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수학(남학생: 528점, 여학생: 524점)과 과학(남학생:521점, 여학생: 517점)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각각 4점씩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 6-27]).

[그림 6-27] Chart CO3.4.B.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출처: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8, https://www.oecd.org/pisa/; OECD(2023). Chart CO3.4.B.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에서 재인용

요컨대,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차이 지표는 성별에 따른 학업성과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평균적으로 만 15세 학생들 중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읽기 성취도 점수가 더 높은 반편, 수학과 과학 성취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더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읽기에서는 여학생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학생의 성취도가 더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3) Chart CO3.4.C.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Changes in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적절)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는 지난 10년 간 만 15세 남학생과 여학생 간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PISA 2009와 PISA 2018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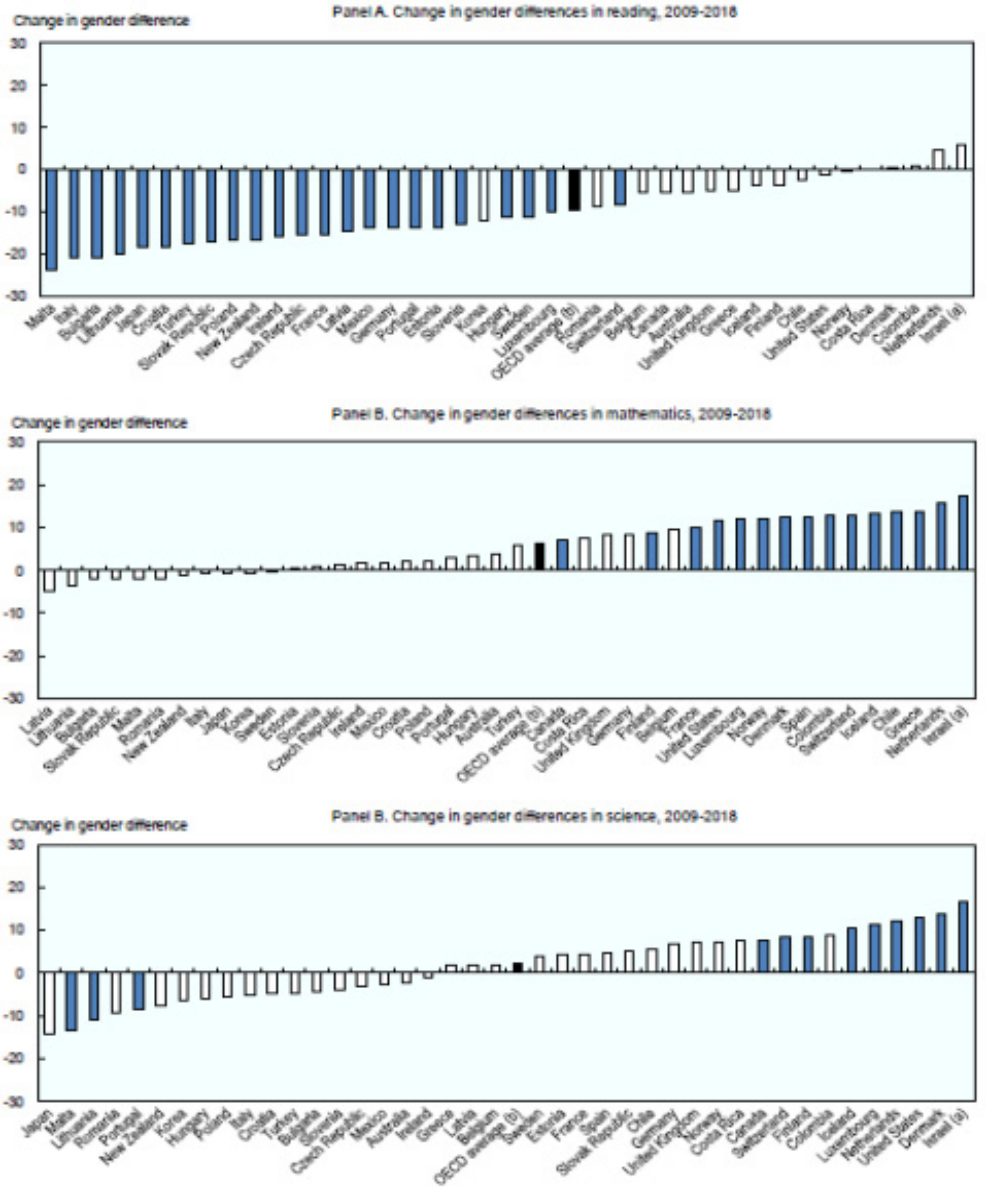
[그림 6-28]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읽기(패널 A), 수학(패널 B), 과학(패널 C)에서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가장 큰 변화는 읽기(패널 A)에서 나타났는데, OECD 국가 전반적으로, 2009년 이후 여학생과 남학생 간 성취도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다. 평균적으로 여학생과 남학생 간 읽기 점수 차이가 39점 차이(2009년)에서 29점 차이(2018년)로 지난 10년 간 약 10점 정도 감소하였으며, 가장 큰 변화는 리투아니아(20점 감소)와 이탈리아(21점 감소)에서 나타났다. 반면에 수학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간 수학 점수 차이가 OECD 평균 11점 차이(2009년)에서 5점 차이로(2018년) 6점 차이 감소하였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서 나타났는데, 2009년 이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 평균 점수가 16~17점이 상승하였다. 한편, 과학에서의 성별 차이 변화는 읽기와 수학에 비해 작은 편으로, 여학생과 남학생간 과학 점수 차이가 OECD 평균 0점 차이(2009년)에서 2점 차이로(2018년) 2점 차이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 간 읽기성취도 점수 차이가 35점(2009년)에서 24점(2018년)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학과 과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별 차이가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과 남학생 간 수학 성취도 점수 차이가 -3점(2009년)에서 -4점(2018년)으로 1점 증가하였으며, 과학의 경우 2점(2009년)에서 -4점(2018년)으로 성별 간 과학 성취도 차이가 6점 더 증가한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그림 6-28] Chart CO3.4.C.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

Chart CO3.4.C. Changes in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Change in gender differences (girls minus boys) in country mean average PISA scores, 2009-2018



출처: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8, https://www.oecd.org/pisa/; OECD(2023). Chart CO3.4.C. Changes in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에서 재인용

요컨대,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 지표는 성별에 따른 학업성과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읽기와 수학 성취도의 여학생과 남학생 간 성별 차이는 감소하였으며, 과학 성취도는 근소하게 증가한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특히, 읽기 성취도의 여학생과 남학생 간 성취도 차이가 지난 10년 간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학과 과학의 경우 성별 간 성취도 차이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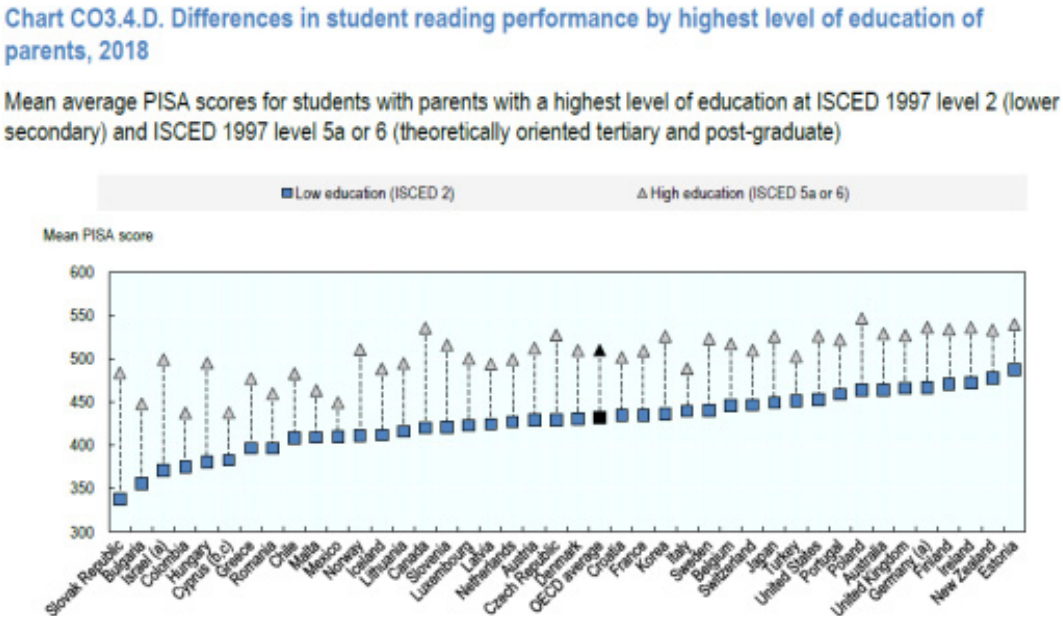
4) Chart CO3.4.D.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2018) (적절)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 읽기 점수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들의 PISA 읽기 평균 점수는 510점으로, 부모 학력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ISCED 3)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읽기 평균 점수(479점)와 중학교 졸업(ISCED 2)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읽기 평균 점수(432점)보다 각각 31점과 78점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는 모든 OECD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특히 캐나다(115점), 헝가리(115점), 이스라엘(128점)과 슬로바키아 공화국(146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들의 PISA 읽기 평균 점수는 526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학력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ISCED 3)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읽기 평균 점수(491점)와 중학교 졸업(ISCED 2)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읽기 평균 점수(436점)에 비해 각각 35점과 90점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6-29]).

[그림 6-29] Chart CO3.4.D.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



출처: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8, https://www.oecd.org/pisa/; OECD(2023). Chart CO3.4.D. 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2018에서 재인용

요컨대,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 지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성과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평균적으로 부모 최종 학력이 높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읽기 성취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부모 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5) Chart CO3.4.E.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socio-economic status, 2018)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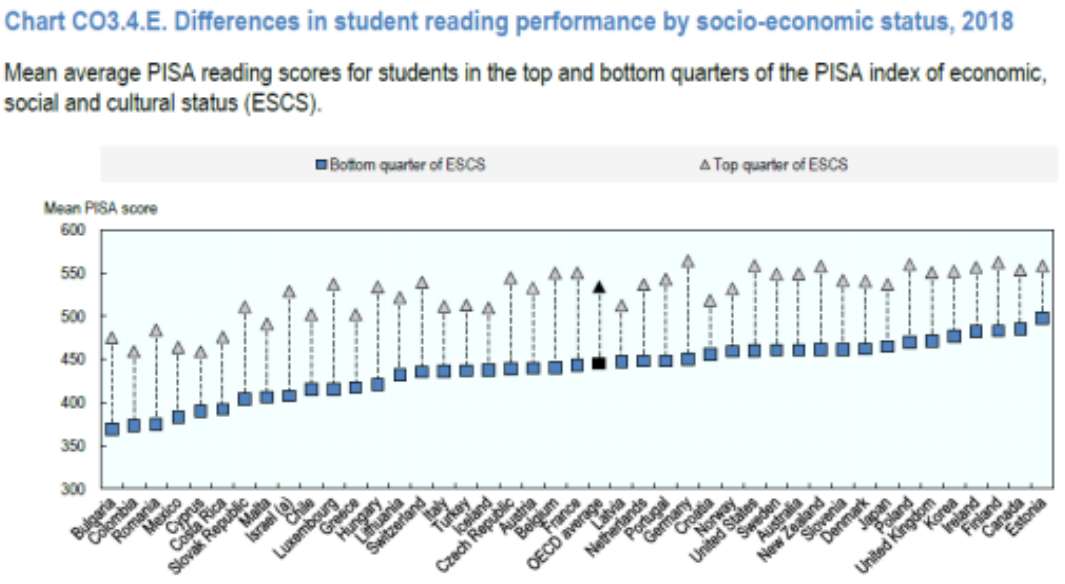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 읽기 성취도 차이'는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따른 교육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 읽기 점수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지표(HISEI), 부모의 교육수준 지표(PARED), 가정의 보유 자산 지표(HOMEPOS)를 바탕으로 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지표(ESCS)를 산출하여 제공한다(조성민 외, 2018). 해당 지표는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지표(ESCS)의 상위 25%와 하위 25% 학생 집단 간 읽기 평균 성취도 점수 차이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OECD 국가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지표(ESCS) 상위 25% 학생(534점)과 하위 25% 학생(445점) 간 읽기 평균 점수 차이는 약 89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에서는 두 집단 간 읽기 평균 점수 차이가 120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일부 국가(예: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및 영국)에서는 읽기 평균 성취도 점수는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ESCS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성취도 차이의 경우, OECD 평균 차이보다 더 낮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지표(ESCS) 상위 25% 학생(552점)과 하위 25% 학생(477점) 간 읽기 평균 점수 차이는 약 75점으로 나타나 OECD 평균 점수 차이인 89점보다는 편차가 작게 나타났다[그림 6-30]).

[그림 6-30] Chart CO3.4.E.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



출처: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8, https://www.oecd.org/pisa/; OECD(2023). Chart CO3.4.E. 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socio-economic status, 2018 에서 재인용

요컨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 지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성과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지수가 상위 25%인 집단과 하위 25%인 집단 간 읽기 성취도 점수의 차이가 약 89점으로 매우 큰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OECD 평균 점수 차이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

이었으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지수가 하위 25%인 학생이 상위 25%인 학생에 비해 읽기 성취도 점수가 약 75점 정도 낮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마. CO3.5. 청년 니트(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1) Chart CO3.5.A. 청년 니트 비율(NEET rates for 15-29 year-olds) (누락)

이 지표는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취약성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에서는 청년 니트 비율을 15~29세 청년층 인구 중 고용되지 않고,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을 받지 않으며,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비율로 산출한다.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18.4%로 OECD 평균인 13.4%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OECD, 2019). OECD 기준상, 비형식 교육을 통한 교육 참여자와 취업 준비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청년층 니트 비율이 실제보다 과대추정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은 2017년 이후부터 해당 지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이나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인구수가 많은 한국의 상황을 반영할 경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학원 및 직업 훈련 기관 통학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하여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 226-227).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청년 니트 비율을 산출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5~29세 청년을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형태별로 '정규 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육아', '가사', '취업 준비', '진학 준비', '군입대 대기', '심신 장애', '쉬었음',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OECD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때, 전체 청년층 인구(15~29세) 중 실업자와 형식교육의 형태인 '정규 교육기관 통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청년 니트 인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과 비형식 훈련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 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을 교육으로,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을 취업활동으로 분류하여 해당 인구를 제외한 후 청년 니트 비율 지표값을 산출하였다.

한국의 청년층 니트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22년 원자료를 바탕으로 경제활동 상태별 청년층 인구를 살펴보았다(〈표 6-8〉참조). 산출 결과, OECD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의 청년층 니트 비율은 18.5%이었으며, 입시학원 통학자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자를 제외한 한국의 값은 16.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의 값을 다른 국가들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8〉 2022년 5월 기준 한국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 상태

(단위: 천명)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T)
취업자 (A)	실업자 (B)	육아 (C)	가사 (D)	정규 교육 기관 통학 (E)	입시 학원 통학 (F)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G)	취업 준비 (H)	진학 준비 (I)	심신 장애 (J)	군입대 대기 (K)	쉬었음 (L)	기타 (M)	
4,105	320	80	52	2,900	61	140	392	66	48	66	346	20	8,595

※ 청년 니트 비율 = $\frac{B+C+D+H+I+J+K+L+M}{T}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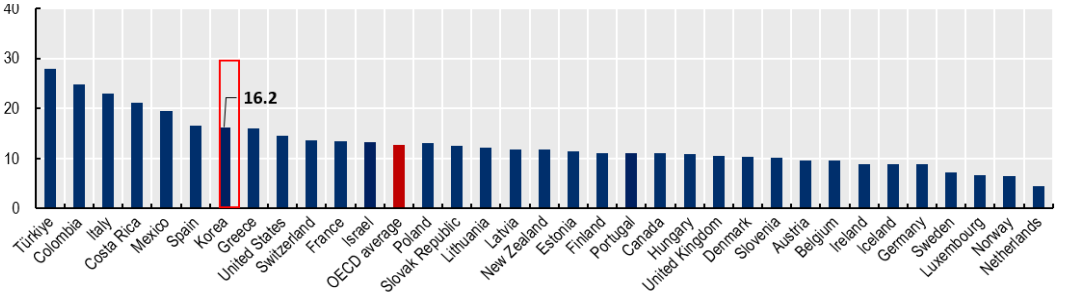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 5월 원자료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평균 청년 니트 비율은 12.7%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튀르키예가 27.9%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콜롬비아와 이탈리아 순으로 청년 니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청년 니트 비율이 7.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청년 니트 비율이 16.2%로 나타나 입시학원 통학자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자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3.5%p 정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6-31] Chart CO3.5.A. 청년 니트 비율

Chart CO3.5.A.(NEET rates for 15–29 year-olds, 2022)



출처: OECD (2024),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 (Accessed on 12 June 2024).

※ OECD 자료는 OECD Database(https://data.oecd.org/)의 NEET 관련 자료 중 일부를 그래프로 재구성하였으며, 한국 자료는 경제 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한국의 청년 니트층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여전히 OECD의 국제기준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또한, 청년 니트를 정의하는데 있어서도 국내 선행연구마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청년 니트 비율에 대한 국가 간 편차를 비교할

때는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2) Chart CO3.5.B.연령대별 니트 비율(NEET rates across age groups) (누락)

이 지표는 특정 청년 인구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서, OECD에서는 연령대별 니트 비율을 15~19세, 20세~24세, 25세~29세로 구분하여 청년층 인구 중 고용되지 않고,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을 받지 않으며,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비율로 산출한다.

연령대별 니트 비율 지표는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여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 226-227).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령대별 니트 비율을 산출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를 만 5세를 단위로 연령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청년 인구수를 파악하여 연령대별 니트 비율 지표값을 산출하였다.

〈표 6-9〉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연령대별 니트 비율을 추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청년층 니트 비율은 입시학원 통학자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자를 제외한 경우, 16.2%로 나타나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였다. 다만, 연령대별 청년 니트 비율은 각 연령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15~19세의 니트 비율은 4.3%이었으며, 20~24세와 25세~29세의 니트 비율은 각각 19.4%와 21.1%로 산출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값을 다른 국가들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9〉 2022년 5월 기준 한국의 연령대별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 상태

(단위: 천명)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T)
연령	취업자 (A)	실업자 (B)	육아 (C)	가사 (D)	정규 교육 기관 통학 (E)	입시 학원 통학 (F)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G)	취업 준비 (H)	진학 준비 (I)	심신 장애 (J)	군입대 대기 (K)	쉬었음 (L)	기타 (M)	
15~19	208	12	0	0	1882	52	4	7	32	2	20	24	1	2,243
20~24	1296	125	6	11	850	7	65	138	27	23	45	150	10	2,752
25~29	2601	183	74	41	168	2	71	247	7	22	1	171	10	3,599
15~29	4,105	320	80	52	2,900	61	140	392	66	48	66	346	20	8,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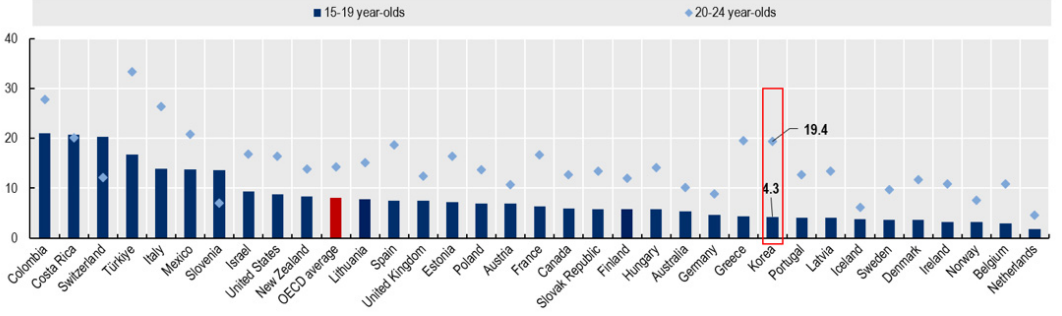
※ 연령대별 니트 비율= $\frac{B+C+D+H+I+J+K+L+M}{T}\times 100$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 5월 원자료

청년 인구 중 15~19세 및 20~24세를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형식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15~19세 청년층에 비해 20~24세 청년 니트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OECD 평균을 살펴보면, 15~19세 청년층의 니트 비율은 8.0%이었으며, 20~24세 청년층의 니트 비율은 14.3%로 조사되었다. 반면, 코스타리카와 슬로베니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15~19세 청년층의 니트 비율이 20~24세 청년층의 니트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15~19세 청년 니트 비율이 4.3%로 나타나 OECD 평균에 비해 3.7%p 정도 낮은 수준인 반면, 20~24세 청년 니트 비율은 19.4%로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연령대별 청년 니트 비율에 큰 편차가 존재하였다. 높은 수준을 보여 연령대별 청년 니트 비율에 큰 편차가 존재하였다. 높은 수준을 보여 연령대별 청년 니트 비율에 큰 편차가 존재하였다.

[그림 6-32] Chart CO3.5.B. 연령대별 청년 니트 비율
Chart CO3.5.B. NEET rates across age groups, 2022



출처: OECD (2024),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 (Accessed on 12 June 2024).
※ OECD 자료는 OECD Database(https://data.oecd.org/)의 NEET 관련 자료 중 일부를 그래프로 재구성하였으며, 한국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3) Chart CO3.5.C.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누락)

이 지표는 청년 니트 비율 지표를 성별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서, 남성과 여성 간 청년 니트 비율의 차이로 산출된다.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 지표는 OECD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면 산출이 가능하여 누락 지표로 분류되었다(김은지 외, 2023: 226-227).

〈표 6-10〉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남성과 여성의 청년 니트 비율을 각각 추정하였다. 산출결과, 15~29세 남성의 니트 비율은 17.2%이었으며, 해당

연령대 여성의 니트 비율은 15.1%로 산출되어 남성의 니트 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의 값을 다른 국가들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0〉 2022년 5월 기준 한국의 성별에 따른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 상태

(단위: 천명)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T)
성별	취업자 (A)	실업자 (B)	육아 (C)	가사 (D)	정규 교육 기관 통학 (E)	입시 학원 통학 (F)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G)	취업 준비 (H)	진학 준비 (I)	심신 장애 (J)	군입대 대기 (K)	쉬었음 (L)	기타 (M)	
남성	1944	162	3	5	1525	24	66	226	37	34	66	197	10	4299
여성	2161	158	77	47	1374	37	74	166	29	14	0	149	11	4296
전체	4,105	320	80	52	2,900	61	140	392	66	48	66	346	20	8,595

※ 성별 니트 비율= $\frac{B+C+D+H+I+J+K+L+M}{T}\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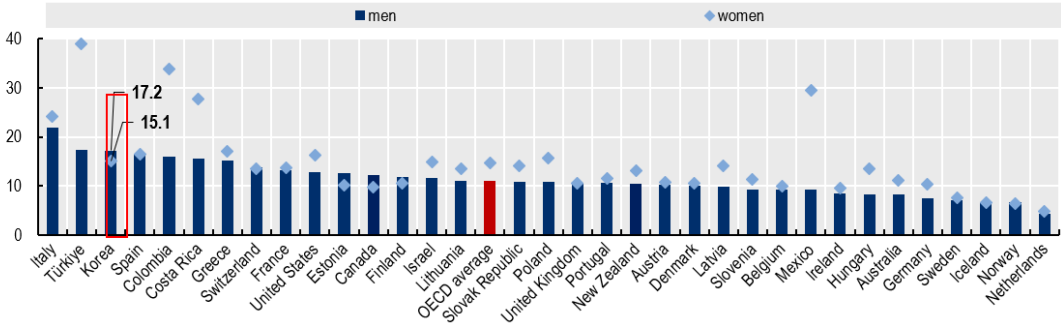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 5월 원자료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니트 비율이 남성의 니트 비율에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OECD 평균의 경우에도 여성 니트 비율은 14.7%이었으며, 남성의 니트 비율은 11.1%로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여성 니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튀르키예였으며, 남성 니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에스토니아, 핀란드, 캐나다, 스위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니트 비율이 더 높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남성의 니트 비율은 17.2%로 나타나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15.1%로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요컨대, 청년 니트 비율 지표는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취약성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서, 한국의 경우 해당 지표값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15~29세 청년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 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에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 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인구를 제외한 인구 수를 더한 후 청년 층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해당 지표값을 산출하였다. 청년 니트 비율 지표에 대해, OECD 평균적으로 최근 들어 청년 니트 비율이 2017년 13.4%에서 2022년 12.7%로 약간 감소한 경향이 발견된다. 연령대별 니트 비율의 경우, OECD 국가 전반적으로 15세~19세의 니트 비율에 비해 20~24세의 니트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여성의 니트 비율이 남성의 니트 비율에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은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인구를 제외한 경우에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15~19세의 니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20~24세 인구의 니트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니트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 니트층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맞춤형 정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림 6-33] Chart CO3.5.C.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
Chart CO3.5.C.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2022



출처: OECD (2024),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 (Accessed on 12 June 2024).
※ OECD 자료는 OECD Database(https://data.oecd.org/)의 NEET 관련 자료 중 일부를 그래프로 재구성하였으며, 한국 자료는 경제 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바.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1) Chart CO3.6.A 이주배경 학생(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2006 and 2015)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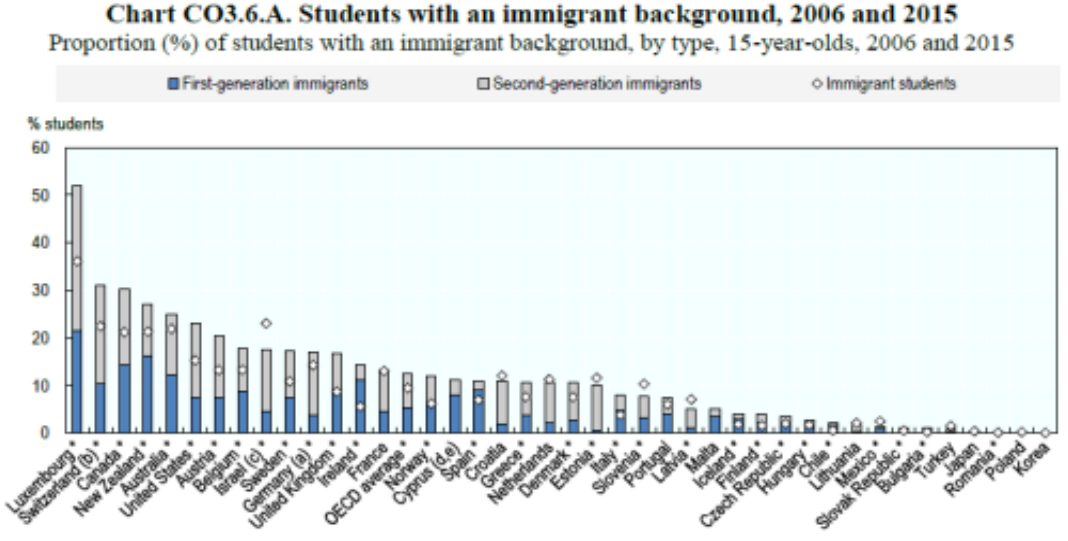
'이주배경 학생'은 학생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부모 둘 다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학생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학생 배경지표로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조사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약 12.5%로 조사되었으며, 국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룩셈부르크는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스위스의 경우에도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25%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에 한국, 일본, 폴란드와 튀르키예에서는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주배경 학생은 크게 부모 모두 외국에서 출생하고 외국에서 태어난 '1세대 이주배경 학생(first-generation immigrant students)'과 부모는 모두 외국 출생이나 본인은 PISA 평가에 응시한 국가에서 태어난 '2세대 이주배경 학생(second-generation immigrant studen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1세대 이주배경 학생과 2세대 이주배경 학생의 분포는 국가마다 다르며,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제외)에서는 2세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1세대 이주배경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최근 들어 이민 인구가 유입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1세대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2세대 이주배경 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약 0.1% 수준으로 해당 지표 값이 거의 0에 수렴하며, 1세대 및 2세대 이주배경 학생 비율 지표는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림 6-34]).

[그림 6-34] Chart CO3.6.A. 이주배경 학생



출처: PISA 2015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OECD(2023). Chart CO3.6.A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2006 and 2015에서 재인용

요컨대, 이주배경 학생 지표는 교육 여건과 관련하여 학생의 출생 배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거의 0%에서부터 52% 수준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0.1%로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나 매년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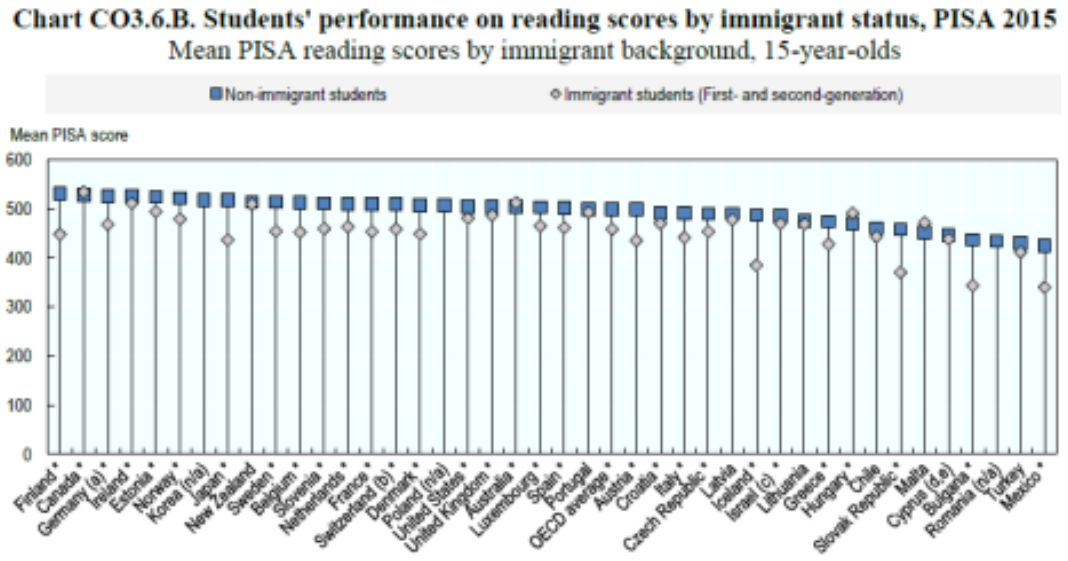
2) Chart CO3.6.B.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적절)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는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로서,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조사(PISA) 2015 결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가별 비교가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조사(PISA) 2015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주배경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 점수는 457.8점으로 비이주배경 학생들의 평균 점수(498.8점)에 비해 약 40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학업성취도 차이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멕시코, 슬로바키아, 스웨덴)에서는 비이주배경 학생들에 비해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가 약 60점 이상 낮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호주, 캐나다와 헝가리에서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가 비이주배경 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6-35]).

다만, 한국의 경우,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점에서 이주배경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 평균 점수를 산출하기 어려워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점수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6-35] Chart CO3.6.B.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



출처: PISA 2015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OECD(2023). Chart CO3.6.B. 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에서 재인용

요컨대,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 지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이주배경 학생의 읽기 성취도가 비이주배경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용 자료가 부재하여 학생 이주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사. 교육·문해력 지표 요약

CO3.1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지표는 한 국가의 교육이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별로 성별과 연령층에 따른 후기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이수율에는 다양한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한국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장년층 인구에 비해 청년층의 후기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CO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지표는 성별에 따른 고등교육 졸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전공 분야에 따른 고등교육 졸업자 비율의 성별 차이는 OECD 국가별로 상이한 패턴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예술·인문계열에서는 여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경영·행정 및 법학 계열의 경우, OECD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남성 졸업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학·제조·건설 계열의 경우, 대학 졸업생 중 남성비율이 여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지표는 성별에 따른 학업성과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는 교과별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상이 보여주었으나,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읽기 영역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수학과 과학의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읽기 성취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수학과 과학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CO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지표는 성별에 따른 학업성과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는 교과별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상이 보여주었으나, 전반적으로 읽기 성취도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나,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성취도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읽기 성취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수학과 과학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CO3.5. 청년 니트(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지표는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취약성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기준이 우리나라 청년층 니트 비율을 과대추정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누락지표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학원 및 직업 훈련 기관 통학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을 추정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청년 비율은 12.7%이었으며, 최소 7.0% 미만에서 최대 27.9%까지 국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청년 니트 비율이 16.2%로 나타나 입시학원 통학자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자를 제외하더라도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지표는 교육 여건과 관련하여 학생의 출생 배경에 따른 학업 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며 한국 지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하위 지표의 경우 한국의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용 자료가 부재하여 해당 지표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학업성취도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가 존재하였으나, 평균적으로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비이주배경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정리하면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인 교육·문해력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성별과 전공 계열에 따라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었다. 교육 이수율과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니트층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비교 자료가 부족하여 이주배경에 따른 교육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사회참여

가.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1) Table CO4.1.A. 사회단체 구성원(활동적 또는 비활동적)인 청소년·청년 비율 (Proportion of young people who are members (active or inactive) of organisations by type of group, around 2012, 15-29) (적절)

사회단체 구성원인 청소년·청년 비율은 15~29세의 사람이 공식적, 비공식적인 조직에 참여하는 사회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6번째 조사(Wave 6) 자료의 문항들을 통해 각 국가의 순위를 비교하고 있다.

OECD 국가의 15~29세의 청소년·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종교 참여, 스포츠·여가활동 참여, 예술이나 교육 참여, 협동조합 참여, 정치참여, 자원봉사 참여, 환경 활동 참여, 기타 참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각 국가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종교 참여, 스포츠·여가활동 참여, 노동조합 참여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6-11〉 Table CO4.1.A. 사회단체 구성원(활동적 또는 비활동적)인 청소년·청년 비율

Table CO4.1.A Proportion (%) of young people who are members (active or inactive) of organisations by type of group, around 2012

Men and women age 15 to 29

	Church or religious organisation	Sports and recreational organisation	Art, music or educational organisation	Trade unions	Political party	Humanitarian or Charitable organisation	Environmental organisation	Other groups
Australia	41	52	31	22	10	32	15	10
Chile	39	28	18	13	10	13	8	12
Cyprus[1,2]	20	22	12	14	20	13	8	5
Estonia	14	18	15	7	6	5	2	7
Germany	48	37	15	12	7	13	7	..
Japan	12	22	12	10	5	3	3	11
Korea	44	29	25	8	6	11	9	23
Mexico	67	32	23	14	18	20	15	9
Netherlands	30	46	21	19	6	16	11	8
New Zealand	45	58	40	19	16	37	20	30
Poland	27	12	11	11	4	8	5	5
Romania	19	9	7	8	8	4	4	3
Slovenia	20	30	16	17	7	16	7	14
Spain	17	14	8	6	4	7	2	3
Sweden	43	34	22	49	12	29	11	26
Turkey	2	4	3	2	5	3	2	1
United States	63	27	24	16	44	30	18	16

출처: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ave6, 2010-2014.; OECD(2023). Table CO4.1.A. Proportion of young people who are members (active or inactive) of organisations by type of group, around 2012, 15-29에서 재인용

2) Table CO4.1.B. 지난달 자원봉사를 한 청소년·청년 비율 (Proportion of people who volunteered time to an organization in the past month, 2015 or last year available) (적절)

"지난 달 자원봉사를 한 청소년·청년의 비율"은 갤럽세계조사(the Gallup World Poll)를 통해 조사된 문항으로 "지난달 이러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원봉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된 것이다.

OECD 국가들은 전체 연령에서는 24%, 15~29세에서는 23%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그리스, 헝가리, 튀르키예 등의 국가는 10%로 나타났고 전체 성인과 15~29세의 수치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미국, 캐나다 등은 전체 성인에서 4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15~29세 역시 4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전체 성인은 21%로 OECD 평균(24%)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15~29세의 경우 25%로 OECD 평균(2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6-12〉 Table CO4.1.B. 지난달 자원봉사를 한 청소년·청년 비율

Table CO4.1.B. Proportion of people who volunteered time to an organization in the past month, 2015 or last year available[1]

	All ages:			15-29 year	
	Total	Men	Women	olds	Year
Australia	40	38	41	42	2015
Austria	26	25	28	28	2015
Belgium	28	26	29	28	2015
Canada	44	42	46	40	2014
Chile	16	17	15	16	2014
Czech Republic	13	13	13	16	2014
Denmark	23	24	23	27	2015
Estonia	19	17	20	29	2014
Finland	31	29	34	22	2015
France	29	24	33	27	2015
Germany	27	27	27	23	2015
Greece	8	9	8	10	2015
Hungary	9	9	8	11	2015
Iceland	29	30	28	..	2013
Ireland	40	40	40	35	2015
Israel[2]	21	21	20	19	2014
Italy	15	14	17	15	2015
Japan	26	30	23	..	2014
Korea	21	20	23	25	2014
Luxembourg	31	29	34	31	2015
Mexico	13	13	13	12	2015
Netherlands	33	32	34	29	2015
New Zealand	45	47	43	..	2014
Poland	9	11	7	14	2015
Portugal	15	15	14	15	2014
Slovak Republic	11	10	11	9	2014
Slovenia	34	41	27	45	2015
Spain	17	18	16	19	2015
Sweden	15	15	15	18	2015
Switzerland	27	25	28	20	2014
Turkey	5	6	4	5	2013
United Kingdom	33	30	35	26	2015
United States	44	41	47	46	2014
OECD average	**24**	**24**	**24**	**23**	
Bulgaria	4	4	5	8	2014
Croatia	17	14	21	28	2014
Cyprus[3,4]	25	27	23	23	2015
Latvia	9	8	10	14	2014
Lithuania	8	7	10	7	2014
Malta	28	29	27	27	2015
Romania	7	8	5	11	2014

출처: OECD(2023). Table CO4.1.B. Proportion of people who volunteered time to an organization in the past month, 2015 or last year available

3) Table CO4.1.D. 교회,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적극적·수동적 참여(Active versus passive affiliation to a church,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 trade union, around 2012) (적절)

이 문항은 청소년·청년 비율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15~29세의 사람이 공식적, 비공식적인 조직에 참여하는 사회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에 대한 추가 문항이다. 이 문항은 응답자들에게 해당 조직에서 자신의 활동을 “능동적(active)” 혹은 “수동적(passive)”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각 국가들 중 종교기관과 노동조합의 적극적-소극적 참여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멕시코와 미국은 전체 종교기관 참여율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 참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스웨덴과 독일은 전체 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소극적 참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대체로 소극적 참여율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종교기관 참여율(44%)은 적극적 참여(24%)와 소극적 참여(20%)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노동조합 가입율(8%)은 적극적 참여(2%)가 소극적 참여(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6-13〉 Table CO4.1.D. 교회,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적극적·수동적 참여

Table CO4.1.C Proportion of people involved in work for voluntary or charitable organisations in the past year

Proportion (%) by age group

	15-29 years old	30-49 years old
Belgium	39	35
Czech Republic	26	27
Denmark	50	47
Estonia	37	28
Finland	51	49
France	26	31
Germany	58	57
Hungary	23	23
Iceland	50	55
Ireland	49	48
Israel[2]	42	40
Italy	43	47
Netherlands	54	58
Poland	25	24
Portugal	26	29
Slovak Republic	42	43
Slovenia	41	38
Spain	42	55
Sweden	35	41
Switzerland	53	58
United Kingdom	51	47
Bulgaria	13	14
Lithuania	27	28
Cyprus[3,4]	42	44

출처: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ave6, 2010-2014.; OECD(2023). Table CO4.1.D. Active versus passive affiliation to a church,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 trade union, around 201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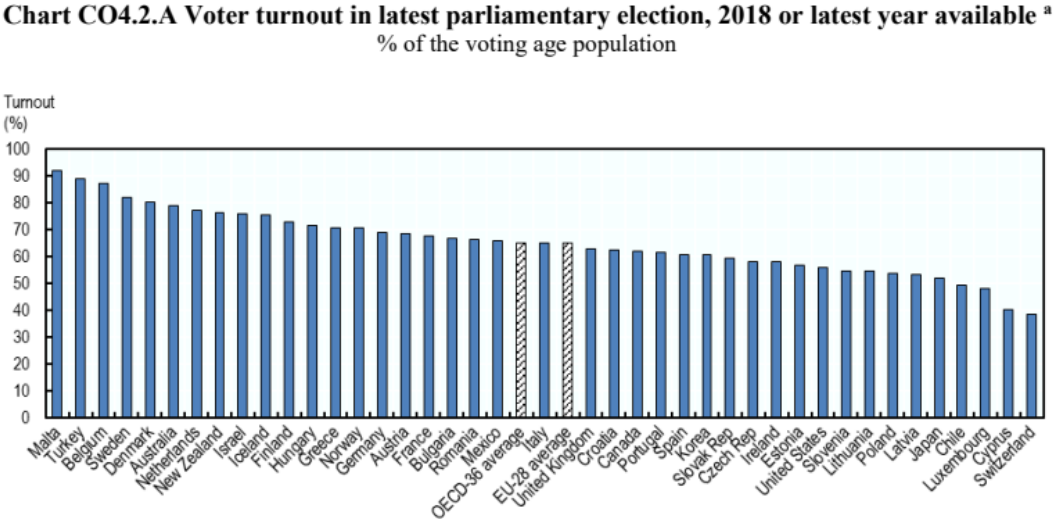
나.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1) Chart CO4.2.A. 의회 선거 투표율 (Voter turnout in latest parliamentary election, 2018 or latest year available) (적절)

청소년·청년들의 사회참여 지표 중 정치적 참여를 보여주기 위하여 의회 선거(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 대통령 선거(presidential election) 참여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IDEA(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Voter Turnout Database의 각 국가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지표는 전체 투표 가능 연령 국민들의 의회 선거, 대통령 선거 참여 비율로 뒤의 지표의 정보를 풍부하게 해주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OECD 국가의 평균 투표 참여율은 60%대이며 각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80% 이상의 벨기에, 덴마크, 튀르키예, 스웨덴의 국가들과 50% 미만의 칠레, 일본, 스위스 등 다양하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중위권에 있으나 OECD와 유럽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그림 6-36] Chart CO4.2.A. 의회 선거 투표율



주: 투표 연령 인구(VAP) 투표율 통계는 총 투표 수를 추정된 투표 연령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VAP는 추정치임.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유효표 및 무효표를 포함한 총 투표 수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인원 수로 나눈 값이 75.84%였음. 자료는 의회 선거를 기준으로 하며,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 루마니아는 참여율이 높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함.

a) 연도: 2017년: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프랑스, 독일,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2016년: 호주,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한국,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 2015년: 캐나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2014년: 벨기에, 일본, 루마니아.

출처: OECD(2023). Chart CO4.2.A. Voter turnout in latest parliamentary election, 2018 or latest year available

2) Table CO4.2.A. 성·연령별 투표율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적절)

이 지표는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CSES) (2011-2016), European Social Survey (ESS) 2014 자료를 활용하여 성, 연령별 투표율을 비교하였다.

OECD 국가들의 18~24세의 청소년들은 25~50세 성인에 비해 투표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25~25세의 투표율을 1로 봤을 때 18~24세의 투표율은 .17 가량 낮게 나타난다. 각 국가별 투표율의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OECD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다.

한국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투표 참여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19~24세의 투표율이 25~50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자료 시점이 2004년으로 20년 전 자료로 나타나 있는 한계가 있다.

〈표 6-14〉 Table CO4.2.A. 성·연령별 투표율

Table CO4.2.A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Voter turnout ratios for different population groups

	Year	Source	Women relative to men	People aged 18-24 relative to people aged 25-50
Australia	2013	CSES	1.00	0.99
Austria	2013	CSES	1.03	0.88
Belgium	2014	ESS	1.02	1.05
Canada	2004	CSES	0.96	0.86
Czech Republic	2014	ESS	0.88	0.80
Denmark	2014	ESS	1.04	0.86
Estonia	2014	ESS	1.09	0.48
Finland	2014	ESS	0.97	0.70
France	2014	ESS	0.95	0.65
Germany	2013	CSES	0.91	0.83
Greece	2012	CSES	0.99	0.85
Hungary	2014	ESS	0.92	0.76
Iceland	2013	CSES	1.00	0.90
Ireland	2011	CSES	1.00	0.82
Israel (a)	2014	ESS	1.03	0.95
Italy	2012/13	ESS	0.98	0.91
Japan	2003	CSES	0.98	0.78
Korea	2004	CSES	0.95	1.02
Mexico	2012	CSES	0.99	0.91
Netherlands	2014	ESS	1.02	0.68
New Zealand	2011	CSES	0.99	0.86
Norway	2014	ESS	1.03	0.88
Poland	2011	CSES	0.94	0.97
Portugal	2014	ESS	1.01	0.77
Slovak Republic	2012/13	ESS	1.00	0.59
Slovenia	2014	ESS	1.06	0.91
Spain	2014	ESS	0.95	0.98
Sweden	2014	ESS	1.03	0.92
Switzerland	2011	CSES	0.95	0.87
United Kingdom	2014	ESS	0.97	0.47
United States	2012	CSES	1.04	0.82
OECD average			0.99	0.83
Bulgaria	2012/13	ESS	1.02	0.87
Cyprus (b,c)	2012/13	ESS	0.96	0.68
Lithuania	2014	ESS	0.96	0.61
EU average			0.99	0.80
Eurozone average			0.99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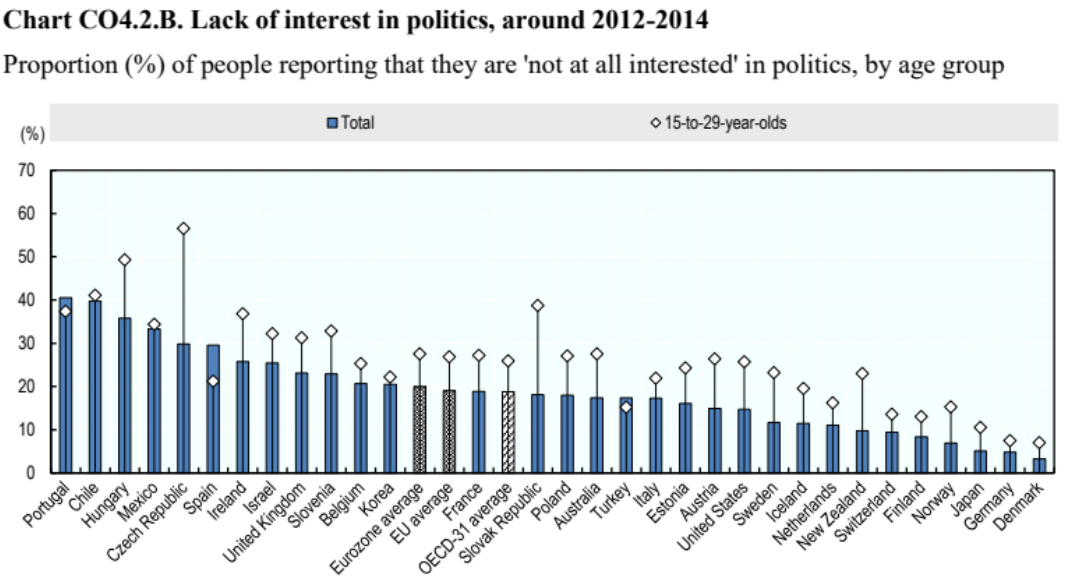
출처: OECD(2023). Table CO4.2.A.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3) Chart CO4.2.B.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 (Lack of interest in politics, around 2012-2014) (적절)

이 지표는 정치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청소년·청년의 비율을 나타낸다.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6, European Social Survey 2012, 2014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 연령과 15-29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OECD 중위권에 위치해 있었으나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15~29세의 정치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청소년·청년의 비율이 전체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과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6-37] Chart CO4.2.B.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



출처: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6, European Social Survey 2012, 2014 등; OECD(2023). Chart CO4.2.B. Lack of interest in politics, around 2012-2014에서 재인용

다. CO4.4. 십대 자살(Teenage suicides)

1) Chart CO4.4.B.10대 자살 (Teenage suicides, 1990, 2000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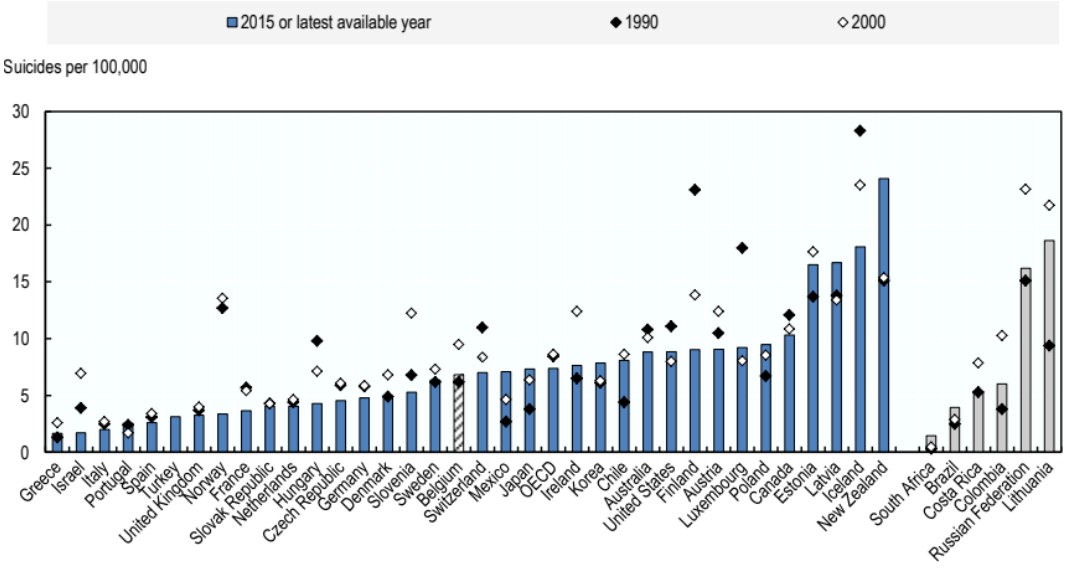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의도적 자해'로 인한 총 사망자 수 중 15~19세 사망자 수를 15~19세 전체 인구로 나눈 값에 100,000을 곱한 값이다. 이 수치는 연간 10만명당 자살자 수로 해석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청소년 자살률은 1990년 이래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가별 자살률의 비율은 감소-유지-증가의 패턴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한국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는 어려우나, 한국은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0년과 2000년에 비해 현재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OECD 국가들 중 중위권의 10대 자살률 순위를 보이고 있었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2019년 기준 10만명당 자살률 결과를 보면 한국 10대 청소년(15~19세)의 자살률은 180여개국 중 30위권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120] 이는 세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것에 비해 한국 청소년의 자살률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적 시각에서 한국 청소년의 자살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유리, 2023).

[그림 6-38] Chart CO4.4.B. 10대 자살

Chart CO4.4.B. Teenage suicides, 1990[a], 2000[b] and 2015[c] or latest available year
Suicides by people aged 15-19 per 100,000 people aged 15-19



출처: WHO Mortality Database; OECD(2023). Chart Teenage suicides, 1990, 2000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에서 재인용

120)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https://apps.who.int/gho/data/node.main.MHSUICIDE1519?lang=en

라. 사회참여 지표 요약

CO4.1 지표는 청소년·청년(15~29세)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에 관한 지표이다. 한국 청소년·청년의 사회참여는 각 영역별로 상이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 청소년·청년은 종교단체, 스포츠 단체, 예술 단체 참여는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이었으며, 자원봉사 참여 역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CO4.2 지표는 청소년·청년(15~29세)의 생애 첫 투표 참여에 관한 지표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 청년들은 OECD 평균이나 EU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편이었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청소년(18~24세)의 투표율은 성인 집단(25~50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CO4.4 지표는 십대 자살에 관한 지표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중위권의 10대 자살률 순위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어 최신 자료로 현황화하여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한국 청소년·청년(15~29세)의 사회참여는 활동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OECD 국가들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거나 낮은 영역이 혼재되어 있었다. 다만 아직 충분히 높은 수준을 달성한 영역은 없었으므로 청소년·청년의 사회, 경제, 문화적 참여 기회의 증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제3절 소결

아동성과 지표들은 아동건강, 아동빈곤, 교육·문해력, 사회 참여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들이다. 2년차에 걸쳐 지표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아동건강 영역의 건강수명, 과체중 및 비만, 성별 정기 흡연자,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 교육·문해력 영역의 청년 니트 지표가 누락 및 개선 필요 지표로 판단되었으며, 이 외 모든 지표들은 적절하게 산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성과 영역의 지표가 OECD Child Well-Being Dashboard(CWD)와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CWBDP)로 개편되면서 아동성과 영역의 많은 지표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지표의 시의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OECD 아동웰빙 DB에 남아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 성별 정기 흡연자,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 청년 니트 지표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은 현재 CWBDP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각 및 청각 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로 산출해 보았다.

아동건강 영역의 11세, 13세, 15세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율과 흡연율은 HBSC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되는 국내의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해 보았다. 과체중 및 비만율, 흡연율 산출 결과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선 한국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특히 11세와 13세에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들과 유사하게 해당 연령 구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체중 및 비만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1세, 13세, 15세 아동의 흡연율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들과 유사하게 해당 연령 구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흡연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 및 청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을 살펴보면, 우선 청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은 17.8%로 보고되어 OECD 평균 대비 낮은 편이었고, 시각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은 12.7%로 OECD 평균 대비 다소 높은 편이었다.

교육·문해력 영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비율은 16.2%로 나타나 OECD 국가 평균 니트 비율, 12.7%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동일 자료에 기반하여 산출한 연령대별 니트 비율은 15~19세 4.3%, 20~24세, 19.4% 25세~29세, 21.1%로 산출되어, 15~19세는 OECD 평균보다 낮고, 20~24세는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연령대별 청년 니트 비율에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약하자면 아동성과 영역에서 한국의 아동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율은 높으나, 흡연율은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나타나는 특성은 OECD 국가들과 유사했다. 또한, 청각 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편인 반면, 시각 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은 OECD 평균 대비 다소 높았다. 청년 니트 비율은 전체 평균이 OECD 국가 평균 니트 비율보다 높은 가운데, 15~19세는 OECD 평균보다 낮고, 20~24세는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아 연령대별 편차가 크고,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즉 한국은 아동성과 영역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일관된 특성을 보이기 보다 지표별로 OECD 국가들보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07

요약 및 생산필요 지표와 관리방안 제안

제1절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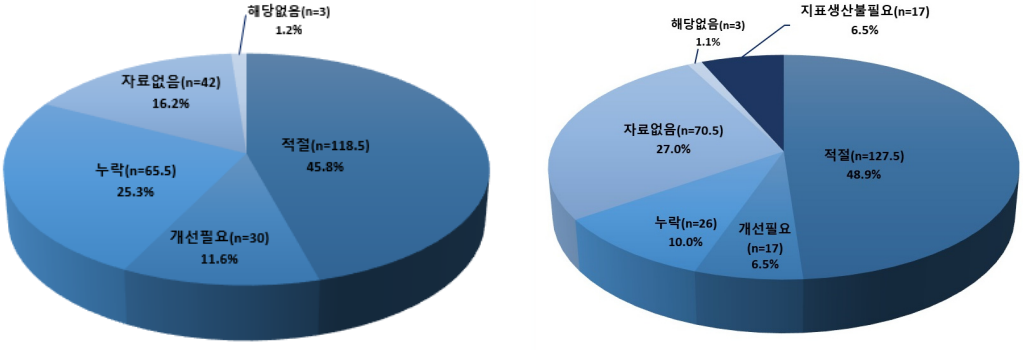
1. 한국 지표 검토 결과 요약

본 연구결과, 1차연도[121]에서 판정한 결과가 2차연도에 일부 변경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적절' 지표와 '자료없음' 지표가 증가하였고, '개선필요' 지표와 '누락' 지표는 일부 감소하였으며, 지표의 생산필요성을 검토한 '지표생산 불필요' 지표가 새로 생성되었다. 지표 분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지표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로 생산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상당수의 지표가 '자료없음'으로 재분류되었다. 또한 '아동성과(CO)' 지표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따라 기존 지표의 상당수가 삭제되어 '지표생산 불필요'로 재분류되었다. 그 외에 일부 자료는 한국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적절'로 재분류되기도 하였다.

최종분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절' 지표는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한 '개선필요'와 '누락' 지표가 약 16.5%로 전체적으로 약 65.3%의 지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 외에 한국이 해당사항이 없거나('해당없음') 현재 시점에서 생산이 불필요한 지표('지표생산불필요')까지 합하면 약 73.0% 수준으로 '자료없음' 지표 약 27.0% 지표만 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영역별 변화와 한국의 지표 해석은 아래에 서술된다.

12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연도 결과 중 '가족·아동정책 총괄(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영역의 지표 하나가 '개선필요' 지표로 오류집계되었다. 해당 지표는 '적절'과 '누락'이 결합된 지표로 재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김은지 외(2023)의 집계와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림 7-1] 1차연도와 2차연도 결과 비교



1차연도 결과 2차연도 결과

가. 가족구조 지표

'가족구조' 지표 중에서 일부 지표는 외부에 전체 변수가 공개되지 않거나 조사구조상 국제비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기존과 검토결과가 변경되었다. 예컨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구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는 부모의 학력 변수가 제공되지 않아 부모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아동의 거주 형태 지표는 구축할 수 없었다. 또한 무자녀 관련 지표들은 인구총조사의 표본조사를 활용하는데, 조사 구조상 기혼여성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비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거율과 파트너십 지표들도 인구총조사의 표본조사를 활용하는데, 이 조사는 가구원들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아 제도혼이나 친족관계가 아닌 가구원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아 지표생산의 의미가 불명확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자료없음'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가족구조'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2020년~2022년 한국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구원 수(가구규모)나 1인가구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이지만, 내부 구성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미성년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이 낮고, 특히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아 미성년 아동가구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성년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는 양부모가족의 비율이 높고 한부모가족과 기타 유형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OECD 국가들의 지난 15년동안의 경향을 확인해보면 미성년 아동이 있는 가구 중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유지되는 가운데 양부모가족 중 제도혼 가족은 감소하고 동거 가족은 증가하게 되는데, 한국은 한부모가족의 비율도 높지 않아 아동을 키우는 가족유형이 여전히 규범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 인구추이를 확인해보면, 아동인구 비율이 낮고 특히 5세 미만 아동 비율이 매우 낮으며, 유소년부양비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향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동가구의 주거여건을 살펴보면, 과밀도나 기초생활시설 미달 등의 문제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후 아동빈곤지표와 연결해 검토해 볼 때, 평균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는 빈곤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된다.[122)]

출산율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가장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는 나라이다. 특히 한국은 실현된 출산의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갖고자 하는 자녀 수도 적다. 한국의 이러한 초저출산 수준은 최근 20년 사이에 심화된 결과이다. 연령별 출산율 프로필을 확인해 보면, 지난 30년간 OECD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지만 30년 전의 30대 초반 출산율과 최근의 가장 피크점인 30대 초반 출산율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출산율의 급락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특징과 함께, 한국은 가족다양성 측면에서의 출산율 지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혼인 외 출생 비율 지표는 한국의 출산 관련 지표에서 가장 특징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한국은 혼인 외 출생 비율이 2%대로 일본과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나며, OECD 평균에 비교할 때 극도로 낮은 수치이다. 이 지표에 대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970년에 약 7% 대에서 2020년에는 약 41.9%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는 아직도 가족에 대한 경직적인 규범과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청소년출산율 지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관리하는 지표(SDG 3.7.2)로서, 한국의 청소년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은 역설적으로 긍정적 지표이다.

한편 혼인율, 초혼 연령, 이혼율 등의 지표에서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다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과 출산 연령에서 극단적인 지표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결혼 행태에서의 특이성보다는 출산 행태의 특이성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의 이혼 분포는 OECD 국가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OECD 국가들에 비해 혼인기간이 아주 짧거나 아주 길고, 자녀가 없는(자녀를 낳지 않았거나 이미 가구를 떠난) 집단에 이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가족규범의 경직성과 물리적 어려움 등으로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야 이혼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가구 중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낮은 것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OECD 국가들보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보고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들이 느끼는 파트너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보고된 가정폭력 비율에 대한 해석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

122) 단, 가구유형별로 빈곤율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성과 지표 쪽에서 다룬다.

〈표 7-1〉 가족과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2015	O	개선필요: 인구주택 총조사, 자녀 연령 25세 이하로 수정	
		가구 유형(Types of household), 2011	O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2015	X	누락: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	
SF1.2	가족에서의 아동 (Children in Families)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8)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아동의 거주 형태 변화(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05 to 2018)	X		지표생산불필요: 과거시점 부재하며 불필요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2007 and 2018)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동거변수 생성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X	누락: 가계금융복지조사 활용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소득변수 생성 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연령자료 공개 필요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학력변수 생성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2013-14)	X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Child and young adult population, 2015)	O	적절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분포(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5)	O	적절	
		아동 인구 추이(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selected OECD countries)	O	적절	
		유소년 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1990 and 2015)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측정된/예측된 유소년 부양비 (Estimated(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selected OECD countries)	O	적절	
SF1.5	아동의 주거 여건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과밀거주 아동(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2017)	X	누락: 주거실태조사 활용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2017)	X		
		환경 문제 있는 지역 거주 아동(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2017)	X		지표생산불필요: 오염, 오물, 기타 환경문제가 한국 상황과 맞지 않음

〈표 7-2〉 출산력 지표(Fertility indicators)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SF2.1	출산율 (Fertility rates)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O	적절	
		코호트완결출산율 (Completed cohort fertility for women born in 1950, 1960 and 1970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통계청 연령별 출산율 활용	※ 합계출산율 공표시 공표 필요, Human Fertility Database 제출 필요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첫째아, 셋째아 또는 그 이상 출생 비율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80 and 2020 –Proportion of births that are first and third or higher births)	X	누락: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활용	적절: 최근 자료 업데이트
		출산순위별 출생 분포 출생순위별 출생 비율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2020 –Proportion of birth by the rank of the birth)	X	누락: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활용	적절: 최근 자료 업데이트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X	자료없음: 가족과 출산 조사, 연령 확대(19~49 → 15~64) 및 개인적 이상자녀수 문항 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Ideal general number of children, 2011)	X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최종적인 가족 규모 (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11)	X	누락: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활용	누락: 가족과 출산 조사 활용 또는 인구총조사에 미혼여성에게도 실제자녀수, 출산의향 문항 포함
		교육정도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level of education, 2011)	X	자료없음: 가족과 출산 조사, 연령 확대(19~49 → 15~64) 및 개인적 이상자녀수 문항 추가	
		취업여부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working status, 2011)	X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사이 격차 (Differences between general and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X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women at birth, 197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2000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women at first birth,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OECD 국가의 출산시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율 (Average OECD fertility rate by mother's age at childbirth)	O	적절	
		청소년 출산율 (Adolescent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 (Age-fertility profiles, 1970, 1995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혼인 외 출생 비율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	적절	
		혼인 외 출생 비율 추이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ver time)	O	적절: 1995년, 2020년 자료없음: 1970년	
SF2.5	무자녀 (Childlessness)	40-44세 무자녀 여성 (Childless women at age 40-44,	O	개선필요: 인구주택총조사, 미혼과	자료없음: 인구총조사에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mid-1990s and 2010(or latest available year))		기혼의 구분 없이 해당 연령 여성의 무자녀 비율 산출	미혼여성에도 실제자녀수 문항 포함
		최종 무자녀 (Definitive childlessness)	X	누락: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 단 기혼에 한정	
		최종 무자녀와 완결 출산율 (Definitive childlessness and completed fertility rates)	X	누락: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 단 기혼에 한정	

〈표 7-3〉 혼인 및 파트너십 상태(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SF3.1	혼인율과 이혼율 (Marriage and divorce rates)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성별 초혼 당시 평균 연령(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1990, 2000,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동성혼에 대한 기초 현황(Basic statistics on same-sex marriages in OECD countries)	X	해당없음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 1970, 1995, 2019 and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이전 혼인상태별 분포(Distribution of marrying persons by previous marital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인구동향조사 활용	적절: 최근 자료 업데이트
SF3.2	가족 해체와 아동(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혼인 기간별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duration of the marriage, 2017 or latest)	O	적절	
		자녀 수에 따른 이혼 분포(Distribution of divorce by number of children involved, 2017 or latest)	O	적절	
		별거 및 이혼한 부모와 비부모의 비중 (Proportion of parents and non-parents (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별거 및 이혼한 부모의 비중(Proportion of parents(16+ year-olds) that are separated or divorced, various years)	O	적절	
SF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X	자료없음 (동거, 파트너 없음): 인구주택 총조사에 동거 문항 포함 필요 ('기혼'은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제시 가능)	자료없음: 인구주택총조사에 법률혼, 사실혼, 동거 문항 포함 필요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2011)	X	자료없음 (동거, 파트너 없음): 인구주택 총조사에 동거 문항 포함 필요 ('기혼'은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제시 가능)	자료없음: 인구주택총조사에 법률혼, 사실혼, 동거 문항 포함 필요
		부부(커플) 가구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유무 (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2011)	X	자료없음 (동거, 파트너 없음): 인구주택 총조사에 동거 문항 포함 필요 ('기혼'은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제시 가능)	자료없음: 인구주택총조사에 법률혼, 사실혼, 동거 문항 포함 필요
SF3.4	가정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X	누락: 가정폭력실태조사 활용	누락: 여성폭력실태조사 활용
		파트너 폭력에 대한 여성의 태도(Attitudes among women towards partner violence)	O	적절	

나.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 중에서도 일부 기본적인 변수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기존 검토결과가 변경되었다. 특히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고용률 지표를 산출하도록 한 대부분의 지표가 '자료없음'으로 변경되었는데, 실제 실험적 산출 결과 아동

가구통계등록부의 취업 변수가 1주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1주일 기준의 값보다 상당히 과대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의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LMF1.1), 모성고용률(LMF1.2), 유자녀 부부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LMF2.2, LMF2.3) 영역의 누락 또는 개선필요 지표 전체가 '자료없음'으로 변경되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과 관련된 지표, 부모의 학력문항이 필요한 지표는 관련 문항이 부재하거나 지역별 고용조사의 가구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직접 산출이 불가능하여 '자료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부 변수는 '지표생산 불필요'로 재분류되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 지표는 유연근로제도의 정의와 분류가 OECD 기준과 한국이 상이하며, 한국에서 주로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유연근로제도의 종류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OECD 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표생산 불필요'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지표 전체는 OECD Family data에서 삭제되어 '지표생산 불필요'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OECD 국가들 중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이 M자 곡선을 보이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한국 여성들의 연령별 고용률을 학력별로 나누어보면 M자 곡선의 생애 전반부는 고학력 여성들이, 생애 후반부는 저학력 여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의 성별 격차 또한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으로, 학력별로 나누어보면 OECD 국가들은 고학력일수록 고용률 성별 격차가 작아지지만 한국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낮고 반대로 임시 고용에서 여성의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특히 최근 15년간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서 시간제 고용이 가장 큰 비중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열악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성고용이 확대된 것이 확인된다.

한편 유연근무 환경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근무시간 재량이나 재택근무 빈도 등 근로환경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유연근무 재량권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남유럽 국가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인데 한국은 남유럽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간활용에서 한국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시간 분배에서 성별차이가 큰 가운데, 무급노동 시간은 여성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다소 짧은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서 아동이 초등연령대가 되면 여성의 돌봄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비해 한국은 초등연령대 아동이 있어도 상당한 돌봄시간이 투입되는 경향도 발견된다. 한편 한국은 통근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인데, 통근 시간이 전체적으로 길지만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여성의 통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자녀돌봄이 여성의 노동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7-4〉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단 근로시간 변수 부재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1주일 기준 취업여부 변수 생성 또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 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모든 성인이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 (Children in jobless households, 2008, 2013 and 2018)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 등록부에 성인가구원 전체 취업상태 필요	
		부부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 (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단 근로시간 변수 부재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 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 (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단 근로시간 변수 부재 또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활용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 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또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주당 근로시간 문항 포함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개선필요: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1주일 기준 취업여부 변수 생성 또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의 모 (15~64세) 기준으로 집계 필요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19)	X	자료없음: 최신 자료만 지역별 고용조사로 파악, 단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필요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1주일 기준 취업여부 변수 생성 또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0~14세 아동의 모 (15~64세) 기준으로 집계 필요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개선필요: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1주일 기준 취업여부 변수 생성 또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0~2세, 3~5세, 6~14세 아동의 모 (15~64세) 기준으로 집계 필요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1주일 기준 취업여부 변수 생성 또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의 모 (15~64세) 기준으로 집계 필요
		학력별 모의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연령 및 자녀 연령 수정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학력 자료 공개 또는 집계 필요 (중졸이하/고졸이하/전문대졸 이상)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 (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 또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모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보 필요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1주일 기준 취업여부 변수 생성 또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의 모 (15~64세) 기준으로 집계 필요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 (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19 or latest available)	X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 (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또는 한부모가족실태 조사 활용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학력 자료 공개 또는 집계 필요 (중졸이하/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 (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아동가구통계 등록부 활용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1주일 기준 취업여부 변수 생성 또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의 모 (15~64세) 기준으로 집계 필요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성별 연령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8)	O	적절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and education, 2018)	X	누락: 경활조사 혹은 지역별고용조사 활용	※ 지역별 고용조사 공표 필요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O	적절	
		전일제 취업자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 추이 (Trends in the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selected countries, 1975-2021)	X	해당없음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Gender gap in earnings by levels of education)	O	적절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고용률의 성별 격차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O	적절	
		고용률 및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성별 차이 감소 추이(Declining trends on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O	적절	
		시간제 고용에서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시간제 고용의 변화(Change in part-time employment)	O	적절	
		학력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O	적절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중(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O	적절	
		임시 고용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emporary employment)	O	적절	

〈표 7-5〉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성별 비중 (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21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취업자 중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변화 (Percentage point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d working 40 hours or more, by gender, 2005 to 2021)	O	적절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9 or nearest year available)	X	누락: 지역별 고용조사 활용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 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 (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0 to 2019)	X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2세, 3~5세, 6~14세 아동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2019)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 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2세, 3~5세, 6~14세 아동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 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X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지역별 고용조사 혹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활용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을 둔 한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또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주당 근로시간 문항 포함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	X		
LMF2.4	가족친화제도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보급률(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3)	X	누락: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활용	지표생산불필요: 유연근무제 종류가 한국 상황과 맞지 않음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X	누락: 근로환경조사 활용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X		
		재택근무 근로자(Employees working from home, 2015)	X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성별 주된 활동의 시간 배분(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12 /2013)	O	적절	
		돌봄시간(Time dedicated to care activities, 1999–2010)	O	적절	
		자녀 수별 돌봄시간 비율(Percentage of time dedicated to care work, by number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1999–2010)	O	적절	
		막내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돌봄시간 비율 (Percentage of time spent on care work by women, by age of youngest child, 1999–2010)	O	적절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통근 시간(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999–2014)	O	적절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	O	적절	
		성별 자녀 존재 여부별 통근 시간에 대해 보고한 비율(Proportion of survey respondents reporting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 – 2010)	O	적절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aged 15 and ov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지표생산불필요: 최근 자료에 지표 삭제
		아동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aged 11 to 15, 2010)	X	누락: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성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gend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고용 지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2012)	X	누락: 사회통합실태조사	
		일생활균형 만족도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by satisfaction in work-life balance, 2012)	X	누락:사회조사	

다.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

'가족·아동정책 총괄' 지표 및 '자녀관련 휴가' 지표는 1차연도 검토결과에 비해 2차연도에 큰 변경이 없었다. OECD가 직접 생산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족지출관련 급여는 현재 구조에서 변경산출이 불가능하여 '적절'로 수정하고 현재 지표를 해석하였다. 그 외에 급여수준에 관련된 지표들을 OECD Tax-ben 자료를 활용해 실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보고, 일부는 개선하고 일부는 '적절'로 수정하여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관련 지표들은 너무 오래된 지표들로 한국 자료를 그 시점에 맞추어 해석하는 의미가 없어 '지표생산불필요' 지표들로 처리하였다. 그 외 휴가 관련 지표들은 1차연도와 검토결과상의 변화가 없어, 원래의 가이드 그대로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가족·아동정책 총괄'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공적 가족급여 지출은 총계와 현금급여에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현물급여는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국은 현금급여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인데, 특히 미취학 아동에게 현금급여가 집중되어 취학 연령대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교육비 재정지출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이나, 1인당 공교육비 지출로 환산할 경우 고등교육단계의 지출이 OECD 국가들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령대별로 사회지출을 집계했을 때, 미취학 연령대의 아동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지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학 연령대의 아동은 대부분 교육비 지출로만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OECD 국가들이 미성년 아동 전체에 상당한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현금급여 제도도 지급연령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편적 수당의 하나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선지급제도가 많은 국가들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한국도 이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령집단별 순 이전비율을 확인해 보면, 한국은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이 낮고 근로연령층의 자녀 및 부모에 대한 사적이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가족급여수준과 시장화된 사회서비스가 넓게 분포된 결과로 해석된다.

성년연령에 대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은 19세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18세로 정의하고 있는 것보다 높게 정의하고 있다. 주류소비 및 구매 최소연령도 이와 동일하다. 단 형사책임연령은 14세,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은 13세로 OECD 국가들보다 1~3세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은 아동에게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모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아동체벌에 대한 부분적 법률 규제도 있는 국가로서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었으나 법적 체벌금지는 학교 내에서만 유효하다. 또한 상해로 인한 아동 사망률 지표는 특히 의도적 상해로 인한 사망률 지표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우발적 상해로 인한 사망률은 중간 수준

으로 나타난다.

‘자녀관련 휴가’ 지표들을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한국은 자녀 관련 유급휴가의 기간이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실제 이용자 수가 적어서 공적 지출수준은 매우 낮았다. 한국은 유급휴가기간은 남녀 합산할 때 OECD 국가들 중 네 번째로 길고 남성에게 할당된 기간은 가장 길지만, 반대로 실제 공적 지출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제도적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 관련 휴가제도를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로 분리해서 확인해보면, 출생아 수 100명당 출산휴가 이용자 수는 OECD 국가중 두 번째로 낮고,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 육아휴직 이용자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공무원, 교직원 이용자를 포괄하고 있는데, 남녀 모두 출생아 수 1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커버리지가 매우 낮은 문제와 함께, 남성의 이용자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가 확인된다. 각 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확인해 보면, 출산휴가의 소득대체율은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중상위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육아휴직제도의 소득대체율은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휴가와 남성에게 할당된 휴가 모두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대체율 지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정책 현황을 반영하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나, 상한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중상위 소득자의 충분한 소득대체율 보장에는 다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정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확인해 보면, 한국은 법정 연차휴가는 짧고 공휴일이 길어, 총 휴가기간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된 별도의 휴가일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감되는 휴가일은 한국보다 훨씬 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가족돌봄휴가(휴직)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급여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무급으로 운영되어 활용도가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도 혈연관계적 가족개념에 머무르고 있어 다양한 관계에 대한 포괄성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하여 자녀 관련 휴가 자격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지표들이다. 한국의 경우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국가로 좁은 범위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한다. 제시된 지표들 중에서 한국의 제도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입양부모에 한정된다.

〈표 7-6〉 가족·아동정책 총괄(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가족급여 유형별 공적 지출 총계(total)	O	개선필요: OECD SOCX,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장려금 등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되는 등 분류체계 검토필요	적절: OECD 분류 원칙에 따름
		현금급여(cash)	O		
		현물급여(services)	O		
		조세지출(tax breaks for families)	O		
PF1.2	공교육 지출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교육단계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s)	O	적절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Annual expenditure per student by educational institutions)	O	적절	
PF1.3	가족 현금급여 (Family cash benefits)	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 2018)	O	개선필요: OECD Tax-benefit system, 가족급여 제도유형 분류 재검토 필요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수준 (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 and earnings, 2018)	O	적절	개선필요: 한부모 급여액 오류
		막내 자녀 연령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8)	O	개선필요: OECD Tax-benefit system, 가정양육수당 관련 급여액 처리 검토필요	
		자녀수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2018)	O		
PF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가구 유형별 조세-급여혜택의 형평성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for couples at different household earnings levels, 2014)	O	개선필요: OECD Tax-benefit system, 가정양육수당 관련 급여액 처리 검토필요	적절: OECD 분류 원칙에 따름
		2차소득자세율(Participation tax rates for second earner parents entering employment at varying gross earnings levels, 2014)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체계 (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자녀양육비제도 주요 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Regimes)	O	개선필요: 2015년 이후 자녀양육비 결정 기관 (양육비이행 관리원) 존재하므로 Agency값을 Yes로 변경 필요 *보고자료는 2010년 기준임. 당시는 양육비 이행원이 없었음.	
		한부모가족 추이,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추이(Trends of Sole-parents1 and of Sole-Parents Receiving Child Maintenance Payments in recent years)	X	누락: 인구주택 총조사(2015년 이후 가능) 및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2년 이후 가능)로 추출 가능	지표생산불필요: 과거시점 부재하며 불필요
		자녀양육비 수준(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	X	누락: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로 추출 가능 (2012년 이후 가능)	지표생산불필요: 과거시점 부재하며 불필요
PF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연령집단별 공적 사회지출의 규모(연령구간별, 급여유형별 시계열 자료)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03 to 2019)	O	적절: 산전9개월부터 ~29세까지 자료 보고, 현금, 보육, 기타현물급여, 교육으로 나누어 제출. 아동연령은 0-17세 까지 계산. 가족급여 유형의 구체적 분류기준은 추후검토필요	
		연령구간별 공적 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2019)	O		
		0-5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 사회지출 (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0-5, 2019)	O		
		6-11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사회지출 (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6-11, 2019)	O		
		12-17세 가족급여유형별 공적지출 (Spending in USD PPP on children aged 12-17, 2019)	O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PF1.7	세대간 연대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 (Age profile of net transfers)	X	누락: OECD 자료원인 NTS웹사이트에 자료있음	※ 통계청 공표시 연령계층을 0-19세, 20-64세, 65+으로 구분 (현재 0~14세, 15~64세, 65+)
		50+인구의 현금이전 및 시간이전 (A. Transfers of money,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B. Transfers of time,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X	자료없음: OECD는 SHARE(2006-2007)조사 값을 보고,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KLoSA)에 유사문항이 있으나 패널자료라는 한계가 있음. 노인실태조사 등에 신규문항을 통한 생산방안	
		손자녀 돌봄자 비율(Percentage of grandparents taking care of at least one grandchild)	X		
PF1.8	법적 성년 연령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성년연령(Age of majority, 2016)	O	적절	
		형사책임연령(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016)	O	적절	
		최소혼인연령(Minimum age for marriage, 2016)	O	적절	
		의무교육종료 및 최소근로연령(School leaving age and Employment age, 2016)	O	적절	
		알콜구매및소비 최소연령(Minimum age to consume and purchase alcohol, 2016)	O	적절	
		성행위 동의 최소연령(Minimum age for sexual consent, 2016)	O	적절: 기준년도 2016년, 추후 2020년 형법개정사항 반영필요	
PF1.9	아동보호 특성 (Aspects of child protection)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율 (Child mortality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O	적절	
		의도적, 우발적 사고 아동 사망율 추이 (Changes in child deaths due to intentional, accidental injury, early 1980s to latest figures)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실태 (Attitudes towards and prevalence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X	누락: '태도'는 아동종합실태조사 기반 보고 가능 ('실태'는 적절)	
		아동체벌규제(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X	누락: 2021년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공식화	
		보호아동비율(Proportion of children under state care)	X	누락: 보호유형별 행정통계 기반 보고 가능	

〈표 7-7〉 자녀관련 휴가(Child-related leave)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PF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O	적절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요약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	O	적절	
		자녀관련 유급휴가 할당 및 공유기간 (Reserved and shareable paid family leave entitlements, 2022)	O	적절	
		자녀관련휴가 공적 지출규모 (Public expenditure on maternity and parental leaves)	O	적절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 (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유급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 (Users of paid maternity leave)	O	적절: 고용보험 DB, 공무원 교직원 포함 검토필요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수 (Users of paid paternity leave)	X	누락: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2019년부터 값 있음	
		유급 육아휴직 이용자수 (Users of paid parental leave)	O	적절: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로 시계열 모두 교체됨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중 추이 (Trends in men's share of recipients/users of publicly administered parental leave/ benefits)	O	적절: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로 시계열 모두 교체됨	
		성별 자녀관련휴가 이용기간(Duration of paid leave for men and women)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출산휴가 정보 등 포함하여 생산 검토필요	
PF2.3	취업부모 추가휴가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arents)	법정 및 단협 휴가일수(Statutory and collectively agreed annual leave)	O	개선필요: 근로자의 날 포함	
		가족돌봄휴가(휴직)개요(Summary of leave entitlements to care for sick or ill family members)	O	개선필요: 휴가자격기준 검토필요	
PF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산전후휴가 소득대체율 (Maternity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의 소득대체율(Parental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의 소득대체율 (Father-specific leave payment rates, 2014)	O	적절	
		출산후 첫째달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2014)	O	개선필요: OECD Tax-benefit system, 산전 순가구소득 보고 금액이 불명확함. 근거값 확인필요	
		출산후 시기별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2014)	O		
PF2.5	자녀관련 휴가급여 추이 (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 추이 (Length of paid maternity,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1970, 1995, and 2022)	O	개선필요: 출산휴가기간 주별환산값 검토필요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보장(무급포함) 육아휴직 및 양육휴가기간, 최초도입년도 (Length of job-protecte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paid and unpaid) available to mothers by year of introduction)	O	개선필요: 한국 52주로 보고. 시계열 자료는 출산휴가를 제외한 47.75 주로 불일치함 (1988년 시행당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출산휴가 포함 1년)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급휴가기간 (Length of paid paternity leave and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reserved for fathers, 1970, 1995 and 2022)	O	적절	
PF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남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O	적절: 동성혼 불법 여부도 자료값	
		여성동성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Female same-sex parental leave entitlements)	O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자격 (Adoption leave entitlements)	O	적절	
		대리모 허용(Access to surrogacy)	O	개선필요: 대리모관련 법적 규정 있음	

라. 아동돌봄서비스 지표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지표들은 생산이 가능한 지표와 불가능한 지표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공공지출 관련 지표는 OECD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변수로 현재 상황에서 별도 산출이 불가능하여 현재 수준의 지표를 해석하였다. 그 외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변수는 자료의 업데이트로 현재 적절한 변수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연령별서비스 이용률 자료 및 모의 교육수준별 이용률, 주중 평균 이용시간 등의 경우 보육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개선된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아동돌봄서비스 정책' 지표를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성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기존 통계의 과도함을 조정하더라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이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OECD 국가들에 비해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이용률 격차도 작다. 3-5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한국 또한 OECD 평균 이용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3-5세 이용률의 경우 100%에 가까운 이용률을 보이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어서 아직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육비용에 대한 개별

가구의 지출 수준을 보여주는 총 보육비 지표를 확인하더라도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맞벌이가구나 한부모가구 등 유형별로 확인하더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0~5세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서비스 이용 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인프라 공급이 민간 위주이고, 비용지원체계가 욕구 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재정 투자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시간 노동 문화로 인해 주중 평균 서비스 이용 시간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실수요를 충족하는 보육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안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질을 보여주는 돌봄인력 관련 지표를 확인해보면, 아동 대 교직원 비율, 즉 교직원 1인당 아동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있다(0세 등). 한편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담임과 보조교사의 자격을 차등화하지 않고, 자격요건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적인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 아동돌봄서비스는 서비스의 수요나 공급의 차등화를 최소화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을 최대화하는 대신, 욕구맞춤형 서비스는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높은 보육 지출과 지원수준이 여성고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낮아 출산율 기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아동돌봄서비스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8〉 영유아 공보육·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ducation)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	개선필요: OECD SOCX,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제외	적절: OECD 분류 원칙에 따름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	O	개선필요: OECD SOCX,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제외	적절: OECD 분류 원칙에 따름
PF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O	개선필요: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0~2세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income, 0- to 2-year-olds)	X	자료없음: 전국보육실태조사 세후소득 필요	
		0~2세 모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X	누락: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 (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X	누락: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3~5세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O	개선필요: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3~5세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	O	개선필요: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PF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X	자료없음: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통계 승인 및 보완을 통한 생산	
		아동 연령과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X		
		아동 연령과 모의 교육수준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mother's education level)	X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 (Average hours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X		
PF3.4	보육료 지원 (Childcare support)	총 보육비(Gross childcare fees)	O	적절	
		맞벌이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two-earner couple family)	O	적절	
		한부모 가구의 순 보육비(Out-of-pocket childcare costs for a single-parent family)	O	적절	

〈표 7-9〉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PF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O	개선필요: 어린이집 범위 5세 추가, 학원 제외	적절: 최근 자료 업데이트
PF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유치원(3~5세)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 (Child-to-staff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2018)	O	적절	
		영아보육(0~2세)의 아동 대 교직원 비율(2018년)(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 2018)	O	적절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최소 자격 (Minimum qualifications for ECEC professionals)	O	적절	
PF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Out-of-school-hours care)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 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during a usual week)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모의 교육수준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mother's education level)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마. 아동성과 지표

'아동성과' 지표 영역은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한 영역이다. 해당 영역의 데이터셋이 별도로 구축되면서, 기존의 지표들은 상당부분 이전, 삭제되어 추가 생산의 필요성이 모호해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이 '적절'하게 구축된 지표들은 한국 맥락을 그대로 해석하고, 새로 구축해야 하는 지표 중에서는 향후 생산가능성이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재구축하였다.

수집된 '아동성과' 영역 지표들을 통해 한국 상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출생 비율, 예방접종률 및 백일해·홍역 등 발생률, 소아당뇨 유병률, 청소년 흡연율 지표 등을 확인해 볼 때 한국의 아동보건 관련 지표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청소년 과체중 비율, 청소년 시각장애 출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높아 이에 대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빈곤율 지표를 확인해 보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아동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나 아동양육 가구를 가구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한부모가구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아 가구 유형에 따른 빈곤율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확인된다. 이는 앞서 가족구조 관련 지표와 함께 해석해 볼 때 가족제도의 다양성이 규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한국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원 접근성은 높은편이며 자원접근성 내의 불평등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나쁘지 않은 지표를 보인다. 후기 중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남성이 다소 높기는 하나 성별차이도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교육수준과 이주배경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위취득 전공에 있어서는 예술·인문은 여성비율이, 공학·제조는 남성비율이 높아 성별 분리가 분명하게 발생하며, 그 경향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한국이 더 분리도가 높다. 과목별 성취도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성취도가 높고 특히 수학과 과학의 성취도가 높은데, 읽기 성취도는 여성이 높고 수학·과학은 남성이 다소 높은 경향은 OECD 국가들과 유사하였다. 읽기 성취도는 부모의 학력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대표 지표로 한국도 OECD 국가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청년니트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다소 높았으며, 특히 20대 초반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OECD 국가들과 달리 남성 니트비율이 다소 높았는데, 취업·진학준비와 군입대준비 상태인 경우가 여성보다 많았다. 이 지표는 비형식교육과 취업준비생이 많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한국의 공식 수치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해석시에도 주의가 필요한 지표이다.

이주배경 학생 정보는 전반적으로 누락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 중 비율만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청년의 사회참여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청소년·청년들은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높지만 노동조합 참여율은 소극적이며, 투표참여율도 낮은 편이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OECD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일반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청년의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10대 자살률 지표는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0〉 아동건강(Child Health)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CO1.1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Infant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 rates,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아사망률 추이 (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18)	X	자료없음: 모든 국가 수치, 한국은 일부 연도 누락으로 포함불가	
		1970년, 1990년, 2018년(혹은 가장 최근)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 1970, 1990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CO1.2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1960년과 2020년 사이 성별 기대수명의 추이(Trend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20)	O	적절	
		2020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성별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2020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시점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and Healthy Life Years(HLY) at birth,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건강수명', 인구주택총조사 또는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산출 가능 ('기대수명'은 적절)	지표생산불필요
CO1.3	저체중 출생 (Low birth weight)	2018년 또는 최신 저체중아 출생 비율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0년부터 2018년 혹은 가장 최근 년도까지의 저체중 출생아 비율 변화 (Changes in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90 to 2018 or latest available)	O	적절 (1990~1992 자료없음)	
CO1.4	백신 접종률 (Vaccination rates)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 및 백일해 발병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률(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the incidence of pertussis, 2018 or closest available)	O	적절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2018년 또는 가장 최근 시점의 홍역 예방 접종률 및 홍역 발병률(Vaccination rates for measles and the incidence of measles, 2018 or closest available)	O	적절	
CO1.5	모유 수유율 (Breastfeeding rates)	2005년경 모유를 먹은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around 2005)	X	자료없음 단, 2000년 수치 활용가능	
		2005년경, 생후 3, 4, 6개월에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동의 비율 (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xclusively breastfed at 3, 4 and 6 months, around 2005)	O	적절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2017년 소아의 제1형 당뇨병 추정 유병률 (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O	적절 (향후 국민건강영양조사 당뇨 문항 중단, 문항 복구 또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2002년 또는 그 전후의 6-7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6-7, 2002 or around)	O	개선필요: 서울→전국 수치로 수정, 국민건강영양조사 또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지표생산불필요
		2002년 13-14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 (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13-14, 2002)	O	개선필요: 서울→전국 수치로 수정, 국민건강영양조사 또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지표생산불필요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누락: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산출 가능(단 11세 산출 불가)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2013/14 (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없음: HBSC 비참여 국가로 풍요도 자료없음,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문항 추가 필요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2013/14년 누락된 BMI 자료 비율 (Rates of missing BMI data, 2013/14)	X	누락: 청소년건강행태 조사로 산출 가능	지표생산불필요
CO1.8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누락: 청소년건강행태 조사로 산출 가능 (단 11세 산출 불가)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없음: HBSC 비참여 국가로 풍요도 자료없음,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 문항 추가 필요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성별·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 (National estimates o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a disability by age and sex) → 시각·청각 장애아동·청소년 출현율 (Estimates on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hearing los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blindness or vision impairments)	X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 5-15세 출현율 산출가능	(지표 대체)
		청소년의 성별 장애 정도(Young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isability than young men)	X	누락: 사회조사 자료 활용 산출가능	지표생산불필요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 (Educational attainment of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X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활용 산출가능	지표생산불필요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 (Percentage of employed and unemployed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X	자료없음: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변수 추가 필요	
		장애가구원 유무에 따른 아동가구의 빈곤율 (Poverty rat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by disability status, 2009)	X	자료없음: 가계금융복지조사 변수 보완 필요	
		만성질환·장애가 있는 아동 대상 가족현금급여(Family Cash Benefits for Children with a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	O	적절	

〈표 7-11〉 아동빈곤(Child Poverty)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CO2.1	가구 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on disposable income, 2015 or latestavailable year)	O	적절	
		소득 불평등 측정(Measure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4 and 2015 or nearest available year)	O	적절	
		가구 유형에 따른 상대가처분소득(Relative disposable income by household type,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X	누락: 가계금융복지조사 활용 산출 가능	지표생산불필요
CO2.2	아동빈곤 (Child poverty)	아동의 상대빈곤률(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아동의 상대빈곤율 추이(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rates, 2008, 2013,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가구 유형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type,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고용상태별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X	자료없음: 자료원 개선 및 보고 필요성 별도 검토 필요	
		교육자원 접근성의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	적절	
		가정 내 가재도구·생활편의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household goods and amenities, 2013)	X	자료없음: 자료원 개선 및 보고 필요성 별도 검토 필요	
		교육자원 접근성의 불평등(Inequality i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2012)	O	적절	

〈표 7-12〉 교육·문해력(Education/Literacy)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CO3.1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 (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성별과 연령에 따른 후기중등교육 이수율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O	적절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율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O	적절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 (Educational attainment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by parents, 2012 or 2015)	O	적절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자녀의 교육이수정도 (Educational attainment by parents' migrant status, 2012 or 2015)	O	적절	
CO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성별에 따른 예술·인문계열 학위 취득 비율 (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arts and humanities subjects, 2019)	O	적절	
		성별에 따른 경영·행정·법학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2019)	O	적절	
		성별에 따른 공학·제조·건설 계열 학위 취득 비율(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2019)	O	적절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TIMSS2011))	O	적절: 수학, 과학 성취도 ('읽기 성취도'는 자료없음, PIRLS 비참여 국가)	
		성별에 따른 읽기, 과학, 수학 성취도 차이 (Gender differences (boys-girls) in student's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TIMSS2011))	O	적절: 수학, 과학 성취도 ('읽기 성취도'는 자료없음, PIRLS 비참여 국가)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가정 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cores on reading achievement relative to Home Resources for Learning, PIRLS 2011)	X	자료없음: 읽기 성취도, PIRLS 비참여 국가	
CO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O	적절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O	적절	
		성별에 따른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차이 추이(Changes in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O	적절	
		부모 최종학력에 따른 학생의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2018)	O	적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 읽기 성취도 차이(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socio-economic status, 2018)	O	적절	
CO3.5	청년니트(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청년 니트 비율 (NEET rates for 15-29 year-olds)	X	누락: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용 생산 가능	
		연령대별 니트 비율 (NEET rates across age groups)	X	누락: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용 생산 가능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X	누락: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용 생산 가능	
		내국인 및 외국인 니트 비율(Native-born and foreign-born NEET rates)	X	자료없음: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이주배경 포함 필요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이주배경 학생(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2006 and 2015)	O	적절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 (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O	적절: 비이주배경 집단 ('이주배경 집단' 자료없음)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수학 성취도 (Students'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X	자료없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이주배경 문항 추가 또는 연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통제 전·후의 내국인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native students and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ocio-economic background, 2015)	X		
		가정에서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Students who speak another language at home, 2015)	X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통제 전·후의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immigrant and non- immigrant students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spoken at home, 2015)	X		

〈표 7-13〉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사회단체 구성원(활동적 또는 비활동적)인 청소년·청년 비율(Proportion(%) of young people who are members(active or inactive) of organisations by type of group, around 2012)	O	적절	
		지난달 자원봉사를 한 청소년·청년 비율 (Proportion of people who volunteered time to an organization in the past month, 2015 or last year available)	O	적절	
		지난해 자원 봉사 또는 자선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Proportion of people involved in work for voluntary or charitable organisations in the past year)	X	자료없음: 사회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에 문항 추가 고려 가능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지표	한국		
			보고 여부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교회,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적극적·수동적 참여(Active versus passive affiliation to a church,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 trade union, around 2012)	O	적절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 (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의회 선거 투표율(Voter turnout in latest parliamentary election, 2018 or latest year available)	O	적절	
		성·연령별 투표율(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O	적절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Lack of interest in politics, around 2012–2014)	O	적절	
CO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자료없음: HBSC 비참여 국가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등에 문항 추가 필요(대마는 조사 민감성 존재)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2013/14)	X		
		성별·가구 풍요도별 술에 취한 경험 (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없음: HBSC 비참여 국가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등에 풍요도 문하까지 추가 필요(대마는 조사 민감성 존재)	
		성별·가구 풍요도별 대마 사용 경험 (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CO4.4	십대 자살 (Teenage suicides)	평균 10대 자살 경향(Average trends in teenage suicides, 1990–2015)	X	해당없음	
		10대 자살(Teenage suicides, 1990, 2000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O	적절	

제2절 주요 자료별 생산필요 지표 제안 및 지표 관리방안

1. 주요 자료별 생산필요 지표 제안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요 통계자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통계자료는 통계청이 생산하는 통계이며, 일부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 승인 통계이고, 그 외에 OECD에서 다른 경로로 수집하여 직접 생산하는 자료들, 아직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조사들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 통계청 생산 통계자료

우선 통계청이 생산하는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경우 자녀 유무를 기혼에만 한정하지 말고 미혼인 응답자의 자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혼, 사실혼, 동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포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미혼 응답자의 자녀 정보 수집이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항이 반드시 요구되므로 궁극적으로 인구총조사에 해당 문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가족문화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구총조사에 해당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많은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중에는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해당 지표를 생산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단 가족과 출산조사는 49세까지만 다루고 있어 연령범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OECD에 제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분류 시에 미혼 자녀의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자녀 연령을 25세 이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 있는 국제비교지표 생산을 위해 인구총조사의 가구조사 공표 시에 25세 이하 자녀 여부를 기준으로 가구통계를 집계한 항목을 함께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

〈표 7-14〉 인구주택총조사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2015	O	개선필요: 인구주택총조사, 자녀 연령 25세 이하로 수정
		가구 유형(Types of household), 2011	O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 (Households by number of children), 2015	X	누락: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최종적인 가족 규모 (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11)	X	누락: 인구총조사에 미혼여성에게도 실제자녀수, 출산의향 문항 포함
SF2.5	무자녀 (Childlessness)	40-44세 무자녀 여성 (Childless women at age 40-44, mid-1990s and 2010(or latest available year))	O	자료없음: 인구총조사에 미혼여성에게도 실제자녀수 문항 포함
		최종 무자녀 (Definitive childlessness)	X	
		최종 무자녀와 완결 출산율 (Definitive childlessness and completed fertility rates)	X	
SF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X	자료없음: 인구주택총조사에 법률혼, 사실혼, 동거 문항 포함 필요
		교육수준별 파트너십과 동거 (Partnership and cohabitation by level of education, 2011)	X	
		부부(커플) 가구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유무 (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for couple households, 2011)	X	

둘째,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출산율 통계를 공표하고 있는데, 이 때 코호트완결 출산율도 안정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는 산출가능하나 집계·공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집계·공표하도록 하고, 국제 데이터베이스인 Human Fertility Database에도 제출이 필요하다.

〈표 7-15〉 인구동향조사 출산율 통계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SF2.1	출산율 (Fertility rates)	코호트완결출산율 (Completed cohort fertility for women born in 1950, 1960 and 1970 or latest available)	X	누락: 통계청 연령별 출산율 활용 ※ 합계출산율 공표시 공표 필요, Human Fertility Database 제출 필요

셋째,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 상당히 많은 정보가 포함된 행정통계자료로서 향후에도 많은 지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조와 관련해서는 양부모 및 한부모가구 통계를 집계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혼, 사실혼, 동거상태에 대한 변수가 빠져 있으므로 인구총조사가 가졌던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인구총조사의 조사문항에 직접 포함시키기 이전에 행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해당 변수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는 학력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가족구조 지표나 가족의 노동시장지위 지표 모두에서 학력 변수는 중요한 기본변수이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행정통계이므로 단순한 문항추가가 가능하지는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행정통계를 통해 학력변수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지표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 아동가구통계등록부의 취업상황을 취업률 지표로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취업과 관련된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취업변수 지표가 1년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어 이를 취업률로 집계할 경우 상당히 과대추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지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주일 기준의 취업 변수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현재 육아휴직 관련 변수들은 상당히 상세히 포함되어 있는 반면, 출산휴가 관련 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아를 둔 여성의 모성고용률 지표 생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과 관련된 행정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가족통계등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아동 개인 단위로 구축되어 있고 가족배경 변수는 몇 가지 배경변수로 포함되어 있는데, 가구 내 성인 중 취업자 수 등 중요한 배경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구 단위의 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가구

코드를 추가하고 가구내 개인에 대한 변수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제공한다면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7-16〉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SF1.2	가족에서의 아동 (Children in Families)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8)	X	누락: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활용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연령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age)	X	
		유소년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olescents, 2013-14)	X	
SF1.2	가족에서의 아동 (Children in Families)	동거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추이(Trends in children living with cohabiting parents, 2007 and 2018)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동거변수 생성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소득변수 생성
		모의 학력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학력변수 생성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1주일 기준 취업여부 변수 생성 필요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19)	X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X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19 or latest available)	X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X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모든 성인이 미취업인 가구의 자녀(Children in jobless households, 2008, 2013 and 2018)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성인가구원 전체 취업상태 필요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학력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학력 자료 공개 또는 집계 필요 (중졸이하/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LMF1.2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자료없음: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출산휴가 정보 등 포함하여 생산 검토필요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성별 자녀관련휴가 이용기간(Duration of paid leave for men and women)	X	

넷째,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가구정보를 더 충실히 가공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는 전체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하위 범주의 하나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산, 공표하는 고용통계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가구통계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집계, 공표되고 있는 맞벌이 통계는 부부를 기준으로 하여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가구 숫자가 집계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구는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부부 중 맞벌이 비율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구성하고 있다(통계청, 2024.6.18.).[123] 이러한 방식의 통계는 가구주 중심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통계 작성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 가족통계들은 아동을 기준

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고용통계의 경우에도 부부를 기준으로 맞벌이의 비율을 추계하는 통계 외에, 아동을 기준으로 아동 부모의 혼인상태와 고용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의 집계, 공표가 필요하다. 김은지(2020)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구주 중심의 하향식 통계'가 아니라 '아동 중심의 상향식 통계'의 개념을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는 자녀 연령을 만14세 이하 아동으로 제한하고 아동을 기준으로 아동 부모의 혼인여부와 취업상태를 분류하여 양부모 및 한부모의 취업상황에 대한 통계를 집계, 공표될 필요가 있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는 14세 이하 아동의 모에 대한 지표도 따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때 모의 연령을 15~64세로 제한한 통계가 필요하다. 동일 지표들에서 아동의 연령을 0~2세, 3~5세, 6~14세로 구분하여 집계한 통계, 모의 학력을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통계가 필요하다.

한편 한부모의 고용 지위와 관련된 지표들은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산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표들이 양부모와의 비교를 통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별 고용조사에 가구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한 조사자료 안에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요한 지표 중 0-2세 모의 고용률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0-2세 아동을 둔 모의 취업상태를 일하고 있음,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 중으로 구분하는 지표이다. 현재 지역별 고용조사의 설문문항에서는 일을 하지 않은 이유의 보기로 '휴가·연가', '육아', '가족적 이유'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문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구분되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고용조사는 개인 단위의 고용 관련 지표는 충실히 제공하기 때문에 성인 개인 단위의 고용률 지표는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되어 있는 한국의 성별 구분된 학력별 연령대별 고용률을 집계할 수 있었다. 이 지표는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징인 M자 곡선 등이 드러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통계청에서 통계적 안정성을 확인 후에 고용률 지표 공표시에 함께 집계,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

123) 통계청의 맞벌이 통계는 2011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통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300&bid=211, 검색일 2024.6.24.),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통계는 2015년 통계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였다(통계청, 2016.6.29).

〈표 7-17〉 지역별 고용조사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부모의 취업 현황별 자녀의 비중(Children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 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부부가구 부모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couple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9 or nearest year available)	X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변화(Changes in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2010 to 2019)	X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자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adults in couples with children, by gender, 2019)	X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X	
		자녀 여부 및 자녀 수별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by presence and number of children, 2019)	X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의 모(15~64세) 기준으로 집계 필요
		유자녀 여부별 모의 고용률 추이(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19)	X	
		자녀 수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19 or latest available)	X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모의 고용률 변화(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2005, 2012 and 2019 or latest available)	X	
		파트너 취업여부별 유배우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by partner's employment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X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and education, 2018)	X	누락: ※ 지역별 고용조사 공표 필요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학력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학력 자료 공개 또는 집계 필요 (중졸이하/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유배우 혹은 모자가구의 학력별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partner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by level of education, 2019 or latest available)	X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막내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O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2세, 3~5세, 6~14세 아동의 모(15~64세) 기준으로 집계 필요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 (Patterns of employment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2세, 3~5세, 6~14세 아동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막내 자녀 연령별 유자녀 부부가구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women in couples with children by age of youngest child, 2019)	X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를 0~14세 아동을 둔 한부모 기준으로 집계 필요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	X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0-2세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for women with children aged 0-2, by maternity/parental leave statu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자료없음: 지역별 고용조사 모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보 필요

다섯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에도 일부 지표생산이 필요하다. 현재 맞벌이 통계 등과 같이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와 관련된 지표들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부담을 고려하여 지역별 고용조사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관련 지표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한 지표생산을 주로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트(NEET) 지표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주로 생산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한 생산을 제안하고 실제 시범산출하였다. 산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지표를 공식적으로 집계,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외국인 니트 비율 지표는 현재 조사문항들로는 구성되지 않는데,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동에 따라 점점 더 이민·이주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이주배경 변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표 7-18〉 경제활동인구조사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CO3.5	청년니트(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청년 니트 비율(NEET rates for 15-29 year-olds)	X	누락: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용 생산 가능
		연령대별 니트 비율(NEET rates across age groups)	X	
		니트 비율에 대한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X	
		내국인 및 외국인 니트 비율(Native-born and foreign-born NEET rates)	X	자료없음: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이주배경 포함 필요

여섯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원정보 공개 또는 가구원정보를 아동 및 가구특성에 따른 변수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 관련 정보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장 대표 통계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분류하여 활용할 배경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구원 명부는 조사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러한 정보가 일반 연구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구 여부(부모가 법률혼인지 기타 동거인지), 한부모가구 여부(모자가구인지 부자가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가구유형에 따른 상대소득빈곤율도 주요 지표로 집계,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가구원의 장애여부를 판별할 변수도 필요한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원 정보에 등록장애인 여부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OECD 기준에 맞는 지표 생산을 위해서는 활동제약을 묻는 방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김은지 외, 2023: 205-209).

〈표 7-19〉 가계금융복지조사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상대소득빈곤 상태별 아동의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by relative income poverty status)	X	자료없음: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연령자료 공개 필요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장애가구원 유무에 따른 아동가구의 빈곤율(Poverty rat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by disability status, 2009)	X	자료없음: 가계금융복지조사 변수 보완 필요

일곱째,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현재 누락되어 있는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 지표를 생산할 수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한국에서 UN 지침에 따라 2019년부터 공표하기 시작한 자료로서(통계청, 2023.11.28.), OECD의 자료원인 National Transfer Accounts 사이트에도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자료가 각 연령별로 값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산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는 0-19세, 20-64세. 65세 이상의 연령계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9세를 기준으로 한 집계, 공표도 필요하다.

〈표 7-20〉 국민이전계정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PF1.7	세대간 연대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연령집단별 순이전비율(Age profile of net transfers)	X	누락: OECD 자료원인 NTS웹사이트에 자료있음 ※ 통계청 공표시 연령계층을 0-19세, 20-64세 65+으로 구분(현재 0~14세, 15~64세, 65+)

나. 공공기관 생산 통계자료

다음으로,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 승인조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과 출산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을 15~64세로 확대하고 이상자녀수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출산력 지표들은 대체로 15~64세 연령대의 응답자에게 묻고 있어 19~49세로 제한된 응답자로는 비교가능한 수치를 만들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매우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모의 출산자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를 늘리는 데에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비교가능한 수치확보를 위해 연령대를 늘릴 필요성 정도를 제언하고자 한다. 다만 인구총조사에서 미혼 응답자에 대해 자녀 수를 조사하는 항목을 두는 것과 가족과 출산 조사의 조사 연령 확대 중 한가지는 해결되어야 관련 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현재 가족과 출산조사에서는 일반적 이상 자녀 수를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묻고 있는데(박종서 외, 2021:433),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와 별도로 개인적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지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적 이상자녀수는 '유럽바로미터' 조사의 "개인적으로 당신이 갖고자 하거나 갖고자 했던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라는 문항이다. 현재 가족과 출산 조사의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입니까?" 문항으로 우회하여 개인적 이상 자녀 수를 산출할 수도 있으나. 이 문항은 이상적 자녀수 보다는 자녀 계획에 대한 질문이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유럽바로미터 조사에 준하는 문항을 일반적 이상 자녀 수 아래에 함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7-21〉 가족과 출산조사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X	자료없음: 가족과 출산 조사, 연령 확대(19~49 → 15~64) 및 개인적 이상자녀수 문항 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Ideal general number of children, 2011)	X	
		교육정도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level of education, 2011)	X	
		취업여부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by working status, 2011)	X	
		일반적인 이상 자녀 수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사이 격차(Differences between general and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X	
		최종적인 가족 규모 (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11)	X	누락: 가족과 출산 조사 활용

둘째,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변수 문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부모 관련 지표는 특히 고용 지위 변수가 중요한데, 고용 지위변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변수는 주당 근로시간 변수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하루 근로시간을 묻고 있는데 주당 근로시간 변수가 포함되어야 아래 세 개의 지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래 세 개의 변수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개선하여 도출할 수도 있다.

〈표 7-2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한부모가구의 고용 지위별 자녀의 비중(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8)	X	자료없음: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주당 근로시간 문항 포함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한부모 가구의 고용 지위(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X	
		취업 한부모의 근로시간 분포(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employed single parents, 2019)	X	

셋째, 주거실태조사, 여성폭력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 등 세 개의 조사의 경우에는 이미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지표가 생산 가능하지만 OECD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개 조사에서 해당 지표를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아래 지표들의 경우 해당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지표가 제출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실태조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 OECD 자료와의 비교를 함께 제시한다면 해당 조사의 활용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7-23〉 주거실태조사, 여성폭력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SF1.5	아동의 주거 여건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과밀거주 아동(Children in overcrowded households, 2017)	X	누락: 주거실태조사 활용
		기초생활시설 부족 아동(Children in households that lack basic facilities, 2017)	X	
SF3.4	가정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파트너에 의한 폭력(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X	누락: 여성폭력실태조사 활용
LMF2.4	가족친화제도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X	누락: 근로환경조사 활용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2015)	X	
		재택근무 근로자(Employees working from home, 2015)	X	

넷째, 노인실태조사에 신규문항을 통해 생산을 제안한 지표가 있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는 아동과 여성 관련 통계에 초점이 기울어져 있으나, '세대간 연대' 지표 등에서 일부 노인 관련 세부 지표를 다루고 있다. 노인실태조사 등 안정적인 추세 조사를 통해 산출이 필요한 지표는 50세 이상 인구의 현금이전 및 시간이전, 손자녀 돌봄자 비율 변수이다. 고령화연구 패널조사에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패널은 횡단대표성보다는 패널유지가 보다 중요한 과업이므로 노인실태조사와 같은 추세조사에 해당 문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7-24〉 노인실태조사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PF1.7	세대간 연대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50+인구의 현금이전 및 시간이전 (A. Transfers of money,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B. Transfers of time, per cent of total receiving or giving)	X	자료없음: OECD는 SHARE(2006-2007) 조사 값을 보고,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에 유사문항이 있으나 패널자료라는 한계가 있음. 노인실태조사 등에 신규문항을 통한 생산방안
		손자녀 돌봄자 비율(Percentage of grandparents taking care of at least one grandchild)	X	

다섯째, 보육 관련 통계는 실제 연령정보를 반영한 지표 생산이 필요하다. 현재 제출된 다수의 통계가 실제 연령이 아닌 '보육 연령'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통계의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였다.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경우 이미 행정통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연령별 기관이용률 지표는 공식통계로 부처에서 집계,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전수통계는 아니지만 표본조사인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활용하면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지표의 상당수를 개선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실태조사를 활용하여 0-2세 및 3-5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및 이용시간 지표들의 상당수를 개선 또는 신규 산출하였다. 다만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소득문항을 세전 소득으로 묻고 있어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후 소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7-25〉 보육실태조사 및 보육통계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PF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O	개선필요: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0~2세 가구소득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income, 0- to 2-year-olds)	X	자료없음: 전국보육실태조사 세후소득 필요
		0~2세 모의 교육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X	누락: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 (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X	
		3~5세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O	개선필요: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또는 보육통계 보완, 실제 아동연령 기준 산출
		3~5세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및 초등교육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by year of age, 3- to 5-year-olds)	O	

여섯째, 비공식돌봄 및 초등돌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적 대표성을 갖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상당수의 지표가 도출되는 반면, 초등연령대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비공식 돌봄 이용 아동에 대한 항목을 수집, 생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아이돌봄서비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사를 넘어 초등아동 연령대까지 이르는 대표성과 공신력이 있는 새로운 통합 실태조사가 제안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26〉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등 초등돌봄 관련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PF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X	자료없음: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통계 승인 및 보완을 통한 생산
		아동 연령과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X	
		아동 연령과 모의 교육수준별 비공식 돌봄 이용률 (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and mother's education level)	X	
		아동 연령별 비공식 돌봄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	X	
PF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Out-of-school-hours care)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 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X	자료없음: 통합통계 생산 필요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주중 평균 이용시간(Average hour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during a usual week)	X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tertile)	X	
		모의 교육수준별 초등방과후 (기관)돌봄서비스 이용률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by mother's education level)	X	

일곱째,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이주배경과 관련된 지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한국은 관련 지표를 생산하기 어렵다. 조사시에 이주배경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거나, 관련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해당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7-27〉 국가학업성취도평가 생산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이주배경 학생(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2006 and 2015)	O	적절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O	적절: 비이주배경 집단 ('이주배경 집단' 자료없음)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수학 성취도(Students'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X	자료없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이주배경 문항 추가 또는 연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통제 전·후의 내국인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native students and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ocio-economic background, 2015)	X	
		가정에서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 (Students who speak another language at home, 2015)	X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통제 전·후의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읽기 성취도 차이(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immigrant and non- immigrant students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spoken at home, 2015)	X	

다. 기타 OECD 제출 통계자료

다음으로, OECD에 다른 경로로 생산되어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로 OECD가 직접 제출하고 있는 통계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에 제출되고 있는 Tax-benefit system의 항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가족급여 제도유형 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Tax-benefit system의 한국자료는 국세청에서 직접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자료가 어떤 제도를 어떻게 분류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나 가정양육수당 등과 같은 수당들은 복잡한 제도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 변화하는 급여들로 적절하게 분류되기 어렵다. Tax-benefit system의 분류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절한 지표의 조정이 필요하다.

〈표 7-28〉 OECD Tax-benefit system 관련 검토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PF1.3	가족 현금급여 (Family cash benefits)	가족현금급여 유형 및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family benefits, by type,2018)	O	개선필요: OECD Tax-benefit system, 가족급여 제도유형 분류 재검토 필요
		가족특성 및 소득수준별 가족현금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 and earnings, 2018)	O	개선필요: 한부모 급여액 오류
		막내 자녀 연령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8)	O	개선필요: OECD Tax-benefit system, 가정양육수당 관련 급여액 처리 검토필요
		자녀수별 급여수준(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2018)	O	
PF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출산후 첫째달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 (Net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2014)	O	개선필요: OECD Tax-benefit system, 산전 순가구소득 보고 금액이 불명확함. 근거값 확인필요
		출산후 시기별 가구소득의 출산1년전 가구소득대체율 (Net equivalised income over the period of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2014)	O	

둘째, OECD가 SOCX 자료 등을 통해 직접 산출하고 있는 공공지출에 대한 지표들은 2차연도에서는 모두 '적절'로 재분류하였으나, 향후 SOCX 자료의 분류시에 가족 급여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지표들이 있다. 예컨대 아이돌봄서비스나 자녀장려금 등은 가족급여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는데, SOCX 자료 작성시에 이 지출들을 가족급여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미 이러한 우려점이 반영되어 가족지출로 지표체계가 변경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자녀장려금 등의 분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공공지출에서 초등자녀에게 지출되는 지출이 구분되지 않았는데, 향후 SOCX 자료 제공시에 영유아와 초등자녀에 대한 지출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7-29〉 OECD SOCX 관련 검토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가족급여 유형별 공적 지출 총계(total)	O	개선필요: OECD SOCX,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장려금 등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되는 등 분류체계 검토필요	적절: OECD 분류 원칙에 따름
		현금급여(cash)	O		
		현물급여(services)	O		
		조세지출(tax breaks for families)	O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ducation)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	개선필요: OECD SOCX,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제외	적절: OECD 분류 원칙에 따름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er child)	O	개선필요: OECD SOCX, 초등자녀 돌봄지원 재정 제외	적절: OECD 분류 원칙에 따름

마지막으로 아동성과 영역에서 중요한 조사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해당 조사는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조사(HBSC)와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였다. 전자의 경우 상당수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개선해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11세 정보가 부재하거나 풍요도 변수가 누락되어 산출이 제한되는 항목들이 존재하였다.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의 경우 '읽기' 관련 항목이 전체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였다.

이 영역의 지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제비교가능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있는 중이므로 향후 해당 지표에 대한 점검과 조사 참여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구 버전을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표 7-30〉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조사(HBSC)와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 관련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과체중 및 비만(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누락: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산출 가능 (단 11세 산출 불가)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CO1.8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CO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	X	자료없음: HBSC 비참여 국가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에 문항 추가 필요 (대마는 조사 민감성 존재)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2013/14)	X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2013/14(Overweight and obese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자료없음: HBSC 비참여 국가로 풍요도 자료없음,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문항 추가 필요 (대마는 조사 민감성 존재)
CO1.8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3/14년 11~15세의 성별 및 가족 풍요에 따른 정기 흡연자(Regular smokers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CO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성별·가구 풍요도별 술에 취한 경험(Experience of being drunk at ages 11-to-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성별·가구 풍요도별 대마 사용 경험(Cannabis use at age 15 by gender and family affluence, 2013/14)	X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읽기, 수학 및 과학 성취도(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TIMSS2011))	O	자료없음: 읽기 성취도, PIRLS 비참여 국가
		성별에 따른 읽기, 과학, 수학 성취도 차이(Gender differences (boys-girls) in student's reading PIRLS 2011), mathematics and science performance(TIMSS2011))	O	
		가정 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도(Scores on reading achievement relative to Home Resources for Learning, PIRLS 2011)	X	

또한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 지표,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비율 지표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한 지표로 제시되었고, 한국은 아직 관련 조사자료가 없어서 사회조사 등에 문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지표들 역시 새로 구축될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여 지표 생산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7-31〉 청년 관련 문항 추가 필요 지표

지표 번호	지표명	세부 지표	한국	
			보고 여부	최종 검토결과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청년의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Percentage of employed and unemployed young people aged 18 – 29 years old by disability status, 2009)	X	자료없음: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변수 추가 필요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지난해 자원 봉사 또는 자선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Proportion of people involved in work for voluntary or charitable organisations in the past year)	X	자료없음: 사회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에 문항 추가 고려 가능

2. 한국의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의 생산·관리 거버넌스 정립 방안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가족·아동 국제비교에 있어 대표적인 기준지표로 활용되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한국자료의 공개 현황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앞으로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한국 아동·가족지표의 개선사항을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정부 정책설계와 운영에 활용도가 높은 공신력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식적인 자료의 생산 및 관리 거버넌스의 정립이 요구된다.

현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한국지표는 OECD의 직접 생산·관리 체계에 있다. 따라서 다른 OECD 데이터베이스(eg. SOCX, Education DB, LMP, Health DB 등)와 달리 한국 가족지표의 생산 및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부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료의 생산과정에 있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와 별개로 한국을 포함한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한국,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최신 가족지표를 제공하고 있다.[124]

2023년 12월 발표된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 2022~2023년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에는 2019년 지표가 가장 최신 자료로 공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 작성 과정에서 산출되어 OECD에 제출되는 한국의 최신 가족지표가 향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에 사용되는가에 대하여 OECD에 문의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OECD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 작성 과정에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의 작성 주체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라는 사실로부터 두 자료가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 작성 주체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2007년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제490호(「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2008년 7월 체결된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OECD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다. 센터 예산은 전액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4년 4월 국무총리훈령 개정(국무총리훈령 제864호, '24.4.16. 일부개정)을 통해 국무조정실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OECD와 정부 간 양해각서를 배경으로 공동설치된 기관이지만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그 재원 역시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국무조정실 소관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의 생산·관리 체계의 구축 및 거버넌스 정립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한국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의 생산 체계

먼저 한국의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가 포괄하는 범위를 고려했을 때, 관련 지표의 생산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 또한 6개의 국책 연구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 지표의 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졌다. 연구 방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기관 단위로 참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 참여한 다학제 연구로 수행되었다. 각 참여 연구기관은 여러 차례 워크숍을 거쳐 지표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와 산출방식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2년의 기간에 걸쳐 형성된 협업 네트워크는 향후 한국 가족·아동 지표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체로 요구되며, 참여 기관의 확장을 통해

124) 현재 4개 분야(①SF: the structure of families, ②LMF: the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③ 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④ CO: child outcomes) 에 대한 28개 지표로 구성되며, 현재 2022~2023년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어 공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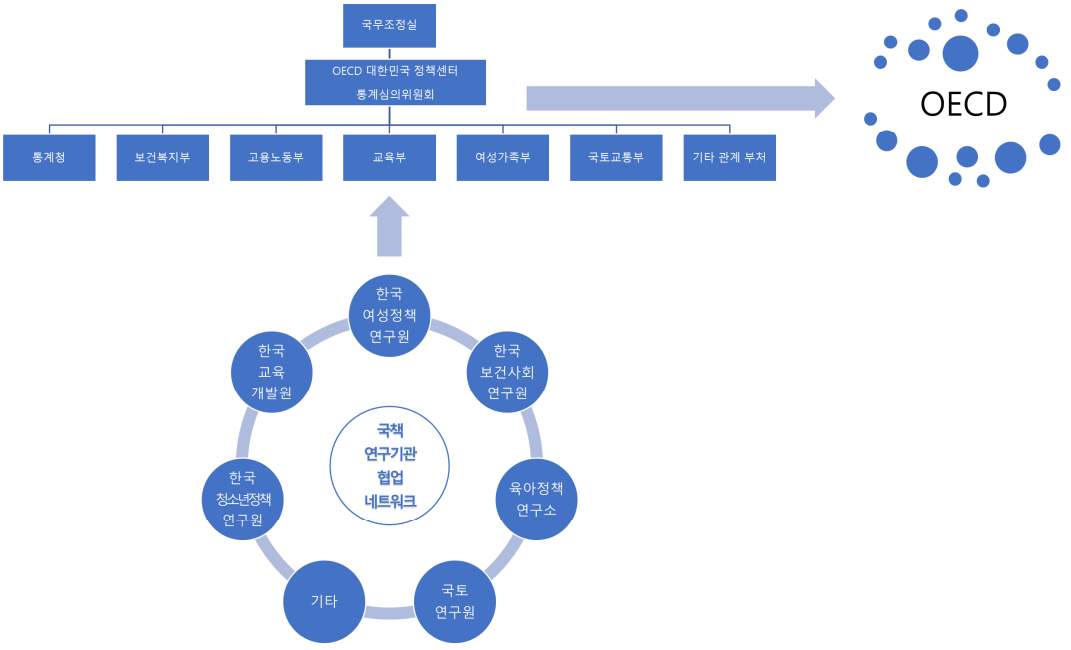
보다 공식화된 조직으로 정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나. 한국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의 생산 및 관리 책임 기관

한국 가족·아동 지표의 생산 및 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한국 자료를 생산 관리하는 체계이다. 이 경우에는 OECD의 직접 생산·관리체계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국무조정실이 한국 가족지표의 총괄부처로서 OECD가 공개하는 한국 데이터에 대한 검토와 누락된 지표의 생산 및 OECD에 제출을 담당하도록 하는 안이다. 구체적인 지표의 생산·관리 업무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현행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및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을 통해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수행하되,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총괄책임 하에 관계부처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명시하는 형태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에서의 작업수행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7-2]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1안)



두 번째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와 상관없이 정부 아동·가족정책에서의 활용을 우선 목적으로 하여 자체적인 가족·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총괄 책임기관은 관련 정책수요와 지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먼저 정책수요와 조직 기능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 부처의 역할을 담당하는 안이다. 동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여러 부처에 걸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와 여러 관계기관의 협력이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총괄 책임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생산 및 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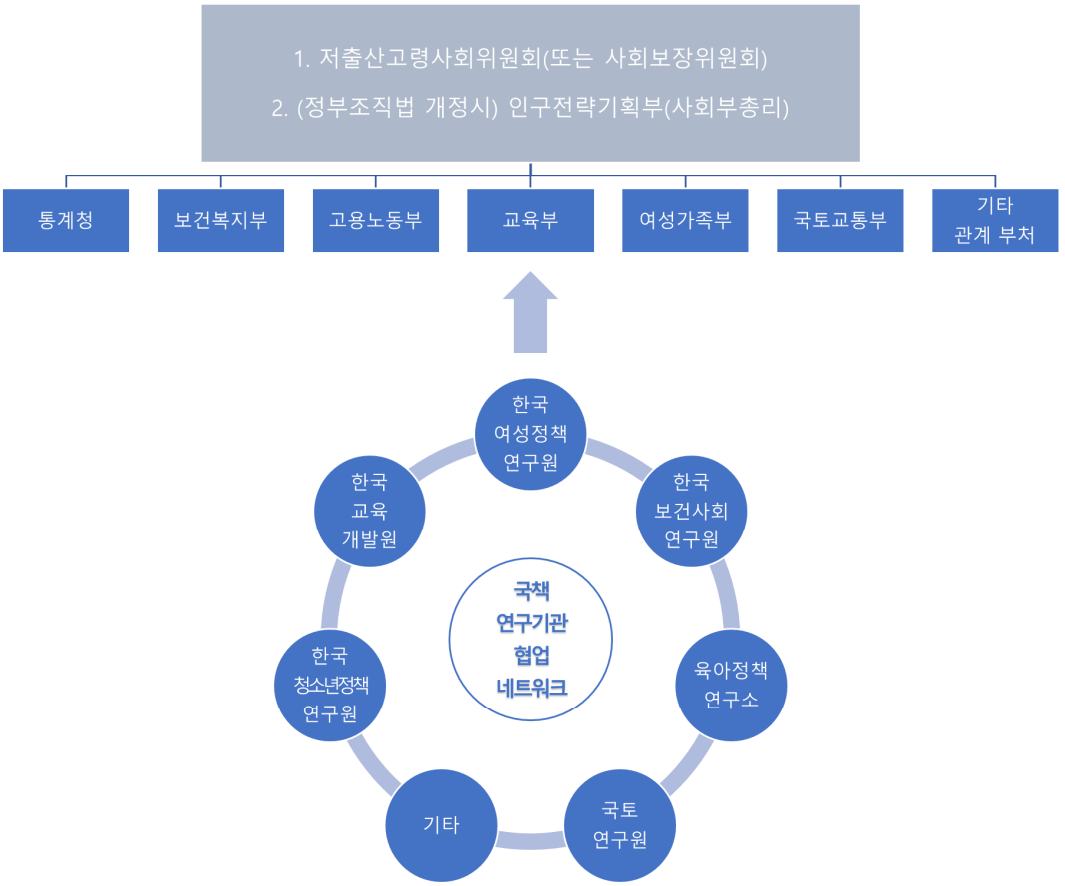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제32조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제32조의2를 통해 이와 관련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출된 자료는 동법 제20조제2항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사회보장통계 업무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 2년마다 OECD에 제출하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통계의 작성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국의 가족·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만일 법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현 사회보장통계 업무범위를 확장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신설 추진을 발표한 (가칭)인구전략기획부를 주관 부처로 설정하는 안도 가능하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부총리급으로 신설되어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까지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 통계분석·연구 기능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의 전면개정과 함께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변경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는 경우를 전제할 때,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한국의 가족·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족·아동 지표의 산출업무 역시 여러 국책연구기관의 협업 네트워크의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거버넌스에서의 작업수행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7-3]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 거버넌스 체계(2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민정 외(2020). 2019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김은지(2020). 한국의 아동 기반 가구통계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교육부(2024a).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교육부(2024b).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김선혜(2019). '제3자생식' 규제를 둘러싼 한국의 재생산 정치. 여성학연구, 29(1): 65-102.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김은정·임지영·박종서·박명호·노호창(202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지 외(2023).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2013).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국가간 비교 연구. 가족과 문화, 25(2), 270-300.

김현진(2019). 대리모 출생아의 친자관계-2018.5.18. 선고 서울가정법원 2018브15 결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2(2).: 293-535.

도남희·구자연·신나리·강규돈(202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박복순·김은지·김효정·고현승·유경희·손서희(2020).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종서 외(2021).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수정본).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9)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24a).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울가정법원(2021).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신윤정·이지혜·임지혜(2021).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오미애·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2024.03.28.).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 [보도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요약).

여성가족부(2020).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2022).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2024).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우영혜(2021). 미래 유아학교의 학급당 적정 유아 수. 2021년 제3차 KICCE 정책토론회: 미래 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육아정책연구소.

우해봉·장인수·임지혜(2020).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유리(2023). “한국의 자살 추이와 대응” in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장미혜·김효정·정연주·박상민·정다은·정지연·유경희·이다은(2021).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통계청(2015).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2016.6.29). 201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통계청(2018).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2021).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2022). 아동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2022b). 인구동향조사, 2024.01.12,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통계청(2022.12.20).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보도자료].

통계청(2023). 지역별고용조사 2023년 하반기 원자료.

통계청(2023.11.28). 2021년 국민이전계정 [보도자료].

통계청(2023.12.14.). 장래인구추계: 2022~2027년 [보도자료].

통계청(2023.8.30.). 2022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2024.3.19). 2023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2024.6.18).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보도자료].

통계청(2024a).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이용자 설명자료.

통계청(2024b).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이용자 설명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2020). 근로환경실태조사 원자료.

[해외문헌]

Bongaarts, J., & Feeney, G. (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71-291.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UNICEF. (2001). A League Table of Teenage Births in Rich Nations. Innocenti Report Card No.3.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UNICEF. (2003). A League Table of Child Maltreatment Deaths in Rich Nations. Innocenti Report Card No.5.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보고서.

WHO. (2013). WHO Mortality Database. World Health Organization.

Yoo, S. H., & Sobotka, T. (2018). Ultra-low fertility in South Korea: The role of the tempo effect. Demographic Research, 38, 549-576.

[사이트]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n.d., “비만과 수술치료-비만과 병적 비만,” 인출. https://www.ksmbs.or.kr/content/general/01.ph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검색일: 2024. 6. 5.),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 (검색일: 2024. 6. 5)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 (검색일: 2024. 06. 23.)

통계청. (2022).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1&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1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 2024. 06. 13.)

통계청. (2022). 재가 청각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재가 시각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32S013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혼인상태별 인구(성/연령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IN0508

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 (n.d.). Ages. https://www.crin.org/en/home/ages

Eurostat, “Mortality Data,”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Girls Not Brides. (n.d.). New Zealand. https://www.girlsnotbrides.org/learning-resources/child-marriage-atlas/regions-and-countries/new-zealand/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15 (검색일: 2024.6.18.)

http://www.law.go.kr (검색일: 2024.6.18.)

https://eis.work.go.kr/eisps/rpt/reptDtl.do?menuId=030010040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A&AST_SEQ=3891&searchType=all&CTS_SEQ=48512&pageIndex=undefined&ETC=1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1030.html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3543 (검색일: 2024.6.18.)

International Alliance for Responsible Drinking. (n.d.). Minimum Legal Age Limits. http://www.iard.org/policy-tables/minimum-legal-age-limits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2017, "Diabetes Atlas, Eighth edition," 보고서. http://www.diabetesatlas.or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n.d.). Ratifications of C138 -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1300:0::NO:11300:P11300_INSTRUMENT_ID:312283:NO

Jasilioniene, A., Jdanov, D.A., Sobotka, T., Andreev, E.M., Zeman, K., and Shkolnikov, V.M. (2015). Methods protocol for the human fertility database [electronic resource]. Rostock and Vienna: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MPIDR) and the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VID). http://www.humanfertility.org/Docs/methods.pdf.

National Account Transfers. (n.d.). https://www.ntaccounts.org

National surveys, 2023, "OECD Health Statistics," 보고서.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OECD (2024) Education database_Programmes in ECEC, https://app.powerbi.com/view?r=eyJrIjoiZTMwMTk1ODUtYjJlMi00Zjc0LWJiNzUtZGE1NTU3ODI0MTY2IiwidCI6ImFjNDFjN2Q0LTFmNjEtNDYwZC1iMGY0LWZjOTI1YTJiNDcxYyIsImMiOjh9 (검색일: 2024. 6. 5).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n.d.).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child-well-being-data-portal.html (검색일: 2024. 07. 16.)

OECD Data Explorer–Archive. (n.d.). https://data-explorer.oecd.org/vis?tenant=archive&df[ds]=DisseminateArchiveDMZ&df[id]=DF_FAMILY&df[ag]=OECD&dq=..&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검색일: 2024. 07. 16.)

OECD Family Database(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검색일:

2023. 12. 29.)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n.d.). 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 Tax-Benefit Models. (n.d.). http://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htm

OECD, 2021, "Health Statistics,"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OECD. (2012). PF1.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OECD Family Database. https://web-archive.oecd.org/2012-12-21/220723-PF1.7%20Intergenerational%20solidaritiy%20FINAL.xls

OECD. (2013). PF1.9: Aspects of Child Protection.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PF_1_9_Aspects_of_child_protection_Dec2013.pdf

OECD. (2016). Family Support Calculator. OECD Family Database. https://web-archive.oecd.org/2016-10-12/60662-oecdfamilydatabasethefamilysupportcalculator.htm

OECD. (2020). PF4.2.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https://www.oecd.org/els/soc/PF4-2-Quality-childcare-early-education-services.pdf (검색일: 2023. 12. 29.)

OECD. (2021). PF3.3: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data/datasets/family-database/pf3-3-informal-childcare-arrangements.pdf (검색일: 2023. 12. 29.)

OECD. (2022). PF3.4: Childcare support. https://www.oecd.org/els/soc/PF3-4-Childcare-support.pdf (검색일: 2023. 12. 29.)

OECD. (2022). PF4.3. Out-of-school-hours service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data/datasets/family-database/pf4-3-out-of-school-hours-care.pdf (검색일: 2023. 12. 29.)

OECD. (2023). PF2.6: Same-sex Parents' Leave Entitlements. OECD Family Database. https://web-archive.oecd.org/2023-01-12/649254-PF2-6-same-sex-parents-leave-entitlements.pdf (검색일: 2023.03.01)

OECD. (2023). PF3.1: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data/datasets/family-database/pf3_1_public_spending_on_childcare_and_early_education.pdf (검색일: 2023. 12. 29.)

OECD. (2023).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data/datasets/family-database/pf3_2_enrolment_childcare_

preschool.pdf (검색일: 2023. 12. 29.)

OECD. (2024). Education database_Programmes in ECEC. https://app.powerbi.com/view?r=eyJrIjoiZTMwMTk1ODUtYjJlMi00Zjc0LWJiNzUtZGE1NTU3ODI0MTY2IiwidCI6ImFjNDFjN2Q0LTFmNjEtNDYwZC1iMGY0LWZjOTI1YTJiNDcxYyIsImMiOjh9 (검색일: 2024. 6. 5).

OECD. (n.d.). Benefits and wages: Country specific information. https://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benefits-and-wages-country-specific-information.htm (검색일: 2023.04.30)

OECD. (n.d.). PF2.2: 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http://www.oecd.org/els/family/PF2-2-Use-childbirth-leave.pdf (검색일: 2024.01.15)

OECD. (n.d.). PF2.5: Trends in parental leave policies since 1970. https://www.oecd.org/els/family/PF2_5_Trends_in_leave_entitlements_around_childbirth.xlsx

Protection of Minors. (n.d.). http://www.protection-of-minors.eu

Right to Education Initiative. (n.d.). Comparative Table on Minimum Age Legislation. http://www.right-to-education.org/page/comparative-table-minimum-age-legislation

United Nations (UN). (2020). SDG Indicators: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O, 2024.6.11., “Growth reference data for 5-19 years,” 인출. http://www.who.int/growthref/en/.

부록

부록: 지표별 작성자 목록

지표번호	지표명	집필자
가족구조 지표(SF)		박미진(방통대)
가족과 아동		박미진(방통대)
SF1.1	가족의 규모와 가구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SF1.2	가족에서의 아동 (Children in Families)	
SF1.3	아동의 거주 형태 (Further information o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SF1.4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인구와 유소년 부양비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SF1.5	아동의 주거 여건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박미선(국토연)
출산력		최선영(보사연)
SF2.1	출산율 (Fertility rates)	
SF2.2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SF2.3	출산시 모의 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SF2.4	혼인 외 출생 비율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SF2.5	무자녀 (Childlessness)	
혼인 및 파트너십 상태		박미진(방통대)
SF3.1	혼인율과 이혼율 (Marriage and divorce rates)	
SF3.2	가족 해체와 아동 (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SF3.3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최선영(보사연)
SF3.4	가정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지표(LMF)		강민정(여정연)
아동 및 가족유형별 취업 현황		강민정(여정연)
LMF1.1	부모 취업 현황에 따른 아동 현황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지표번호	지표명	집필자
LMF1.2	모성 고용률 (Maternal employment rates)	
LMF1.3	혼인 상태별 모성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LMF1.4	생애주기별 고용률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LMF1.5	종일제 근로자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LMF1.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근로시간 및 돌봄시간		
LMF2.1	성별 주당 근로시간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LMF2.2	유자녀 부부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LMF2.3	한부모 가구의 고용 패턴과 근로시간 분포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LMF2.4	가족친화제도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LMF2.5	일, 돌봄,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LMF2.6	출퇴근에 보낸 시간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LMF2.7	주관적인 행복감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와 자녀관련 휴가 지표(PF1, 2)		김수정(동아대)
가족·아동정책 총괄지표		
PF1.1	공적 가족급여지출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고제이(보사연)
PF1.2	공교육 지출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김나영(교육)
PF1.3	가족 현금급여 (Family cash benefits)	김수정(동아대)
PF1.4	조세-복지급여 체계의 형평성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PF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체계 (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박미진(방통대) 김은지(여정연)
PF1.6	아동 연령별 공적 지출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고제이(보사연)
PF1.7	세대간 연대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PF1.8	법적 성년 연령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PF1.9	아동보호 특성 (Aspects of child protection)	이상정(보사연)
자녀관련 휴가		김수정(동아대)
PF2.1	자녀관련 휴가제도의 주요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F2.2	자녀관련 휴가 사용현황 (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지표번호		지표명	집필자
	PF2.3	취업부모 추가휴가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arents)	
	PF2.4	자녀관련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PF2.5	자녀관련 휴가급여 추이 (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PF2.6	동성부모와 입양부모의 자녀관련 휴가 자격 (Same-sex and adoptive parental leave entitlements)	
아동돌봄서비스 지표(PF3,4)			유해미(육아연)
	영유아 공보육·교육		유해미, 최효미, 조숙인 (육아연)
	PF3.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ducation)	
	PF3.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PF3.3	비공식 돌봄 이용 현황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PF3.4	보육료 지원 (Childcare support)	
	아동돌봄체계		
	PF4.1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PF4.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PF4.3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Out-of-school-hours care)	
아동성과 지표(CO)			이상정(보사연)
	아동건강		김수진(보사연)
	CO1.1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CO1.2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CO1.3	저체중 출생 (Low birth weight)	
	CO1.4	백신 접종률 (Vaccination rates)	
	CO1.5	모유 수유율 (Breastfeeding rates)	
	CO1.6	질병 관련 지표: 아동 당뇨와 천식 유병률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CO1.7	11세, 13세, 15세 성별 과체중 (Overweight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CO1.8	11, 13, 15세 성별 정기 흡연자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CO1.9	아동장애 (Child Disability)	이주연(보사연)
	아동빈곤		이주연(보사연)
	CO2.1	가구 유형별 소득 불평등 및 소득지위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CO2.2	아동빈곤 (Child poverty)	
	CO2.3	아동가구의 물질적 결핍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지표번호	지표명	집필자
교육·문해력		
CO3.1	성별에 따른 교육이수 (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김나영(교육)
CO3.2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CO3.3	만 10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CO3.4	만 15세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 차이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CO3.5	청년니트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CO3.6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교육성과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사회참여		유민상(청소년)
CO4.1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와 NGO 회원가입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CO4.2	생애 첫 투표 참여율 (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CO4.3	청소년·청년의 약물 남용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CO4.4	십대 자살 (Teenage suicides)	

협동연구총서 24-12-01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Ⅱ):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발 행 2024년 9월
발 행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전 화 044) 211-1000
홈 페 이 지 www.nrc.re.kr
I S B N 979-11-5567-732-2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II):

OECD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Indicators for Families and Children(II): Supplementing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s and Reviewing the Situation in Kore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비매품/무료
93310
9 791155 677322
ISBN 979-11-5567-732-2